

# 서천군 경관계획

Seocheon Landscape Plan

최종보고서

2015. 02



서천군





# 제 출 문

---

서천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서천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02월

원 장 강 현 수





## I.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범위 |  
계획의 성격 및 위상 | 계획 수립 방법 및 과정

## II.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 9

지역현황 | 경관자원조사 | 경관구조 | 경관의식조사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사례 분석 |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III. 경관기본구상 ..... 81

기본방향 | 경관 미래상 및 목표 | 추진전략 |  
기본구상

## IV. 경관계획 ..... 93

경관권역계획 | 경관축계획 | 경관거점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 위해경관요소 관리방안

## V. 경관가이드라인 ..... 133

경관가이드라인 개요 |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  
경관권역·축·거점 경관가이드라인 |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색채 가이드라인 |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VI. 실행계획 ..... 299

개요 | 경관관련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경관조례의 제정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 | 경관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계획 | 예산 및 재정계획 |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  
경관관련 심의 및 자문 | 경관관리 실행조직 강화 및 운영

## VII. 부록 ..... 347



## I . 계획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범위 | 계획의 성격과 위상 | 계획수립 방법 및 과정 |



#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배경

**획일화된 시가화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농어촌, 산림, 해안경관)의 경관 훼손 등 공간 환경의 악화에 대한 개선 필요**

-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성 없는 경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소규모 점적 개발, 규제 위주의 경관정책으로 인한 공간환경의 악화에 대한 자각
- 비시가화 지역인 농어촌경관, 산림경관, 해안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창출의 필요성 증대
- 개발중심 사회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고, 주민의식수준 향상으로 환경에 대한 질적인 요구도 향상됨에 따라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 경관형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 증가

**“아름다운 도시”를 지향하는 군정 목표상 서천군만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경관적 기틀 마련 요구**

- 서천군은“자연도시”와 함께“아름다운 도시”를 표방하고,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요 대상이 자연환경과 개발중심에 그쳐 경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파급범위 및 효과면에서 한계를 노정
- 서천군의 개성을 살린 도시이미지를 설정하고, 정체성의 확립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할 필요성 증가

**경관법 제정에 따른 체계적인 경관관리의 요구**

- 경관법 제정(2007)과 경관법 개정(2014)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관형성 및 유도·관리를 위한 적용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 2) 목적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응한 서천군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경관 기본틀 마련**

- 서천군만의 특색 있는 경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관의 기본방향 설정
-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 계획 마련

**경관비전의 구체화 및 실천성 있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

- 경관 비전·전략적 방향 제시와 함께 개별 경관계획을 체계화
- 경관계획의 실효성과 실천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경관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분야에서 참여하기 위한 추진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 서천군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경관행정 방향 설정
- 경관행정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경관에 대한 다양한 관련 주체의 공감대 형성 및 경관형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추진방안 마련

## 2.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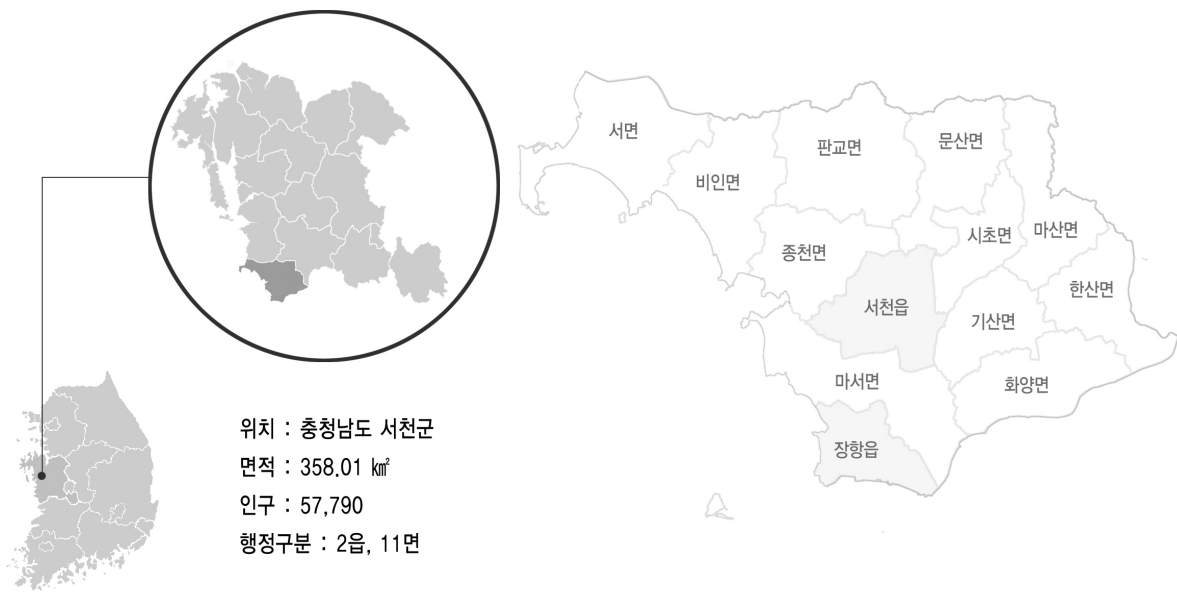
- 기준년도 : 2013년
- 목표년도 : 2025년



### 2) 공간적 범위

- 서천군 행정구역 전체(행정구역 : 2읍 11면)
- 면적 : 358.01km<sup>2</sup>

#### 충청남도 서천군 ( 행정구역 2읍, 11면)





### 3) 내용적 범위

####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 서천군내의 경관자원 · 구조 및 관련계획 조사
- 주민 및 공무원의 경관에 대한 의식조사
- 서천군 경관의 문제점, 개선과제 도출

#### 서천군 경관의 비전 및 방향성 제시

- 서천군 경관의 미래상 및 목표 설정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설정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설정

#### 경관계획의 수립

- 서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거시적 경관계획 수립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다루어져야할 경관계획 수립

#### 경관가이드라인 작성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내용의 실행을 위해 해당 구역별 경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향, 원칙 등을 제시
- 충청남도 경관계획 중 경관부문별 계획 내용과 연계하고, 서천군의 장소성과 경관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 실행계획

- 경관관련 법·제도 정비 및 연계방안 검토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추진방안
- 경관관련 심의 및 자문제도 개선 검토 등 행정 및 운영조직의 정비



### 3. 계획의 성격 및 위상

#### 1) 계획의 성격

##### 자치적 법정계획

- 경관계획은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서천군의 경관관리 이행을 위한 법적 성격을 지니며,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

##### 기본계획 및 지침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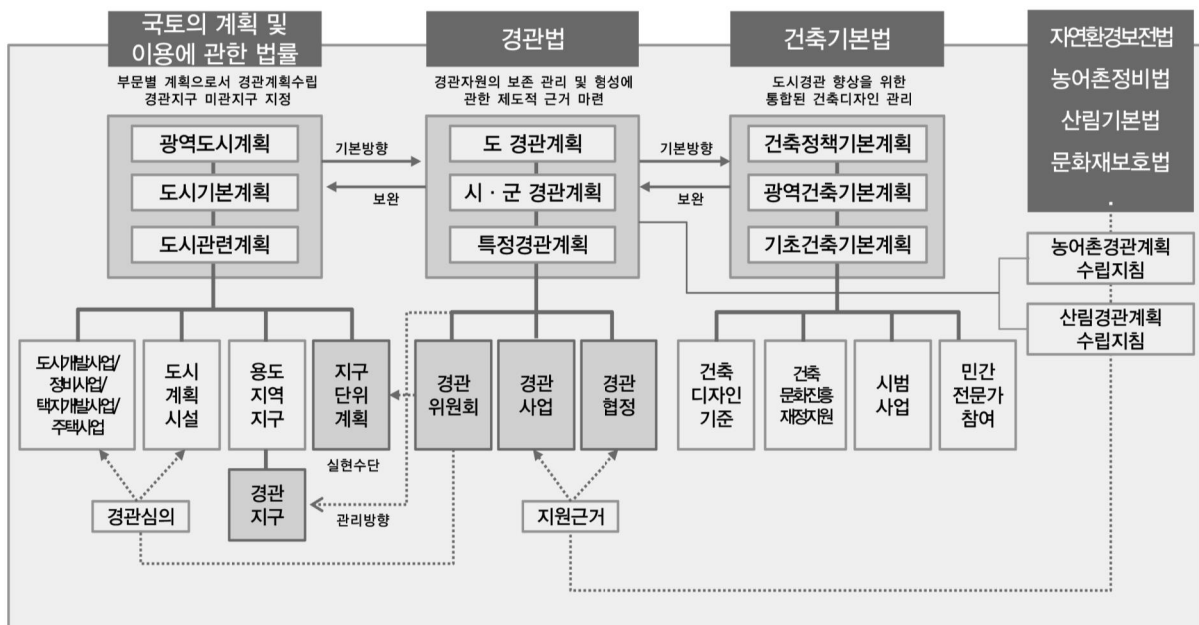
- 서천군의 경관관리 및 경관형성의 공간적 범위, 관리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자 특정지역 개발 시 지침이 되는 계획

##### 구체적 실천계획

- 경관위원회 운영, 경관행정 등의 경관관리 뿐만 아니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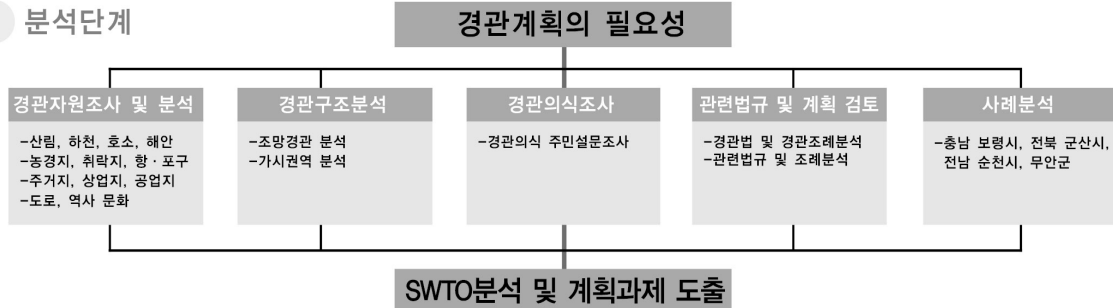
#### 2) 위상

- ‘경관법’에 의거 수립되는 경관계획은 지자체의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경관부문계획의 계획 기초와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경관부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짐
- 도시관리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경관에 관련한 지구지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계획의 실현을 위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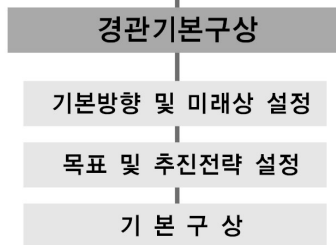


## 4. 계획 수립 방법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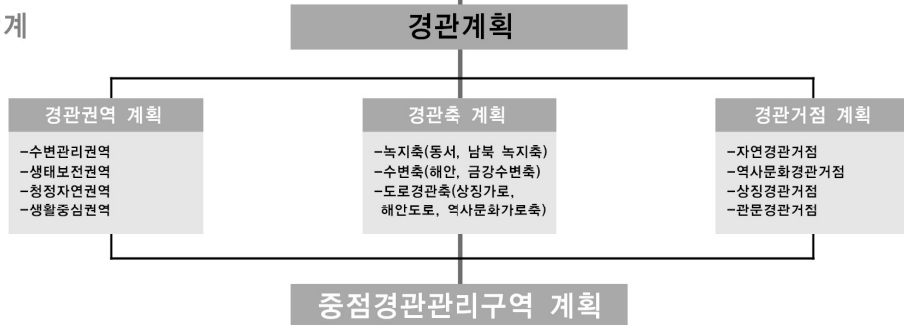
### 1 분석단계



### 2 구상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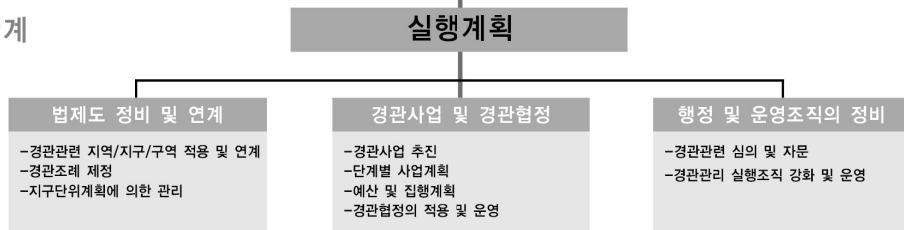
### 3 계획단계



### 4 디자인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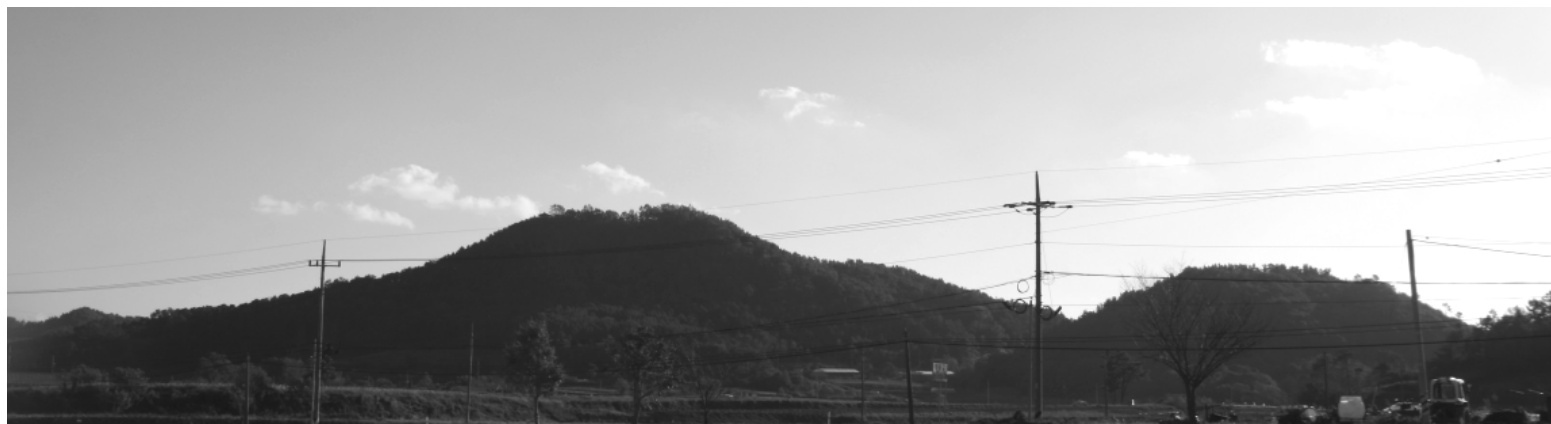
### 5 실행단계





## Ⅱ.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지역현황 | 경관자원조사 | 경관구조 | 경관의식조사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사례 분석 |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1. 지역현황

### 1) 입지 및 역사문화

**입지 : 충남의 서남단에 위치하며, 세종시·금강 등 내륙의 관문 역할 수행**

- 서천군은 충청남도 서남단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부여군과, 북쪽으로는 보령시와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전라북도 군산시와 접하고 있음
- 국토공간상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전라북도과 인접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서해안을 따르는 관문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임
- 전북의 새만금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서해안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천군은 서해와 내륙을 연결하는 금강의 관문이자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행정구역 변천 : 선사시대부터 정착하였으며, 1979년에 2읍 11면의 행정구역이 현재에 이름**

- 서천군은 선사-마한시대에는 비인면, 종천면 등지에 고인돌이 분포해 있어 청동기시대부터 지역주민이 거주한 지역으로, 백제시대에는 1군 2현으로 나뉘어졌고, 백제의 서쪽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백제 멸망 뒤에는 3년간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킨 지역이었음
- 통일신라시대(경덕왕 15년, 756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조선시대 고종32년(1895년)에 홍주부의 관할에 속함
- 서천군, 한산군, 비인현으로 독립되었던 군현이 1895년에 군으로 일원화되었고, 1913년에 서천, 한산, 비인 3군을 통합하여 서천군으로 개칭됨(개야도, 죽도, 십이동파도, 연도를 전북 옥구군에 편입)
- 1938년에는 서남면과 마동면 일부를 폐합하여 마서면과 장항읍으로 승격(1읍 12면)함
- 1973년에는 마서면 남산리를 서천면에, 화양면 구동리를 한산면에, 기산면 이사리와 한산면 송림리를 마산면에, 종천면 흥림리를 판교면에 편입함
- 1979년에는 서천면이 읍으로 승격(2읍 11면)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역사·문화적 특성 : 외부문물 유입의 관문으로서, 문화적 전이지대로서의 특성을 보유함**

- 서천군은 해안에 면한 지역으로 다양한 산성 등 방어 목적의 성곽(한산면 지현리의 건지산성(乾芝山城, 사적 제60호), 서천읍 남산리의 서천남산성(舒川南山城, 충청남도 기념물 제96호), 장항읍 장암리의 서천장암진성(舒川長巖鎭城, 충청남도 기념물 제97호), 비인면의 성북리산성·성내리산성·선도리산성·장포리산성, 종천면의 장구리산성, 판교면의 만덕리산성, 마서면의 한성리산성과, 서천읍 군사리에 서천읍성(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비인면 성내리에 비인읍성(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33호), 한산면 지현리에 한산읍성(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34호), 장항읍 장항리에 서천포진영성(舒川浦鎭營城) 등이 분포함
- 불교 자원으로는 비인면 성북리의 비인오층석탑(보물 제224호), 종천면의 지석리삼층석탑(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31호), 한산면의 지현리삼층석탑(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128호), 문산면의 수암리삼층석탑(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29호) 등이 분포함
- 유교문화재로는 서천읍 군사리에 서천향교대성전(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23호), 한산면 지현리에 한산향교(충청남도 기념물 131호), 한산향교대성전(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24호), 비인면 성내리에 비인향교대성전(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26호), 서천면 군사리에 서천향교(舒川鄕校, 충청남도 기념물 130호), 기산면 영모리에 문헌서원(文獻書院,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25호), 문산면 수암리에 건암서원(建巖書院)이 분포함

## 2) 인구 및 가구 현황

### 인구 및 가구 : 장항읍, 서천읍에 서천군 인구의 47.2%가 집중 분포함

- 2014년 현재, 서천군의 인구는 57,790명, 세대수는 26,686세대, 세대당 인구는 2.17명임
- 읍·면별로는 시가화된 장항읍, 서천읍이 27,448명으로 전체 서천군 인구의 47.5%를 차지하여 인구의 집중도가 큰 편이고, 2개 읍을 제외한 읍·면 중 마서면, 한산면에 집중 분포함

(단위 : km<sup>2</sup>, 명, 세대, 명/km)

| 구분  | 면적     | 인구수    | 세대수    | 성비     | 세대당 인구 | 비고 |
|-----|--------|--------|--------|--------|--------|----|
| 합계  | 358.01 | 57,790 | 26,686 | 96.83  | 2.17   |    |
| 장항읍 | 18.81  | 12,698 | 5,691  | 100.16 | 2.23   |    |
| 서천읍 | 27.75  | 14,750 | 5,980  | 96.27  | 2.47   |    |
| 마서면 | 38.15  | 5,686  | 2,705  | 96.48  | 2.10   |    |
| 화양면 | 31.58  | 2,620  | 1,295  | 90.41  | 2.02   |    |
| 기산면 | 20.98  | 1,920  | 978    | 93.74  | 1.96   |    |
| 한산면 | 25.02  | 2,878  | 1,454  | 91.99  | 1.98   |    |
| 마산면 | 26.36  | 1,564  | 777    | 88.43  | 2.01   |    |
| 시초면 | 18.39  | 1,365  | 718    | 92.52  | 1.90   |    |
| 문산면 | 28.19  | 1,359  | 704    | 96.67  | 1.93   |    |
| 판교면 | 40.03  | 2,351  | 1,210  | 93.34  | 1.94   |    |
| 종천면 | 26.06  | 2,354  | 1,193  | 87.72  | 1.97   |    |
| 비인면 | 31.34  | 3,355  | 1,669  | 96.66  | 2.01   |    |
| 서면  | 25.35  | 4,890  | 2,312  | 109.33 | 2.12   |    |

자료 : 서천군 내부자료, 2014.11

### 인구구조 : 고령화율은 46.5%로 초고령사회이고, 동북부지역의 노령화율은 심각한 수준

- 서천군의 연령별 인구현황은 14세 이하의 유년인구가 약 9.3%,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44.2%,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46.5%로 나타나 초고령사회를 형성
- 부양률은 126.3%, 노령화 지수는 496.9로 노령화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장항읍과 서천읍을 제외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이 매우 뚜렷하며, 동북부지역일수록 더욱 심각함
- 지역내 젊은층의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



(단위 : 명, %)

| 구분  |     | 계      | 1-14세<br>(유년인구) | 15세-64세<br>(생산연령인구) | 65세이상<br>(노년인구) | 부양률   | 노령화지수  |
|-----|-----|--------|-----------------|---------------------|-----------------|-------|--------|
| 서천군 | 인구수 | 57,790 | 5,403           | 25,537              | 26,850          | 126.3 | 496.9  |
|     | 구성비 | 100    | 9.3             | 44.2                | 46.5            |       |        |
| 장항읍 | 인구수 | 12,698 | 1,368           | 6,509               | 4,821           | 95.1  | 352.4  |
|     | 구성비 | 100    | 10.8            | 51.3                | 38.0            |       |        |
| 서천읍 | 인구수 | 14,750 | 2,223           | 7,645               | 4,882           | 92.9  | 219.6  |
|     | 구성비 | 100    | 15.1            | 51.8                | 33.1            |       |        |
| 마서면 | 인구수 | 5,686  | 383             | 2,309               | 2,994           | 146.3 | 781.7  |
|     | 구성비 | 100    | 6.7             | 40.6                | 52.7            |       |        |
| 화양면 | 인구수 | 2,620  | 112             | 863                 | 1,645           | 203.6 | 1468.8 |
|     | 구성비 | 100    | 4.3             | 32.9                | 62.8            |       |        |
| 기산면 | 인구수 | 1,920  | 98              | 669                 | 1,153           | 187.0 | 1176.5 |
|     | 구성비 | 100    | 5.1             | 34.8                | 60.1            |       |        |
| 한산면 | 인구수 | 2,878  | 151             | 1,020               | 1,707           | 182.2 | 1130.5 |
|     | 구성비 | 100    | 5.2             | 35.4                | 59.3            |       |        |
| 마산면 | 인구수 | 1,564  | 100             | 519                 | 945             | 201.3 | 945.0  |
|     | 구성비 | 100    | 6.4             | 33.2                | 60.4            |       |        |
| 시초면 | 인구수 | 1,365  | 66              | 417                 | 882             | 227.3 | 1336.4 |
|     | 구성비 | 100    | 4.8             | 30.5                | 64.6            |       |        |
| 문산면 | 인구수 | 1,359  | 52              | 404                 | 903             | 236.4 | 496.9  |
|     | 구성비 | 100    | 3.8             | 29.7                | 66.4            |       |        |
| 판교면 | 인구수 | 2,351  | 116             | 776                 | 1,459           | 203.0 | 1257.8 |
|     | 구성비 | 100    | 4.9             | 33.0                | 62.1            |       |        |
| 종천면 | 인구수 | 2,354  | 139             | 814                 | 1,401           | 189.2 | 1007.9 |
|     | 구성비 | 100    | 5.9             | 34.6                | 59.5            |       |        |
| 비인면 | 인구수 | 3,355  | 180             | 1,338               | 1,837           | 150.7 | 1020.6 |
|     | 구성비 | 100    | 5.4             | 39.9                | 54.8            |       |        |
| 서면  | 인구수 | 4,890  | 415             | 2,254               | 2,221           | 116.9 | 535.2  |
|     | 구성비 | 100    | 8.5             | 46.1                | 45.4            |       |        |

자료 : 서천군 내부자료, 2014.11

주) 부양률 = (유년인구+노년인구)/경제활동인구×100, 노령화지수 = 65세이상인구/14세이하인구×100

### 인구이동 : 전출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인근 전북으로의 전출인구가 매우 높음

- 2013년 서천군의 인구이동은 전입인구 5,162명, 전출인구 5,420명으로 전출인구가 258명 많으며, 이중 전입인구 60.8%, 전출인구 59.9%가 시·도간이 차지함에 따라 인근 전북으로의 인구 이동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구분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총이동         | 전입    | 6,372 | 6,235 | 6,120 | 5,424 | 5,162 |
|             | 전출    | 6,757 | 6,393 | 6,412 | 5,703 | 5,420 |
|             | 전입-전출 | -385  | -158  | -292  | -279  | -258  |
| 시도내         | 시군내   | 1,978 | 1,785 | 2,120 | 1,719 | 1,549 |
|             | 시군간   | 전입    | 711   | 665   | 566   | 470   |
|             |       | 전출    | 789   | 791   | 611   | 621   |
| 사도간         | 전입    | 3,683 | 3,785 | 3,376 | 3,139 | 3,143 |
|             | 전출    | 3,990 | 3,817 | 3,606 | 3,373 | 3,250 |
|             | 전입-전출 | -307  | -32   | -230  | -234  | -107  |
| 사도간/총이동(전입) |       | 57.8% | 60.7% | 55.2% | 57.9% | 60.8% |
| 사도간/총이동(전출) |       | 59.0% | 59.7% | 56.2% | 59.1% | 59.9% |

자료 : 서천군 통계연보,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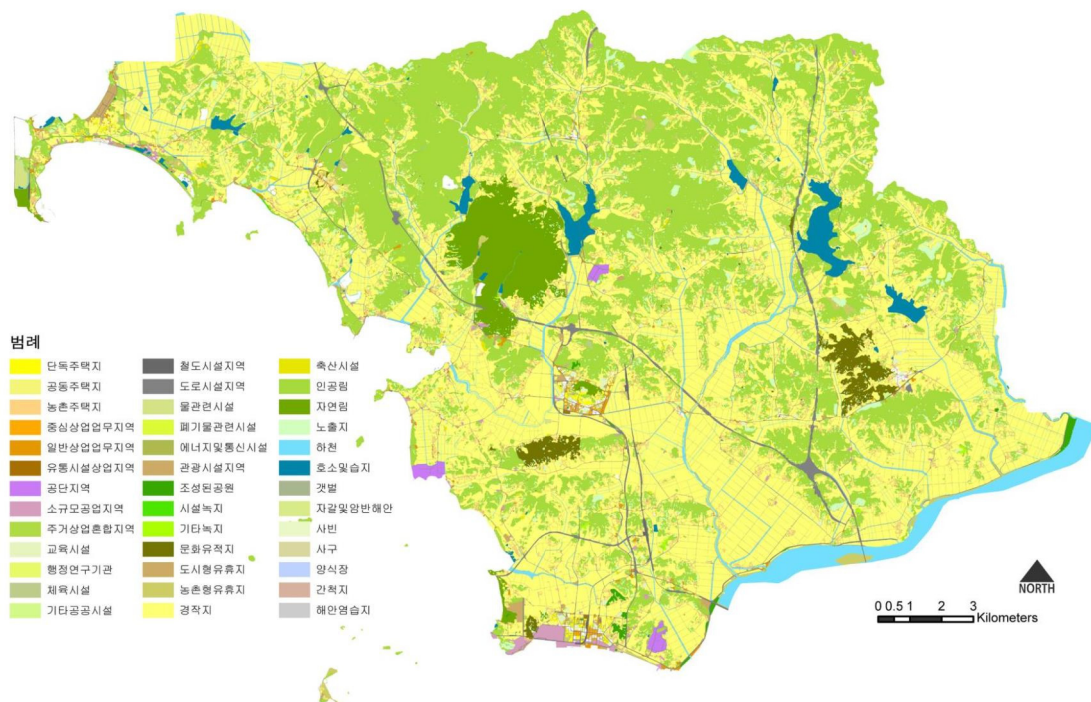
### 3) 토지이용

**지목별 현황 : 전형적인 농촌지역적 토지이용을 보이며, 임야·답·전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대지, 공원, 창고, 도로용지는 증가추세**

- 전체 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48km<sup>2</sup> 41.4%로 가장 높으며, 답이 106km<sup>2</sup> 29.9%로 서천군 북측은 임야지역이 대부분이고, 남측은 농경지가 분포하여 전형적인 농촌지역적 토지이용을 보임
- 최근 2009-2012년의 변화추세를 보면 전 51,949m<sup>2</sup>, 답 855,165m<sup>2</sup>, 임야 677,202m<sup>2</sup>이 감소
- 반면, 대지 323,777m<sup>2</sup>, 공원 146,903m<sup>2</sup>, 도로 21,856m<sup>2</sup>은 증가되어 도시적 토지이용이 늘어나고 있음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비중   | 2009-2012   |
|------|---------------|---------------|---------------|---------------|------|-------------|
| 합계   | 358,014,282.8 | 358,039,507.2 | 358,040,359.2 | 358,137,547.0 | 100  | 123,264.2   |
| 전    | 32,443,591.7  | 32,371,912.0  | 32,390,140.0  | 32,391,643.0  | 9.0  | -51,948.7   |
| 답    | 107,295,808.9 | 107,198,136.7 | 107,104,202.5 | 106,440,644.1 | 29.7 | -855,164.8  |
| 임야   | 148,536,081.2 | 148,358,963.2 | 148,186,001.2 | 147,858,879.2 | 41.3 | -677,202.0  |
| 대지   | 12,584,501.5  | 12,701,084.6  | 12,806,550.6  | 12,908,278.8  | 3.6  | 323,777.3   |
| 도로   | 14,921,502.3  | 14,944,376.8  | 14,943,359.1  | 14,943,359.1  | 4.2  | 21,856.8    |
| 하천   | 11,211,967.3  | 11,211,967.3  | 10,868,614.3  | 10,868,614.3  | 3.0  | -343,353.0  |
| 구거   | 12,599,116.7  | 12,610,838.8  | 12,620,022.0  | 12,620,022.0  | 3.5  | 20,905.3    |
| 공원   | 131,543.6     | 276,923.6     | 278,446.6     | 278,446.6     | 0.1  | 146,903.0   |
| 체육용지 | 12,298        | 12,298.0      | 35,078.0      | 35,078.0      | 0.0  | 22,780.0    |
| 종교용지 | 134,180       | 136,055.0     | 139,453.0     | 139,453.0     | 0.0  | 5,273.0     |
| 기타   | 18,143,691.6  | 18,216,951.2  | 18,668,491.9  | 19,653,128.9  | 5.5  | 1,509,437.3 |

자료 : 서천군 통계연보, 2013





## 2. 경관자원조사

### 1) 산림경관

#### 특성

- 서천군 북쪽 지역은 해발고도 200m이상의 산지가 동서 및 남북방향으로 발달하여 있고, 중앙 및 남쪽지역, 서해와 연하는 지역은 구릉성 평탄지와 간석지로 이루어짐
- 남저북고형의 사면으로 북쪽의 산악지대에서 남하하여 전체적인 산림이 형성되어 있어, 북측은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남측은 구릉지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로 하천이 흐름
- 한산 구릉선은 마산면 노고산-석천산-월성산-봉황산-한산면 용산리에 이르는 남북주향의 능선임(단상천, 나교천의 분수령)
- 화양 구릉선은 문산면 원지산-마산면 삼월리-기린봉-건지산-어성산-관두봉-화양산-화양면 옥포리에 이르는 능선임(단상천, 길산천의 분수령)
- 마서 구릉선은 서천군의 북부 산지와는 단절되어 독립한 ㄱ자형의 구릉선임(옥남천, 판교천, 길산천의 분수령)
- 서천읍 구릉선은 문산면 봉림산-천방산-문수산-회리산-화산-종천면의 장구리에 이름(판교천, 종천천의 분수령)
- 서면 구릉선은 저산성으로 서면반도에 분포하는데 잔구가 많고 능선의 방향도 구분하기 어려움

#### 분석

- 200m 이상의 주산인 장태산(367m), 원진산(271m), 노고산(229m), 월명산(298m), 회리산(329m), 문수산(311m), 봉림산(346m), 천방산(324m)이 서천군의 산림경관의 골격을 이룸
- 시가화된 지역인 서천읍을 중심으로는 서천읍 구릉선에 있는 봉림산-천방산-문수산-회리산이 배후 경관역할을 담당하므로 산지조망 확보를 위한 조망축 설정 및 조망관리 필요
- 장항읍과 서천읍의 중간에 있어서 위요하는 배경역할을 하는 마서 구릉선에 위치한 남산(146m)은 고도가 높지 않으나, 조망지역일대가 농경지 등 해발고도가 50m이내의 지역으로 산지조망 확보가 필요

#### 계획과제

- 양호한 산림경관의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
- 산림의 파편화를 막기 위한 순환 녹지 네트워크 체계의 모색
- 농어촌 마을의 생활방식, 숲의 기능 등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조화로운 경관 보전·관리방안 마련



장항읍의 배후산지 역할을 하는 남산



위요경관을 형성하는 취락지



등산로



취락지와 연결한 구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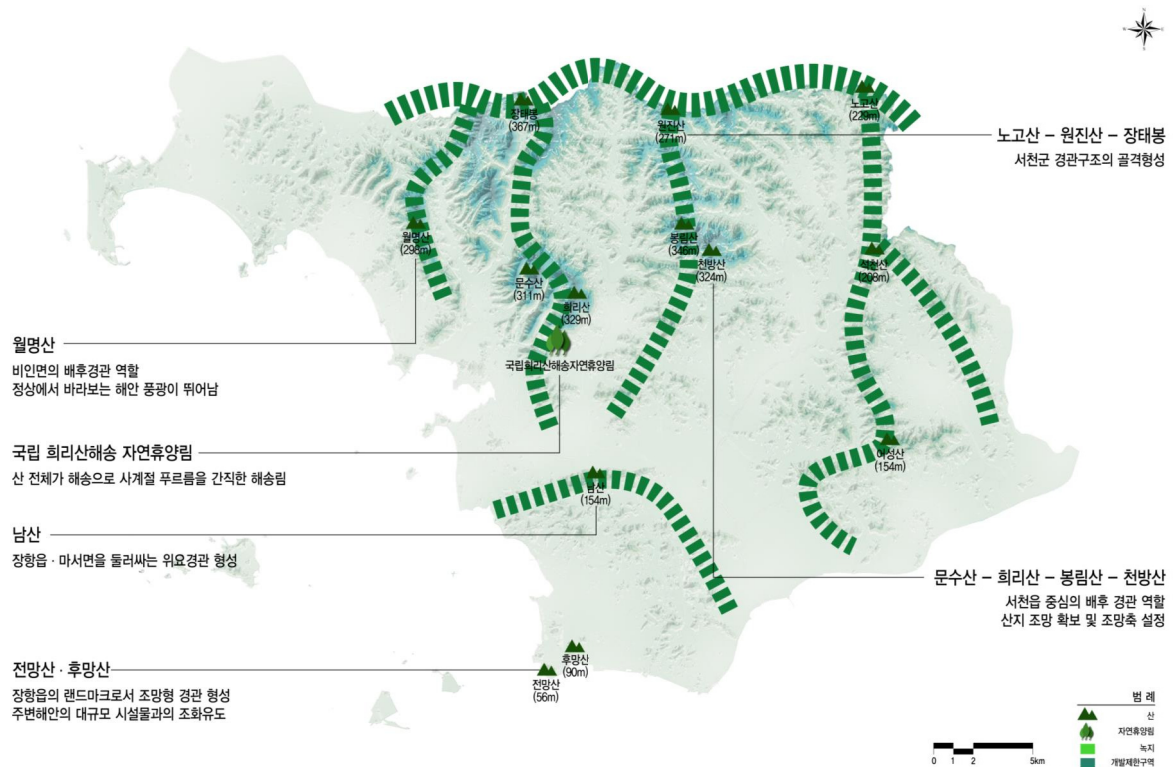
도로와 연결한 산림



월명산에서 바라본 해안경관



희리산에 바라본 파노라믹 경관



## 2) 하천 · 호소 경관

### 특성

- 서천군을 대표하는 하천은 전북과의 경계를 이루는 금강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의 자연환경 우수
- 20개의 지방하천이 구룡성산지에 의해 형성되어 있으며, 그중 길산천은 대표적인 하천으로 개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
- 대부분의 하천은 농촌지역의 자연형 하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을 담당
- 호소는 동부(봉선)저수지, 흥림저수지, 종천저수지, 문산저수지, 축동저수지 등이 있으며, 대부분 농업용 저수지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유



금강



축동저수지



봉선저수지



흥림저수지



종천저수지



문산저수지

### 분석

#### 금강(국가하천)

- 국가하천인 금강은 대표적인 개방형 하천경관으로 자연경관과 관광 · 레저 등의 수변문화공간을 형성
- 금강변에 위치한 건축물의 규모, 외관, 스카이라인, 색채 등의 관리가 필요
- 금강변에는 금강하구둑, 조류생태전시관, 생태공원 등이 인접하여 연계활용성이 높음
- 금강수변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주변 자원과 연계된 루트 개발 필요



조류생태전시관



금강변 주변과 부조화된 건축물 경관



### 취락지 및 농경지 통과하천(기타 하천)

- 음식점, 농경지와 인접한 한적한 농촌경관을 형성
-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자연형 하천 경관을 형성
- 자연형 하천 주변은 하천변에 농경지가 발달하여 개방감 있는 경관을 형성

### 개방형 담수호(부사호)

- 방조제 설치로 인해 형성된 부사호는 넓은 면적의 개방형 경관을 형성
- 부사방조제 제방도로변 녹지대에는 경관을 조망하는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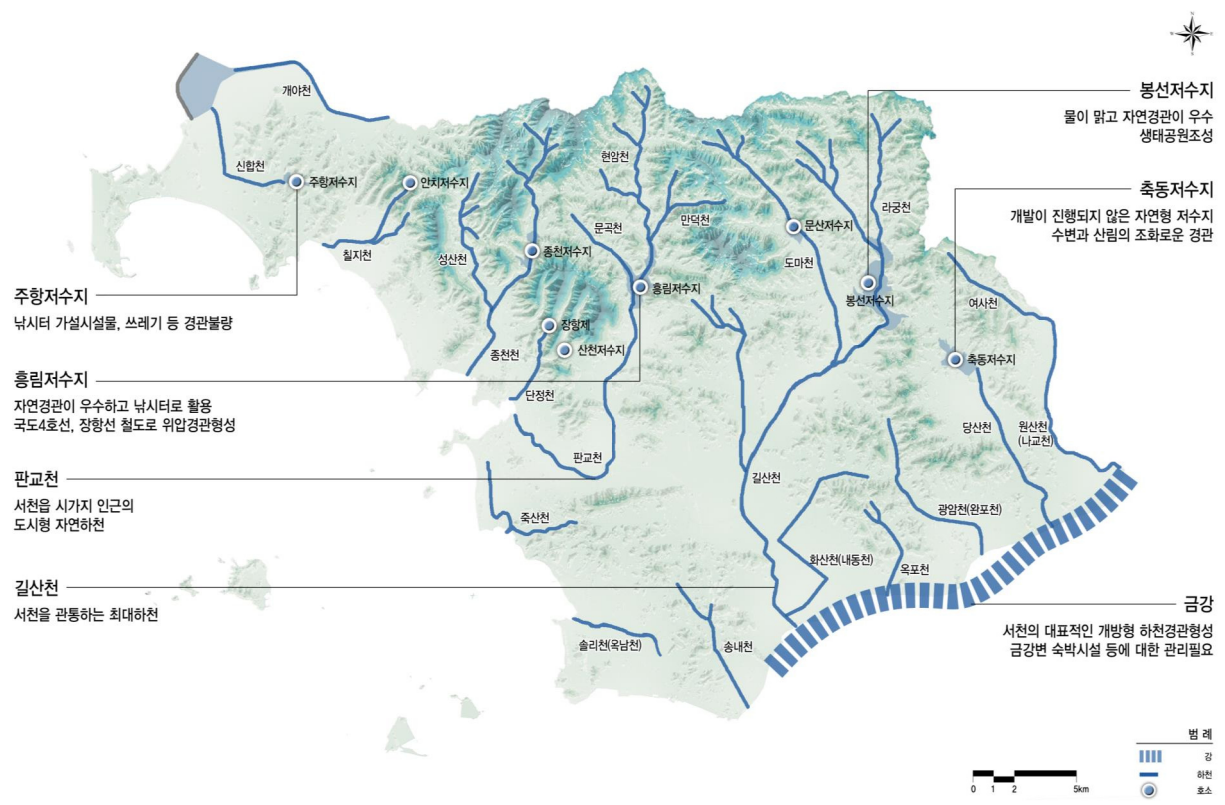
부사호

### 저수지

- 축동저수지는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자연형 저수지로 수변과 산림의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 봉선저수지는 물이 맑고 자연경관이 우수하며,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매력적인 수변경관 형성
- 흥림저수지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도 4호선, 장항선 철로 등에 의해 저수지가 분절되어 있으며 대규모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위압경관을 형성
- 주향저수지는 낚시터 가설시설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수변경관을 저해
- 문산저수지, 안치저수지, 산천저수지 등은 산지에 의한 위요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마을의 농가, 축사 등의 시설물 경관이 저수지와 부조화를 이루며 쓰레기로 인해 일부 불량경관 형성
- 저수지 대부분이 농업용수나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어,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천막, 컨테이너박스, 이동식화장실 등이 입지하거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수변경관을 저해

### 계획과제

- 금강 및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수변으로의 접근성 향성을 위한 방안 마련
- 하천 및 저수지 주변 지역의 인공구조물에 대한 경관 개선 및 관리방안 마련
- 낚시터의 가설 시설물 및 쓰레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





### 3) 해안·도시 경관

#### 특성

- 해안변을 따라 개발이 일정부분 진행된 부사방조제, 춘장대, 흥원항, 비인항 일원은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이 혼합된 지역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
- 마량리 일원은 동백정과 서천화력발전소가 입지하는 곳으로 이동 동선상 서천화력발전소가 이격되어 경관적인 훼손은 경미하나, 향후 국가 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른 서천화력발전소의 변화가 예상됨
- 비인만, 장구만 일원은 천혜의 갯벌 경관을 보유하고 있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 서천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이 서해안을 따라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최근 경관이 우수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펜션, 모텔 등의 숙박업소가 증가하는 추세임. 요양시설 또한 해안과 일정구간 이격되어 증가하는 추세임
- 비인만과 장구만 일원에는 해안도로가(군도 5, 207, 203, 201) 개설되어 해안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일정 구간에서는 가로수(배롱나무, 해송)가 식재되어 있음
- 해안변을 따라 일정구간에 해송이 식재되어 있어서, 방풍림의 역할과 더불어 우수한 해안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경관관리 미흡
- 장구만 일원과 유부도·대죽도·소죽도 일원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란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유부도 일원은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 경로상 경유지로서 국제적인 생태적 관심이 높은 지역임



장항항



흥원항



송석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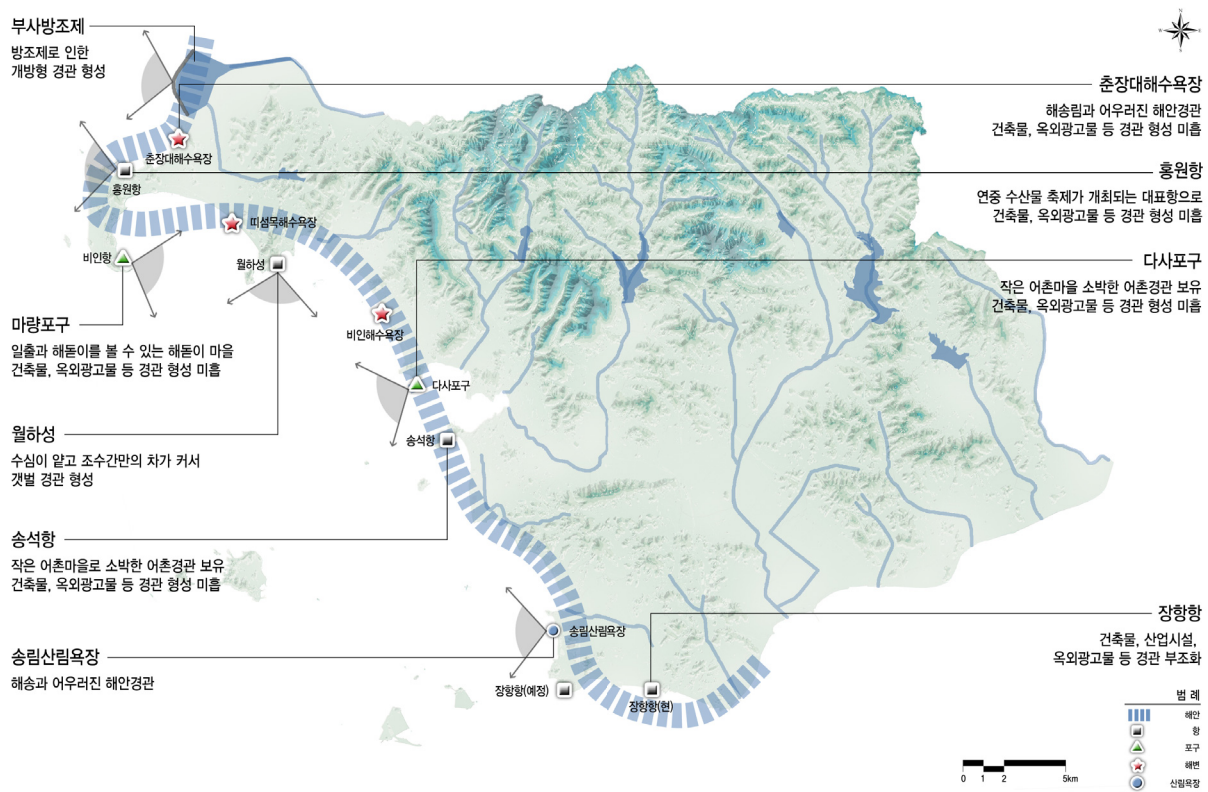
비인항

## 분석

- 부사방조제, 춘장대, 홍원항, 비인항 일원은 시가화가 진행됨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므로, 서천군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경관적 고려가 필요
- 마량리 일원의 서천화력발전소의 증축에 대응한 적극적인 경관관리가 필요
- 비인만, 장구만을 비롯한 우수한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경관요소의 관리가 필요
- 해안변에 입지할 펜션,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의 설정 등 적극적인 해안경관의 보전 및 관리로 서천군 해안경관의 훼손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서해안을 따라 경관루트를 설정하고, 각 구간별 특성에 부합하는 테마를 부여하는 등 경관이미지 연출이 필요
- 유부도를 비롯한 철새도래지는 서식환경의 보존을 고려한 경관 관리방안이 필요

## 계획과제

- 해안가에 입지한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 및 주변과의 조화유도를 위한 경관개선 방안 마련
- 해안가 주변의 숙박건축물의 경우, 이미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의 조화를 유도 방안 제시
- 낙조시간대에 서해안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창출 방안 제시



## 4) 농경지 경관

### 특성

- 농경지는 금강과 서해안에 접한 남측과 서측에 주로 위치하며, 금강과 접하는 지역에는 넓은 곡창지대가 형성
- 대규모의 농경지는 광활한 개방형 농경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평야지대에 간헐적으로 취락이 형성되어있어 전원적인 경관을 형성
- 이러한 대규모의 농경지는 화양면, 한산면, 마서면, 서면 일대에 집중분포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농경지 경관은 지천의 상류에 있는 서천군 북측에 주로 분포
- 자연취락마을을 형성하여 서정적인 취락경관을 형성



길산평야

### 분석

- 농경지 경관은 취락, 농로, 하천, 정자목 등이 대표적인 경관형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곳곳에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이 다수 있어 경관을 저해함
- 농경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형축사, 공장, 가설 시설물 등에 의한 경관 훼손 증가
- 국도변 및 지방도를 따라 위치한 음식점, 상가 등의 무분별한 난립과 불법지붕개조, 축사 등으로 인하여 시각적 혼란을 야기



경관을 훼손하는 축사



개별입지 공장의 경관부조화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

### 계획과제

- 대형 축사, 공장, 가설건축물 등 경관저해 요소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제시
- 국도 및 지방도로 주변과 농경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형성 및 창출방안 마련

## 5) 취락지 경관

### 특성

- 서천군의 취락은 전통적인 배산임수형 지형에 위치하며, 집성촌으로 구성
- 취락지 경관은 다양한 건축양식의 혼재로 인해 통일성이 없고, 다양한 색채의 사용으로 인해 경관상 부조화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회관 등과 같은 농어촌지역에 분포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적벽돌을 주로 사용
- 원경에서는 서천읍과 장항읍을 중심으로 도시생활과 농촌생활이 공존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지의 경우, 나홀로 고층아파트로 인하여 경관부조화가 나타남
- 행복체험마을, 심동마을, 들꽃동산마을, 이색체험마을, 동백꽃정보화마을 등 테마형 체험마을이 있으며 마을의 건축물, 시설물 등의 경관을 정비하고 농경지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농촌경관 형성



배산임수형 취락경관



전통적인 농가주택



다양한 색채의 사용



경관부조화



빈집 등의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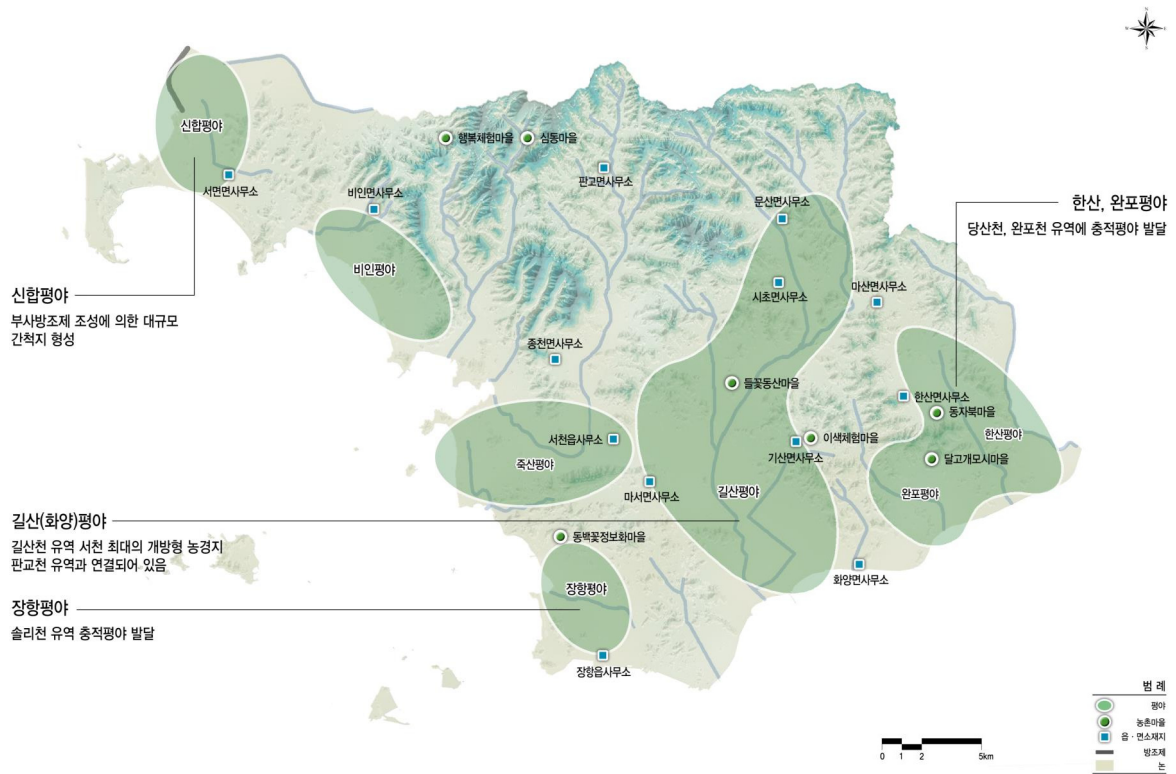
방치된 농기자재

### 분석

- 농가주택의 획일화 및 무질서한 외관, 채도가 높은 색채 사용으로 경관상 부조화
- 버려진 농자재 및 시설물 등 방치되는 농촌쓰레기로 인해 경관 훼손
- 시가지가 주변의 농촌지역으로 주거지가 확산됨에 따라 농촌경관관리가 필요
- 전통적인 농가주택과 신규로 입지하는 서양식 주택으로 인한 경관적인 부조화가 발생
- 방치된 빈집, 창고로 사용하던 건축물 등이 방치되어 농촌경관을 훼손
- 일부 농경지에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이 입지함에 따라 농촌의 서정적 경관이 훼손

### 계획과제

- 전원적인 농촌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경관차폐 등의 경관저감방안 마련
- 농가주택의 획일화 및 무질서한 외관과 색채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 취락지에 위치한 축사, 농기계 창고, 비닐하우스, 빈집 등 경관저해요소에 대한 경관저감방안 제시
- 농어촌 지역에 부조화되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 개선 방안 및 규제방안 검토



## 6) 항·포구 경관

### 특성

- 어촌지역의 경관은 해안선을 따라 가옥이 길게 뻗는 집촌을 이루며 조밀한 밀도로 구성
- 반농·반어촌의 경우 횃집이나 바다낚시, 어촌체험관광마을, 갯벌체험마을 등으로 변화
- 전통적인 어촌경관과 더불어 펜션 등의 관광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함에 따라 경관부조화가 심화
- 항·포구 경관은 다양한 건축양식의 혼재로 인해 통일성이 없으며, 통일성 없는 색채의 사용으로 인해 경관의 부조화가 나타남

### 분석

- 어촌경관의 건축물은 1~2층의 주택, 3~5층의 숙박시설 등 다양한 규모와 높이를 가진 건축물이 혼재하여 주변 자연경관의 스카이라인과 부조화되므로,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 규제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이 요구됨
- 관광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함에 따라 경관적인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어 경관상 관리가 필요
- 노후주택, 음식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다양한 건축물이 혼재하여 경관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어 통일성 있는 경관 형성 및 관리가 필요



홍원항 마을



월하성



다사포구



### 계획과제

- 어촌마을만의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 및 관리하기 위한 경관연출 방향 제시
- 음식점과 모텔 중심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적, 미적 디자인을 고려한 경관개선 방안 마련
- 다양한 건축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및 경관저해요소에 대한 경관저감방안 마련

## 7) 주거지 경관

### 특성

- 서천읍의 고층 아파트 주동은 주변의 중·저층 단독주택과 높이와 규모에 있어 급격한 차이로 위압경관을 형성하며 무질서한 도시 스카이라인이 나타나고 있음
- 단독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지는 개발밀도의 증가로 공공시설 부족, 도로의 주차장화, 녹지율 및 녹지율 저하, 공동공간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읍·면 단위의 단독주택지 내 유일한 공공공간인 도로는 단순 이동과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도로변 주택들의 획일적 외관과 주택 상부에 위치한 옥탑방, 물탱크 등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옥상시설 설치 등으로 무질서한 주거경관을 형성



단독·다세대주택(서천읍)



단독주택(서천읍)



아파트단지(서천읍)



공동주택(장항읍)



주변지역과의 부조화(장항읍)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혼재

### 분석

- 일부 공동주택에 의한 위압적인 스카이라인을 저감할 수 있는 경관관리가 필요
- 아파트 외벽의 과도한 로고 및 문양 사용으로 주변 경관과 이질적인 경관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관 고려가 필요
- 식재공간 부족으로 삭막한 주거경관 형성 및 인공적인 외장재로 경관과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어 경관저감방안 필요
- 폐쇄적 경관 형성 및 근경에서의 경관 위해요소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이 필요

### 계획과제

- 고층 아파트에 의한 주변 산지 경관 차폐를 저감하고, 조화로운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
- 정비되지 않은 단독주택의 낙후된 이미지 회복을 위한 경관적 고려방안 마련
- 주거지의 녹화, 공동공간의 부재, 녹지의 잠식에 대한 경관적 대안 마련



## 8) 상업지 경관

### 특성

- 서천읍 및 장항읍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골목길과 건축물이 분포
- 시가지는 차량 중심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법 주정차 등에 의해 보행 환경은 열악
- 무질서한 건축물 외관, 난립한 옥외광고물, 노점상, 이동식 간판, 분전함 등으로 혼잡한 경관을 연출
- 건축물은 원색 등 주변과 고려하지 않은 색채 및 재료 사용으로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형성
- 서천읍은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서천 봄의 마을 조성으로 건축물 및 보행환경 일부개선 됨
- 장항읍은 무역항의 쇠퇴에 의한 도심 낙후화로 인해 건축물 및 상가 등이 방치되어 경관 훼손이 심화

### 분석

- 상업시설의 획일화로 인해 특색 없는 상업이미지 형성되어 있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경관형성이 필요
- 차량중심 공간구성과 상업시설의 과도한 공간차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보행 공간이 협소하고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어 상업지구내 가로경관 개선이 필요
- 건축물 및 시설물의 노후화로 낙후된 이미지 형성하고 있어 도시 이미지 개선이 필요
- 재래시장 인근은 정비되지 않는 경관 및 차량 등에 의해 낙후된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어 쾌적한 쇼핑공간 공간 형성 및 관리가 필요
- 옥외광고물은 과도한 원색 사용,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색채, 과도한 크기, 실사적용 디자인, 지나치게 밝은 야간조명 설치 등으로 인해 무질서한 상업경관 형성하고 있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경관관리가 필요



서천읍 원경



서천 봄의마을



서천읍 시가지



장항읍 시가지



정비된 간판



장항전통시장

### 계획과제

-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 및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중심상업지역 내 건축물 외관 정비 및 옥외광고물 개선방안
- 상업지 내 노후 되거나 주변과 부조화 되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 개선방안이 마련
- 상업지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경관 형성 및 개발증가에 따른 경관훼손 완화 방안 마련



## 9) 공업지 경관

### 특성

- 공업지는 평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별공업시설은 산지지역에 개별적으로 분포
- 풍농장항공장단지는 장항항과 연접하며, 서천에서 가장 큰 공업지 경관을 형성
  - 풍농장항공장단지는 해안가에 입지하여 해안에서 조망되는 경관이 불량
- 공업지는 접근성이 좋은 지점에 위치하여 접근성 및 인지성이 높으나 경관처리는 미흡한 실정임
- 공업지의 건물은 단순한 외관, 거대한 규모, 단순한 색채로 구성되어 대규모 경관을 형성
- 향후 장항국가산업단지 및 김가공특화단지의 조성에 의해 대규모 경관의 변화가 예상



풍농장항공장단지



장항산업단지(원수농공단지)



종천농공단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예정)



김가공특화단지(예정)



개별 공업시설

### 분석

- 산업단지 내 도로변에 차폐녹지 등으로 공업지의 대규모 위압경관에 대한 저감 방안이 필요
- 공업지 경관은 규모나 높이가 주변건물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높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위압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이 필요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고속도로, 국도변 등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업시설은 차폐식재나 녹지대 조성이 미흡하고 난개발로 인해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고명도의 주조색 사용과 고채도 색채를 넓은 면적에 사용하여 색채경관이 불량
- 보조색은 주로 B,G계열의 중,고채도 사용 일부 YR-R계열 사용
- 지붕색은 B계열의 고채도색과 회색계열을 주요 사용하고 있음



해안에서 조망되는 경관 불량



위압경관 형성



자연경관 훼손

## 계획과제

- 산업단지 주변 도로변에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위압경관 저감방안 마련
- 산업단지 주변 시설물 정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유도
- 난개발로 인한 구릉지 및 산림훼손 등에 대한 자연경관 보전·관리 방안이 마련
-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가이드라인 제시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관리

## 10) 도로 경관

### 특성

- 서해안고속도로와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Y자형으로 서천군을 지나고 있으며, 서천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IC는 춘장대C, 서천C, 동서천C가 있음
- 국도는 국도4호선, 21호선, 77호선 이 서천을 남북으로 지나가며 서천과 보령, 부여를 연결하며, 국도 29호선이 동서방향으로 지나가며 서천과 부여를 연결
- 군산에서 서천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21호선 국도로 금강하구둑을 지나 진입하며, 국도 4호선과 연결되는 장군대교는 현재 건설 중
- 지방도로는 지방도 607호선, 617호선, 611호선, 613호선, 68호선 등이 있음
- 서해안과 접하는 비인, 종천 일대에는 해안도로를 조성하여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도로 개설하였음
- 서천군 지형 특성으로 인해 북쪽은 산악도로 경관이 형성되고, 남쪽과 서쪽은 해안 및 수변도로 경관이, 중앙부는 평지형 도로 경관이 형성되어 있음



서천C



춘장대C



동서천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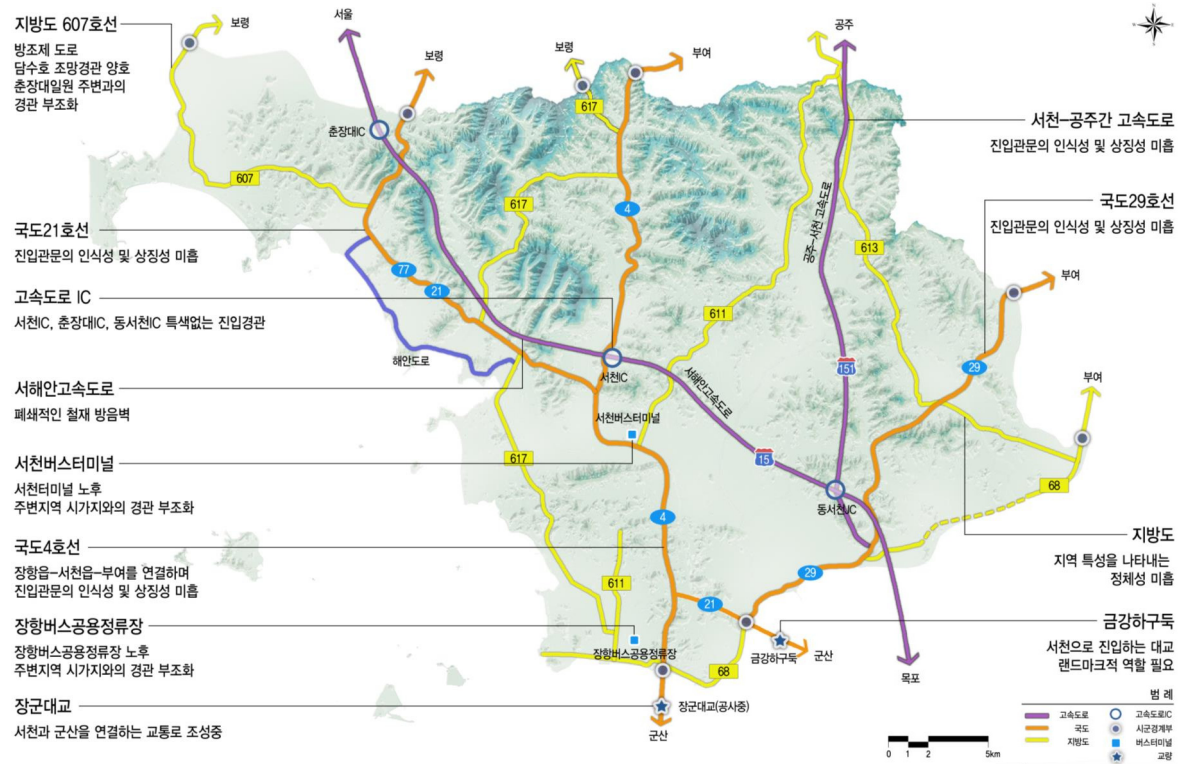
### 분석

- 지방도(농촌도로)주변은 일부 공장, 담장, 옹벽으로 주변과 부조화된 경관 형성
- 획일적이고 차별화되지 못한 진입 관문 경관으로 인식성 및 상징성 미흡
- 진입관문시설인 버스터미널은 옥외광고물 난립,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형성
- 주요 도로변 시설물은 색채, 디자인, 형태 등 주변과 조화롭지 않고 위압경관 형성
- 시가지 도로변에는 옥외광고물, 가로수, 가로시설물, 도로구조물, 전신주, 건축물 등이 무질서하게 분포하여 통일성이 없고 무질서한 경관을 보임
- 시가지내 주요 교차로는 시각적 결절부로서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단조로운 건물형태와 획일적인 외관, 난립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매력적이지 못하고 부조화된 경관을 형성
- 방조제 도로는 방조제 안쪽으로 넓은 호수가 조망되는 직선형 도로로서, 호수변으로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도로변에 조망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콘크리트 제방사면으로 위압감을 형성

- 고속도로는 철재를 사용한 폐쇄적인 형태의 방음벽, 구름지 절개사면, 도로변 옥외광고물 등이 불량경관을 형성함
- 고속도로IC는 서천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나, 톨게이트 디자인은 타 시군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조성되어 특징 없는 경관을 연출
- 도로변에 설치된 경관녹지대, 조형물, 깃발게양대 등으로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IC주변에 건축물, 농경지 등의 경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관을 형성
- 진입관문의 공간 인식 및 상징성이 미흡함. 특히, 바다를 경계로 하는 경우에는 시계공간의 영역 인식이 가능하지만 인접도시와 농촌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계지역의 경우 진입관문공간의 인식 및 장소성이 미흡
- 버스터미널은 시가지내에 위치하는 관문시설로서, 터미널은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시가지 경관의 수준이 낮아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

## 계획과제

- 도로경관은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디자인, 형태 등 도로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서천군만의 특색 있는 진입관문 형성하고 진입관문으로의 상징성 제고 및 조화로운 경관 유도
- 시가지변 도로 정비 및 결절점 경관향상으로 조화로운 도로경관 연출
- 버스터미널 주변은 서천군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므로 옥외광고물 개선 및 시설물 정비 등 경관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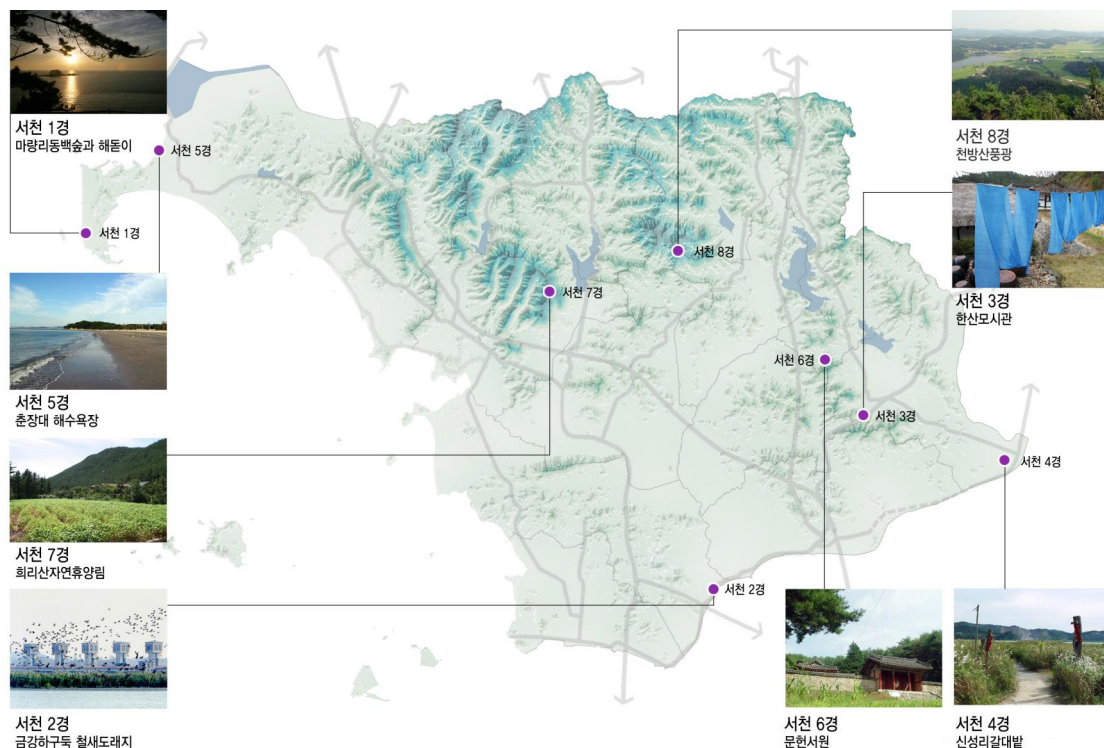
## 11) 역사문화 경관

### 특성

- 서천에는 보물2점, 사적 2곳, 천연기념물 1곳 등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
- 문화재는 서천읍, 한산면, 비인면 일대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한산면 일대는 다양한 역사문화 경관 자원이 분포
- 서천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서천 8경을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한산모시문화제, 동백꽃쭈꾸미축제, 월명산 밭기 축제 등 다양한 역사문화 축제 등이 있음

### 분석

- 한산면 일대는 목은 이색선생 유적, 문헌서원, 건지산성, 한산읍성, 한산향교, 한산소곡주 등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으나 개별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어 각 자원 간 연계성이 없는 실정임
- 모시짜기로 유명한 베짜기 민속놀이를 매개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주변지역 문화재 특성을 강화 필요성이 있음
- 서천 남산성은 남산 정상부에 위치한 첩탐으로 인해 위압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필요
- 서천읍은 서천향교 및 읍성 등 주변지역 문화재 특성 강화가 필요
- 서천 장암진성은 문화재 보존·복원과 더불어 주변지역 경관개선이 필요
- 마량리동백나무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백정에서 바라보는 해안경관이 우수하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문화재 경관향상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필요
- 다양한 문화재 및 역사문화경관자원이 있으나 문화시설에 대한 안내시설이 부족하며, 통일된 안내시설 정비가 필요
- 주요 역사문화자원예대한 접근로 개선이 필요(비포장도로, 도로변 방치된 시설물 등)



## 서천군 문화재 현황

| 구분 | 국가지정 |    |    |           |            |                 | 도지정       |           |     |           |
|----|------|----|----|-----------|------------|-----------------|-----------|-----------|-----|-----------|
|    | 국보   | 보물 | 사적 | 천연<br>기념물 | 중요민속<br>자료 | 중요<br>무형<br>문화재 | 유형<br>문화재 | 무형<br>문화재 | 기념물 | 문화재<br>자료 |
| 계  | —    | 3  | 2  | 1         | 1          | 2               | 1         | 6         | 8   | 15        |

자료 : 문화재청(2013. 현재)

## 서천 8경

| 경  | 이름           | 소개                                   |
|----|--------------|--------------------------------------|
| 1경 | 마량리 동백숲과 해돋이 |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69호)과 동백정, 서해바다의 일몰감상  |
| 2경 |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 겨울철 40여종 50여만 마리 철새들의 장관을 볼 수 있음     |
| 3경 | 한산모시관        | 한산모시가 시작된 건지산 기슭에 자리한 한산모시마을         |
| 4경 | 신성리 갈대밭      | 금강하구에 위치한 23만 제곱미터의 갈대밭              |
| 5경 | 춘장대 해수욕장     | 푸른 해송과 아카시아 숲으로 이루어진 해수욕장            |
| 6경 | 문헌서원         | 목은 이색 선생과 이곡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원       |
| 7경 | 희리산 자연휴양림    | 국내 유일 천연해송림으로 이루어진 자연휴양림             |
| 8경 | 천방산풍광        | 서천지역에서 가장 넓고 큰 산으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뛰어나 |

자료 : 서천군청(2013. 현재)

## 서천의 축제

| 축제             | 소개                                            |
|----------------|-----------------------------------------------|
| 동백꽃주꾸미축제       | 동백꽃이 피는 4월 초 주꾸미와 동백꽃을 주제로 하는 축제              |
| 자연산광어도미축제      | 전어가 잡히는 5월 하순 비인항 일원에서 자연산 광어를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    |
| 한산모시문화제        | 한산면 지방에서 한산모시옷과 모시품을 소재로 개최되는 축제              |
| 홍원항 전어·꽃게축제    | 전어가 잡히는 9월 홍원항 일원에서 전어와 꽃게를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       |
| 서천철새축제         | 철새가 도래하는 11월 금강하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
| 꿀갑축제           | 꿀뚜기와 갑오징어를 주제로 6월에 장항항에서 개최되는 수산물 축제          |
| 마량포 해넘이·해돋이 축제 | 해넘이로 유명한 비인항에서 신년에 개최되는 해넘이·해돋이 축제            |
| 춘장대 여름 문화예술제   | 해수욕이 한 장이 7월말 춘장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문화 예술제           |
| 모래의 날 행사       |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4월 20일 장항송림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모래 축제 |

자료 : 서천군청(2013. 현재)



동백꽃주꾸미축제



자연산광어도미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홍원항 전어·꽃게축제



꿀갑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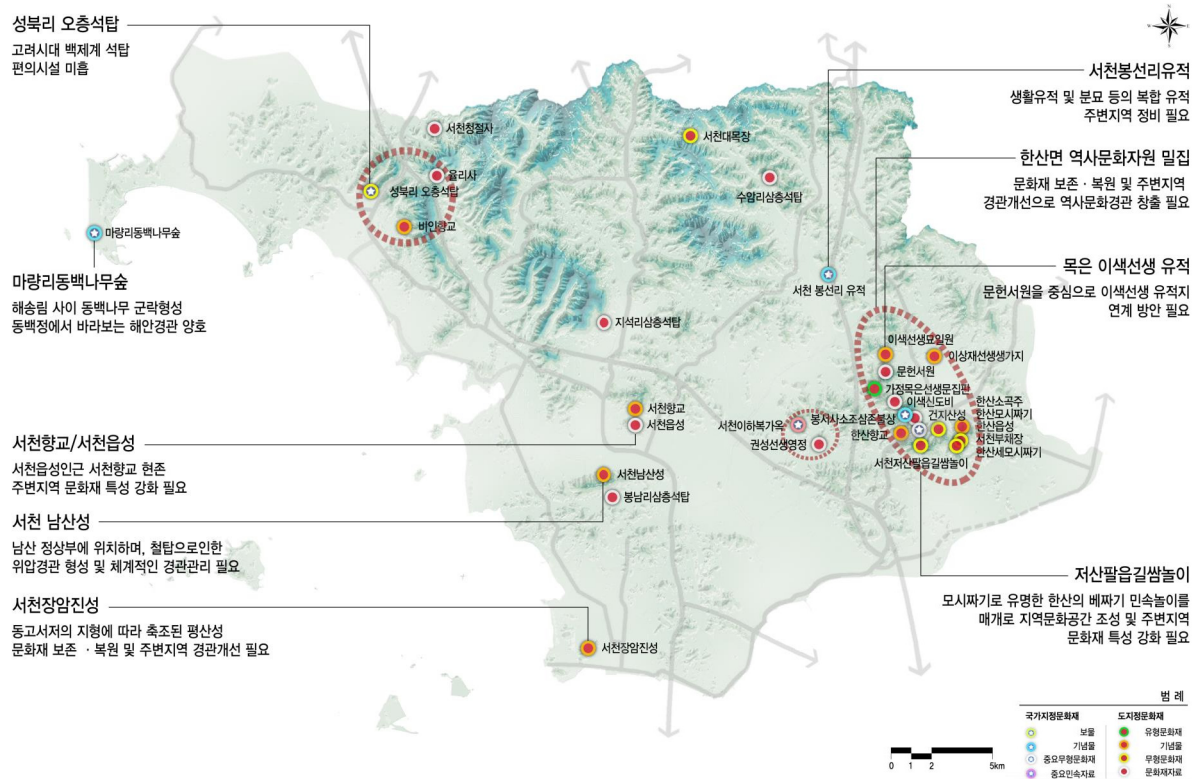


마량포 해넘이·해돋이 축제



## 계획 과제

- 중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정비 방안 및 경관개선을 통한 역사문화경관 창출방안 마련
-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지역과 일체화된 경관관리 및 진입 가로경관향상을 통한 경관 형성방안 제시
- 진입 가로경관 향상 및 진입로 개선을 통한 역사문화재와의 연계 루트 활성화방안 제시
- 중요무형문화재를 테마로 한 역사적 특수성을 도입한 디자인과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경관 형성 및 관리방안 제시





상  
만  
부  
부  
리

동백정이라는 아담한 정자가 있고  
4월은 백꽃 축제 개최

하  
아  
비어

한 잔의 전어·꽃게 추제는 대표항으로

노고산 - 위지산 - 장태봉

[illegible]이름  
성명  
성명

산뜻한 봄날을 맞아 개최되며

무수사 - 혜리사 - 보리사 - 처바사

|    |    |
|----|----|
| 한글 | 한자 |
| 가  | 甲  |
| 나  | 乙  |
| 다  | 丙  |
| 라  | 丁  |
| 마  | 戊  |
| 바  | 己  |
| 사  | 庚  |
| 아  | 辛  |
| 야  | 壬  |
| 을  | 癸  |

# 비밀

**미인기** 미인기대 해돋이 축제  
미인기대 해돋이 축제

이름을

정산에서 바라보는 해안 풍광이 뛰어나  
월명산 뱃길 축제 개최

## 서처음

서천읍 일대 역사문화재 밀집  
중심부 시가지 경관관리 미흡  
서천 문화의 달 행사 개최

## 자하공가생태사어다지

2016년 완공예정

구리·해안물자유통과

전시 및 체험공간 제공  
지인으로 경관형성 필요

## 모래의 날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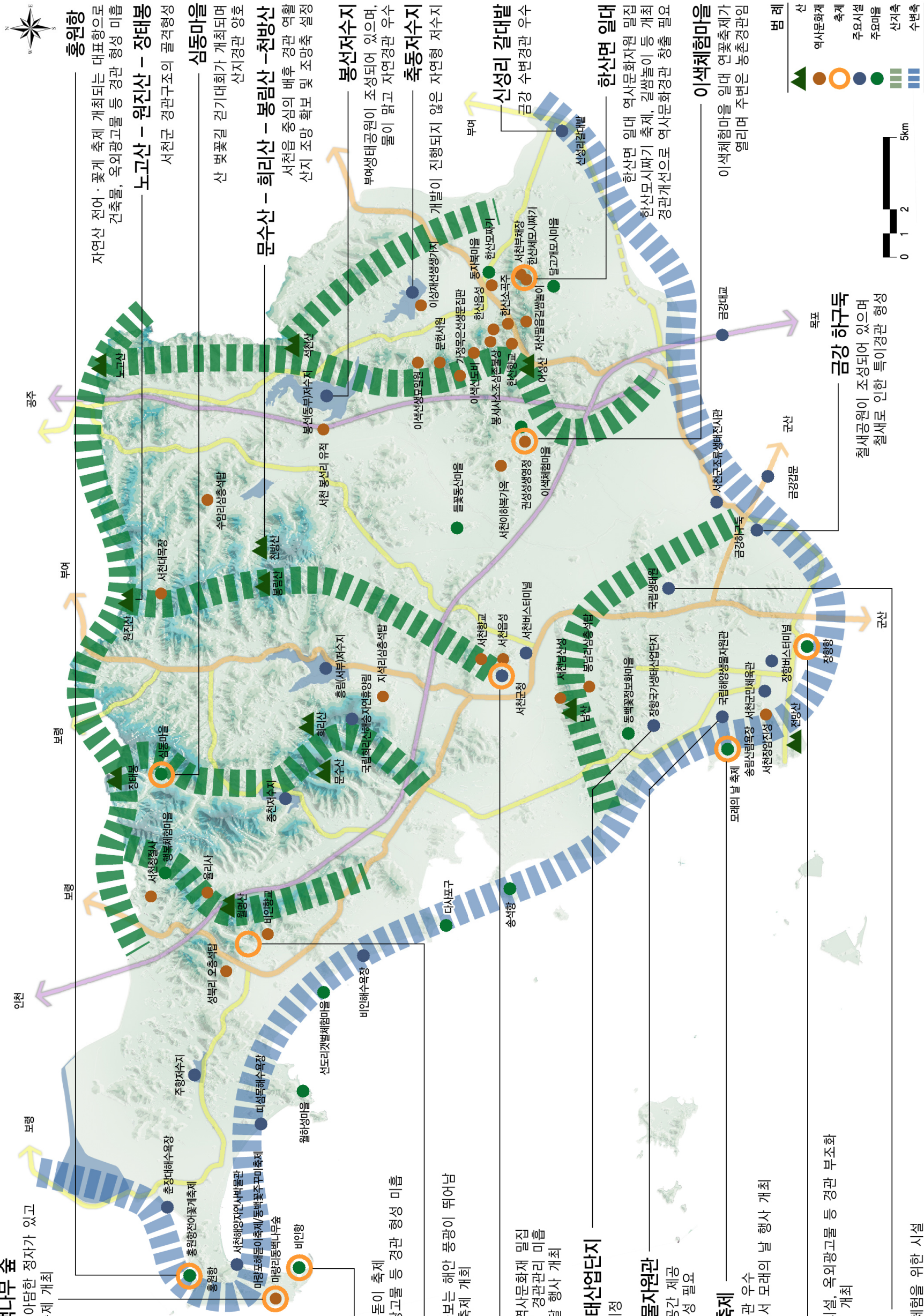
[illegible]

## 자하하

**화학·과학 분야**

한글서체

한글  
한자  
이름  
성명  
나이  
나이  
성명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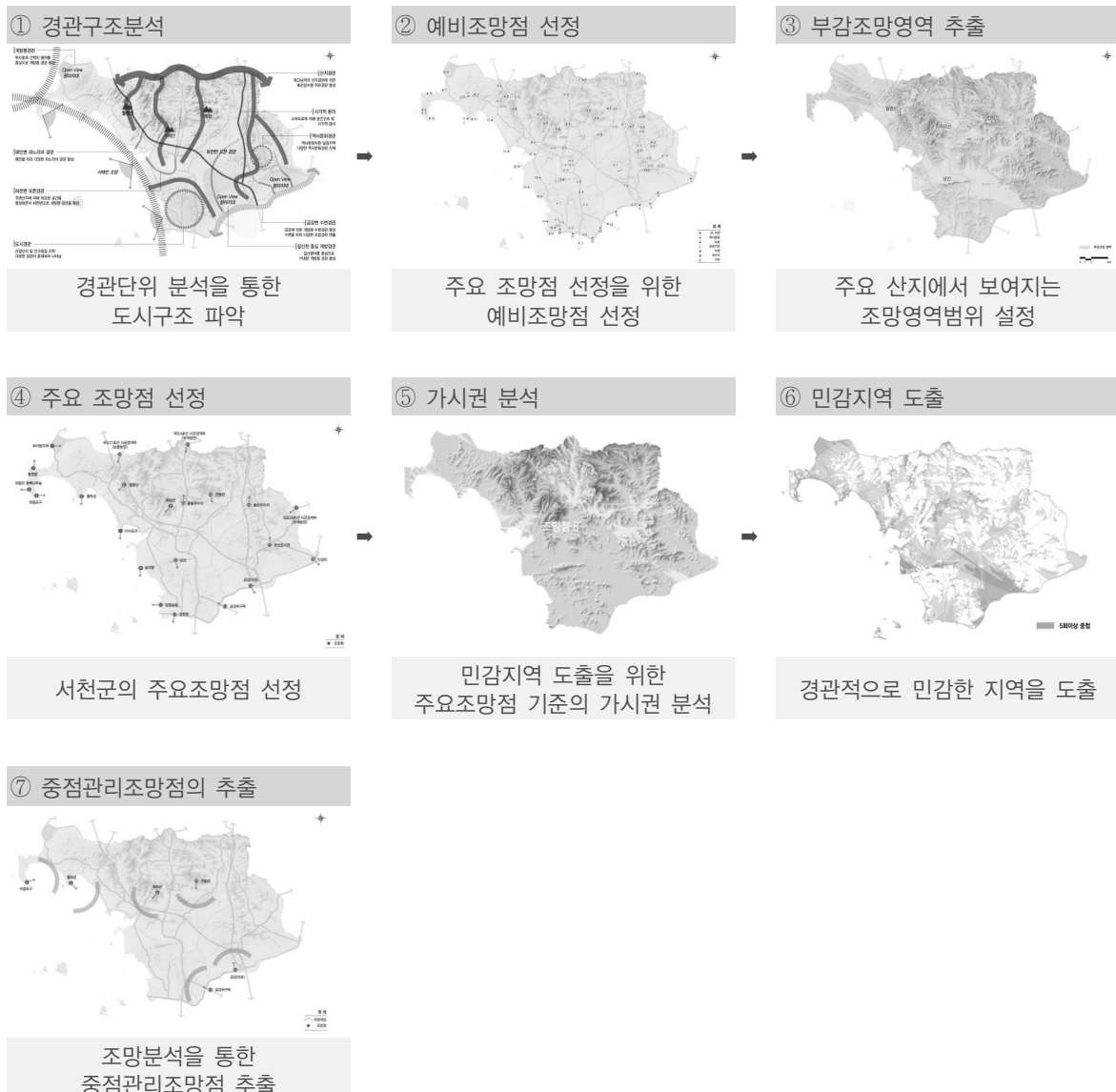
### 3. 경관구조

#### 1) 기본방향

- 서천군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경관구조 분석을 위해 서천군의 조망 분석을 진행함
- 분석기준점을 설정하여 가시되는 지역과 비가시 지역을 구분하고 여러 개의 기준점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한 후 결과를 중첩하여 서천군의 경관구조 특성을 파악하도록 함
- 여러개의 기준점에서 얻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상지내의 경관적 중요성, 경관민감지역 등을 파악함

#### 2) 조망분석의 틀

- 경관구조분석 ➡ 예비조망점 선정 ➡ 부감조망영역 추출 ➡ 주요 조망점 선정 ➡ 가시권분석 ➡ 민감지역 도출 ➡ 중점관리조망점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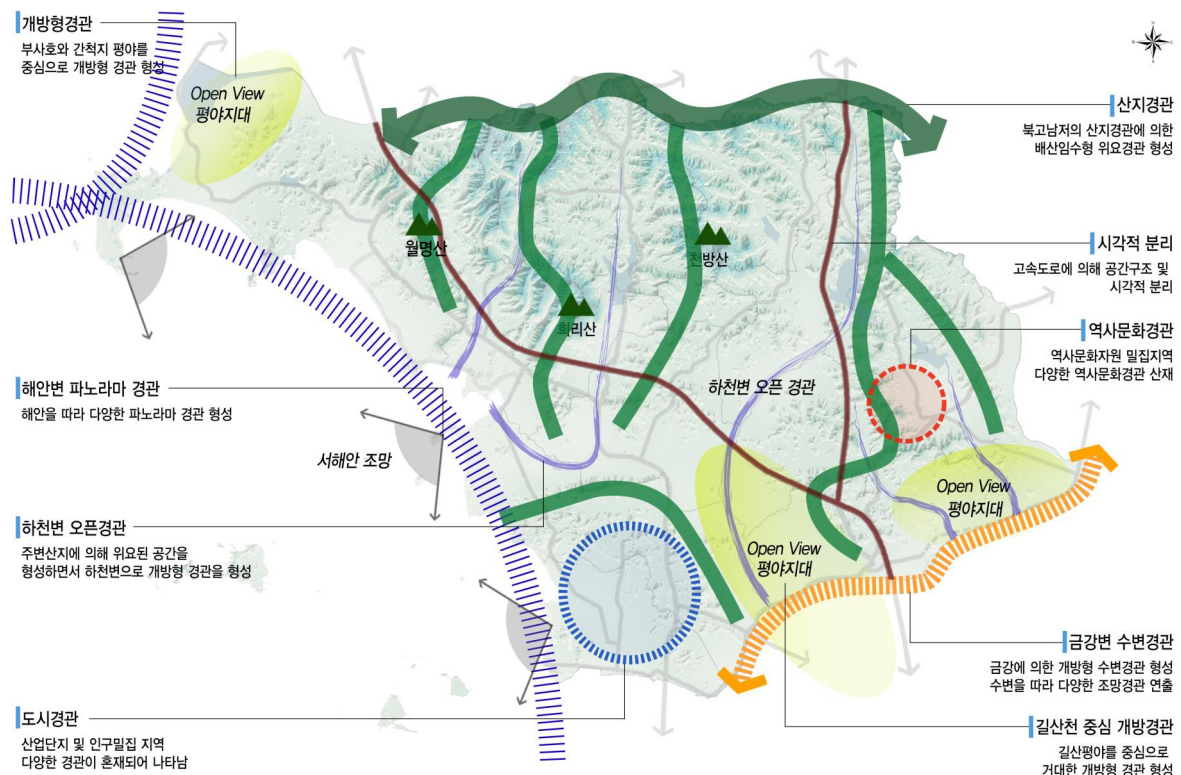


### 3) 거시적 경관구조

- 경관자원의 보존, 활용방안 도출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대상지의 지형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경관구조분석을 진행함
- 이를 통해 위요경관, 개방경관, 차폐경관, 파노라마경관, 양각 및 부각형성에 의한 조망특성 등을 포함한 경관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함

####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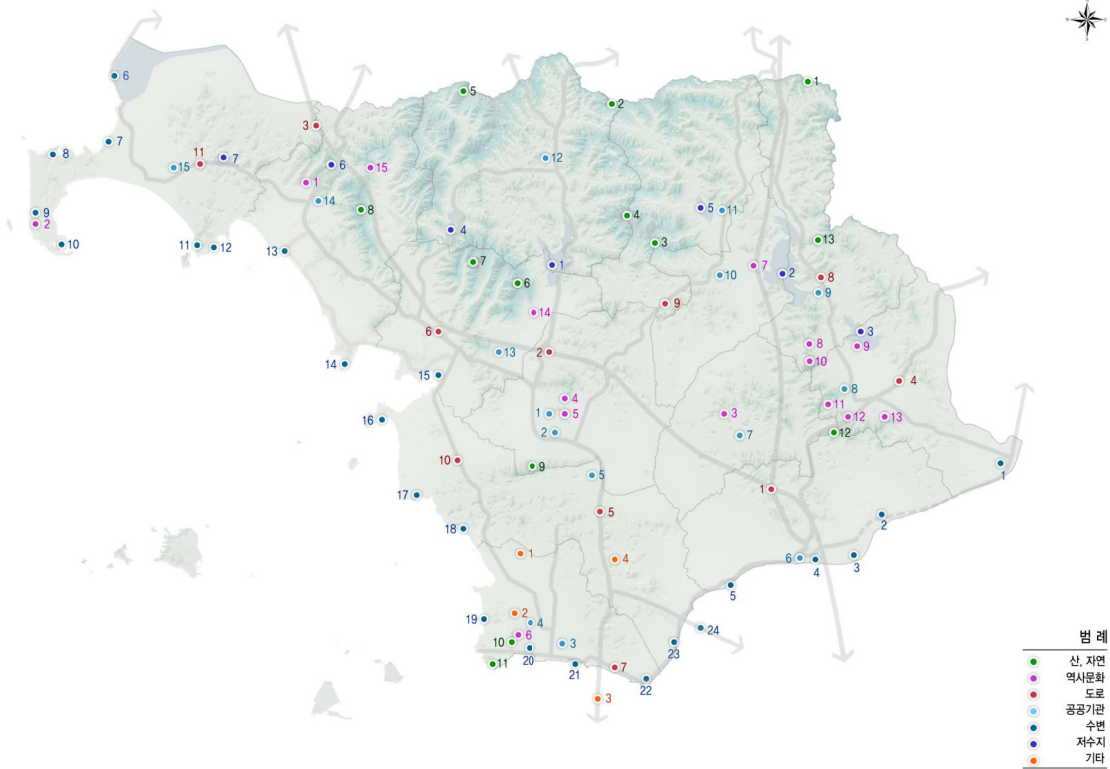
- 가시빈도수가 가장 많은 지점은 회리산, 천방산으로 시야가 열리는 구간에 들어섰을 경우 자주 조망됨
- 금강 및 서해안 주변의 평야지대는 가시권이 확보된 개방형 공간을 이루어 수변·전원경관조망이 가능함
- 내륙지방은 잔구성 산지와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어 중근경의 가시권만 확보됨
- 해안을 따라 파노라마경관이 형성되어있음
- 산지에서 해안 및 금강을 향해 흐르는 하천은 주변의 농경지와 함께 넓은 개방형 공간을 형성함
- 서해안고속도로와 서천-공주고속도로에 의해 공간적·시각적 분리가 이루어짐



## 4) 예비조망점

###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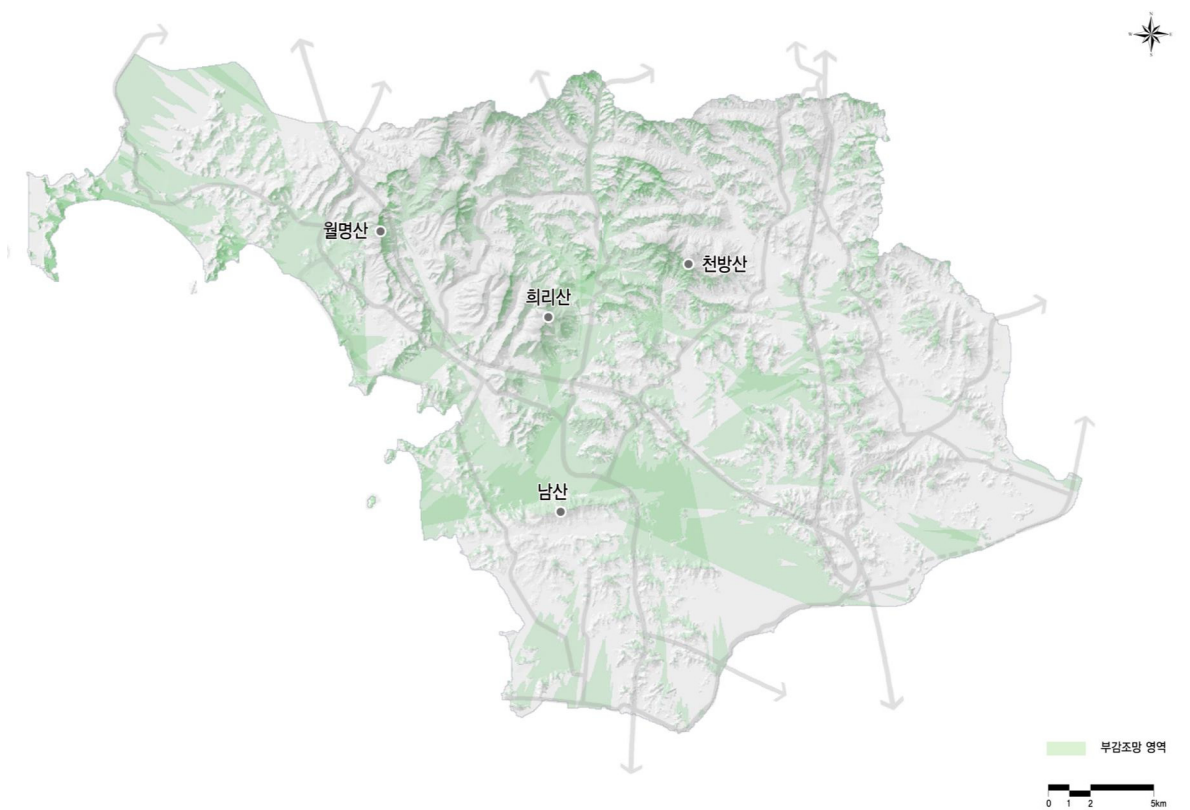
- 주요 도로의 결절점 및 진출입부, 주요 산정상부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관광명소 등의 랜드마크적 장소
-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나 향후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 연번 | 산   | 연번 | 역사문화        | 연번 | 도로      | 연번 | 공공기관    | 연번 | 수변      | 연번 | 수변        |
|----|-----|----|-------------|----|---------|----|---------|----|---------|----|-----------|
| 1  | 노고산 | 1  | 성북리5층석탑     | 1  | 동서천 IC  | 1  | 서천군청    | 1  | 금강(신성)  | 21 | 장항항       |
| 2  | 원진산 | 2  | 마량리 동백나무숲   | 2  | 서천 IC   | 2  | 서천읍     | 2  | 금강(완포)  | 22 | 원수리       |
| 3  | 천방산 | 3  | 이하복가옥       | 3  | 춘장대 IC  | 3  | 장합읍     | 3  | 금강(옥포)  | 23 | 당선리       |
| 4  | 봉림산 | 4  | 서천향교        | 4  | 국도 29호선 | 4  | 서천군민체육관 | 4  | 금강(외초)  | 24 | 금강하구둑     |
| 5  | 장태산 | 5  | 서천읍성        | 5  | 국도 4호선  | 5  | 마서면     | 5  | 조류생태전시관 | 연번 | 저수지       |
| 6  | 희리산 | 6  | 장암진성        | 6  | 국도 21호선 | 6  | 화양면     | 6  | 부사방조제   | 1  | 흥림저수지     |
| 7  | 문수산 | 7  | 봉선리유적       | 7  | 국지도 68  | 7  | 기산면     | 7  | 춘장대     | 2  | 봉선저수지     |
| 8  | 월명산 | 8  | 이색선생묘, 문헌서원 | 8  | 지방도 613 | 8  | 한산면     | 8  | 홍원항     | 3  | 축동저수지     |
| 9  | 남산  | 9  | 이상재선생생가지    | 9  | 지방도 611 | 9  | 마산면     | 9  | 서부발전소   | 4  | 종천저수지     |
| 10 | 후망산 | 10 | 건지산성        | 10 | 지방도 617 | 10 | 시초면     | 10 | 비인항     | 5  | 문산저수지     |
| 11 | 전망산 | 11 | 봉서사         | 11 | 지방도 607 | 11 | 문산면     | 11 | 서울시연수원  | 6  | 안치저수지     |
| 12 | 어성산 | 12 | 한산읍성        |    |         | 12 | 판교면     | 12 | 월하성     | 7  | 주항저수지     |
| 13 | 석천산 | 13 | 한산모시        |    |         | 13 | 중천면     | 13 | 선도리     | 연번 | 기타        |
|    |     | 14 | 지석리3층석탑     |    |         | 14 | 비인면     | 14 | 다사항     | 1  | 장항국가산단    |
|    |     | 15 | 율리사         |    |         | 15 | 서면      | 15 | 장구리     | 2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    |     |    |             |    |         |    |         | 16 | 송석항     | 3  | 장군대교      |
|    |     |    |             |    |         |    |         | 17 | 죽산리     | 4  | 국립생태원     |
|    |     |    |             |    |         |    |         | 18 | 남전리     |    |           |
|    |     |    |             |    |         |    |         | 19 | 장항 송림   |    |           |
|    |     |    |             |    |         |    |         | 20 | 풍농      |    |           |

## 5) 부감 조망영역

- 주요 봉우리인 월명산, 희리산, 천방산, 남산에서 부감 조망영역범위 선정
- 월명산에서는 서해안 일대가 조망됨
- 희리산, 천방산에서는 주로 길산평야, 서천읍일대 등 서천군 전역이 대부분 조망됨
- 남산에서는 길산, 죽산, 장항평야 등 서천군 남쪽지역이 조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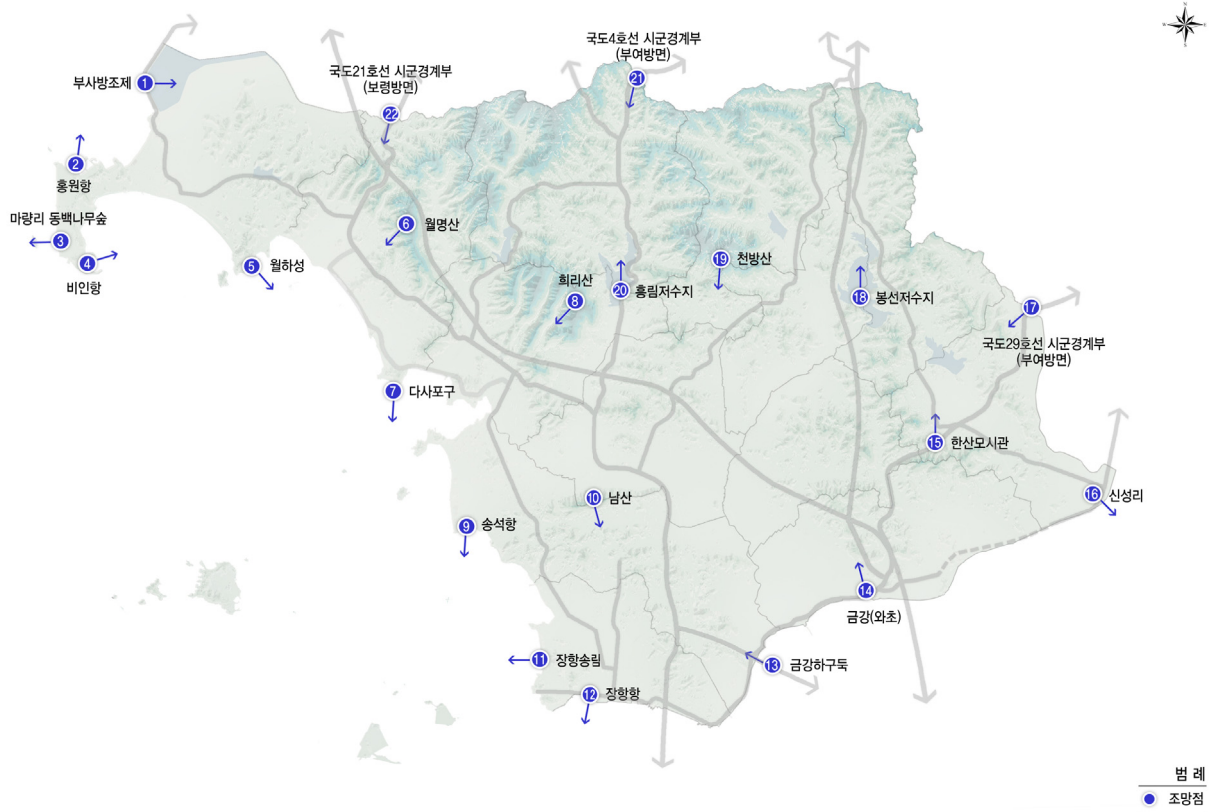


천방산에서 바라본 서천



## 6) 주요 조망점 선정

- 예비조망점 분석과 부감조망영역 분석을 통해 주요 조망점을 선정
- 주요 조망점은 예비조망점 중 부감영역 내 가시비율이 높은 지점들과 해안과 산정상부 조망점을 추출한 것으로 총 22개소를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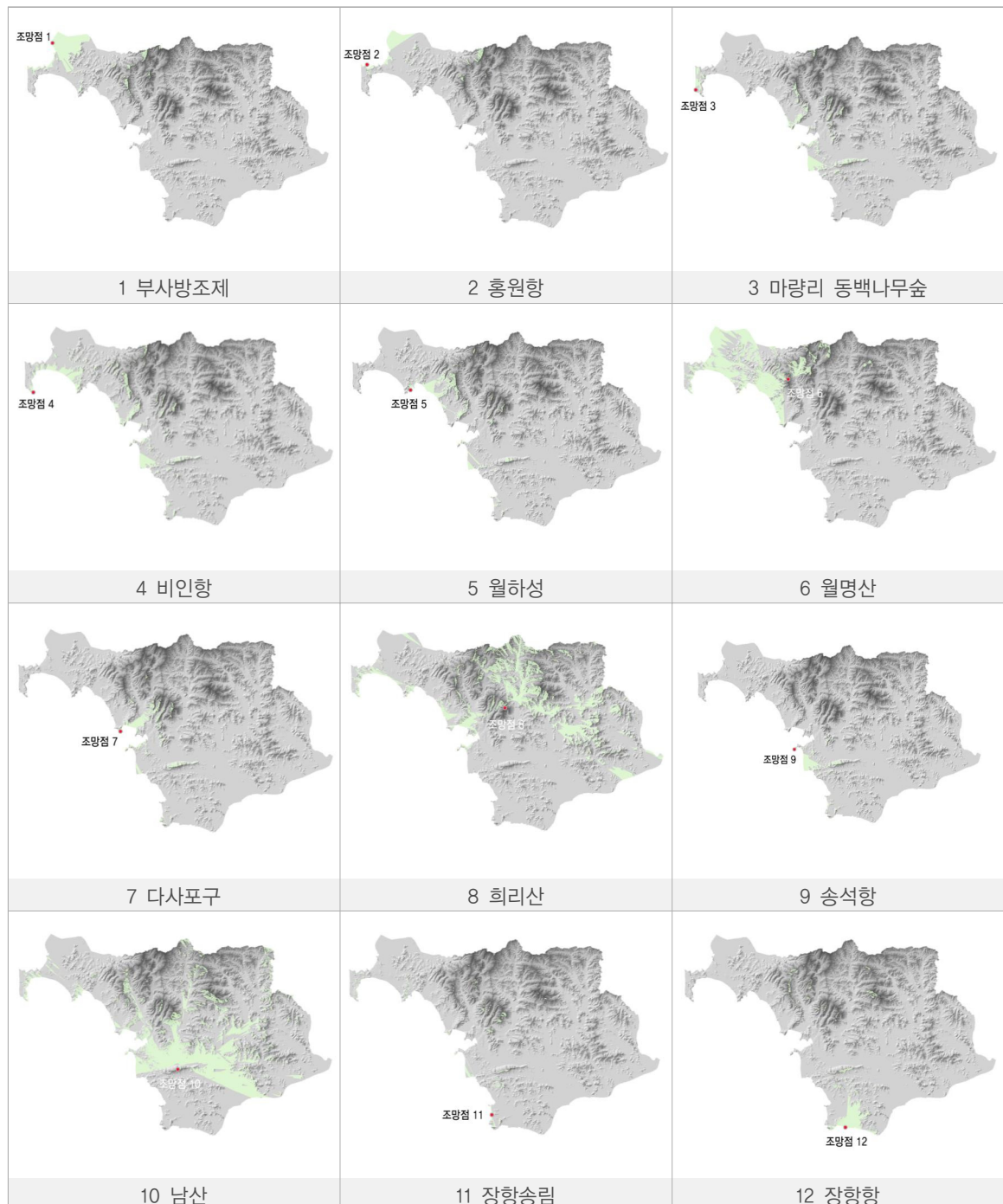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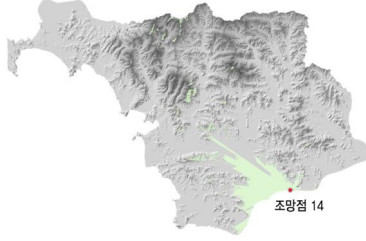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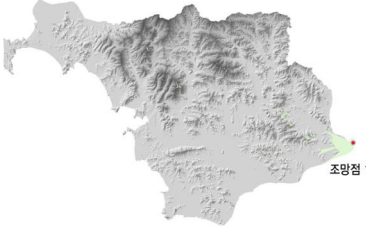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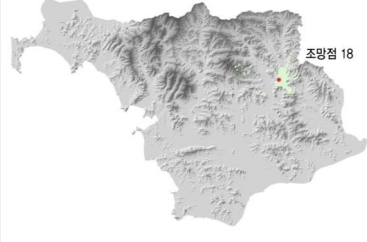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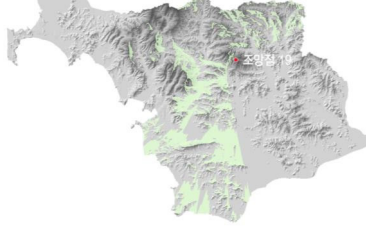
| 연번 | 위치        | 조망대상       | 연번 | 위치               | 조망대상    |
|----|-----------|------------|----|------------------|---------|
| 1  | 부사방조제     | 부사호        | 13 | 금강하구둑            | 금강, 서천군 |
| 2  | 홍원항       | 서해, 도서     | 14 | 금강(와초)           | 금강      |
| 3  | 마량리 동백나무숲 | 서해, 도서     | 15 | 한산모시관            | 한산모시관   |
| 4  | 비인항       | 서해         | 16 | 신성리              | 금강      |
| 5  | 월하성       | 서해         | 17 | 국도29호선 시군경계부(부여) | 서천군     |
| 6  | 월명산       | 서해         | 18 | 봉선저수지            | 봉선저수지   |
| 7  | 다사포구      | 서해         | 19 | 천방산              | 서천군 전역  |
| 8  | 희리산       | 서해, 서천군 전역 | 20 | 흥림저수지            | 흥림저수지   |
| 9  | 송석항       | 서해         | 21 | 국도4호선 시군경계부(부여)  | 서천군     |
| 10 | 남산        | 서해, 서천군    | 22 | 국도21호선 시군경계부(보령) | 서천군     |
| 11 | 장항송림      | 서해         |    |                  |         |
| 12 | 장항항       | 서해         |    |                  |         |



## 7) 가시권 분석

- 주요 조망점 22개에 대한 가시권 분석을 통해 민감지역 추출
- 분석결과 월명산, 희리산, 천방산, 남산 등 주요 산지의 가시빈도가 가장 높음
- 금강유역(금강하구둑, 와초, 신성리)에서 주변 평야지대에 대한 가시율이 높음
- 해안의 조망점은 중근경의 해안지역이 가시됨
- 국도 진입부에서는 진입도로변의 농경지와 주변 농촌지역이 가시됨



|                                                                                     |                                                                                      |                                                                                       |
|-------------------------------------------------------------------------------------|--------------------------------------------------------------------------------------|---------------------------------------------------------------------------------------|
|    |    |    |
| 13 금강하구둑                                                                            | 14 금강(와초)                                                                            | 15 한산모시관                                                                              |
|    |    |    |
| 16 신성리                                                                              | 17 국도29호선 시군경계부(부여)                                                                  | 18 봉선저수지                                                                              |
|  |  |  |
| 19 천방산                                                                              | 20 흥림저수지                                                                             | 21 국도4호선 시군경계부(부여)                                                                    |
|  |                                                                                      |                                                                                       |
| 22 국도4호선 시군경계부(보령)                                                                  |                                                                                      |                                                                                       |

## 8) 민감지역 분석

- 민감지역의 중첩을 통해 서천군 내의 경관적 중요성 및 경관민감지역 등을 파악함
- 희리산, 남산, 월명산, 천방산의 민감도가 가장 높음
- 서해안 일대와 길산평야 주변의 민감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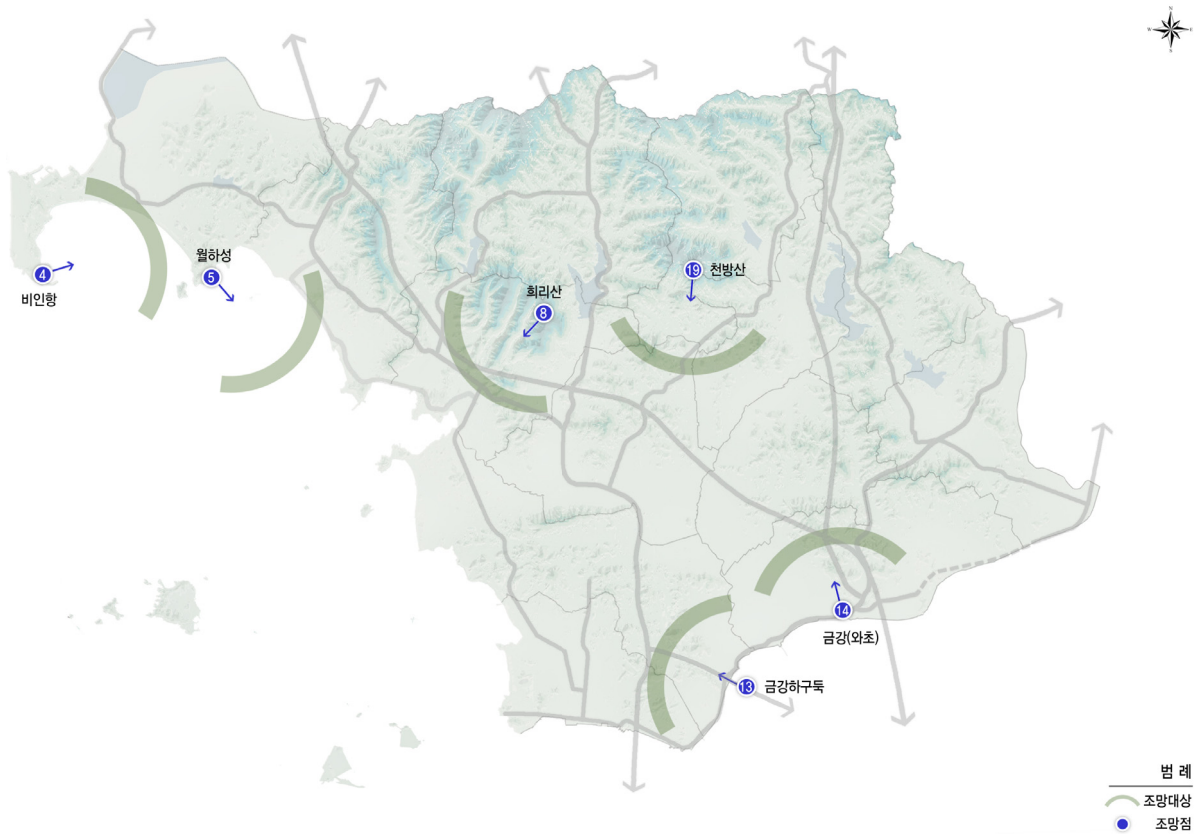




## 9) 중점관리조망점

- 중점관리조망점은 주요 조망점 중에서 민감도가 높은 지점들을 추출한 것으로 경관상 관리되어야 할 주요 지점들임

| 조망점 | 구 분    | 조망대상     | 중점관리조망점 활용방안                                                                            |
|-----|--------|----------|-----------------------------------------------------------------------------------------|
| 4   | 비인항    | 서해안 일대   | 비인항에서 서해를 조망하는 개방형<br>서해안 주변 건축물은 해안과 조화되도록 높이 및 형태, 배치, 재질, 색채 등 관리                    |
| 5   | 월하성    | 서해안 일대   | 월하성에서 서해를 조망하는 개방형<br>서해안 주변 건축물은 해안과 조화되도록 높이 및 형태, 배치, 재질, 색채 등 관리                    |
| 8   | 희리산    | 희리산, 천방산 | 희리산에서 서해, 천방산을 조망하는 개방형 통경구간 설정<br>통경구간 내 건축물은 희리산, 천방산과 조화롭도록 높이 및 형태, 배치, 재질, 색채 등 관리 |
| 13  | 금강하구둑  | 희리산, 천방산 | 금강하구에서 길산평야를 조망하는 개방형 통경구간 설정<br>금강하구 주변의 건축물은 금강과 조화되도록 높이 및 형태, 배치, 재질, 색채 등 관리       |
| 14  | 금강(와초) | 길산평야     | 금강(와초)에서 길산평야를 조망하는 개방형 통경구간 설정<br>금강유역 주변의 건축물은 금강과 조화되도록 높이 및 형태, 배치, 재질, 색채 등 관리     |
| 19  | 천방산    | 길산평야     | 천방산에서 서천읍일대를 조망하는 개방형 통경구간 설정<br>통경구간 내 건축물은 천방산과 조화롭도록 높이 및 형태, 배치, 재질, 색채 등 관리        |



## 4. 경관의식조사

###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서천군의 개성적인 경관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관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 및 주민의식을 파악하여 경관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기간

- 주민 설문조사 : 2013년 4월15일~5월5일(20일간)
- 방문객 설문조사 : 2013년 5월1일~5월10일(10일간)

#### 조사대상 및 신뢰구간

- 서천군 인구기준 유효부수(2%)산정 : 1,174부
- 배부계획 : 유효부수(2%) + (유효부수 × 10%) : 1,291부
- 서천군 주민대상 1300부(학령기, 공무원, 민원인)배포, 방문객 대상 490부 배포
- 주민대상 1,300부를 배포하여 976부를 회수(75.1%)
- 방문객 대상 490부를 배포하여 403부를 회수(82.2%)
- 신뢰구간 : 95%±5

#### 조사방법

- 직접배포 및 회수(면접조사 및 배포후 회수 병행)
- 일반주민 : 인구구조와 지역별 형평성 고려, 읍·면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설문 실시
- 방문객 : 각종 축제, 주요 관광지를 고려하여 실시
- 공무원 : 경관관련 부서 공무원 협조

#### 분석방법

- 엑셀 및 SPSS 통계처리 프로그램 이용

#### 조사내용

- 설문조사서는 주민 의식조사용과 방문객 의식조사용으로 나누어서 설문진행
- 방문객 설문조사지는 방문객 특성별 경관의식 분석을 위한 응답자 일반사항(5), 경관의 미래상 및 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대표경관 및 이미지(4), 경관의 문제점 및 만족, 중요도 중심으로 경관유형별 현황(6) 부문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됨
- 주민 설문조사지는 주민 특성별 경관의식 분석을 위한 응답자 일반사항(5), 경관의 미래상 및 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대표경관 및 이미지(5), 경관의 문제점 및 만족, 중요도 중심으로 경관유형별 현황(13), 개선과제 및 추진주체 등을 위한 경관관리(3), 경관사업 및 협정을 위한 주민의지 파악을 위한 주민참여(3) 부문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됨

**주민 설문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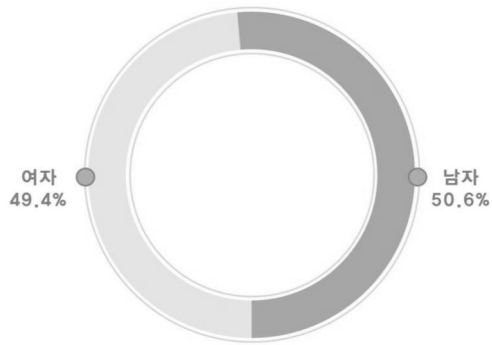
| 구분         | 설문목적                                                                                                           | 설문내용                                                                                                                      | 문항수  |
|------------|----------------------------------------------------------------------------------------------------------------|---------------------------------------------------------------------------------------------------------------------------|------|
| 일반사항       | • 응답자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연령</li> <li>• 직업</li> <li>• 거주지</li> <li>• 거주기간</li> </ul>         | 5문항  |
| 대표경관 및 이미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미래상 설정</li> <li>• 계획방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천군 대표경관</li> <li>• 서천군 경관이미지</li> <li>• 현재 및 미래 이미지</li> <li>• 색채이미지</li> </ul> | 5문항  |
| 경관유형별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및 우선순위 도출</li> <li>• 경관골격, 경관단위 설정</li> <li>• 중점관리대상 도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 만족도</li> <li>• 유형별 중요도 및 우선</li> <li>• 유형별 문제점</li> </ul>                    | 13문항 |
| 경관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관리 추진주체</li> <li>• 경관관리 위한 과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관리 필요성</li> <li>• 경관관리 위한 개선과제</li> <li>• 경관사업 추진방식</li> <li>• 공공규제</li> </ul> | 3문항  |
| 주민참여       |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주민의 참여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의사</li> <li>• 내용별 참여정도</li> <li>• 기타의견</li> </ul>                            | 3문항  |

**방문객 설문조사 내용**

| 구분         | 설문목적                                                                                                           | 설문내용                                                                                                                        | 문항수 |
|------------|----------------------------------------------------------------------------------------------------------------|-----------------------------------------------------------------------------------------------------------------------------|-----|
| 일반사항       | • 응답자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연령</li> <li>• 직업</li> <li>• 거주지</li> <li>• 방문목적</li> </ul>           | 5문항 |
| 대표경관 및 이미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미래상 설정</li> <li>• 계획방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천군 대표경관</li> <li>• 서천군 경관이미지</li> <li>• 서천군의 미래 도시이미지</li> <li>• 색채이미지</li> </ul> | 4문항 |
| 경관유형별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및 우선순위 도출</li> <li>• 경관골격, 경관단위 설정</li> <li>• 중점관리대상 도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 만족도</li> <li>• 유형별 중요도 및 우선</li> <li>• 유형별 문제점</li> <li>• 기타의견</li> </ul>      | 6문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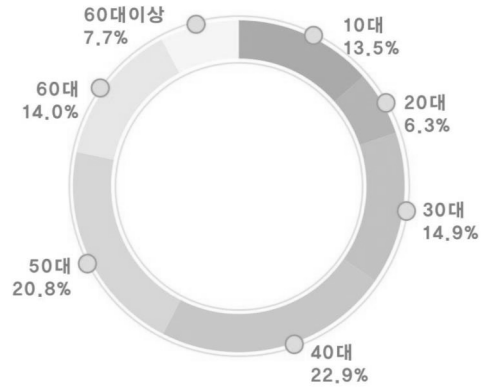
## 2) 주민 설문조사 일반사항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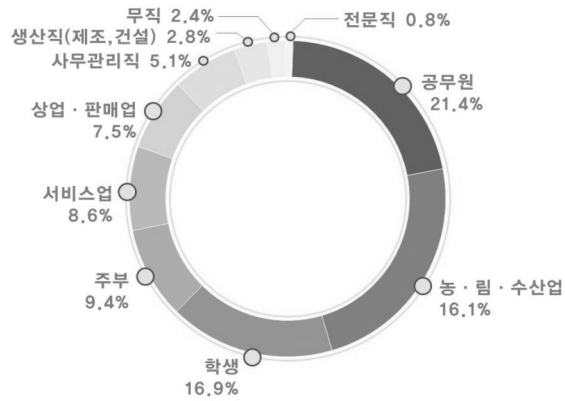
- 남자 50.6%로, 여자 49.4% 보다 약간 높은 비율 차지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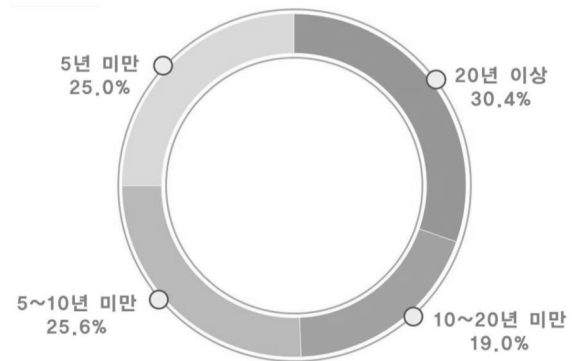
- 30대 14.9%, 40대 22.9%, 50대 20.8% 등 고르게 분포

###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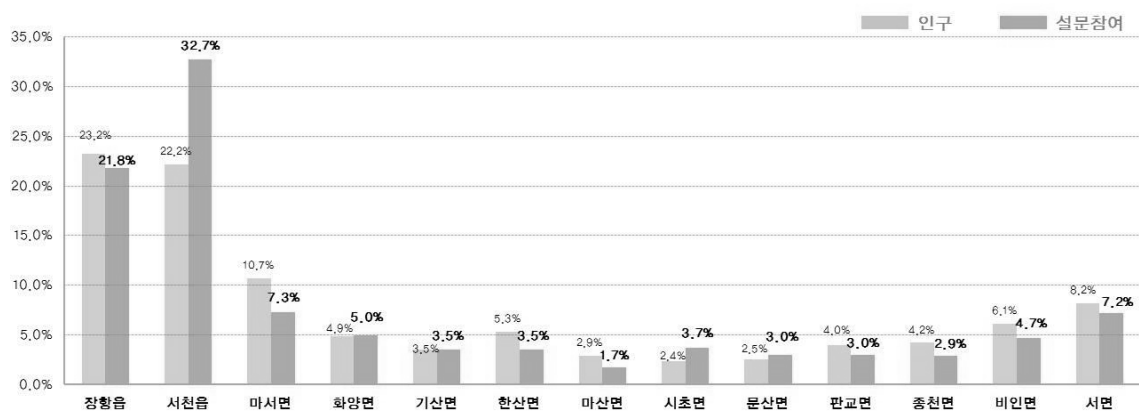
- 공무원 21.4%, 농림수산업 16.1%, 학생 16.9% 등

### 거주기간



- 10년 이상 49.4%로 높은 비율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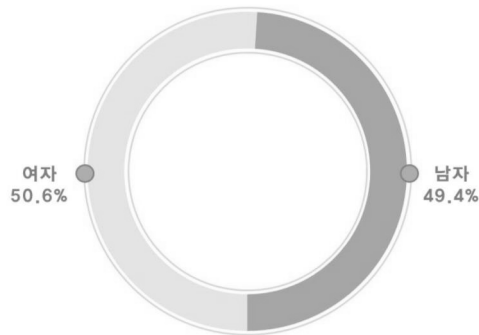
### 거주지(읍면별)



- 전체 응답자 중에 장항읍, 서천읍 거주자가 54.5%로 인구대비 높은 비중 차지, 나머지 읍·면 인구수 대비 고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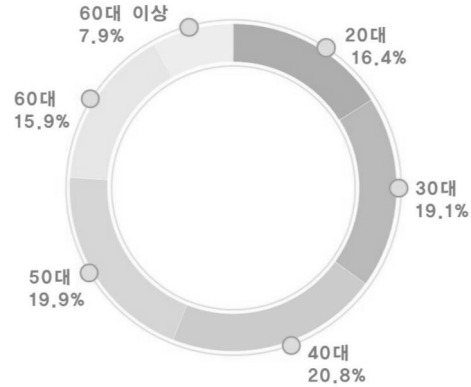
### 3) 방문객 설문조사 일반사항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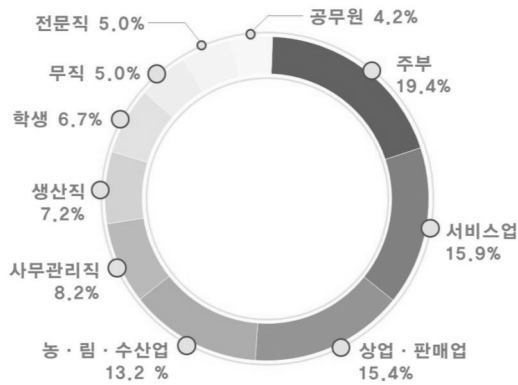
- 남자 50.6%로, 여자 49.4% 보다 약간 높은 비율 차지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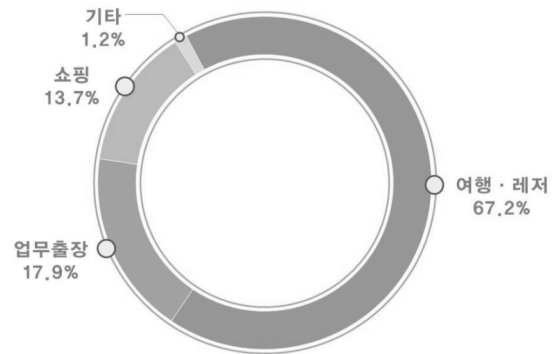
- 20대 16.4%, 30대 19.1%, 40대 20.8% 등 고르게 분포

####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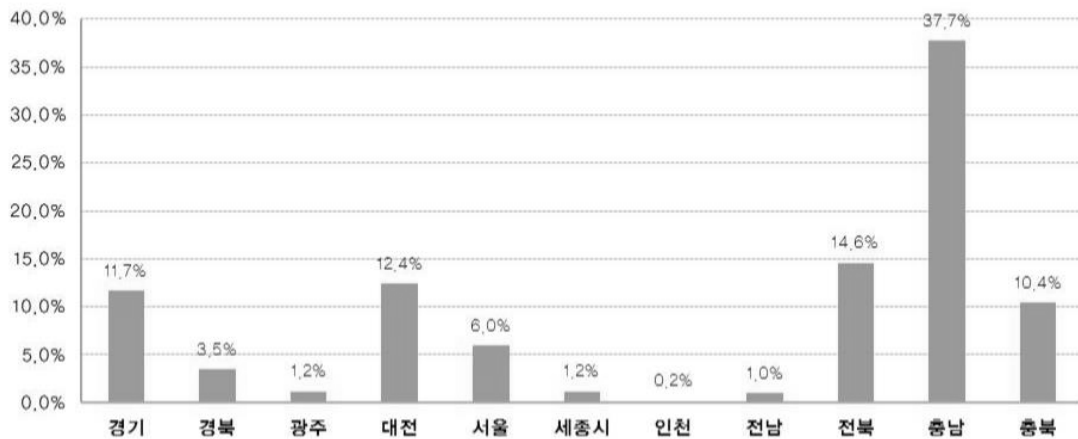
- 주부 19.4%, 서비스업 15.9%, 상업·판매업 15.4% 등

#### 방문목적



- 방문목적으로는 여행·레저가 67.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지(시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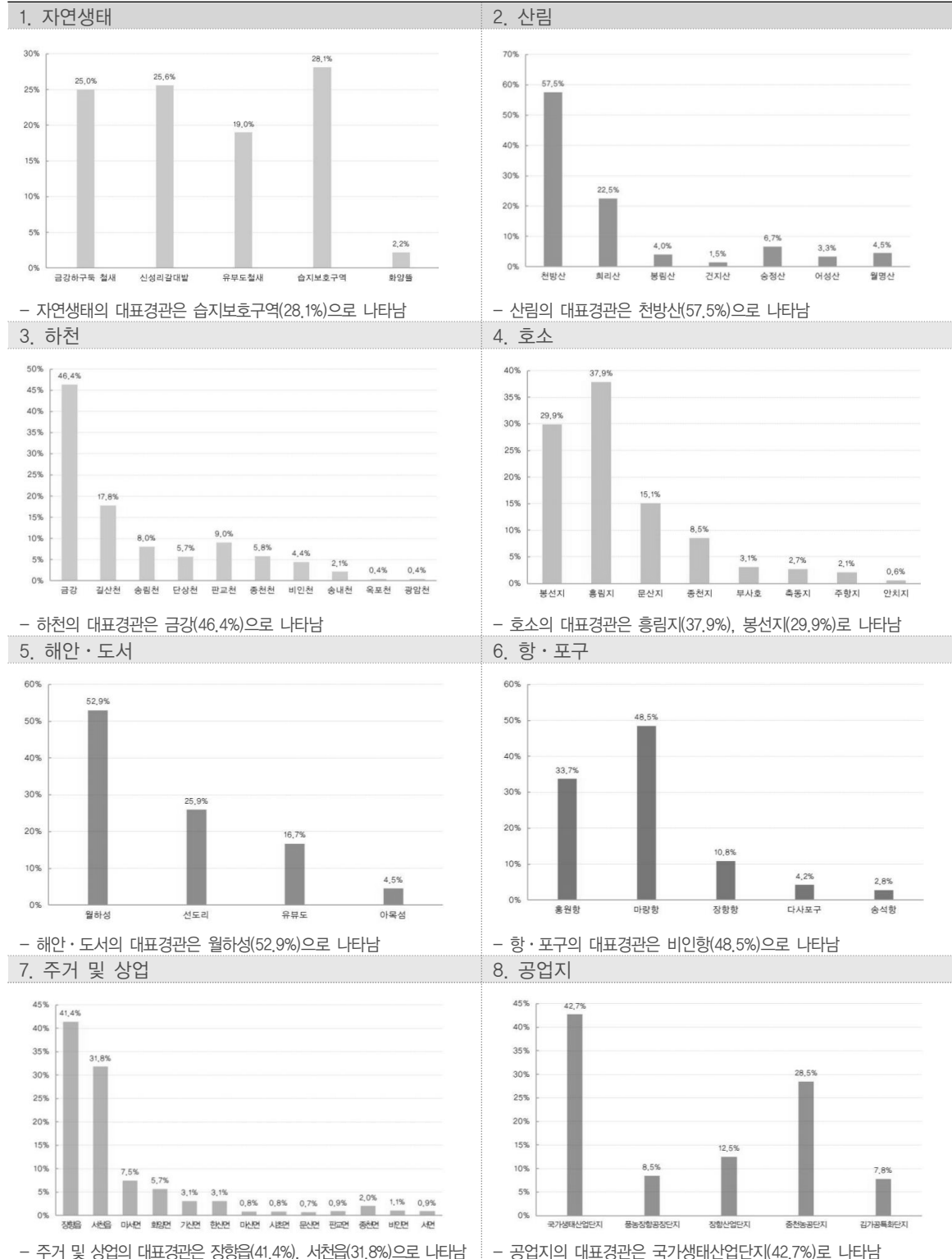


-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남, 충북, 대전, 전북에서 서천군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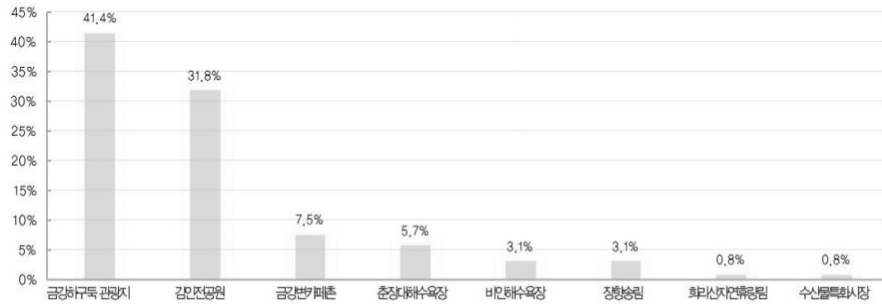
## 4) 대표경관 및 도시이미지

### 대표경관

-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군을 대표하는 경관유형을 13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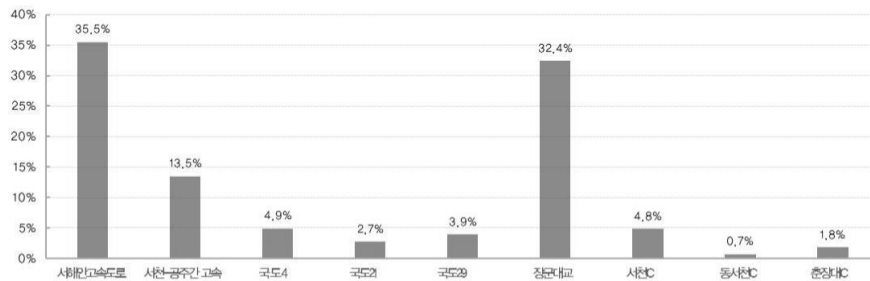


## 9.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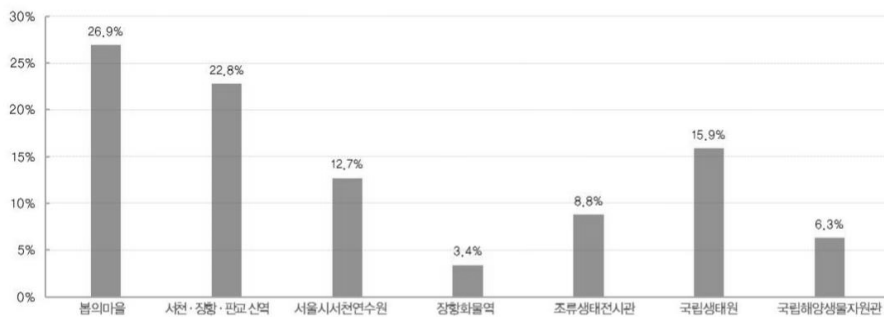
– 관광지의 대표경관으로는 금강하구둑 관광지(41.4%), 김인전공원(31.8%)으로 나타남

## 10. 기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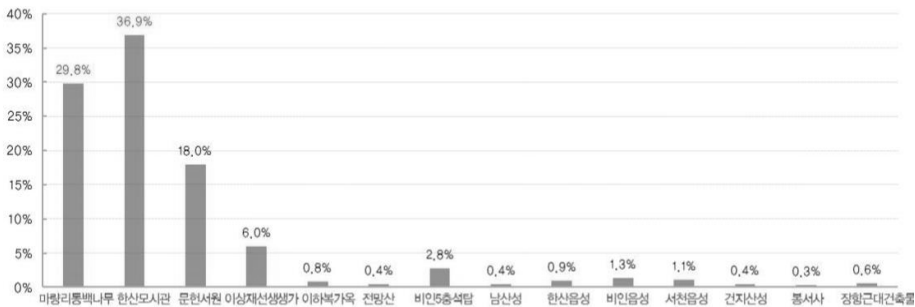
– 기반시설의 대표경관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35.5%)와 현재 건설 중인 장군대교(32.4%)로 나타남

## 11. 건축물



– 건축물의 대표경관으로는 봄의마을(26.9%), 서천·장항·판교 신역(22.8%), 국립생태원(15.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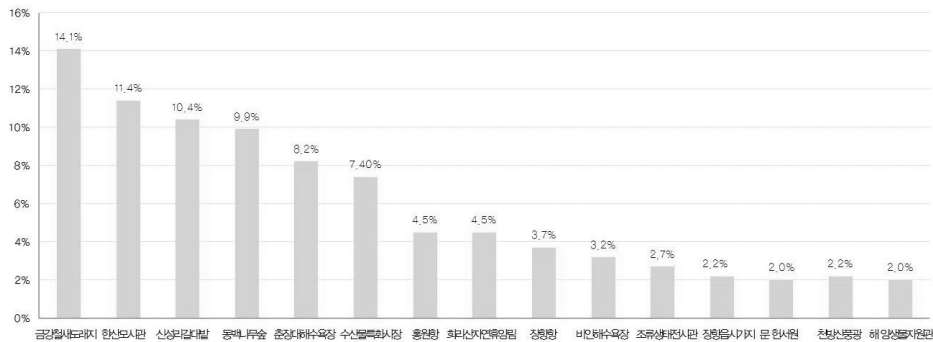
## 12. 역사문화



– 역사문화의 대표경관으로는 한산모시관(36.9%), 마랑리동백나무(29.8%), 문헌서원(18.0%)순으로 나타남

- 서천군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주민은 습지보호구역, 금강하구둑 관광지, 천방산, 금강하구둑, 비인항, 월하성 등이 서천군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이한 점은 김인전 공원(31.3%)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방문객 서천군의 대표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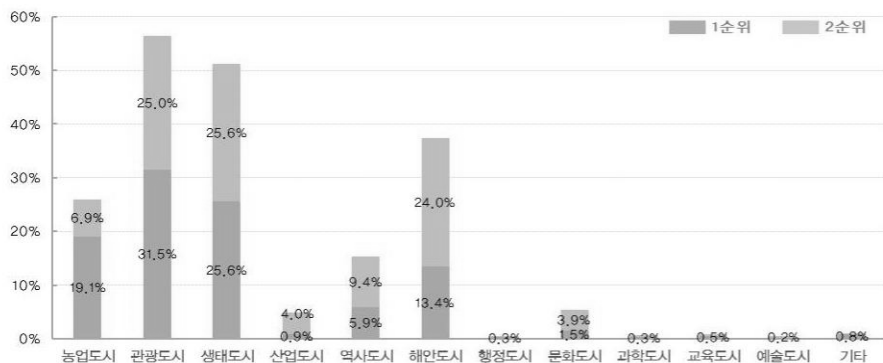
— 방문객 대상 서천군의 대표경관은 금강철새도래지(14.1%), 한산모시관(11.4%), 신성리갈대밭(10.4%)순으로 나타남

- 방문객은 서천군의 대표경관을 금강철새도래지(14.1%)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산모시관(11.4%), 신성리갈대밭(10.4%), 마량리동백나무숲(9.9%) 등을 대표경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천방산풍광(2.2%), 해양 생물자원관(2.0%), 문헌서원(2.0%)등은 경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와 미래의 도시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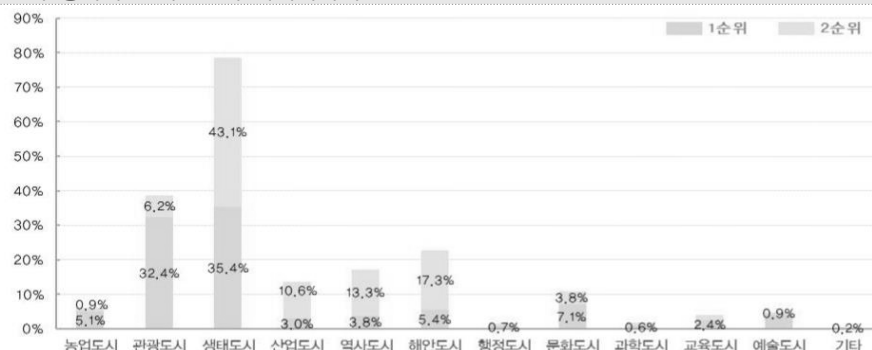
- 서천군의 현재 이미지는 관광도시(31.5%)와 생태도시(25.6%)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안도시, 역사도시, 농업도시 등의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음
- 주민이 생각하는 서천군의 미래이미지는 생태도시를 1순위로 꼽은 반면, 관광객이 생각하는 서천군의 미래이미지는 관광도시(51.1%)를 나타내고 있음
- 서천군이 나아가야할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생태도시와 관광도시를 꼽아, 현재 서천군의 이미지와 부합하고 있으며, 서천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도시임을 알 수 있음

주민이 생각하는 서천군의 현재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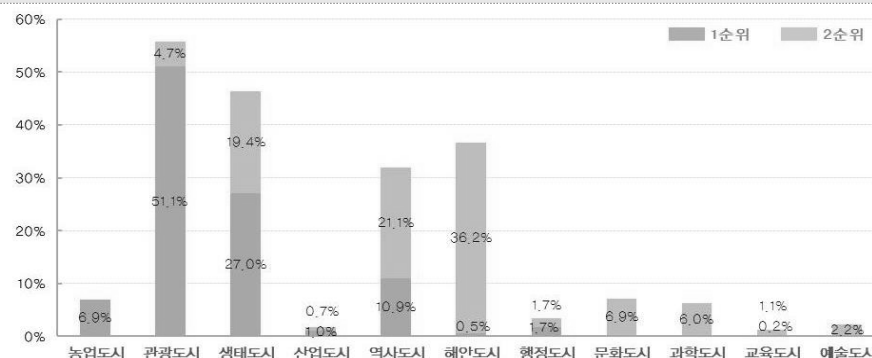




주민이 생각하는 서천군의 미래이미지



방문객이 생각하는 서천군의 미래이미지



## 도시이미지(형용사)

- 서천군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느낌을 단어(형용사)로 나타내어 본 결과, 도시의 규모성에 관해서는 '소박한-거창한'이 보통 29.5%, 소박 41.8%이며, '정적인-동적인'이 보통 46.9%, 정적 24.1%로 다소 소박하면서 정적인 느낌의 도시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으며, 방문객의 의식에서도 소박하며 정적인 도시이미지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음
- 도시의 정결성에 관해서는 '지저분한-깨끗한'이 보통 36.7%, 깨끗 38.5%이며, '분주한-여유로운'이 보통 38.0%, 여유로운 37.0%로 깨끗한 도시이미지와 여유로움이 공존하는 도시이미지가 나타나며, 방문객 또한 서천군을 깨끗하며 여유로운 도시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음
- 도시의 선호성에 관해서는 '싫은-좋은'이 보통 29.2%, 좋은 41.4%이며, '삭막한-푸근한'이 보통 36.5%, 푸근한 29.9%이며, 방문객은 '싫은-좋은'이 보통 30.5%, 좋은 50.6%이며, '삭막한-푸근한'이 보통 29.5%, 푸근한 48.4%로 나타나 매우 푸근하며 좋은 느낌의 도시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음
- 도시의 문화성에 관해서는 '비문화적인-문화적인'이 보통 26.1%, 문화적인 20.7%이며, '불편한-편리한'이 보통 40.4%, 불편한 24.9%이며, 방문객은 '비문화적인-문화적인'이 보통 34.2%, 문화적인 38.7%이며, '불편한-편리한'이 보통 42.4%, 편리한 35.5%이며 나타나 문화적인 도시이미지가 나타나지만, 다소 불편한 도시이미지도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의 발전성에 관해서는 '정체된-변화하는'이 보통 38.2%, 정체된 28.8%이며, 방문객은 보통 40.2%, 변화하는 31.0%로 나타나 주민들은 다소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반면, 방문객은 다소 변화하는 도시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도시의 시간성에 관해서는 '오래된-새로운'이 보통 33.5%, 오래된 33.7%, 방문객은 보통 28.8%, 오래된 26.1%로 나타나 전통적인 도시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음

### 주민이 생각하는 도시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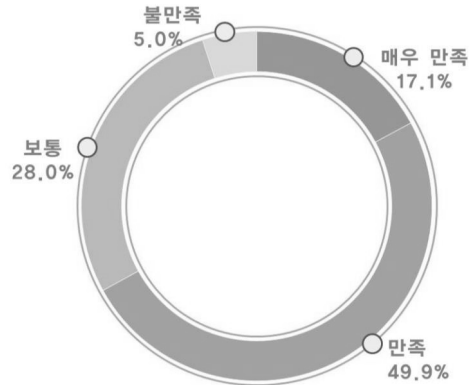
| 구분     | 경관형용사 | ←----- |      | 보통   | -----→ |      | 경관형용사 |
|--------|-------|--------|------|------|--------|------|-------|
| 1) 규모성 | 소박한   | 20.7   | 41.8 | 29.5 | 6.8    | 1.3  | 거창한   |
|        | 정적인   | 6.3    | 24.1 | 46.9 | 18.2   | 4.4  | 동적인   |
| 2) 정결성 | 지저분한  | 1.8    | 10.1 | 36.7 | 38.5   | 12.9 | 깨끗한   |
|        | 분주한   | 1.5    | 10.8 | 38.0 | 37.0   | 12.7 | 여유로운  |
| 3) 선호성 | 싫은    | 2.0    | 9.6  | 29.2 | 41.4   | 17.8 | 좋은    |
|        | 삭막한   | 4.9    | 14.8 | 36.5 | 29.9   | 13.8 | 푸근한   |
| 4) 문화성 | 비문화적인 | 6.5    | 26.1 | 41.9 | 20.7   | 4.8  | 문화적인  |
|        | 불편한   | 7.4    | 24.9 | 40.4 | 21.2   | 6.1  | 편리한   |
| 5) 발전성 | 정체된   | 8.4    | 28.8 | 38.2 | 21.2   | 3.3  | 변화하는  |
| 6) 시간성 | 오래된   | 33.7   | 19.1 | 33.5 | 10.9   | 2.8  | 새로운   |

### 방문객이 생각하는 도시이미지

| 구분     | 경관형용사 | ←----- |      | 보통   | -----→ |      | 경관형용사 |
|--------|-------|--------|------|------|--------|------|-------|
| 1) 규모성 | 소박한   | 21.3   | 30.5 | 27.3 | 17.9   | 3.0  | 거창한   |
|        | 정적인   | 9.2    | 28.5 | 32.8 | 23.6   | 6.0  | 동적인   |
| 2) 정결성 | 지저분한  | 0.0    | 2.7  | 33.5 | 49.1   | 14.6 | 깨끗한   |
|        | 분주한   | 0.7    | 5.7  | 29.8 | 51.4   | 12.4 | 여유로운  |
| 3) 선호성 | 싫은    | 0.2    | 1.7  | 30.5 | 50.6   | 16.9 | 좋은    |
|        | 삭막한   | 0.0    | 2.5  | 29.5 | 48.4   | 19.6 | 푸근한   |
| 4) 문화성 | 비문화적인 | 0.0    | 16.6 | 34.2 | 38.7   | 10.4 | 문화적인  |
|        | 불편한   | 0.5    | 13.6 | 42.4 | 35.5   | 7.9  | 편리한   |
| 5) 발전성 | 정체된   | 1.2    | 19.1 | 40.2 | 31.0   | 8.4  | 변화하는  |
| 6) 시간성 | 오래된   | 11.4   | 26.1 | 28.8 | 25.8   | 7.9  | 새로운   |

-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천군의 경관만족도에 대한 설문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이 67.0%, 보통 28.0%, 불만족이 5.0%로 나타나 서천군 경관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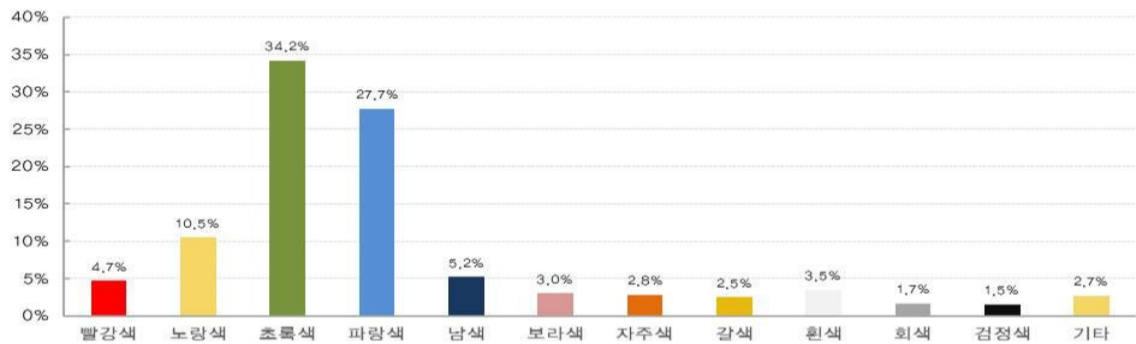
방문객 서천군 경관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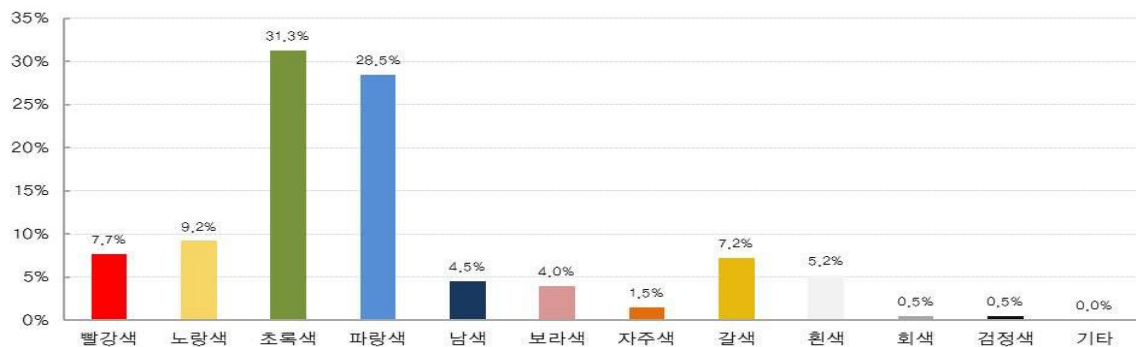
## 색채이미지

- 서천군의 색채이미지로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 초록색과 파랑색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서천군의 현재 도시이미지인 생태도시와 관광도시, 해안도시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주민이 생각하는 서천군의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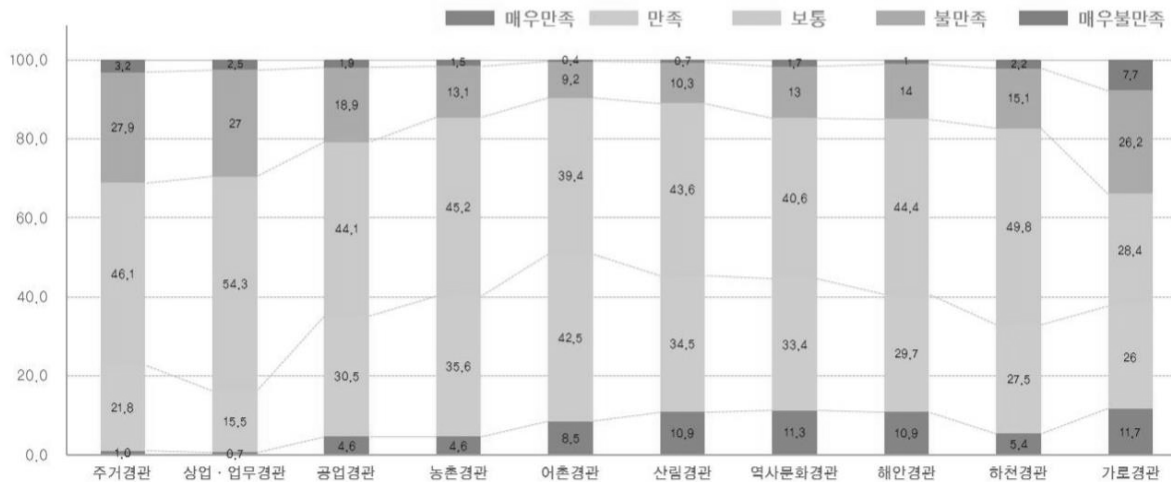
방문객이 생각하는 서천군의 색채



## 5) 경관유형별 만족도 및 중요도

### 경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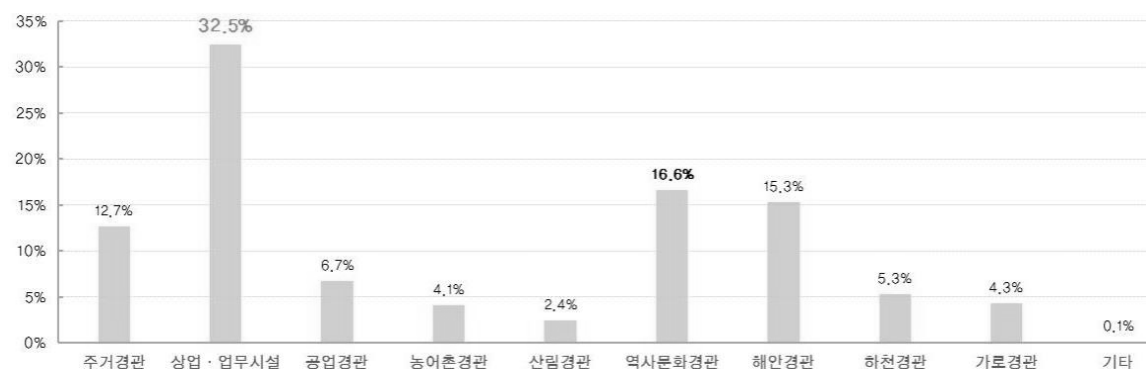
- 만족도가 높은 경관유형으로는 역사문화경관(매우만족11.3%, 만족33.4%), 해안경관(매우만족10.9%, 29.7%), 산림경관(매우만족10.9%, 만족34.5%)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자연경관에 관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만족도가 낮은 경관유형으로는 가로경관(매우불만7.7%, 불만26.2%), 주거경관(매우불만3.2%, 불만27.9%), 상업·업무경관(매우불만2.5%, 불만27.0%)의 순으로 나타나며, 특히 가로경관에 대한 불만족도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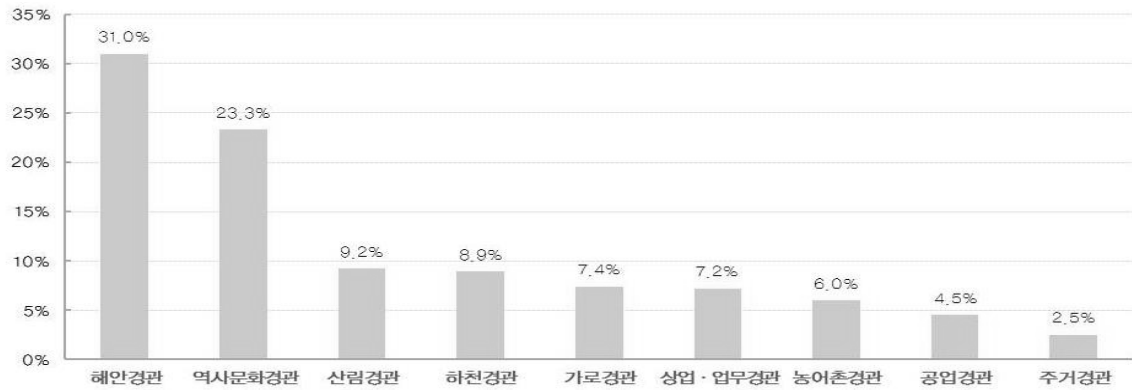
### 경관 중요도

- 서천군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관 중요도는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업·업무시설 (32.5%)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역사문화경관(16.6%), 해안경관(15.3%), 주거경관(12.7%)의 순으로 경관 중요도가 나타남
-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해안경관(31.0%)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역사문화경관(23.3%), 산림경관(9.2%), 하천경관(8.9%)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들은 삶과 밀접한 상업·업무시설 경관, 주거경관, 해안경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한 반면, 관광객은 관광자원인 해안, 산림, 역사문화경관 등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음
- 주민과 방문객모두 서천의 역사문화경관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주민이 생각하는 경관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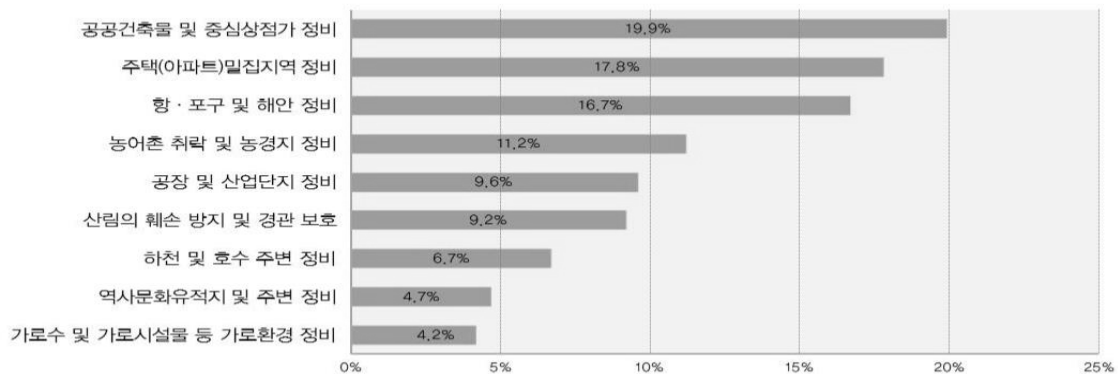
방문객이 생각하는 경관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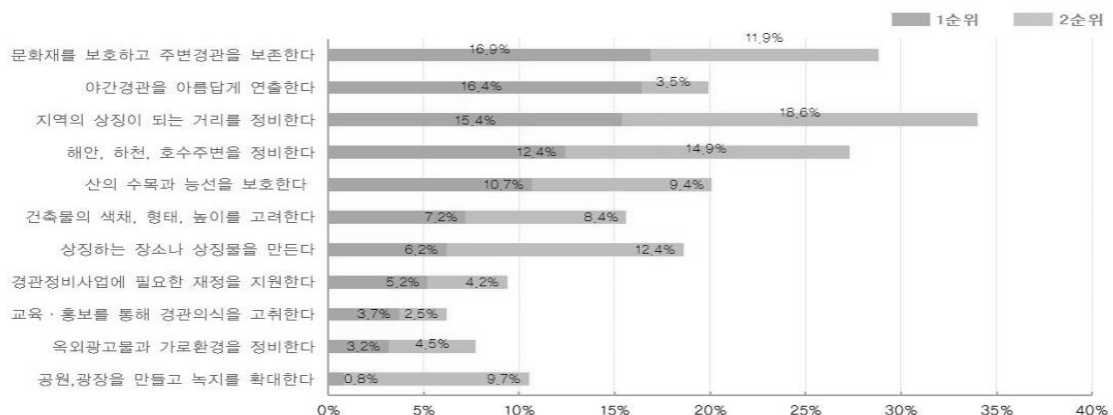
### 경관향상 우선추진

- 서천군의 경관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부문으로는 공공건축물 및 중심상점가 정비(19.9%), 주택(아파트)밀집지역 정비(17.8%), 항·포구 및 해안 정비(1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방문객은 경관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부문으로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주변 경관을 보호(16.9%),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연출한다(16.4%), 지역의 상징이 되는 거리를 정비한다(15.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은 생활공간과 밀접한 공공건축 및 중심상점가, 주택, 항·포구 및 해안정비를 우선으로 뽑은 반면, 방문객은 관광 및 휴양 도시이미지에 필요한 문화재 주변 경관, 야간경관, 지역의 상징거리 경관형성을 뽑아 대조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음

주민이 생각하는 경관향상 우선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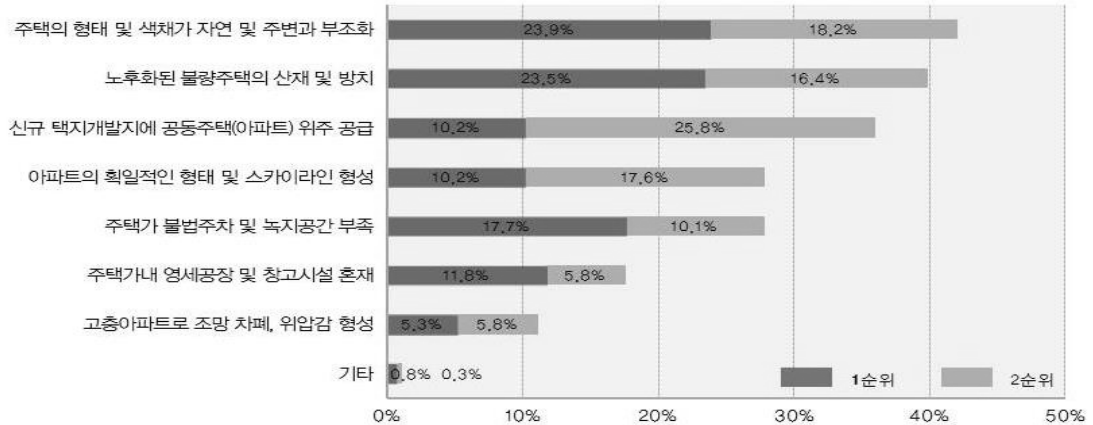
방문객이 생각하는 경관향상 우선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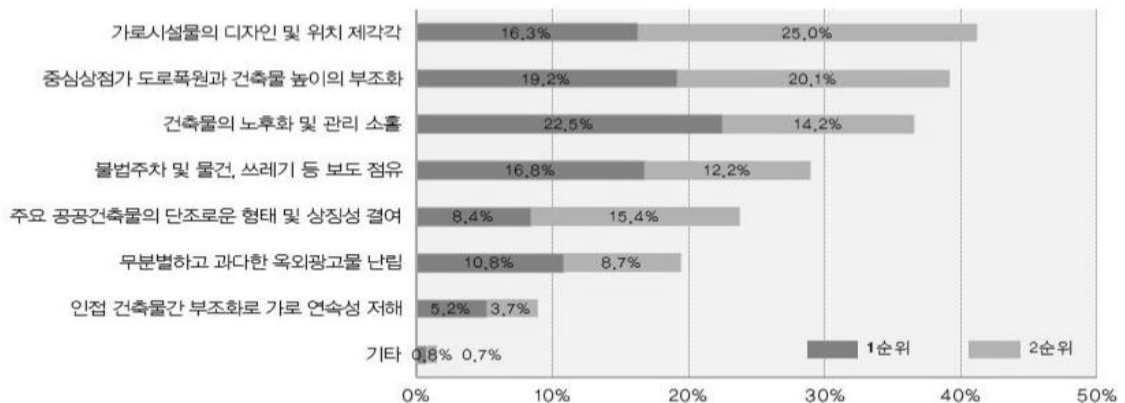
## 6) 경관유형별 문제점

### 시가지경관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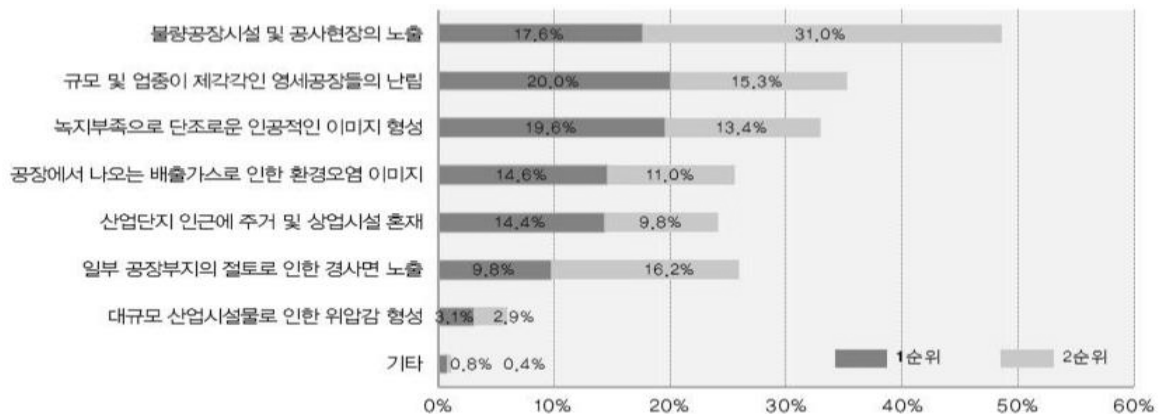
- 주거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주택의 형태 및 색채가 자연 및 주변과 부조화', '노후화된 불량주택의 산재 및 방치', '신규 택지개발지에 공동주택(아파트) 위주 공급'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상업·업무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및 위치 제각각', '중심상점가 도로폭원과 건축물 높이의 부조화', '건축물의 노후화 및 관리 소홀', '불법주차 및 물건, 쓰레기 등 보도 점유'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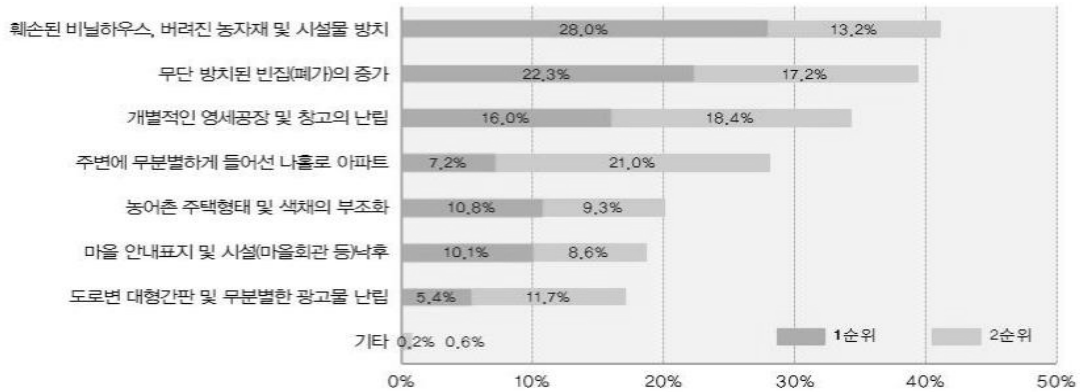


- 공업(산업)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불량공장시설 및 공사현장의 노출', '규모 및 업종이 제각각인 영세공장들의 난립', '녹지부족으로 단조로운 인공적인 이미지 형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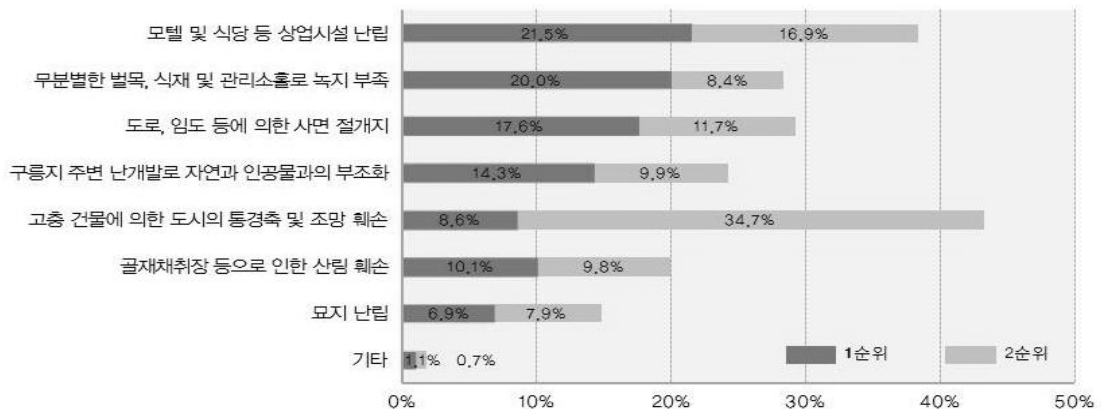


## 농어촌경관 및 산림경관의 문제점

- 농어촌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훼손된 비닐하우스, 버려진 농자재 및 시설물 방치', '무단 방치된 빈집(폐가)의 증가', '개별적인 영세공장 및 창고의 난립',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나홀로 아파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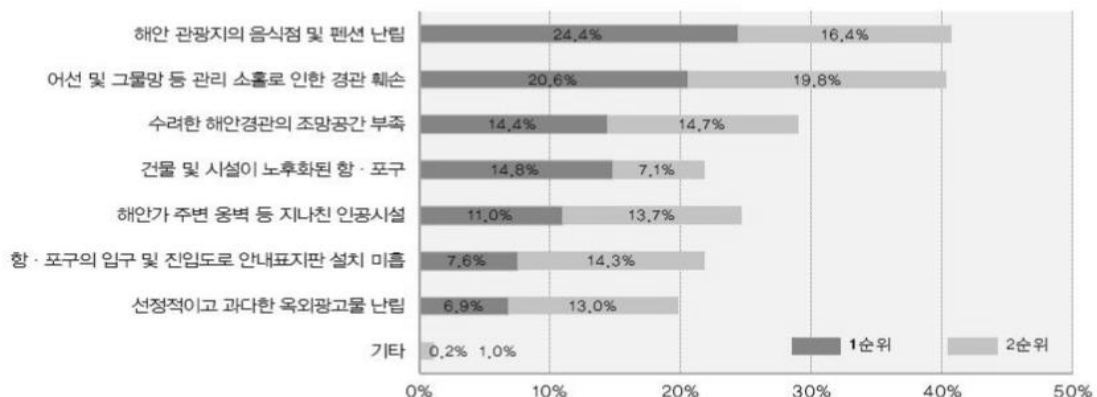


- 산림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모텔 및 식당 등 상업시설 난립', '무분별한 벌목, 식재 및 관리소홀로 녹지부족', '도로, 임도 등에 의한 사면 절개지', '구릉지 주변 난개발로 자연과 인공물과의 부조화'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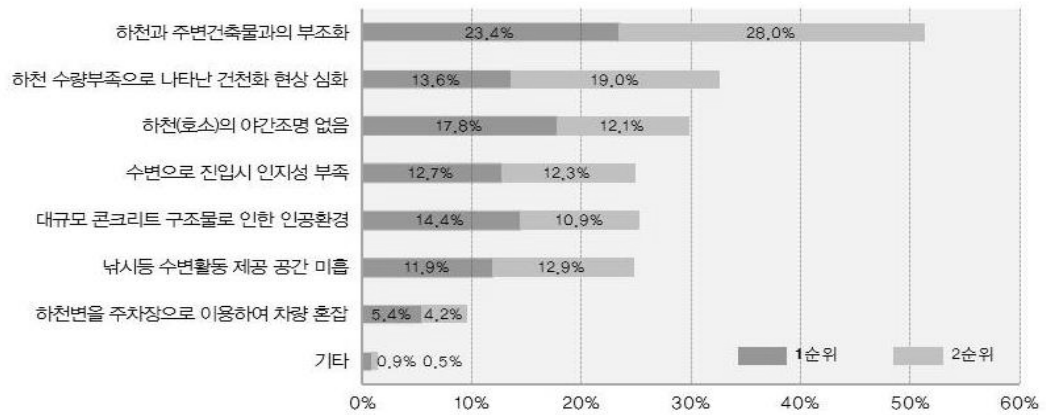


## 수변경관의 문제점

- 해안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해안 관광지의 음식점 및 펜션 난립', '어선 및 그물망 등 관리 소홀로 인한 경관 훼손', '수려한 해안경관의 조망공간 부족',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된 항·포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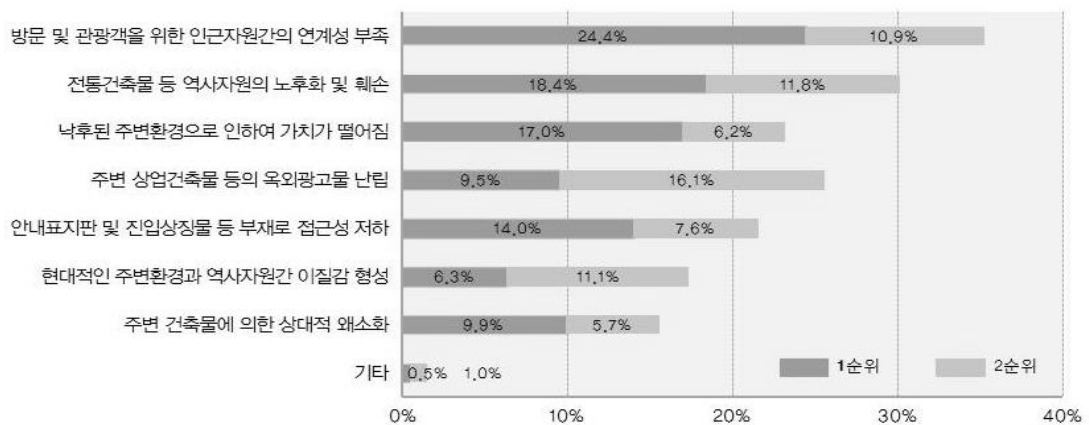


- 하천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하천과 주변건물과의 부조화', '하천 수량부족으로 나타난 건천화 현상 심화', '하천(호소)의 야간조명 없음', '수변으로 진입시 인지성 부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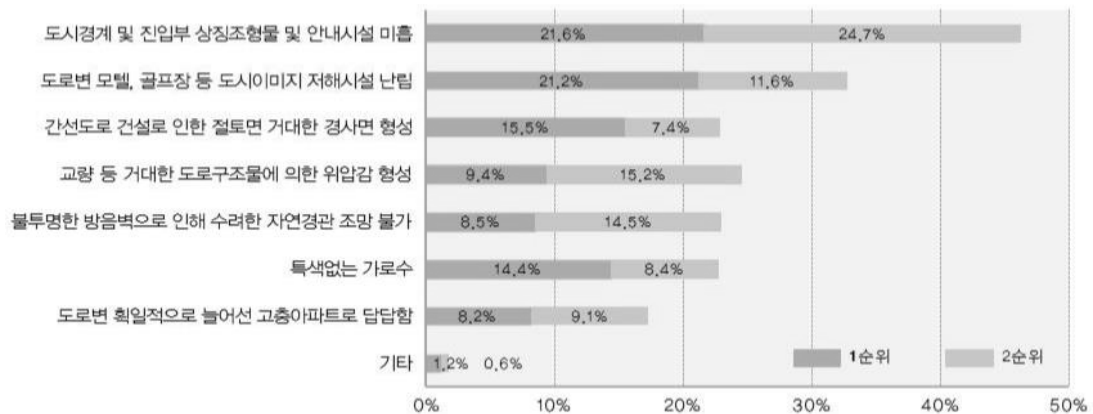


### 역사문화경관 및 가로경관의 문제점

- 역사문화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방문 및 관광객을 위한 인근 자원간의 연계성 부족', '전통건축물 등 역사자원의 노후화 및 훼손', '낙후된 주변환경으로 인하여 가치가 떨어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로(도로)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도시경계 및 진입부 상징조형물 및 안내시설 미흡', '도로변 모델, 골프장 등 도시이미지 저해시설 난립', '간선도로 건설로 인한 절토면 거대한 경사면 형성', '교량 등 거대한 도로구조물에 의한 위압감 형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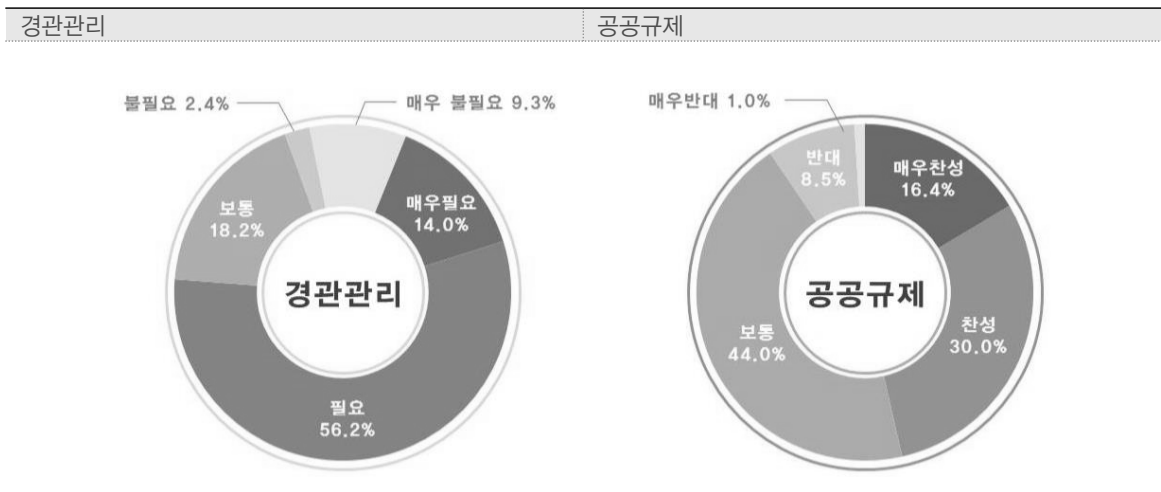




## 7) 경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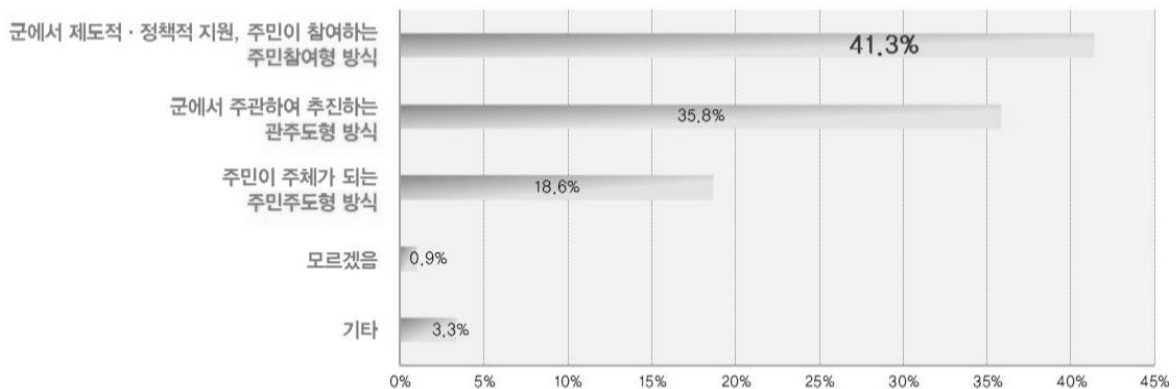
### 경관관리의 필요성 및 공공규제

- 경관관리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하다(매우필요14.0%, 필요56.2%)'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매우불필요9.3%, 불필요2.4%)'는 의견보다 절대적임
-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규제에 관하여는 '찬성한다(매우찬성16.4%, 찬성30.0%)'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나, '보통(44.0%)' 및 '반대한다(매우반대1.0%, 반대8.5%)'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음
- 서천군 차원에서 경관관리에 관하여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대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일부 규제가 수반될 수 있는 공공규제에 관하여는 반대의견 및 모르겠다는 의견도 다소 있기 때문 경관 사업 추진시 주민반발 등의 가능성도 엿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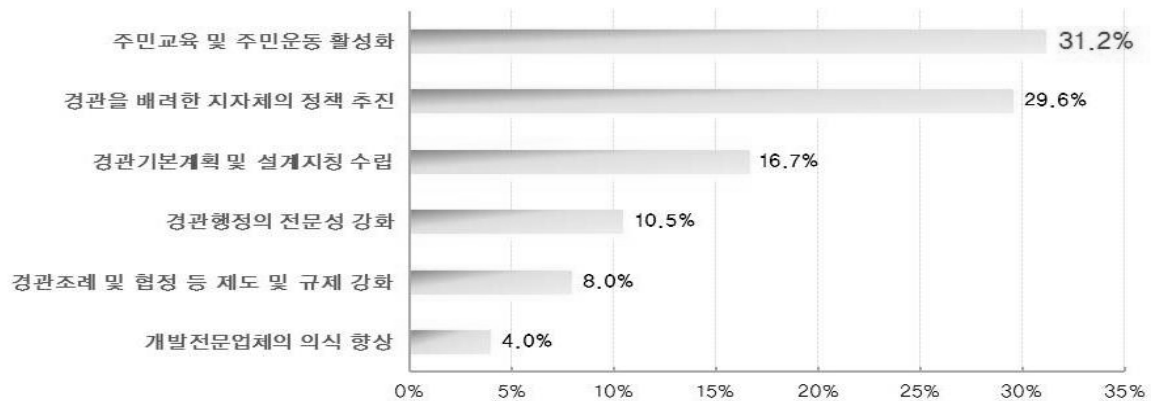


### 사업추진방식 및 시급한 개선과제

- 사업추진방식에 관하여는 군에서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군지원, 주민참여형 방식'이 4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관주도형 방식'은 35.8%,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주도형 방식'은 18.3%가 나타남



- 경관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주민교육 및 주민운동 활성화' 31.2%, '경관을 배려한 지자체의 정책 추진' 29.6%, '경관기본계획 및 설계지침 수립' 16.7%, '경관행정의 전문성 강화' 10.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경관형성이 과제임을 알 수 있음
- 이는 주민참여의 사업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시급한 개선 과제에 있어 주민참여가 필요한 과제(주민교육 및 주민운동 활성화 31.2%)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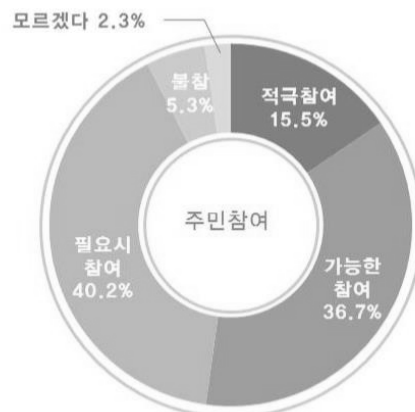


## 8) 주민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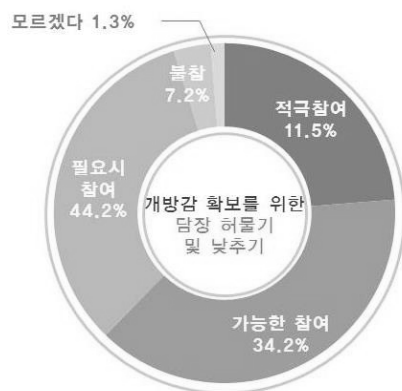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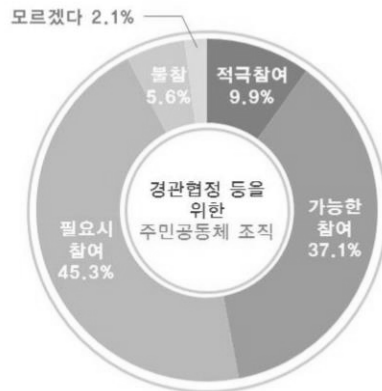
### 주민의 참여의사

- 서천군 경관계획의 수립 후 계획실현에 관한 주민의 참여의사(종합)는 '적극적 참여' 15.5%, '가능한 참여' 36.7%로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가 대체적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필요시 참여'의사를 보이는 소극적인 태도가 40.2%이고,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내용별 의사에서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사업 추진시 원활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참여내용 중에 '내집 앞 쓰레기 수거 및 화단가꾸기'만이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가 절반(적극적 참여 35.0%, 가능한 참여 39.3%)을 넘고 있을 뿐, 개방감 확보 위한 '담장허물기 및 낮추기', '건물외벽 청소 및 간판 정비' 등의 내용에서는 소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음

주민참여 의사(종합)



분야별 주민참여의사



## 9) 의식조사 종합

### 도시이미지 및 대표경관

- 현재의 서천군의 도시이미지는 생태도시, 관광도시이며 미래의 도시이미지상도 생태도시를 원하며, 생태도시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교육, 예술 등의 고품격 도시이미지로서 변모하길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보이므로, 다양한 경관 창출이 요구됨
- 서천군의 대표경관으로 금강하구둑과 한산모시관을 뽑았으며 그 외에 신성리 갈대밭, 동백나무숲, 춘장대해수욕장, 홍원항 등 금강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해안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됨

### 경관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 및 해안, 산림 등 자연경관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상업·업무, 하천, 가로 등 도시화된 지역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인공물의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됨
- 특히, 상업·업무경관은 만족도가 가장 낮으면서도 중요도 및 우선 추진해야 할 부문이 높게 나타나 경관개선이 시급하며, 상업·업무 경관의 문제점으로는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및 위치 제각각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가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경관관리 및 주민참여

- 군차원의 경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사업추진시 군지원·주민참여형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등에 관하여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냄
- 그러나 관리를 위한 공공규제에 대하여 반대 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다소 나타나고, 전체적인 주민참여의사가 높는데 반하여 참여내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의 실제 주민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식 및 참여내용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함

## 5.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1) 관련법규

#### 경관법

- 지자체에서 경관시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근거법이자 지원법으로서의 역할 담당
-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로 구성되며, 규제기준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법제도와 연계성을 통해 규제·유도·협정 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구 분                            | 경 관 법 주 요 내 용                                                                                                                                                                                                                                                                                                                                                                                                                                                                                                                          |
|--------------------------------|----------------------------------------------------------------------------------------------------------------------------------------------------------------------------------------------------------------------------------------------------------------------------------------------------------------------------------------------------------------------------------------------------------------------------------------------------------------------------------------------------------------------------------------|
| 제1장<br>총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li> </ul>                                                                                                                                                                                                                                                                                                                                                               |
| 제2장<br>경관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사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함 (제6조)</li> <li>•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함 (제9조 제4항)</li> <li>• 시·도지사 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10조 제1항)</li> <li>•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12조 제3항)</li> </ul> |
| 제3장<br>경관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 (제17조 제1항)</li> <li>•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사업대상(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제18조 제1항)</li> </ul>                                                                                                                                                                                                                                                                              |
| 제4장<br>경관협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을 경관협정 체결자의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음. 체결시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 등에게만 미침(제19조 1항)</li> <li>• 시·도지사 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5조)</li> </ul>                                                                                                                                                                                                                                                                           |
| 제5장<br>사회기반시설<br>사업 등의<br>경관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법」에 따른 도로,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제26조)</li> <li>•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제 27조)</li> <li>•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 28조)</li> </ul>                                                                     |
| 제6장<br>경관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과 관련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제29조)</li> <li>• 경관위원회 심의 받아야할 사항(제30조 제1항) : 경관계획의 수립·변경·승인,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그 밖의 대통령령 정하는 사항</li> <li>• 경관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할 사항(제30조 제2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i> </ul>                                                                                                                      |

## 기타 관련법규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li> </ol> </li> </ul>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ul>                                                                                                |
| 건축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ul>                                                                                                                                                                                                                                         |
| 건축기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li> <li>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 조성</li> <li>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 반영,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 창조 및 조성</li> </ol> </li> </ul>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li> </ul>                                                                                                                                                                                                              |
| 자연환경보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 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① 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li> </ul>                                                                                                                                            |
| 문화재보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li> </ul>                                                                                                                                                                                                                                |
| 관광진흥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i> </ul>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li> </ul>                                                                                                                                                                                                          |

## 경관관련 조례

- 충청남도에서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의 기타 조례에서도 개발행위 시 경관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
- 서천군은 경관관련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운영함

| 구 분                   | 근거법                | 충청남도                                                                                                                                         | 서천군                                                                                                                                                         |
|-----------------------|--------------------|----------------------------------------------------------------------------------------------------------------------------------------------|-------------------------------------------------------------------------------------------------------------------------------------------------------------|
| 경관조례                  | 경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계획 수립, 공청회, 경관사업의 대상 및 추진협의체 구성, 경관사업 재정지원, 경관시범지역 지정,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ul> |                                                                                                                                                             |
| 도시계획조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 추진기구 및 개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의 수립, 개발행위의 허가,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군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ul>                                       |
| 건축조례                  | 건축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범위 및 기준완화 등, 서천군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 공개공지 등에 관한 사항</li> </ul>                  |
| 건축기본조례                | 건축기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기본계획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li> </ul>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의 설치 및 관리, 이용시간 및 대상, 관리위탁, 점용허가, 시설의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li> </ul>                                           |
|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 문화재보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정문화재의 정의 및 지정, 관리 및 보호, 공개,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ul>                                         |                                                                                                                                                             |
| 공공디자인 조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진흥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업무협약,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li> </ul>               |                                                                                                                                                             |
|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지원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안전도검사, 광고물 등의 관리,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교육, 광고물 실명제 및 행재정 지원, 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li> </ul> |

## 경관관련 지역·지구·구역

- 국계법을 비롯한 경관관련 법률에서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여 경관을 관리하고 있음

| 구분                              | 근거법                      | 내용                                         | 규제사항                            |
|---------------------------------|--------------------------|--------------------------------------------|---------------------------------|
| 경관지구<br>(자연/수변<br>/시가지)         | 국토의 계획 및<br>이용에 관한<br>법률 | • 경관을 보호·형성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건폐율, 용적률, 높이,<br>용도제한 등         |
| 미관지구<br>(중심지<br>/역사문화<br>/일반)   |                          |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고도지구<br>(최고/최저)                 |                          | •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br>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보존지구<br>(문화자원<br>/중요시설<br>/생태계) |                          | • 문화재 등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br>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공원자연보존지구                        | 자연공원법                    | •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 허용되는 행위 별도로 규정                  |
| 공원자연환경지구                        |                          | • 자연보존지구를 위한 완충지역                          |                                 |
| 생태·경관보전지역<br>(핵심/완충<br>/전이구역)   | 자연환경<br>보전법              | •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br>필요가 있는 지역          | 생태·전지역관리 기본계획<br>수립 및 건축행위 제한 등 |
| 보호구역                            | 문화재<br>보호법               | • 문화재 보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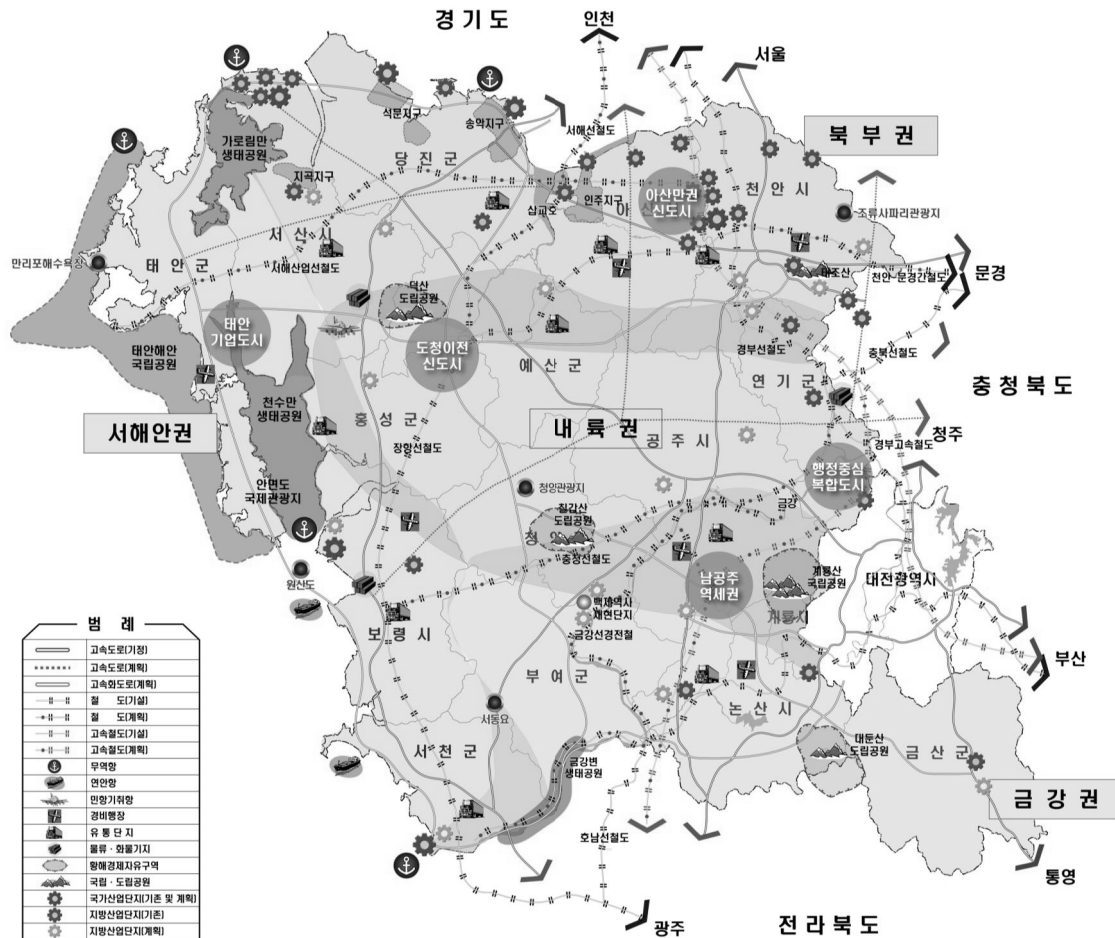


## 2) 상위 및 관련계획

### 상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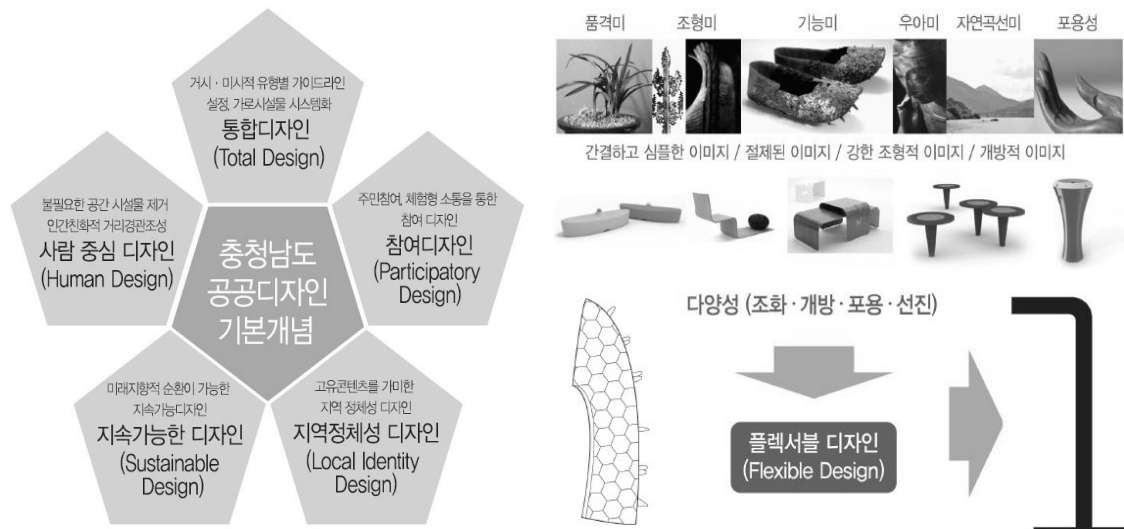
####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계획기조로, 균형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목표로 설정
-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개방형 지역발전축 구축, 상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경영권 구상, 협력과 제휴의 지역 생활권 형성으로 공간구조 설정
- 서천군은 발전축에 있어 북부축과 중부내륙축, 4개 개발경영권 중에는 환황해경제권의 전진기지 및 충청권의 신성장 거점지대를 추구하는 북부권, 지역생활권에는 서산, 태안과 함께 북부해안권에 속함
- 부문별 계획으로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산업 및 기술의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이 있음
- 서천군의 발전방향은 동북아 물류 및 임해형 신산업 중심도시로서, 역동적인 수출 지향적 임해신산업지대,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하는 물류·유통 중심도시, 지속가능한 체험형 휴양 및 여가의 중심지를 기본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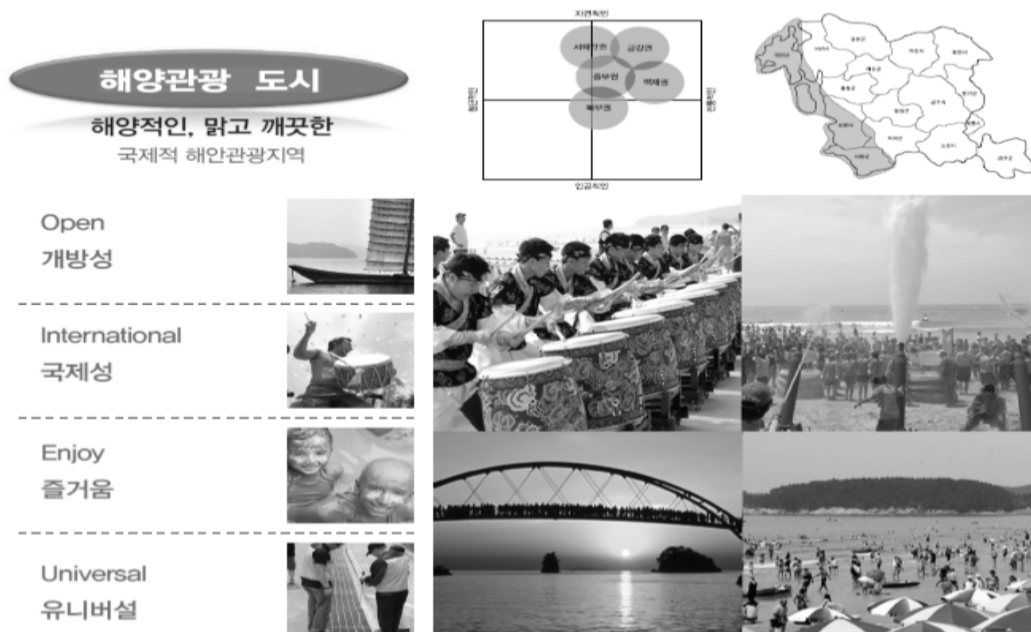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09)

-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계획을 통해 충남의 이미지 개선 및 정체성을 강화, 공공디자인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수립함
- 충남의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은 통합디자인(Total Design), 사람중심디자인(Human Basic Design), 참여디자인(Participatory Design),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 지역정체성디자인(Local Identity Design)의 5가지임
- 역사문화, 정신, 자연, 미래 등의 구성요소들을 검토한 결과 도출된 충남의 디자인 특화개념으로는 포용과 조화, 융합과 개방을 포괄하는 '다양성'으로 정리됨



- 충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이미지를 도출,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차별화하여 적용 하도록 함. 서천이 포함된 서해안권은 서산, 태안, 보령과 함께 해안관광을 특화하며, 해양성, 맑고 깨끗함을 이미지로 도출함
- 서해안권은 국제적 해안관광지역으로 개방성, 국제성, 즐거움, 유니버설을 키워드로 제시하였고, 색채범위는 주조색으로는高明도의 무채색계열과 R, YR, Y계열의高明도/저 중채도, 보조색은 중명도의 무채색계열과 YR, B 계열의 중명도/저 중채도, 강조색은 YR계열의 저 중명도/저 중 고채도 위주의 색채를 선정



##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2013)

- 충청남도는 경관법에 의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래상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미래상 : 행복미소 충청남도
- 목표 : 1경(역사문화경관) 백제 · 내포문화가 계승되고 빛나는 역사·문화도시만들기  
2경(수변경관) 서해안 중심의 국제적 수준의 수변관광도시 만들기  
3경(녹지경관) 산림과 녹지가 푸르른 자연생태도시 만들기  
4경(농산어촌경관) 살기 좋고 도시와 조화로운 농산어촌 정주환경 만들기  
5경(도시산업경관) 첨단 산업기반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만들기

역사와 자연, 그린어메니티의 다양한 표정을 간직한  
도시 경관 창출

# 행복미소 충청남도

天惠(천혜)의 자연이 빛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최고의 경관 형성

- **1경 백제 · 내포문화가 계승되고 빛나는 역사 · 문화도시 만들기**  
역사문화경관 백제 역사문화의 보전 및 계승 / 내포문화권과 주변과의 연계 / 독창적인 지역 문화 창출

- **2경 서해안 중심의 국제적 수준의 수변관광도시 만들기**  
수변경관 해안중심의 생태도시 / 해안도로의 정비 및 관리 / 금강과 저수지 등의 경관관리

- **3경 산림과 녹지가 푸르른 자연생태도시 만들기**  
녹지경관 녹지의 네트워크화 / 녹지로의 개방감 형성 / 생활 녹지공간 확보

- **4경 살기 좋고 도시와 조화로운 농 · 산 · 어촌 정주환경 만들기**  
농산어촌경관 도시와 조화로운 경관형성 / 삶의 질 향상 / 관광사업과 연계된 지역활성화

- **5경 첨단 산업기반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만들기**  
도시산업경관 선도시의 확장성 확보 / 원도심의 활성화 / 국제적 산업도시



- 서천군은 서해안권역에 속하며 주요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세부     | 내용                                                                                                                                                                                                                                                                                                                                                                                                                                                                                                                                             | 비고 |
|----------------|--------|------------------------------------------------------------------------------------------------------------------------------------------------------------------------------------------------------------------------------------------------------------------------------------------------------------------------------------------------------------------------------------------------------------------------------------------------------------------------------------------------------------------------------------------------|----|
| 경관<br>기본<br>계획 | 경관권역   | <p>[섬 및 항만 경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지역 및 항만 주변 조망경관 관리와 야간경관 형성 방안 마련</li> <li>• 방조제 및 인공 시설물 경관관리</li> <li>• 대표 경관의 집중 관리로 관광 명소화 추진</li> </ul> <p>[해안도로 주변 상업지 경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도로와 해안선 사이 건축물 스카이라인 관리</li> <li>• 상업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와 대형 옥외광고물 개선</li> </ul> <p>[농어촌마을 정주환경 경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마을 특성 보전 및 특색 강화를 통한 활성화 유도</li> <li>• 농촌 들판 및 낮은 구릉지 경관의 보전, 취락지 경관 관리</li> </ul>                                                         |    |
|                | 경관축    | <p>[섬 및 항만 경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지역 및 항만 주변 조망경관 관리와 야간경관 형성 방안 마련</li> <li>• 방조제 및 인공 시설물 경관관리</li> <li>• 대표 경관의 집중 관리로 관광 명소화 추진</li> </ul> <p>[해안도로 주변 상업지 경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도로와 해안선 사이 건축물 스카이라인 관리</li> <li>• 상업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와 대형 옥외광고물 개선</li> </ul> <p>[농어촌마을 정주환경 경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마을 특성 보전 및 특색 강화를 통한 활성화 유도</li> <li>• 농촌 들판 및 낮은 구릉지 경관의 보전, 취락지 경관 관리</li> </ul>                                                        |    |
|                | 경관거점   | <p>[수변 관광자원 보전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장대, 금강하구둑 등 생태 환경 보전 및 인공물 경관 관리</li> </ul> <p>[산업단지 주변 경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가로변 경계부 경관 관리 및 경관 저해 요소 차폐</li> <li>• 주요 건축물 입면 및 색채, 야간경관 관리</li> </ul> <p>[고속도로 진입부 경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경계부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조망 경관 관리</li> <li>• 변화구간의 연속된 경관 관리</li> </ul> <p>[도심 특성 관리 및 주변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주변 관광요소 연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li> <li>• 해안경관 훼손을 최소화한 개발 계획 수립</li> </ul> |    |
|                | 부문별 계획 | <p>[종합]서해안과 금강의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특화된 경관 연출</p> <p>[경관중점관리구역] 금강하구둑 관광지, 월하성 어촌체험마을, 장항제련소 일대</p> <p>[색채계획] 해안 관광자원이 조화로운 상징적인 색채계획</p> <p>[야간경관] 서해안 주요 시설 및 해안 조명 관리를 통한 특색 있는 야경 연출</p>                                                                                                                                                                                                                                                                                                                                                            |    |

## 6. 사례 분석

### 1) 충청남도 보령시

#### 도시소개

- 보령시는 충청남도의 서부에 위치하며, 동측으로는 부여군, 청양군과 접하고, 서측으로는 서해안과 접하고, 남측으로는 서천군과 접하며, 북측으로는 홍성군과 접함
- 동쪽 경계를 따라 호서정맥, 금북기맥을 중심으로 서해안으로 낮아지는 지형특성을 보이고, 역사문화적으로 서해안 중심부에 위치하며 내포문화권에 속함
- 도시공간구조는 대천과 웅천도시지역이 도심을 형성하고, 농산업단지와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임

#### 기본방향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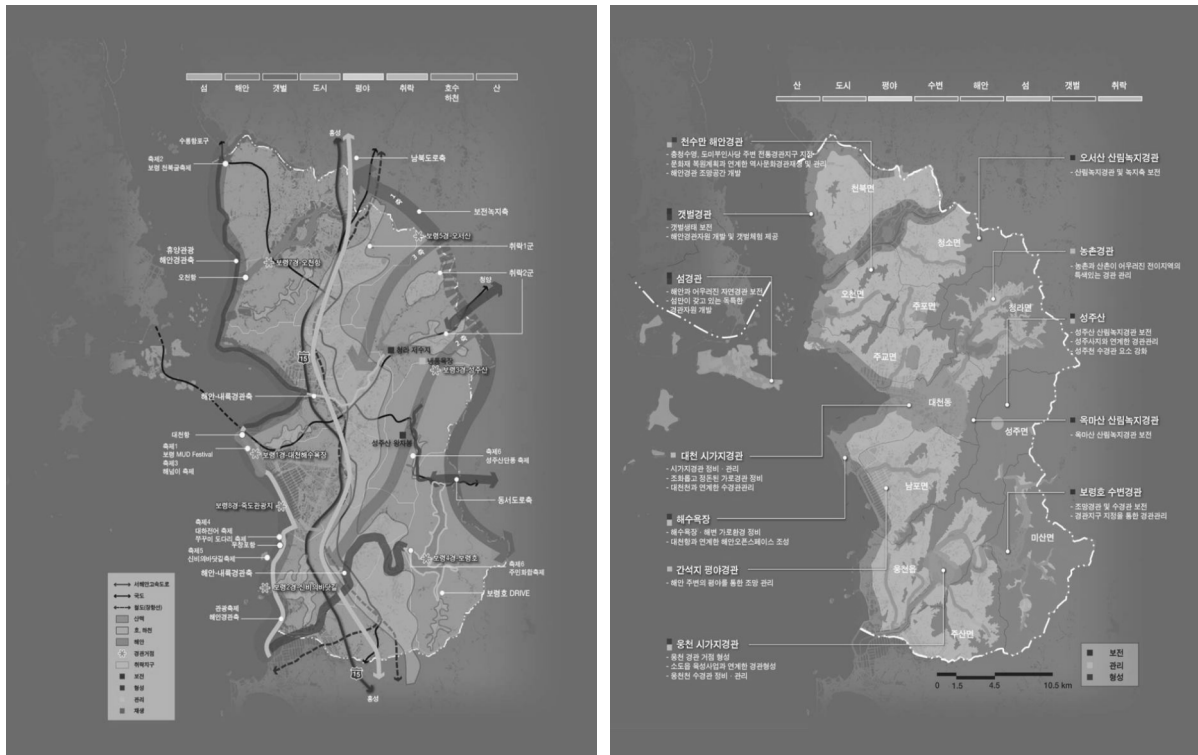
- 경관미대상 : 팔색보령수필
- 목표 : 팔색 -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는 도시

보령 - 영원토록 평안함이 지속되어 오래도록 살기 좋은 도시

수필 - 서정적이고 개성이 살아 숨쉬는 도시

#### 경관계획

- 경관계획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축외에 산, 도시, 평야, 수변, 해안, 섬, 갯벌, 취락으로 구분하여 경관유형별·행정구역별로 경관계획내용을 제시함



## 2) 전라북도 군산시

### 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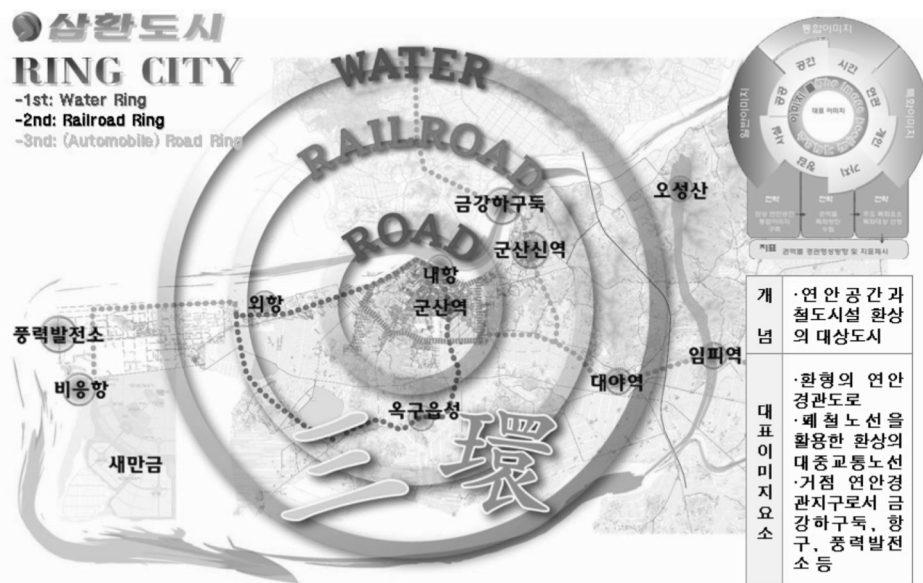
-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서부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도시로서 서천과 서해, 금강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는 도시로서 동북아 해상교통의 관문이자 해상무역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형은 표고 25m이하의 평탄한 지역이고, 새만금개발사업과 군산해양관광권 개발사업, 군산-장항간 광역교통정비사업, 장항선 철도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군산의 도시개발 잠재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임

### 기본방향 및 목표

- 미래상 : “자연·역사·산업이 어우러진 연안형 환상도시, 군산”
- 21세기 환황해권 국제 관문도시에 적합한 상징적 도시경관(International Symbolic Cityscape)
- 금강역사문화권의 거점공간으로서 역사문화적 도시경관(Cultural-istoric Cityscape)
- 자연경관과 하나되어 미래 천년의 심상이미지를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경관(Sustainable Cityscape)
- 쾌적하고 매력이 넘치는 도시경관(Comfortable & Attractive Cityscape)
- 정주성을 고양시키는 시민중심의 활기찬 생활도시경관(Vital & Citizenship based Cityscape)

### 경관계획

- 연안공간과 철도시설환상의 대상도시로서 환형의 연안경관도로, 폐철노선을 활용한 환상의 대중교통노선, 거점 연안경관지구로서 금강하구둑, 항구, 풍력발전소를 대표이미지 요소로 선정함
- 서천군과 접한 금강변은 시가지에서 금강으로의 조망권 확보 등 보전 중심의 계획 (내항연안공원, 채만식문학기념관, 체육공원, 금강하구둑, 금강대교 등)
- 제방과 연안공간을 활용하여 축경관 이미지 강화
- 하천 생태경관을 적극 육성
- 차별화된 가로시설물과 식재를 활용하여 개성 있는 경관 연출
- 하천변 경관자원과 연계하여 특화된 경관 연출



### 3) 전라남도 순천시

#### 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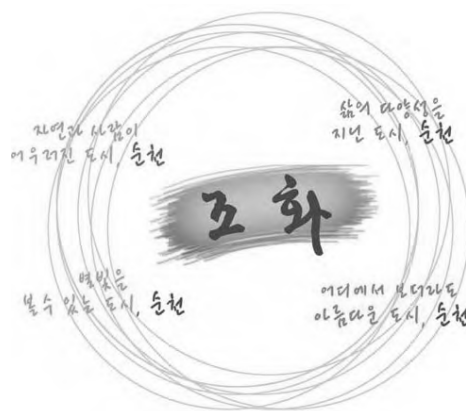
- 순천시는 순천만과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로 대표되는 생태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정겨운 순천을 지향하고 있음
- 시정은 마음을 열어 섬기자, 함께 즐기며 행복을 나누자, 생명을 통해 농촌을 살리자, 인간을 위한 배움터를 창조하자, 생태와 문화로 도시를 디자인하자는 제시하고 있으며, 생태형 정원도시, 도심재생과 문화브랜드 대표도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본방향 및 목표

- 미래상은 대한민국 생태수도(An Eco-Capital of Korea), 순천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도시 : 순천만을 중심으로 동천, 봉화산 등 도심 자연자원과 인간의 삶이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 삶의 다양성을 지닌 도시 : 느림과 빠름, 전통과 현대, 보존과 발전, 여유와 활기 등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
- 어디에서 보더라도 아름다운 도시 : 가로와 교차로, 교량,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이 장소에 적합하게 조성·배치된 도시
- 별빛을 볼 수 있는 도시 : 무분별한 야간조명 자제를 통해 깨끗한 하늘과 산뜻한 바람을 느끼고 밤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있는 도시

#### 경관계획

- 경관계획은 도심경관권역, 수변 및 하천경관권역, 녹지경관권역, 도로경관권역, 해안경관권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제시함
  - 기존도심권역 : 느림, 전통, 보존, 여유
  - 신도심 권역 : 빠름, 모던, 발전, 활기
  - 봉화산권역 : 자연, 연계, 보존, 휴식
  - 기타권역 : 보존, 조화, 친환경 개발



## 4) 전라남도 무안군

### 도시소개

- 무안군은 전남 서부 중앙에 있는 군으로서 동쪽은 영산강과 접하고, 남쪽은 목포시, 북쪽은 함평군과 접하는 도시로, 해발고도 400m이상의 산지가 없는 구릉과 평지가 대부분인 지역임
- 주요장기개발은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의 관광벨트 조성과, 전라남도청이 이전한 남악신도시가 주요 개발 사업지임

### 기본방향 및 목표

- 미래상 : 바다와 구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국제도시, 무안
- 목표 : 갯벌과 낙조가 아름다운 바다호반도시 무안
  - 무안의 풍부한 자연환경(해안경관)을 유지하고 활용
- 역사와 자연이 꿈틀거리는 생태하천 영산호의 무안
  - 영산강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및 하천경관과 어우러지는 물의 도시 경관 창출
- 산, 구릉, 바다, 촌락이 어우러진 어메니티 황토촌 무안
  - 풍부한 녹지자원(산악, 구릉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경관 창출
- 미래를 창조하는 녹색도시 무안
  - 남악신도시·기업도시·기존의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통합된 도시경관 이미지를 형성,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

### 경관계획

- 경관권역 : 해안경관권역, 영산강경관권역, 도시경관권역으로 구분
- 경관축 : 녹지축, 수변축, 가로경관축
- 경관거점 : 관문거점, 지표적 거점





## 7.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1) 경관종합분석

| 구분               |             | 분석                                     | 계획과제                                      |
|------------------|-------------|----------------------------------------|-------------------------------------------|
| 입지 및<br>역사<br>문화 | 입지          | •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가교적 역할                   | •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경관에 대한 계획적 관리           |
|                  | 역사문화        | • 과거 군사적 요충지, 경관이 수려한 지역               | • 금강의 보전 및 생태적 환경 보전                      |
| 자연<br>인문<br>환경   | 인구          | • 지속적인 인구감소지역, 서천읍, 장항읍에 인구 밀집         | • 서천읍, 장항읍에 대한 도시재생 차원의 경관 계획 마련          |
|                  | 토지이용        | • 서천읍을 중심으로 도시적 토지이용 증가추세              | • 개발용도지역에 대한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개발 필요            |
|                  | 지형지세        | • 북고남저형의 특색, 저지대가 70% 차지               | • 주요 지점별 대표 산지로의 조망이 가능토록 경관계획            |
|                  | 식생          | • 생태자연도1등급은 봉림산, 천방산 주변이며, 대부분이 2등급 지역 | • 우세한 산림형성·보전·관리                          |
|                  |             |                                        |                                           |
| 경관<br>자원         | 산림경관        | • 북측기점으로 4개의 능선축을 형성                   | • 주요지점별 조망경관 및 배후 경관 역할 고려                |
|                  |             | • 위요된 조망을 위한 통경축 확보                    | • 서천읍 및 장항읍 도심부의 스카이라인 관리                 |
|                  |             | • 외곽산지와 시가지 녹지의 연계부족                   | • 산림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녹지 네트워크 체계의 모색 및 경관적 고려 |
|                  | 하천·호소<br>경관 | • 금강의 대표적인 개방형경관 형성                    | • 매력적인 수(水)경관 형성 필요                       |
|                  |             | • 수변 연접건축물 경관관리 미흡                     | • 건축물 외관 개선 및 스카이라인 관리                    |
|                  |             | • 부사호, 저수지 등 개방형 경관 형성                 | • 하천 및 저수지 주변의 인공구조물에 대한 경관 개선            |
|                  | 해안경관        | • 리아스식 해안으로 자연형의 조망형 해안경관              | • 다양한 조망경관 연출                             |
|                  |             | • 항포구는 소규모 어선이 진출입하는 고유한 해안경관 형성       | • 그물망 등 경관저해요소의 계획적 관리                    |
|                  |             | • 해안가에 입지한 숙박건축물의 부조화                  | • 주변지역과의 스카이라인 및 경관적 조화 유도                |
|                  | 농경지경관       | • 광활한 개방형경관을 형성                        | • 농경지의 개방형 경관 보전                          |
|                  |             | • 평야지대 간헐적으로 개방형 취락 형성                 | • 전원경관 연출 및 경관 위해건축물의 관리                  |
|                  |             | • 농경지에 대형축사, 공장, 가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경관 훼손    | • 경관저해요소의 계획적 관리 선행                       |
|                  | 취락지 경관      | • 배산임수형의 전통적인 취락경관                     | • 전원적인 농촌경관의 보전·관리                        |
|                  |             | • 농가주택의 획일화, 무질서한 외관 및 색채 부조화          | • 마을특성에 적합한 건축물 경관관리 유도                   |
|                  |             | • 방치된 농자재 및 시설물로 주변 경관 훼손              | • 시선차폐 유도                                 |
|                  | 항·포구 경관     | • 전통적인 어촌경관과 펜션 등의 관광시설 입지에 따른 경관적 부조화 | • 지역특성을 살린 건축물 경관 유도                      |
|                  | 주거지 경관      | • 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입지로 도시경관저해               | • 서천읍, 장항읍 중심의 도시스카이라인 형성 필요              |
|                  |             | • 단독·다세대 주택지 경관불량                      | • 건축물 경관개선 유도                             |
|                  |             | • 기반시설부족, 주거환경 열악                      | • 녹지 확충 및 주거지도로 경관개선                      |

| 구분                  |                         | 분석                                                                     | 계획과제                                                    |
|---------------------|-------------------------|------------------------------------------------------------------------|---------------------------------------------------------|
| 경관<br>자원            | 상업지 경관                  | • 차량중심의 공간조성으로 보행환경 열악                                                 | • 보행 중심의 매력적인 상업가로 형성                                   |
|                     |                         | • 노후된 건축물, 시설물로 경관악화                                                   | • 상업지역 경관정비                                             |
|                     |                         | •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난립                                                      | • 가이드라인을 통한 경관정비                                        |
|                     | 공업지 경관                  | • 평지에 입지 및 개별공업시설 산포                                                   | • 신규 산업단지의 계획적 관리 및 특성화                                 |
|                     |                         | • 농공단지 원경 조망 불량                                                        | • 건축물, 지붕 등의 색채의 조화 유도                                  |
|                     |                         | • 개별 공업시설의 경관불량                                                        | • 산업단지 조성 및 경관관리 강화                                     |
|                     | 도로 경관                   | • 도로변 무질서한 개발로 경관저해                                                    | •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시설물 입지 및 경관 관리                           |
|                     |                         | •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난립                                                      | • 주요 도로변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경관관리                              |
| • 제방도로 조망 양호        |                         | • 도로변 해안조망 공간 조성                                                       |                                                         |
| 역사문화 경관             | • 문화재와 주변지역간의 경관 부조화    | • 주요 문화자원 보존 및 복원 및 주변지역의 일체적 경관관리 추진                                  |                                                         |
|                     | • 중요무형문화자원에 대한 소극적 경관형성 | • 지역테마경관에 대한 일체의 정비 추진                                                 |                                                         |
| 경관<br>구조            | 중점관리 조망점                | • 비인항                                                                  | • 서해 조망형 경관관리, 형태, 배치 등 관리                              |
|                     |                         | • 월하성                                                                  | • 서해 조망형 경관관리, 형태, 배치 등 관리                              |
|                     |                         | • 희리산                                                                  | • 개방형 통경구간 설정, 높이, 형태 등 관리                              |
|                     |                         | • 금강하구둑                                                                | • 길산평야 조망 개방형 경관 관리                                     |
|                     |                         | • 금강(와초)                                                               | • 길산평야 조망 개방형 경관 관리                                     |
|                     |                         | • 천방산                                                                  | • 서천읍 일원 통경구간 설정                                        |
| 경관<br>의식<br>조사      | 대표경관                    | • 금강하구둑, 신성리 갈대밭, 습지보호구역, 천방산, 금강, 봉선지, 흥림지, 월하성, 비인항, 흥원항             | • 우수한 경관에 대한 보전으로 이미지 확립                                |
|                     | 이미지                     | • 관광도시, 생태도시, 해안도시로 인식                                                 | • 경관미래상, 목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하여 계획적 관리                       |
|                     | 경관현황 및 문제점              | • 농어촌 및 해안, 산림 등 자연경관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상업업무, 하천, 가로 등 도시화된 지역에 만족도가 낮음 | • 인공경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경관관리 필요                              |
|                     | 경관관리                    | • 경관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절대적<br>• 전체적인 주민참여의사가 높는데 반하여 참여내용에는 소극적인 태도         | • 적극적인 경관관리 및 경관사업의 추진 필요<br>•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경관홍보의 적극적 추진 |
| 상위<br>및<br>관련<br>계획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 서천군은 서해안권으로서 해양성, 맑고 깨끗한 이미지                                         | • 공공디자인관련 경관설계지침에 반영                                    |
|                     | 충청남도 경관기본 계획            | • 서천군은 서해안권에 속하며,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서해안과 금강의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특화된 경관 연출       | • 경관계획 전반에 반영                                           |
| 사례<br>분석            | 보령시                     | • 팔색보령수필로 미래상 설정<br>•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외에 경관유형별 행정구역별로 경관계획내용 제시         | • 경관실무 지침시 적용                                           |
|                     | 군산시                     | • 금강변의 조망권확보, 보전중심의 계획                                                 | • 금강의 보전중심의 계획 수립                                       |
|                     | 순천시                     | • 권역을 도심권역, 신도심권역, 봉화산권역, 기타권역으로 설정<br>• 자연과 삶, 삶의 다양성을 중시             | • 경관목표설정에서 자연경관에 중점을 두고, 주민 밀착형의 삶의질 향상을 고려             |
|                     | 무안군                     | • 해안, 영산강, 도시경관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과 보전을 분리하고, 경관설계지침 제시                       | • 자연경관의 보전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경관의 조화 유도                         |

## 2) SWOT분석

|                            |                                                                                                                                                                                                                                   |
|----------------------------|-----------------------------------------------------------------------------------------------------------------------------------------------------------------------------------------------------------------------------------|
| <p><b>S</b>trength</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li> <li>• 천혜의 자연경관 등의 볼거리가 풍부하며, 특히 해안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전국적 인지도</li> <li>•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의 새로운 개발로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원활</li> </ul>                               |
| <p><b>W</b>eakness</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도시를 표방하지만, 물적·표상적인 이미지 구축에 한계</li> <li>• 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는 다른 시군과의 유사성(특화성 부족)</li> <li>• 농어촌지역의 시설물·건축물의 개별입지로 인한 경관 훼손 가속화</li> <li>• 서천읍, 장항읍의 주민체감형의 경관형성 미흡</li> </ul>            |
| <p><b>O</b>ppportunity</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도시로의 지속적인 경관관련 제도의 구축</li> <li>• 경관형성 유도에서 규제적 관리가 가미된 계획적 관리로의 강화 추세</li> <li>•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개발행위 축소 및 공공의 역할 증대에 부응한 주민의 참여 기대</li> </ul>                               |
| <p><b>T</b>hrea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인 경관계획 부재로 시가화지역과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조화롭지 못한 산발적, 단편적 개발 우려</li> <li>•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서천군만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주민 밀착형의 상징요소 부재</li> <li>• 주민들에게 경관계획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의견분쟁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시 어려움 예상</li> </ul> |

### 3) 계획과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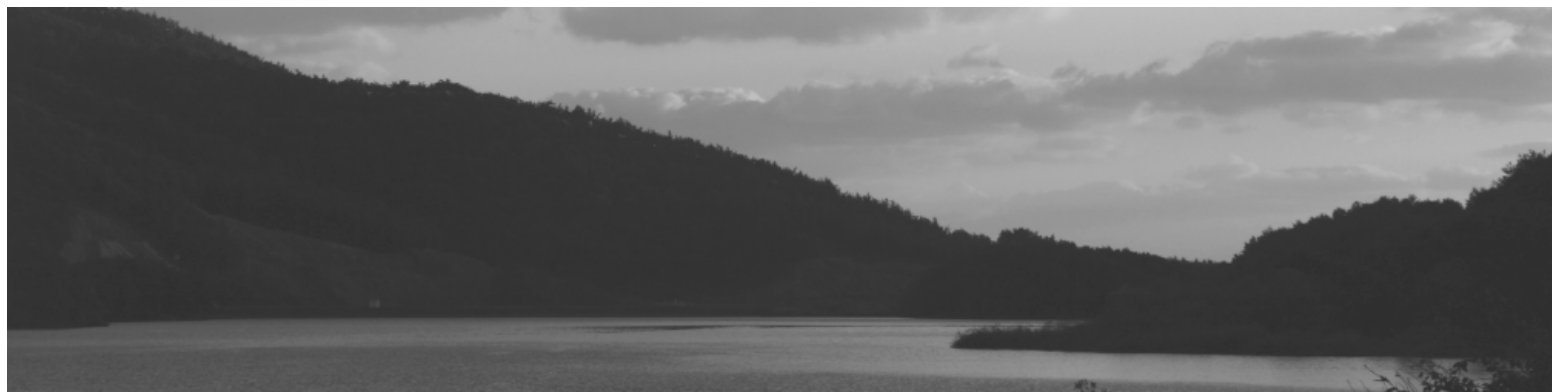
- 강점요소의 보전 및 적극적 활용을 위한 계획과제
- 약점요소의 혁신적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과제
- 기회요소를 극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계획과제
- 위협요소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계획과제

| 계획과제 |                  | 문제점                                                                                                                      | 계획방향                                                                                                                       |
|------|------------------|--------------------------------------------------------------------------------------------------------------------------|----------------------------------------------------------------------------------------------------------------------------|
| 보전   | 우수한 경관자원의 체계적 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선, 산림, 하천의 무계획적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발생</li> <li>•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 부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보존대상인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경관보전 시스템 강화</li> <li>• 서천군에 적합한 경관조례의 제정 및 적용</li> </ul> |
| 관리   | 통합적 경관관리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적, 사업단위별 경관관리 위주</li> <li>• 동질특성의 권역에 의한 경관규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li> <li>• 경관협정의 활성화</li> </ul>                                       |
| 형성   | 도시이미지에 적합한 경관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도시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이에 상응하는 상징경관의 부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의 계획적 관리 강화 및 특화</li> <li>• 미래도시로서 랜드마크적 경관 및 지역주민 밀착형의 경관 창출</li> </ul>      |
|      | 미래도시와 연계한 경관구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천읍, 장항읍 등의 기성시가지의 노후화로 도시 및 가로경관 열악</li> <li>• 시가지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부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자원 연계 및 관광자원화</li> <li>• 도시재생사업 및 가로경관개선과 연계</li> <li>• 도시녹화사업의 추진</li> </ul> |



|                                     |
|-------------------------------------|
| 우수한 경관에 대한 보전 중심의 경관형성              |
| 특성있는 대표 경관의 창출                      |
| 훼손 경관개발행위 예상지역에 대한 경관관리와 강력한 계획적 관리 |
| 아름다운 도시 미래상 수립에 따른 하위 계획 및 수법의 체계화  |
| 경관관련 행정을 통합 적용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

### Ⅲ. 경관기본구상



기본방향 | 경관미래상 및 목표 | 추진전략 | 기본구상 |



## 1. 기본방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 구현을 위해 경관관점에서의 계획방향 제시

- 우리나라의 기존 지역개발은 기능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져, 도시환경 및 농어촌의 질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였음.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및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도시이미지 차원에서 도시정비가 이루어 지도록 함
-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하여 서천군 본연의 도시 특성을 지속가능토록 하며, 관리적 측면에서는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하며, 새로운 경관의 '형성'을 통하여 서천군의 명소 발굴 및 확충

### 아름다운 도시 조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보다는 유도·지원 차원의 경관관리

- 경관관리가 단기간의 규제위주보다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주민이 느끼고 스스로 실천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와 지원 중심으로 계획
- 규제 및 공공기관 위주의 기존 경관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에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관에 대한 가치와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설정된 경관계획의 미래상 및 목표를 실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경관정책 제시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구체적 경관관리구역 설정

- 전체적인 경관자원 및 도시골격 분석을 토대로 서천군의 경관 기본틀이 되는 경관거점, 경관축, 경관권역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관리대상을 중심으로 계획을 구체화하여 체계적 관리
- 경관거점, 경관축, 경관권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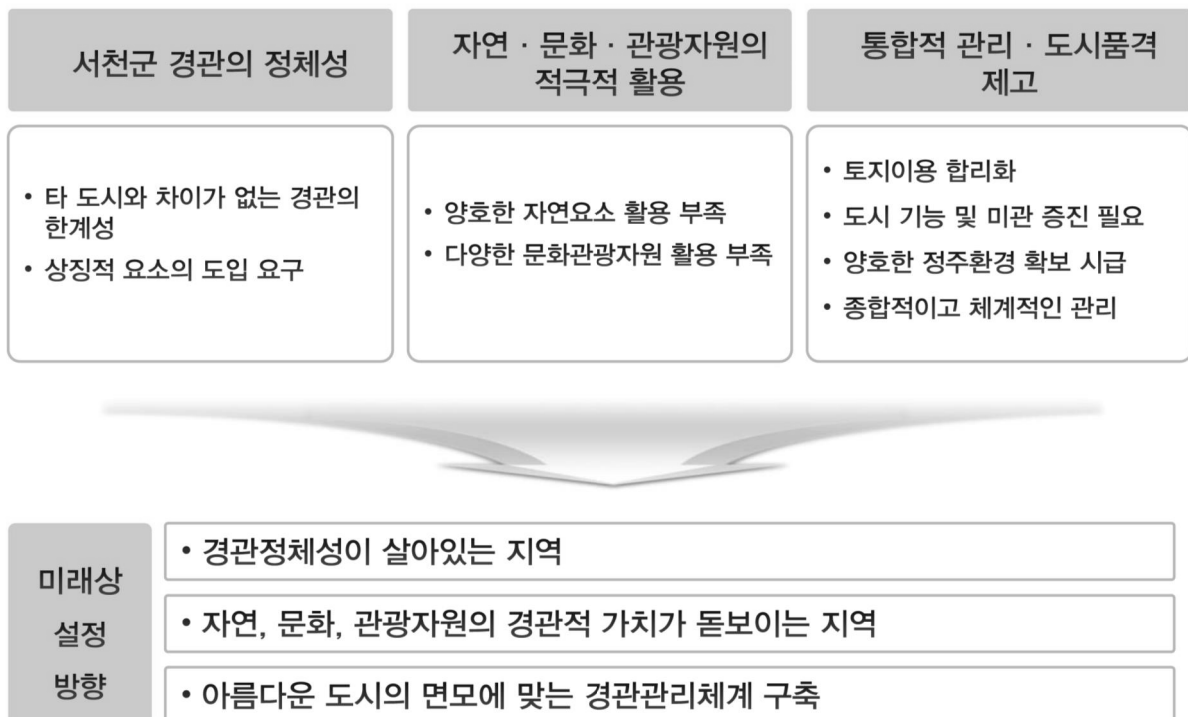
### 주민의 경관의식 조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한 생활밀착형의 경관관리 방안 마련

- 주민의식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서천군의 경관이미지의 변화를 수용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의 설정
- 주민의 창조성을 살리고, 생활 속의 경관을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 2. 경관 미래상 및 목표

### 1) 경관미래상 설정 전제 및 방향

- 서천경관의 미래비전은 서천의 경관적 특성에 기초하여 서천의 특성을 명확히 담아야 함과 동시에 서천의 미래 발전상도 동시에 투영되어야 함
- 첫째, 서천의 정체성 확립,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통합적인 관리부재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서천군만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는 지역, 서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서천의 풍부한 자연요소 및 농어촌 경관과의 연계를 통해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경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와 더불어 서천만의 상징적인 요소를 도입
- 둘째, 서천군은 수려한 강과 산, 청정의 바다가 어우러진 우수한 자연경관과 양호한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체험 여가공간의 확대조성을 통해 품격 있고 특색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임
- 셋째,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서해안의 지역의 거점지역이고, 친환경농업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며, 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 넷째,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 이와 걸맞은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적극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양적 발전과 질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이미지





## 2) 미래상 및 목표

- 서천군 경관계획의 미래상은 앞선 과제도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천의 정체성을 확립
- 자연·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와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구현으로 서천군의 도시 품격을 제고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창출하는 것임
- 서천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져 형성된 환경 친화적인 도시임
-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과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서천 경관의 특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나아가 “서천다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

## “바다, 강, 들, 구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서천”



1

### • 서해 · 금강의 낙조가 아름다운 수변도시 서천

→ 다양하고, 풍부한 서해안 및 금강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활용

2

### • 역사와 경관이 유기적으로 살아숨쉬는 역사문화도시 서천

→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및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역사문화도시 조성

3

### • 산, 구릉, 농경지, 촌락,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 쉼터 서천

→ 풍부한 녹지자원을 활용한 주민 체감형의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의 창출

4

### • 미래를 창조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서천

→ 국립생태원 등의 대안사업과 기존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통합된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

### 3. 추진전략

| 목표                                        | 경관보존                                                                                                                                 | 경관관리                                                                                                                                | 경관형성                                                                                                                                |
|-------------------------------------------|--------------------------------------------------------------------------------------------------------------------------------------|-------------------------------------------------------------------------------------------------------------------------------------|-------------------------------------------------------------------------------------------------------------------------------------|
| 서해금강의<br>낙조가<br>아름다운<br>수변도시              | 주변과 조화로운 해안경관                                                                                                                        | 항·포구의 경관관리 및 개선                                                                                                                     | 표정이 있는 관광 명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경관의 보전 및 복원</li> <li>• 구릉지, 평야, 해안이 어우러지는 해안경관특성 보전</li> <li>• 주요 서해 조망점의 보전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변 옥외광고물 정비</li> <li>• 항·포구 중심의 경관형성</li> <li>• 옥외광고물, 색채가 차별화된 관광명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형 랜드마크 계획</li> <li>• 해안(섬) 관광명소의 경관정비</li> <li>• 테마가 있는 상업지역, 관광지 조성</li> </ul>          |
| 역사와 주변<br>경관이<br>유기적으로<br>살아숨쉬는<br>역사문화도시 | 역사문화공간의 보전                                                                                                                           | 역사문화공간과 주변지역 관리                                                                                                                     | 새로운 역사성의 부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자원의 원형 보전</li> <li>• 역사문화자원 디자인 일체화</li> <li>•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자원 주변 경관관리</li> <li>•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건축물의 높이 등 조망점 관리</li> <li>• 주변 상업·주거시설의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조형물의 설치</li> <li>• 점적자원과 선적 경관자원의 통일성 유지</li> <li>•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화관광 시설 및 가로 조성</li> </ul> |
| 산,구릉,<br>농경지,<br>촌락,바다가<br>어우러진<br>쉼터     | 기존 자연경관의 보전                                                                                                                          | 조화롭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                                                                                                                     | 주변과 조화된 건강한 건축물 조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농어촌 취락경관의 보전</li> <li>• 산으로의 조망을 보전</li> <li>• 주요 수계 주변 녹지 조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지역 개별입지 건축물(시설물)의 근원적 관리</li> <li>• 공개(폐가)의 지속적 관리</li> <li>• 생활문화 공간의 확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건축물의 지속적 개선</li> <li>• 친환경소재의 적극 활용</li> <li>• 친환경에너지의 도입 적용</li> </ul>                  |
| 미래를<br>창조하는<br>친환경<br>녹색도시                | 주요 개발지 주변지역 보존                                                                                                                       | 주민이 참여하는<br>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지역의 농어촌 경관 보존</li> <li>• 주변지역 개별입지 시설물 제한</li> <li>• 주변지역 가로변 건축물(시설물) 제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li> <li>• 도심부 생활문화 공간 확보</li> <li>• 민간건축물 입면의 환경적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마가 있는 상업지역, 관광지 조성</li> <li>• 자연형, 문화형의 테마가 있는 가로 조성</li> <li>• 우수건축물의 지속적 확충</li> </ul>  |

## 4. 기본구상

### 1) 권역 설정 기준

- 서천군에 대한 자원분석 및 시각구조, 상위계획 검토를 통해 경관권역의 범위 설정
- 도시이미지의 인지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질적 경관특성에 따라 권역 구분을 위해,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토지이용, 지형적 특성, 생활권 분포 등을 고려
- 이 외에 서천군의 경관자원 및 시각구조,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생활권과 도시지역 반영, 공간거점의 위치 및 개발 전략, 상위계획의 검토를 통해 경관권역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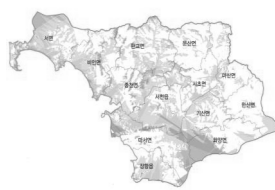
산지분포(표고 100m 이상)



지형구조(경사 0~5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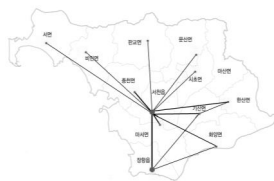
시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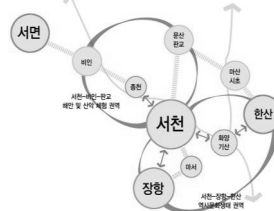
토지피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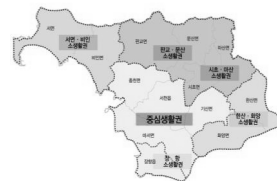
물품구매권



공간구조



생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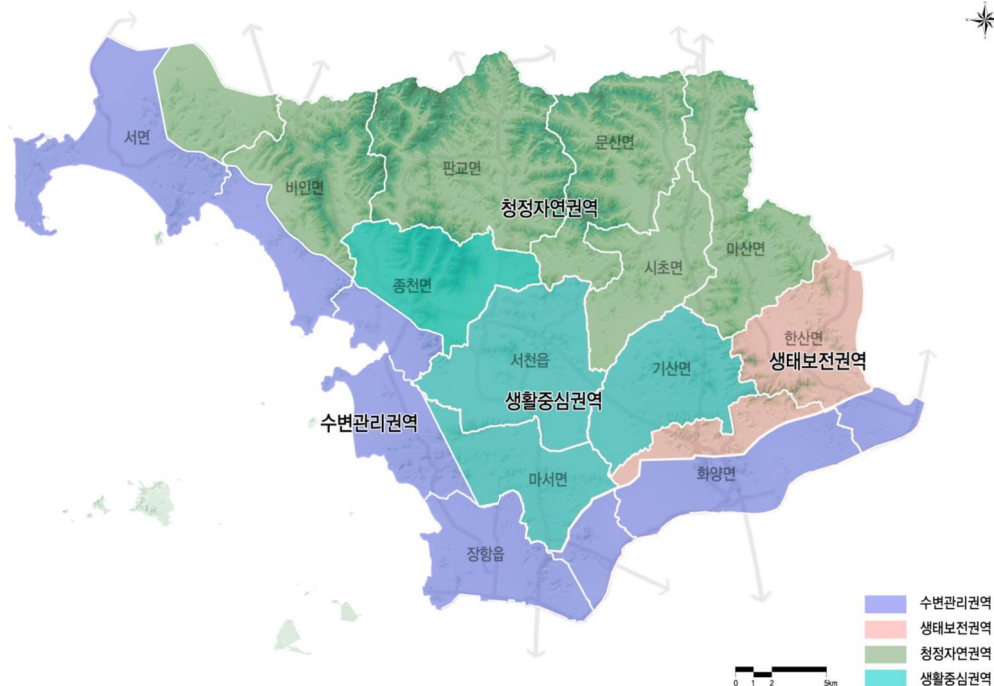
## 2) 경관권역 기본구상

### 설정근거 및 기준

- 경관미래상인 “바다, 강, 들, 구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각 권역의 기본방향으로 경관특성에 부합토록 설정
- 경관권역 설정 기준에 따른 각 권역에 대한 테마 부여
- 수변관리권역 : 푸른 해안과 금강을 중심으로(장항, 서면·비인·종천·마서·화양 일부)
  - 서해안과 금강이 공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청정수변이미지를 살린 권역
- 생태보전권역 : 한산모시와 농경문화 중심(한산, 화양 일부)
  - 한산모시와 사적지 등 녹색문화 이미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역사성을 부가한 이미지를 살린 권역
- 청정자연권역 : 산지, 농경문화 중심(마산, 시초, 문산, 판교, 비인·서면 일부)
  - 현재 산지, 농경지, 호수 등의 청정이미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청정한 이미지를 살린 권역
- 생활중심권역 : 행정과 시가화지역 중심(서천읍, 종천면, 기사면, 마서면 일부)
  - 서천읍을 중심으로 행정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천의 중심적 이미지를 살린 권역

### 경관권역 설정

|        |                                   |
|--------|-----------------------------------|
| 수변관리권역 | 푸른해안과 금강을 중심으로 “해안과 어우러진 휴양권역”    |
| 생태보전권역 | 한산모시와 농경문화 중심으로 “역사를 살리는 녹색문화권역”  |
| 청정자연권역 | 산림경관을 중심으로 “자연과 하나되는 청정문화권역”      |
| 생활중심권역 | 행정과 시가화지역을 중심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커뮤니티권역” |



### 3) 경관축 기본구상

#### 설정근거 및 기준

- 경관축은 동질의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으며, 지역의 경관구조에서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경관자원으로 녹(綠), 수(水), 도(道)를 대상으로 하여 녹지축, 수변축, 도로축을 형성
- 서천군에는 북쪽의 산림경관과 시가지의 녹지를 연결하는 녹지축(동서녹지축/남북녹지축), 항·포구 및 산업단지가 입지한 해안가 및 금강, 길산천 등 주요하천을 따라 수변축(해안경관축/금강수변축/지천축), 통과교통이 많거나 우수한 경관특성을 지닌 도로에 도로축(상징가로축/해안도로축/역사문화가로축)을 설정함

#### 경관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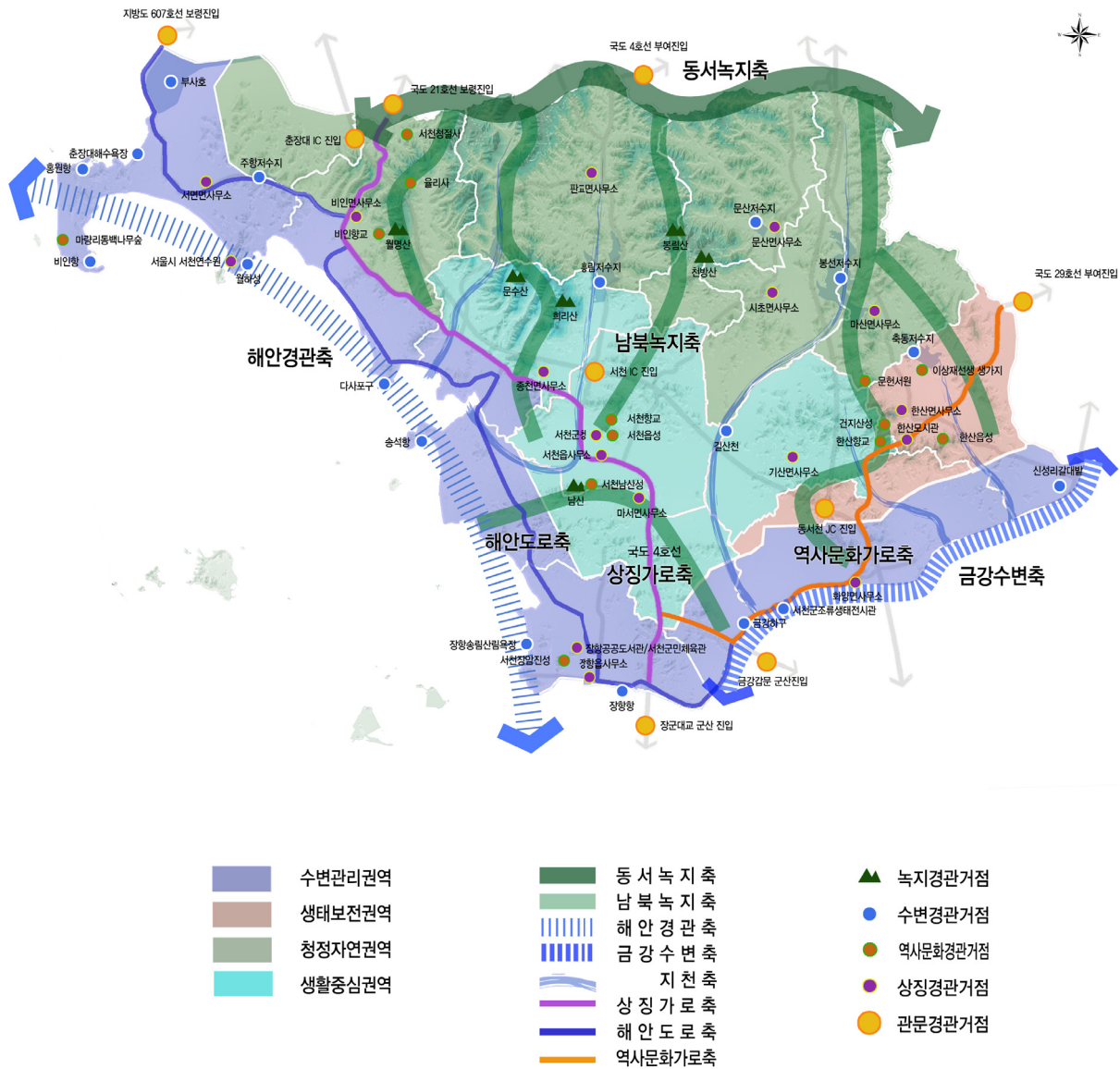
|       |         |                                       |
|-------|---------|---------------------------------------|
| 녹지축   | 동서녹지축   | 비인면-판교면-문산면을 잇는 동서녹지축                 |
|       | 남북녹지축   | 월명산, 문수산, 희리산, 천방산, 봉림산, 남산에 의한 남북녹지축 |
| 수변축   | 해안경관축   | 장항읍-마서면-종천면-비인면-서면을 잇는 해안경관축          |
|       | 금강수변축   | 한산면-화양면-마서면을 잇는 금강수변축                 |
|       | 지천축     | 당산천, 광암천, 길산천, 판교천, 종천천 등 지천축         |
| 도로경관축 | 상징가로축   | 서천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국도4호선, 21호선            |
|       | 해안도로축   | 해안도로를 잇는 지방도 601,617호선 및 해안도로         |
|       | 역사문화가로축 | 장항-마서-화양-한산면을 잇는 역사가로축                |







## 서천군 경관구상도









## IV. 경관계획

경관권역계획 | 경관축계획 | 경관거점계획 |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 위해경관요소 관리방안



# 1. 경관권역계획

## 1) 기본방향

- 경관권역별로 테마를 부여하여 특색 있는 권역경관 연출
- 각 권역별로 경관자원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
- 4권역의 개성 있는 경관연출과 연속성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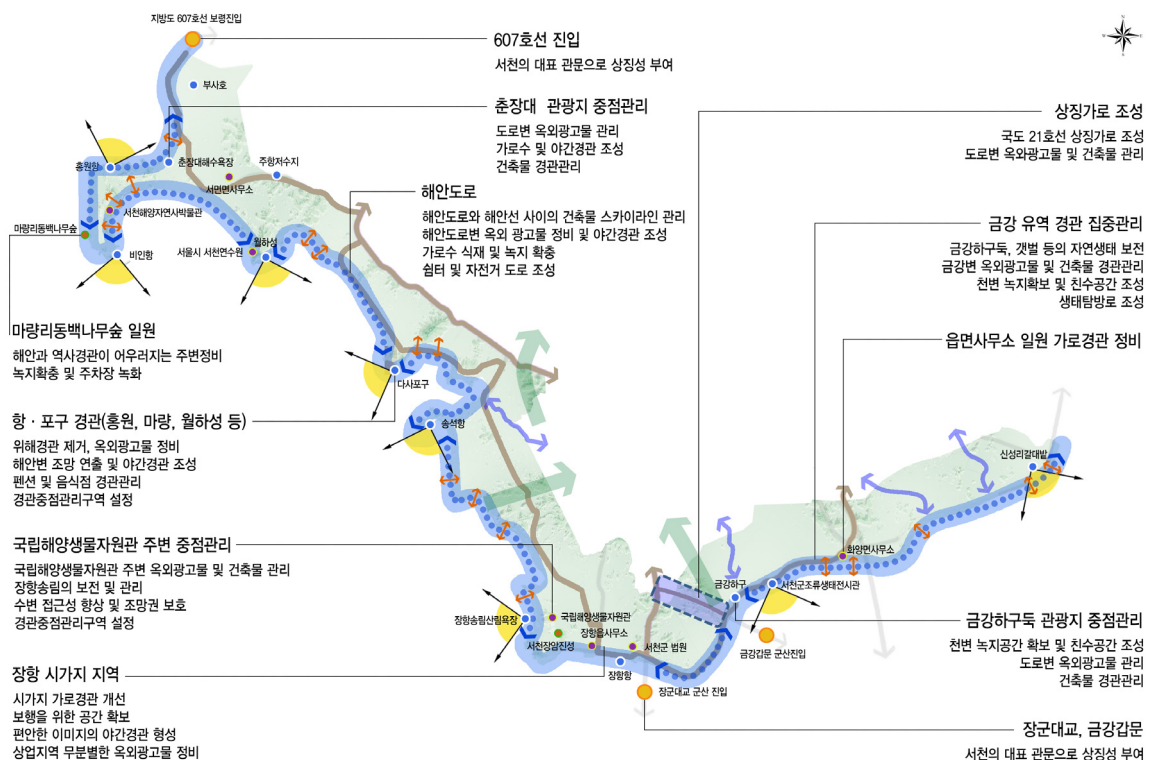


## 2) 수변관리권역

# 푸른 해안과 금강 중심의 “해안과 어우러진 휴양권역”

### 기본방향

| 구분       |    | 내용                                   |
|----------|----|--------------------------------------|
| 명칭       |    | 수변관리권역                               |
| 범위/경계    |    | 장항읍 및 서면, 비인면, 종천면, 마서면, 화양면, 한산면 일부 |
| 컨셉       |    | 관광, 휴양, 보전                           |
| 기본<br>방향 | 보전 | 해안변, 금강변 우수경관 보전                     |
|          | 관리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인공경관 적극적인 관리            |
|          | 형성 | 서해안변 상징가로 조성 및 매력적인 수변경관 조성          |



check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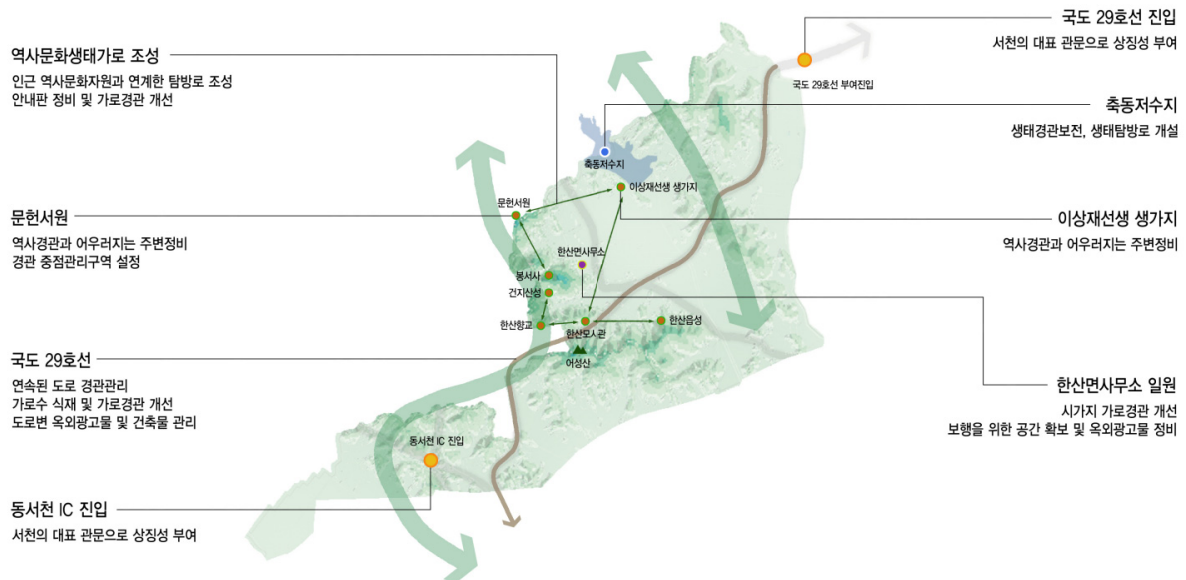
| 키워드                                      | 계획내용(지침)                               | 비고              |
|------------------------------------------|----------------------------------------|-----------------|
| 해안변<br>우수경관 보전<br>(보전)                   | · 해안도로변 건축물 스카이라인 보전                   |                 |
|                                          | · 해안 주변 구릉지 개별입지 제한                    |                 |
|                                          | · 서해안으로의 조망점 관리                        |                 |
|                                          | · 금강변 농경지 개별입지 제한                      |                 |
|                                          | · 금강 및 서해 유입하천 하천경관 보존                 |                 |
|                                          | · 농경지의 건축물 · 시설물(창고, 축사, 공장)등의 개별입지 제한 |                 |
|                                          | · 항 · 포구경관 보전                          |                 |
| 이미지 창출을<br>위한<br>인공경관의<br>적극적 관리<br>(관리) | · 부사호, 춘장대 해수욕장, 흥원항, 비인항의 옥외광고물 정비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춘장대 관광지 중점관리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변 중점 관리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국립생태원 진입(국도21) 옥외광고물 관리 및 위해 건축물 차폐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금강하구둑 관광지 중점 관리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금강 및 서해안 도로변(국지도68) 친수경관 관리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장항 금강 및 서해안 도로변(국지도68) 친수경관 관리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펜션 및 음식점의 경관관리 및 옥외광고물 관리            |                 |
| 매력적인<br>수변경관 및<br>도심부 경관형성<br>(형성)       | · 장항읍 등 공유수면 매립지 매력적인 경관 형성            |                 |
|                                          | · 해안 관광지 및 항 · 포구변 야간조명 설치             |                 |
|                                          | · 마량리 동백나무숲 일원 주변 정비                   | 서천화력<br>대안사업 대응 |
|                                          | · 부사호(지방도607) 진입부 상징조형물 설치             |                 |
|                                          | · 해안도로변 가로수길 조성                        |                 |
|                                          | · 해안변 조망 데크 및 관찰 데크 등의 친수시설 도입         |                 |
|                                          | · 장항읍 시가지 가로경관 개선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국립생태원 진입(국도21) 상징가로 조성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관광지 및 장항읍의 녹지네트워크(녹지 확충) 및 주차장 녹화    |                 |
|                                          | · 장항읍 버스 정류장 정비                        |                 |
|                                          | · 장항읍 야간경관 형성                          |                 |

### 3) 생태보전권역

## 한산모시와 농경문화 중심의 “역사를 살리는 녹색문화권역”

## 기본방향

| 구분       |    | 내용                                     |
|----------|----|----------------------------------------|
| 명칭       |    | 생태보전권역                                 |
| 범위/경계    |    | 한산면, 화양면 일원                            |
| 컨셉       |    | 역사, 문화, 생태, 농촌경관                       |
| 기본<br>방향 | 보전 | 역사문화자원 및 산지·농경지의 보전                    |
|          | 관리 | 한산면 중심의 역사문화자원을 정비하여 서천군을 대표하는 역사경관 형성 |
|          | 형성 | 그린·생태이미지를 도입한 권역 경관 형성                 |



## Check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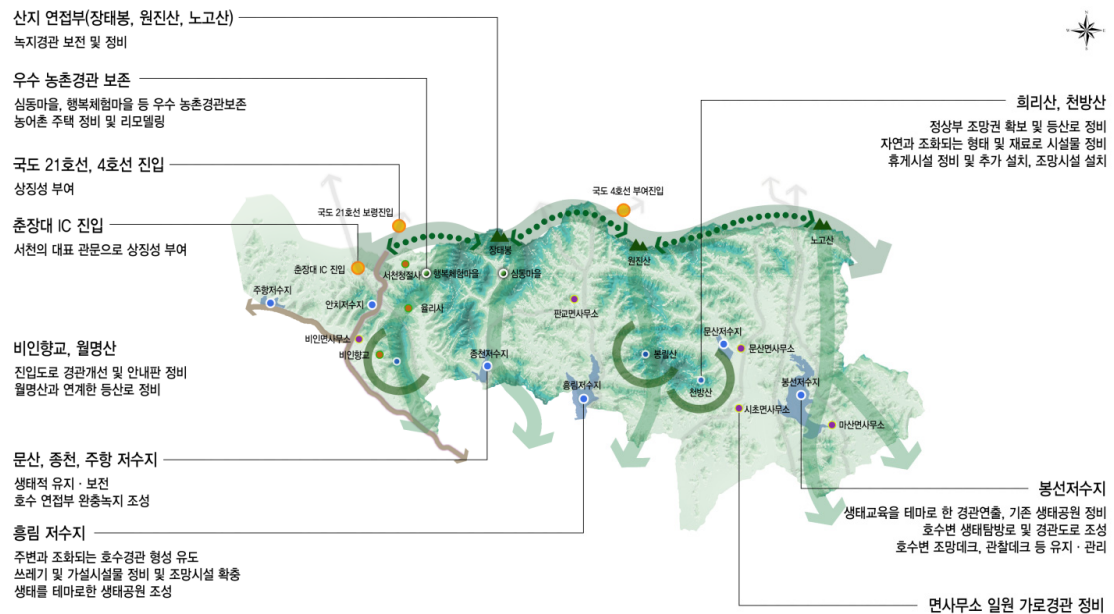
| 키워드                         | 지침내용                                                  | 비고       |
|-----------------------------|-------------------------------------------------------|----------|
| 역사문화자원 및 산자농경지 보전 (보전)      | · 축동저수지 일원 저수지 경관 보전                                  |          |
|                             | · 문화재(문헌서원, 이상재선생 생가지, 봉서사, 건지산성, 한산향교, 한산 모시관) 원형 보존 |          |
|                             | · 문헌서원 진입로 이미지 고양을 위해 농촌경관 보전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한산모시관 일원 경관 보전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건지산, 어성산으로의 조망경관 보호                                 |          |
| 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대표 역사경관 형성 (관리) | · 건지산 등산로의 정비 및 개설을 통한 접근성 향상                         |          |
|                             | · 기존 주변 산림의 전망대 이용활성화를 위한 안내시설 설치                     |          |
|                             | · 건지산에서 시가지를 조망하기 위한 전망대 설치                           |          |
|                             | · 심플한 가로시설물 디자인으로 가로경관 관리                             |          |
|                             | · 국도29호선 도로 주변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관리                         |          |
| 그린·생태이미지 도입 및 경관형성 (형성)     | · 한산면소재지 진입부의 상징조형물 설치                                |          |
|                             | · 읍·면소재지의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휴게 공간 조성                       |          |
|                             | · 한산모시관 야간조명을 특화하여 이미지 강화                             |          |
|                             | · 문헌서원 등 역사문화자원의 야간조명을 업라이팅 연출하여 상징성 강화               |          |
|                             | · 축동저수지 주변 생태교육을 테마로 생태공원 및 경관 연출                     |          |
|                             | · 한산면소재지의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정비                               |          |
|                             | · 주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가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보도 포장 패턴의 차별화         |          |
|                             | · 동서천 IC 진입부 상징조형물 설치                                 |          |

#### 4) 청정자연권역

### 산림경관을 중심으로 “자연과 하나되는 청정문화권역”

#### 기본방향

| 구분       |    | 내용                                    |
|----------|----|---------------------------------------|
| 명칭       |    | 청정자연권역                                |
| 범위/경계    |    | 마산면,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 비인면, 서면 일원       |
| 컨셉       |    | 생태, 문화, 산림                            |
| 기본<br>방향 | 보전 | 산지 및 농촌경관 등 자연경관 보전 및 연결부 경관관리        |
|          | 관리 |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면소재지, 저수지)의 인공경관 관리 |
|          | 형성 | 그린·생태이미지를 도입한 산림권역 형성                 |





## Check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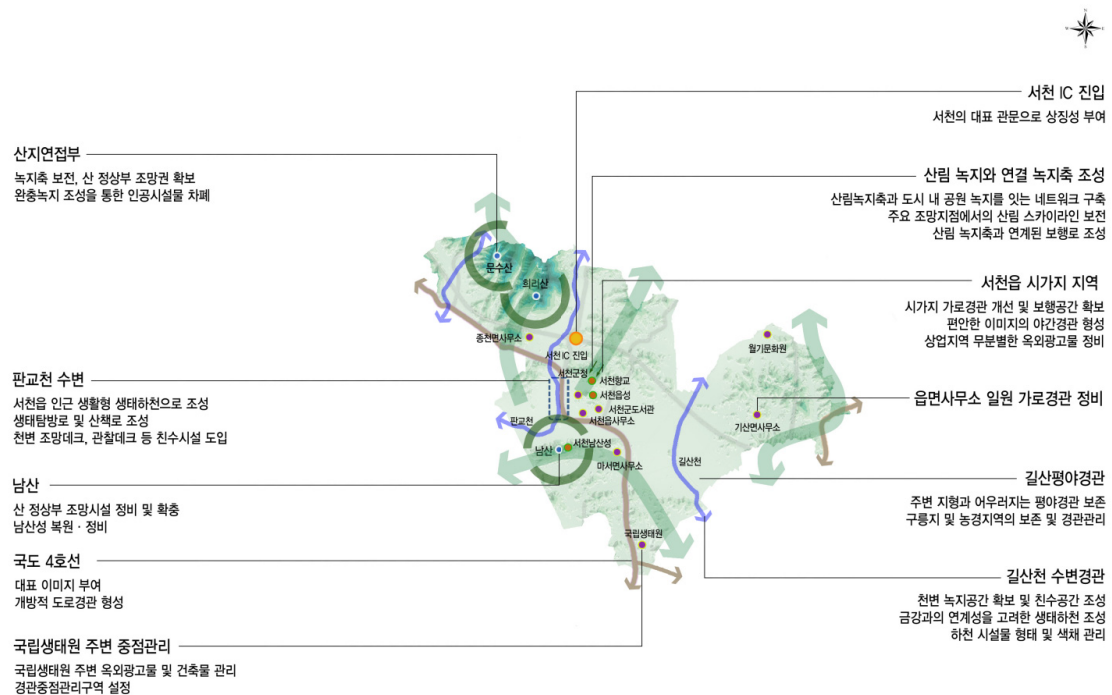
| 키워드                                | 지침내용                                         | 비고       |
|------------------------------------|----------------------------------------------|----------|
| 산림경관 보전 및<br>연접부 관리<br>(보전)        | · 주요 산악 조망점(봉림산, 천방산, 희리산, 원진산, 장태봉) 조망경관 보전 |          |
|                                    | · 주요산림경관 보전(난개발 관리)                          |          |
|                                    | · 산림지역 축사(양계사, 돈사 등)의 개별입지 관리                |          |
|                                    | · 흥림, 봉선, 종천 저수지 등 수변경관 보전                   |          |
|                                    | · 지방도 가로경관 보전                                |          |
|                                    | · 비인향교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                           |          |
|                                    | · 우수 농촌마을(심동, 행복마을 등) 농촌경관 보전                |          |
| 개발압력이 높은<br>지역의 인공경관<br>관리<br>(관리) | · 흥림저수지 등 수변경관의 계획적 관리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지방도변 공가(폐가) 정비                             |          |
|                                    | · 면사무소(시초, 문산, 판교, 비인) 일원 가로경관 정비            |          |
|                                    | · 저수지변 쓰레기 및 가설시설물 관리                        |          |
| 그린·생태이미지<br>도입한 산림권역<br>(형성)       | · 저수지변 조망데크, 관찰데크 등 유지 관리                    |          |
|                                    | · 저수지변 야간경관 연출                               |          |
|                                    | · 주요산 등산로 휴게시설 정비 및 추가 설치                    |          |
|                                    | · 주요산 정상부 조망시설 설치                            |          |
|                                    | ·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교육을 테마로 생태공원 및 경관 연출            |          |
|                                    | · 호수변 생태탐방로 및 경관도로 조성                        |          |
|                                    | · 호수변 조망 데크 및 관찰 데크 등의 친수시설 도입               |          |

## 5) 생활중심권역

행정과 시가화지역 중심의 “자연과 어우러진 커뮤니티 권역”

## 기본방향

| 구분       |    | 내용                            |
|----------|----|-------------------------------|
| 명칭       |    | 생활중심권역                        |
| 범위/경계    |    | 서천읍 / 마서면, 종천면, 기산면 일원        |
| 컨셉       |    | 행정, 업무, 주거                    |
| 기본<br>방향 | 보전 | 산지, 농경지 등 자연경관 보전             |
|          | 관리 | 기존 시설을 정비하여 이미지 개선, 세련된 경관 형성 |
|          | 형성 | 역동적 이미지를 부여하여 상징적 이미지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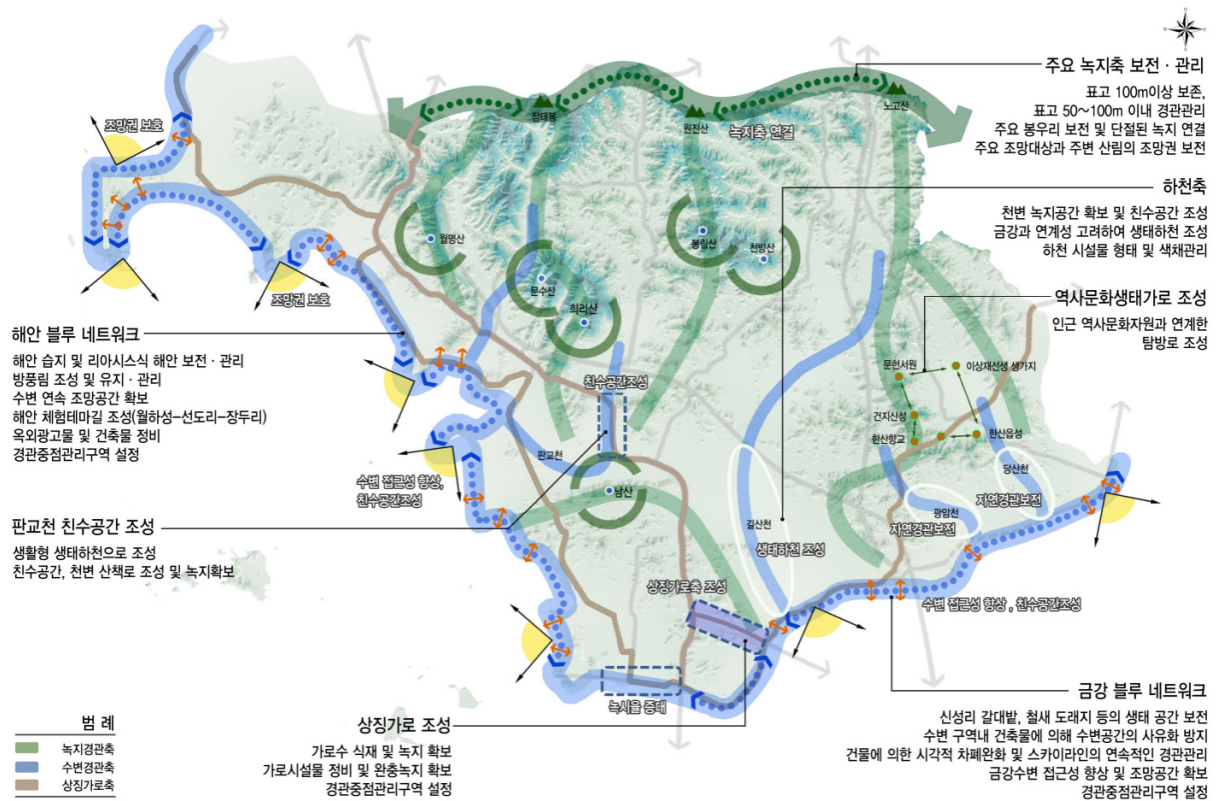
## Check list

| 키워드                             | 지침내용                               | 비고       |
|---------------------------------|------------------------------------|----------|
| 자연경관 보전<br>(보전)                 | · 문수산, 희리산, 남산으로의 조망권 확보           |          |
|                                 | · 주요 조망점에서 남산, 희리산으로의 통경축 확보       |          |
|                                 | · 희리산으로의 스카이라인이 조망 가능토록 건축물 높이 관리  |          |
|                                 | · 남산성 복원 정비                        |          |
|                                 | · 길산평야경관 보전                        |          |
|                                 | · 길산천 수변경관 보전                      |          |
| 기존 시설<br>정비하여 이미지<br>개선<br>(관리) | · 희리산 등 기존 등산로의 정비 및 개설로 접근성 향상    |          |
|                                 | · 판교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그린 네트워크 형성        |          |
|                                 | · 서천읍내 풍부한 식재 조성 및 가로경관 관리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서천읍내 공휴지의 재활용 및 경관 개선            |          |
|                                 | · 터미널 및 시가지의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정비         |          |
|                                 | · 보도포장 패턴의 차별화                     |          |
|                                 | · 서천읍내 가로에 주변 녹지와 연결되는 가로수 녹지축 형성  |          |
|                                 | · 심플한 가로시설물 디자인으로 가로경관 형성          |          |
|                                 | · 국립생태원 주변정비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마서면, 종천면, 기산면소재지 일원 가로경관 정비      |          |
| 역동적 이미지를<br>부여한 경관형성<br>(형성)    | · 서천읍 진입부에 야간조명을 특화하여 진입부 상징성 강화   |          |
|                                 | · 기존 공공건축물 활용하여 야간경관 형성            |          |
|                                 |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
|                                 | · 공공기관 부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          |
|                                 | ·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교육을 테마로 생태공원 및 경관 연출  |          |
|                                 | · 호수변 생태탐방로 및 경관도로 조성              |          |
|                                 | · 호수변 조망 데크 및 관찰 데크 등의 친수시설 도입     |          |
|                                 | · 길산천 하천시설물을 조성하여 생태하천으로 조성        |          |

## 2. 경관축 계획

### 1) 기본방향

- 보전 : 녹지를 활용한 Green Network와 서해와 금강을 잇는 Blue Network 형성·보전
- 관리 : 기존 도로를 특화된 가로수길로 조성
- 형성 : 역사·문화 등 상징가로축을 조성하는 등 구간별 테마를 도입한 다양한 경관 연출



## 2) 녹지 경관축

### 계획방향

- 서천군 경관골격을 이루는 자연자원으로서 자연적인 지형지세를 보전·관리함
- 기존의 녹지자원을 활용하여 녹지네트워크 조성
- 녹지경관축은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와 도심 내 녹지와 연계방안, 가로수와 도심 내 공원 등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녹색도로와의 연계방안을 제시
- 녹지시설 및 개발규제를 통한 시각적인 녹지축 연장선을 확보하여 녹지축 경관을 형성함
- 산악경관과 연접하는 시가지 외곽부 및 중심부의 녹지시설을 조성함
- 가로수 식재패턴의 다양화를 통한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함

### 계획내용

#### 녹지축에 대한 개방감, 안내체계 마련

- 녹지축의 활성화와 이용증진을 위해 녹지축으로의 접근성 및 개방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검토
- 시각적 범주 밖의 장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내시스템(사인, 바닥포장, 식재 등) 구축

#### 서천군을 아우르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 시가지내 분포하고 있는 공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원녹지의 효과 증대와 이용성 증진
- 녹지네트워크 상에 단절된 공간은 추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기부채납 등) 모색
- 생태적 개념의 녹지네트워크는 장기적 플랜으로서 지속적인 정책의지가 선행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경관적 차원에서는 시각적 녹지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이를 네트워크화 함

#### 외곽의 주요 산 및 도심내 구릉지 공원의 조망 확보

- 도시공간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외곽산지축의 산악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하는 통경축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통한 경관의 녹시율을 확보하도록 함
- 효과적인 통경축 구성을 통해 인공과 자연의 리듬감 있는 경관창출을 유도하고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녹지조망점을 선정
- 한번 훼손된 조망권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양호한 조망축을 미리 발굴하여 보전, 관리함

#### 녹지축 접근을 위한 보행공간의 조성

- 녹지축으로의 원활하고 쾌적한 보행접근을 보장하고, 녹지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행공간 및 자전거도로 조성 등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
- 보행루트 선정시, 상업, 문화 등 시민의 다양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함

#### 공공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 도입

- 공공건축물에 옥상녹화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민간건축물로 확대 및 유도

- 옥상녹화 공간 중에 공공성이 강한 곳에서 조망명소를 계획, 민간에게는 경관협정을 통해 경관조망자원이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녹지경관 복원 및 형성

- 인위적 조림행위를 지양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경관복원
-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녹지경관 차폐시설물 및 가로수의 정비를 통한 녹지경관 형성
- 주요 도로 및 시가지에서의 원경으로의 녹지경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녹지경관 조망축을 설정하여 관리

## 3) 수변 경관축

### 계획방향

- 수변축은 자체로도 매력적인 경관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수변축으로의 조망기회를 증가시켜 쾌적한 경관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부와 도시 내부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수변의 좌우가 개방적인 경관을 이루는 특징이 있음. 이를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수변 공지의 활용방안 제시
- 수변축으로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수변공간에 대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휴게시설, 교량 등을 정비
- 수변축의 상징성 및 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교량디자인 특화 및 상징조형물의 설치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며, 조형물, 분수시설, 야간조명 등 인공시설물을 이용한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고자 함

### 계획내용

#### 서해안-금강의 Blue Network를 대표 수변축으로 조성

- 서해안의 부사방조제부터 금강의 신성리 갈대밭까지 서천군을 대표하는 수변축으로, 서천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부 관광객의 활동이 가장 많은 곳으로 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

#### 다양한 주민활동의 중심지로 조성

-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용도, 즉 문화, 공공, 여가, 휴식 등의 용도가 어우러진 생태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

#### 주민들이 즐겨찾은 오픈스페이스의 기능 강화

- 현재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휴식,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생기를 부여하는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에 충실

#### 접근하기 쉽고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 조성

- 시가지에서의 수변 접근로 정비(보행로 확보, 산책로 조성,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
- 수변으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접근로 설치
- 조망점 설정을 통한 경관축 확보 및 조망경관 관리

### 하천변 경관 관리

- 물이 풍부한 수변경관을 지향하고 타 계획과 연계한 수량 확보방안 마련
- 수변경관자원 주변의 음식점, 숙박시설, 유원지 등에 대한 건축물의 규모 및 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 수변경관자원변 안전시설물(가드레일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노후시설물 정비 및 자연 친화형 시설물 설치

### 수변경관 개선을 위한 친환경 경관시범사업 실시

- 수변 생태계를 이용한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등 친환경 경관사업 실시
- 수변경관 우수공간을 조망점으로 지정 검토
- 수변산책로, 데크 설치를 통한 수변접근성 확보
- 해안 경관축 형성 : 이야기가 있는 해안경관도로 조성

### 풍부한 수변공간으로서의 접근성 강화

- 해안 및 하천의 제한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성 향상방안을 모색함
- 친수공간으로 접근하는 보행로를 신설하고 주변 녹지축과 연계함
- 폭넓은 수변공간을 자연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전망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고, 생태적 가치를 활용하여 생태 학습 및 체험공간도 함께 조성

### 수변공간 주변의 물리적 규제수단 마련

- 수변공간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변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 입면적 제한, 조망계획 등 물리적 규제지침을 마련함

## 4) 가로 경관축

### 계획방향

- 가로 경관축은 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로공간이 기존 차량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등 녹색교통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 특성을 부각하며, 진입공간이나 교차로, 그 외 경관거점 등과의 연계성을 도모하여야 함. 또 일부 상징성 높은 가로의 경우 주변 녹지와 연계 방안을 모색함
- 경관축의 보호를 위하여 수목 식재를 통하여 불량경관을 차폐
- 경관축과 연계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 및 자전거도로 등 조성
- 도로축 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도로연접부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저층배치를 유도하며, 필요시 사선제한을 함으로써, 전면 혹은 측면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동시에 주요 조망대상으로의 조망기회를 확보함
- 경계부, 교차부의 인지성 강화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 가로시설물 디자인 특화를 통해 상징적 도로경관을 형성함
- 도로축 녹지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녹지축과 연계한 완충녹지대 조성 등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친환경적 도로축 경관을 형성함
- 경관축(또는 조망축)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투시형 방음벽을 설치

### 계획 내용

#### 상징 가로축

- 가로의 상징성 및 경관특성 강화를 통해 서천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로환경의 정연함과 원활한 소통 도모
- 가로의 방향인지와 장소식별을 위한 사인시스템 및 교차로 경관특성화 등 검토
-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을 가로특성에 맞게 정비
- 가로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경관연출 차별화

#### 역사 문화축

- 서천군 고유의 역사경관자원을 바탕으로 가로특성에 맞는 경관을 연출하고, 시각적 정연함과 쾌적성을 증진시킴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특색있고 정연한 가로환경
- 역사체험과 향유를 위한 가로경관 정비와 개방성 확보
- 가로변 역사문화자원의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해 유도, 안내사인기능을 도입
-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등의 최소화를 통해 시각적 간섭 방지

#### 자연자원과 조화되는 도로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 도로 설치 시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절토면 최소화
- 도로시설물(방음벽, 가드레일 등) 설치 시 자연재료, 자연색 사용 권장 및 반사재 사용 지양, 도로시설물 특성상 투명재료 및 무채색 등의 사용 권장
- 교량 및 터널 입구 등의 대규모 인공구조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 위압적 경관의 완화

- 완충녹지대 조성 등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친환경적 도로경관 연출
- 가로시설물의 환경디자인을 통한 가로환경의 질 향상
- 통과교통의 도로경관 조성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한 상태에서 가로수, 대형 건물 등 배치
- 교각 하부를 문화, 상업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이용
- 차폐감과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색채계획과 구조물 디자인 계획 필요
- 개발 대상지는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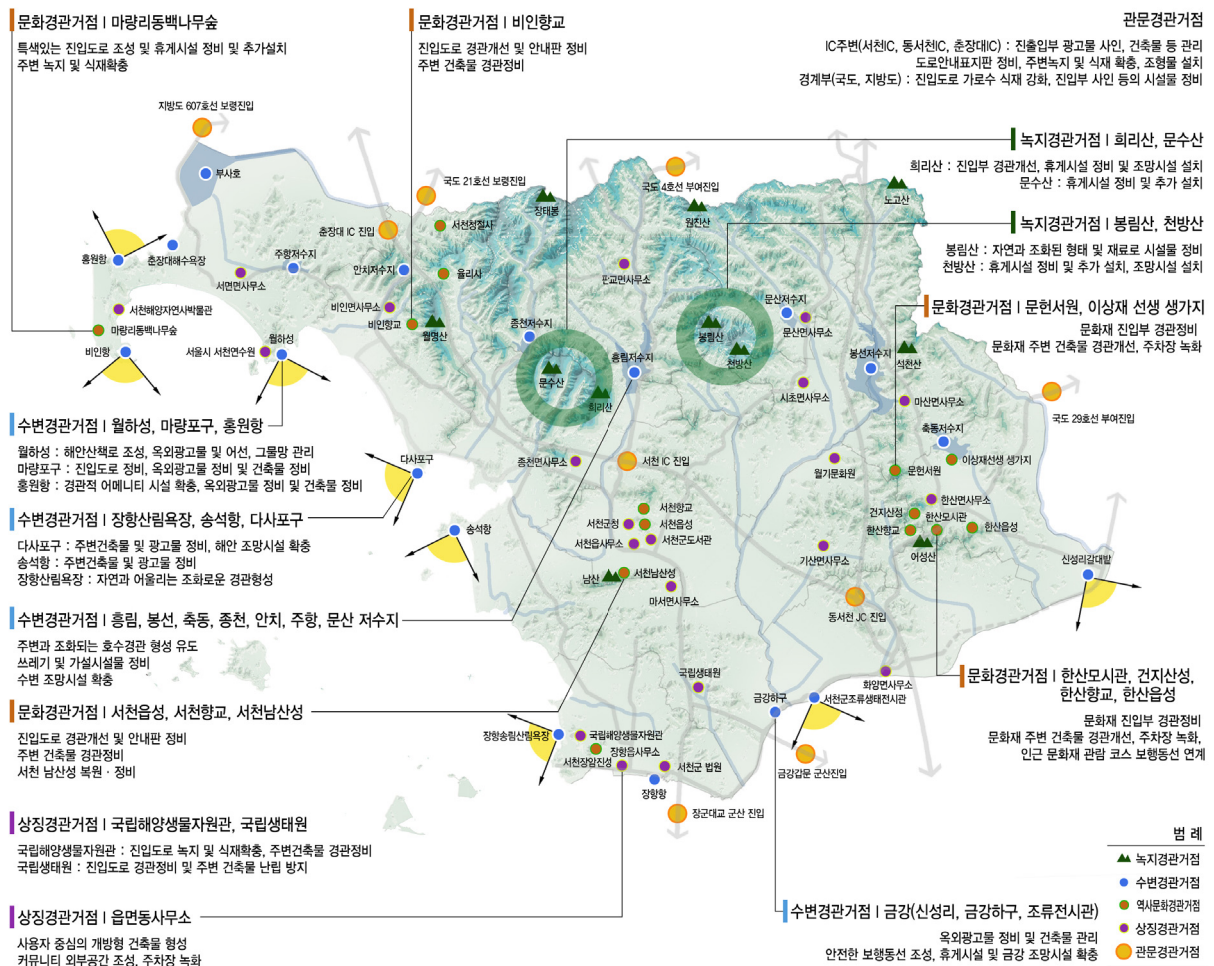
## Check list

| 키워드   | 지침내용                                          | 비고 |
|-------|-----------------------------------------------|----|
| 녹지경관축 | • 산지로의 도시형 녹지축을 설정하고 연결형 녹지축 조성               |    |
|       | • 산으로의 도시형, 택지형, 블록형, 연결형 통경축을 확보             |    |
|       | • 자연산지와 시가화지역간의 단절구간 연결                       |    |
| 수변경관축 | • 자연형단면, 친수공간, 주변시설물 등의 경관관리                  |    |
|       | • 서해안-금강 및 유입 하천의 주변지역과 연계 및 식재 공간 확보 등의 경관관리 |    |
|       | • 하천의 상류지역 생태측면을 고려한 자연형 하천 도입                |    |
|       | • 자연환경 우수지역은 최대한 경관 보전                        |    |
| 도로경관축 | • 고속도로변의 인공구조물, 건축물, 진입경관 관리                  |    |
|       | • 주간선도로 등 테마를 부여한 가로경관의 연출 및 녹지축 조성           |    |
|       | • 장항읍,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 녹시울 증대                    |    |
| 상징가로축 | • 국립생태원 진입로 등 대표가로축으로 형성                      |    |
| 생태회랑축 | • 해안 Blue Network                             |    |
|       | • 금강 Blue Network                             |    |
|       | • 판교천 친수공간                                    |    |
|       | • 길산천 생태 하천축                                  |    |
|       | • 역사문화생태가로(한산면 일원)                            |    |

### 3. 경관 거점계획

#### 1) 기본방향

- 보전 : 녹지거점을 중심으로 서천의 특색 있는 거점공간 특화
- 관리 : 거점을 공간화하여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 형성 : 거점 간 루트를 연결하여 네트워크 형성



## 2) 자연 경관거점

### 자연경관 보호 및 인공경관의 조화 도모

- 경관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경관자원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 각각의 거점이 형성하고 있는 자연성 보호

### 인접 경관자원과의 연계성 확보 및 통합적 관리

- 인접한 경관자원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감 형성을 위한 통합적 경관관리

###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 형성

- 배경경관(figure-ground)의 연출, 초점경관 형성, 상징적인 장소성 확보 등 특징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공간에 대한 조망경관 보호

## 3) 역사문화 경관거점

### 역사문화자원의 분위기와 조화되는 주변 경관을 형성

- 역사문화재가 갖는 고유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압박감이나 이질적인 재료사용을 최소화하여 역사 문화재와 건축물, 시설물의 조화를 꾀함
- 역사문화재 주변 개발시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고려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며 고유의 가로 규모나 필지체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배려

### 역사문화자원 자체의 경관 향상

- 관리가 소홀한 역사문화자원의 내부의 시설물, 식재 등을 정비하고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매력적인 장소로서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향상시킴

### 기존, 신규 건축물 관리

- 역사문화자원과 연속적이고 유사한 경관형성을 위해서 신규 건축행위시 기존자원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를 위해 신규 건축물의 규모, 높이, 재질, 형태, 배치, 외부 공간, 야간경관, 식재 등 역사문화재의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 보존해야할 근대건축물, 문화재 주변의 기존건축물의 입면을 정비하여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미지 형성

### 역사경관자원의 인지성 강화

- 역사경관자원의 위치 및 가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진입도로에 자원의 역사적 배경, 유래, 관련자원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가 담긴 안내판을 설치
- 진입도로에서 역사경관자원이 잘 보이도록 통경축을 확보하는 등 조망을 고려하여 인지성을 강화시킴

### 역사경관자원 내부에서의 조망 고려

- 역사경관자원 내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외부시가지에 대한 경관을 관리하며 주변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 상대적 왜소감과 압박감을 최소화함
- 역사문화자원 주변지역 개발시 조망점을 대상지 내부로 지정하여 경관시뮬레이션을 의무화 함

### 역사경관분위기의 연속성 유지

- 외부공간 및 개별건축, 가로시설물, 공공시설을 정비할 경우 바닥포장재, 벽재, 지붕에 공통적 소재를 사용하여 역사경관분위기의 연속성 유지

### 역사경관자원 주변 공원화 사업

- 경관자원의 역사성이 주변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사문화경관자원의 주변 토지이용 및 자원의 중요성, 성격을 고려하여 주변공간을 공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

### 고유한 필지규모의 관리를 통한 무분별한 대형개발 제어

- 시대적 가로분위기의 기초 구조를 이루는 가로 폭과 필지의 크기를 보전함
- 무분별한 필지합벽을 지양하고 현재의 대지기준으로 획지계획을 수립함

## 4) 상징 경관거점

### 의미 및 대상

- 상징(지표) 경관거점은 도시를 대표하는 경관자원, 상징성이 있는 장소로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장소로서 상징성이 부여되어야 함
- 기념탑, 광장, 교량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우세하여 랜드마크가 되거나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공간 및 장소에 설정할 수 있음

### 자원이 가진 상징성 강화

-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는 다양한 랜드마크를 활용하여 도시경관 및 이미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자원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의 정체성 확립 및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킴
- 주요 진입로, 진입광장에 강한 비스타를 느낄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경관거점 내부에서의 상징성을 강화함

### 주변 건축물, 경관관리의 기준점

- 지표적 경관거점 중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내부에서의 조망이 중요함. 따라서 진입광장, 조망장소, 전망대에서 주변으로의 조망 관리가 필요하므로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함
- 추후 주변 개발사업의 영향평가 및 심의 시 조망점으로 활용

### 시가지에서의 양호한 조망 보호

- 높은 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표적 경관거점이 잘 조망되는 도로를 선정하고 사인, 시설물 설치를 통해 지표적 경관거점과의 공간적 연계성을 높임
- 주요 교차부, 조망명소 등에서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조망축을 확보함

### 주변시설과 연계성 강화

- 지표적 경관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주변 지역,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편리한 보행동선 체계를 갖추도록 함

### 지속적인 노출을 통한 도시이미지 형성

- 대외적으로 도시를 광고하는 중요한 매체이며 동시에 도시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핵심적인 자원으로서 지표적 경관거점으로 선정된 도시 홍보물, 공공시각매체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상징성을 강화하고 도시정체성을 확보

## 5) 관문 경관거점

### 의미 및 대상

- 관문적 경관거점은 도시의 경관과 대면하게 되는 첫 경험적 장소로서 도시의 첫인상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므로 관문적 상징성 부여
- 차량에 의한 진입으로 관문일대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지역인 진입형 관문경관거점과 대중 교통에 의한 진입으로 관문이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지역인 환승형 관문거점으로 구분

### 관문이미지를 형성

- 서천군의 관문으로서 공간적 인식 및 상징성을 부여하고 관문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관문을 중심으로 통일성 있는 고유 도로경관을 조성, 관문시설의 설치, 특화수종의 식재, 야간경관의 조성, 가로경관의 정비 등을 통해 관문 장소에 대한 상징성과 장소성을 부여함

### 가시지역의 부정적 경관요소 집중 관리

- 관문적 경관거점에서의 가시지역을 관리하여 가시지역의 경관개선을 도모하며 부정적 경관요소를 차폐하는 등 관문에서의 조망대상을 관리하여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킴

### 부정적 경관요소 차폐

- 방음벽, 방음터널, 수목식재 등을 통해 진입경관의 가시지역 안에 존재하지만 부정적 경관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경관요소를 차폐함. 차폐시 설치되는 방음벽의 소재는 목재를 권장하며 식재공간을 검토하여 벽면녹화 혹은 다층 구조의 식재를 권장함. 차폐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외관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함

### 조경식재

- 관문적 경관거점 중 IC를 통해 진입하는 지역의 램프주변부에 조경식재, 구조물의 벽면녹화 등을 통해 녹시율을 향상시켜 비인간적인 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삭막한 이미지 완화

## 진출입과 연결된 일정구간 도로의 가로환경 정비

- 관문시설(톨게이트) 및 구조물(인터체인지)을 통해 서천군으로 진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정연한 도시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진출입과 연결된 일정구간 도로의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 주요도로 진출입 지점에 대한 랜드마크 요소 도입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
- 주요IC, 요금소 등 주변 넓은 녹지대를 활용하여 경관특화계획

## Check list

| 키워드            | 지침내용                                                            | 비고 |
|----------------|-----------------------------------------------------------------|----|
| 녹지경관거점         | • 희리산 : 진입부 경관개선, 휴게시설 정비, 조망시설 설치                              |    |
|                | • 문수산 : 휴게시설 정비 및 추가 설치                                         |    |
|                | • 봉림산 : 자연과 조화된 형태의 재료 및 시설 정비                                  |    |
|                | • 천방산 : 휴게시설 정비 및 추가설치, 조망시설 추가 설치                              |    |
| 수변경관거점         | • 월하성 : 해안산책로, 옥외광고물 정비, 어선 및 그물망 관리                            |    |
|                | • 비인항 : 진입로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건축물 정비                                |    |
|                | • 홍원항 : 경관적 생활 문화시설 확충, 옥외광고물 정비, 건축물 정비                        |    |
|                | • 장항산림욕장 :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    |
|                | • 송석항, 다사포구 : 주변건축물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    |
| 역사문화경관거점       | • 금강(신성리, 금강하구 등) : 옥외광고물 정비, 건축물 관리, 보행동선 조성, 금강 조망시설 확충       |    |
|                | • 서천읍성, 서천향교, 남산성 : 진입로 경관개선, 안내판 정비, 주변 건축물 경관 정비, 문화재 복원정비    |    |
|                | • 한산모시관, 건지산성, 한상향교 일원 : 진입부 경관정비, 주변 건축물 경관개선, 주차장 녹화, 보행동선 개선 |    |
| 상징경관거점         | • 문헌서원, 이상재선생생가지 등 : 진입부 경관정비, 문화재 주변 건축물 경관 개선, 주차장 녹화         |    |
|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주변 건축물 경관정비, 건축물 난립 방지                       |    |
| 관문경관거점         | • 주변 식재 확충 및 진입도로 녹화                                            |    |
|                | • IC 및 주요간선도로 변 진입부 상징공간 및 조형물 설치                               |    |
| 조망공간을 특성화      | • IC주변 상징수 식재 및 주변과 어울리는 조형물 설치                                 |    |
|                | • 주요 녹지경관거점, 수변경관거점 등에 전망대 설치                                   |    |
| 주요시가화지역내 거점 조성 | • 해안산책로, 입체 조망데크 조성(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    |
|                | • 커뮤니티 외부공간 조성                                                  |    |
|                | • 주차장 녹화                                                        |    |
|                | • 단독주거지내 소규모 공원 및 식재 도입                                         |    |
|                | • 도로 가각부 활용한 인지성 확보 및 교통섬 조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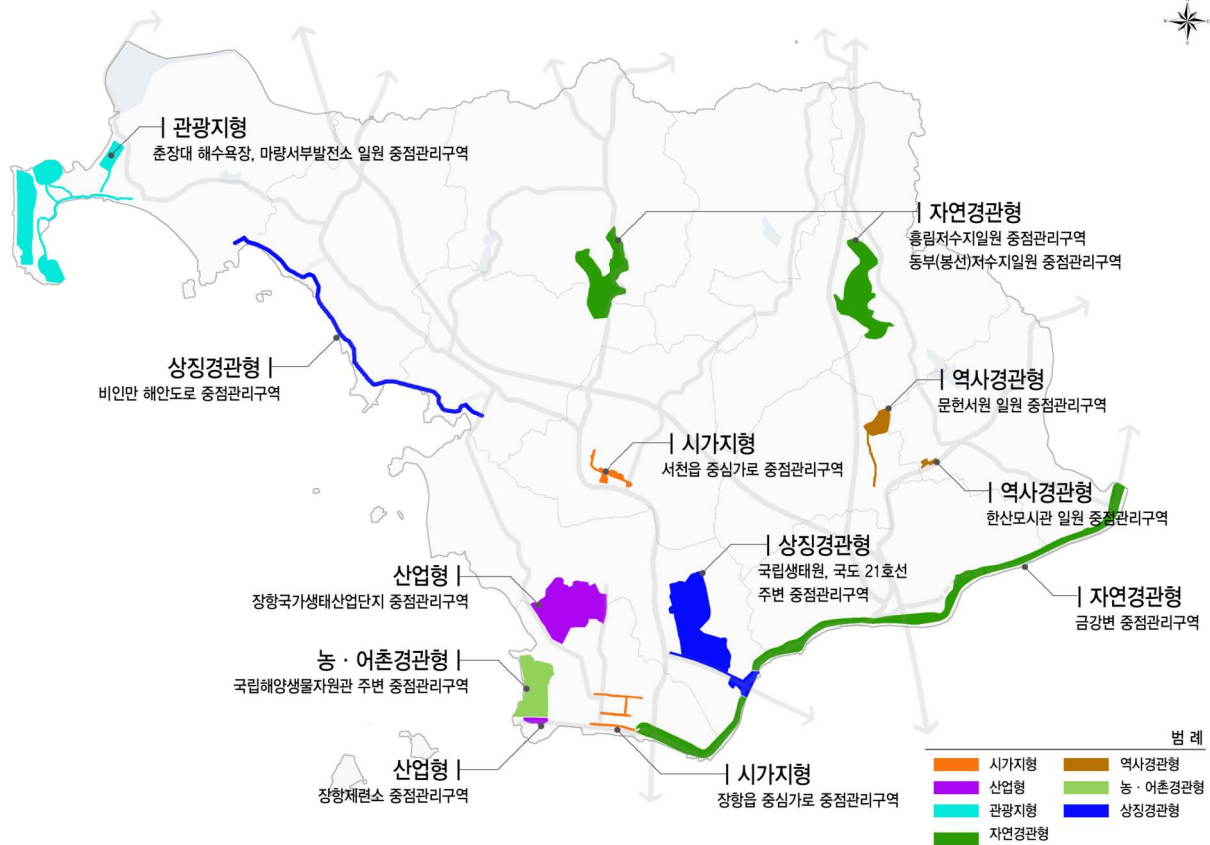


## 4.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 설정기준

- 가시권분석 및 동질성적 토지이용 상태, 산림능선, 도로망, 충청남도 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시가지형, 산업형, 관광지형, 자연경관형, 역사경관형, 농어촌경관형, 상징경관형의 7가지 중점관리구역으로 분류하여 설정
- 서천의 경관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 ① 중점적인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지역
- ② 양호한 경관자원으로 지속적인 보존이 추진되어야 할 지역
- ③ 서천군의 대표적 경관자원인 금강일대의 우선 정비지역
- ④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 ⑤ 활동인구가 많고 주요 공공시설 등이 밀집되어 경관계획을 통한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
- ⑥ 서천군의 주요 경관자원, 주요도로, 저수지 주변
- ⑦ 옥외광고물 특별관리구역
- ⑧ 주요 역사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서천군 차원에서 중요성, 상징성, 랜드마크성, 장소성을 고려하여 설정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선정

| 구분     | 대상지                      | 계획내용                                                               |
|--------|--------------------------|--------------------------------------------------------------------|
| 시가지형   | 장항읍 중심가로                 | 장항읍 대표 중심시가지로 통합적 경관 형성                                            |
|        | 서천읍 중심가로                 | 서천읍 대표 중심시가지로 통합적 경관 형성                                            |
| 산업형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 복합산업단지로 상징축 조성 및 녹지확충<br>상업(업무), 주거, 공업경관의 구체화된 경관관리               |
|        | 장항제련소                    | 금강 주변 생태자원 및 조망점 보전<br>굴뚝, 제련시설 등의 대형 구조물 및 색채 개선                  |
| 관광지형   | 춘장대·비인항 일원               | 관광지 이미지 형성을 위한 상업시설 옥외광고물 및 가로경관 정비<br>해안 태마경관 형성 및 주변자원 간 네트워크 형성 |
| 자연경관형  | 금강변                      | 하천변 건축물 관리·개방감 확보와 수변 접근시설 확보                                      |
|        | 흥림저수지 일원                 | 대규모 토목시설물, 개별입지 건축물, 낚시시설 정비 및 수변 접근시설<br>확충                       |
|        | 동부(봉선)저수지 일원             | 대규모 토목시설물, 개별입지 건축물, 낚시시설 정비 및 수변 접근시설<br>확충                       |
| 역사경관형  | 문헌서원 일원                  | 역사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난개발 방지, 테마가로 형성 및 관리                            |
|        | 한산모시전수관 일원               | 역사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난개발 방지, 테마가로 형성 및 관리                            |
| 농어촌경관형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일원<br>(장항송림마을) | 농어촌경관 이미지 형성을 위한 주택정비 및 경관개선                                       |
| 상징경관형  | 비인만 해안도로                 | 해안변 가로수 정비 및 옥외광고물 정비                                              |
|        | 국립생태원 일원<br>(국도 21호선)    | 서천의 대표 진입경관으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 조형물 설치                               |

## 중점경관관리구역 운용 방안

-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에 대지, 건축물 등이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1/3이상 해당 되는 경우 중점경관관리 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봄
-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있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과 일반 경관가이드라인을 함께 적용하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하되, 두 가지 가이드라인 중 더 강화된 가이드라인일 경우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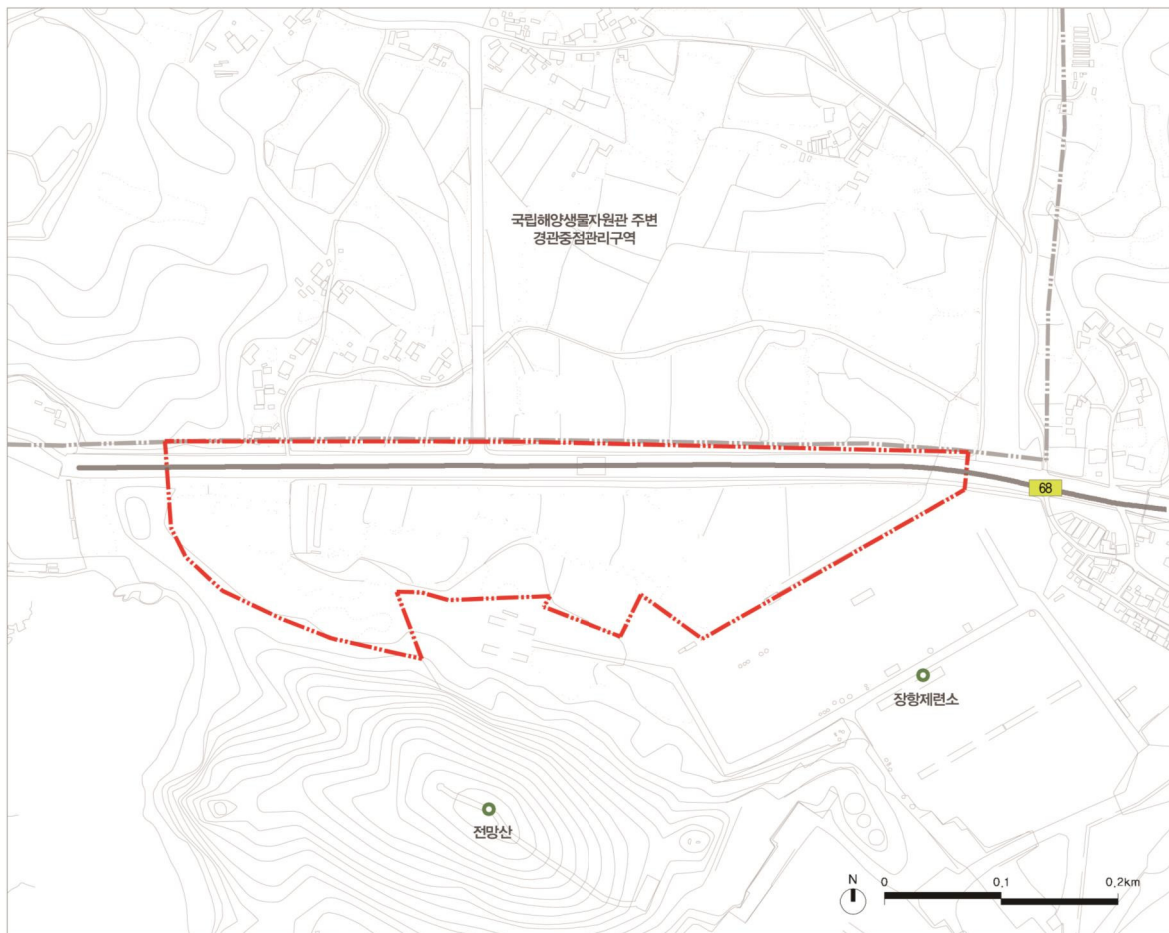


### 3) 장항제련소 중점경관관리구역

#### 기본방향

|          |    |                                |
|----------|----|--------------------------------|
| 종류       |    | 산업형 중점경관관리구역                   |
| 구역범위     |    | 오염정화사업 시설부지 및 국지도68호선 양측 15m   |
| 기본<br>방향 | 보전 | 장항제련소 주변 녹지 보전 및 시각적 녹시율 확보    |
|          | 관리 | 도로변 시설물 경관관리, 도로변 완충녹지 관리      |
|          | 형성 | 주요 진입부 경관 형성, 장항 송림과 연계한 녹지 형성 |
| 조성 목표    |    | 브라운필드의 재생을 통한 새로운 경관거점으로 조성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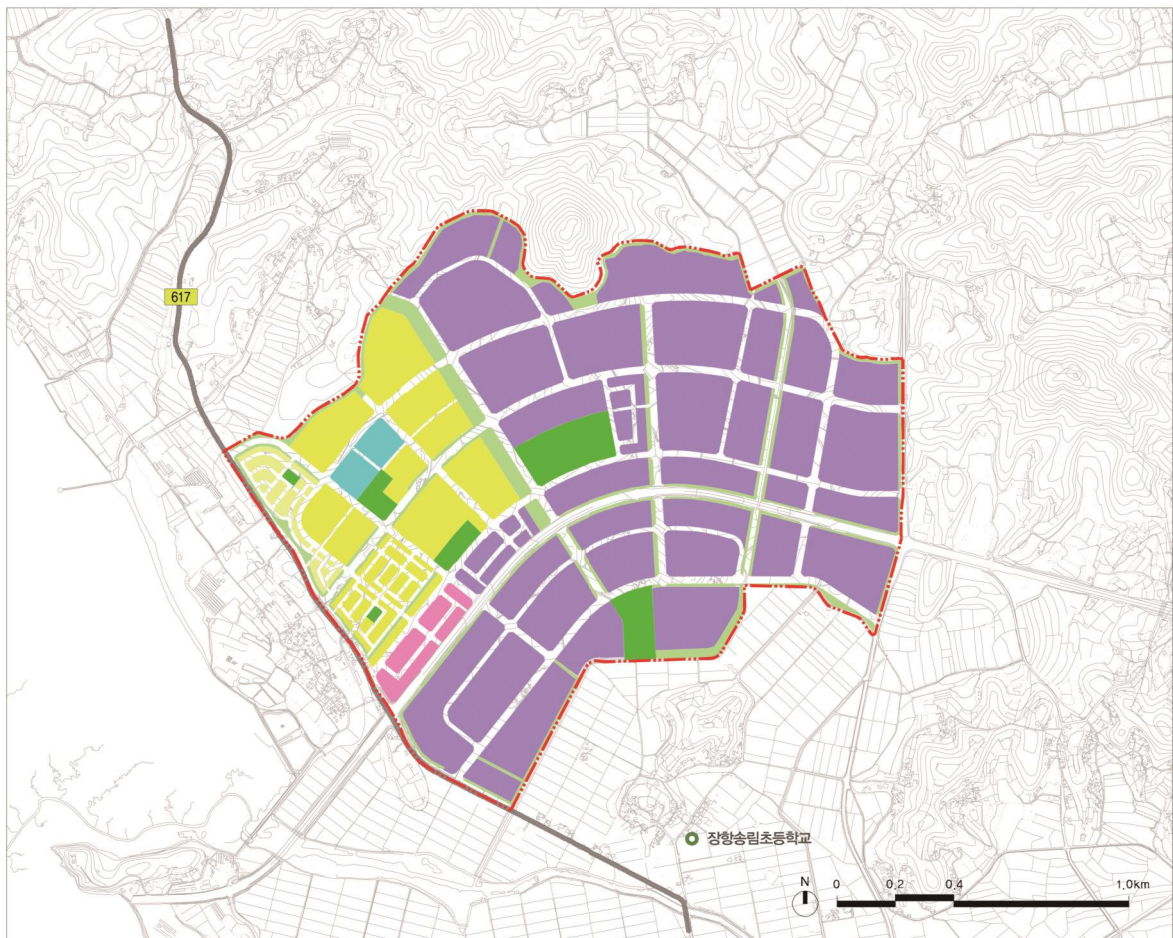


#### 4)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중점경관관리구역

##### 기본방향

|          |    |                                                               |
|----------|----|---------------------------------------------------------------|
| 종류       |    | 산업형 중점경관관리구역                                                  |
| 구역범위     |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지정 구역                                              |
| 기본<br>방향 | 보전 | 산업단지 주변 녹지 및 기존 녹지의 보전 및 남산 조망 확보                             |
|          | 관리 | 산업단지 주요 진입부 경관 관리 및 도로변 녹지, 건축물, 시설물 경관관리                     |
|          | 형성 |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등을 통한 녹지네트워크 형성, 상징가로 조성 및 상업지역내 가로환경 창출 |
| 조성 목표    |    | 환경친화적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조성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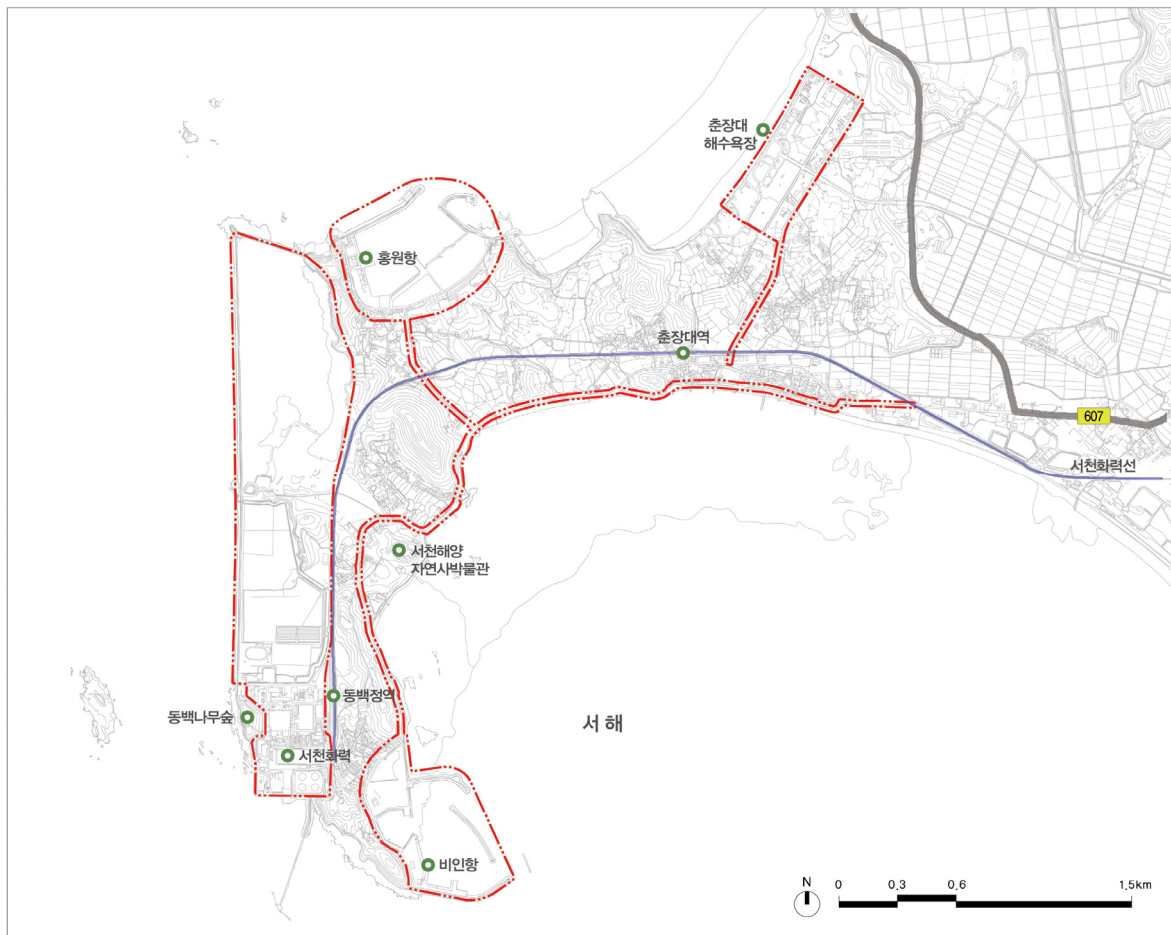


## 5) 춘장대 · 비인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기본방향

|          |                                                             |                              |
|----------|-------------------------------------------------------------|------------------------------|
| 종류       | 관광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                              |
| 구역범위     | 춘장대 관광지 지정 구역, 홍원항 일원, 비인항 일원, 서천화력 일원, 군도 5호선, 리도 207, 202 |                              |
| 기본<br>방향 | 보전                                                          | 생태경관자원 보전 및 서해안으로의 조망권 보전    |
|          | 관리                                                          | 상업시설 및 가로변 인공경관의 일체감 있는 경관관리 |
|          | 형성                                                          | 해안 테마경관 형성 및 주변 자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
| 조성 목표    | 주변 자원 간 네트워크를 통한 서천군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화                           |                              |

### 위치도





## 6) 금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기본방향

|          |                                    |                                           |
|----------|------------------------------------|-------------------------------------------|
| 종류       | 자연경관형 경광중점관리구역                     |                                           |
| 구역범위     | 신성리 갈대밭-원수리 구간 금강제방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15m |                                           |
| 기본<br>방향 | 보전                                 | 금강변 자연생태경관 및 철새도래지 등의 보전, 금강 및 서해로의 조망 확보 |
|          | 관리                                 | 금강변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관리                        |
|          | 형성                                 | 수변으로의 접근성 향상과 블루네트워크 형성                   |
| 조성 목표    | 금강 블루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친환경 생태축 조성        |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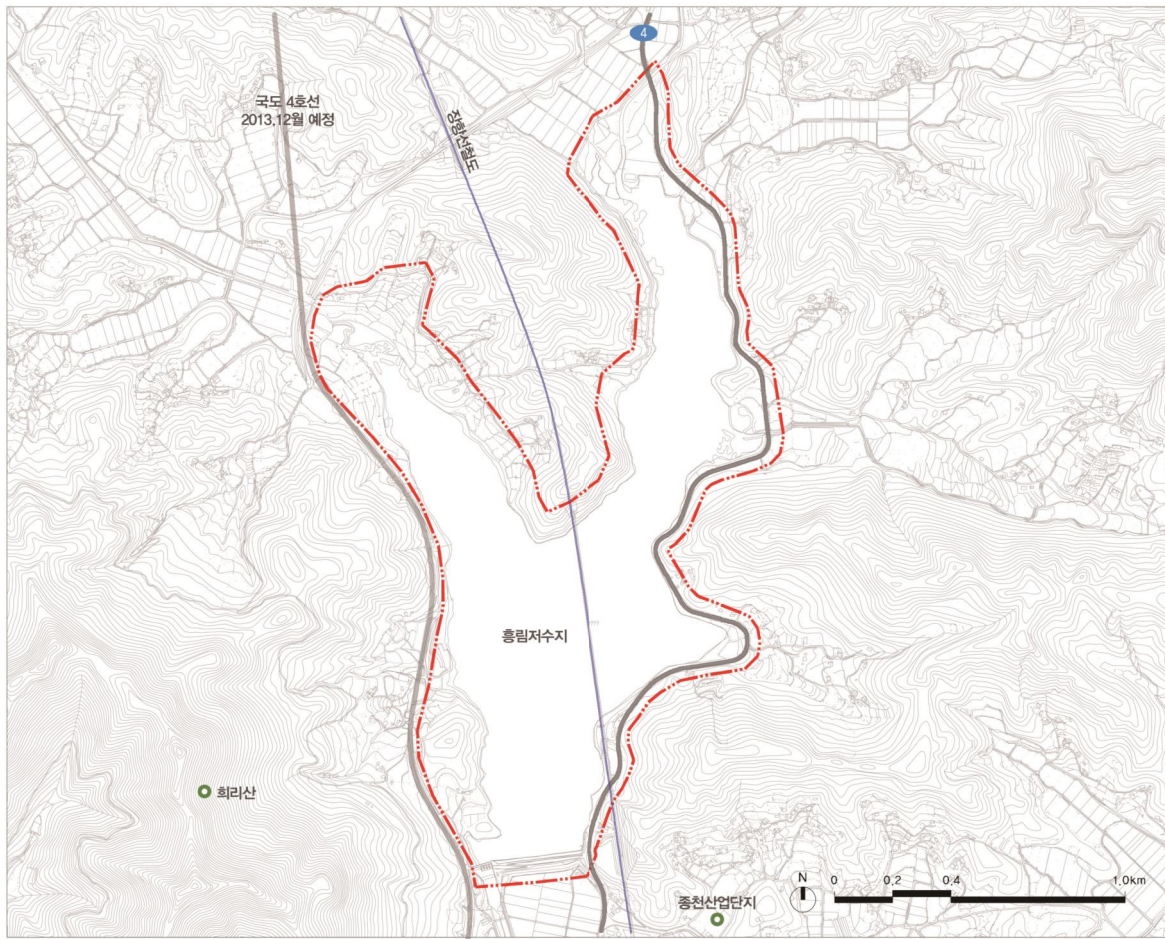


## 7) 홍림저수지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기본방향

|          |    |                                       |
|----------|----|---------------------------------------|
| 종류       |    | 자연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
| 구역범위     |    | 홍림저수지 일원                              |
| 기본<br>방향 | 보전 |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호수경관 보전, 홍림저수지로의 조망 확보 |
|          | 관리 | 호수변 쓰레기 및 가설시설물 관리, 국도4호선 난개발 관리      |
|          | 형성 | 호수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공원 형성               |
| 조성 목표    |    | 서천의 대표적 청정호수 이미지 형성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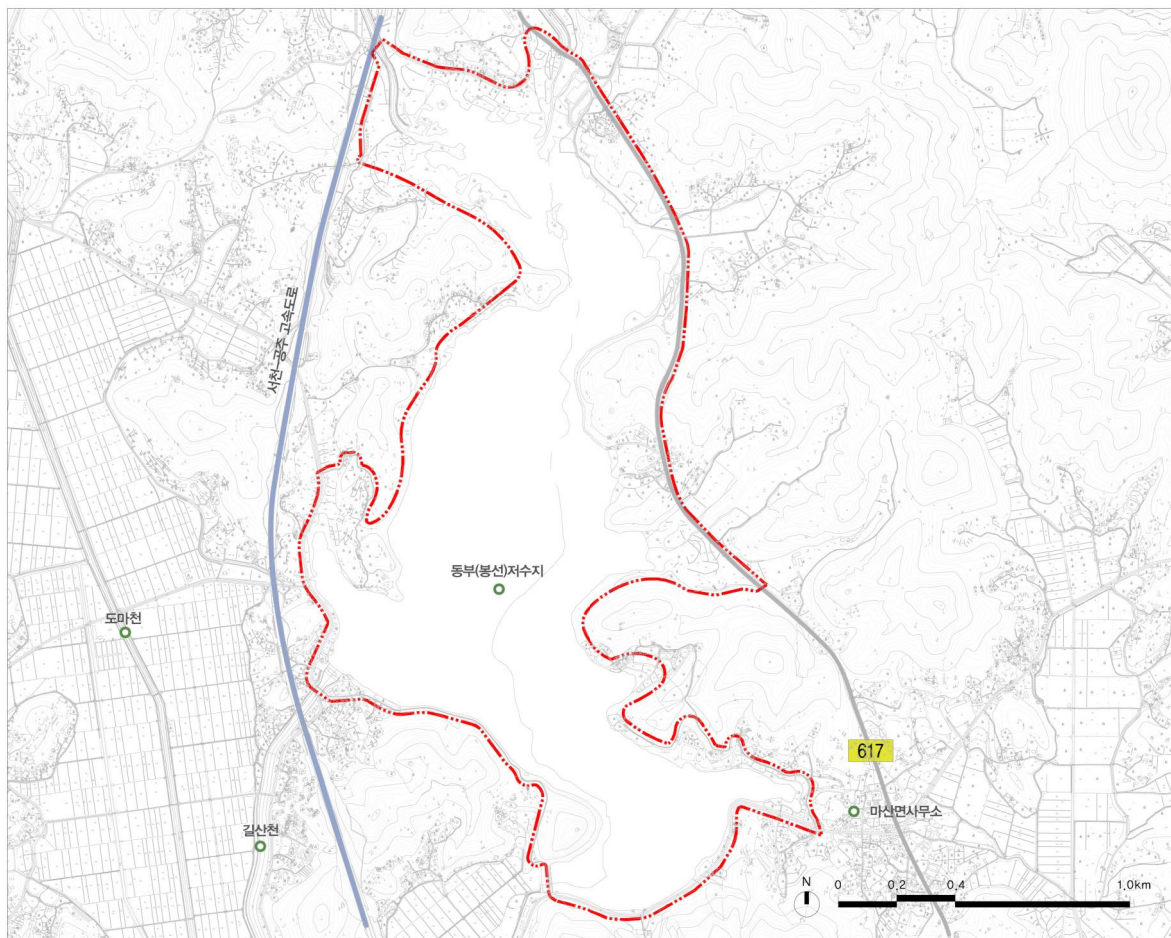


## 8) 동부(봉선)저수지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기본방향

|          |                     |                                       |
|----------|---------------------|---------------------------------------|
| 종류       | 자연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                                       |
| 구역범위     | 동부(봉선)저수지일원         |                                       |
| 기본<br>방향 | 보전                  |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호수경관 보전, 동부저수지로의 조망 확보 |
|          | 관리                  | 호수변 쓰레기 및 가설시설물 관리                    |
|          | 형성                  | 호수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공원 형성               |
| 조성 목표    | 서천의 대표적 청정호수 이미지 형성 |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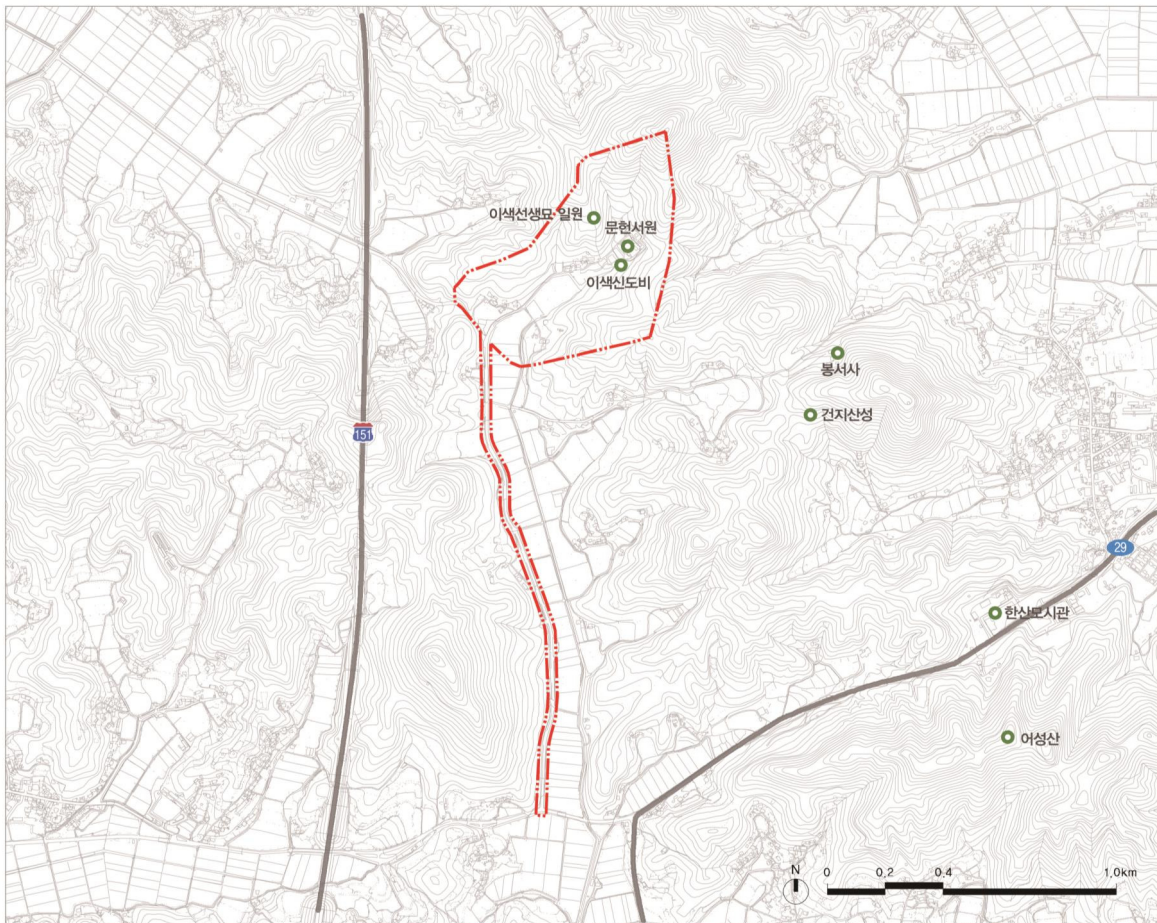


## 9) 문헌서원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기본방향

|          |                                              |                            |
|----------|----------------------------------------------|----------------------------|
| 종류       | 역사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                            |
| 구역범위     | 문헌서원을 둘러싼 주요 산림 및 문헌서원 진입(도로경계를 기점으로 양측 10m) |                            |
| 기본<br>방향 | 보전                                           | 문헌서원일대 주변산림경관 보전           |
|          | 관리                                           | 문헌서원 진입로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관리    |
|          | 형성                                           | 인근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
| 조성 목표    | 이색선생을 테마로한 역사문화특구 형성                         |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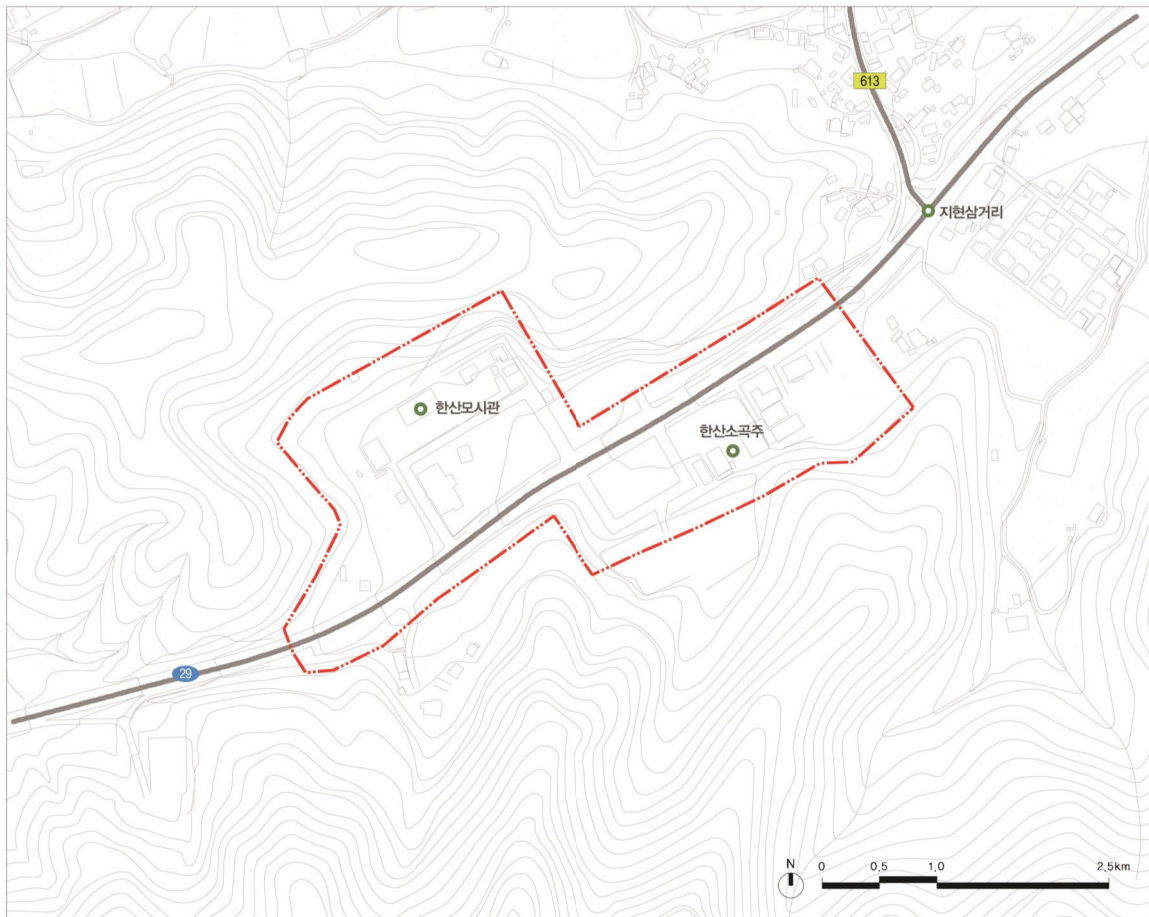


## 10) 한산모시관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기본방향

|          |    |                                              |
|----------|----|----------------------------------------------|
| 종류       |    | 역사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
| 구역범위     |    | 한산모시관, 한산소곡주 공장 및 국도29호선 양측 15m              |
| 기본<br>방향 | 보전 | 한산모시관 일원 역사문화경관 보전·정비                        |
|          | 관리 | 국도 29호선 주변 건축물의 배치·높이 관리, 주요 안내체계 등 공공시설물 관리 |
|          | 형성 | 인근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
| 조성 목표    |    | 한산모시관을 중심으로한 역문화경관의 거점 조성                    |

### 위치도



## 1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기본방향

|          |                                          |                                           |
|----------|------------------------------------------|-------------------------------------------|
| 종류       | 농어촌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                                           |
| 구역범위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오염토양 정화사업지, 장항 송림 일원          |                                           |
| 기본<br>방향 | 보전                                       | 장항 송림 보전 및 전망산, 후망산으로의 조망 확보              |
|          | 관리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변 난개발 관리 및 가로경관(옥외광고물, 건축물) 관리 |
|          | 형성                                       | 농어촌경관 이미지 형성을 위한 농어촌 주택정비 및 경관형성          |
| 조성 목표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송림육장 등을 연계한 해양관광의 상징거점으로 조성 |                                           |

### 위치도





## 12) 국립생태원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기본방향

|          |                                                    |                              |
|----------|----------------------------------------------------|------------------------------|
| 종류       | 상징경관형+농어촌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                              |
| 구역범위     | 국립생태원, 금강하구둑 관광지, 김인전공원, 국도21호(금강하구둑-송내교차로) 양측 15m |                              |
| 기본<br>방향 | 보전                                                 | 국립생태원 주변 자연생태(농어촌경관, 수변경관)보전 |
|          | 관리                                                 | 생태원 및 국도21호선 주변 옥외광고물·건축물 관리 |
|          | 형성                                                 | 대표진입경관으로 상징경관 연출             |
| 조성 목표    | 서천의 생태경관을 대표하는 상징경관조성                              |                              |

위치도



### 13) 비인만 해안도로 중점경관관리구역

#### 기본방향

|          |                        |                            |
|----------|------------------------|----------------------------|
| 종류       | 상징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                            |
| 구역범위     | 비인만 해안도로 양측 15m        |                            |
| 기본<br>방향 | 보전                     | 주변 자연환경과 해안과 어우러지는 수변지역 보전 |
|          | 관리                     | 해안도로변 옥외광고물·건축물 관리         |
|          | 형성                     | 서천의 대표적 해안도로로 상징경관 연출      |
| 조성 목표    | 서천을 대표하는 해안도로 상징경관축 조성 |                            |

#### 위치도



## 5. 위해경관요소 관리방안

- 위해경관요소는 경관관리 및 창출을 위해서 제어해야할 사항으로 본 계획에서는 경관자원별로 위해경관요소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 유형      | 위해경관요소                                                | 경관관리방안                                                                        |
|---------|-------------------------------------------------------|-------------------------------------------------------------------------------|
| 산림경관    | • 산림 연접부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 •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조성(비탈면 녹화 등)                                                   |
|         | • 도로 개설로 인한 산림의 파편화                                   | • 절성토부위 녹화 및 생태브릿지 조성                                                         |
|         | • 산림과 도시와의 단절                                         | • 도시와 산림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방안 마련                                                   |
| 하천·호소   | • 금강변 연접건축물 경관저해                                      | • 건축물 외관 개선 유도 및 수변 연접건축물 신축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                                     |
|         | • 저수지주변 가설시설물 및 쓰레기 방치 (낚시시설물, 천막, 컨테이너박스, 이동식 화장실 등) | •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가설시설물은 외관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쓰레기 수거<br>• 공공시설물의 경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제품사용 |
| 해안·도서   | • 해안변 무분별한 펜션, 모텔 등 숙박업소                              | • 건물 신축시 경관 심의<br>• 주민협정유도를 통한 경관관리                                           |
|         | • 난립한 옥외광고물 및 옥외시설물                                   | • 해안경관가이드라인 준수 유도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
|         | • 해안과 부조화되는 스카이라인                                     | • 경관가이드라인의 스카이라인 지침 준수 유도                                                     |
| 농경지     | • 무분별하게 적치된 농자재                                       | • 경관홍보를 통한 주민의 자발적 유도                                                         |
|         | • 훼손된 시설물의 방치(비닐하우스 및 창고 등)                           | •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은 공공에서 주도하여 철거                                                   |
|         | • 무분별한 입지(축사, 창고, 공장 등)                               | • 신축시 경관심의<br>• 외관 개선을 통한 경관개선                                                |
| 취락지     | • 방치된 빈집                                              | •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타 용도로 전환 유도                                                   |
|         | • 주변 경관과 부조화스러운 나홀로 아파트                               | • 건물 신축시 경관심의를 통한 입지 규제 및 주변과의 조화 유도                                          |
|         | • 채도가 높은 색상                                           | • 농가에 사용되는 지붕자재 업체와 협정을 통한 색채관리                                               |
|         | • 주변과 부조화되는 축사 등                                      | • 취락지 주변 축사 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및 이전 권장                                           |
| 항·포구    | • 부조화스러운 스카이라인                                        | • 경관가이드라인상 스카이라인 지침 준수 유도                                                     |
|         | •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혼재                                      | • 항·포구와 조화로운 건축물 유도                                                           |
| 주거지     | • 고층아파트(높이, 과도한 로고 및 문양)                              | •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경관심의)                                                      |
|         | • 노후화된 주거지(마을기, 축대 등)                                 | • 지속적인 주거환경정비 사업 실시                                                           |
| 상업지     | •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한 경관                                   | • 주차장 조성 및 불법 주정차 단속                                                          |
|         | •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 • 주민협정 유도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실시 및 옥외광고물 설치지 국토교통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유도                 |
|         | • 협소한 보행자 공간                                          | • 보행자도로 개선사업 실시                                                               |
| 공업지     | • 대규모 경관으로 인한 위압경관                                    | • 차폐식재를 통한 저감                                                                 |
|         | • 고명도의 주조색과 고채도의 색채 사용                                | • 경관가이드라인의 색채부분 준수 유도                                                         |
| 도로 경관   | • 획일적인 진입부 경관                                         | • 서천군만의 특색을 지닌 진입부 조성                                                         |
|         | • 도로변 무질서한 옥외시설물                                      | • 옥외시설물을 통합설치하여 경관관리                                                          |
| 역사문화 경관 | • 주요 역사문화재 외소화                                        | • 높이규제를 통한 왜소화 방지                                                             |
|         | • 주변화 부조화스러운 경관연출                                     | •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지역을 일체화하여 경관보전 및 정비사업을 추진                                         |



## V. 경관가이드라인



경관가이드라인 개요 |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 |  
경관권역·축·거점 경관가이드라인 |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색채 가이드라인 |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 1. 경관가이드라인 개요

## 1) 경관가이드라인 성격

-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내용의 실행을 위해 해당 구역별로 경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향, 원칙 등을 제시하여 향후, 경관심의 및 자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임
- 서천군 경관가이드라인은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중 경관부문별 계획내용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서천군의 장소성과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함

## 2) 경관가이드라인 목적

- 주변 경관자원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경관적 배려가 이루어진 건축물과 시설물이 되도록 유도
- 동일 경관관리구역 내 설계자에게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주변 경관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유도
- 일반 주민에게는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대한 경관적 배려방법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함

## 3) 경관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 방향별 기본원칙

- 보전 : 산지, 해안, 하천, 저수지, 농경지 등 자연경관자원의 보전
- 관리 : 기존 시설에 대한 경관적 정비 및 관리
- 형성 : 새로운 경관의 창출을 위한 디자인

### 거리별 기본원칙

- 원경 : 시원한 조망을 고려한 경관디자인
- 중경 :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디자인
- 근경 : 개성 있는 시설물 형태 및 쾌적한 공간

### 요소별 기본원칙

- 형태 : 단독 개성과 전체 일관성이 조화된 형태 디자인
- 재료 : 친환경을 고려하고 부위 간 조화를 고려한 재료
-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디자인



## 5) 경관설계지침의 적용

### 특별관리구역의 우선 적용

- 서천군 전체는 일반관리구역의 경관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지역에 적용하도록 함
- 일반 경관가이드라인 : 서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
- 특별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 서천군에서 전략적으로 경관관리 및 창출이 필요한 지역

### 경관가이드라인의 구성

| 구 분 | 일반 경관가이드라인       |                   | 특별관리구역 가이드라인  |
|-----|------------------|-------------------|---------------|
| 종류  |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      | 경관권역·축·거점 경관가이드라인 | 중점경관관리구역      |
|     | ▼                | ▼                 | ▼             |
| 적용  | 도시지역을 제외한 서천군 전체 | 경관권역·축·거점 지역      | 중점경관관리구역 13개소 |

### 경관가이드라인의 사용기준

| 기준   | 내용                                                      |
|------|---------------------------------------------------------|
| 필수기준 |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 주체가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이행하는 최소한의 규제적 기준     |
| 권장기준 | 강제적으로 개인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이해조정의 측면에서 유연하며 개별적인 행위를 위한 유도적 기준 |

### 경관가이드라인의 사용부문

| 기준   | 내용                         |
|------|----------------------------|
| 공공부문 | 공원녹지나 도로 등 공공이 직접 만들어가는 부문 |
| 민간부문 | 민간의 다양한 개발행위를 규제, 유도해가는 부문 |

## 경관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 서천군(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
- 주요 경관요소별 대상은 다음 표와 같음

| 구분      |             | 대상                                                                                        | 범위                       |
|---------|-------------|-------------------------------------------------------------------------------------------|--------------------------|
| 건축물     | 단독주택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 신축                       |
|         | 공동주택        | · 주거지역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br>· 상업지역내 주거 면적이 30%이상인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                        | 신축                       |
|         | 상업업무<br>건축물 | · 상업지역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br>· 기타지역의 근린생활시설<br>· 일반업무시설        | 신축<br>리모델링               |
|         | 공업<br>건축물   | · 공업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제17호 공장 및 제18호 창고<br>· 기타지역이 공장용도 건축물 및 부속시설<br>· 기타지역의 창고 건축물           | 신축<br>리모델링               |
|         | 공공<br>건축물   | ·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공공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 신축<br>리모델링               |
| 오픈 스페이스 |             | · 공원, 하천 등 계획가, 디자이너 등 오픈스페이스 설계, 시공, 심의, 허가를 담당하는 모든 관련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당자)         | 공원, 녹지, 수변, 도로           |
| 옥외광고물   |             | · 상업업무 및 근린생활용도의 건축물<br>· 광고물 허가권자, 관리심의위원회, 광고물 제작자, 광고물디자이너 등 광고물 제작, 설치, 심의, 허가 담당 관련자 | 옥외광고물<br>특정구역,<br>경관협정구역 |
| 공공시설물   |             | · 공공시설물 허가권자, 경관심의위원회, 제작자, 디자이너 등 공공시설물 제작, 설치, 심의, 허가 담당 관련자                            | All                      |
| 야간경관    |             | ·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 All                      |

주) 서천군 경관조례에 의거하여 심의자문대상을 규정하되, 주민의 경관인식과 여건변화에 따라 점진 확대 적용

##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구분 적용

- 서천군은 도농 복합형태로서 향후 특정경관계획 수립시 경관설계지침 적용에 있어서 농어촌경관계획수립지침을 우선 적용

- 농어촌경관계획수립지침(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하는 농어촌과 준농어촌
- 농어촌정비법 제2조 1항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함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 2항 :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을 말함

- 산림경관계획수립지침(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포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관련법에서는 농어촌지역과 산림경관수립대상지역을 행정구역과 관계법상 토지의 이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는 바, 향후 확정된 공간내에서 다양한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관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이 미흡함
- 따라서, 관련 특정경관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하고, 서천군의 경관행정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에서는 국제법상 도시지역을 경관설계지침의 도시지역으로, 국제법상 도시지역 외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설정하여 적용함
  - 국제법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 경관계획 설계지침 상 도시지역 적용
  - 국제법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외 지역 : 경관계획 설계지침 상 농어촌 지역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국토의 용도구분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

### 1) 농어촌 경관

#### 개요

-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은 서천군이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서천군의 농어촌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은 서천군 농어촌 지역의 경관 형성·창출을 위한 일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며, 충청남도 경관계획 중 경관 부문별 계획의 내용과 연계하고, 해당 구역의 장소성과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농어촌 경관의 개념

- 농어촌경관은 인간이 자연과 투쟁 및 조화를 이루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경관으로 경지, 취락, 생활양식 등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누적되어 형성된 경관임
- 농어촌경관은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묶여지고 이에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으로 공간적으로는 농어업 생산, 농어촌 생활, 자연환경으로 나눌 수 있음

| 구 분       |      | 구성요소                                                      |
|-----------|------|-----------------------------------------------------------|
| 농어업<br>생산 | 농지   | 논, 밭, 목초지, 과수원, 마을 숲, 수목                                  |
|           | 생산시설 |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저수지, 농업시설 및 설비(축사, 정미소, 비닐하우스)포구, 어항, 선착장 등 |
| 농어업<br>생활 | 생활시설 | 농어촌 주택, 공공시설, 상점, 도농교류 시설(마을회관), 공장, 도로, 안내시설 등           |
|           | 문화역사 | 사적·유적, 관광시설, 마을행사 및 시설(동제, 축제, 사당, 당산목) 등                 |
| 자연환경      | 자연요소 | 산, 하천, 호수, 바다, 소생태계(비오름)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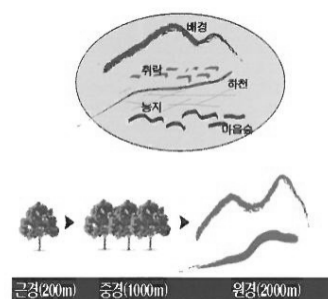
농어촌경관의 분류와 요소

#### 농어촌 경관의 범위

- 농어촌경관의 범위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취락지역과 이들과 일체가 된 농지와 산림, 어장까지 포함하며, 취락을 중심으로 농지, 산림, 하천, 도로 등으로 점유되고 일체화 된 하나의 공간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 서천군의 경우 서천읍·장항읍 일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농어촌경관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농어촌경관의 정의와 범위



##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의 목적

-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농어촌 공간 전체의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공간에 산재해 있는 지역자원을 보전·관리하여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은 향후, 서천군 농어촌 마을의 소규모 정비 및 시설도입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 및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계략적인 방향을 제시

##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의 체계

-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은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농식품부, 2012)'에서 경관계획의 내용적 범위로 제시한 대상지역의 농어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을 대상으로 수립
-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은 서천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농촌마을 개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 및 경관요소만을 대상으로 농촌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구 분             |                    | 주요내용                                                                                           | 코드    |
|-----------------|--------------------|------------------------------------------------------------------------------------------------|-------|
| 농어업경관           | 경작지경관              | 농경지(논, 밭, 과수원, 목초지 등)의 계절에 따른 변화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등                                                | RL-1  |
|                 | 농어업생산시설 경관         | 용수로, 배수로, 농로, 저수지, 소, 축사 등의 인공시설 주변의 자연환경 및 농경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 등                              | RL-2  |
| 자연경관            | 산림경관               | 산림경관의 형성 관리방안은 식생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경관림 분야 및 지형의 보전·관리 등의 방안 등                                       | RL-3  |
|                 | 하천경관               | 농어촌자연경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수역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위변화의 정도 등 생태적·경관적 기능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방안 등             | RL-4  |
|                 | 자연생태경관             | 농어촌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농어촌경관의 특성을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도록 정비방안 제시 등                                   | RL-5  |
| 생활경관            | 주거경관               | 주택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 규모, 배치, 지붕 등 개발 요소에 대한 계획적 고려 및 공공시설과 주택건축 등이 주변 경관과 효과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 RL-6  |
|                 | 가로경관               | 주 진입로, 가로시설물, 가로수 및 보도확폭, 공개공지 확보, 산책로 조성 등 도로의 특성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방안 등                   | RL-7  |
|                 | 건축경관               | 농어촌경관에서 건축물이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되도록 스카이라인, 외장색채, 재질, 벽면선 후퇴 등의 기본적인 매뉴얼 제시 등                            | RL-8  |
|                 | 역사·문화경관            | 한옥, 초가, 사찰 등 전통건조물 등을 보전, 복원 및 관리하여 마을의 역사성을 유지하고 역사적 가치 향상 방안 등                               | RL-9  |
| 외부공간 및 기타시설물 경관 | 외부공간 경관            | 마을공동쉼터, 마을마당 및 담장 등 농어촌마을의 외부공간의 구성요소별 보전·정비 방안 등                                              | RL-10 |
|                 | 기타 시설물경관           | 안내시설, 가로시설물, 조형물 등 농어촌마을에 도입되는 시설물의 계획안 제시 등                                                   | RL-11 |
| 색채경관            | 생활경관의 색채           | 마을의 역사, 문화, 전통, 상징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농어촌다운 색채경관 이미지 제시 등                                             | RL-12 |
|                 | 역사·문화경관의 색채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이나 지역의 색채를 역사·문화경관의 보존 측면에서 계획 제시 등                                            | RL-13 |
|                 | 외부공간 시설물 및 광고물의 색채 | 마을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공간, 상업용 광고물 및 기타 시설물의 색채경관은 자연경관은 물론 생활경관과 조화되는 계획 제시 등                        | RL-14 |

## 농어촌 경관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구 분  | 기본원칙           | 주요내용                                                                   |
|------|----------------|------------------------------------------------------------------------|
| 원칙 1 | 친환경 경관연출       | 농어촌의 원경관을 유지하고 주변자연환경에 순응할 수 있는 친환경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
| 원칙 2 | 지역정체성 반영       | 보전해야 할 전통과 유산이 있는 마을은 불량경관개선을 통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시설 정비로 정체성을 표현            |
| 원칙 3 | 자연스러운 경관연출     | 기존마을과 연계하여 신규택지를 조성할 시 기존마을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경관적 특성을 최대한 보전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 |
| 원칙 4 | 집약적 농어촌 경관연출   | 전면재정비가 필요한 마을의 경우 시설규모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간 통합을 도모하여 집약적 농어촌경관을 연출  |
| 원칙 5 | 특징 있는 경관연출     |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관특성을 활용하여 특징 있는 경관을 형성                                |
| 원칙 6 | 수평적 경관유지       | 인공적 구조물들은 주변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모 및 배치 등을 제한하여 농어촌지역의 수평적 경관유지            |
| 원칙 7 | 주변 경관과의 연속성 유지 | 시설의 형태, 색채, 소재 등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주변 경관과의 연속성을 유지                    |
| 원칙 8 | 다양한 경관식재       | 식재의 다양한 경관적 기능을 활용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농어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식재지침                  |



친환경 경관 연출



지역정체성 반영



자연스러운 경관 연출



집약적 농어촌 경관 연출



특징 있는 경관 연출



수평적 경관 유지



주변 경관과의 연속성 유지



다양한 경관작물 식재

## 2) 농어업경관 가이드라인

### 경작지경관

- 농경지의 계절에 따른 변화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인공시설이 주변의 자연환경 및 농업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농경지주변 인공시설물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적 단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

### 경작지경관 가이드라인(코드 RL-1)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경작지<br>경관 | 경작지      | • 양호한 농업경관 유지를 위해 경작을 포기한 곳, 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농경지 등은 기반정비 및 기타 활동 등을 도입함 |      | ○  |
|           |          | • 묵논 및 나대지 등은 경관작물이나 야화 등을 재배하여 경관향상을 도모                            |      | ○  |
|           |          | •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활동에 의한 지역 고유의 특성적 농업경관은 보전(서천군 평야지역의 경작지 경관)           |      | ○  |
|           |          | • 농경지 주변 둠벙 등 자연지형 등은 보전                                            |      | ○  |
|           |          | • 인공시설물이 필요한 경작지는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질감 등을 선정                       |      | ○  |
|           |          | • 작물수확이 끝난 비닐하우스는 철거                                                |      | ○  |
|           |          | • 경작에 사용되고 남은 비료포대 및 기타 잔존물은 폐기 유도                                  |      | ○  |
|           |          | • 경관저해시설은 도로변에 적치하지 않도록 함(농자재, 비료, 농기계)                             | ○    | ○  |
|           |          | • 향·포구 등 수변연접구역에서 경관저해시설물 방치 자제(그물, 닻 등)                            |      | ○  |
|           | 다랑이논     | • 다랑이 논은 가급적 보존                                                     |      | ○  |
|           | 지역특산물 재배 | • 지역특산물 재배지는 농촌의 경관향상을 위해 같은 면적을 분할하지 말고, 하나의 큰 면적에 재배하도록 유도        |      | ○  |
|           |          | • 지역특산물 재배지에 관람동선, 휴게공간을 조성                                         |      | ○  |

### 대표 경관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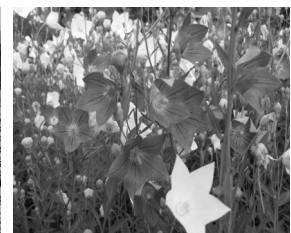
해바라기(개화 : 8월~9월)



코스모스(개화 : 6월~10월)



국화(개화 : 6월~8월)



도라지(개화 : 7월~8월)



쑥부쟁이(개화 : 7월~10월)



구절초(개화 : 7월~10월)



꽃창포(개화 : 6월~7월)



억새(개화 : 9월~11월)

## 농어업생산시설경관

- 농어업 생산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농어촌 특유의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
- 농어업 생산시설의 정비 및 개발 시에는 기능성, 생태계보전, 경관적 측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
- 축사시설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냄새, 소음 등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정비
- 생산시설물의 배치로 동물서식지의 분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경로, 서식처의 연결성을 고려

## 농어업생산시설경관 가이드라인(코드 RL-2)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농어업<br>생산<br>시설 | 용·배수로 | • 용·배수로는 농촌특유의 경관을 연출하므로 주변과의 조화 및 지속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                       |      | ○  |
|                 |       | • 구조물화 된 용·배수로는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차폐식재 등 경관훼손저감방안을 제시                         |      | ○  |
|                 |       | • 구조물화 되지 않은 용·배수로는 자연 그대로 보전 및 관리                                        |      | ○  |
|                 |       | • 용·배수로에 의해 동물이동이 어려운 구간은 생태통로를 조성                                        | ○    |    |
|                 | 저수지   | •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방에는 자연석과 친수성 식생 도입                                    |      | ○  |
|                 |       | • 경관적으로 중요한 저수지 주변에는 수변을 감상할 수 있는 휴게공간 및 수변데크 설치(주향, 안치, 홍림, 봉선, 축동저수지 등) |      | ○  |
|                 |       | • 수변데크 설치시 예상이용자 수와 기능에 따라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며, 저수지의 고수위를 고려                     |      | ○  |
|                 |       | • 저수지내 낚시터를 조성할 때는 일정장소에 좌대를 설치하여 무분별한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                        | ○    |    |
|                 | 농로    |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농로의 포장을 주변보다 낮은 채도로 조성                                   |      | ○  |

## 농어업생산시설경관계획 예시



경작지경관 가이드라인 예시



농어업 생산시설 가이드라인 예시

### 3) 자연경관 가이드라인

#### 산림경관

- 신규시설 조성지 주변의 근경산림은 경관림으로 조성하여 개발에 의한 시각적 훼손감을 최소화
- 기존시설지라도 주변의 경관훼손이 심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림을 조성
- 산림이 파편화되거나 단절되어 있는 곳은 식생대를 조성하여 산림의 연속성을 유지

#### 산림경관 가이드라인(코드 RL-3)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산림<br>경관 | 산림자원        | • 신규시설 조성지 주변의 근경산림은 경관림으로 조성하여 개발에 의한 시각적 훼손감을 최소화                        |      | ○  |
|          |             | • 신규로 조성되는 경관림의 형태는 다층식재가 되도록 조성                                           |      | ○  |
|          |             | • 산림이 파편화되거나 단절되어 있는 곳은 식생대를 조성(연속성을 유지)                                   | ○    |    |
|          |             | • 식생이 양호한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여 산림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 ○    |    |
|          |             | • 채석장은 복구가 어려우므로 한 사 면씩 채석과 복구가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                               | ○    |    |
|          | 마을숲         | • 마을숲, 방풍림 등 녹지공간은 지역 내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활용하여 식재 하고, 자연 천이에 의해 단계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함 |      | ○  |
|          |             | • 마을숲의 기능을 복원·보전하면서, 주민들의 휴식과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자, 벤치 등 휴게시설과 산책로 배치       |      | ○  |
|          |             | • 마을숲 내 산책로는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흙포장을 이용하고, 자연생태 보전 및 하부식생을 보전하기 위해 목재데크를 사용       |      | ○  |
|          | 산림욕장        | • 이용객을 위한 등산로, 약수터, 약초원 등 조성 (다양한 수목 및 식물 감상)                              |      | ○  |
|          | 등산로         | • 등산로 조성은 신규등산로의 조성보다는 기존 등산로 정비                                           |      | ○  |
|          |             | • 등산로는 지형에 맞추어 활용하되, 경사가 급한 곳에는 목재계단을 설치                                   |      | ○  |
|          | 전망대         | • 식생 및 지형훼손이 심한 곳은 목재데크 및 고무매트 설치                                          |      | ○  |
|          | 우물, 샘터, 약수터 | • 우수한 자연풍경 지점이나 흥미지점이 보이는 곳에 설치                                            |      | ○  |
|          |             | • 우물, 샘터, 약수터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물을 활용                                            |      | ○  |

#### 산림경관계획 예시



산림경관 가이드라인 예시 1

#### 산림경관

- 배후산지 보전 및 기존 대나무숲을 마을 경계부로 확장 상징적 이미지 제고
- 마을숲 및 보호수를 정비하여 휴게 및 산책공간으로 활용
- 신규조성단지는 기존지형과 조화되도록 치배식재 및 경관 식재를 도입
- 수종은 향토수종으로 식재
- 마을 진입부 가로수 조성 (해당영농지원단 입구 - 마을)



산림경관 가이드라인 예시 2

## 하천경관

- 하천은 농촌경관 요소에서 중요한 경관요소로서 농촌 경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하천경관을 정비 할 때에는 수역과 그 주변지역을 함께 통합적 계획이 되도록 조성함
- 하천을 통해 농촌의 생태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생태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수변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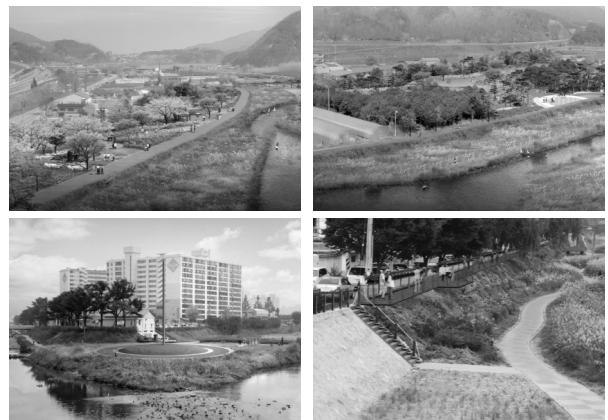
## 하천경관 가이드라인(코드 RL-4)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하천<br>경관 | 자연형 하천   | • 하천지형이 갖고 있는 하도와 하안, 하천 구조물 등을 그대로 보전하여 자연스러움을 유지                    | ○    |    |
|          |          | • 하천변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농촌경관과 어울리도록 재료·색채 고려                                 |      | ○  |
|          |          | • 여울의 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도록 여울간의 거리를 하폭의 4~6배로 조성                             |      | ○  |
|          |          | • 호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 공법을 적용(센나무가지법, 버드나무가지법, 갈대군락하안, 다공질공법, 야자섬유를 묻기 등) |      | ○  |
|          |          | • 수변접근 계단 설치 시 하안부에 수위조건을 고려하여 규모와 높이를 결정                             |      | ○  |
|          | 인공형 하천   | • 호안은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며, 유지·보수시 자연재료 사용                                 |      | ○  |
|          |          | • 하천지역에 맞는 식생을 식재(갯버들, 버드나무 등)                                        |      | ○  |
|          | 어도       | • 인공형 하천 관리는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을 기본원칙으로 함                                   |      | ○  |
|          |          | • 하천의 단조로움을 피하거나, 구조물을 차폐하기 위해 초화류나 수목 식재                             |      | ○  |
|          | 교량       | • 어도의 위치는 규모, 물고기의 습성, 홍수시 수해가능성, 유지관리, 경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    |    |
|          | 교량       | • 마을의 주요 랜드마크적 요소와 커뮤니티 장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와 규모로 설치                     |      | ○  |
|          |          | • 유량이 적은 곳에는 목재다리, 징검다리, 센다리 등 자연재료를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유도                  |      | ○  |
|          | 수변데크     | • 중요 경관조망점에 수변데크를 조성(하천의 유량, 고수위, 유속의 흐름 등 고려)                        |      | ○  |
|          | 조류관찰대    | • 다양한 조류가 많이 서식하거나, 대량으로 서식하는 장소에 설치                                  |      | ○  |
|          |          | • 조류의 습성을 고려하여 조류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성(은폐 및 식생 도입)                            |      | ○  |
|          | 물놀이장·도설장 | • 하천의 중상류인 계곡과 하류부에 물 보를 쌓아 자연스럽게 조성                                  |      | ○  |
|          |          |                                                                       |      |    |

## 하천경관계획 예시



하천경관 가이드라인 예시



하천경관을 고려한 하천계획(전주시 삼천 및 전주천) 예시

## 자연생태경관

- 개발에 의해 단절된 생태공간의 생태적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비오톱 확보를 통해 조류 및 곤충의 서식공간 조성
- 개발에 의해 훼손된 자연지형은 녹화를 통해 복구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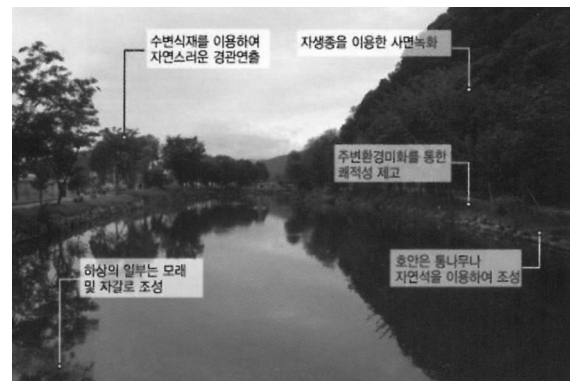
## 자연생태경관 가이드라인(코드 RL-5)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자연생태<br>경관 | 생태통로         | • 농촌지역의 생태축이 도로 등에 의해 단절된 경우 동물의 이동을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생태특성 및 주변지형 등을 고려하여 통로의 형태 및 크기 등을 선정) | ○    |    |
|            |              | •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환경부(2010)에서 작성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                                     |      | ○  |
|            |              | • 생태통로 주변 식생은 주변식생을 도입하여 동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주변식생과 조화를 고려함                         |      | ○  |
|            |              | • 생태통로에 이용되는 토양은 주변지역 표토를 이용하여 토양층을 구성함                                                 |      | ○  |
|            | 생태연못<br>및 습지 | • 기존 실개울과 수림대를 연계하여 생태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함                                                     |      | ○  |
|            |              | • 생태연못의 수심은 최소한 1.5~2.0m가 되도록 조성함                                                       |      | ○  |
|            |              | • 생태연못의 물 순환을 위해 잔출입구를 조성하여 자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 ○  |
|            |              | • 생태연못 호안은 통나무 및 자연석을 이용하여 조성하고, 하안의 일부는 모래와 자갈을 이용하여 조성함                               |      | ○  |
|            |              | • 습지는 마을 내 생태적 가치와 경관 다양성이 높음으로 보존을 원칙으로 함                                              |      | ○  |
|            |              | • 절토 및 성토에 의하여 자연생태 및 경관 훼손이 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의 비탈면이 발생하는 지역에 사면녹화를 적용                     |      | ○  |
|            | 비탈면녹화        | • 산림경관이 양호한 지역의 사면은 식재 및 파종 등 다양한 녹화공법을 이용하여 사면녹화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변의 자연식생과 동화될 수 있도록 함     |      | ○  |
|            |              | • 식재수종은 지형, 지리적 위치, 토질, 암반상태, 토양경도, 용출수, 배수상태 및 구조물 설치 등 생육조건에 따라 선별함                   |      | ○  |
|            |              | • 급속녹화 및 침식방지를 위하여 외래종의 식재는 가급적 자제하고, 자생종으로 식재·파종하도록 함                                  |      | ○  |
|            |              | • 비탈면 하부를 강화하기 위해 옹벽이나 석축을 병행하여 설치함                                                     |      | ○  |
|            | 옹벽·석축        | •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사용                                                               |      | ○  |
|            |              | • 경사면의 상하부분의 경계선을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하여 연속성 확보                                                  |      | ○  |
|            |              | • 주변부에 담쟁이 등의 덩굴성 식물이나 고목류를 식재하여 구조물 차폐                                                 |      | ○  |

## 자연생태경관계획 예시



자연생태경관계획 예시(산책로)



자연생태경관계획 예시(생태연못 및 습지)



## 4) 생활경관 가이드라인

### 주거경관

- 마을의 전체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형태, 색채, 재료 등이 조화되도록 고려하고, 자연경관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친환경적 건축계획요소를 적극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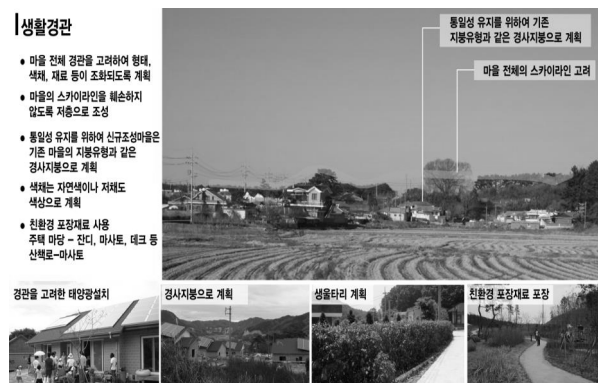
### 주거경관 가이드라인(코드 RL-6)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주거경관     | 단독주택       | • 슬레이트지붕은 모두 철거하고, 주변과 조화되도록 경사지붕 적용                                                |      | ○  |
|          | 공동주택       | • 산지에 입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기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높이 및 배치 유도                       | ○    |    |
|          |            | • 경사지의 경우에는 배후지형의 높이에 따라 적절한 형식의 옹벽을 설치                                             |      | ○  |
|          | 주택단지 배치    | • 입주민의 선호사항에 따라 공동주택개념의 2층 타운하우스 주거형식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단독주택형식을 혼합 배치하여 다양한 주거단지 경관 유도 |      | ○  |
|          | 지붕형태       | • 지붕형태는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경사지붕형태 권장                                                     |      | ○  |
|          | 담장         | • 지붕 색채는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원색에 가까운 고채도 색채는 지양                                         |      |    |
|          |            | •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하여 거주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외부인과의 친밀성을 부여                                      |      | ○  |
|          | 외부공간       | • 노후하여 부식되었거나, 일부분이 훼손된 담장은 즉시 개·보수하여 경관개선                                          |      | ○  |
|          |            | • 옹벽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지형훼손에 의한 옹벽 설치 지양                                              |      | ○  |
|          | 친환경 주거단지   | • 옹벽 상부 또는 하부에는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 유도                                          |      | ○  |
|          |            | • 산림지역의 신선한 공기 유입을 위해 산지 및 구릉지 하단부를 횡으로 완전히 가로막는 건축물 배치 지양                          |      | ○  |
| 산·재생 에너지 | 태양광        | • 태양에너지 활용을 위해 학교, 관공서, 하수종말처리장, 사회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물과 신축개발주택 및 공동주택에는 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 유도   | ○    |    |
|          |            | • 건축물에는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도입하여 열손실 최소화 유도                                                |      | ○  |
|          |            | • 산·재생에너지 설비는 「산·재생에너지설비의 자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                                     | ○    |    |
|          | 지열         | • 산·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펌프보일러, 지열 등)설비의 도입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         |      | ○  |
|          |            | • 건축물은 에너지효율을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세대에서의 연속일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 ○  |
| 물 순환체계   | 투수성 바닥 포장재 | • 마을 내 외부공간의 포장은 물의 순환과 지하수 함양을 위하여 투수성 바닥 포장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 ○  |
|          |            | • 우수·오수의 정화를 위한 하수정화연못 등을 설치하여 자연정화방법으로 생활하수정화 및 자연수의 오염을 최소화 함                     |      | ○  |

### 주거경관계획 예시



주거경관계획 예시 1



주거경관계획 예시 2

## 가로경관

- 가로 시설물과 마을전체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 보도확폭, 공개공지 확보 등을 통하여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도로선형의 변화를 유도하여 다양한 조망을 확보

##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코드 RL-7)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자연생태<br>경관 | 진입도로        | • 마을의 첫인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변과 조화되는 경관식재                                              |      | ○  |
|            |             | • 신규도로 조성시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직선 보다는 굴곡이 있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도입                          |      | ○  |
|            |             | • 가로수와 가로시설물은 농업생산공간에 그늘 등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함                                    |      | ○  |
|            | 내부도로        | • 기존의 자연스러운 도로를 보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농기계와 차량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          |      | ○  |
|            |             | • 주거지, 담장 등의 경관을 감상하고,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게 키가 낮은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향토수종권장)                 |      | ○  |
|            |             | • 마을 안길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재료를 권장                                            |      | ○  |
|            | 자전거도로       | • 자전거 도로의 노폭은 양방향으로 통과할 경우에는 1.1m이상으로 조성                                       |      | ○  |
|            | 산책로         | • 오솔길, 하천변도로, 농로 등을 활용하여 산책코스를 개발                                              |      | ○  |
|            |             | • 도로경계 및 주변부에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산책로 주변에 휴게시설 배치                                       |      | ○  |
|            | 테마로         | • 산책로, 등산로를 포함하여 마을내부도로(안길), 농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레크레이션, 자연 및 역사의 체험 활동을 위한 서비스시설 배치 |      | ○  |
|            |             | • 기존 휴포장을 사용하고, 계단설치 시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연출                                     |      | ○  |
|            | 등산로         | • 기존 임도 및 등산로를 정비 및 개설하여 등산코스를 개발                                              |      | ○  |
|            | 가로등         | • 차량통행이 많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조명지양                                            |      | ○  |
|            |             | • 마을 고유의 디자인으로 직접 재작이 가능한 정원등 권장                                               |      | ○  |
|            | 오페수<br>처리시설 | • 신규로 조성할 경우 주변지형 및 여건을 고려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 ○    |    |
|            |             | • 기존 시설물은 수목을 이용하여 차폐 및 색채계획을 통해 불량경관 완화                                       |      | ○  |
|            | 쓰레기<br>관리시설 | • 마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쓰레기집하장과 재활용품 보관소를 설치                             | ○    |    |
|            |             | • 쓰레기 보관시설은 간이구조물 설치 및 차폐식재                                                    |      | ○  |
|            | 전기<br>통신시설  | • 전신주는 지중화하고 어려울 경우 전신주를 후퇴시켜 가로수와와의 충돌을 피하고, 질서 있게 배치하여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 ○  |
|            |             | • 송전탑은 경관우수지역에 설치를 피하고, 산림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배치                          |      | ○  |

## 가로경관계획 예시



가로경관계획 예시



가로경관계획 개선사례

## 건축경관

- 자연스카이라인과 조화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고도기준을 고려하여 계획
- 건축물은 생태적 건축기법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도시형 건물과 차별되도록 하며, 주변과의 조화유도
- 환경친화적인 재료 및 향토재료를 사용하여 지역성을 반영

##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코드 RL-8)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건축경관 |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요공공시설 | • 주요 공공시설은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마을의 랜드마크적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성                                  |      | ○  |
|      |                    | • 친환경 마감재료 사용, 경사지붕 조성 등을 통해 주변 경관을 배려함                                             |      | ○  |
|      |                    | • 다양한 계층이 이용함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이용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 ○  |
|      |                    | • 마을회관 및 공공시설의 외부공간은 마을주민의 휴게 및 만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함                           | ○    |    |
|      | 건강증진실 및 찜질방        | • 찜질방은 전통 구들방형태나 숯가마형태로 조성                                                          |      | ○  |
|      |                    | •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일반적으로 자연재료인 황토를 이용하여 조성하도록 유도                                          |      | ○  |
|      | 방문자센터              | • 방문자를 고려하여 최적공간을 선정하고 적절한 도입시설을 선택적으로 배치                                           |      | ○  |
|      |                    | • 실내교육, 세미나, 회의실, 안내홍보센터, 식당, 공동화장실 등에서부터 농특산물 판매장, 농어촌체험시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시설로 조성 |      | ○  |
|      | 농특산물 판매장           | • 상설로 조성할 경우와 간이형태로 조성할 경우로 구분하여 적정규모 산정                                            |      | ○  |
|      | 전시박물관              | • 전시박물관은 주출입구에서 순환하면서 관람할 수 있게 하거나,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배치 유도                    |      | ○  |
|      |                    | • 기본적으로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나 체험공간을 함께 연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배치                        |      | ○  |
|      | 영유아 보육시설           | • 기존 마을회관 내 복합시설로 조성하거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      | ○  |
|      |                    | •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시설기준 준수                                                             |      | ○  |
|      |                    | • 위생, 안전,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                                          | ○    |    |
|      |                    | • 놀이시설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 고려, 표면도색은 친환경 페인트소재 사용                                         | ○    |    |
|      | 공동작업장              | •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저운창고, 정미소, 농기계보관소 등은 주거지와 이격하고, 농경지와의 접근이 양호한 위치에 조성               |      | ○  |
|      |                    | • 건물의 색채, 형태, 지붕모양 등은 주변 경관과 조화 유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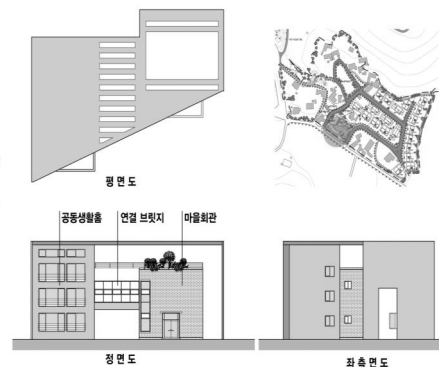
## 건축경관계획 예시



건축경관계획 예시

### 생활경관 : 공공시설

-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여, 마을 공동생활을 하고 마을회관을 연결시켜 이용을 용이
- 마을의 랜드마크적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계획
-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
- 펠렛 보일러를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계획



건축경관계획 예시(마을회관)

## 역사·문화경관

- 전통건축물을 보전하여 고유의 농촌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복원계획을 수립함
- 마을 내 전통건조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로 정리함
- 전통건축물의 주변공간은 전통건축물과 조화되고, 마을의 경관특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성함

## 역사문화경관 가이드라인(코드 RL-9)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역사문화경관 | 유지·보수 | ·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등 보존상태가 양호한 전통주택과 사당, 제실 등 전통 시설은 고유의 농촌경관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권장 |      | ○  |
|        |       | · 보존상태가 양호한 창고, 담, 대문, 우물 등도 전통주택의 부속시설로서 유지·보존                                    |      | ○  |
|        |       | · 전통건축물의 보수 시에는 지역 고유의 건축양식이 있는 경우 지붕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지역 고유양식 유도                    |      | ○  |
|        |       | · 담장 등 부속시설 보수 시에는 형태, 소재, 축조방식 등 전통양식을 유지                                         |      | ○  |
|        |       | · 전통 주택의 주변지역은 층고, 처마높이, 형태를 맞추어 지붕을 조성하여 전통적 지역 특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      | ○  |
|        |       | · 전통건축물 주변지역은 전통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소재를 사용한 전통적 형태의 담장 설치, 향토수종 도입 등을 유도              |      | ○  |
|        | 복원    | · 전통건축물의 구조와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지붕재료나 부속시설의 재료와 형태가 변경된 시설은 가급적 원형으로 복원                   |      | ○  |
|        |       | · 이질적 재료를 사용한 주택 부속건물 등의 지붕은 전통적 재료로 복원함                                           |      | ○  |
|        |       | · 전통건축물의 복원 시에는 지역 고유의 건축양식이 있는 경우 지붕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지역고유양식을 따름                    |      | ○  |
|        |       | · 흙담, 돌담, 전통우물, 대문 등 훼손되었거나, 원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원형 복원                                  |      | ○  |
|        | 역사유적  | · 역사유적은 원형을 보전하며, 유적 훼손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                                             |      | ○  |
|        |       | · 유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질적이지 않은 형태, 소재, 색상 등을 사용                                           |      | ○  |

## 역사·문화경관계획 및 디자인 예시



## 5) 외부공간 및 기타시설물 경관 가이드라인

### 외부공간경관

- 구조적 안전성과 재료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조형과 기능이 일치하도록 계획
-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 및 식재 등을 이용하여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함

### 외부공간경관 가이드라인(코드 RL-10)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외부공간<br>경관 | 마을<br>공동쉼터 | • 마을의 중심 커뮤니티 공간이면서 상징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함                                            |      | ○  |
|            |            | • 공원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조성하고, 주변여건 및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                    |      | ○  |
|            |            | • 쉼터에 도입되는 시설물은 목재, 석재 등 자연적인 소재를 이용한 시설물을 선정하도록 함                               |      | ○  |
|            | 공동<br>주차장  | • 마을 전체의 경관을 고려하여 과도한 시설설치를 제한                                                   |      | ○  |
|            |            | • 마을진입로주변, 주요 공공시설주변에 설치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조성               |      | ○  |
|            |            | • 포장은 친환경적인 재료인 잔디블럭, 투수성 블록 등 투수성과 자연미를 강조하는 재료사용                               |      | ○  |
|            | 버스정류장      | • 차량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녹음식재를 주차장 경계부에 식재                                            |      | ○  |
|            |            | • 지역성을 대표하고 마을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테마시설로 조성                                         |      | ○  |
|            | 공동화장실      | • 건물의 형태 및 재료는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함                                         |      | ○  |
|            |            | • 건물주변은 초화류나 관목류를 식재하여 쾌적한 공간분위기를 연출                                             |      | ○  |
|            | 공원         | • 마을 내 역사·문화자원이나, 자연자원 등과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함                                           |      | ○  |
|            |            | • 주변자원과의 이질감이 연출되지 않도록 시설물, 식재, 색채 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함                            |      | ○  |
|            | 정자         | • 형태는 마을특성에 맞도록 조성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                                                 |      | ○  |
|            |            | • 외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                                                         |      | ○  |
|            | 파고라        | • 목재로 만든 파고라 위에 등나무, 능소화, 장미, 수세미, 나팔꽃 등의 덩굴 성 식물을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                   |      | ○  |
|            | 벤치         | • 휴먼스케일에 알맞은 규격으로 설치하여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함                                              |      | ○  |
|            |            | • 이용률이 떨어져 방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 ○  |
|            | 야외탁자<br>벤치 | • 저습지, 먼지가 일어나기 쉬운 곳은 피하고 붕괴 및 기타 위험요소가 없는 장소에 배치                                |      | ○  |
|            |            | • 탁자는 의자 사이는 간격을 적절히 띄워서 몸이 들어가기 쉽도록 하고, 앉았을 때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인간의 신체구조에 맞게 설치 |      | ○  |

### 외부공간경관 디자인 예시



잔디블럭을 활용한 주차장



의자와 야외탁자를 배치한 파고라



마을 내 소규모 공원

## 기타 시설물경관

- 조경성, 기능성, 안정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유도

## 기타 시설물경관 가이드라인(코드 RL-11)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기타<br>시설물<br>경관 | 안내표지판 | • 마을 내부 안내판은 모두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여 통일감을 부여하도록 함                                                | ○    |    |
|                 |       | • 마을만의 고유특성을 살려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 설치                                                    |      | ○  |
|                 |       | • 어른, 어린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1,350mm높이에 그래픽 중심점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함                 |      | ○  |
|                 |       | • 본문내용의 글자크기는 거리 3m를 기준으로 높이 200mm이상을 권장                                                 |      | ○  |
|                 |       | • 시설물과의 거리를 3m기준으로 바닥면에서 본문내용까지의 거리를 900mm에서 시작하여 2,100mm까지의(사이거리 1,200mm)통상시야에 넣을 것을 권장 |      | ○  |
|                 | 숫대장승  | • 장승과 숫대의 배치방법과 제작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본래의 전통적인 상징요소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함                   |      | ○  |
|                 |       | • 대부분 목재를 이용하고, 벽수와 같이 변용되어 석재를 활용하여 상징적으로 조성하기도 함                                       |      | ○  |
|                 | 수목식재  | • 마을경관의 향상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전체공간별 성격 및 기능에 맞는 식재계획을 수립함                                |      | ○  |
|                 |       | • 식재는 장소성 및 정체성 제고, 경관 연속성 및 흥미 유발, 프라이버시 보호 및 쾌적한 공간 형성 등 다양한 효과연출을 위해 사용               |      | ○  |
|                 |       | • 보행유도 및 공간간의 연결기능을 부각시키며 경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함                                  |      | ○  |
|                 |       | • 가로수는 그늘이 주변 농업 생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형태 및 배치를 고려한 식재계획을 수립함                        |      | ○  |
|                 |       | • 마을진입도로 가로수는 도로의 최소 유효 보도폭에 2m를 확보하여 식재                                                 |      | ○  |
|                 |       | • 가로수의 돌출되는 가지로 인한 교통장애방지를 위해 보차도 경계석에서 0.5m이상 보도 내측에 식재함                                |      | ○  |
|                 |       | • 가로수는 6~8m간격으로 식재하되,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등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식재함                                    |      | ○  |
|                 |       | • 가로수 식재를 위한 띠녹지를 만들어 하부목과 동시에 식재하도록 유도                                                  |      | ○  |

## 기타 시설물경관 디자인 예시



마을종합안내판



시설안내판



마을 입간판

## 6) 색채경관 가이드라인

### 생활경관 색채

- 생활경관의 색채는 자연경관 색채와 잘 조화되도록 유도하고 마을의 역사, 문화, 전통, 상징 등을 나타나도록함
- 색채의 계획 및 관리는 농어촌다운 색채경관 이미지를 우선 고려함

### 생활경관 색채 가이드라인(코드 RL-12)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생활경관<br>색채 | 주거  | • 주거공간의 색채계획은 입지유형별 자연경관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계획                                               |      | ○  |
|            |     | • 입지유형은 산지, 평야, 강변, 해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지유형별 자연경관 색채와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유도               |      | ○  |
|            |     | • 마을의 전통적, 역사적, 문화적 경관특성을 반영하여 색채 계획                                                  |      | ○  |
|            |     | • 농어촌 주택의 형태와 재료 특성에 따라서, 지붕, 벽, 담, 대문 등을 구분하여 적용                                     |      | ○  |
|            |     | • 기존 주택의 색채정비는 현 시설의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과 형태를 고려                                             |      | ○  |
|            |     | • 보존가치가 있는 기와집, 너와집, 초가집, 굴피집 등의 색채정비는 주택의 원형 재료와 색채로 정비                              |      | ○  |
|            | 가로  | • 마을 진입도로, 내부도로의 포장재료 색채는 고채도의 원색을 지양                                                 |      | ○  |
|            |     | • 산책로, 테마로, 등산로, 자전거도로 등의 포장 재료는 흙 포장으로 하고, 배수가 불량한 곳은 마사토, 쇠석 등을 사용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 |      | ○  |
|            |     | • 가로에 설치되는 안내표지판, 마을상징물, 버스승강대 등은 가급적 석재나 목재를 사용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                     |      | ○  |
|            | 건축  | • 마을회관, 경로당, 건강 증진실, 찜질방, 농특산물 판매장 등의 색채는 주거공간 색채경관과 구분하여 적용                          |      | ○  |
|            |     | • 주거시설보다 규모가 크므로 자연경관과 대비되지 않고, 유사 조화되도록 계획                                           |      | ○  |

### 역사·문화경관 색채

- 마을이나 지역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색채경관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이나 지역의 시설물 색채는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

### 역사문화경관 색채 가이드라인(코드 RL-13)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역사문화<br>경관<br>색채 | 보존적<br>측면 | •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물의 색채 정비는 채색재료, 도안, 색채 모두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                                |      | ○  |
|                  |           | • 문화재는 아니지만, 가치가 있는 시설물의 색채정비도 가급적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며, 유성 페인트로 무분별하게 채색하지 않도록 유도                |      | ○  |
|                  | 개발적<br>측면 | • 기와집, 너와집, 굴피집, 초가집 등은 재료와 색채, 형태 등을 원형 그대로 개발, 보존 될 수 있도록 계획                            |      | ○  |
|                  |           | • 마을이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저장고, 방앗간, 정자, 서낭당 등 향토역사 문화재들도 색채와 재료, 형태 등을 원형 그대로 개발,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 |      | ○  |
|                  |           | • 기와지붕의 정비는 페인트를 통한 채색이 아닌, 기와자체를 교체                                                      |      | ○  |
|                  |           | • 창호, 기둥, 서까래, 벽 등의 정비도 페인트로 채색하지 않고, 원형 재료 사용                                            |      | ○  |
|                  |           | • 마당, 진입로, 안내판 등은 흙, 돌, 목재 등의 친환경 자연재료 사용                                                 |      | ○  |
|                  | 주변시설      | • 문화재 인근 시설물의 색채는 유목성을 낮추어서, 문화재의 색채경관을 압도하지 않도록 계획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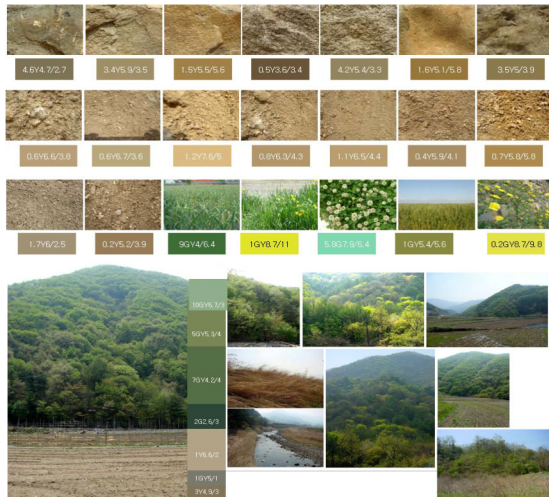
## 외부공간시설물 및 광고물 색채

- 마을의 역사, 문화, 전통, 상징적인 시설물의 색채경관을 보존, 발굴, 계승 하여 농어촌다운 색채경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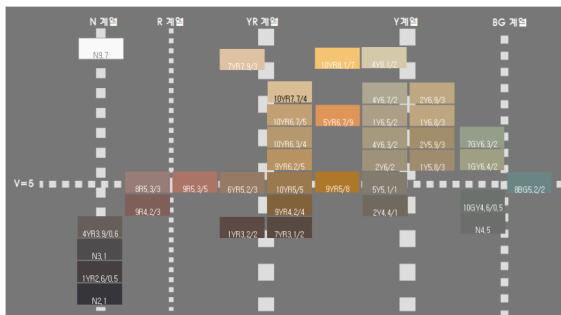
## 외부공간시설물 및 광고물 색채 가이드라인(코드 RL-14)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외부공간<br>시설물<br>및<br>광고물<br>색채 | 외부공간 및<br>세부시설      | • 마을마당, 버스정류장 등 세부시설도 생활경관 색채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적용         |      | ○  |
|                               |                     | •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자연환경색채와 조화되도록 조성                  |      | ○  |
|                               |                     | • 장승, 솟대, 기타 마을상징물들은 이들의 전통색채와 재료로 계획              |      | ○  |
|                               | 표식시설물<br>및<br>상업광고물 | • 표식시설물의 색채는 생활경관이나, 외부공간 등 기타 시설물의 색채와 구분하여 개발 적용 |      | ○  |
|                               |                     | • 표식시설물의 색채는 지역 색을 고려                              |      | ○  |
|                               |                     | • 상업광고물에 사용하는 색의 수 및 주조색/강조색의 면적비를 제한              |      | ○  |
|                               |                     | • 상업적 외부광고물은 권장색채 매뉴얼을 준수                          |      | ○  |
|                               |                     | • 상업광고물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구분하여 개발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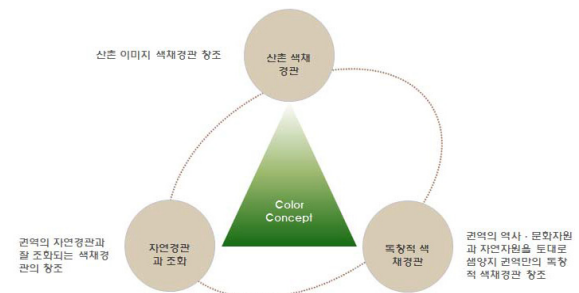
### 색채계획 프로세스 예시



### 지역 색 분포도 분석 및 Color Concept 설정 예시



자연환경색채와 역사문화경관의 색표를 색상과 색조계열로 구분



- 마을의 입지적 특성, 자연자원, 인문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Concept 설정
- 자연경관과의 조화, 농어촌다운 색채경관 이미지 창출



## Color Pallet 작성 예시

|                                  |       |            |          |           |          |           |       |
|----------------------------------|-------|------------|----------|-----------|----------|-----------|-------|
| 권역광동<br>시면트기화,<br>환식기화           | 주조색   | N 2        | N 3      | N 4       | N 5      |           |       |
|                                  | 악센트 색 | N 8.5      | N 8.5    |           |          |           |       |
| 1권역<br>(향정, 신구리)                 | 주조색   | SRM/3      | 7.5R5/3  | 10R5/3    |          |           |       |
|                                  |       | 10YR4/4    | 7.5YR5/5 | 10YR5/7   | 7.5YR6/4 | 7.5R6/1.5 | 5R6/2 |
|                                  | 악센트 색 | 7.5YR8.5/1 | 10YR8/1  | N 6.5     | N 8.5    |           |       |
|                                  |       | 7.5YR9/2   | 10YR9/3  | 2.5YR4/3  | 5YR6/3   |           |       |
| 2권역<br>(사동, 남천,<br>남초, 문수전<br>리) | 주조색   | 2.5YR4/1.5 | 5Y5/2    | 2.5YR/1.5 |          |           |       |
|                                  |       | 5Y8.5/1.5  | 7.5YR8/1 | N 8.5     | N 8.5    |           |       |
|                                  | 악센트 색 |            |          |           |          |           |       |
|                                  |       |            |          |           |          |           |       |

지붕의 Color Pallet 작성 예시

|      |     |           |            |           |         |         |       |
|------|-----|-----------|------------|-----------|---------|---------|-------|
| 벽, 담 | 주조색 | 10YR9/2   | 5YR8.5/1.5 | 5Y8.5/1.5 | 10YR9/1 | 2.5Y9/1 |       |
|      | 보조색 | 10YR5/2.5 | 5YR5.5/3   | 5Y5/3     | 2.5Y6/3 |         |       |
| 대문   |     | 10YR5/3   | 5YR6/4     | 5Y5/4     | 2.5Y6/4 |         |       |
| 간판   | 주조색 | N 8.0     | N 8.0      | N 8.5     | 5R9/1   | 5YR9/1  | 5Y9/1 |
|      |     |           |            |           |         |         |       |
|      | 보조색 | 5YR4/3    | 5YR4/3     | 5R4/3     | 5R4/2   |         |       |
|      |     |           |            |           |         |         |       |
| 장조색  |     | 5R6/7     | 5YR6/8     | 5Y6/6     | 5G5/6   | 7.5R6/6 |       |
|      |     |           |            |           |         |         |       |

벽, 담, 대문의 Color Pallet 작성 예시

## 색채계획 적용 사례



조성 전

조성 후

### 3. 경관권역·축·거점 경관가이드라인

#### 1) 경관권역·축·거점 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적용

경관권역·축·거점 경관가이드라인의 방향

| 구 분  |                                   | 가이드라인 방향                             |
|------|-----------------------------------|--------------------------------------|
| 경관권역 | 수변관리권역                            | 해안과 어우러진 휴양권역 창출                     |
|      | 생태보전권역                            | 역사를 살리는 녹색문화권역 형성                    |
|      | 청정자연권역                            | 자연과 하나되는 청정문화권역 형성                   |
|      | 생활중심권역                            | 자연과 어우러진 커뮤니티 창출                     |
| 경관축  | 녹지축                               | 동서녹지축: 비인면-판교면-문산면을 잇는 동서녹지축 유지 및 형성 |
|      |                                   | 남북녹지축: 남북녹지축의 유지 및 형성                |
|      | 수변축                               | 해안경관축: 서해안의 리아시스식 해안경관축 형성 및 관리      |
|      |                                   | 금강수변축: 금강 수변축 경관형성 및 관리              |
|      |                                   | 지천축: 주요 지천의 경관형성 및 관리                |
|      | 가로축                               | 상징가로축: 서천을 남북으로 가로지는 상징 가로축 형성       |
|      |                                   | 해안도로축: 해안을 따라 형성된 해안 가로축 경관 형성       |
|      |                                   | 역사문화가로축: 장항-마서-화양-한산면을 잇는 역사가로축 형성   |
| 경관거점 | 자연경관 거점                           | 녹지경관거점: 녹지경관거점의 경관 관리 및 형성           |
|      |                                   | 수변경관거점: 주요 수변경관거점의 경관 관리 및 형성        |
|      | 역사문화경관거점: 주요 역사문화경관거점의 경관 관리 및 형성 |                                      |
|      | 상징경관거점: 상징경관거점의 경관 관리 및 형성        |                                      |
|      | 관문경관거점: 주요 관문의 경관 관리 및 형성         |                                      |
|      |                                   |                                      |



경관권역·축·거점 경관가이드라인 적용범위

## 경관권역·축·거점 경관가이드라인 경관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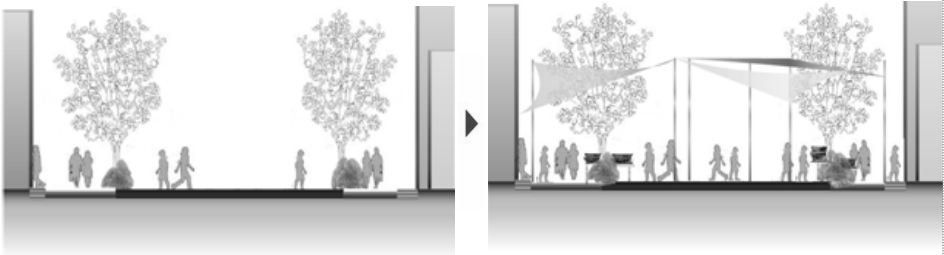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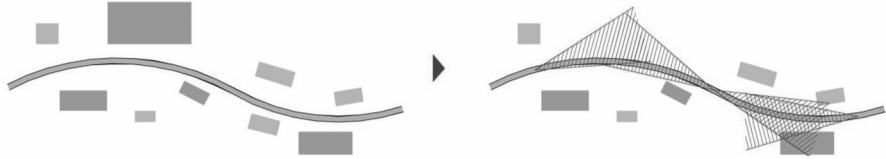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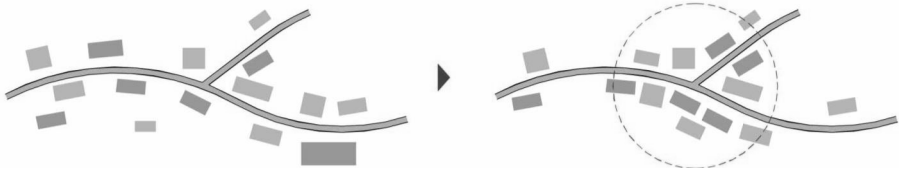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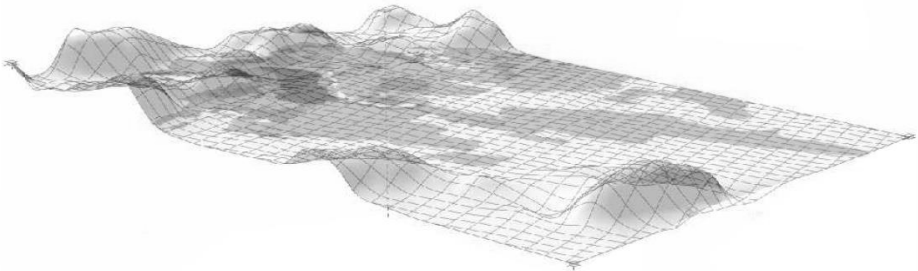
- 경관가이드라인은 도시공간 및 이미지, 건축물 및 주변 공간, 도시시설 3파트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통합적이며 종합적인 경관 형성 및 관리가 되도록 제시
- 24개 항목에 대한 주요 경관가이드라인상 경관요소 항목을 선정하여 주요 경관요소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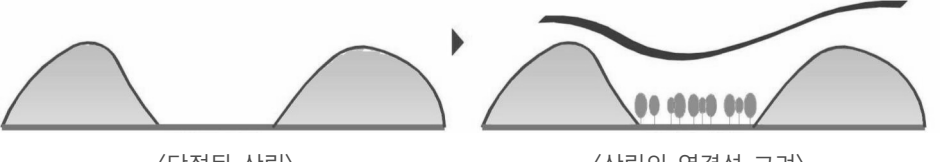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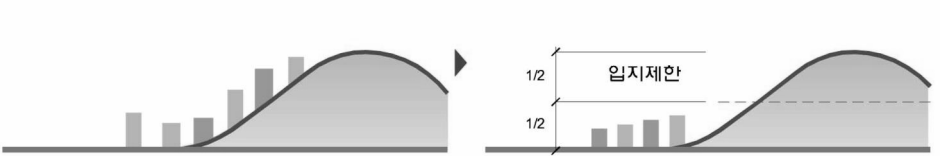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용도(지역·지구·구역)</li> <li>– 주거·상업·공업용지</li> <li>– 시가화용지, 시가화에정용지, 보전용지</li> <li>– 관리지역 세분</li> <li>–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li> <li>–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전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기타</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화 개발계획</li> <li>– 의료보건/사회복지/교육/문화·체육시설</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 지역·거리, 개발사업 등</li> <li>·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지정</li> </ul>                                                                       |    |
|                      | 환경·생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생태 보전, 환경오염 규제</li> <li>–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li> <li>– 대기환경 및 수환경의 보전</li> <li>– 상·하수도/폐기물/에너지</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리</li> <li>– 산림, 구릉지 개발 지침</li> <li>–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li> </ul>                                                       |    |
|                      | 가구·획지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및 획지분할(가구의 형상)</li> <li>· 필지(획지)분할(가능성, 권장), 대지규모·형상</li> <li>· 공동개발, 합벽개발(맞벽건축)</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동선(보도, 보행육교·데크, 건물통과도로, 공개공간, 유계보행통로, 보행자도로 및 출입구), 보행자전용도로, 보차혼용(공존)도로</li> </ul>                                         |    |
|                      | 보행자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 거리, 쇼핑몰, 아케이드</li> <li>· 지하상가(지하보도)</li> <li>· 보도의 폭원, 포장재, 가로수 식재, 가로시설물(재료, 설치)</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도로망 패턴, 자동차전용도로, 자전거도로</li> <li>· 교차로,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고가도로, 교량 등</li> <li>· 도로의 간격, 도로율, 차선수, 교차방식</li> </ul>             |    |
|                      | 도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외주차장, 주차장 위치 및 진입위치, 주차방식, 차량진출입로, 차량 출입구 분리, 공동주차장 등</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호수, 해안 등 수변공간(접근성, 자연환경 보전)</li> <li>· 광장(역전·교통·도시광장 등), 운동장 등</li> <li>· 도시공원, 광역공원, 유원지, 유수지</li> </ul>                |    |
| 공원·녹지                | 오픈스페이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li> <li>· 시설녹지, 경관녹지, 완충녹지, 공공공지</li> <li>· 녹지율, 녹시율, 수(水)시율, 녹지구조 등</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의 이미지, 스카이라인</li> <li>· 조망축·경관축·통경축(시각통로(회랑/visual corridor) 지구 및 시가지 전체 조망, 도로(가로)조망, 하천 조망 등</li> </ul>                  |    |
|                      | 경관이미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축, 녹지축, 하천축, 해안축, 수변축, 역사문화축, 철도축, 산림축</li> </ul>                                                                          |    |
|                      |         |                                                                                                                                                                       |    |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건축물<br>및<br>주변<br>공간 | 스카이라인       | · 지역경관(경관권역), 연속경관(경관축), 초점경관(경관거점)                                        |    |
|                      | 도시 맥락       | · 건축물 높이 제한, 고층건물의 고지대 입지제한                                                |    |
|                      | 건축물 규모      | · 장소적, 형태적 맥락                                                              |    |
|                      | 건축물 용도      | ·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밀도, 높이(층수)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저층용도, 혼합용도, (부대복리/부대시설)                                                  |    |
|                      |             | · 건축물 용·불허용도(불허용도, 지정용도, 권장용도)                                             |    |
|                      |             | · 결절점, 랜드마크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건축선·벽면 후퇴, 건물전면방향 배치 등                                                   |    |
|                      |             | · 건물의 향, 자연지형, 경사도                                                         |    |
|                      | 건축물 외관      | · 건축물의 형태, 매스, 디자인 분절, 길이, 지붕형태, 건축양식, 출입구 지정 등                            |    |
|                      |             | · 투시형 셔터, 1층 바닥높이, 1층 개구부 높이                                               |    |
|                      |             | · 지붕형태, 처마돌출, 옥상의 이용(처리)                                                   |    |
|                      |             | · 베란다, 발코니, 계단, 난간 등                                                       |    |
|                      | 대지내 공지      | · 벽면(외벽)처리(형태 및 재료), 색채, 투시벽, 벽면녹화                                         |    |
|                      |             | · 대문, 담장형태(생울타리), 높이 및 재료, 색채                                              |    |
|                      | 대지내 조경      | · 전면공지(측면공지, 배후공지), 공공공지, 공개공지(침상형 공지), 공지면적, 공지의 부분한정, 공지율, 공공보행통로(지하)    |    |
|                      |             | · 쌈지공원, 중정, 차양, 피로티, 공공회랑                                                  |    |
| 도시<br>시설             | 건축물 간격      | · 공공조경, 옥상조경(정원), 차폐, 대지경계선 조경, 대지내 조경 등                                   |    |
|                      | 옥외광고물       | · 인동간격, 도로사선제한                                                             |    |
|                      | 가로시설물       | · 간판(세로형, 가로형, 돌출형, 옥상광고간판 등),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선전탑 등                       |    |
|                      |             | · 도로·보도포장 등                                                                |    |
|                      | 색채          | · 휴식편의시설, 교통시설, 정보판매(kiosk), 가로(환경)조형물, 스트리트 퍼니처, 조명시설(가로등), 식재(가로수), 녹화 등 |    |
|                      |             | · 차량·보행안내체계, 자연환경, 건축물, 구조물색                                               |    |
|                      | 야간조명        | · 도시경관색채, 자연환경, 건축물, 구조물색                                                  |    |
| 기타시설물                | 기타시설물       | · 풍토색, 지역색, 용도별 색채 가이드라인                                                   |    |
|                      |             |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    |
|                      | 기타시설물       | · 야간경관조망대상 및 구역, 조명연출수법, 야간경관 장애요소                                         |    |
| 기타시설물                | 기타시설물       | · 경관저해시설(송전·통신·광고탑), 방음벽, 전신주, 굴뚝 등                                        |    |
|                      |             | · 수도공급시설비, 전기공급시설비, 가스공급시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비, 열공급시설비            |    |
|                      | 기타시설물       |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

## 2) 경관권역 · 축 · 거점 경관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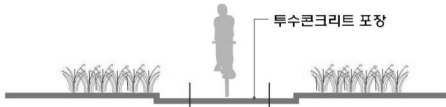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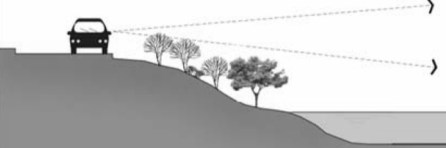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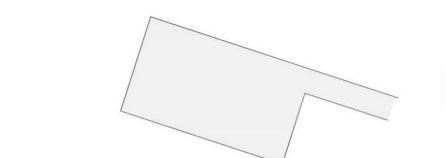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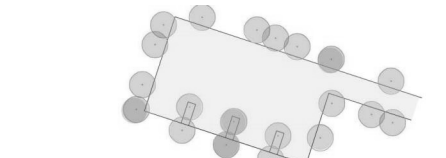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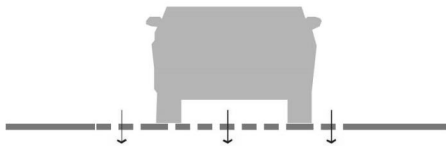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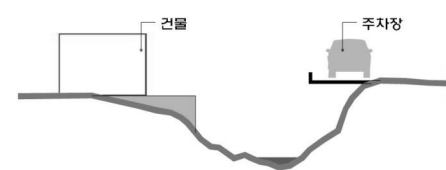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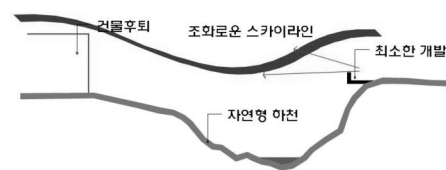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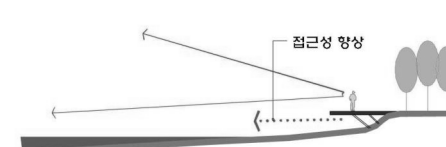
### 경관가이드라인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토지이용<br>패턴 | 1  | · 형질변경 최소화 및 물건적치행위 최소화                                                                                                                                                                                                                                                                                                                                                                                                                                                                                                                                                                                                        |    |
|            | 2  | · 주요 해수욕장 및 항구 지역특화거리 조성 권장<br>- 춘장대 해수욕장, 비인해수욕장, 송석항, 다사포구, 월하성, 흥원항 등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span>〈기존거리〉</span> <span>〈특화거리〉</span> </div>                                                                                                                                                                                                                                                                                                                                                                                                                |    |
|            | 3  | · 계획적인 토지이용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span>〈기본계획〉</span> <span>〈시각적 민감도를 고려한 계획〉</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span>〈기본계획〉</span> <span>〈효율적인 토지이용〉</span>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경관민감지역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발 가용지 산정 예시〉</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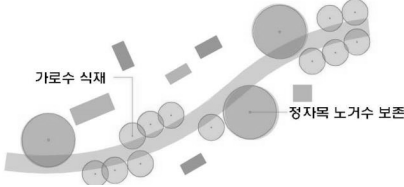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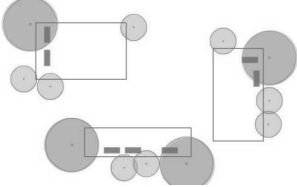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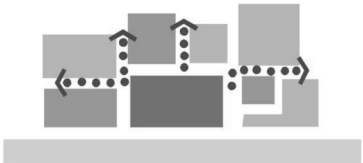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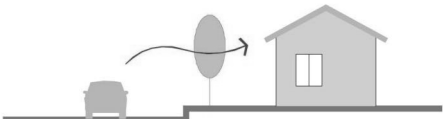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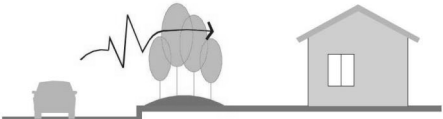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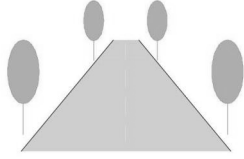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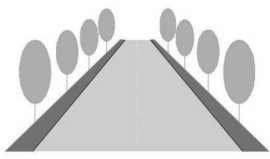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환경·생태    | 4  | <p>·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유도</p>  <p>〈기본계획〉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권장〉</p>                               |    |
|          | 5  | <p>· 단절된 생태계 연결</p>  <p>〈기본계획〉                      〈단절된 패치의 연결〉</p>                                               |    |
|          | 6  | <p>· 단절된 산림의 연결</p>  <p>〈단절된 산림〉                      〈산림의 연결성 고려〉</p>                                            |    |
|          | 7  | <p>· 생태계보전지역 및 주요보존지역의 체계적인 관리</p>  <p>〈보전지역 설정〉                      전이      완충      핵심<br/>〈유네스코 맵에 의한 관리〉</p> |    |
|          | 8  | <p>· 산지 및 구릉지 개발 제한</p>  <p>〈무분별한 개발〉                      1/2      입지제한      1/2<br/>〈산지 및 구릉지 건축 입지 제한〉</p>    |    |
| 가구·획지 계획 | 9  | <p>· 지역 특성에 맞는 가구획지 계획</p>                                                                                                                                                                           |    |
|          | 10 | <p>· 구시가지 건축 밀집지역 맞벽구조 건축 권장</p>  <p>〈건축 밀집지〉                      건물 신축시 : 맞벽구조<br/>〈건물 신축시 맞벽구조, 합필 권장〉</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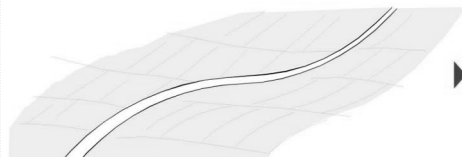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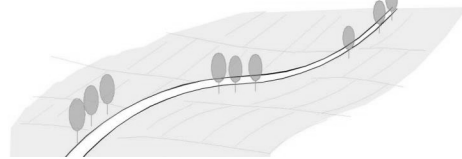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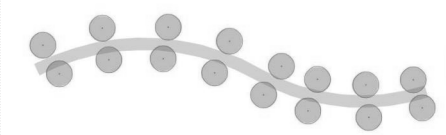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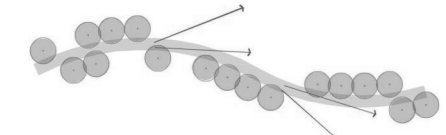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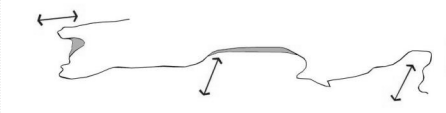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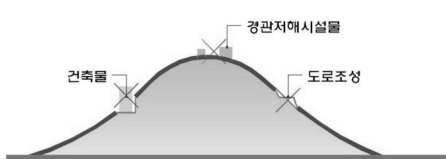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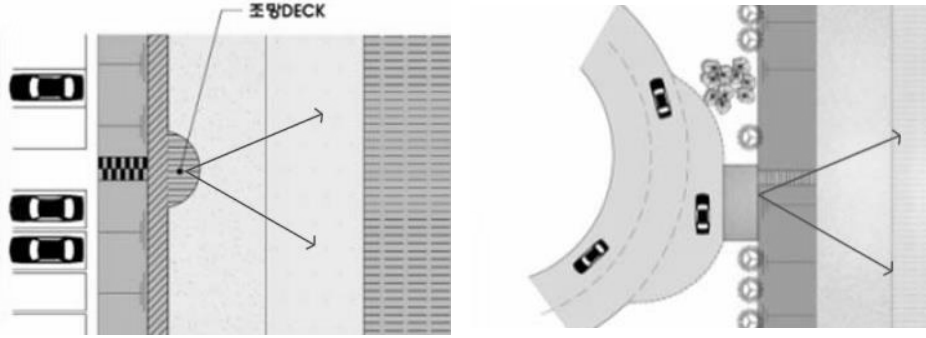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보행자<br>공간 | 11 | · 세장형 필지 지양<br><br>〈현재 필지〉                      〈세장형 필지 지양〉                                   |    |
|           | 12 | · 개별 포장된 보행자공간을 통합된 보행영역으로 조성<br><br>〈개별적으로 조성된 보행가로〉                      〈통합된 보행영역으로 조성〉    |    |
|           | 13 | · 보행자 공간 확보<br><br>〈도심지 보행자 공간 협소〉                      〈보행자공간 확폭〉                            |    |
|           | 14 | · 보행밀도가 높은 횡단보도는 차별화 하여 보행 안정성 및 경관개선<br><br>〈획일적인 횡단보도〉                      〈보행자를 배려한 횡단보도〉 |    |
| 도로        | 15 | · 도로 조성시 절·성토면 최소화 및 절·성토 경사면 녹화<br><br>〈도로조성〉                      〈절·성토 최소화 및 경사지 녹화〉       |    |
|           | 16 | · 도로변 녹지대 조성시 우수침투가 가능하도록 조성<br><br>〈우수침투 불가〉                      〈우수침투 가능한 녹지대 조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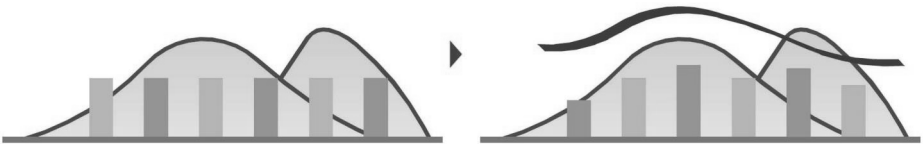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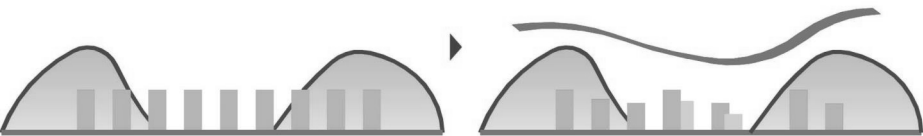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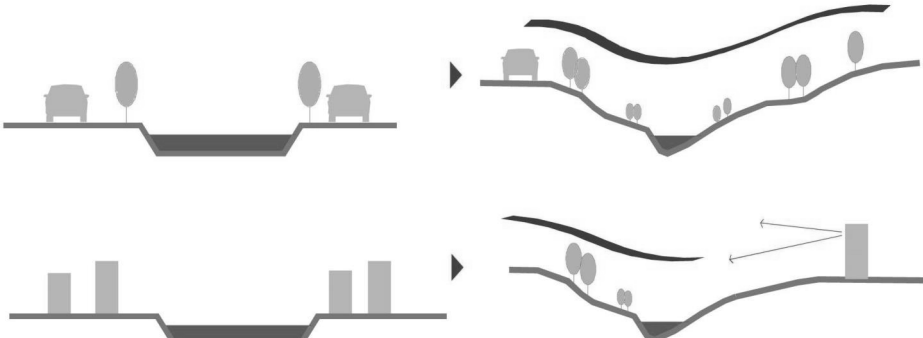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 17 |  <p>〈자전거도로〉</p>  <p>〈우수침투 가능 자전거도로〉</p> <p>· 해안도로 정비시 지형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p>                                                                                                                                                                                                            |    |
|        |    |   <p>－ 서해안의 갯벌해안과 사구해안 지형을 고려하여 도로계획(조망이 가능하도록 조성)<br/>－ 해안도로 개설시 해변경관 조망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유도</p>                                                                                                                                                                                       |    |
| 주차장    | 18 |  <p>〈기존 주차장〉</p>  <p>〈그늘식재, 투수성포장재 도입 주차장〉</p>  <p>〈불투수성 포장〉</p>  <p>〈투수성포장재 사용〉</p> <p>· 환경친화적 주차장 조성</p> |    |
|        |    |  <p>〈기능위주의 하천〉</p>  <p>〈자연친화적 하천조성〉</p> <p>· 하천변 오픈스페이스는 친환경하천으로 조성</p>                                                                                                                                                                                                         |    |
| 오픈스페이스 | 20 |  <p>〈해안경관〉</p>  <p>〈해안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관연출〉</p> <p>· 해안변 오픈스페이스는 수변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p>                                                                                                                                                                                               |    |
|        |    |  <p>〈해안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관연출〉</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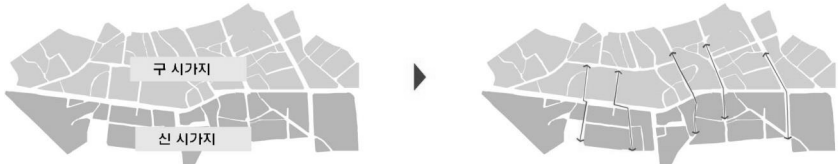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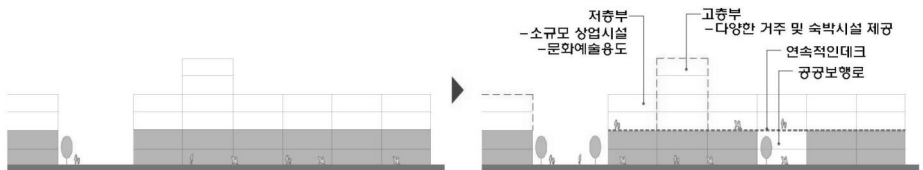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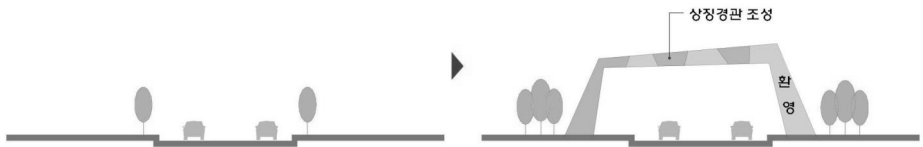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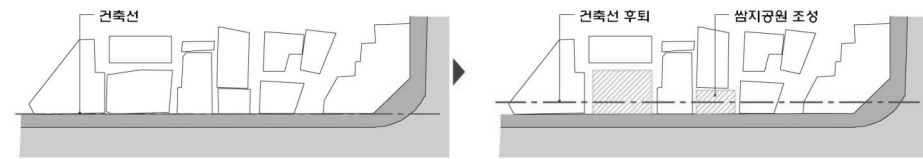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공원녹지 | 21 | <p>· 오픈스페이스 조성방안</p> <div>   </div> <p>〈기존 노거수의 보호〉      〈녹음과 어우러지는 공간조성〉</p>                                                |    |
|      | 22 | <p>· 기능적인 오픈스페이스를 지양하고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이 있는 오픈스페이스 조성</p> <div>   </div> <p>〈기능적인 오픈스페이스〉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이 있는 오픈스페이스〉</p> |    |
|      | 23 | <p>· 주변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p> <div>   </div> <p>〈폐쇄적인 공원·녹지〉      〈개방적인 공원·녹지〉</p>                                     |    |
|      | 24 | <p>· 다층구조식재를 적용한 완충녹지 조성</p> <div>   </div> <p>〈완충녹지〉      〈다층구조 식재를 도입한 완충녹지〉</p>                                       |    |
|      | 25 | <p>· 도로변 녹지율 및 녹시율 증대</p> <div>   </div> <p>〈현행 도로〉      〈도로변 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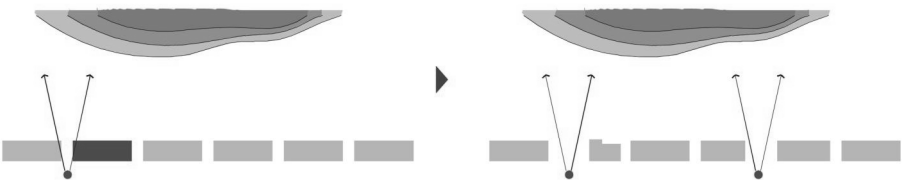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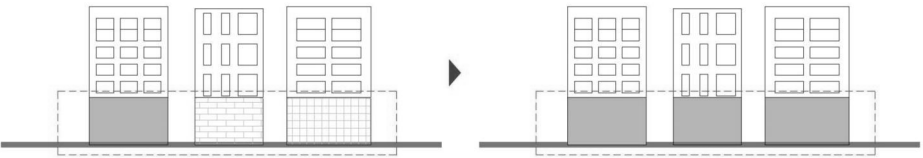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경관이미지 | 26 | <p>· 어린이 놀이터는 친환경놀이터로 조성</p> <div>   </div> <p>〈기존 획일적인 놀이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놀이터〉</p>       |    |
|       | 27 | <p>· 주요 결절부 경관형성</p> <div>   </div> <p>〈획일적인 진입부〉      〈상징조형물, 경관식재를 통한 관문경관형성〉</p>           |    |
|       | 28 | <p>· 구릉지 및 하천경관 생태적 연속성 확보</p> <div>   </div> <p>〈구릉지 및 하천경관〉      〈생태 코리더 조성(연속성확보)〉</p> |    |
|       | 29 | <p>· 시각적 연속성 확보</p> <div>   </div> <p>〈기존도로 및 가로수〉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한 식재〉</p>             |    |
|       | 30 | <p>· 리아시스식 해안 보전</p> <div>   </div> <p>〈리아시스식 해안〉      〈리아시스식 해안보전〉</p>                   |    |
|       | 31 | <p>· 주요 경관거점 경관형성 및 관리</p> <div>   </div> <p>〈주요 자연경관거점〉      〈경관저해시설물 입지 제한 및 완화〉</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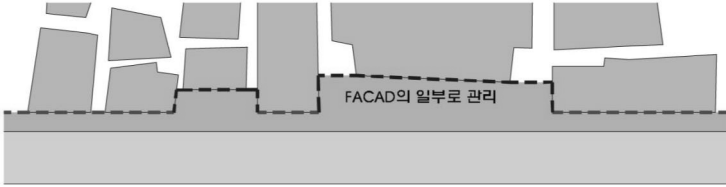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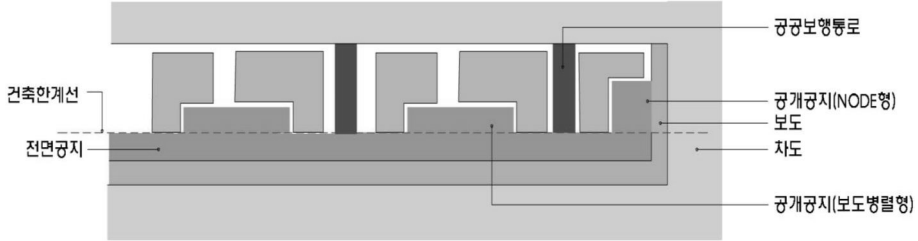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 32 | <p>· 주요 문화경관거점 왜소화 방지</p>  <p>〈문화경관거점의 왜소화〉      〈문화경관거점과의 조화〉</p>                                                                                                                                                                                                                                                                                                                                                                                                                                                                                                                                                                                                                                                                                                                                                                                                                                                                                                                                                                                                                                                                                                                                          |    |
|     | 33 | <p>· 해안경관 조망점 설치</p>  <p>         -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식재시 시야 확보를 위한 디자인 적용<br/>         - 조망권 확보 및 흥미유발을 위한 디자인 권장       </p>                                                                                                                                                                                                                                                                                                                                                                                                                                                                                                                                                                                                                                                                                                                                                                                                                                                                                                                                                                                                                                                                                 |    |
|     | 34 | <p>· 해안경관은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및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해설서’ 준수</p>  <p>         해안선 40m 100m 500m 2,000m<br/>         해안경관 관리범위<br/>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br/>         해안선 보호구역<br/>         해안 중점관리구역<br/>         해안 연결관리구역       </p> <p>         해안선과 최대한 이격거리 확보, 공공 이용공간으로 조성<br/>         시설물의 높이·배치·규모·형태·색채 등을 중점관리<br/>         스카이라인 등 통경축 확보 및 시설물의 경관형성 유도       </p> <p><b>해안경관가이드라인의 구성</b></p>  <p>         해안경관<br/>         시가지경관    산업경관    농어촌경관    관광휴양경관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    생태경관       </p> <p><b>해안경관가이드라인 적용</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법」에 의한 서해안권별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li> <li>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li> <li>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li> <li>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항만법」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 등</li> <li>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 및 어촌, 「마리나항만법」에 의한 마리나항,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li> <li>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관광진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li> <li>7.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해안마을 조성사업, 해안도로 정비사업,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특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조망공간 조성사업 등의 단위사업</li> </ol> |    |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스카이라인 | 35 | <p>· 배경이 되는 산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p>  <p>〈배경과 조화되지 않는 스카이라인〉      〈배경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p>                  |    |
|       | 36 | <p>·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p>  <p>〈획일적인 스카이라인〉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한 스카이라인〉</p>                        |    |
|       | 37 | <p>·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산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테라스형 건축계획</p>  <p>〈산림과 조화되지 않는 스카이라인〉      〈산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p> |    |
|       | 38 | <p>· 하천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고려</p>  <p>〈하천과 조화되지 않는 스카이라인〉      〈하천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p>          |    |
|       | 39 | <p>· 자연스러운 해안 스카이라인 조성</p>  <p>〈해안과 조화되지 않는 스카이라인〉      〈해안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p>                       |    |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도시 맥락  |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도시의 맥락과 관계성 유지</li> </ul>  <p>〈도시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음〉      〈도시 맥락을 고려한 계획〉</p>           |    |
|        | 4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건축계획</li> </ul>  <p>〈주변과의 관계고려 미흡〉      〈주변과의 관계고려〉</p>                 |    |
|        | 4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과 부조화되는 대규모 건축물 지양</li> </ul>  <p>〈주변과 부조화되는 대규모 건축〉      〈주변과 조화되는 적정 규모 권장〉</p> |    |
|        | 4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과 부조화되는 대규모 건축 지양</li> </ul>  <p>〈배경과 부조화되는 대규모 건축〉      〈배경과 조화되는 적정 규모 권장〉</p>  |    |
| 건축물 규모 | 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일적인 건축규모에 의한 위압경관 지양</li> </ul>  <p>〈위압경관 형성〉      〈위압경관 완화〉</p>                   |    |
|        | 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밀도를 유지하여 과밀화로 인한 혼잡한 경관 지양</li> </ul>  <p>〈과밀화〉      〈적정밀도 유지〉</p>                |    |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건축물<br>용도     | 46 | <p>· 획일적인 건축용도를 지양하고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건축 권장</p>  <p>〈획일적인 건축용도〉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건축용도〉</p>                                                                                                         |    |
|               | 47 | <p>· 저층부는 가로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조성</p>  <p>〈저층부 활용 미흡〉      〈저층부의 다양한 활용〉</p>                                                                                                      |    |
|               | 48 | <p>· 문화재주변 경관저해용 건축용도 입지 제한</p>  <p>〈문화재 주변〉      〈경관저해시설 입지제한〉</p>                                                                                                                          |    |
|               | 49 | <p>· 주요 결절부지점 Landmark 요소 도입</p>  <p>〈특징 없는 결절부〉      〈특징 있는 결절부 형성〉</p>                                                                                                                     |    |
| 건축물<br>위치(배치) | 50 | <p>· 도심부 건축선 후퇴 권장</p>  <p>건축지정선<br/>-구시가지 중심가로의 고유 스케일과 공간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인접건물의 벽면선을 존중하여 건축하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건축지정선 마련</p> <p>〈도심부 건축선〉      〈건축선 후퇴로 보행공간 확보 및 쌈지공원조성 등〉</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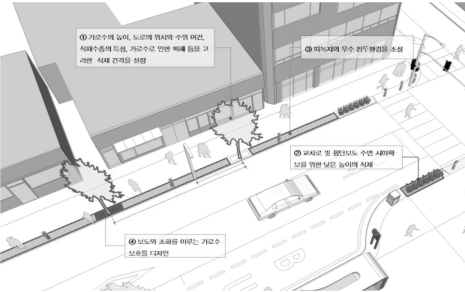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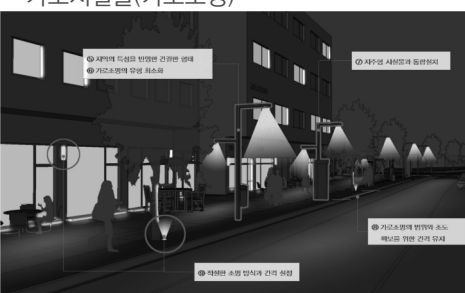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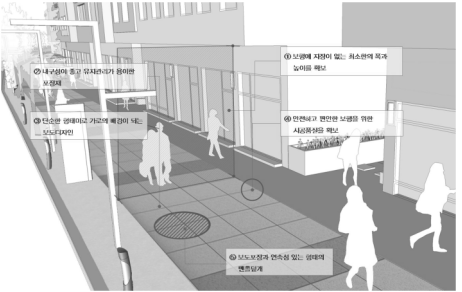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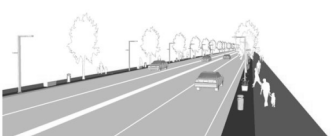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 51 | <p>· 획일적인 건축배치를 지양하고 조망 및 주변관계를 고려한 배치 권장</p>  <p>〈획일적인 건축배치〉      〈조망 및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한 배치〉</p>     |    |
|                | 52 | <p>· 주요 배후경관(산림)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고,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 배치</p>  <p>〈조망확보 미비〉      〈산으로의 조망을 고려한 배치〉</p>      |    |
| 건축물<br>형태(디자인) | 53 | <p>· 건축형태는 대규모 단일매스를 지양하고 분절된 형태 권장</p>  <p>〈대규모 단일매스〉      〈분절된 매스〉</p>                         |    |
|                | 54 | <p>· 지붕형태는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p>  <p>〈주변과 이질적인 지붕형태〉      〈주변과 조화되는 지붕형태〉</p>                    |    |
| 건축물<br>외관      | 55 | <p>· 저층부 외관은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 사용</p>  <p>〈저층부 다양한 재질 사용〉      〈저층부 재질 통일감 형성〉</p> |    |
|                | 56 | <p>· 저층부 외관 권장사항</p>                                                                            |    |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 57 | <p>· 가로변 건축물 외관은 동일한 파사드로 관리</p>  <p>FACAD의 일부로 관리</p> <p>-대형필지의 건축 후퇴선에 의해 노출되는 기존·신축 건물의 측면도 파사드 일부로서 관리</p>                                                                                                                                                                                                                                                                                                                                 |    |
| 대지내<br>공지 | 58 | <p>· 공개공지 조성방향</p>  <p>공공보행통로<br/>공개공지(NODE형)<br/>보도<br/>차도<br/>공개공지(보도병렬형)<br/>건축한계선<br/>전면공지</p> <div> <p>보도 병렬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접한 대지의 공개공지와 일체형으로 유도</li> <li>-식재는 보도와 동일 수종으로 식재</li> <li>-보도와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li> </ul> </div> <div> <p>node형, 포켓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필요한 장치물 최소화하고 소광장 형태로 조성</li> <li>-식재는 보도와 동일 수종으로 식재</li> <li>-보도와 포장재료를 연장하여 연계성 강화</li> </ul> </div> |    |
|           | 59 | <p>· 담장을 활용하여 쌈지공원 조성</p>  <p>담장<br/>담장 제거(생울타리 권장)</p> <p>〈담장(학교, 공공기관, 주택 등〉<br/>〈소규모 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p>                                                                                                                                                                                                                                                                                                                                    |    |
|           | 60 | <p>· 건물 신축시 옥상조경 및 벽면녹화 권장</p>  <p>〈신축건물〉<br/>〈옥상조경 및 벽면녹화〉</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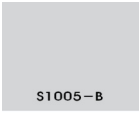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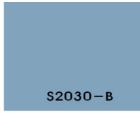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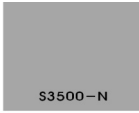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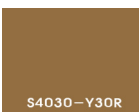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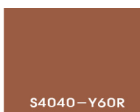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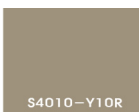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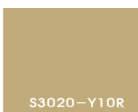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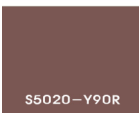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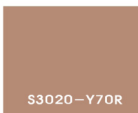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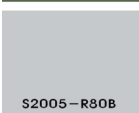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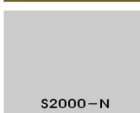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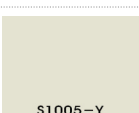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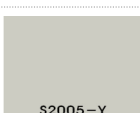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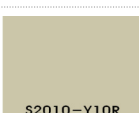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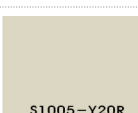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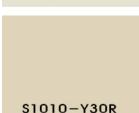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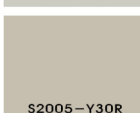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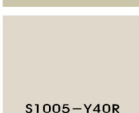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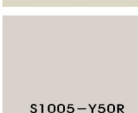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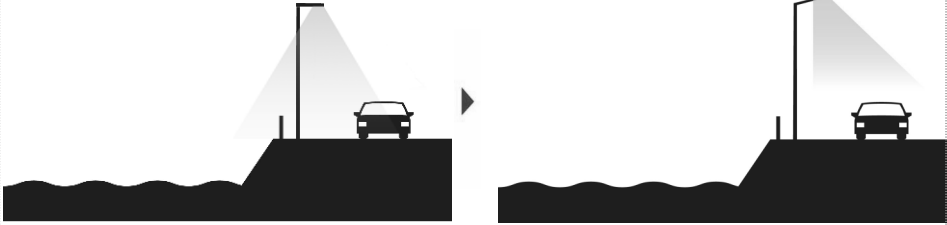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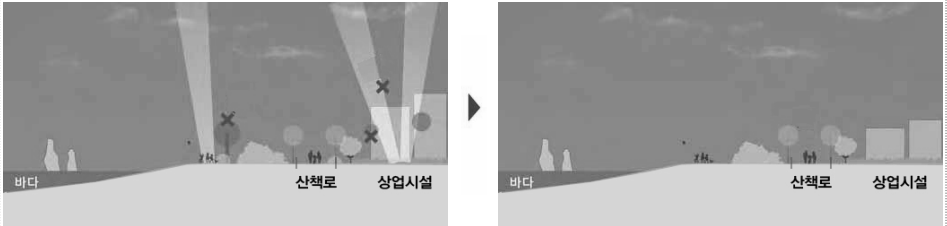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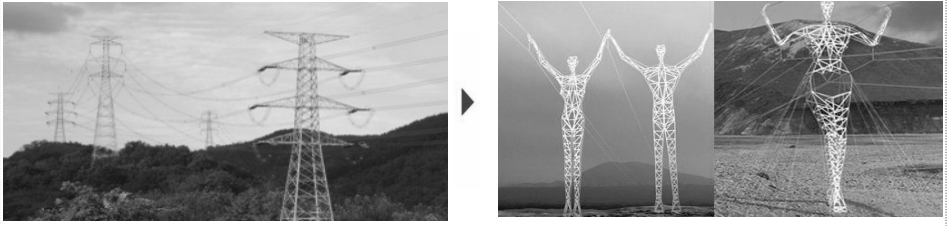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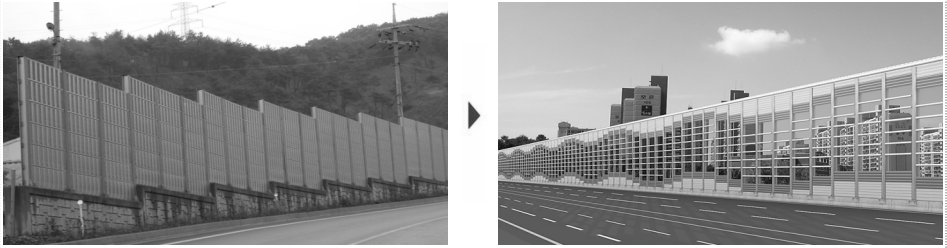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 61 | <p>· 대지내 조경은 주변환경과의 관계성을 고려</p>  <p>〈보도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개공지 계획 예시〉</p>                                                  |    |
| 건축물<br>간격 | 62 | <p>· 건물 인동간격은 건축법 준용, 주변건물의 일조권을 방해하지 않는 적정 거리 권장</p>  <p>〈인동간격(건축법)〉                      〈인접부지를 고려한 적정 인동간격〉</p> |    |
|           | 63 | <p>· 사선제한시 과도한 계단식 건축을 지양하고 사선을 응용한 건축디자인 권장</p>  <p>〈과도한 계단식 건축〉                      〈사선을 응용한 건축디자인〉</p>         |    |
| 옥외<br>광고물 | 64 | <p>· 건물 옥상부 과도한 광고물 및 시설 등 시각적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유도</p>  <p>〈과도한 광고물〉                      〈디자인을 통한 시각적 완화〉</p> |    |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65  |    | <div>· 옥외광고물은 국토교통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중심상업지역에 면한 대지는 돌출형간판 설치 제한</div> <div><div>지역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div><div><div>녹지·주거지역 등 가이드라인</div><div>준주거·공업지역 등 가이드라인</div><div>상업지역 등 가이드라인</div><div>특성화지역 가이드라인</div></div><div>테마형</div><div><div>구성요소별</div><div>광고물 종류별</div><div>가로유형별</div><div>건축유형별</div></div><div><div>수량, 표시위치, 규격<br/>표시내용, 형태, 재료<br/>색채, 문자, 조명</div><div>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br/>돌출간판, 공면간판,<br/>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br/>현수막, 창문이용광고물<br/>차양막</div><div>일반도로<br/>보행도로<br/>건축선 불일치<br/>건축선 일치</div><div>저층형<br/>장방형<br/>아케이드형<br/>주유소<br/>커튼월</div></div></div> <div>〈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규정항목〉</div>                                |    |
|     | 66 | <div>· 현수막의 바탕색은 다양한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색채가이드라인상 색채’ 준용</div> <div><div>· 현수막 바탕색</div><div><div>– 저채도(10%이하) 고명도(100%)의 부드러운 파스텔 느낌의 칼라 사용</div><div>– 파스텔 톤의 패턴 및 추상적 이미지 사용</div><div>– 원색과 같은 자극적인 칼라 사용 금지</div></div><div><div>과도한 색채 제한</div><div>+</div><div>여백의 미</div><div>+</div><div>일관성 있는 구성</div></div><div><div><div>빨강색</div><div>파란색</div><div>주황색</div><div>남색</div><div>노랑색</div><div>보라색</div><div>초록색</div><div>검정색</div></div><div><div>광고내용 표기</div><div>보조광고내용 / 888-8888</div><div>문구 사용범위</div><div>문구 배경색 사용범위</div><div>바탕색</div><div>뒷면 봉제선 안쪽에 업체명, 연락처 기재</div></div></div><div>〈현수막 바탕색 금지 색상〉</div><div>〈현수막 바탕색 권장 예시〉</div></div> |    |
|     |    | <div>· 로고/이미지</div> <div>– 사진(실사)이미지 제한</div> <div>· 문구</div> <div>– 470cm × 50cm 권장</div> <div><div>570</div><div>470</div><div>(단위 Cm)</div><div>50</div><div>40</div><div>5</div><div>10</div><div>70</div><div>50</div><div>로고, 이미지</div><div>광고내용 표기</div><div>보조광고내용 / 888-8888</div><div>문구 사용범위</div><div>문구 배경색 사용범위</div><div>바탕색</div><div>뒷면 봉제선 안쪽에 업체명, 연락처 기재</div></div>                                                                                                                                                                                                                                                                        |    |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가로<br>시설물 | 67 | <p>· 가로경관은 국토교통부의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함</p> <p>-보행 영역 가이드라인</p>  <p>-가로시설물(가로조명)</p>  <p>-외부공간 영역 가이드라인</p>  <p>-가로시설물(기타시설물)</p>  <p>-건축물 영역 가이드라인</p>                                                                                                                                                                                                                                                                                                                                                                                                                                                                                                                                                                                                                                                   |    |
|           | 68 | <p>· 가로이용 특성에 따라 도심상업, 복합용도, 근린상업, 아파트단지, 저층주거지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국토교통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p> <div data-bbox="438 1444 1316 1624"> <p>기존 자동차를 중심으로 구분한 가로유형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상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등</li> <li>· 도로의 물리적 특성(폭)에 따라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li> </ul>  </div> <div data-bbox="438 1691 1316 2004"> <p>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가로 전체의 특성으로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이용 특성에 따라 도심상업, 복합용도, 근린상업, 아파트단지, 저층주거지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li> </ul> <div data-bbox="454 1859 1300 1993"> <div> <p>도심상업가로</p>  </div> <div> <p>복합용도가로</p>  </div> <div> <p>근린상업가로</p>  </div> <div> <p>아파트단지가로</p>  </div> <div> <p>저층주거지 가로</p>  </div> </div> </div> |    |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 69 | <p>· 가로시설물은 통합 설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p> <p>통합 시설물</p> <p>버스정류장<br/>LED 조명<br/>공공전화기<br/>휴지통</p> <p>버스정류장<br/>간이가판대<br/>공공전화기<br/>휴지통</p> <p>LED 조명<br/>Bus Stop<br/>Net-Booth<br/>Kiosk</p> <p>인간영역<br/>공공영역<br/>필지<br/>도로</p> <p>통합적 관리</p> <p>〈통합시설물 설치 예시〉</p> |    |
|     | 70 | <p>· 안내시설물은 가능한 통합하여 설치되는 수량을 최소화함</p> <p>〈난립한 안내시설물〉</p> <p>〈통합설치〉</p>                                                                                                                                                                                         |    |
|     | 71 | <p>· 다양한 활동 및 기능을 수용하는 스트리트퍼니처 도입</p> <p>〈스트리트 퍼니처 도입사례〉</p>                                                                                                                                                                                                    |    |
|     | 72 | <p>· 과도한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사용권장</p> <p>〈과도한 색채사용〉</p> <p>〈주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p>                                                                                                                                                                             |    |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                                                                                                |                                                                                      | 비고                                                                                    |                                                                                       |  |
|-----|---------------------------------------------------------------------------------------------------------------------------------------------------------------------------------------------------------------------------------------------------------|---------------------------------------------|-------------------------------------------------------------------------------------------------------------------------------------------------------------------------------------------------------------------------------------------------------------------------------------------------------------------------------------|------------------------------------------------------------------------------------------------|--------------------------------------------------------------------------------------|---------------------------------------------------------------------------------------|---------------------------------------------------------------------------------------|--|
| 색채  |                                                                                                                                                                                                                                                         | · 권역별 색채가이드라인                               |                                                                                                                                                                                                                                                                                                                                     |                                                                                                |                                                                                      |                                                                                       |                                                                                       |  |
|     |                                                                                                                                                                                                                                                         | · 수변관리권역                                    | 예<br>시                                                                                                                                                                                                                                                                                                                              |               |    |    |    |  |
|     |                                                                                                                                                                                                                                                         | 색상 : All color<br>흑색량 : 20~70<br>순색량 : 2~60 |                                                                                                                                                                                                                                                                                                                                     |               |    |    |    |  |
|     |                                                                                                                                                                                                                                                         | · 생태보전권역                                    | 예<br>시                                                                                                                                                                                                                                                                                                                              |               |    |    |    |  |
|     |                                                                                                                                                                                                                                                         | 색상 : All color<br>흑색량 : 2~85<br>순색량 : 2~60  |                                                                                                                                                                                                                                                                                                                                     |               |    |    |    |  |
|     |                                                                                                                                                                                                                                                         | · 청정자연권역                                    | 예<br>시                                                                                                                                                                                                                                                                                                                              |               |    |    |    |  |
|     |                                                                                                                                                                                                                                                         | 색상 : All color<br>흑색량 : 2~85<br>순색량 : 2~60  |                                                                                                                                                                                                                                                                                                                                     |             |  |  |  |  |
|     |                                                                                                                                                                                                                                                         | · 생활중심권역                                    | 예<br>시                                                                                                                                                                                                                                                                                                                              |             |  |  |  |  |
|     |                                                                                                                                                                                                                                                         | 색상 : All color<br>흑색량 : 2~85<br>순색량 : 2~60  |                                                                                                                                                                                                                                                                                                                                     |             |  |  |  |  |
|     |                                                                                                                                                                                                                                                         | 73                                          | · 역사문화경관일원 색채는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                                                                                                |                                                                                      |                                                                                       |                                                                                       |  |
|     |                                                                                                                                                                                                                                                         |                                             | <div><div><br/>주변건축물      역사문화경관      주변건축물</div><div>〈과도한 색채사용〉</div></div> <div><div><br/>주변건축물      역사문화경관      주변건축물</div><div>〈주변과 조화되는 색채〉</div></div> |                                                                                                |                                                                                      |                                                                                       |                                                                                       |  |
|     |                                                                                                                                                                                                                                                         | 야간조명                                        | 74                                                                                                                                                                                                                                                                                                                                  | · 야간조명은 거리의 개성에 맞는 조명연출을 하되 조명기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유도<br>· 원색계열의 조명색상을 자제하고 건물 면적을 크게 점거하는 조명방식 금지 |                                                                                      |                                                                                       |                                                                                       |  |
|     | <div><div><br/>X</div><div><br/>X</div><div>〈건물 면적을 크게 점거하는 조명방식 금지〉</div></div> |                                             |                                                                                                                                                                                                                                                                                                                                     |                                                                                                |                                                                                      |                                                                                       |                                                                                       |  |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비고 |
|-------|----|--------------------------------------------------------------------------------------------------------------------------------------------------------------------------------------------------------|----|
|       | 75 | <p>· 해안도로는 cut-off방식 조명사용 권장</p>  <p>〈일반조명〉                      〈cut-off방식 조명〉</p>                                  |    |
|       | 76 | <p>· 해안변 과도한 조명사용 제한</p>  <p>〈과도한 야간조명〉                      〈야간조명 제한사용〉</p>                                         |    |
|       | 77 | <p>· 경관우수지역은 송전탑 설치의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디자인된 송전탑 설치</p>  <p>〈획일적인 송전탑〉                      〈디자인된 송전탑〉</p>              |    |
| 기타시설물 | 78 | <p>· 방음벽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투명방음벽, 디자인된 방음벽)</p>  <p>〈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방음벽〉                      〈디자인을 고려한 방음벽설치〉</p> |    |
|       | 79 | <p>· 경관저해시설물은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폐시설물 및 차폐식재</p>                                                                       |    |

## 경관권역축거점 경관가이드라인 종합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토지이용패턴  | 1  | · 형질변경 최소화 및 물건적지행위 최소화                         |      | ○  |
|         | 2  | · 주요 해수욕장 및 항구 지역특화거리 조성 권장                     |      | ○  |
|         | 3  | · 계획적인 토지이용                                     | ○    | ○  |
| 환경·생태   | 4  | ·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유도                         |      | ○  |
|         | 5  | · 단절된 생태계 연결                                    |      | ○  |
|         | 6  | · 단절된 산림의 연결                                    |      | ○  |
|         | 7  | · 생태계보전지역 및 주요보존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      | ○  |
| 가구·획지계획 | 8  | · 산지 및 구릉지 개발 제한                                |      | ○  |
|         | 9  | · 지역 특성에 맞는 가구·획지 계획                            |      | ○  |
|         | 10 | · 구시가지 건축밀집지역 맞벽구조 건축 권장                        |      | ○  |
|         | 11 | · 세장형 필지 지양                                     |      | ○  |
| 보행자 공간  | 12 | · 개별 포장된 보행자공간을 통합된 보행영역으로 조성                   |      | ○  |
|         | 13 | · 보행자 공간 확보                                     | ○    |    |
|         | 14 | · 보행밀도가 높은 횡단보도는 차별화 하여 보행 안정성 및 경관개선           | ○    |    |
| 도로      | 15 | · 도로조성시 절·성토면 최소화 및 절·성토 경사면 녹화                 | ○    |    |
|         | 16 | · 도로변 녹지대 조성시 우수침투가 가능하도록 조성                    | ○    |    |
|         | 17 | · 해안도로 정비 시 지형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 ○    |    |
| 주차장     | 18 | · 환경친화적 주차장 조성                                  |      | ○  |
| 오픈스페이스  | 19 | · 하천변 오픈스페이스는 친환경하천으로 조성                        |      | ○  |
|         | 20 | · 해안변 오픈스페이스는 수변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                    |      | ○  |
|         | 21 | · 오픈스페이스 조성방안                                   |      | ○  |
|         | 22 | · 기능적인 오픈스페이스를 지양하고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이 있는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
| 공원·녹지   | 23 | · 주변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                        |      | ○  |
|         | 24 | · 다층구조식재를 적용한 완충녹지 조성                           |      | ○  |
|         | 25 | · 도로변 녹지율 및 녹지율 증대                              |      | ○  |
|         | 26 | · 어린이 놀이터는 친환경놀이터로 조성                           | ○    |    |
| 경관이미지   | 27 | · 주요 결절부 경관형성                                   |      | ○  |
|         | 28 | · 구릉지 및 하천경관 생태적 연속성 확보                         |      | ○  |
|         | 29 | · 시각적 연속성 확보                                    |      | ○  |
|         | 30 | · 리아시스식 해안 보전                                   |      | ○  |
|         | 31 | · 주요 경관거점 경관형성 및 관리                             |      | ○  |
|         | 32 | · 주요 문화경관거점 왜소화 방지                              |      | ○  |
|         | 33 | · 해안경관 조망점 설치                                   |      | ○  |
|         | 34 | · 해안경관은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및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해설서’준수 | ○    |    |
| 스카이라인   | 35 | · 배경이 되는 산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      | ○  |
|         | 36 | ·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      | ○  |
|         | 37 | ·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산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테라스형 건축계획       |      | ○  |
|         | 38 | · 하천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고려                |      | ○  |
|         | 39 | · 자연스러운 해안 스카이라인 조성                             |      | ○  |
| 도시 맥락   | 40 | · 기존 도시의 맥락과 관계성 유지                             |      | ○  |
|         | 41 | · 주변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      | ○  |
| 건축물 규모  | 42 | · 주변과 부조화되는 대규모 건축물 지양                          |      | ○  |
|         | 43 | · 배경과 부조화되는 대규모 건축 지양                           |      | ○  |

| 키워드         | NO | 주요내용(방향)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건축물 용도      | 44 | · 획일적인 건축규모에의한 위압경관 지양                                                                      |      | ○  |
|             | 45 | · 적정밀도를 유지하여 과밀화로 인한 혼잡한 경관 지양                                                              |      | ○  |
|             | 46 | · 획일적인 건축용도를 지양하고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건축 권장                                                         |      | ○  |
|             | 47 | · 저층부는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조성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48 | · 문화재주변 경관저해용 건축용도 입지 지양                                                                    | ○    |    |
|             | 49 | · 주요 결절부지점 Landmark 요소 도입                                                                   |      | ○  |
|             | 50 | · 도심부 건축선 후퇴 권장                                                                             |      | ○  |
|             | 51 | · 획일적인 건축배치를 지양하고 조망 및 주변관계를 고려한 배치 권장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52 | · 주요 배후경관(산림)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고,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 배치                                                |      | ○  |
|             | 53 | · 건축형태는 대규모 단일매스를 지양하고 분절된 형태 권장                                                            |      | ○  |
| 건축물 외관      | 54 | · 지붕형태는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                                                                    |      | ○  |
|             | 55 | · 저층부 외관은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 사용                                                 |      | ○  |
|             | 56 | · 저층부 외관 권장사항                                                                               |      | ○  |
| 대지내 공지      | 57 | · 가로변 건축물 외관은 동일한 파사드로 관리                                                                   |      | ○  |
|             | 58 | · 공개공지 조성방향                                                                                 |      | ○  |
| 대지내 조경      | 59 | · 담장을 활용하여 쌈지공원 조성                                                                          |      | ○  |
|             | 60 | · 건물 신축시 옥상조경 및 벽면녹화 권장                                                                     |      | ○  |
| 건축물 간격      | 61 | · 대지내 조경은 주변환경과의 관계성을 고려                                                                    |      | ○  |
|             | 62 | · 건물인동간격은 건축법 준용, 주변건물의 일조권을 방해하지 않는 적정 거리 권장                                               |      | ○  |
| 옥외광고물       | 63 | · 사전제한시 과도한 계단식 건축을 지양하고 사선을 응용한 건축디자인 권장                                                   |      | ○  |
|             | 64 | · 건물 옥상부 과도한 광고물 및 시설 등 시각적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유도                                         |      | ○  |
|             | 65 | · 옥외광고물은 국토교통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하며 중심상업지역에 면한 대지는 돌출형간판 설치 제한                    |      | ○  |
| 가로시설물       | 66 | · 현수막의 바탕색은 다양한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색채가이드라인상 색채'준용                                                 |      | ○  |
|             | 67 | · 가로경관은 국토교통부의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 하도록 함                                               |      | ○  |
|             | 68 | · 가로이용 특성에 따라 도심상업, 복합용도, 근린상업, 아파트단지, 저층주거지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국토교통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 |      |    |
|             | 69 | · 가로시설물은 통합 설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                                                              | ○    |    |
|             | 70 | · 안내시설물은 가능한 통합하여 설치되는 수량을 최소화함                                                             |      | ○  |
| 색채          | 71 | · 다양한 활동 및 기능을 수용하는 스트리트퍼니처 도입                                                              |      | ○  |
|             | 72 | · 과도한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사용권장                                                         |      | ○  |
| 야간조명        | 73 | · 역사문화경관일원 색채는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      | ○  |
|             | 74 | · 야간조명은 거리의 개성에 맞는 조명연출을 하되 조명기구가 외부도 노출되지 않도록 유도                                           |      | ○  |
|             | 75 | · 원색계열의 조명색상을 자제하고 건물 면적을 크게 점거하는 조명방식 금지                                                   |      | ○  |
|             | 76 | · 해안도로는 cut-off방식 조명사용 권장                                                                   |      | ○  |
| 기타시설물       | 77 | · 해안변 과도한 조명사용 제한                                                                           |      | ○  |
|             | 77 | · 경관우수지역은 송전탑 설치는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디자인된 송전탑 설치                                                 | ○    |    |
|             | 78 | · 방음벽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투명방음벽, 디자인된 방음벽)                                                 | ○    |    |
|             | 79 | · 경관저해시설물은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폐시설물 및 차폐식재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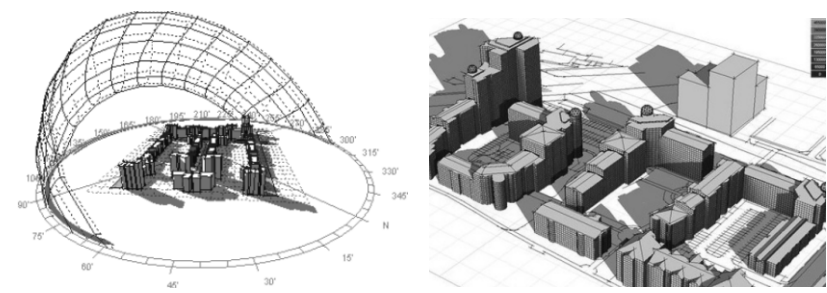
### 3)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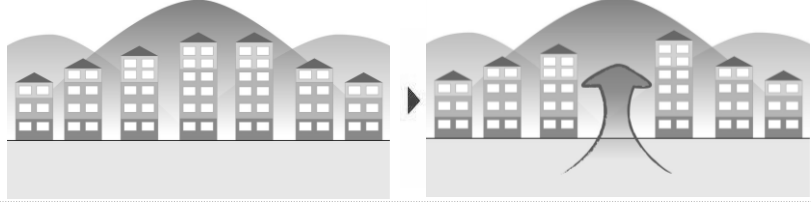
#### 개 요

- 공동주택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반영구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구성
- 충청남도 경관계획상 경관설계지침의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을 우선적용하도록 하고 충청남도 경관계획에 적용되지 않은 사항을 본 가이드라인을 따름

#### 경관설계지침

- 공동주택 건축물

| 기본방향                  | 공동주택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    |
|-----------------------|-------------------------------------------------------------------------------------------------------------------------------------------------------------|----|
| 도시공간과 일체화되는 주거지역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li> </ul>                                                                                       | 권장 |
|                       |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공간과 가로공간의 일체화</li> </ul>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녹지, 휴게 및 커뮤니티 광장으로 활용</li> </ul>                                                              | 권장 |
|                       |  <div> <div>단지외곽부 마감</div> <div>지상부 조경</div> <div>가각부 공원조성</div> </div>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노드지점에 가각부 광장이나 공개공지 설치</li> </ul>                                                                               | 권장 |
| 주동의 다양한 배치로 획일적 경관 탈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단지의 진입광장이나 공개공지 등의 연결고리</li> </ul>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쇄적 담장설치 지양, 식재를 하거나 개방형 담장(1.2m)으로 조성</li> </ul>                                                                  | 필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률적인 판상형 지양, 다양한 주동을 조화롭게 배치</li> </ul>                                                                            | 권장 |
|                       |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계획시 에코텍(Ecotect)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일조 및 방향을 결정</li> </ul>                                                               | 권장 |
|                       |                                                                         | 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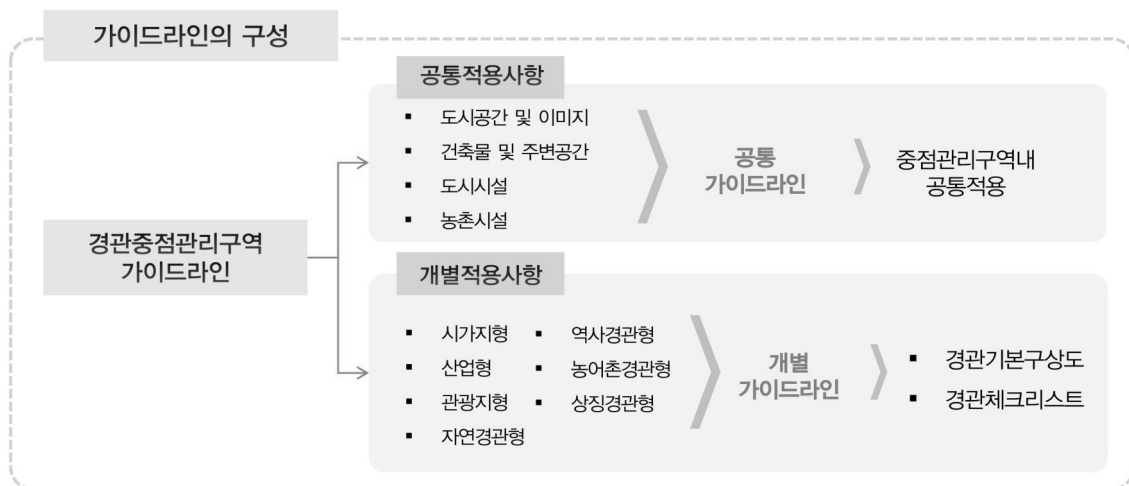
| 기본방향                      | 공동주택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망 및 개방성 확보</li> </ul>                                                                                                                                                                                        | 권장 |
|                           |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호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통경축 1개 이상 확보</li> </ul>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지는 경사를 활용한 테라스 또는 개방감이 확보되는 타워형 주동 배치 권장</li> </ul>                                                                                                                                                         | 권장 |
|                           |                                                                                                                                                                    |    |
| 조망경관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변 직각배치 지양, 방음벽 설치 지양</li> </ul>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층부에는 보행 및 휴게기능을 고려한 디자인 권장</li> </ul>                                                                                                                                                                        | 권장 |
| 블록별 다양한 높이를 통해 도시경관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레벨에서 가로 개방감 확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li> </ul>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단위 개발지에는 경관형성 주동 배치</li> </ul>                                                                                                                                                                               | 권장 |
| 다양한 주동의 형태·외관 조화로운 통일성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단부, 중층부, 상층부의 차별적 형태로 조성</li> </ul>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붕층의 과도한 장식이나 색채 사용 지양</li> </ul>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동의 지붕은 단지별로 통일감 있게 조성</li> </ul>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기계실, 물탱크실 등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과의 일체감을 부여</li> </ul>                                                                                                                                                          | 권장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span>옥탑부 디자인</span> <span>옥상부 디자인</span> <span>옥상녹화</span> </div>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가의 옥외광고물은 최소화하여 정돈된 주거가로경관 형성</li> </ul>                                                                                                                                                                     | 권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색채계획</li> </ul>                                                                                                                                                                              | 권장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span>통일된 색채사용</span> <span>기단부 마감재 색상 조화</span> <span>고·중·저가 조화된 색채</span> </div>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도한 야간조명 지양</li> </ul>                                                                                                                                                                                        | 권장 |
|                           |                                                                                                                                                                                                                                                      |    |

## 4.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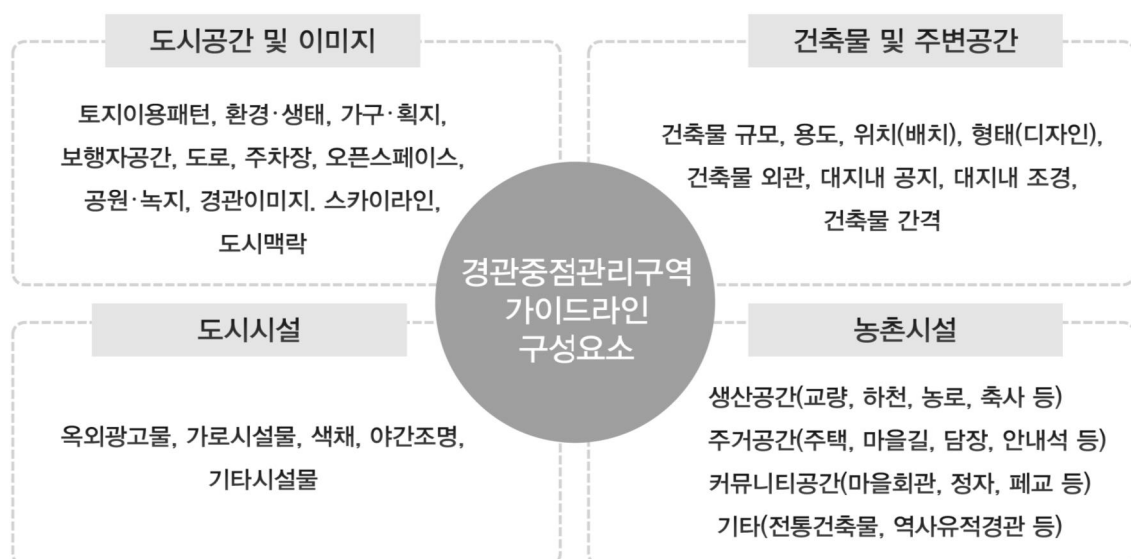
### 1)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의 구성

#### 개요

-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은 공통적용사항과 개별적용사항으로 구분됨
- 공통적용사항에는 도시공간 및 이미지, 건축물 및 주변공간, 도시시설, 농촌시설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중점관리구역 경관형성을 위한 공통적용사항을 제시
- 개별적용사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선정된 7개유형(시가지형, 산업형, 관광지형, 자연경관형, 역사경관형, 농어촌경관형, 상징경관형) 13개소에 대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별 가이드라인은 부지의 특성 및 주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관의 형성 및 보전관리를 위해 행정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시



####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요소



## 2) 공통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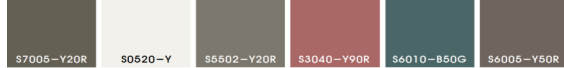
### 도시공간 및 이미지 가이드라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형질변경 최소화 및 물건적치행위 최소화                               | ○  | ○  | ○    |    |
|                      |         | · 계획적 토지이용                                            | ○  | ○  | ○    |    |
|                      | 환경·생태   | ·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유도                               | ○  | ○  | ○    |    |
|                      |         | · 단절된 생태계 및 산림의 연결                                    | ○  | ○  | ○    |    |
|                      |         | · 중점경관관리구역내 산지 및 구릉지 개발 제한                            | ○  |    |      | ○  |
|                      | 가구·획지계획 |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가구·획지계획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보행동선의 유기적 연계(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  |    |      | ○  |
|                      |         | · 보도 시설물은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을 준용                             | ○  |    |      | ○  |
|                      |         | · 보행밀도가 높은 횡단보도는 차별화하여 보행 안정성 및 경관개선                  | ○  |    | ○    |    |
|                      |         | · 주변환경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공간 조성                          | ○  |    |      | ○  |
|                      | 도로      | · 도로조성시 절·성토면 최소화 및 경사면 녹화                            | ○  |    | ○    |    |
|                      |         | · 도심지 도로면 녹지대 조성시 우수침투가 가능하도록 조성                      | ○  |    | ○    |    |
|                      |         | · 해안도로 정비시 지형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 ○  |    |      | ○  |
|                      |         | · 주요 횡단보도 포장재질의 차별화                                   | ○  |    |      | ○  |
|                      |         | · 주요 교차로 교통광장 녹화 및 상징시설물 설치                           | ○  |    |      | ○  |
|                      | 주차장     | · 공용주차장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방지                                | ○  |    | ○    |    |
|                      |         | · 주차장 설치 시 그늘식재 및 자연친화적 포장재료 권장                       | ○  | ○  |      | ○  |
|                      |         | · 주거지역내 담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서천읍, 장항읍)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소규모 오픈스페이스 조성(한평공원, 쌈지공원 등)                         | ○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조성시 인근 공원·녹지와 연계 고려                          | ○  | ○  |      | ○  |
|                      |         | · 수변지역에는 수변과 건축물 사이 완충녹지 조성 권장                        | ○  | ○  |      | ○  |
|                      |         | ·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 및 행사 개최                          | ○  | ○  |      | ○  |
|                      | 공원·녹지   | · 자연친화적 공원·녹지 조성                                      | ○  |    |      | ○  |
|                      |         | · 접근이 용이한 공원·녹지 조성                                    | ○  |    |      | ○  |
|                      |         | · 주요 진입로 상징경관거점 조성                                    | ○  |    |      | ○  |
|                      |         | ·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의 확보를 통한 녹시율 확보                         | ○  |    |      | ○  |
|                      |         | · 주요 도로면 가로수 식재(향토수종 권장)                              | ○  |    |      | ○  |
|                      |         | · 시각적 경관저해시설로부터 완충녹지 조성                               | ○  |    |      | ○  |
|                      |         | · 해안변 공원·녹지조성시 염분에 강한 지역수종 선택 및 다층구조 식재 도입            | ○  |    |      | ○  |
|                      |         | · 기존 농어촌마을의 마을숲, 정자목, 당산목, 대숲 등 보전                    | ○  | ○  |      | ○  |
|                      | 경관이미지   | · 주요 결절부 경관형성                                         | ○  |    |      | ○  |
|                      |         | · 구릉지 및 하천경관 생태적 연속성확보                                | ○  | ○  |      | ○  |
|                      |         | · 주요 문화경관거점 왜소화 방지                                    | ○  |    | ○    |    |
|                      | 스카이라인   | ·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유도                               | ○  | ○  |      | ○  |
|                      |         | · 배경이 되는 산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 ○  | ○  |      | ○  |
|                      |         | ·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산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  | ○  |      | ○  |
|                      |         | · 수변 및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하여 완만한 스카이라인 형성 | ○  | ○  |      | ○  |
|                      | 도시 맥락   | · 기존 도시의 맥락과 관계성 유지                                   | ○  | ○  |      | ○  |
|                      |         | · 주변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 ○  | ○  |      | ○  |

## 건축물 및 주변공간 가이드라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건축물<br>및<br>주변<br>공간 | 건축물 규모         | · 용도지역에 의한 건축물 층수를 적용하되 주변지역에 맞는 높이 유도         | ○  | ○  |      | ○  |
|                      |                | · 획일적인 건축규모에의한 위압경관 지양                         |    | ○  |      | ○  |
|                      |                | · 적정밀도를 유지하여 과밀화로 인한 혼잡한 경관 지양                 | ○  | ○  |      | ○  |
|                      | 건축물 용도         | · 획일적인 건축용도를 지양하고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건축 지양            | ○  | ○  |      | ○  |
|                      |                | · 저층부는 가로로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조성   | ○  | ○  |      | ○  |
|                      |                | · 문화재주변 경관저해용 건축용도 입지 지양                       | ○  |    | ○    |    |
|                      | 건축물<br>위치(배치)  | · 골프연습장 등 규모가 큰 시설의 입지 지양                      | ○  | ○  |      | ○  |
|                      |                | · 주요 결절부지점 및 공공건축물의 랜드마크화                      | ○  | ○  |      | ○  |
|                      |                | · 획일적인 건축배치를 지양하고 조망 및 주변관계를 고려한 배치            |    | ○  |      | ○  |
|                      |                | · 주요 배후경관(산림)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고,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배치    |    | ○  |      | ○  |
|                      |                |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 ○  | ○  |      | ○  |
|                      |                | · 해안 경관가이드라인상 해안선 보호구역내 건축물 입지제한               | ○  | ○  |      | ○  |
|                      |                | · 창고, 축사, 공장 등 중점경관관리구역내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 배치 지양 |    | ○  |      | ○  |
|                      | 건축물<br>형태(디자인) | · 건축형태는 대규모 단일매스를 지양하고 분절된 형태 권장               |    | ○  |      | ○  |
|                      |                | · 지붕형태는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                       |    | ○  |      | ○  |
|                      |                | · 건축물의 높이, 형태, 지붕, 색채, 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           |    | ○  |      | ○  |
|                      |                | · 국적불명의 건축형태 및 건축양식 지양                         |    | ○  |      | ○  |
|                      |                | · 판상형 형태의 건물 지양                                |    | ○  |      | ○  |
|                      |                | · 지역적 맥락 및 장소성을 살리는 계획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 유도          |    | ○  |      | ○  |
|                      |                | · 역사적 건축물 주변의 건축은 역사자원과의 연계성 고려한 디자인           |    | ○  |      | ○  |
|                      | 건축물 외관         | · 가로변은 연속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유도                  |    | ○  |      | ○  |
|                      |                | · 노후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    | ○  |      | ○  |
|                      |                | · 농어촌 주택의 리모델링시 '농어촌표준주택' 권장                   |    | ○  |      | ○  |
|                      |                | ·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 지붕 철거                       | ○  | ○  |      | ○  |
|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 공공공지, 공개공지의 조성                         | ○  | ○  |      | ○  |
|                      |                | · 담장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권장                           |    | ○  |      | ○  |
|                      | 대지내 조경         | · 슬라브형 건물에 옥상녹화 권장(경량형)                        |    | ○  |      | ○  |
|                      |                | · 신축건물의 경우 옥상조경 및 벽면녹화 권장                      |    | ○  |      | ○  |
|                      |                | · 법적 대지내 조경면적 준수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고려              |    | ○  |      | ○  |
|                      | 건축물 간격         | · 건축법에 의한 인동간격유지                               | ○  | ○  |      | ○  |
|                      |                | · 도로의 사선제한, 사선에 의한 계단형 건축 지양                   |    | ○  |      | ○  |
|                      |                | · 주변과의 관계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간격 유지                     |    | ○  |      | ○  |

## 도시시설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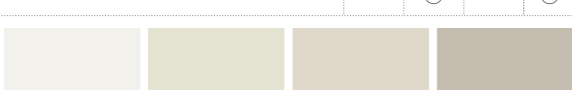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시설 | 옥외광고물 | · 건물 옥상부 과도한 광고물 및 시설 등 시각적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유도                                         | ○      | ○                                                                                    |      | ○  |
|          |       | · 간판의 크기는 최소화 하고 주변과 조화 유도                                                                  | ○      | ○                                                                                    |      | ○  |
|          |       | · 국토교통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유도                                                                   | ○      | ○                                                                                    | ○    |    |
|          | 가로시설물 | · 가로시설물은 통합 설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                                                              | ○      |                                                                                      | ○    |    |
|          |       | · 가로경관은 국토교통부의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함                                                | ○      | ○                                                                                    |      | ○  |
|          |       | · 가로이용 특성에 따라 도심상업, 복합용도, 근린상업, 아파트단지, 저층주거지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국토교통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 | ○      | ○                                                                                    |      | ○  |
|          |       | · 안내시설물은 가능한 통합 설치하여 수량을 최소화함                                                               | ○      | ○                                                                                    |      | ○  |
|          |       | · 가로 조형물 및 시설물은 충남 경관기본계획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 ○      |                                                                                      | ○    |    |
|          |       | · 조명시설은 충남 경관기본계획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 ○      | ○                                                                                    |      | ○  |
|          |       | · 교통시설(버스정류장 등) 은 충남 경관기본계획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 ○      | ○                                                                                    |      | ○  |
|          | 색채    |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        | ○                                                                                    |      | ○  |
|          |       | · 동일 가시권에서는 통일감 있는 색채를 적용                                                                   |        | ○                                                                                    |      | ○  |
|          |       | · 강조색 면적은 채색면적의 5%미만으로 제한                                                                   |        | ○                                                                                    |      | ○  |
|          |       | · 옥외광고물 색채가이드라인                                                                             |        | ○                                                                                    |      | ○  |
|          |       | · 바탕색                                                                                       | 예<br>시 |  |      |    |
|          |       | 색상 : G80Y ~ Y50R<br>R80B ~ B, N,<br>흑색 : 10~60<br>순색량 : 2~30                                |        |  |      |    |
|          |       | · 글자색                                                                                       | 예<br>시 |  |      |    |
|          |       | 색상 : all color<br>흑색 : 2~85<br>순색량 : 2~60                                                   |        |  |      |    |
|          |       | · 가로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                                                                            |        | ○                                                                                    |      | ○  |
|          |       | · 기조색                                                                                       | 예<br>시 |  |      |    |
|          |       | 색상 : all color<br>흑색 : 10~80<br>순색량 : 2~10                                                  |        |  |      |    |
|          |       | · 상징색                                                                                       | 예<br>시 |  |      |    |
|          |       | 색상 : Y10R ~ R10B<br>R90B ~ G50Y<br>흑색 : 15~70<br>순색량 : 2~60                                 |        |  |      |    |
|          | 야간조명  | · 야간조명은 필요한 부분에 설치, 과도한 설치 지양                                                               |        | ○                                                                                    |      | ○  |
|          |       | · 해안 및 수변지역에서는 발광 및 점멸하는 야간조명 지양                                                            | ○      | ○                                                                                    |      | ○  |
|          | 기타시설물 | · 경관저해시설물은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폐시설물 및 식재도입                                                       | ○      | ○                                                                                    |      | ○  |
|          |       | · 투명 방음벽 설치 유도, 과도한 방음벽 지양                                                                  | ○      | ○                                                                                    |      | ○  |
|          |       | · 전신주 지중화 유도                                                                                | ○      |                                                                                      |      | ○  |
|          |       | · 펜스, 난간 등 도로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                                                           | ○      |                                                                                      |      | ○  |

## 농촌시설 가이드라인 - 생산공간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생산공간  | 일반교량     | · 주변자연환경과 조화유도, 자연친화재료 사용 권장                                           | ○  | ○  |      | ○  |
|       | 보행교      | · 기존 재료 및 구법의 복원과 활용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형태로 유도                              | ○  |    |      | ○  |
|       | 하천       | · 호안은 식생이 가능한 공법사용 권장(쇤나무가지법, 버드나무가지법, 다공질 공법, 야자섬유를 묻기, 식생통나무 틀 공법 등) | ○  |    |      | ○  |
|       |          | · 농촌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색채 고려하여 조성                                             | ○  | ○  |      | ○  |
|       |          | · 하상깊이를 고려하여 여울과 소를 조성                                                 | ○  | ○  |      | ○  |
|       | 농로       | · 어도는 규모, 위치, 홍수 시 수해 가능성, 유지관리, 경관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  |    |      | ○  |
|       |          | · 농로를 따라 경작지 경계부분에 막돌을 쌓아 경관향상 유도                                      | ○  |    |      | ○  |
|       | 옹·배수로    | · 농로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식재권장(향토수종 및 유실수)                               |    | ○  |      | ○  |
|       |          | · 구조물화 된 옹·배수로는 차폐 식재를 통한 경관훼손 저감                                      |    | ○  |      | ○  |
|       | 저수지      | ·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친수성 식생 도입                                           |    | ○  |      | ○  |
|       |          | · 수변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휴게공간 및 데크 권장(설치 시 이용자 수와 기능, 형태, 수위 등 고려)             | ○  |    |      | ○  |
|       | 공동퇴비장    | · 중점관리구역 일원 공동퇴비장 입지 제한, 부득이한 경우 경관심의 후 입지하도록 유도                       | ○  | ○  |      | ○  |
|       | 공동창고/집하장 | · 자연재료를 사용한 벽체마감 권장                                                    |    | ○  |      | ○  |
|       |          | · 마을의 전반적인 지붕형태를 고려한 지붕계획                                              |    | ○  |      | ○  |
|       |          | · 공동창고/집하장 색채 가이드라인                                                    |    | ○  |      | ○  |
|       |          | · 주조색                                                                  |    |    |      |    |
|       |          | 예                                                                      |    |    |      |    |
|       |          | 시                                                                      |    |    |      |    |
|       |          | · 보조색                                                                  |    |    |      |    |
|       |          | 예                                                                      |    |    |      |    |
|       |          | 시                                                                      |    |    |      |    |
|       |          | · 강조색                                                                  |    |    |      |    |
|       |          | 예                                                                      |    |    |      |    |
|       |          | 시                                                                      |    |    |      |    |
| 저온저장고 | 저온저장고    | · 색채계획을 고려한 도색 및 주변 식재를 통한 차폐                                          |    | ○  |      | ○  |
|       |          | · 저온창고 색채 가이드라인                                                        |    | ○  |      | ○  |
|       |          | · 주조색                                                                  |    |    |      |    |
|       |          | 예                                                                      |    |    |      |    |
| 저온저장고 | 저온저장고    | 시                                                                      |    |    |      |    |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         | • 보조색                             | 예  | 시  |      |    |
|    |         | 색상 : G90Y ~ Y40R<br>G30Y ~G90Y, N |    |    |      |    |
|    |         | 흑색 : 10~50                        |    |    |      |    |
|    |         | 순색량 : 2~30                        |    |    |      |    |
|    |         | • 강조색                             | 예  | 시  |      |    |
|    |         | 색상 : Y70R ~ Y50R<br>R90B ~G50Y, N |    |    |      |    |
|    |         | 흑색 : 15~70                        |    |    |      |    |
|    |         | 순색량 : 2~50                        |    |    |      |    |
|    | 농기계보관창고 | • 색채계획을 통한 도색 및 테마벽화 도입           |    |    | ○    | ○  |
|    |         | • 자연재료를 사용한 마감 권장 및 주변 식재를 통한 차폐  |    |    | ○    | ○  |
|    |         | • 농기계보관창고 색채 가이드라인                |    |    | ○    | ○  |
|    |         | • 주조색                             | 예  | 시  |      |    |
|    |         | 색상 : G90Y ~ Y40R<br>R90B ~B, N    |    |    |      |    |
|    |         | 흑색 : 2~30                         |    |    |      |    |
|    |         | 순색량 : 2~10                        |    |    |      |    |
|    |         | • 보조색                             | 예  | 시  |      |    |
|    |         | 색상 : G90Y ~ Y40R<br>G30Y ~G90Y, N |    |    |      |    |
|    |         | 흑색 : 10~50                        |    |    |      |    |
|    |         | 순색량 : 2~30                        |    |    |      |    |
|    | 축사      | • 강조색                             | 예  | 시  |      |    |
|    |         | 색상 : Y70R ~ Y50R<br>R90B ~G50Y, N |    |    |      |    |
|    |         | 흑색 : 15~70                        |    |    |      |    |
|    |         | 순색량 : 2~50                        |    |    |      |    |
|    |         | • 중점관리구역 일원 대규모 축사 입지 지양          |    |    | ○    | ○  |
|    |         | • 색채계획을 고려한 도색 및 주변 식재를 통한 차폐     |    |    | ○    | ○  |
|    |         | • 지붕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권장          |    |    | ○    | ○  |
|    |         | • 축사 색채 가이드라인                     |    |    | ○    | ○  |
|    |         | • 주조색                             | 예  | 시  |      |    |
|    |         | 색상 : G90Y ~ Y40R,<br>R90B ~B, N   |    |    |      |    |
|    |         | 흑색 : 2~30                         |    |    |      |    |
|    |         | 순색량 : 2~10                        |    |    |      |    |
|    |         | • 보조색                             | 예  | 시  |      |    |
|    |         | 색상 : G90Y ~ Y40R<br>G30Y ~G90Y, N |    |    |      |    |
|    |         | 흑색 : 10~50                        |    |    |      |    |
|    |         | 순색량 : 2~30                        |    |    |      |    |
|    |         | • 강조색                             | 예  | 시  |      |    |
|    |         | 색상 : Y70R ~ Y50R<br>R90B ~G50Y, N |    |    |      |    |
|    |         | 흑색 : 15~70                        |    |    |      |    |
|    |         | 순색량 : 2~50                        |    |    |      |    |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 공동건조가공시설 | • 색채계획을 고려한 도색 및 주변 식재를 통한 차폐                                 |        | ○                                                                                    |      | ○  |
|    |          | • 공동건조가공시설 색채 가이드라인                                           |        | ○                                                                                    |      | ○  |
|    |          | • 주조색                                                         | 예<br>시 |    |      |    |
|    |          | 색상 : G90Y ~ Y40R,<br>R90B ~B, N<br>흑색 : 2~30<br>순색량 : 2~10    |        |    |      |    |
|    |          | • 보조색                                                         |        |    |      |    |
|    |          | 색상 : G90Y ~ Y40R<br>G30Y ~G90Y, N<br>흑색 : 10~50<br>순색량 : 2~30 |        |    |      |    |
|    |          | • 강조색                                                         |        |    |      |    |
|    |          | 색상 : Y70R ~ Y50R<br>R90B ~G50Y, N<br>흑색 : 15~70<br>순색량 : 2~50 |        |   |      |    |
|    |          |                                                               |        |                                                                                      |      |    |
|    |          |                                                               |        |                                                                                      |      |    |
|    | 담배건조장    | • 외관정비를 통해 카페, 황토방, 민박 시설 등으로 용도전환을 통한 재활용 권장                 |        | ○                                                                                    |      | ○  |
|    | 정미소      | • 방치된 정미소 외벽을 마을과 조화되도록 벽화 및 조형물 설치 권장                        |        | ○                                                                                    |      | ○  |
|    |          | • 내부 시설 정비를 통해 공동체박물관 및 교육전시장, 농촌체험장 등으로 활용 권장                |        | ○                                                                                    |      | ○  |
|    | 미곡종합처리장  | • 색채계획을 고려한 도색 및 주변 식재를 통한 차폐                                 |        | ○                                                                                    |      | ○  |
|    |          | • 미곡종합처리장 색채 가이드라인                                            |        | ○                                                                                    |      | ○  |
|    |          | • 주조색                                                         | 예<br>시 |  |      |    |
|    |          | 색상 : G90Y ~ Y40R,<br>R90B ~B, N<br>흑색 : 2~30<br>순색량 : 2~10    |        |  |      |    |
|    |          | • 보조색                                                         |        |  |      |    |
|    |          | 색상 : G90Y ~ Y40R<br>G30Y ~G90Y, N<br>흑색 : 10~50<br>순색량 : 2~30 |        |  |      |    |
|    |          | • 강조색                                                         |        |  |      |    |
|    |          | 색상 : Y70R ~ Y50R<br>R90B ~G50Y, N<br>흑색 : 15~70<br>순색량 : 2~50 |        |  |      |    |
|    | 공동작업장    | • 주변 마을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테마벽화 도입                                |        | ○                                                                                    |      | ○  |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 농특산물판매장 |     | · 색채계획을 통해 마을의 경관요소로 활용                                       |    | ○          |            | ○          |            |
|         |     | · 미곡종합처리장 색채 가이드라인                                            |    | ○          |            | ○          |            |
|         |     | · 구조색                                                         |    |            |            |            |            |
|         |     | 색상 : G90Y ~ Y40R,<br>R90B ~B, N<br>흑색 : 2~30<br>순색량 : 2~10    | 예  | S0502-Y    | S1005-Y    | S1005-Y40R | S2010-Y40R |
|         |     |                                                               | 시  | S2010-Y20R | S2000-N    | S2005-Y20R | S2010-Y30R |
|         |     | · 보조색                                                         |    |            |            |            |            |
|         |     | 색상 : G90Y ~ Y40R<br>G30Y ~G90Y, N<br>흑색 : 10~50<br>순색량 : 2~30 | 예  | S3500-N    | S4010-Y30R | S3005-Y20R | S2020-Y30R |
|         |     |                                                               | 시  | S3010-B60G | S4005-G50Y | S2502-R    | S3010-Y20R |
|         |     | · 강조색                                                         |    |            |            |            |            |
|         |     | 색상 : Y70R ~ Y50R<br>R90B ~G50Y, N<br>흑색 : 15~70<br>순색량 : 2~50 | 예  | S3050-Y50R | S3030-G30Y | S2020-B90G | S4020-G50Y |
|         |     |                                                               | 시  | S3050-B10G | S6005-Y50R | S5030-Y20R | S6020-Y20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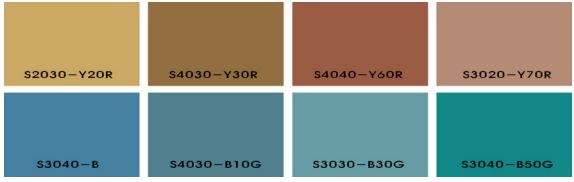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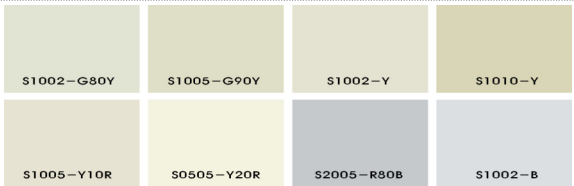
## 농촌시설 가이드라인 - 주거공간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주거<br>공간 | 주택              | · 자연지형에 순응(절개지 지양), 신축시 주변 경관고려                                                                                              |    | ○  |      | ○  |
|          |                 | · 건축색채 : 가급적 동일계열 색상으로 조성, 저채도 색상 유도                                                                                         |    | ○  |      | ○  |
|          |                 | · 건축재료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    | ○  |      | ○  |
|          |                 | · 지붕 : 슬레이트 지붕 철거, 경사지붕 권장                                                                                                   |    | ○  |      | ○  |
|          |                 | · 농어촌주택 색채 가이드라인                                                                                                             |    | ○  |      | ○  |
|          |                 | · 주조색                                                                                                                        |    |    |      |    |
|          |                 | 색상 : Y ~ Y70R, N<br>흑색 : 10~30<br>순색량 : 2~20                                                                                 | 예  |    |      |    |
|          |                 |                                                                                                                              | 시  |    |      |    |
|          |                 | · 보조색                                                                                                                        |    |    |      |    |
|          |                 | 색상 : Y ~ R, N<br>흑색 : 10~50<br>순색량 : 2~30                                                                                    | 예  |    |      |    |
|          |                 |                                                                                                                              | 시  |    |      |    |
|          |                 | · 강조색                                                                                                                        |    |    |      |    |
|          |                 | 색상 : Y ~ R, N<br>흑색 : 20~70<br>순색량 : 2~40                                                                                    | 예  |    |      |    |
|          |                 |                                                                                                                              | 시  |    |      |    |
|          | 마을길             | · 마을 담장과 조화되는 친환경소재 권장(석재, 자갈, 마사토 포장 등), 높이 1.2m이하로 유도                                                                      | ○  | ○  |      | ○  |
|          | 옹벽, 비탈면처리       | · 주변 경관에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조성<br>· 권장사항 : 식생보강토 옹벽, 소나무 옹벽 등<br>· 외래수종을 지양하고 향토수종 권장, 덩굴식재 및 허부 식재를 통한 연속경관 연출 권장                  | ○  | ○  |      | ○  |
|          | 마을마당, 정자목       | · 마당은 친환경 소재로 포장하고 정자목 주변은 마을 경관과 조화되는 시설(정자, 평상, 조형물)권장                                                                     |    | ○  |      | ○  |
|          | 옹벽, 비탈면처리       | · 주변 경관에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조성<br>· 권장사항 : 식생보강토 옹벽, 소나무 옹벽 등<br>· 외래수종을 지양하고 향토수종 권장, 덩굴식재 및 허부 식재를 통한 연속경관 연출 권장                  |    | ○  |      | ○  |
|          | 담장              | · 마을을 테마로한 벽화조성으로 마을 경관요소로 활용<br>· 기존 담장과 조화되는 재료로 통일성 형성(재료, 높이, 형태)하고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조성<br>· 자연친화적 소재 권장(생울타리, 돌담, 토담, 싸리담 등) |    | ○  |      | ○  |
|          |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집열판 | · 주변과 조화로운 구조물 설계를 적용한 태양광태양열 설치 권장<br>· 집열판 부착을 위해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여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각도, 형태 지양                                       |    | ○  |      | ○  |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 마을하수, 배수시설 | · 명거 수로는 자연형으로 조성하여 수생 동, 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유도(다공질 생태 수로 조성) | ○  | ○  |      | ○  |
|    |            | · 기존 수로의 암거화 지양                                          | ○  |    |      | ○  |
|    | 쓰레기수거장     | · 쓰레기의 유실을 방지하는 가림막 설치 권장                                | ○  |    |      |    |
|    |            |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및 주변 식재를 통한 차폐 유도                        | ○  | ○  |      | ○  |
|    |            | · 기존 시설과 조화되는 재료를 선택하여 통일성 및 주변과의 조화 유도                  |    | ○  |      | ○  |
|    | 분리수거대      | · 분리수거대 지붕설치와 주변 차폐시설 설치권장                               | ○  | ○  |      | ○  |
|    |            | · 쓰레기의 유실을 방지하는 가림막 설치 권장                                | ○  |    |      | ○  |
|    | 전신주, 가로등   | · 마을 테마와 어울리는 형태·색채 권장                                   | ○  | ○  |      | ○  |
|    |            | · 과도한 형태 및 조형성은 지양하고 지역성을 반영                             | ○  | ○  |      | ○  |
|    |            | · 전신주는 가급적 지중화 방안 고려                                     | ○  |    |      | ○  |
|    | 보안등        | · 마을 테마와 어울리는 형태·색채 권장                                   | ○  | ○  |      | ○  |
|    |            | · 기능과 경관을 고려한 보행등 설치                                     | ○  | ○  |      | ○  |
|    | 안내석        | · 마을 경관과 조화되는 안내석 설치                                     | ○  |    |      | ○  |
|    | 버스정류장      | · 주변 경관의 색채와 조화되면서 마을 테마 반영 권장                           | ○  | ○  |      | ○  |
|    |            | ·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권장                                   | ○  |    |      | ○  |
|    | 간판         | · 마을 전체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으로 개성 있게 연출                            | ○  |    |      | ○  |
|    |            | · 과도한 색채 사용 및 다양한 채색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간판으로 유도              |    | ○  |      | ○  |

## 농촌시설 가이드라인 - 커뮤니티공간 및 기타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 마을회관, 경로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의 전반적인 경관을 고려한 계획(지붕, 색채, 형태 등)</li> <li>친환경 소재 사용,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li> </ul>                                   | ○          | ○          |            | ○          |
|        | 커뮤니티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건물 리모델링 권장 (작은 도서관, 마을 회관, 도농교류교육장 등)</li> <li>과도한 조형성 및 색채로 주변 경관과 이질감 지양</li> <li>커뮤니티센터 색채 가이드라인</li> </ul>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조색</li> </ul>                                                                                                    |            |            |            |            |
|        |           | 색상 : Y10R ~ Y60R<br>R80B ~ B<br>흑색 : 10~30<br>순색량 : 2~10                                                                                                 | 예          |            |            |            |
|        |           |                                                                                                                                                          | S1002-Y    | S1005-Y20R | S2005-Y50R | S1005-Y40R |
|        |           |                                                                                                                                                          | S2005-R80B | S2005-Y10R | S3005-Y20R | S1005-Y60R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색</li> </ul>                                                                                                    |            |            |            |            |
|        |           | 색상 : Y ~ Y80R<br>R80B ~ G90Y<br>흑색 : 20~50<br>순색량 : 2~20                                                                                                 | 예          |            |            |            |
|        |           |                                                                                                                                                          | S3010-Y    | S2010-Y10R | S2005-Y10R | S3010-Y40R |
|        |           |                                                                                                                                                          | S4502-B    | S4020-Y20R | S3020-Y50R | S4010-Y50R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조색</li> </ul>                                                                                                    |            |            |            |            |
|        |           | 색상 : Y ~ R30B<br>R80B ~ G90Y<br>흑색 : 20~70<br>순색량 : 2~40                                                                                                 | 예          |            |            |            |
|        |           |                                                                                                                                                          | S4020-Y    | S4030-Y10R | S4020-R80B | S3020-Y50R |
|        |           |                                                                                                                                                          | S4005-G80Y | S6020-Y60R | S5010-Y50R | S3020-Y30R |
| 커뮤니티공간 | 공동화장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재료를 이용한 벽체 마감 권장</li> <li>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형태 권장</li> </ul>                                                       |            | ○          |            | ○          |
|        | 전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형태, 재료 사용</li> </ul>                                                                | ○          | ○          |            | ○          |
|        | 정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적이고 경관과 조화되는 재료 권장</li> </ul>                                                                                  | ○          | ○          |            | ○          |
|        | 생태연못 및 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연못 및 습지는 자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li> <li>호안은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하고 기존 실개울과 수림대를 연계하도록 유도</li> </ul>                          | ○          | ○          |            | ○          |
|        | 자전거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자전거 도로 조성</li> </ul>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위험성으로 보도 내 자전거도로 신설 지양</li> </ul>                                                                              | ○          |            |            | ○          |
|        |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수성 포장재료 사용 권장(마사토, 식생블럭 등)</li> </ul>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환경과 기능, 형태, 색채 등이 조화되도록 유도</li> </ul>                                                                          | ○          |            |            | ○          |
|        | 폐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모델링을 통하여 다양한 용도로 전환 유도(놀이학교, 체험학교 등)</li> </ul>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환경, 기존 건물, 마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li> </ul>                                                                         | ○          |            |            | ○          |
|        | 체험숙박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소재 사용,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li> <li>기존 마을과 조화되는 형태, 색채, 재료 선정으로 통일감 유도</li> <li>체험숙박시설 색채 가이드라인</li> </ul>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조색</li> </ul>                                                                                                    |            |            |            |            |
|        |           | 색상 : Y20R ~ Y40R<br>R90B, N<br>흑색 : 2~70<br>순색량 : 2~20                                                                                                   | 예          |            |            |            |
|        |           |                                                                                                                                                          | S0505-Y20R | S0510-Y20R | S2010-Y20R | S1005-Y30R |
|        |           |                                                                                                                                                          | S1010-Y30R | S2005-Y30R | S1005-Y40R | S6030-R90B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색</li> </ul>                                                                                                    |            |            |            |            |
|        |           | 색상 : Y20R ~ Y40R<br>R90B ~ B50G<br>흑색 : 10~40<br>순색량 : 2~30                                                                                              | 예          |            |            |            |
|        |           |                                                                                                                                                          | S1010-Y20R | S1020-Y20R | S2020-Y20R | S2020-Y30R |
|        |           |                                                                                                                                                          | S3010-Y40R | S1010-R90B | S2030-B    | S3020-B50G |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조색</li> </ul>                                                                       | 예  | 시  |    |    |
|    |               | 색상 : Y20R ~Y70R<br>B ~ B50G<br>흑색 : 20~40<br>순색량 : 10~40                                                                    |    |    |                                                                                      |    |
|    | 체육시설(실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과 조화되는 체육시설 선정(재료, 색채 등)</li> </ul>                                                | ○  | ○  |                                                                                      | ○  |
|    | 야영장,<br>야외체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체험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캠핑장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li> </ul>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 색채, 재료 사용 권장</li> </ul>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영장, 야외체험장 색채 가이드라인</li> </ul>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조색</li> </ul>                                                                       | 예  | 시  |    |    |
|    |               | 색상 : G80Y ~ Y40R<br>R80B ~ B<br>흑색 : 5~20<br>순색량 : 2~10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색</li> </ul>                                                                       | 예  | 시  |   |    |
|    |               | 색상 : Y ~ R<br>R80B ~G90Y<br>흑색 : 10~50<br>순색량 : 10~30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조색</li> </ul>                                                                       | 예  | 시  |  |    |
|    |               | 색상 : Y ~ R<br>R80B ~G90Y<br>흑색 : 20~70<br>순색량 : 2~40                                                                        |    |    |                                                                                      |    |
|    | 종합안내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도한 장식, 조형성, 색채 사용 지양</li> </ul>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판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재료선택과 구법 선정</li> </ul>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안내판 색채 가이드라인</li> </ul>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탕색</li> </ul>                                                                       | 예  | 시  |  |    |
|    |               | 색상 : G80Y ~ Y40R<br>R80B ~ B<br>흑색 : 5~20<br>순색량 : 2~10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자색</li> </ul>                                                                       | 예  | 시  |  |    |
|    |               | 색상 : all color<br>흑색 : 2~85<br>순색량 : 2~60                                                                                   |    |    |                                                                                      |    |
| 기타 | 방향안내표지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도한 장식, 조형성, 색채 사용 지양</li> </ul>                                                     | ○  | ○  |                                                                                      | ○  |
|    | 전통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등 보존상태가 양호한 주택과 사당, 제실, 솟대, 장승 등 전통시설은 유지·보수 권장</li> </ul>             | ○  | ○  |                                                                                      | ○  |
|    | 역사유적경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시설 권장</li> <li>유적 보호시설은 주변과 조화되는 형태, 색채, 재료 권장</li> </ul> | ○  | ○  | ○                                                                                    | ○  |

### 3) 개별 가이드라인

#### ■ 장항읍 중심가로

##### 계획방향

- 장항읍 시가지의 시각회랑축 확보
- 근경권 조망, 원경권 조망에 따른 건축물 밀도 규제 차별화
- 장항읍 상징공간으로서 정체성을 살린 경관 형성

##### 구역범위

- 지정 : 장항 중앙초등학교-장항읍사무소(장항로), 장항버스 공용정류장(장서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쪽으로 15m  
미곡창고에서 장항화물역 길(장산로317번길) 양측으로 15m
- 향후 : 장항 진입부-한솔제지 장항공장(국지도68호선) / 장항 금강아파트-참사랑병원 경계선으로부터 양쪽으로부터 15m

##### 기본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 경관현황



장항버스공용터미널



장서로 주변 경관



물양장 주변 경관



장항선 철도변 경관



장항로 주변 경관



장항로-성주로 결절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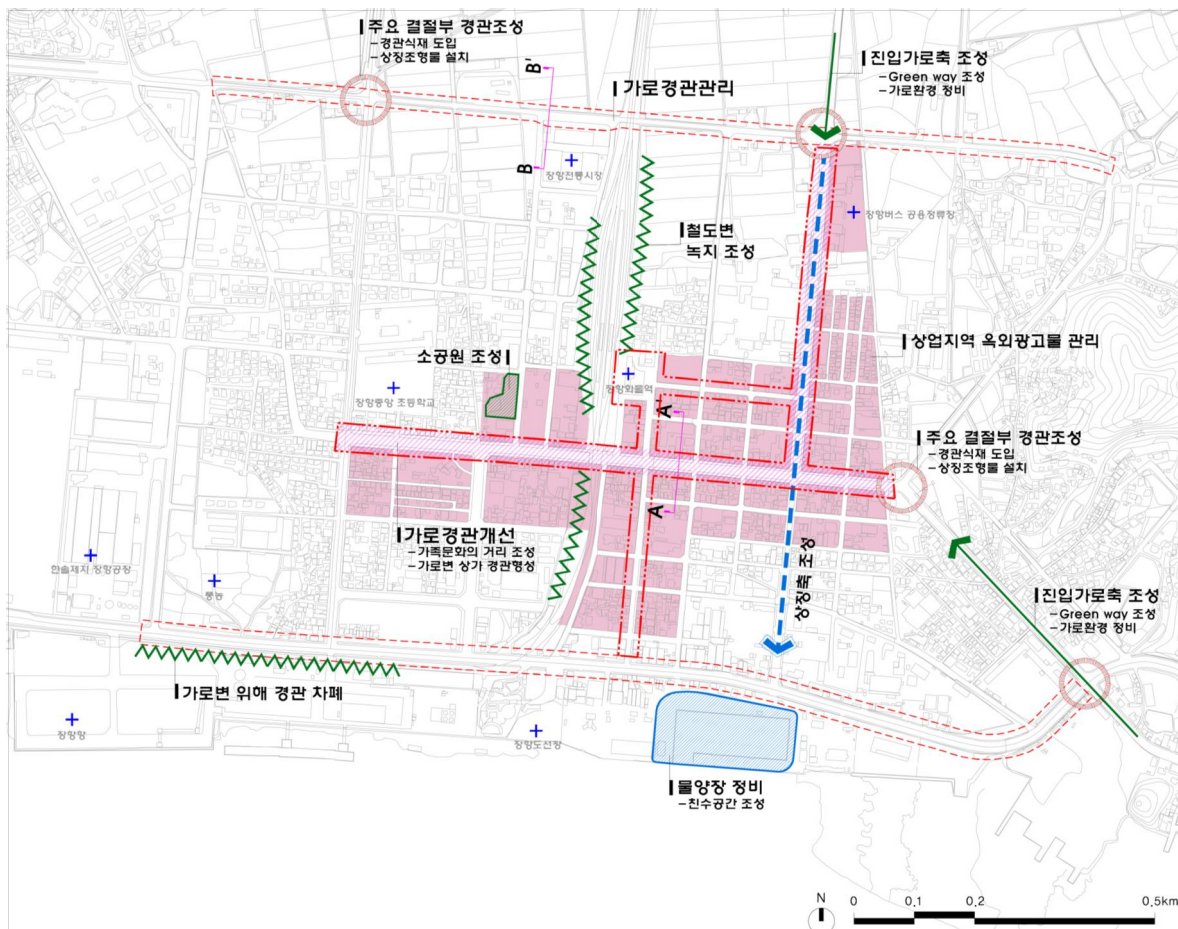
상업지구내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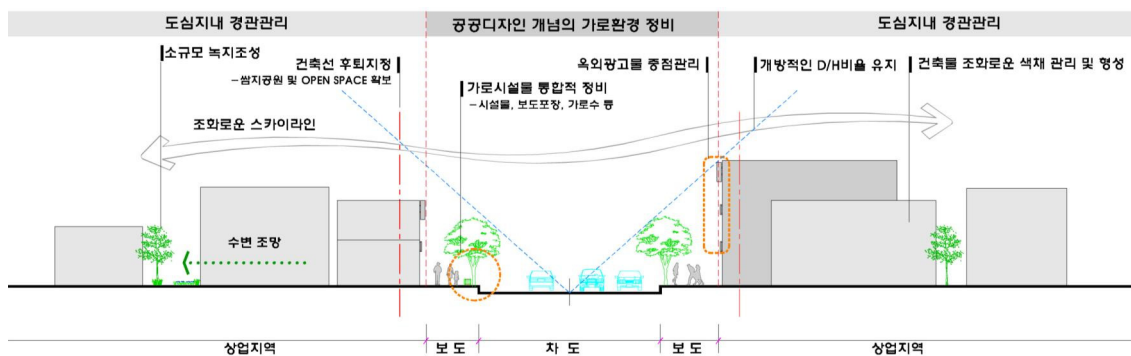
주변 아파트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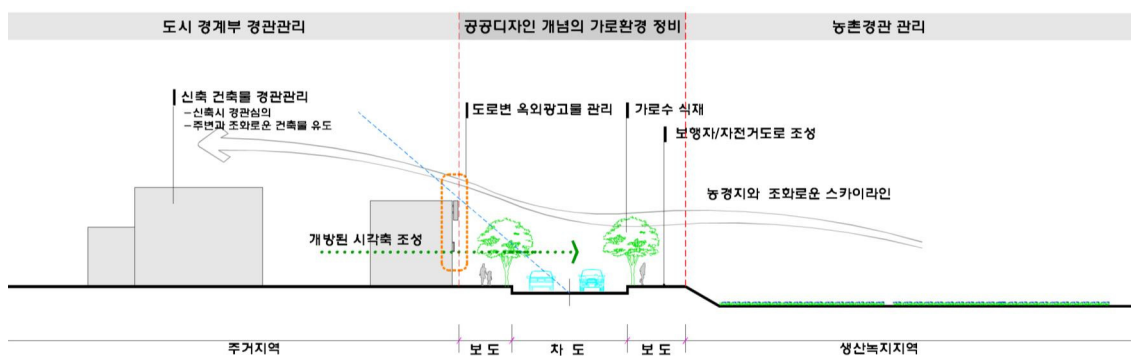
## 경관기본구상도



### A-A' Section



### B-B' Section





##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세장형 필지분할 지양                                                 | ○  | ○  |      | ○  |
|                          |             | · 장항읍 특화거리 조성                                                 | ○  | ○  |      | ○  |
|                          | 환경·생태       | ·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                                       | ○  | ○  |      | ○  |
|                          |             | · 공업지역 경계부 완충녹지 확보를 통한 도시내 오염물질 저감                            | ○  | ○  | ○    |    |
|                          | 가구·획지계획     | · 격자형 가로망에 적합한 획지 구성(통일성 유지)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장서로 일부구간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주말)                                    | ○  | ○  |      | ○  |
|                          |             | · 주요구간 자전거 도로의 조성                                             | ○  | ○  |      | ○  |
|                          | 도로          | · 계획도시인 장항읍에 맞는 격자형 도로망 유지                                    | ○  | ○  | ○    |    |
|                          |             | · D/H 비율 1~2에 맞는 도로 폭원 유지                                     | ○  | ○  |      | ○  |
|                          |             | · 보행자 전용도로 차량 출입 제한(주말)                                       | ○  | ○  | ○    |    |
|                          |             | · 68호선 지방도, 성화로는 진입도로경관형성 및 특화 가로수 식재                         | ○  | ○  |      | ○  |
|                          | 주차장         | · 주요 도로에서 주차장 진입 지양(이면도로 활용)                                  | ○  | ○  |      | ○  |
|                          |             | · 장항로변 공용주차장운영 및 부설주차장 설치로 불법 주정차 방지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격자형 패턴에 조화되는 사각형 패턴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유도                           | ○  | ○  |      | ○  |
|                          | 공원·녹지       | · 장항선 철도부지를 활용한 남북 녹지축 조성                                     | ○  | ○  |      | ○  |
|                          |             | · 장항로, 장서로 도로경관축 형성                                           | ○  | ○  |      | ○  |
|                          | 경관이미지       | · 주요 공공건축물 경관거점으로 조성(장항중앙 초등학교, 장항 화물역, 장항버스공용정류장, 장항 전통시장 등) | ○  | ○  |      | ○  |
|                          |             | · 장항 도선장 해안 조망권 확보                                            | ○  | ○  |      | ○  |
|                          | 도시 맥락       | · 근대도시의 장소성을 살린 계획                                            | ○  | ○  |      | ○  |
|                          |             | · 격자형 도시맥락에 부합하는 계획                                           | ○  |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건축물 용도      | · 신규 건축물의 경우 복합용도(Mixed-use)계획                                |    |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장항로 구간 건축선 후퇴 유도                                            | ○  | ○  |      | ○  |
|                          |             | · 건축선 이격으로 개방감 형성 및 보행 활성화 도모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장항버스터미널 리모델링 및 복합건축물 조성                                     | ○  | ○  |      | ○  |
|                          |             | · 역사적 건축물 주변의 건축은 역사자원과의 연계성 고려한 디자인                          |    | ○  |      | ○  |
|                          | 건축물 외관      | · 저층부 재질은 자연재료 사용 권장                                          |    | ○  |      | ○  |
|                          |             | · 가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는 재료 사용 권장                                |    | ○  |      | ○  |
|                          |             | · 노후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    | ○  |      | ○  |
| 도시<br>시설                 | 대지내 공지      |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 ○  | ○  |      | ○  |
|                          | 대지내 조경      | · 슬라브형 건물에 옥상녹화 권장(경량형)                                       |    | ○  |      | ○  |
|                          | 건축물 간격      | · 세장형 필지의 경우 합벽건축 고려                                          |    | ○  |      | ○  |
|                          | 옥외광고물       | · 건축물의 외장재와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 형태                                    |    | ○  |      | ○  |
|                          |             | · 장항읍에 맞는 옥외광고물 설치                                            | ○  | ○  |      | ○  |
|                          | 가로시설물       | · 도로와 보도의 주요 교차지점 포장의 차별화                                     | ○  | ○  |      | ○  |
|                          |             | · 휴식 및 편의 시설 증대                                               | ○  | ○  |      | ○  |
|                          |             | · 장항읍에 맞는 식재(가로수) 및 녹화 (향토수종 권장)                              | ○  | ○  |      | ○  |
|                          |             | · 정보이용시설, 키오스크, 스트리트 퍼니처 조성                                   | ○  |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야간조명        | · 야간조명은 필요한 부분에 설치, 과도한 설치 지양                                 | ○  | ○  |      | ○  |
|                          | 기타시설물       | · 장항읍 인근 송전탑의 경우 일부 랜드마크적 디자인 적용                              | ○  | ○  |      | ○  |
|                          |             | ·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여 정보제공 및 가로 활기 부여                               | ○  | ○  |      | ○  |
|                          |             | · 전신주 지중화 유도                                                  | ○  | ○  |      | ○  |

## ■ 서천읍 중심가로

### 계획방향

- 서천읍 시가지의 시각회랑축 확보
- 근경권 조망, 원경권 조망에 따른 건축물 밀도 규제 차별화
- 서천읍 상징공간으로서 정체성을 살린 경관 형성

### 구역범위

- 지정 : 서천오거리를 기점으로 서천로 1.7Km 구간 경계선으로부터 양쪽으로 15m, 서천읍 중심상업지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서천 봄의 마을 구역
- 향후 : 사곡로 1.4Km 구간 경계선으로부터 양쪽으로 15m 구간 / 서천오거리 - 서천특화시설 구간 경계선으로부터 양쪽으로 15m

### 기본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 경관현황



서천읍 주변 아파트 경관



서천읍 전경



서천읍 전경



서천 향교



사곡로 가로경관



서한로 가로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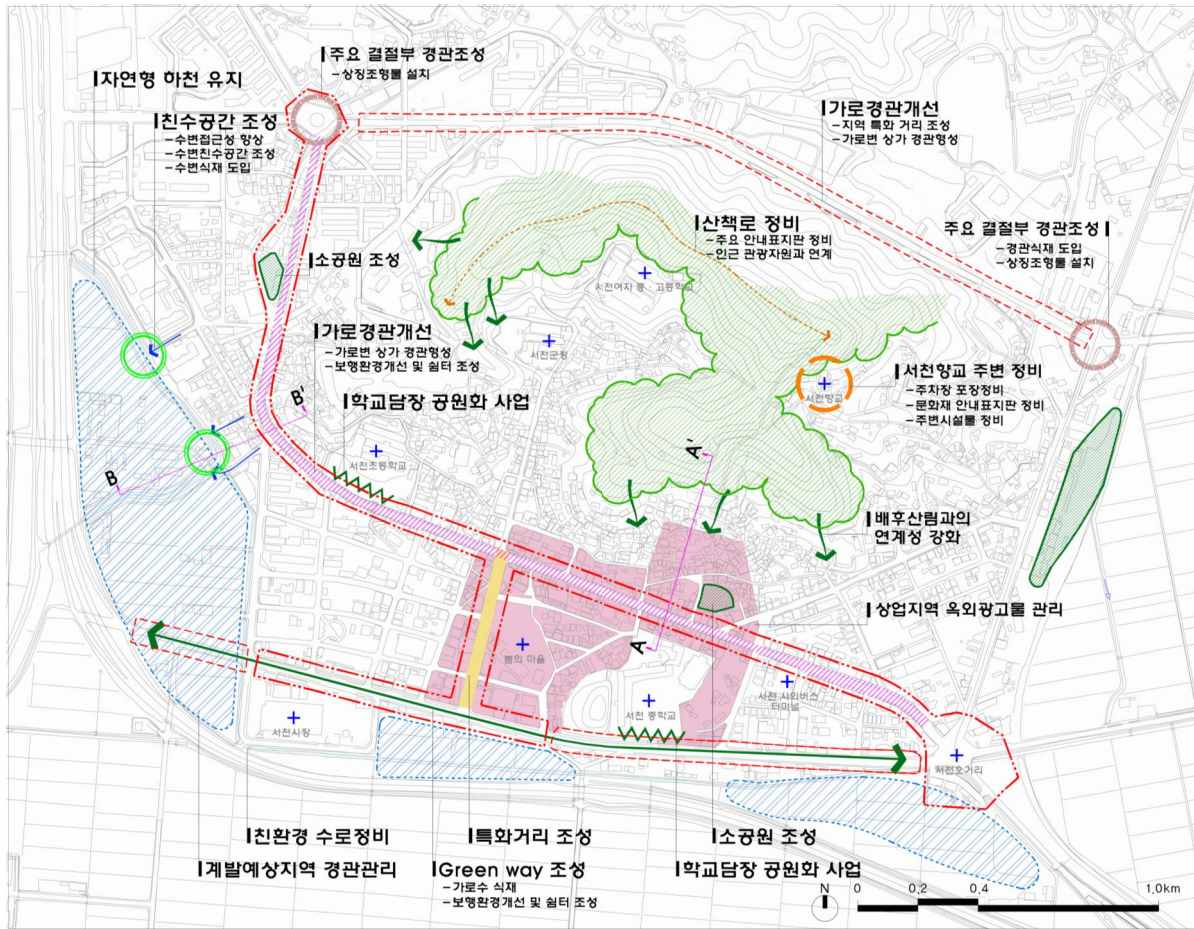


상업지구내 경관(서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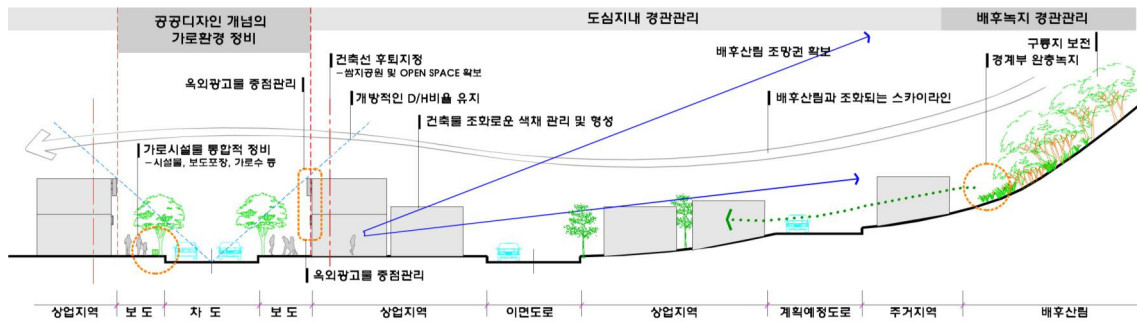


서천 봄의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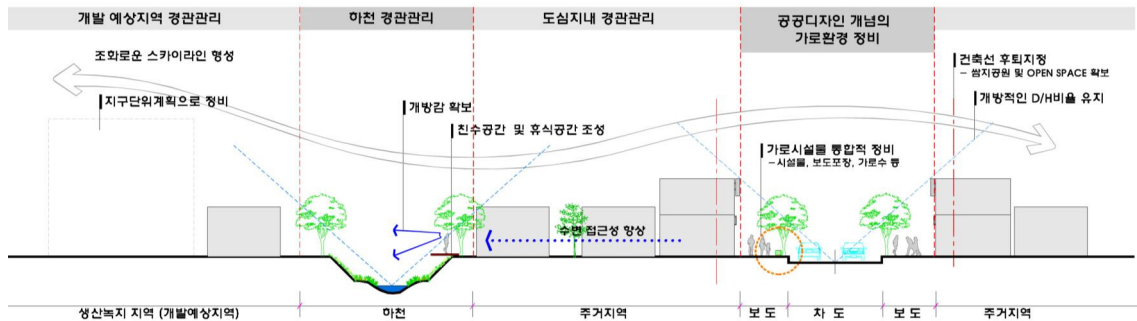
## 경관기본구상도



A-A' Section



B-B' Section



##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세장형 필지분할 지양                                                       | ○  | ○  |      | ○  |
|                      |             | · 서천읍 특화거리 조성                                                       | ○  | ○  |      | ○  |
|                      | 환경·생태       | ·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                                             | ○  | ○  |      | ○  |
|                      |             | · 자연발생적 도시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의 조화유도                                     | ○  | ○  |      | ○  |
|                      | 가구·획지계획     | · 세장비 1:0.8~1.5 권장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서천로 일부구간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주말)                                          | ○  | ○  |      | ○  |
|                      |             | · 사곡로, 충절로 자전거도로 조성                                                 | ○  | ○  |      | ○  |
|                      |             | · 자연발생적 도로패턴과 계획 도로 간의 유기적 연계                                       | ○  | ○  |      | ○  |
|                      | 도로          | · D/H 비율 1~2에 맞는 도로 폭원 유지                                           | ○  | ○  |      | ○  |
|                      |             | · 보행자 전용도로 차량 출입금지(주말)                                              | ○  | ○  |      | ○  |
|                      |             | · 사곡로, 충절로는 진입도로 경관형성 및 특화 가로수 식재                                   | ○  | ○  |      | ○  |
|                      |             | · 주거지역내 담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 ○  | ○  |      | ○  |
|                      | 주차장         | · 주요 도로에서 주차장 진입 지양(이면도로 활용)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서천초등학교, 서천중학교 담장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 ○  | ○  |      | ○  |
|                      |             | · 서천군 배후산림과 연계한 공원·녹지 조성                                            | ○  | ○  |      | ○  |
|                      | 공원·녹지       | · 기존 녹지는 최대한 보전하며, 자연친화적 공원·녹지 조성                                   | ○  | ○  |      | ○  |
|                      | 경관이미지       | · 사곡로, 충절로 도로경관축 형성                                                 | ○  | ○  |      | ○  |
|                      |             | · 주요 공공건축물 경관거점으로 조성(봄의 마을, 서천시외버스터미널, 서천군청, 서천 초등학교, 서천시장, 서천향교 등) | ○  | ○  |      | ○  |
|                      |             | · 배후산림에서의 조망권 확보(서천읍성)                                              | ○  | ○  |      | ○  |
|                      |             | · 거대한 규모 및 돌출건축물 지양, 역사자원의 조망 확보(서천향교)                              | ○  | ○  |      | ○  |
|                      | 도시 맥락       | · 역사적 장소성을 살린 계획                                                    | ○  | ○  |      | ○  |
| 건축물<br>및<br>주변<br>공간 | 건축물 규모      | · 배후산림에 인접하여 대규모 건축물 지양                                             | ○  |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신규 건축물의 경우 복합용도(Mixed-use)계획                                      |    | ○  |      | ○  |
|                      |             | · 서천로 구간 건축선 후퇴 유도<br>- 건축선 이격으로 개방감 형성 및 보행 활성화 도모                 | ○  |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서천버스터미널 리모델링 및 복합건축물 조성                                           | ○  | ○  |      | ○  |
|                      |             | · 배후산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형 건축계획                                        |    | ○  |      | ○  |
|                      |             | · 역사적 건축물 주변의 건축은 역사자원과의 연계성 고려                                     | ○  | ○  |      | ○  |
|                      | 건축물 외관      | · 건물의 고층부는 멀리서도 눈에 띄기 때문에 배후 산림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                    | ○  | ○  |      | ○  |
| 도시<br>시설             | 대지내 조경      |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 ○  | ○  |      | ○  |
|                      | 건축물 간격      | · 배후산림에 조망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접건물과의 인동간격 확보                               | ○  | ○  |      | ○  |
|                      | 옥외광고물       | · 서천읍에 맞는 옥외광고물 설치 권장                                               | ○  | ○  |      | ○  |
|                      |             | · 장항읍에 맞는 식재(가로수) 및 녹화 (향토수종 권장)                                    | ○  | ○  |      | ○  |
|                      | 가로시설물       | · 정보이용시설, 키오스크, 스트리트 퍼니처 조성                                         | ○  |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 야간조명        | · 야간조명은 필요한 부분에 설치, 과도한 설치 지양                                       | ○  | ○  |      | ○  |
| 도시<br>시설             | 기타시설물       | ·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여 정보제공 및 가로 활기 부여                                     | ○  | ○  |      | ○  |

## ■ 장항제련소

### 계획방향

- 녹지의 확보를 통한 시각적 녹시율 확보
- 조망을 고려한 열린 배치 유도 및 조망경관 형성
- 주변 산지 및 해안 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유도

### 구역범위

- 지정 : 장항제련소 부지 및 68호선 양측으로 15m
- 향후 : 장항제련소 인근 난개발 지역 및 경관형성에 필요한 지역

### 기본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 경관현황



전망산 전경



후망산 전경



장암진성 진입부



68번 국도 전경



중점관리구역 대상지 전경 1



중점관리구역 대상지 전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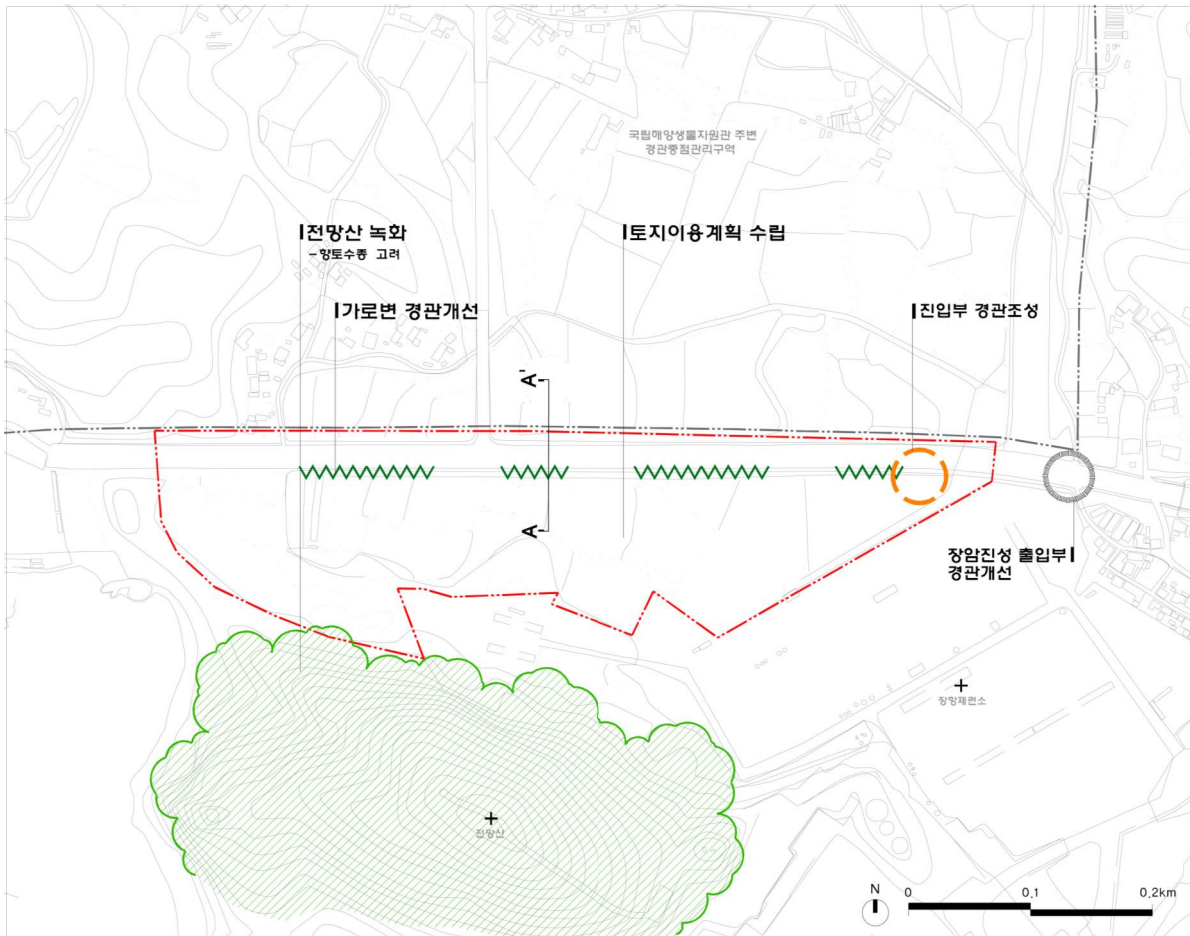
중점관리구역 대상지 전경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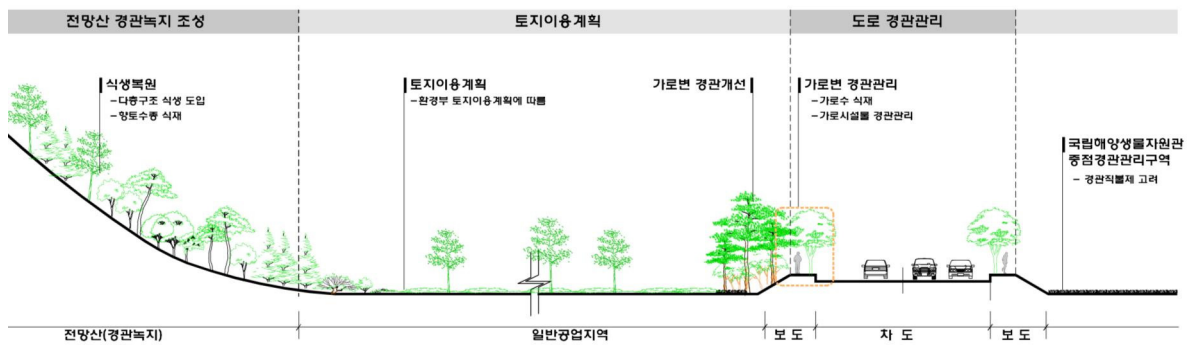
주변지역 경관 현황



## 경관기본구상도



## A-A' Section



##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용도지역 변경(환경부 매입부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름)        | ○                 | ○  | ○    |    |
|                          | 환경·생태       | · 오염토양정화사업진행으로 생태적 건전성 유지             | ○                 | ○  |      | ○  |
|                          |             | ·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탄소배출 저감 계획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장항제련소로 연결되는 보행동선 조성                 | ○                 | ○  |      | ○  |
|                          |             | · 68호선 지방도 자전거 도로 조성                  | ○                 | ○  |      | ○  |
|                          | 도로          | · 진입도로 경관형성 및 특화 가로수 식재               | ○                 | ○  |      | ○  |
|                          |             | · 68호선 도로변 완충녹지 확보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오픈스페이스 조성시 인근 공원·녹지와 연계 고려          | ○                 | ○  |      | ○  |
|                          | 공원·녹지       | ·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의 확보를 통한 녹시율 확보         | ○                 | ○  |      | ○  |
|                          |             | · 생태를 테마로한 공원·녹지 조성                   | ○                 | ○  |      | ○  |
|                          |             | · 생태적 천이개념을 도입한 공원·녹지 조성              | ○                 | ○  |      | ○  |
|                          | 경관이미지       | · 장항제련소의 오염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청정이미지 구축       | ○                 |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스카이라인       | · 주변 산림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조성, 과도한 건축물 지양   | ○                 | ○  |      | ○  |
|                          | 도시 맥락       | · 브라운 필드 재생에 맞는 장소적 맥락 고려             | ○                 | ○  |      | ○  |
|                          | 건축물 규모      | · 대규모 건축물 지양하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 관리     | ○                 | ○  |      | ○  |
|                          | 건축물 용도      | · 향후 계획과 부합하는 건축물 용도 입지               | ○                 |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전방산과의 관계, 진입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         | ○                 | ○  |      | ○  |
|                          |             | · 건축물의 경우 68호선 도로변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 관리 | ○                 |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친환경소재를 도입한 생태적 건축                   | ○                 | ○  |      | ○  |
|                          | 건축물 외관      | · 이중 외피형태를 취하는 생태건축 유도                | ○                 | ○  |      | ○  |
|                          |             |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 경사형 지붕 유도           | ○                 | ○  |      | ○  |
|                          | 도시<br>시설    | 옥외광고물                                 | · 과도한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 ○  | ○    | ○  |
| · 68호 도로변 옥외광고물 가급적 자제   |             |                                       | ○                 | ○  |      | ○  |
| 가로시설물                    |             | · 장항제련소에 맞는 식재(가로수) 및 녹화 (향토수종 권장)    | ○                 | ○  |      | ○  |
|                          |             | · 정보이용시설, 키오스크 조성                     | ○                 | ○  |      | ○  |
| 색채                       |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야간조명                     |             | · 야간조명은 필요한 부분에 설치, 과도한 설치 지양         | ○                 | ○  |      | ○  |
| 기타시설물                    |             | · 경관저해시설 철거 및 이전(굴뚝, 전신주 등)           | ○                 | ○  |      | ○  |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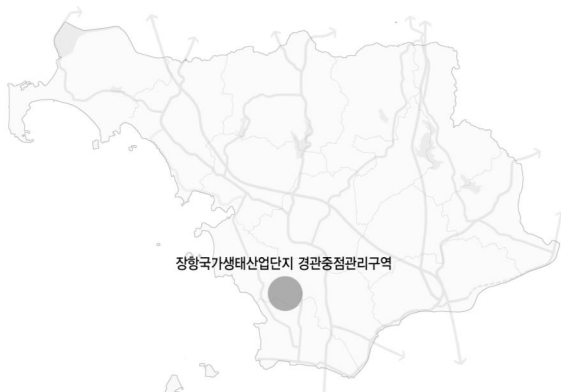
### 계획방향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 인공시설물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산업단지 형성
- 녹지를 활용한 녹지네트워크의 형성 및 주요 도로변 통경축 조성

### 구역범위

- 지정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 향후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난개발 예상구역

### 기본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 경관현황



예정부지 경관 전경



예정부지 경관 전경



진입도로 경관현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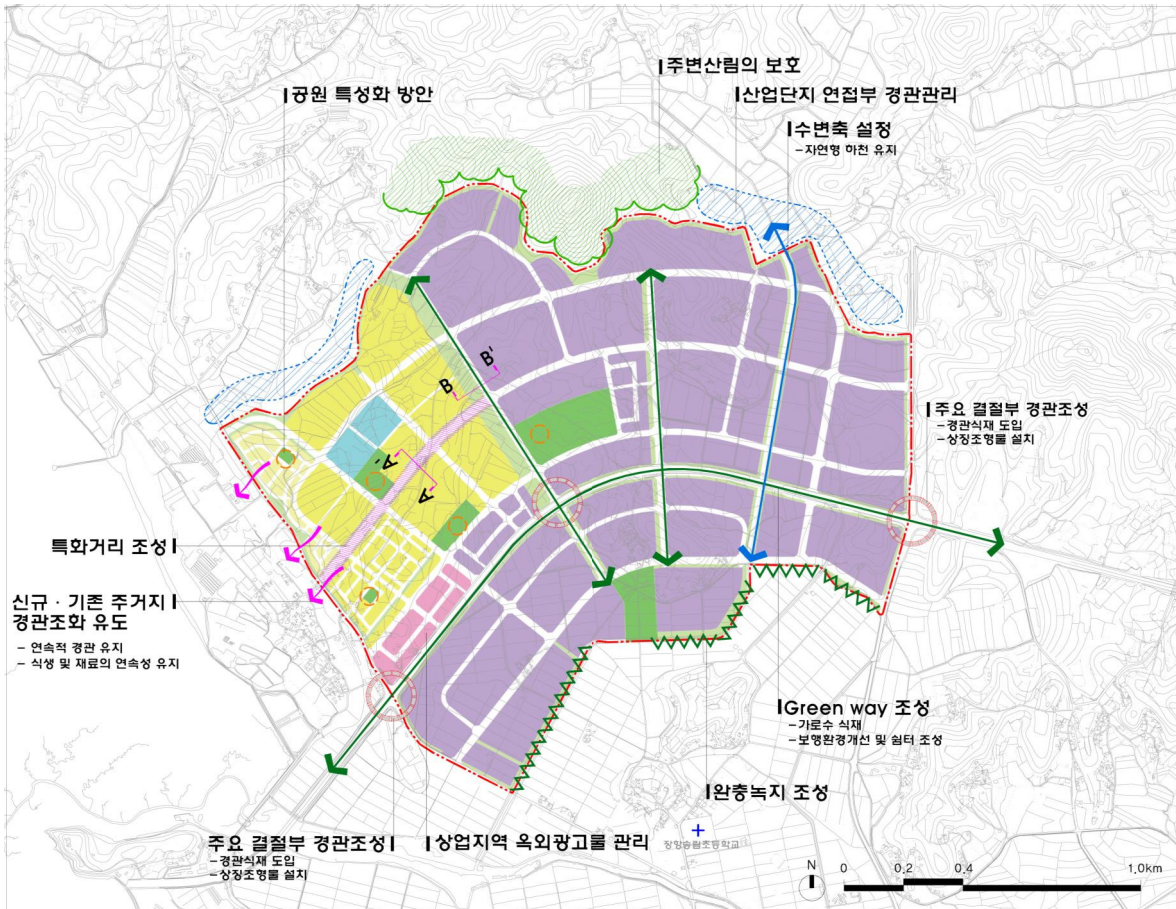
진입도로 경관현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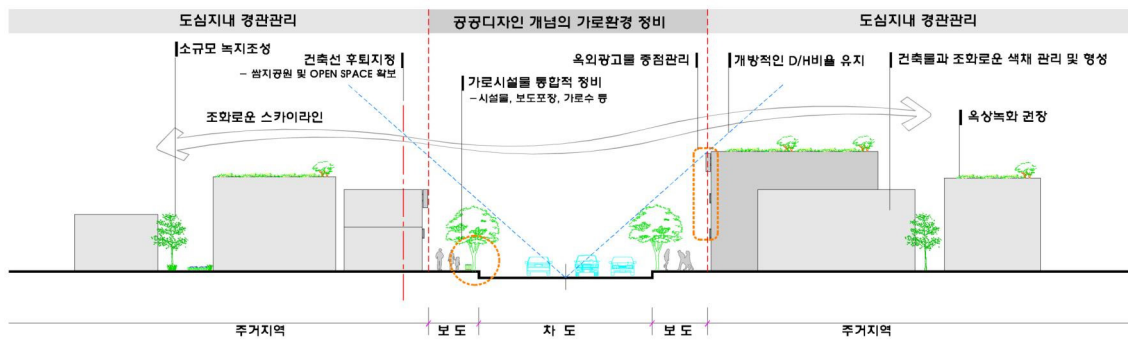
예정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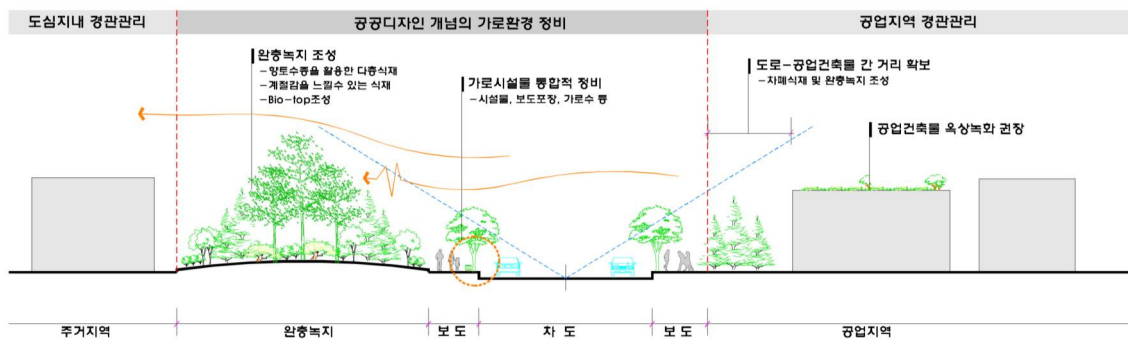
## 경관기본구상도



### A-A' Section



### B-B' Section



##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장항생태산업단지 지형고시도면 준수                                      | ○  | ○  | ○    |    |
|                          |             | · 서천군만의 특색을 살린 생태 테마형 산업단지 조성                             | ○  | ○  | ○    |    |
|                          | 환경·생태       | ·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태산업단지 조성                                 | ○  | ○  | ○    |    |
|                          | 가구·획지계획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한 가구 및 획지 계획 준수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상업지역내 특화거리 조성                                           | ○  | ○  |      | ○  |
|                          |             | · 자전거도로로 조성을 통한 생태단지조성                                    | ○  | ○  |      | ○  |
|                          | 도로          | · 중앙분리대 식재를 통해 산업단지내 녹시율 증대                               | ○  | ○  |      | ○  |
|                          |             | · 주요 교차로 교통광장 녹화 및 상암시설물 설치                               | ○  | ○  |      | ○  |
|                          | 주차장         | · 주요 도로에서 주차장 진입 지양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주거 및 상업지역내 오픈스페이스 적극조성<br>-담장허물기, 학교경계부지 등 활용           | ○  | ○  |      | ○  |
|                          |             |                                                           |    |    |      |    |
|                          | 공원·녹지       | · 공업건축물 차폐를 위한 완충녹지 및 차폐식재                                | ○  | ○  |      | ○  |
|                          |             | ·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와 연계된 가로 녹지띠 형성                             | ○  |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경관이미지       | · 부채꼴모양의 통경축 확보                                           | ○  | ○  |      | ○  |
|                          | 도시 맥락       | · 장소의 잠재성을 드러내는 건축계획                                      | ○  | ○  |      | ○  |
|                          | 건축물 규모      | · 용도지역에 맞는 적정규모의 건축계획                                     | ○  | ○  |      | ○  |
|                          | 건축물 용도      | ·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경우 가로변에 상업시설 배치                              | ○  |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상업지역은 도로변에서 3m 이상 건축지정선 확보<br>-건축선 이격으로 개방감 형성 및 보행활성화  | ○  | ○  |      | ○  |
|                          |             |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상업 및 주거지역은 필로티를 활용한 건축계획                                | ○  | ○  |      | ○  |
|                          |             | · 상업 및 주거지역내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요철공간을 계획<br>- 보행환경의 개선 및 휴식공간 제공 | ○  | ○  |      | ○  |
|                          | 건축물 외관      | · 고층 공장건물의 경우 고층중층저층의 구분된 입면 디자인 유도                       | ○  | ○  |      | ○  |
|                          |             | · 가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는 재료 사용 권장                            |    | ○  |      | ○  |
|                          | 대지내 공지      | · 전면가로변 공개공지 및 녹지조성을 통한 보행 활력 유도                          | ○  | ○  |      | ○  |
|                          |             | · 도로변 녹지대를 최대한 확보하여 가로공원 형태로 조성                           | ○  | ○  |      | ○  |
| 도시<br>시설                 | 대지내 조경      | · 생태산업단지내 서천군생태도시가이드라인 준수                                 | ○  | ○  |      | ○  |
|                          |             | · 상업 및 주거지역내 평지붕 건축물인 경우 옥상녹화 권장                          |    | ○  |      | ○  |
|                          | 옥외광고물       | · 도로변 옥외광고물 규제                                            | ○  | ○  |      | ○  |
|                          | 가로시설물       | · 가로수는 향토수종 식재 권장, 주요보행로는 2열식재                            | ○  | ○  |      | ○  |
|                          |             | · 정보이용시설, 키오스크 조성                                         | ○  |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             |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 ○  | ○  |      | ○  |
|                          | 야간조명        | · 고층건물의 경우 야간경관을 활용하여 랜드마크 조성                             |    | ○  |      | ○  |
|                          |             | · 주요 진입부 야간경관조명 계획                                        | ○  |    |      | ○  |
|                          | 기타시설물       | ·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여 정보제공 및 가로 활기 부여                           |    | ○  |      | ○  |
|                          |             | · 경관저해시설(송전·통신·광고탑) 설치 제한                                 | ○  | ○  |      | ○  |

## ■ 춘장대 · 비인항 일원

### 계획방향

- 홍원항, 비인항, 춘장대해수욕장 일원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관리
- 경관도로 형성을 통한 인근 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 경관자원의 보전 및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한 청정 이미지 형성

### 구역범위

- 지정 : 춘장대 관광지 지정 구역, 홍원항 일원, 비인항 일원, 서천화력 일원, 군도 5호선, 리도 207, 202
- 향후 : 관광지 활성화에 따른 상업시설 난립지역, 경관훼손 우려지역 등

### 기본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 경관현황



비인항 경관



비인항 어촌마을



홍원항 전경



홍원항 상업지역 경관



춘장대 해수욕장



춘장대 해수욕장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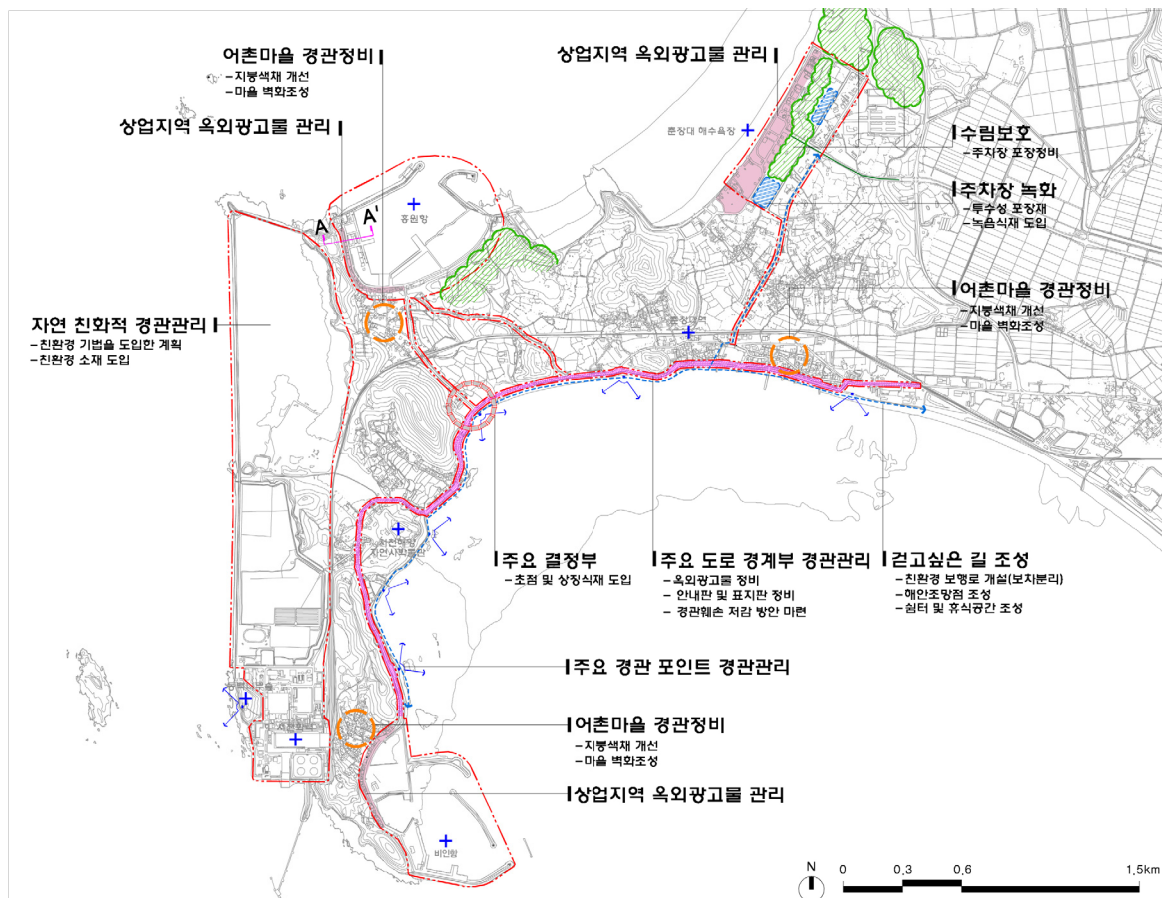


해안도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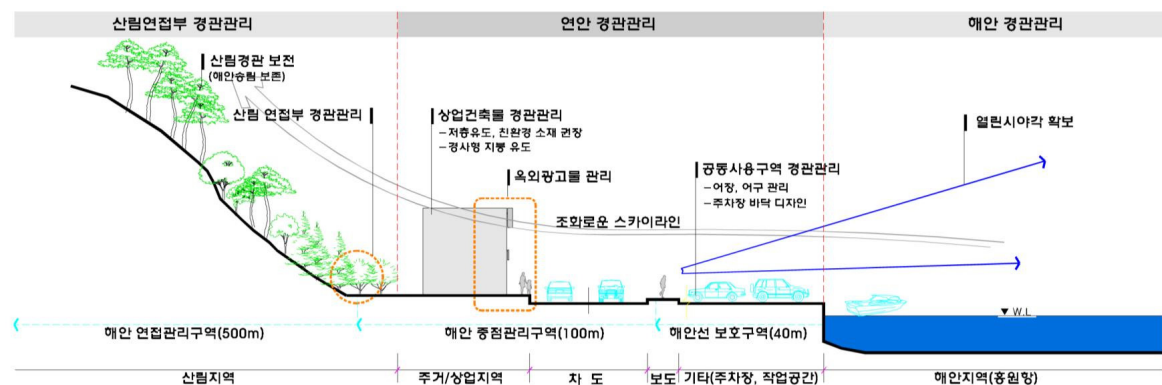


해안도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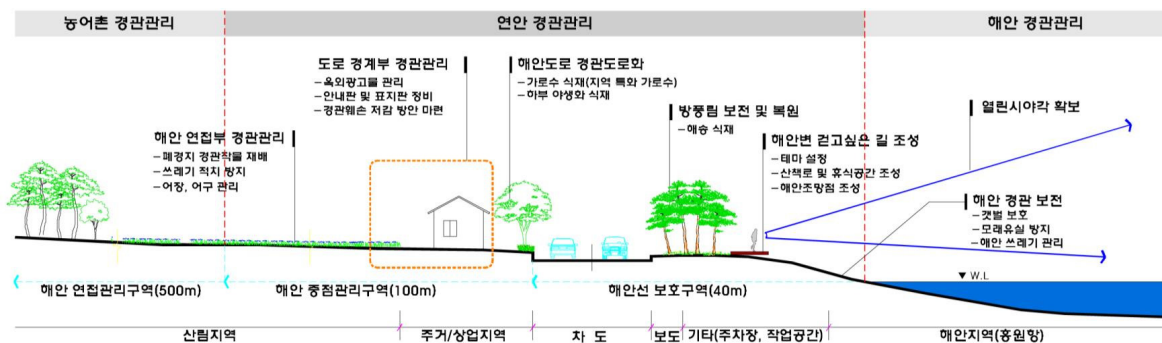
## 경관기본구상도



### A-A' Section



### B-B' Section





##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농경지의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br>· 춘장대 일원 지역특화거리 조성                                 | ○  | ○  |      | ○  |
|                          | 환경·생태       | · 서면일대 해양생태계 및 리아시스식 해안, 주요 산림자원 보전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비인항, 홍원항 일원 보행자 도로 조성                                                                    | ○  | ○  | ○    |    |
|                          |             | · 수변 산책로, 데크 설치를 통한 수변 접근성 확보                                                              | ○  | ○  |      | ○  |
|                          | 도로          | · 춘장대 일원 보행자 도로 개선(보차 교차로 부분, 광장진입부 등)                                                     | ○  | ○  |      | ○  |
|                          |             | · 자연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해안경관도로 조성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춘장대-홍원항-비인항-동백나무숲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조성                                                         | ○  | ○  |      | ○  |
|                          |             | · 해안과 건축물 사이 완충녹지 조성                                                                       | ○  | ○  |      | ○  |
|                          |             | · 해안선 보호구역으로부터 10m 폭원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                                                          | ○  | ○  |      | ○  |
|                          |             | · 수변공간 오픈스페이스 확충(수변데크, 생태탐방로)                                                              | ○  |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공원·녹지       | · 해안변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석, 식재 등으로 친수호안 조성                                                      | ○  | ○  |      | ○  |
|                          |             | · 해안과 연결되는 공원녹지 조성 및 방풍림 조성으로 녹시율 향상                                                       | ○  | ○  |      | ○  |
|                          | 경관이미지       | · 비인항 홍원항 일원 그물망 정비로 청정한 경관이미지 조성                                                          | ○  | ○  |      | ○  |
|                          | 스카이라인       | ·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급격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방지                                                              | ○  | ○  |      | ○  |
|                          | 도시 맥락       | · 춘장대일원은 휴양기능에 부합하는 이미지 조성                                                                 | ○  | ○  |      | ○  |
|                          |             | · 홍원항, 마랑포구일원은 어촌생활과 생태문화가 조화되는 이미지 조성                                                     | ○  | ○  |      | ○  |
|                          | 건축물 규모      | · 해안경관가이드라인상 해안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준수<br>-시아확보를 위한 저층개발 및 해안선으로부터 45. 사선제한 등                      | ○  | ○  |      | ○  |
|                          | 건축물 용도      | · 홍원항 비인항 일원 숙박시설, 펜션, 핫집 등은 주변 시설과 조화 유도                                                  | ○  | ○  |      | ○  |
|                          |             | · 중점관리구역내 농어촌지역 빈집 철거를 통해 미관 향상                                                            | ○  |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통경축 확보                                         | ○  | ○  |      | ○  |
|                          |             |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 ○  | ○  |      | ○  |
|                          |             | · 해안에서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판상형 형태를 제한                                                               | ○  | ○  |      | ○  |
|                          |             | · 해안방향으로부터 부대설비의 노출을 제한                                                                    |    | ○  |      | ○  |
|                          |             | · 천공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                                                                |    | ○  |      | ○  |
|                          |             | · 해안방향으로 건축물의 정면성을 확보                                                                      |    | ○  |      | ○  |
|                          |             | · 해안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60m미만으로 유도                                                         |    |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창고시설 등 건축물의 입면길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                           | ○  | ○  |      | ○  |
|                          |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건축은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건축물 유도                                                    | ○  | ○  |      | ○  |
|                          | 대지내 공지      | · 경관에 위배되는 가설시설물 형태의 건축물 지양                                                                | ○  | ○  |      | ○  |
|                          |             | · 춘장대 관광지역내 신축건물 전면공지는 해안방향으로 조성                                                           | ○  | ○  |      | ○  |
|                          | 건축물 간격      | · 춘장대 일원 해안으로부터의 통경축이 확보되는 간격 유지                                                           | ○  | ○  |      | ○  |
|                          |             | · 건물 신축시 해안에서 바라보는 통경축을 고려하여 건물 간격 설정                                                      | ○  | ○  |      | ○  |
| 도시<br>시설                 | 옥외광고물       | · 해안에 면한 상업시설의 간판은 최소한으로 허용                                                                | ○  | ○  |      | ○  |
|                          |             | · 광고물의 크기는 해안에서 조망시 돌출되지 않는 크기로 최소화                                                        | ○  | ○  |      | ○  |
|                          |             | · 상업시설 옥외광고물은 지역정체성을 살린 통일감 있는 디자인<br>-이미지 설정, 형태, 재료, 색채 주민 협정 가능<br>-옥외광고물을 특화하는 주민협정 수립 | ○  | ○  |      | ○  |
|                          | 가로시설물       | · 해안 가로시설물은 염분에 강한 재료 사용                                                                   | ○  |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 기타시설물       | · 등대, 방파제 등의 특징적인 어항시설은 특화하여 경관자원화                                                         | ○  | ○  |      | ○  |
|                          |             | · 항구주변 천막구조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                                                              | ○  | ○  |      | ○  |
|                          |             | · 시각적 복잡도가 높은 불필요한 시설물 제거                                                                  | ○  | ○  |      |    |

## ■ 금강변

### 계획방향

- 금강변으로 접근성 향상 및 시각적 조망권 확보
- 근경(금강수변), 중경(길산평야), 원경(희리산, 천방산)에 따른 건축물 규제
- 자연친화적이며 소재를 도입하여 생태적 이미지 형성

### 구역범위

- 지정 : 신성리 갈대밭-원수리 구간 금강제방 경계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15m
- 향후 : 금강변 난개발 지역 및 대규모 시설의 입지로 인한 경관훼손 우려지역

### 기본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 경관현황



이수교차로 경관현황



철새도래지 숙박단지 경관



장항로 주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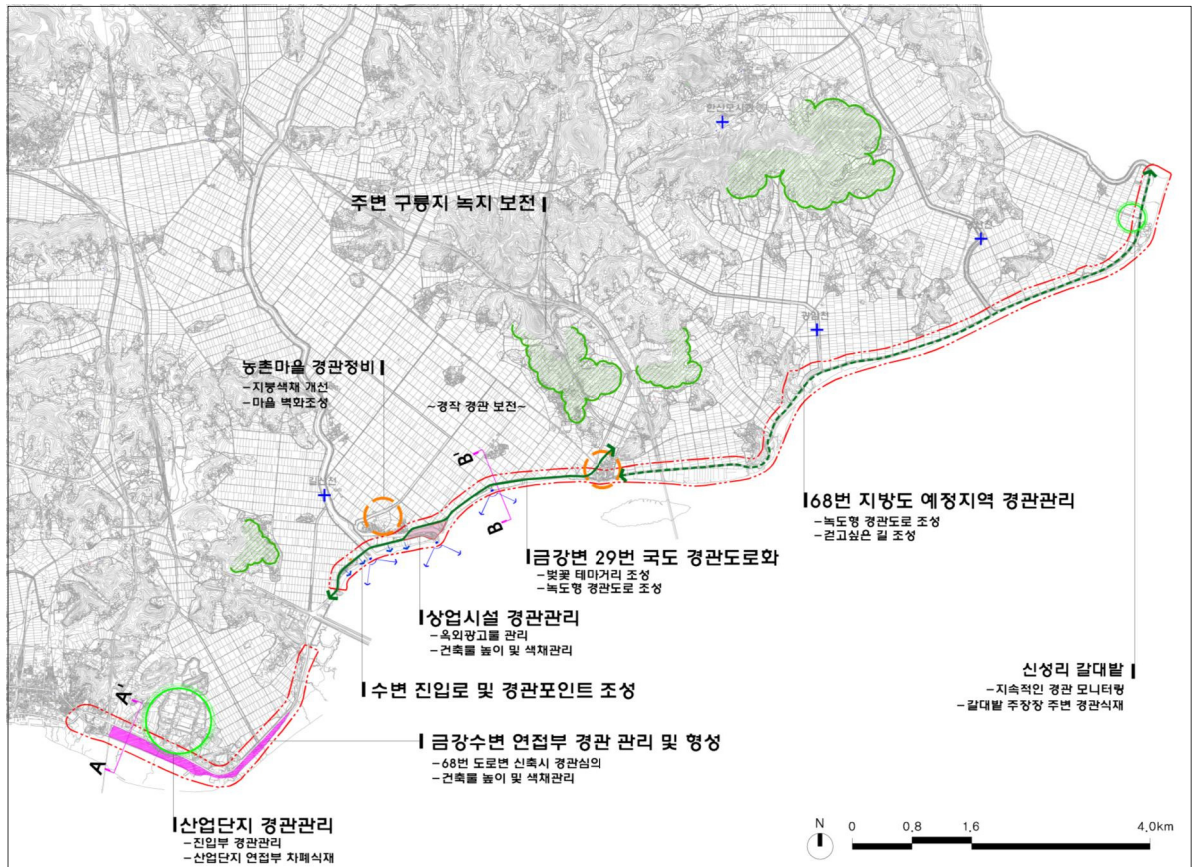


장항로-성주로 결절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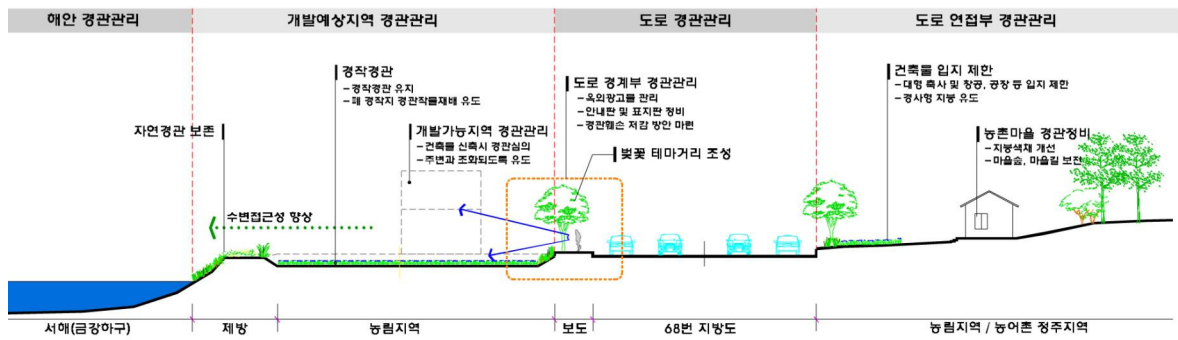


금강유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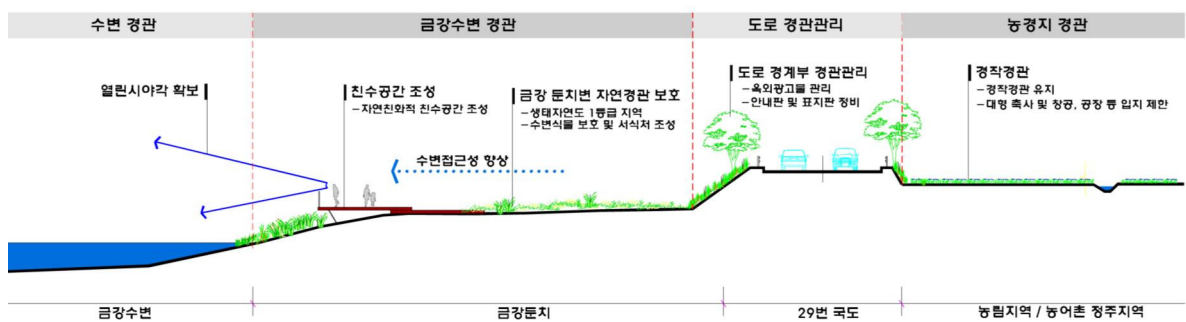
## 경관기본구상도



### A-A' Section



### B-B' Section



##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금강수변지역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                             | ○  | ○  | ○    |    |
|                          | 환경·생태       | · 금강수변과 육지가 만나는 주연부(edge) 생태적 보전                                   | ○  | ○  | ○    |    |
|                          |             | · 수변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금강 블루네트워크 조성                                    | ○  | ○  |      | ○  |
|                          |             | · 비점오염원의 금강 유입방지 및 수변 생태계에 맞는 비오톱(biotop)조성                        | ○  | ○  |      | ○  |
|                          |             | ·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전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수변을 따라 생태탐방로 조성                                                  | ○  | ○  |      | ○  |
|                          |             | · 수변 산책로, 수변 데크 설치를 통한 수변 접근성 확보                                   | ○  | ○  |      | ○  |
|                          |             | · 금강수변 자전거도로 조성                                                    | ○  | ○  |      | ○  |
|                          | 도로          | · 수변 제방을 활용한 수변경관도로 조성                                             | ○  | ○  |      | ○  |
|                          |             | · 수변도로 가로수는 불규칙적 식재(이식)로 수변 조망권 확보                                 | ○  | ○  |      | ○  |
|                          | 주차장         | · 차량 진출입로를 따로 개설하여 교통 혼잡 완화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수변과 건축물 사이 완충녹지 조성                                               | ○  | ○  |      | ○  |
|                          |             | · 제방에서 수변에 면하는 건축의 경우 10m이상 완충 오픈 스페이스 확보                          | ○  | ○  |      | ○  |
|                          |             | · 수변공간 오픈스페이스 최소화하여 계획(생태계 보전)                                     | ○  | ○  |      | ○  |
|                          |             | · 수변 옹벽설치 지양, 수변은 친환경소재로 정비<br>-서천군 생태도시가이드라인 준용                   | ○  |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공원·녹지       | · 녹지조성시 수변식물 생태에 따라 조성<br>-서천군 생태도시가이드라인 준용                        | ○  | ○  |      | ○  |
|                          | 경관이미지       | · 금강수변 연속경관 조망 관리                                                  | ○  | ○  |      | ○  |
|                          |             | · 건축물 입지시 수변통경축 보호                                                 | ○  | ○  |      | ○  |
|                          |             | · 주요 경관거점 주변 친수공간 및 포토 존 조성                                        | ○  | ○  |      | ○  |
|                          | 스카이라인       | ·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급격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방지                                      | ○  | ○  |      | ○  |
|                          | 건축물 규모      | · 시각확보를 위한 저층개발 및 금강제방 으로부터 15. 사선제한 유도                            | ○  | ○  |      | ○  |
|                          | 건축물 용도      | · 숙박시설, 펜션, 횃집 등 상업시설 최소화                                          | ○  | ○  |      | ○  |
|                          |             | · 창고, 축사, 공장 등 제방인근지역 생태자연도를 고려하여 시설입지 지양                          | ○  | ○  |      | ○  |
|                          |             | · 생태관광에 부합하는 용도의 갤러리, 생태학습장, 체험관 등으로 유도                            | ○  | ○  |      | ○  |
|                          |             | · 기존 상업시설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용도변경 추진                                     | ○  |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제방에서 수변쪽으로 건축물 입지 제한                                             | ○  | ○  |      | ○  |
|                          |             | · 건축물은 수변에서 조망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br>형태로 배치하여 수변 통경축 확보             | ○  | ○  |      | ○  |
|                          |             | · 수변과 길산평야에서 보는 양면의 정면성 고려                                         | ○  | ○  |      | ○  |
|                          |             | ·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30m미만으로 유도                                           | ○  |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건축은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유도                                | ○  | ○  |      | ○  |
|                          | 대지내 공지      | · 신축건물 전면공지는 수변방향으로 조성하여 친수공간 조성                                   | ○  | ○  |      | ○  |
|                          | 대지내 조경      | · 슬라브형 건물에 옥상녹화 권장(경량형)                                            |    | ○  |      | ○  |
|                          | 건축물 간격      | · 수변으로부터의 통경축이 확보되는 간격 유지                                          | ○  | ○  |      | ○  |
| 도시<br>시설                 | 옥외광고물       | · 금강변에 면한 상업시설의 간판은 최소한으로 허용                                       | ○  | ○  |      | ○  |
|                          |             | · 29번 국도, 68번 지방도 가로변 옥외광고물 정비                                     | ○  | ○  |      | ○  |
|                          |             | · 상업시설 옥외광고물은 지역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br>-이미지 설정, 형태, 재료, 색채 주민 협정 가능 | ○  | ○  |      | ○  |
|                          |             | · 옥외광고물을 특화하는 주민협정 수립                                              |    |    |      |    |
|                          | 가로시설물       | · 휴식 및 편의 시설은 금강수변의 생태적 수용력을 넘지 않도록 고려                             | ○  |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 야간조명        | · 장군대교진입부 야간조명 설치                                                  | ○  | ○  |      | ○  |
|                          | 기타시설물       | · 시각적 복잡도가 높은 불필요한 시설물 제거                                          | ○  | ○  |      | ○  |



## ■ 홍림저수지 일원

### 계획방향

- 호수변 완충녹지의 조성을 통한 수변경관자원의 보전
- 주변산림과 조화되는 경관형성 및 호수 조망권 확보
- 여가 및 휴식을 위해 수변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생태적 친수공간 조성

### 구역범위

- 지정 : 홍림저수지 일원(동측 : 국도 4호선 기점으로 30m, 서측 : 신규 4호선 국도지점까지)
- 향후 : 호수경관에 방해되는 시설의 입지로 인한 경관훼손 우려지역

### 기본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 경관현황



홍림저수지 전경



저수지 초입부



국도 4호선 전경



장항선 철도변 경관



홍림저수지 수변 경관



개별시설물(낚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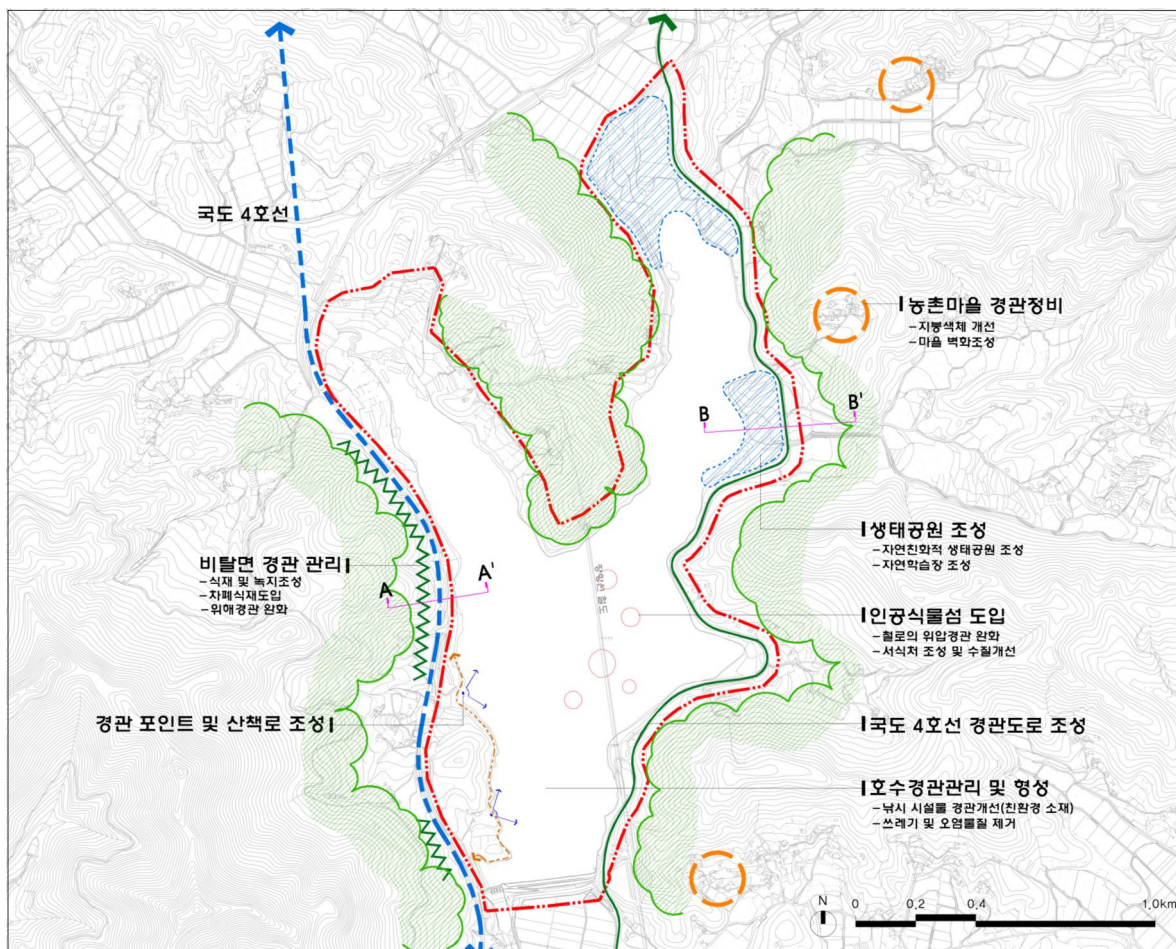


홍림저수지 주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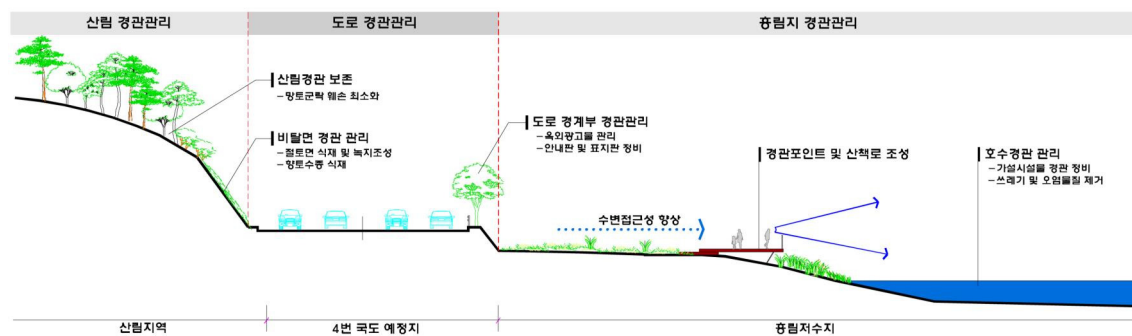


홍림저수지 주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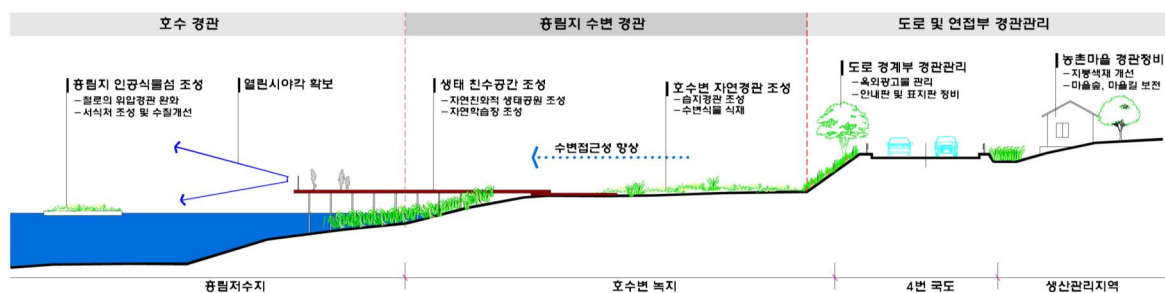
## 경관기본구상도



### A-A' Section



### B-B' Section



##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합필, 물건 적치행위 지양<br>· 구역내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        | ○  | ○  |      | ○  |
|                                             | 환경·생태                                            | · 호수변과 육지가 만나는 주연부(edge)의 생태적 보전                                                  | ○  | ○  | ○    |    |
|                                             |                                                  | · 산지연접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 ○  | ○  |      | ○  |
|                                             |                                                  | · 호수 생태계에 맞는 비오톱(biotop)조성 및 비점오염원의 유입방지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호수를 순환하는 생태탐방로를 조성                                                              | ○  | ○  |      | ○  |
|                                             |                                                  | ·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재료 사용권장(데크, 투수성포장재 등)                                                | ○  | ○  |      | ○  |
|                                             | 도로                                               | · 기존 4호선 도로는 지형을 고려한 유선형의 도로 패턴 유지                                                | ○  | ○  |      | ○  |
|                                             |                                                  | · 신규 4호선 공사에 의해 생기는 절·성토면 녹화                                                      | ○  | ○  |      | ○  |
|                                             |                                                  | · 4호선 국도와 철로와의 입체교차로 부분 완충식재 도입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신규 4호선 도로변 녹지대를 최대한 확보하여 녹시율 증대<br>－ 도로변 호수 조망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                      | ○  | ○  |      | ○  |
| · 기존 4호선 도로는 가로공원 형태로 조성                    |                                                  | ○                                                                                 | ○  |    | ○    |    |
| · 호수로의 접근성을 위해 친수계단, 친수데크, 휴게시설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 ○  |    | ○    |    |
| 공원·녹지                                       | · 인공식물섬 도입<br>－철도교량의 위압경관 완화 및 건전한 호수 생태계 유지     | ○                                                                                 | ○  |    | ○    |    |
|                                             | · 생태공원에 맞는 식재계획(수변식재 및 다층식재)                     | ○                                                                                 | ○  |    | ○    |    |
|                                             | 경관이미지                                            | ·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청정이미지 구축                                                             | ○  | ○  |      | ○  |
| 스카이라인                                       | · 호수변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 입지하도록 하여 완만한 스카이라인 형성 | ○                                                                                 | ○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건축물 규모                                           | · 시각확보 및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개발 유도(1~3층)                                               | ○  | ○  |      | ○  |
|                                             |                                                  | · 호수의 평균수위로부터 15. 사선제한 검토                                                         | ○  | ○  |      | ○  |
|                                             | 건축물 용도                                           | · 숙박시설, 펜션 등 최소화                                                                  | ○  | ○  |      | ○  |
|                                             |                                                  | · 향토음식점, 지역특화농산물 판매장 등 입지 유도                                                      | ○  | ○  |      | ○  |
|                                             |                                                  | · 창고, 축사, 공장 등 유지 경계로부터 500m지점 까지 지양                                              | ○  |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도로변 건축물은 도로의 선형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  |
|                                             |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지형에서는 건축을 제한하고, 과도한 절·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부득이한 경우 완충식재를 통한 경관저감방안 마련 | ○  | ○  |      | ○  |
|                                             |                                                  | · 주변환경과 조화를 도모하고 수변의 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 ○  | ○  |      | ○  |
|                                             |                                                  | · 호수변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30m미만으로 제한<br>－ 부득이한 경우 건물매스를 분절하여 배치 유도                 | ○  | ○  |      | ○  |
|                                             |                                                  | · 호수방향으로부터 부대설비의 노출을 제한                                                           |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건축물의 높이, 형태, 지붕, 색채, 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             | ○                                                                                 | ○  |    | ○    |    |
| 건축물 외관                                      | · 도로에서 주변 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의 지붕은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디자인    | ○                                                                                 | ○  |    | ○    |    |
| 대지내 공지                                      | · 대지내 공지는 호수방향에 면하도록 유도                          |                                                                                   | ○  |    | ○    |    |
| 건축물 간격                                      | · 호수변에서 산림방향으로 조망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동간격 확보            |                                                                                   | ○  |    | ○    |    |
| 도시<br>시설                                    | 옥외광고물                                            | · 상업시설 옥외광고물 최소화                                                                  | ○  | ○  |      | ○  |
|                                             |                                                  | · 도로변 대형 판류형 광고물을 제한하고 단순 지주형 유도                                                  | ○  | ○  |      | ○  |
|                                             | 가로시설물                                            | · 호수 경관과 조화되는 재질 및 형태를 지닌 시설물 권장                                                  | ○  |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 야간조명                                             | · 청정지역을 고려한 호수변 야간조명을 특화                                                          | ○  | ○  |      | ○  |
| 기타시설물                                       | · 서식 동식물상 안내판 및 생태교육형 안내판 설치                     | ○                                                                                 | ○  |    | ○    |    |
|                                             | · 호수경관에 저해되는 가설시설물(낙시시설 등) 제한                    | ○                                                                                 | ○  |    | ○    |    |

## ■ 동부(봉선)저수지 일원

### 계획방향

- 호수변 완충녹지의 조성을 통한 수변경관자원의 보전
- 주변산림과 조화되는 경관형성 및 호수 조망권 확보
- 여가 및 휴식을 위해 수변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생태적 친수공간 조성

### 구역범위

- 지정 : 동부저수지 일원(수변을 기점으로 30m)
- 향후 : 호수경관에 방해되는 시설의 입지로 인한 경관훼손 우려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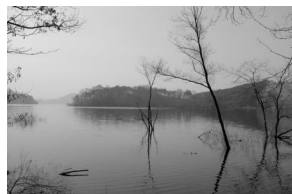
### 기본현황



### 경관현황



동부(봉선)저수지 전경



저수지 전경



저수지 전경



탐방로



동부(봉선)저수지 생태공원



저수지 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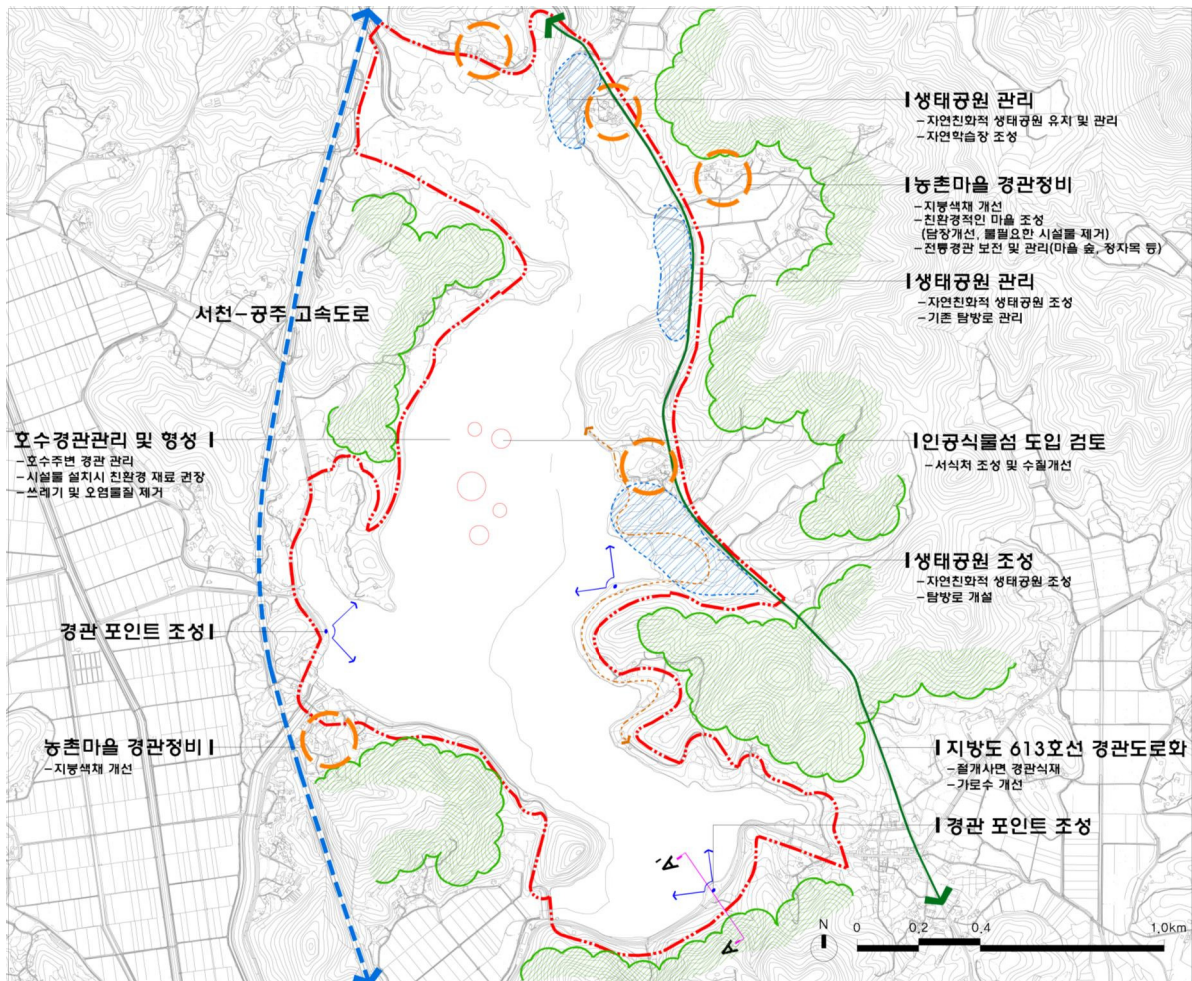
주변도로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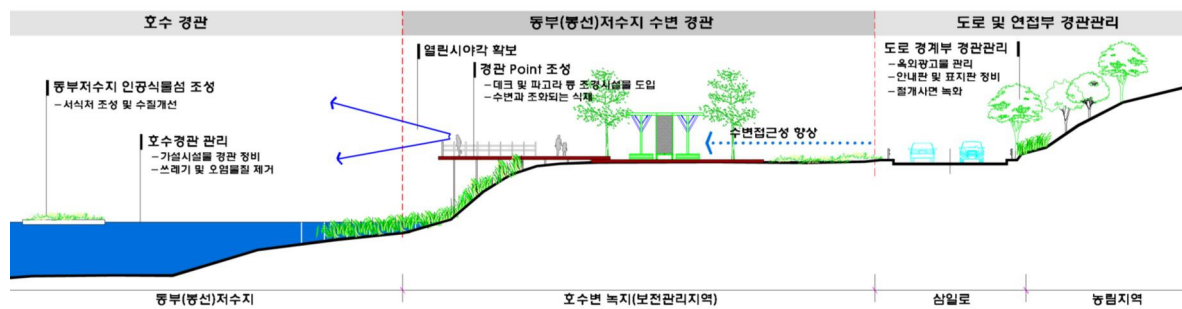
주변도로 경관



## 경관기본구상도



## A-A' Section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합필, 물건 적치행위 지양<br>· 구역내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                                                                                                                                                                        | ○  | ○  |      | ○  |
|                      | 환경·생태       | · 호수변과 육지가 만나는 주연부(edge)의 생태적 보전<br>· 산지연접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br>· 호수 생태계에 맞는 비오톱(biotop)조성 및 비점오염원의 유입방지                                                                                                                            |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호수를 순환하는 생태탐방로 조성<br>·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재료 사용권장(데크, 투수성포장재 등)                                                                                                                                                                                         | ○  | ○  |      | ○  |
|                      | 도로          | · 기존 도로는 지형을 고려한 유선형의 도로 패턴 유지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호수 주변 도로변 호수 조망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br>· 호수로의 접근성을 위해 친수계단, 친수데크, 휴게시설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  |      | ○  |
|                      | 공원·녹지       | · 건전한 호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인공식물섬 도입<br>· 생태공원에 맞는 식재계획(수변식재 및 다층식재)                                                                                                                                                                                      | ○  | ○  |      | ○  |
|                      | 경관이미지       | ·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청정이미지 구축                                                                                                                                                                                                                             | ○  | ○  |      | ○  |
|                      | 스카이라인       | · 호수변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 입지하도록 하여 완만한 스카이라인 형성                                                                                                                                                                                                  | ○  | ○  |      | ○  |
|                      | 건축물 규모      | · 시각확보 및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개발 유도(1~3층)<br>· 호수의 평균수위로부터 15. 사선제한 검토                                                                                                                                                                                  | ○  | ○  |      | ○  |
|                      | 건축물 용도      | · 숙박시설, 펜션 등 최소화<br>· 향토음식점, 지역특화농산물 판매장 등 입지 유도<br>· 창고, 축사, 공장 등 유지 경계로부터 500m지점 까지 지양                                                                                                                                                          | ○  | ○  |      | ○  |
| 건축물<br>및<br>주변<br>공간 | 건축물 위치(배치)  | · 도로변 건축물은 도로의 선형을 고려하여 배치<br>· 경사도 25%이상에서의 지형에서는 건축을 제한하고, 과도한 절·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부득이한 경우 완충식재를 통한 경관저감방안 마련<br>· 주변환경과 조화를 도모하고 수변의 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br>· 호수변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30m미만으로 제한 - 부득이한 경우 건물매스를 분절하여 배치 유도<br>· 호수방향으로부터 부대설비의 노출을 제한 | ○  |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건축물의 높이, 형태, 지붕, 색채, 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                                                                                                                                                                                                              | ○  | ○  |      | ○  |
|                      | 건축물 외관      | · 도로에서 주변 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의 지붕은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디자인                                                                                                                                                                                                     | ○  | ○  |      | ○  |
|                      | 대지내 공지      | · 대지내 공지는 호수방향에 면하도록 유도                                                                                                                                                                                                                           |    | ○  |      | ○  |
|                      | 건축물 간격      | · 호수변에서 산림방향으로 조망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동간격 확보                                                                                                                                                                                                             |    | ○  |      | ○  |
|                      | 옥외광고물       | · 상업시설 옥외광고물 최소화<br>· 도로변 대형 판류형 광고물을 제한하고 단순 지주형 유도                                                                                                                                                                                              | ○  | ○  |      | ○  |
|                      | 가로시설물       | · 호수 경관과 조화되는 재질 및 형태를 지닌 시설물 권장                                                                                                                                                                                                                  | ○  |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도시<br>시설             | 야간조명        | · 청정지역을 고려한 호수변 야간조명을 특화                                                                                                                                                                                                                          | ○  | ○  |      | ○  |
|                      | 기타시설물       | · 서식 동식물상 안내판 및 생태교육형 안내판 설치                                                                                                                                                                                                                      | ○  | ○  |      | ○  |
|                      |             | · 호수경관에 저해되는 가설시설물(낙시시설 등) 제한                                                                                                                                                                                                                     | ○  | ○  |      | ○  |

## ■ 문헌서원 일원

### 계획방향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정비 및 복원
- 진입로 주변 및 문헌서원 일대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관리
- 외부공간,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통합적 계획으로 정체성 유지

### 구역범위

- 지정 : 문헌서원을 둘러싼 주요 산림 및 문헌서원 진입로(도로경계를 기점으로 양측 10m)
- 향후 : 역사문화특구 형성에 필요한 경관관리구역

### 기본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 경관현황



문헌서원 진입로 경관



진입로 가로수



진입로 주변 마을 숲



인근 농경지 현황



주변마을 현황



주변마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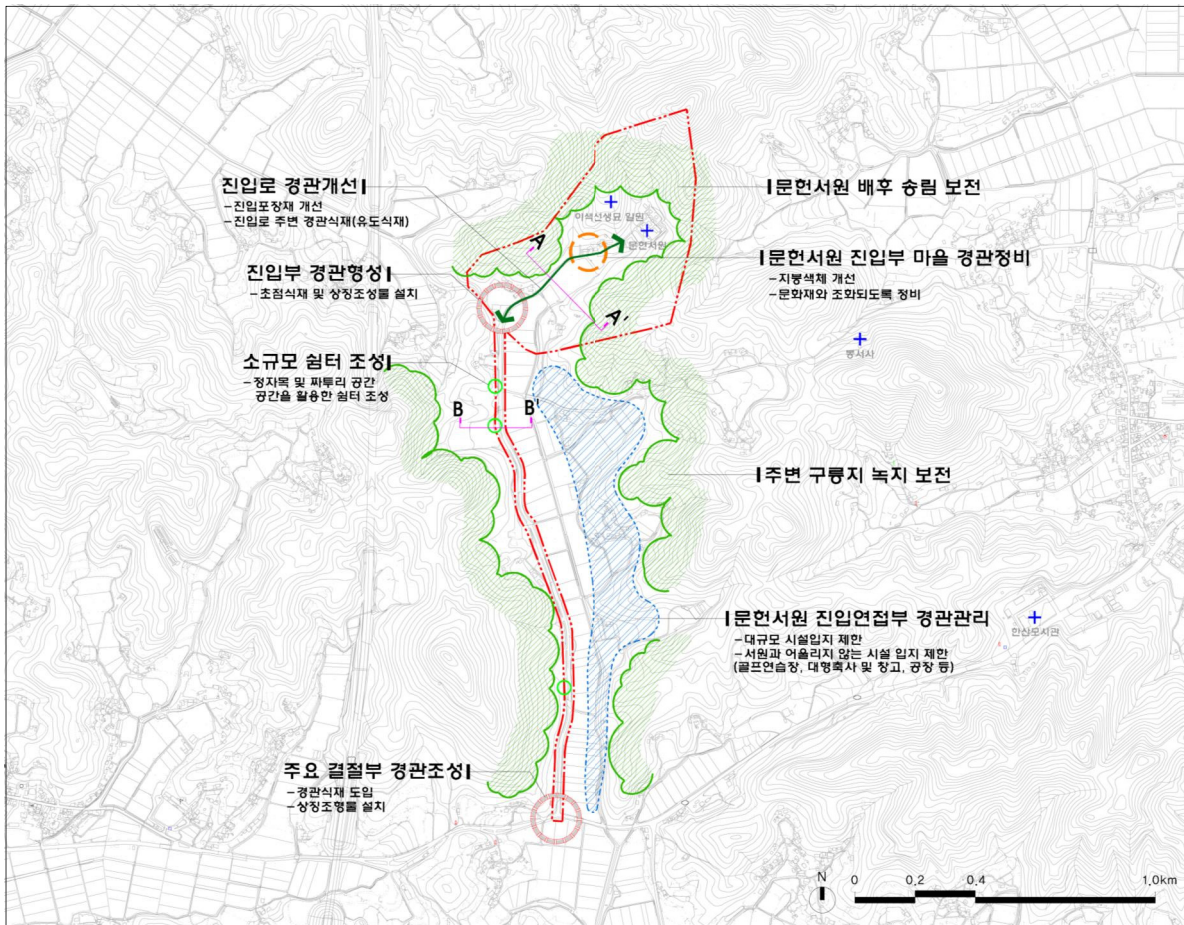
문헌서원내 조성된 연못



문헌서원과 주변 산림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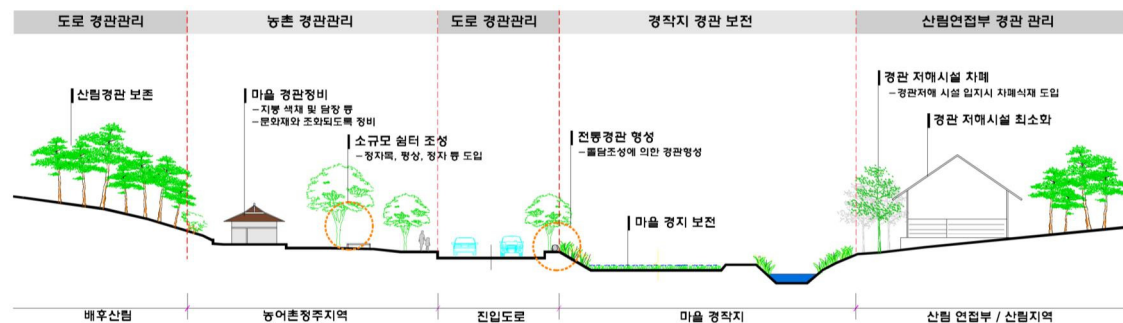
## 경관기본구상도



### A-A' Section



### B-B' Section





##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문헌서원 일대 역사문화특구 조성                                                   | ○                                                      | ○  | ○    |    |
|                          | 환경·생태                                                    | · 환경친화적 에너지 설치시(태양광·태양열 등) 문헌서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급적 노출 되지 않도록 고려          | ○                                                      | ○  | ○    |    |
|                          |                                                          | · 문헌서원을 위요하는 산림자원경관 보전                                                | ○                                                      | ○  | ○    |    |
|                          |                                                          | · 문헌서원 일대 유무형의 생활경관, 문화경관, 자연경관 보전                                    | ○                                                      | ○  |      | ○  |
|                          |                                                          | · 문헌서원 진입부 보행자 공간 조성                                                  | ○                                                      | ○  |      | ○  |
|                          | 도로                                                       | · 주요 교차로 상징시설물 설치 및 초점경관 형성                                           |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변화감 있는 진입부 조성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조성                         | ○  | ○    |    |
|                          |                                                          |                                                                       | · 정자목 등을 활용한 소규모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    |    |
|                          | 공원·녹지                                                    | · 문헌서원 전면부 공원·녹지 조성(전통조경 양식 권장)                                       | ○                                                      | ○  |      | ○  |
|                          |                                                          | · 문헌서원 배후의 송림보전(주변 잡목제거 및 주기적 간벌 시행)                                  | ○                                                      | ○  |      | ○  |
|                          |                                                          |                                                                       | · 역사문화경관과 어우러지는 전통조경을 테마로 조성<br>-식재는 서원과 연관성이 있는 수종 선택 | ○  | ○    |    |
|                          | 경관이미지                                                    | · 역사문화경관 거점으로 서원이 가지는 정신수양의 의미 살림                                     | ○                                                      | ○  |      | ○  |
| · 문헌서원에서 내려다보는 조망경관 보호   |                                                          | ○                                                                     | ○                                                      |    | ○    |    |
| 스카이라인                    | · 문헌서원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유도                                   | ○                                                                     | ○                                                      |    | ○    |    |
|                          | 도시 맥락                                                    | · 역사적 의미를 살린 장소성 구현                                                   | ○                                                      |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건축물 규모                                                   | · 문헌서원보다 규모가 큰 건축물 입지 제한                                              | ○                                                      | ○  |      | ○  |
|                          |                                                          | ·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한 높이 제한                                           | ○                                                      | ○  |      | ○  |
|                          | 건축물 용도                                                   | · 문헌서원의 기능을 도와주는 용도의 건축물<br>-박물관, 전시관, 서원체험관, 기념품 판매점, 한옥민박 등         | ○                                                      | ○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문헌서원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                                | ○  | ○    |    |
|                          | · 문헌서원 외곽부의 대규모 건축물 입지로 인한 왜소화 방지 유도                     |                                                                       | ○                                                      | ○  |      | ○  |
|                          | · 골프연습장, 창고, 축사, 공장 등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제한                  |                                                                       | ○                                                      | ○  | ○    |    |
|                          | · 문헌서원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에서 방해되지 않도록 유도                          |                                                                       | ○                                                      | ○  |      | ○  |
|                          | 건축물<br>형태(디자인)                                           | · 전통건축양식에 어울리는 형태 디자인 유도                                              | ○                                                      | ○  |      | ○  |
|                          |                                                          | · 역사적 건축물 주변의 건축은 역사자원과의 연계성 고려한 형태                                   | ○                                                      | ○  |      | ○  |
|                          | 건축물 외관                                                   | · 인근 농어촌 주택의 경우 ‘농어촌표준주택’을 준수하나 문화재와 어울리는 외관으로 조성                     | ○                                                      | ○  |      | ○  |
|                          |                                                          | · 대문, 담장 등은 전통구조물에 어울리는 재료·형태 권장                                      | ○                                                      | ○  |      | ○  |
|                          |                                                          | · 역사자원의 시간적 흐름을 배려한 소재 선택(페인트 도장, 드라이비트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노후 되는 소재 지양) | ○                                                      | ○  |      | ○  |
| 대지내 공지                   | · 대지내 공지는 문헌서원 진입방향에 면하도록 조성                             | ○                                                                     | ○                                                      |    | ○    |    |
| 대지내 조경                   | · 조경양식은 전통조경양식 권장                                        | ○                                                                     | ○                                                      |    | ○    |    |
| 건축물 간격                   | · 문헌서원에서 내려다보는 통경축에 지장되지 않도록 건축물 간격유도                    | ○                                                                     | ○                                                      |    | ○    |    |
| 도시<br>시설                 | 옥외광고물                                                    | · 문화재건축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 형태                                               | ○                                                      | ○  |      | ○  |
|                          |                                                          | · 간판의 크기는 최소화 하고 주변과 조화 유도                                            | ○                                                      | ○  |      | ○  |
|                          | 가로시설물                                                    | · 보도의 포장은 저채도의 색상을 가지는 석재 권장                                          | ○                                                      | ○  |      | ○  |
|                          |                                                          | · 휴식 및 편의 시설은 문헌서원과 어울리도록 조성                                          | ○                                                      | ○  |      | ○  |
|                          | 색채                                                       | · 가로시설물은 ‘문화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                                                      | ○  |      | ○  |
|                          |                                                          | · 색채는‘문화재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                                                      | ○  |      | ○  |
| 야간조명                     | · 문헌서원과 조화되는 야간조명 조성                                     | ○                                                                     | ○                                                      |    | ○    |    |
| 기타시설물                    | · 문화재 안내판, 관리사무소, 휴지통 등 문화재주변 시설은 문화재 경관과 조화로운 형태·색채로 조성 | ○                                                                     | ○                                                      |    | ○    |    |

## ■ 한산모시관 일원

### 계획방향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정비
- 한산모시관을 중심으로 인근 역사문화유산과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외부공간,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통합적 계획으로 한산모시관의 정체성 유지

### 구역범위

- 지정 : 한산모시관, 한산소곡주공장 및 국도29호선 양측 15m
- 향후 : 향후 경관관리가 필요한 구간 (한산모시관을 기점 양쪽으로 1Km 구간/ 29호선 국도 경계로부터 10m)

### 기본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 경관현황



한산모시관 진입로



모시관 안내표지판



모시관 주차장



모시관 주변 전경



방언옥 시연공방



모시관 open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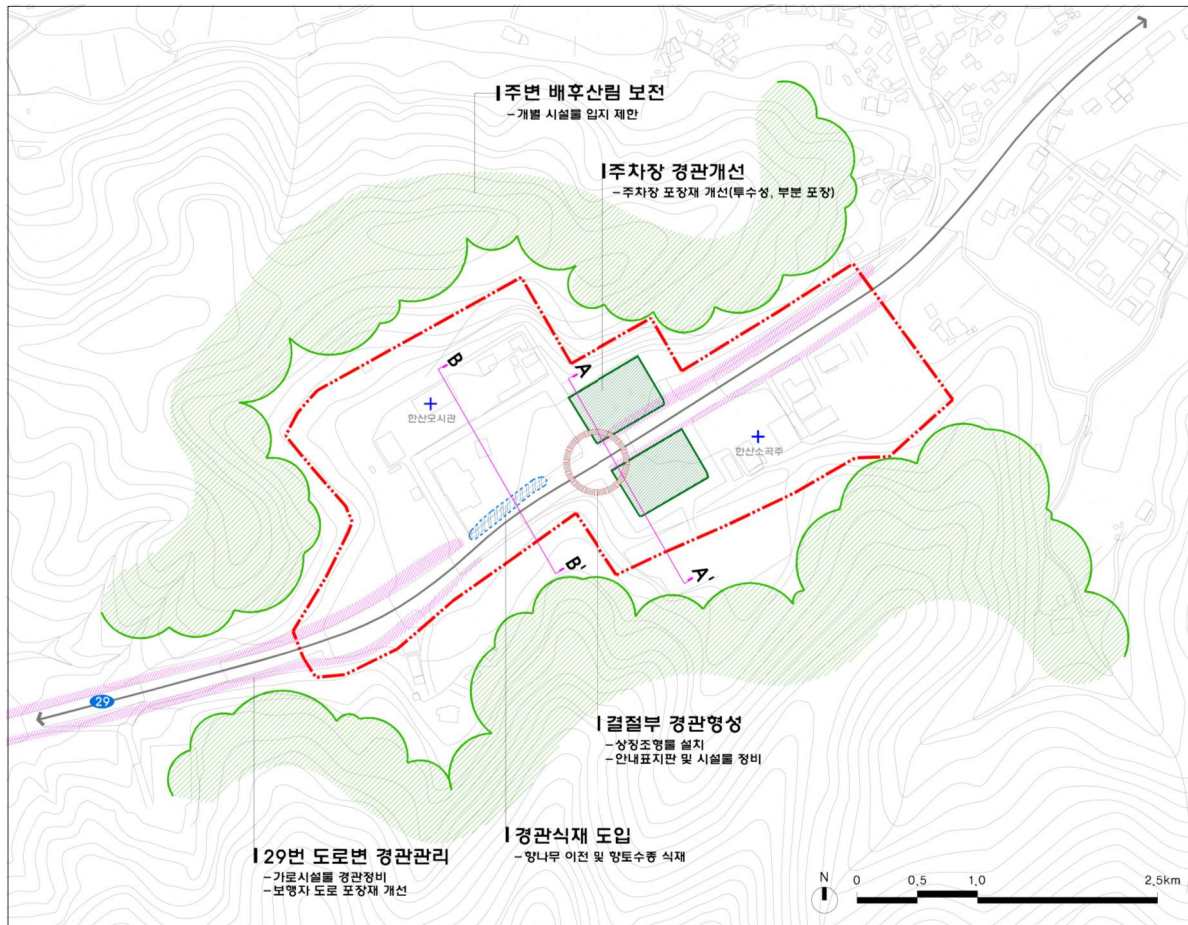


소곡주 주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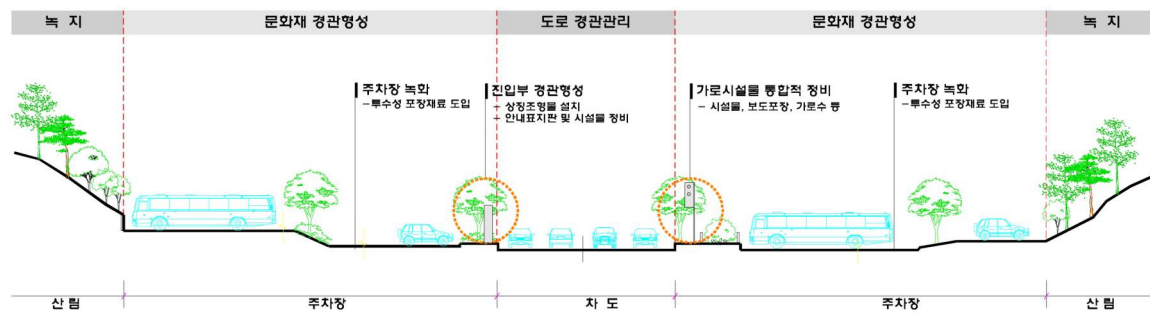


소곡주 전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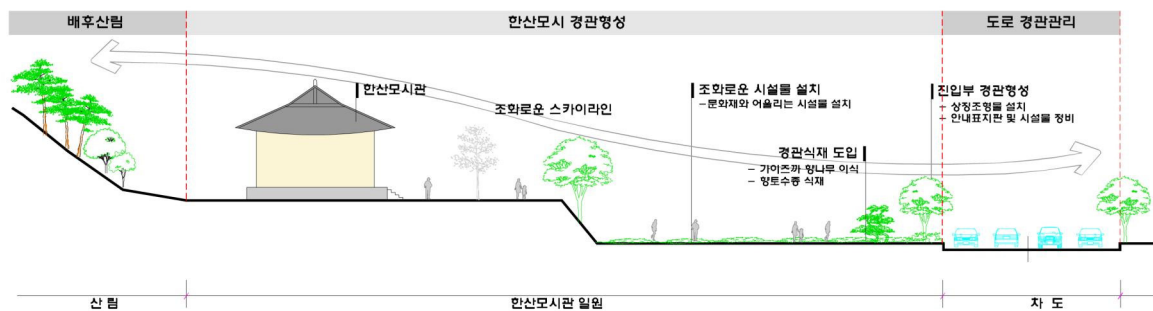
## 경관기본구상도



### A-A' Section



### B-B' Section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한산모시관특구와 서천한산소곡주특구의 연계                                                       | ○  | ○  | ○    |    |
|                          | 환경·생태          | · 한산모시관을 위요하는 산림자원경관 보전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인근 역사문화자원과 보행동선의 유기적 연계<br>-한산소곡주 특구와 연계되는 보행동선 조성                           | ○  | ○  |      | ○  |
|                          |                | · 보도포장재는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는 저채도의 석재 권장                                               | ○  | ○  |      | ○  |
|                          | 도로             | · 주요 진입부 상징시설물 조성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한산모시관과 어울리는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  |      | ○  |
|                          |                | · 오픈스페이스내 휴게시설 도입(방지형 연못, 벽천, 정자 등)                                            | ○  | ○  |      | ○  |
|                          | 공원녹지           | · 한산모시관 진입부 일부 가로수 이식으로 진입부의 인식성 향상                                            | ○  | ○  |      | ○  |
|                          |                | · 한산모시 홍보관 주변 일본식 조경양식(가이즈까 향나무 등) 변경<br>-전통조경 양식으로 조성                         | ○  | ○  |      | ○  |
|                          |                | · 역사문화경관과 어울리지는 전통조경을 테마로 조성<br>-식재는 향토수종 및 전통수종 수종 선택                         | ○  |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경관이미지          | · 한산모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알리고 체험하는 역사문화경관<br>거점으로 조성                                   | ○  | ○  |      | ○  |
|                          | 도시 맥락          | · 역사적 의미를 살린 장소성 구현                                                            | ○  | ○  |      | ○  |
|                          | 건축물 규모         | · 한산모시관, 홍보관보다 규모가 큰 건축물 입지 제한                                                 | ○  | ○  |      | ○  |
|                          | 건축물 용도         | · 한산모시관의 기능을 도와주는 용도의 건축물 유도<br>-박물관, 전시관, 모시체험관, 연구소, 테마민박 등                  | ○  |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골프연습장, 창고, 축사, 공장 등 모시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br>입지 제한(단, 한산모시 및 한산소곡주 관련 공장과 창고는 제외) | ○  | ○  | ○    |    |
|                          | 건축물<br>형태(디자인) | · 전통건축양식에 어울리는 형태 디자인 유도                                                       | ○  | ○  |      | ○  |
|                          | 건축물 외관         | · 대문, 담장 등은 전통구조물에 어울리는 재료·형태 권장                                               | ○  | ○  |      | ○  |
|                          |                | · 역사자원의 시간적 흐름을 배려한 소재 선택<br>-페인트 도장, 드라이비트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노후<br>되는 소재 지양    | ○  | ○  |      | ○  |
|                          | 대지내 공지         | · 대지내 공지는 광장에 면하도록 조성                                                          | ○  | ○  |      | ○  |
|                          | 대지내 조경         | · 조경양식은 전통조경양식 권장                                                              | ○  | ○  |      | ○  |
| 도시<br>시설                 | 건축물 간격         | · 전통건축양식에 부합하는 건축 간격유도                                                         | ○  | ○  |      | ○  |
|                          | 옥외광고물          | · 한산모시관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 형태                                                        | ○  | ○  |      | ○  |
|                          | 가로시설물          | · 보도의 포장은 저채도의 색상을 가지는 석재 권장                                                   | ○  | ○  |      | ○  |
|                          |                | · 가로시설물은 ‘문화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  | ○  |      | ○  |
|                          | 색채             | · 색채는 ‘문화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사항 준수                                                  | ○  | ○  |      | ○  |
|                          | 야간조명           | · 야간조명은 필요한 부분에 설치, 과도한 설치 지양                                                  | ○  | ○  |      | ○  |
|                          | 기타시설물          | · 안내판, 관리사무소, 휴지통 등 주변 시설은 한산모시관 경관과<br>조화로운 형태·색채로 조성                         | ○  | ○  |      | ○  |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일원

### 계획방향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송림과 어우러지는 농어촌 경관형성
- 인근 농어촌 마을의 리모델링(주택의 색채, 주변 환경개선 등)을 통한 경관개선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근 옥외시설물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경관향상

### 구역범위

- 지정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오염토양 정화사업지, 장항송림 일원
- 향후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근 난개발 지역 및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 기본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 경관현황



장항송림 해수욕장



장항 송림 내부 경관



해양생물자원관 조감도



서천 청소년 수련원 조감도



성일복지원



송림마을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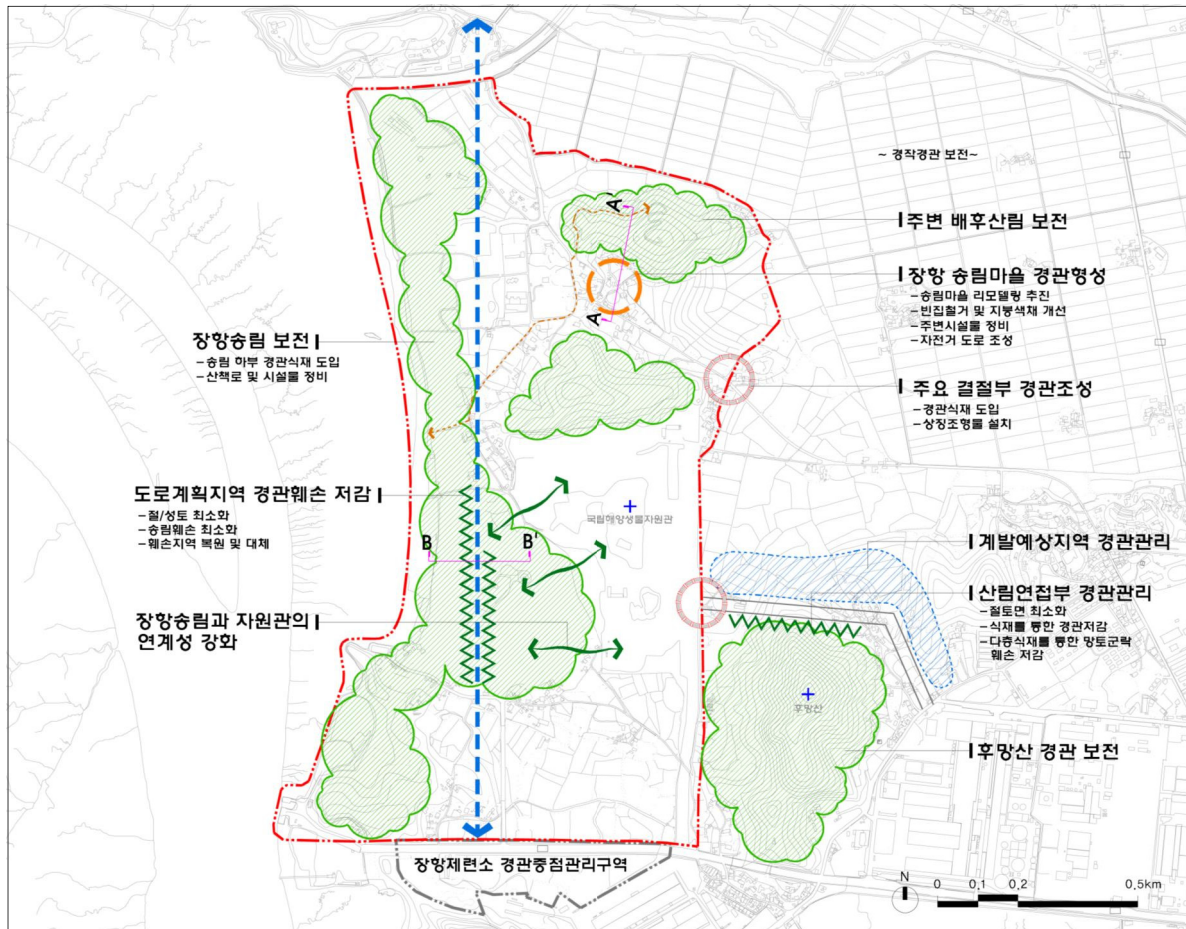
체육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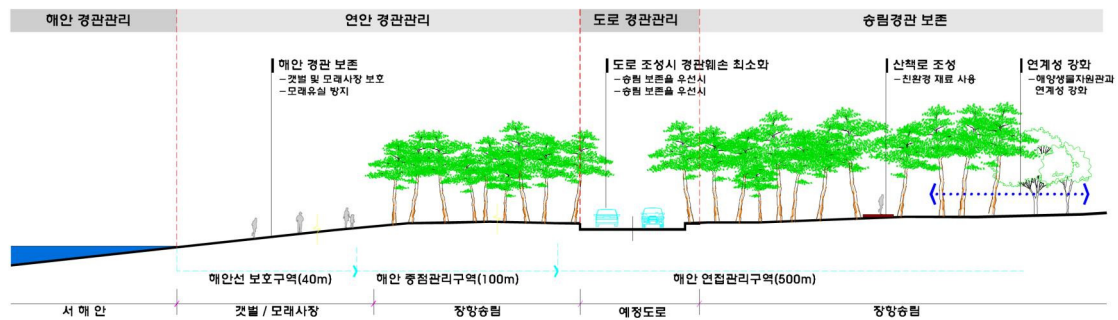
캠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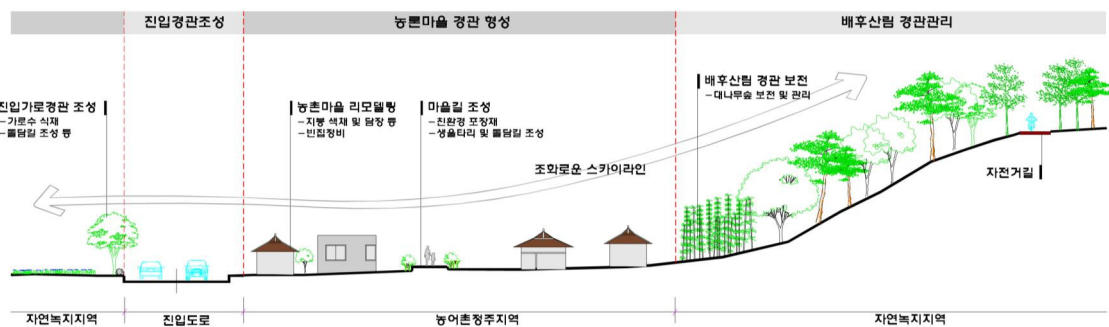
## 경관기본구상도



### A-A' Section



### B-B' Section



##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용도지역 변경(환경부 매입부지 토지이용계획에 의함)<br>· 농경지의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                     | ○  | ○  | ○    |    |
|                          | 환경·생태       | · 장항송림욕장의 산림 및 갯벌 보전<br>· 농어촌 지역의 향토경관자원 보전(군우물, 소하천, 마을숲 등)                               |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자원관-송림욕장-청소년수련관을 연결하는 보행도로 조성<br>· 수변 산책로, 데크 설치를 통한 수변 접근성 확보                           | ○  | ○  |      | ○  |
|                          | 도로          | · 자원관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해안과 건축물 사이 완충녹지 조성                                                                       | ○  | ○  |      | ○  |
|                          |             | · 해안선 보호구역으로부터 10m 폭원 이상의 완충공간 오픈스페이스 확보 유도                                                | ○  | ○  |      | ○  |
|                          |             | · 수변공간 오픈스페이스 확충(수변데크, 생태탐방로)                                                              | ○  | ○  |      | ○  |
|                          | 공원·녹지       | · 해양생물자원관 외곽부와 신축건물간 완충녹지 10m 이상 확보                                                        | ○  | ○  |      | ○  |
|                          |             | · 해안과 해양생물자원관을 연결되는 공원·녹지 조성                                                               | ○  | ○  |      | ○  |
|                          | 경관이미지       | · 녹지 조성시 염분에 강한 지역수종 선택, 다층구조 식재 도입                                                        | ○  |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건축물 규모      | · 건물신축시 해양생물관의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도                                                            | ○  | ○  |      | ○  |
|                          |             | · 건축물 입지시 해안통경축 보호                                                                         | ○  | ○  |      | ○  |
|                          |             | ·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급격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방지                                                              | ○  | ○  |      | ○  |
|                          | 건축물 용도      | · 해안경관가이드라인상 해안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준수<br>-시야확보를 위한 저층개발<br>-해안선으로부터 45. 사선제한 등                    | ○  | ○  |      | ○  |
|                          |             | · 농어촌지역에서는 경사도 20%이내 지역, 3층 규모로 한정                                                         | ○  | ○  |      | ○  |
|                          |             | · 장항송림산림욕장내 건축물 신축 제한                                                                      | ○  |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숙박시설, 펜션, 찻집 등 상업시설 최소화하고 장항송림, 해양생물자원관과 조화유도                                            | ○  | ○  |      | ○  |
|                          |             | · 생태관광에 부합하는 용도의 겹거리, 생태학습장, 체험관 등으로 유도                                                    | ○  | ○  |      | ○  |
|                          |             | · 해안 경관가이드라인상 해안선 보호구역내 입지제한                                                               | ○  | ○  | ○    |    |
|                          |             | ·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통경축 확보                                         | ○  | ○  |      | ○  |
|                          |             | · 해안에서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판상형 형태를 제한                                                               | ○  | ○  |      | ○  |
|                          |             | · 해안방향으로부터 부대설비의 노출을 제한                                                                    | ○  | ○  |      | ○  |
|                          |             | · 담장, 벽면 등에 의한 차폐를 지양하고 녹지조성 권장                                                            | ○  | ○  |      | ○  |
|                          |             | · 천공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                                                                | ○  | ○  |      | ○  |
|                          |             | · 해안방향으로 건축물의 정면성을 확보                                                                      | ○  |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해안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60m미만으로 유도                                                         | ○  | ○  |      | ○  |
|                          |             | · 창고시설 등 건축물의 입면길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                          | ○  | ○  |      | ○  |
|                          | 건축물 외관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건축은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유도                                                        |    | ○  |      | ○  |
|                          | 대지내 공지      | · 수평성을 강조하고, 절제된 매스 형태로 계획                                                                 |    | ○  |      | ○  |
|                          | 건축물 간격      | ·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식재차폐도를 30%이상 확보                                                           |    | ○  |      | ○  |
|                          |             | · 신축건물 전면공지는 수변방향으로 조성하여 친수공간 조성                                                           | ○  | ○  |      | ○  |
| 도시<br>시설                 | 건축물 간격      | · 해안변 건물 입지시 해안에서 바라보는 통경축이 확보되는 간격유지                                                      | ○  | ○  |      | ○  |
|                          | 옥외광고물       | · 상업시설 옥외광고물은 지역정체성을 살린 통일감 있는 디자인<br>-이미지 설정, 형태, 재료, 색채 주민 협정 가능<br>-옥외광고물을 특화하는 주민협정 수립 | ○  | ○  |      | ○  |
|                          | 가로시설물       | · 해안 가로시설물은 염분에 강한 재료 사용                                                                   | ○  |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 야간조명        | ·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조명시설 권장                                                                     | ○  | ○  |      | ○  |
| 도시<br>시설                 | 기타시설물       | · 펜스, 난간 등 도시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                                                          |    |    |      | ○  |



## ■ 국립생태원 일원

### 계획방향

- 진입경관 형성을 위한 식재 및 야간경관 등 다양한 경과연출 유도
- 인근 농어촌 마을의 리모델링(주택의 색채, 주변환경개선 등)을 통한 경관개선
- 국립생태원 인근 옥외시설물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경관향상

### 구역범위

- 지정 : 국립생태원, 금강하구둑 관광지, 김인전공원, 국도 21호선(금강하구둑-송내교차로) 주변 15m
- 향후 : 국립생태원과 금강하구둑 인근 난개발 지역 및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 기본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 경관현황



국립생태원 전경



국립생태원 1



국립생태원 2



장항역 경관



금강하구둑 경관



김인전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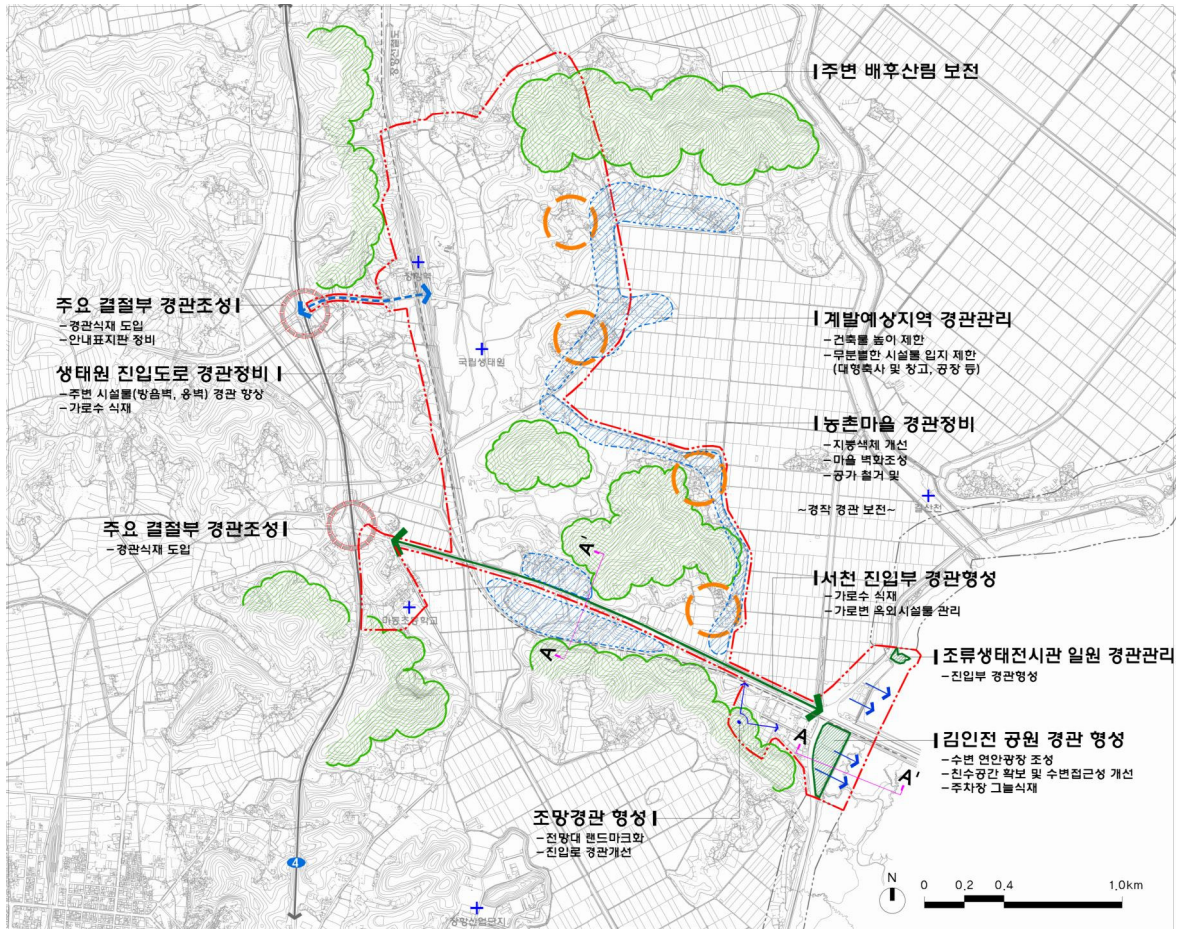


조류생태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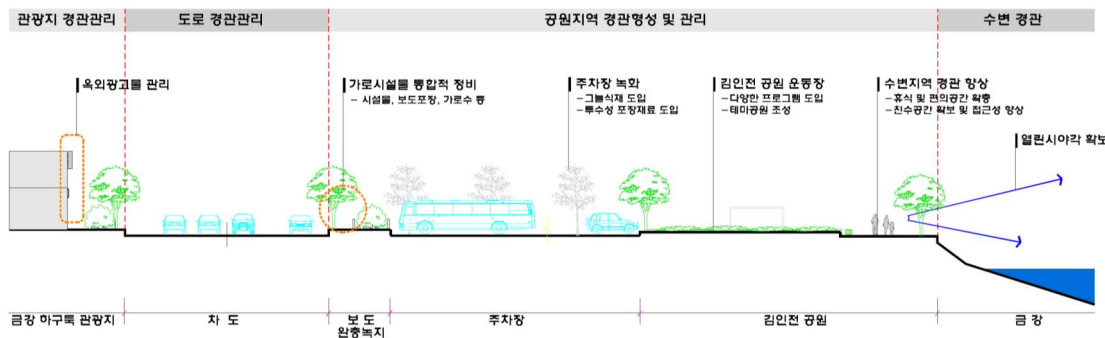


농촌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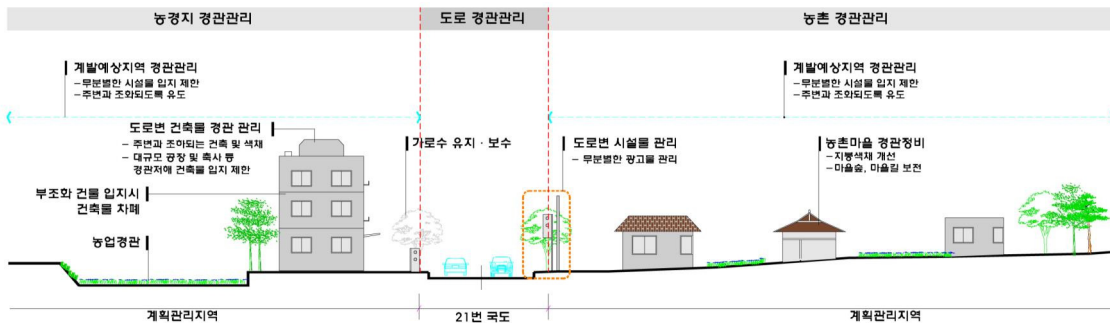
## 경관기본구상도



### A-A' Section



### B-B' Section



##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농경지의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                           | ○  | ○  | ○    |    |
|                          | 환경·생태       | · 금강수변과 육지가 만나는 주연부(edge) 생태적 보전                                | ○  | ○  | ○    |    |
|                          |             | ·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전 및 수변 생태계 비오톱(biotop) 조성                          | ○  | ○  | ○    |    |
|                          |             | · 농어촌 지역의 향토경관자원 보전(군우물, 소하천, 배후산림 등)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장항역-국립생태원-금강하구둑-김인전공원-조류생태전시관을 연결하는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 ○  | ○  |      | ○  |
|                          |             | · 수변 산책로, 데크 설치를 통해서 수변 접근성 확보                                  | ○  | ○  |      | ○  |
|                          | 도로          | · 21호 국도 상징가로 조성 및 도로변 완충녹지 조성                                  | ○  | ○  |      | ○  |
|                          |             | · 도로와 철로의 교차부분 완충녹지 조성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금강하구둑 오픈스페이스와 생태원 간 유기적 연계성 고려                                | ○  | ○  |      | ○  |
|                          |             | · 수변공간 오픈스페이스 확충(수변데크, 생태탐방로)                                   | ○  | ○  |      | ○  |
|                          |             | · 국립생태원 외곽부와 신축건물 간 완충녹지 10m 이상 확보                              | ○  | ○  |      | ○  |
|                          | 공원녹지        | · 금강수변과 국립생태원이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 고려                                   | ○  | ○  |      | ○  |
|                          |             | · 기존 농어촌마을의 마을숲, 정자목, 당산목, 대숲 등 보전                              | ○  | ○  |      | ○  |
|                          | 경관이미지       | · 21호선 국도 진입부를 서천의 관문경관거점으로 조성                                  | ○  | ○  |      | ○  |
|                          |             | · 김인전공원,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수변조망권 확보 및 포토 존 조성                           | ○  | ○  |      | ○  |
|                          |             | · 건물신축시 국립생태원의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도                                 | ○  |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스카이라인       | ·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급격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방지                                   | ○  | ○  |      | ○  |
|                          |             | · 금강변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 입지하도록 하여 완만한 스카이라인 형성                | ○  | ○  |      | ○  |
|                          |             | · 생태계 연구의 메카로 서천군의 주요경관거점으로 조성                                  | ○  | ○  | ○    |    |
|                          | 도시 맥락       | · 금강수변은 저층규모의 건축물 유도                                            | ○  | ○  |      | ○  |
|                          |             | · 농어촌지역에서는 경사도 20%이내 지역, 3층 규모로 한정                              | ○  | ○  |      | ○  |
|                          |             | · 숙박시설, 펜션, 횃집 등 상업시설 최소화                                       | ○  | ○  |      | ○  |
|                          | 건축물 용도      | · 생태관광에 부합하는 용도의 갤러리, 생태학습장, 체험관 등으로 유도                         | ○  | ○  |      | ○  |
|                          |             | ·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 배치                                            | ○  | ○  |      | ○  |
|                          |             | ·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통경축 확보              | ○  |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 ○  | ○  |      | ○  |
|                          |             | · 21호선 국도변 연접지역 건축물 입지 지양하여 개방감 유도                              | ○  | ○  |      | ○  |
|                          |             | · 창고시설 등 건축물의 입면길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 불가피할 경우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 | ○  | ○  |      | ○  |
|                          |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건축은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유도                             | ○  |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수평성을 강조하고, 절제된 매스 형태로 계획                                      | ○  | ○  |      | ○  |
|                          |             | · 금강하구둑 관광지인근은 특색있는 건축설계                                        | ○  | ○  |      | ○  |
|                          |             | ·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식재차폐도를 30%이상 확보                                | ○  | ○  |      | ○  |
|                          | 건축물 외관      | · 신축건물 전면공지는 가로변에 면하도록 조성                                       | ○  | ○  |      | ○  |
|                          | 대지내 공지      | · 농어촌 주택은 넓은 인동간격유지(프라이버시 유지)                                   | ○  | ○  |      | ○  |
|                          |             | · 신축건물은 주변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인동간격 조절                                    | ○  | ○  |      | ○  |
| 도시<br>시설                 | 옥외광고물       | · 중점관리구역내 상업시설의 간판은 최소한으로 허용                                    | ○  | ○  |      | ○  |
|                          |             | · 21호 국도변 옥외광고물 최소화                                             | ○  | ○  |      | ○  |
|                          | 가로시설물       | · 21호 국도변 가로시설물 정비                                              | ○  |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 야간조명        | ·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조명시설 권장                                          | ○  | ○  |      | ○  |
| 기타시설물                    | 기타시설물       | · 펜스, 난간 등 도로시설물은 국립생태원 이미지를 고려하여 설치                            | ○  | ○  |      | ○  |

## ■ 비인만 해안도로

### 계획방향

- 해안도로변 완충녹지 확보를 통한 경관연출 및 옥외시설물의 통합적 관리
- 인근 농어촌 마을의 리모델링(주택의 색채, 주변환경개선 등)을 통한 경관개선
- 여가 및 휴식을 위한 수변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친수공간 조성

### 구역범위

- 지정 : 비인만 해안도로(장구리-월하성) 양측으로 15m
- 향후 : 해안도로변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상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해안선에서 500m) 및 관광객이 수요가 많은 월하성 체험마을, 선도리, 장구2리 마을

### 기본현황



위치도



위성사진

### 경관현황



월하성 마을 입구



월하성 갯벌체험마을 경관



선도리 해안경관



선도리 해변



해안도로 1



해안도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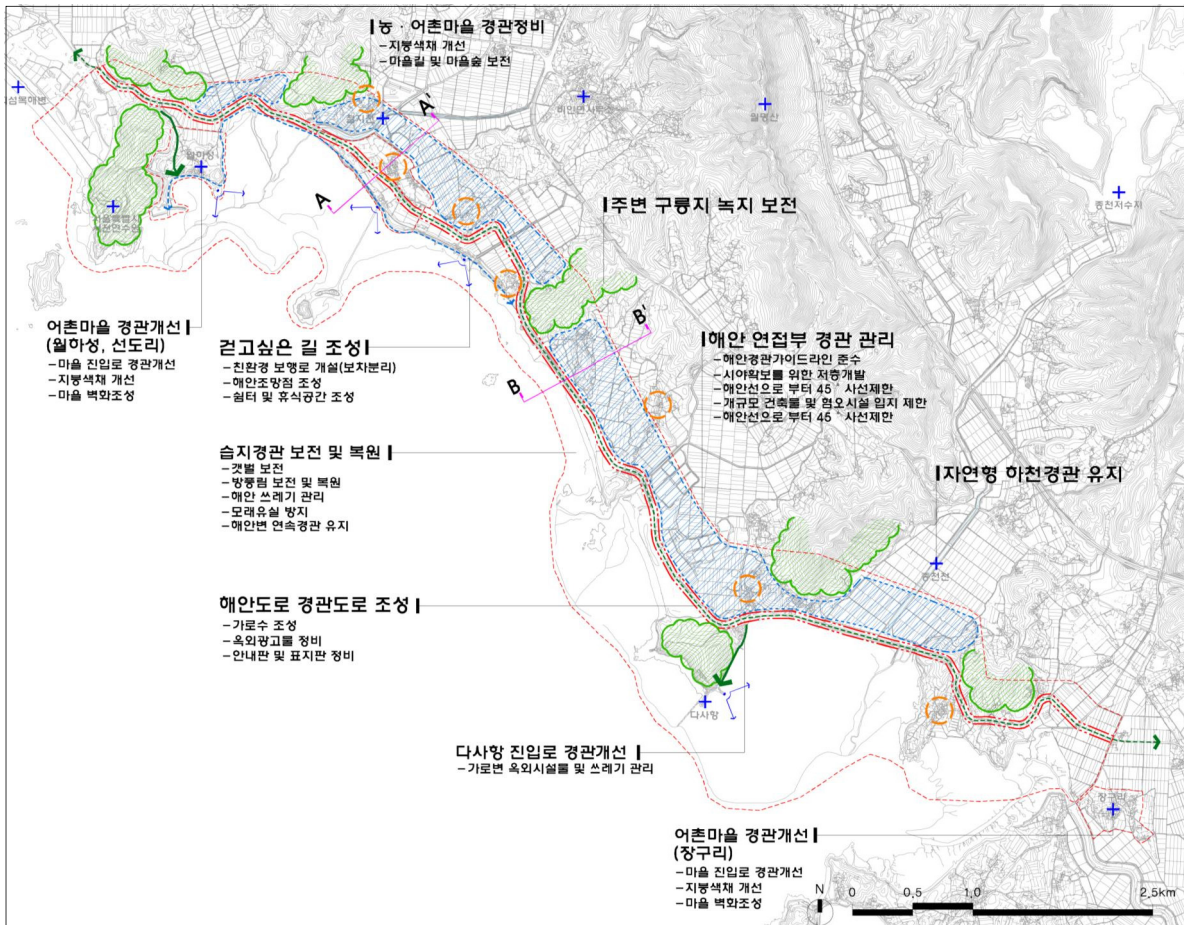
서해안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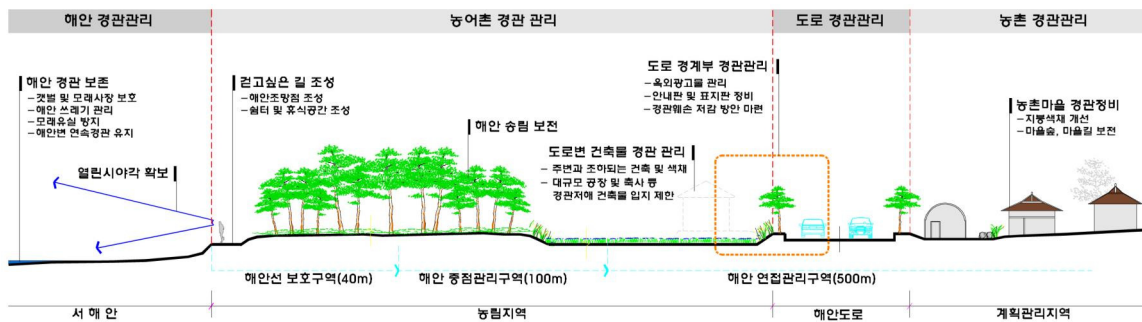
다사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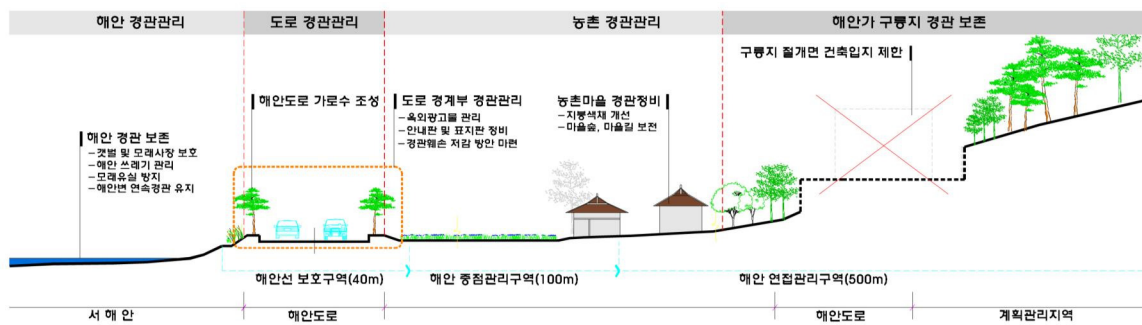
## 경관기본구상도



### A-A' Section



### B-B' Section



## Check list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주체 |    | 강제여부 |    |
|--------------------------|-------------|--------------------------------------------------------------------------------------------|----|----|------|----|
|                          |             |                                                                                            | 공공 | 민간 | 필수   | 권장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농경지의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                                                       | ○  | ○  | ○    |    |
|                          | 환경·생태       | · 해안과 육지가 만나는 주연부(edge) 생태적 보전                                                             | ○  | ○  |      | ○  |
|                          |             | ·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전 및 수변 생태계 비오톱(biotop) 조성                                                     | ○  | ○  |      | ○  |
|                          |             | · 해안변 경관자원의 보전(방풍림, 리아시스식 해안)                                                              | ○  | ○  |      | ○  |
|                          | 보행자 공간      | · 해안도로변 주요 조망지점에 갯벌체험로 조성                                                                  | ○  | ○  |      | ○  |
|                          |             | · 장구리-선도리-월하성을 잇는 자전거도로 조성                                                                 | ○  | ○  |      | ○  |
|                          |             | · 수변 산책로, 데크 설치를 통한 수변 접근성 확보                                                              | ○  | ○  |      | ○  |
|                          | 도로          | · 해안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철조망 철거                                                                    | ○  | ○  |      | ○  |
|                          |             | · 주요 조망점 가로수는 불규칙적 식재로 수변 조망권 확보                                                           | ○  | ○  |      | ○  |
|                          | 주차장         | · 해안도로변 주요 조망지점에 주차장 조성                                                                    | ○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해안변 오픈스페이스 확충(수변데크, 갯벌탐방로)                                                               | ○  | ○  |      | ○  |
|                          |             | · 해안도로변 주요 결절부 지점 소규모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공원·녹지       | · 해안도로변 방풍림 조성(향토수종 및 해송)                                                                  | ○  | ○  |      | ○  |
|                          | 경관이미지       | · 해안도로변 연속경관 유지 및 관리                                                                       | ○  | ○  |      | ○  |
|                          |             | · 해안도로변 갯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갯벌체험이미지 조성                                                            | ○  | ○  |      | ○  |
|                          | 스카이라인       | ·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 입지하도록 하여 완만한 스카이라인 형성                                            | ○  | ○  |      | ○  |
|                          | 건축물 규모      |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상 해안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준수<br>-시아확보를 위한 저층개발<br>-해안선으로부터 45. 사선제한 등                | ○  | ○  |      | ○  |
|                          | 건축물 용도      | · 갯벌체험에 부합하는 용도의 갯벌학습장, 체험관 등으로 유도                                                         | ○  |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상 해안선 보호구역내 건축물 입지제한                                                        | ○  | ○  |      | ○  |
|                          |             | ·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통경축 확보                                         | ○  | ○  |      | ○  |
|                          |             |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 ○  | ○  |      | ○  |
|                          |             | · 해안방향으로부터 부대설비의 노출을 제한                                                                    | ○  | ○  |      | ○  |
|                          |             | · 천공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 ○  | ○  |      | ○  |
|                          |             | · 해안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60m미만으로 제한                                                         | ○  | ○  |      | ○  |
|                          |             | · 창고시설 등 건축물의 입면길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                          | ○  | ○  |      | ○  |
|                          |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지형에서는 건축을 제한하고, 과도한 절·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완충식재를 통한 경관저감방안 마련                 | ○  |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건축은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유도                                                        | ○  | ○  |      | ○  |
|                          |             | · 수평성을 강조하고, 절제된 매스 형태로 계획                                                                 | ○  | ○  |      | ○  |
|                          | 건축물 외관      | ·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식재차폐도를 30%이상 확보                                                           | ○  | ○  |      | ○  |
|                          | 대지내 공지      | · 신축건물 전면공지는 가로변 또는 해안에 면하도록 조성                                                            | ○  | ○  |      | ○  |
|                          | 건축물 간격      | · 건물 신축시 해안에서 바라보는 통경축을 고려하여 건물 간격 설정                                                      | ○  | ○  |      | ○  |
| 도시<br>시설                 | 옥외광고물       | · 중점관리구역내 상업시설의 간판은 최소한으로 허용                                                               | ○  | ○  |      | ○  |
|                          |             | · 상업시설 옥외광고물은 지역정체성을 살린 통일감 있는 디자인<br>-이미지 설정, 형태, 재료, 색채 주민 협정 가능<br>-옥외광고물을 특화하는 주민협정 수립 | ○  | ○  |      | ○  |
|                          |             | · 해안도로변 가로시설물 정비                                                                           | ○  | ○  | ○    |    |
|                          | 가로시설물       | · 해안 가로시설물은 염분에 강한 재료 사용                                                                   | ○  |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 야간조명        | ·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조명시설 권장                                                                     | ○  | ○  |      | ○  |
|                          | 기타시설물       | · 펜스, 난간 등 도로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                                                          | ○  | ○  |      | ○  |

## 5.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1) 기본원칙

|      |                                                                                                                                                                    |                                                                                       |
|------|--------------------------------------------------------------------------------------------------------------------------------------------------------------------|---------------------------------------------------------------------------------------|
| 원칙 1 | <b>옥외광고물의 통합설치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인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할 설치 및 중복설치 지양</li> <li>- 공공기관 등 주요 시설 안내는 보행자 안내 표지판으로 대체</li> </ul>      |    |
| 원칙 2 | <b>핵심적인 내용만을 표기하여 가독성 및 시인성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인 내용만을 표기하여 여백을 확보</li> <li>- 부착되는 위치와 크기를 고려하여 가독성 및 시인성 확보</li> </ul>             |    |
| 원칙 3 | <b>자연재료사용을 권장하고 안전하고 내구성을 가진 디자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에 맞도록 자연재료 사용권장</li> <li>- 광고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를 고려한 디자인</li> </ul>        |   |
| 원칙 4 | <b>광고물 크기의 최소화로 주변과의 조화 도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 크기를 최소화하여 건물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면적 최소화</li> <li>- 인접 간판, 거리, 건물 등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고려</li> </ul>    |  |
| 원칙 5 | <b>자극적 색상 및 이미지 사용을 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적 혼란을 초래하는 이미지 및 자극적 색상 및 과도한 표기 금지</li> <li>- 자극적인 실물사진 이미지 금지</li> </ul>                   |  |
| 원칙 6 | <b>업소의 성격에 맞는 기능성과 효율성을 고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천군의 경관을 고려하고 업소의 성격에 맞는 차별화된 디자인</li> <li>- 크기 및 설치 위치를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경관 향상</li> </ul> |  |
| 원칙 7 | <b>적정휘도를 통해 편안하고 아름다운 조명 연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란한 조명사용을 자제하고, 조명 설치시 서천군의 특성을 반영</li> <li>-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li> </ul>          |  |



## 2) 사용방법

### 목적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도시경관요소 중의 하나인 옥외광고물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쾌적하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용도, 가로 및 건축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관리되도록하기 위한 사항을 제시



### 적용범위

-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경관협정지역 등 일정한 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침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이외의 구역은 서천군 옥외광고물 조례로 규정
- 일반관리구역 및 특별관리구역내의 광고물을 부착한 상업업무 및 근린생활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

### 사용대상

- 광고물 허가권자,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광고물 제작자, 광고물 디자이너 등 광고물 제작, 설치, 심의, 허가를 담당하는 관련자

### 사용시기

-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사업승인신청, 심의, 허가, 신고시 광고물을 함께 사전에 검토하고, 건축물 설계시 광고물의 설치 위치 및 크기를 입면 디자인에 반영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

### 적용방법

- 지구단위구역은 옥외광고물 유형, 설치 위치, 재료, 색채 등의 제한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광고물의 유형, 형태, 재료, 색채, 조명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사용

### 특약사항

- 충청남도의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광고물 특정구역 고시 내용 등과 상충될 경우에는 특정구역 고시내용 및 광고물 조례를 따르도록 함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절차



## 옥외광고물 Check list

| 구분        | 고려사항                                                                                                                                                                      | 비고    |
|-----------|---------------------------------------------------------------------------------------------------------------------------------------------------------------------------|-------|
| 위치        | · 대상 위치도(1/500 축척)                                                                                                                                                        | 1/500 |
| 개요        | · 현장기본요건<br>(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지역/지구, 전면도로 폭, 용도, 층수, 마감재료 등 건축개요)                                                                                                   | 1/500 |
| 관련제도      | · 지구단위계획지침 준수 내용<br>· 옥외광고물 조례 준수 내용                                                                                                                                      |       |
| 광고물 설치도   | · 건축입면도에 간판 부착 위치 및 크기, 재질 표시<br>· 정면, 배면, 좌/우측면에서 광고물 설치되는 도면 표기<br>·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                                                                                       | 1/500 |
| 광고물 설치 내용 |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br>· 가로형 간판설치에 관한 사항<br>· 돌출 간판 설치에 관한 사항<br>· 지주이용 간판 설치에 관한 사항<br>·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br>· 기타 광고물과 관련된 사항<br>· 이상의 각 내용별 설치 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조명 등을 포함 |       |
| 유형 상세도    | · 가로형 간판설치에 관한 상세도<br>· 돌출간판 설치에 관한 상세도<br>· 지주이용 간판 설치에 관한 상세도<br>·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에 관한 상세도<br>· 기타 광고물과 관련된 사항의 상세도<br>· 이상의 각 내용별 설치 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조명 등을 포함함         | 1/20  |
| 관리        | · 임대차계약서에 삽입할 내용 기입<br>· 관리부서 및 관리자 표기                                                                                                                                    |       |

### 3) 경관설계원칙

|         |                                                                                                                                                      |
|---------|------------------------------------------------------------------------------------------------------------------------------------------------------|
| 설계 원칙 1 | <b>통합적인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한 광고물 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관된 광고물 설치기준 계획</li> <li>- 도시의 연속적이고 통일된 이미지 구현</li> </ul>                  |
| 설계 원칙 2 | <b>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광고물 디자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 크기를 최소화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li> <li>- 주변 색채와 조화로운 풍토색을 도입하도록 함</li> </ul>     |
| 설계 원칙 3 | <b>건축물과 광고물을 일체화하여 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설계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건축물 입면 계획</li> <li>- 건축물과 옥외광고물의 조화를 유도</li> </ul>       |
| 설계 원칙 4 | <b>업소의 잦은 변경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디자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체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탈부착이 용이하게 계획</li> <li>- 교체시 주변 광고물과 조화를 유도</li> </ul> |



저층부에만 가로형 간판 설치



입체형 가로형 간판



입체형 간판의 야간경관



규모 및 설치위치를 통일한 돌출간판



한면에 일렬로 정비한 가로형 간판



업소간 통합하여 설치한 지주이용간판

## 4) 유형별 가이드라인

### 공통 가이드라인

| 구분    | 지침내용 | 권장                                                                                     | 필수 |
|-------|------|----------------------------------------------------------------------------------------|----|
| 공통 사항 | 수량   | · 업소당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 이내(가각부 3개 이내)                                                       | ○  |
|       | 표시방법 | · 판류형 간판은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 설치                                                               | ○  |
|       |      | · 한 건물 안에서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 또는 유사한 서체 사용                                              | ○  |
|       |      | · 가급적 단순, 명확한 내용 표기                                                                    | ○  |
|       |      | · 문자의 크기는 세로 0.7m이내로 설치                                                                | ○  |
|       |      | ·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병기) | ○  |
|       | 재료   | · 동일 건축물내 광고물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료 사용                                                         | ○  |
|       |      | · 건물외장재를 고려하여 건물이미지와 조화되는 재료 사용                                                        | ○  |
|       |      | · 유지관리가 양호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 사용                                                              | ○  |
|       | 조명   | · 에너지 고효율 조명 사용 권장                                                                     | ○  |
|       |      | · 광고물의 휘도를 낮게 하여 눈부심을 최소화                                                              | ○  |
|       |      | · 네온 및 점멸방식 조명 설치 지양                                                                   | ○  |
|       |      | · 광원의 직접 노출,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                                                       | ○  |
|       | 색채   | · 돌출색 및 원색의 사용을 지양, 입면색채와 조화                                                           | ○  |
|       |      | · 채도 4이상, 명도 6이하인 색의 바탕면 사용규제, 형광색 사용금지                                                | ○  |
|       | 기타   | · 옥상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사용 금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은 예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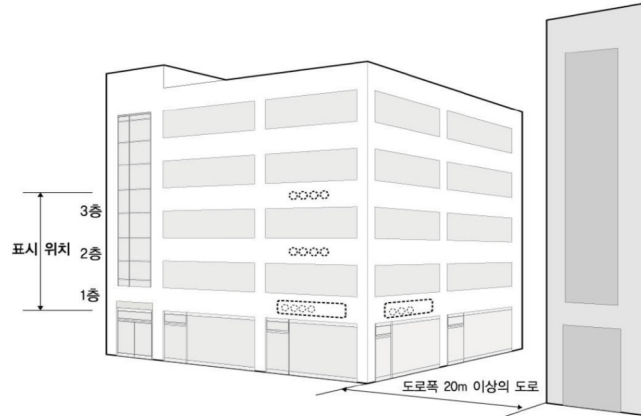
### 지역별 적용

| 지역구분   | 간판 총 수량 | 가로형 간판 | 돌출 간판 | 점멸방식 | 대상지역                                                                 |
|--------|---------|--------|-------|------|----------------------------------------------------------------------|
| 일반지역   | 2       | 3층 이하  | 5층 이하 | 불가   | · 20m 미만 도로변의 주거생활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                                    |
| 상업지역   | 2       | 3층 이하  | 5층 이하 | 심의허용 | · 20m 미만 도로변의 집단 상업지역                                                |
| 보전관리지역 | 1       | 2층 이하  | 5층 이하 | 불가   | · 문화재 및 녹지의 경관보전이 최우선인 지역<br>· 서천군에서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중점관리구역 등) |
| 특화지역   | 2       | 3층 이하  | 5층 이하 | 심의허용 | · 관광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특별지역과 서천군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

## 가로형 간판

### • 위치 및 규격

- 3층 이하에 표시
- 꼭각지점에 접한 업소와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 추가가능
- 둘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할 수 없도록 함
- 가로크기 : 건물벽면 가로 폭의 80%이내, 최대 10m 이내로 표시
- 세로크기 : 입체형(최대 45cm), 판류형(최대 80cm) 이내로 함
- 두께 :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이내



### • 표기내용

- 간판의 서체는 업종의 성격이나 상호 및 브랜드에 어울리도록 사용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음
- 주 표기내용의 평균 세로크기는 최대 45cm 이내로 함(보조 표기내용 : 세로크기의 1/4이내)

### • 색채

- 색채는 업소의 특성과 상호 또는 브랜드를 나타내는 개성적인 색채를 사용
- 지역특성 및 건축물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고채도의 원색은 포인트색으로만 적용
- 재질 자체에서 오는 물성이 느껴지도록 색채사용을 권장



### • 형태 및 재질

- 2층 이상 신축·개축 건물은 입체형을 권장하고, 외벽이 유리도 된 건축물에는 판류형 사용을 지양
- 서천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천연, 금속(코르텐 강), 목재 등 다양한 자연소재를 활용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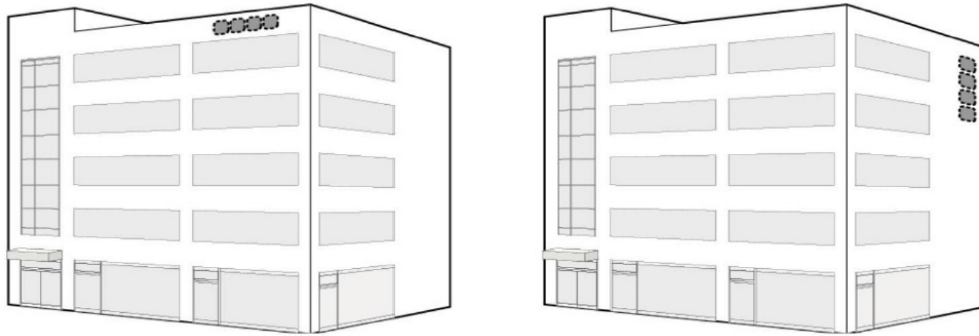
### • 옥외광고물 조명

- 조명의 광원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안정성 및 경관훼손이 우려되므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입을 권장
- 판류형 간판은 간판 전체에서 빛이 나오도록 하기 보다는 문자나 도형부분 등 가시성이 높은 부분에 빛이 나오도록 하여 디자인적 측면을 고려
- 점멸방식의 옥외광고물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함



## 건물상단 가로형간판

- 표시주체
  - 건물주가 건물명으로 표시하거나 건물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시 단, 업소가 표시할 경우 총수량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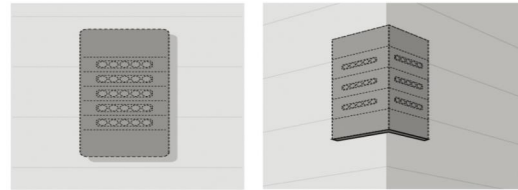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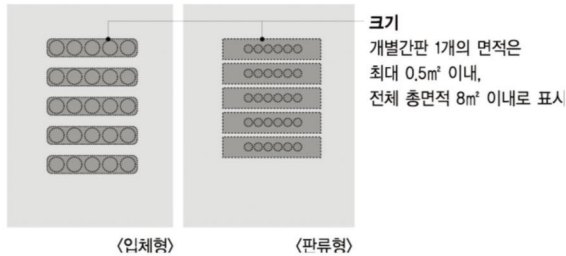


- 규격 및 면적
  - 가로 : 가로로 표시하는 간판의 세로 크기는 건물 높이 12m를 기준으로 건물 가로크기 12m 일 때 60cm 이내를 기준으로 3m 증가시 10cm 씩 증가하되, 최대 2m 이내로 함
  - 세로 :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는 건물 높이 12m 일 때 60cm 이내는 기준으로 3m 증가시 10cm 증가하되, 최대 1m 이내로 함
- 위치
  -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에 가로 또는 세로로 표시
  - 고층형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건물 상단에는 상가명을 표시함
- 수량 및 형태
  - 1건물 1명 표시(종합상가명은 2면 가능)
  - 입체형으로 표시



## 연립형 가로형간판

- 당해 건물에 입점업소가 많아 가로형 간판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 벽면에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으로서, 업소당 총수량에 포함됨



- 형태
    - 연립형으로 표시하여, 당해 건물에 인접해 있는 여러 업소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도록 디자인
    - 개별간판 1개의 면적은  $0.5\text{m}^2$  이내로 하고, 전체 총면적은  $8\text{m}^2$  이내로 표시 하고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 이내
  - 위치
    - 벽면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표시하도록 함
    -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벽면 1곳에 표시
    - 꼭각지점에 'ㄱ'자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음
  - 표기내용
    - 브랜드명 또는 상호명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
    - 각 업소표시부분의 문자는 충분한 여백을 두어 표기
  - 색채
    - 색채는 건축물의 외부마감재와 조화되도록 채색
    - 표시부분의 배경색이 무채색일 경우, 표기부분을 업체 고유색으로 표기할 수 있음
    - 표시부분의 배경색이 유채색일 경우, 업체 표기부분의 색을 한가지로 표기하도록 함
    - 구조체의 색상은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주위환경에 융화되도록 함
- 



- 재질
  - 건축물 외부마감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재질을 사용
  - 금속재질의 구조체를 사용할 경우, 자극적인 반사체 재질의 소재는 지양(예, 스테인리스 미러)
- 조명
  -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을 권장
  - 점멸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광원은 노출시키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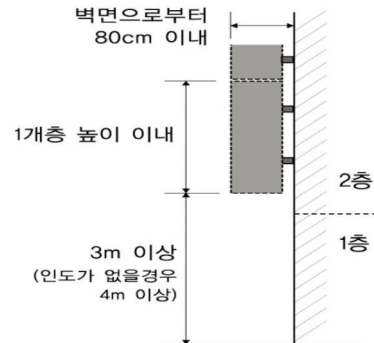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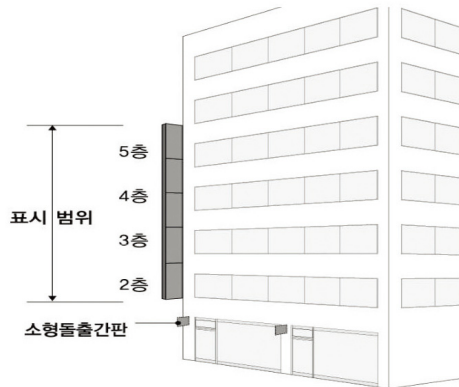




## 돌출간판

### • 형태

- 건물의 벽면에서 일정 규격으로 통일되게 돌출시켜 표시함
- 돌출간판의 연립형 구조체는 개별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함



### • 규격

-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표시하며, 2개 이상의 설치시 돌출 폭을 일치시킴
- 세로크기 : 건물의 1개층 높이 이내로 표시
-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이 되도록 표시하고 두께는 30cm 이내로 표시



### • 위치 및 표시자격

- 건물의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부분에 표시할 수 없고 다만,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에까지 표시할 수 있음
- 1층 업소는 소형돌출간판을 이용하도록 함
- 신축·개축일 경우, 건축주가 일정한 위치·간격으로 일괄설치 후 입점업소에 배정
- 1줄로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폭이 20m 이상일 경우, 건물 양측단에 표시할 수 있음



### • 표기내용

- 표기내용의 크기 : 표기내용의 면적을 간판면적의 1/3 이내로 표기하거나 주 표기내용의 평균 가로크기를 간판 가로크기의 1/2 이내로 표기함
- 보조 표기내용 : 간판면적의 1/6 이내로 표기



### • 조명

-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 권장
- 점멸방식은 사용할 수 없고, 광원은 노출시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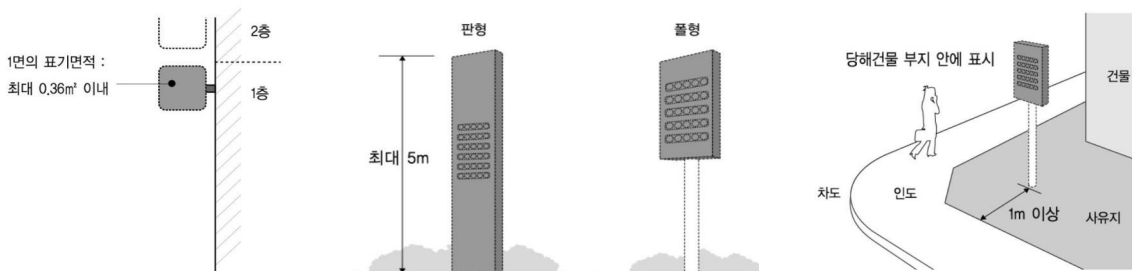


## 소형 돌출간판

- 형태는 크게 표시하기보다는 작고 아름답게 표시하고, 단순히 상호를 표시하기 보다는 업소를 상징하는 것을 형상화하고 조형적으로 표현하도록 함
- 표시방법
  - 신고를 통해서 표시할 수 있음
  -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업소가 표시하는 간판으로서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형돌출간판을 표시하는 업소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음
- 위치 및 규격
  - 안전을 위해 인도에만 표시하고, 업소 출입구의 좌우측 중 한곳에 1개소에 표시함
  - 1면의 표기면적은 최대  $0.36\text{m}^2$ 이내가 되도록 하고, 두께는 20cm 이내로 함

## 지주이용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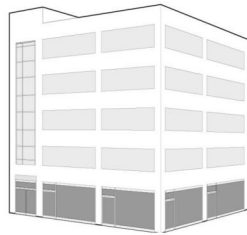
- 건물 부지 내 표시하여 입점업체들의 정보를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이며 총수량에 포함됨
- 5개 이상의 업체를 연립형으로 표시하고,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도록 함
- 표시주체는 건물주가 설치하여 입점업소에 배정
- 위치
  -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사유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안쪽에 표시 권장
  - 최대면적은 1면 최대  $3\text{m}^2$  이내로 표시, 세로크기는 최대 5m 이내로 표시
  - 투명한 재질을 가진 소재를 권장하고, 금속재질일 경우 자극적인 반사체 사용을 지양



- 표기내용
  - 브랜드명 또는 상호명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표기하도록 하며, 표기내용의 크기는 개별간판 면적의 1/3 이내로 표기하거나, 표기내용의 평균 세로크기를 개별간판 세로 폭의 1/2 이내로 표기하도록 함
- 색채
  - 표시부분의 배경색이 무채색일 경우에는 표기부분을 업체 고유색으로 표기할 수 없고, 배경색이 유채색일 경우에는 각 업체의 색을 한가지로 통일하여 사용
  - 구조체의 색상은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주위환경에 융화되도록 함
- 조명
  -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을 권장하고, 점멸방식은 사용을 할 수 없음
  - 광원은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도록 함

## 창문이용 광고물

-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표시
-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서,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은 설치할 수 없음
- 위치
  - 창문이용광고물은 일반 광고물의 개념이 아닌, 안전을 위한 유리벽 안전띠 개념으로서 매우 작은 크기로 1층 창문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하도록 함
  - 안전띠 개념으로 20cm 이하로 매우 작게 표시하고, 상호 또는 브랜드명 외에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표시할 수 있음
- 재질
  - 접착성이 있는 비닐종이 등의 재질(예, 시트와 같은 접착성 필름 등)
  - 전광류는 사용할 수 없음



## 주유소가스충전소 광고물 등

-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 지주이용간판 1개로 표시
- 가로형 간판
  - 가로길이 : 차양면의 가로범위의 80% 이내로 표시
  - 세로길이 : 최대 80cm 이내로 표시
  - 차양면의 각 면을 1개로 보고, 각 면을 연결하여 표시할 수 없음
- 위치 및 형태
  - 지주이용간판은 보행자 밀집정도, 보행권, 운전자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설치
  - 정유사의 지정색상은 건물 입면적의 1/3 이내로 적용
  - 점멸장식은 사용할 수 없고,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할 수 없음



## 5) 특별관리구역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 해당함
  - 중점경관관리구역 : 장항읍 중심가로, 서천읍 중심가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장항제련소, 춘장대비인항 일원, 금강변, 흥림저수지, 문헌서원 일원, 한산모시관 일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일원, 비인만 해안도로, 국립생태원 일원
  - 옥외광고물 특정지역 : 서천읍 군사리 일원, 장항읍 신창리 일원

### Check list

| 구분     |      | 지침내용                                                                     | 권장                          | 필수 |
|--------|------|--------------------------------------------------------------------------|-----------------------------|----|
| 공통 사항  | 디자인  | • 지역 또는 거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테마를 설정                                              |                             | ○  |
|        |      | • 업소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로고, 엠블럼, 픽토그램 등을 권장                                     | ○                           |    |
|        | 표시방법 | • 업소당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 이내(건축물 최상단의 건물명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과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간판 총수량에서 제외) |                             | ○  |
|        |      | • 광고내용은 광고물 표시면적 중 각 면의 20% 이내                                           |                             | ○  |
|        |      | • 판류형 간판은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 설치                                                 |                             | ○  |
|        | 재료   | • 동일 건축물내 광고물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료 사용                                           |                             | ○  |
|        |      | • 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 사용 및 고풍택 금속재질의 노출 지양                                      | ○                           |    |
|        | 조명   | •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                                               | ○                           |    |
|        |      | • 내부조명방식의 경우 문자나 도형의 부분조명방식 권장                                           | ○                           |    |
|        |      | • 네온, 점멸방식 및 광원 노출 제한                                                    |                             | ○  |
|        | 색채   | • 검정색과 빨강색은 간판 전체의 50%이상 금지                                              |                             | ○  |
| 가로형 간판 | 수량   | • 1업소당 1개 이내(가각부 2개 이내)                                                  |                             | ○  |
|        | 크기   | 가로                                                                       | • 해당 건축물의 가로폭 이내(최대 10m 이내) | ○  |
|        |      | 세로                                                                       | • 세로 0.7m 이내                | ○  |
|        |      | 4층 이상                                                                    | • 글자크기는 0.9m이내              | ○  |
|        | 표시방법 | • 판류형 판의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 ○  |
|        |      | • 3층 이하 정면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며, 건축 측면 또는 후면의 설치 금지                               |                             | ○  |
|        |      | • 4층이상에는 건물명이나 상징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간판 각각 부착 가능                  |                             | ○  |
| 세로형 간판 | 표시방법 | • 세로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                                                         |                             | ○  |
| 연립형 간판 | 수량   | • 정면 5층이하 별도 공간에 가로형 간판 설치                                               |                             | ○  |
|        | 크기   | • 연립되는 가로형 간판 1개의 면적최대 1㎡이내                                              |                             | ○  |
|        |      | • 게시 틀의 총면적은 최대 8㎡이내                                                     |                             | ○  |
|        |      | • 간판의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이내                                                  |                             | ○  |

| 구분              |            | 지침내용                                                                                                      | 권장                   | 필수 |
|-----------------|------------|-----------------------------------------------------------------------------------------------------------|----------------------|----|
| 돌출형<br>간판       | 수량         | · 1업소 1개만 표시                                                                                              |                      | ○  |
|                 | 크기         | 가로                                                                                                        | · 광고물의 가로크기 0.8m이내   | ○  |
|                 |            | 세로                                                                                                        | · 건축물의 1개층 높이 이내로 설치 | ○  |
|                 | 표시방법       | ·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0.8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세로의 길이는 1.5m이내, 간판두께는 0.5m이내                                           |                      | ○  |
|                 |            | · 건물 전면폭이 10m이하인 경우 1줄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각각 1줄로 설치 가능                                            |                      | ○  |
| 지주<br>이용<br>간판  | 수량         | · 5층이상 건물에 5개업소이상의 업소에 한해 연립형으로 설치                                                                        | ○                    |    |
|                 | 크기         |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함                                              | ○                    |    |
|                 | 표시방법       | ·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m이내, 가로폭은 1m 이내로 함                                                                         |                      | ○  |
|                 |            | · 부지내 입주 업소수를 배분하여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설치 권장                                                                       | ○                    |    |
|                 |            | ·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설치, 사유지경계로부터 1m이상 안쪽에 설치                                                                    | ○                    |    |
| 옥상<br>간판        | 설치         | · 옥상간판 설치 금지                                                                                              |                      | ○  |
|                 |            | · 4층이상 건물로 업소명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 <sup>1)</sup>                                            |                      | ○  |
|                 | 표시방법       | · 건물옥상바닥의 안쪽에 표시                                                                                          |                      | ○  |
|                 |            | · 구조물의 높이는 3m이내, 가로길이는 10m 이내로 설치                                                                         |                      | ○  |
|                 |            | · 글자높이는 2m 이내                                                                                             |                      | ○  |
| 현수막             | 설치         | · 현수막 설치를 금지                                                                                              |                      | ○  |
|                 |            | ·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표시                                                                                      | ○                    |    |
| 창문<br>이용<br>광고물 | 설치         | · 창문이용 광고물 금지                                                                                             |                      | ○  |
|                 |            | · 1층 업소에 한해 창문 또는 출입문에 폭 0.2m이내의 띠형태로 상호, 브랜드, 전화번호를 표시 가능                                                | ○                    |    |
| 애드벌룬            | 설치         | · 애드벌룬 설치 금지                                                                                              |                      | ○  |
| 전기<br>이용<br>광고물 | 네온류<br>전광류 | · 상업지역에 한하여 설치                                                                                            |                      | ○  |
|                 |            | · 입체형 문자도형에 전광류(LED조명 등)를 삽입하여 광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의 광고물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 가능 | ○                    |    |

1)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 6. 색채 가이드라인

### 1) 사용방법

#### 목적

- 일관된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도시전체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지역별, 요소별 기능에 적합한 색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 적용범위

- 도시의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모든 환경색채를 대상으로 함

#### 사용대상

- 경관심의위원회(색채), 디자이너, 제작자 등 도시색채를 담당하는 모든 색채 관련자

#### 사용시기

- 색채 심의 시 별도의 색채 심의 위원회(소위원회)를 두어 심의
-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심의, 자문, 허가 등에 따라 적용
- 기본계획인 경우 건축허가 후 적용
- 실시설계는 착공신고 후 적용
- 심의를 받는 경우 준공 1년 전에 적용
- 자문을 받는 경우 준공 1년 전에 적용
- 허가를 받는 경우 건축허가 후 적용

#### 적용방법

- 본 설계지침은 건축심의, 자문,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 본 설계지침은 건축물 용도별, 시설물 유형별로 구분하고 제시된 색채범위내에서 계획
- 마감재 고유의 색채를 사용할 경우 제시된 색채와 유사한 범위내에서 적용
- 시설물의 색채는 도시의 윤곽이 되는 시설, 배경이 되는 시설 등 기능을 구분하여 계획
- 별도의 주민협정에 의한 특별관리구역을 만들 수 있음

#### NCS 색체계

- 본 설계지침은 NCS(Natural Color System)을 기준으로 사용색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ISCC-NBS의 톤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를 높임
- 색상범위는 NCS 색체계에 따라 색상, 흑색량, 순색량 으로 구분
  - 색상은 사용색을 나타냄
  - 흑색량은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며, 흑색량이 많을수록 어둡고 적을수록 밝음
  - 순색량은 순색의 정도를 나타내며, 순색량이 많을수록 선명하고, 순색량이 적을수록 탁함

## 2) NCS 색체계의 구조

### NCS 색상환 : 색상(Color)

- 노랑(Y), 빨강(R), 파랑(B), 녹색(G)의 4가지 색상을 기본색상으로 하며, 이 색상을 0부터 100까지 10씩 증가시켜 10단계로 나누어 모두 40가지의 색상으로 구분

### NCS 색상각형 : 뉘앙스(Nu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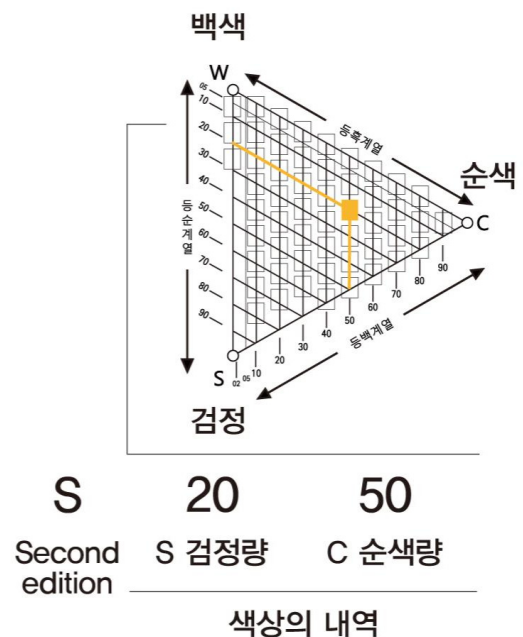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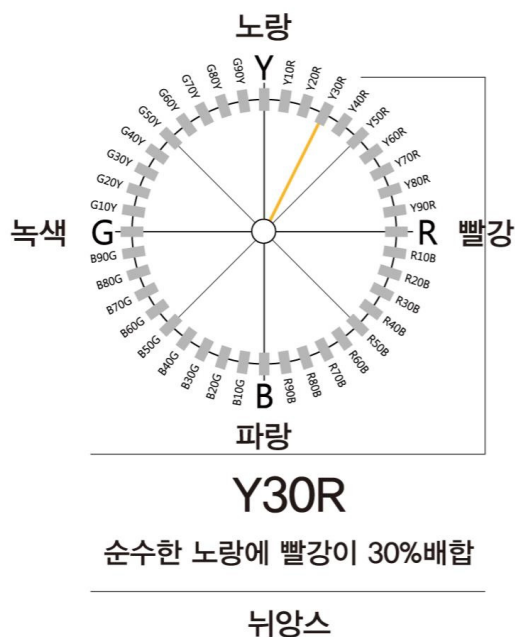
- 색상각형은 동일색상에 대한 명도와 채도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W-흰색량(Whiteness), S-흑색량(독, Schwarz=Blackness), C-순색량(Chromaticness)가 세 꼭짓점에 위치하고 있음

### NCS 색체계의 표기

- 흑색량(S), 순색량(C), 색상 순으로 표기
- NCS에서 주어진 색에 대해 흰색량(W), 흑색량(S), 순색량(C)의 합은 항상 100으로 가정함(즉,  $W+S+C=100$ )
- 순수한 노랑은 Y이고 노랑에 빨강이 10%배합은 Y10R, 20% 배합은 Y20R로 표시함. 따라서, B90G이면 파랑에 녹색이 90%섞인 색을 뜻함. 즉 이웃한 색상간의 혼합량을 %로 나타냄

### 용어 해설

- 주조색 :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으로 입면적의 70%이상을 사용하는 색을 말함
- 보조색 : 주조색을 보조해주는 전체 색채 이미지와 밸런스를 조정하는 색으로 입면적의 10%~30%를 차지하는 색을 말함
- 강조색 : 주조색, 보조색과 대비가 되는 색으로 전체면적의 10%미만의 작은 면적으로 개성을 연출하는 역할을 하는 색을 말함





### 3) 심의(자문)

#### 목적

-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색채심의를 실시하고, 심의 시 기준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필요
- 공동주택, 미관지구 등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 시 적용기준에 대한 엄격 관리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상징물은 심의위원회에서 관리
- 색채심의기준은 사용색과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시

#### 대상

- 건축심의 대상은 색채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건축심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협의를 통해 도시전체 이미지와 조화되는 색채계획 수립

### 4) 심의 기준

#### 사용색에 관한 사항

- 경관은 다양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요소들 간의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조화롭게 계획
- 사용색은 색채 설계지침의 적용색채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사용

#### 색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선택된 색이 사용된 부분의 면적과 위치에 따른 색(명도와 채도)의 돌출여부 심의

####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주변 환경색채를 충분히 검토하고 조화롭게 계획되었는지를 심의
- 주변 환경이 자연환경인 경우 건축물에 녹색을 사용할 때는 주의

#### 슈퍼그래픽에 관한 사항

- 슈퍼그래픽 사용여부에 관하여 심의(아파트 층벽 슈퍼그래픽 지양)

#### 로고와 회사명에 관한 사항

- 로고 및 회사명의 층벽 표기 위치, 개수 등 심의

### 5) 위원회

- 색채심의회는 경관위원회에서 하며, 색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색채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건축물, 시설물, 광고물 등의 디자인 분야 중 색채 전문가로 구성)
- 공동주택, 미관지구 등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시 적용기준에 대하여 엄격 관리
- 골조공사 80%완료 전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시기

- 색채소위원회는 경관심의위원회의 개최시기와 동일

## 심의 절차

- 민원인 → 시 접수 → 관계부서 협의 → 경관위원회 → 허가(승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와 설계도서를 제출
- 신청서는 신청서류, 체크리스트를 첨부

## 제출서류 작성방법

- 표지는 사업명 및 제출일을 명기하며 재심의시는 표지에 조치반영계획서를 부착하여 제출
- 건축개요를 명기하고 조감도를 배치.(단 조감도가 없을 시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됨)
- 대상지 주변 환경에 대한 건축물 색채 현황을 첨부(사진첨부-근중경, 원중경 범위내의 조망점에서 촬영한 사진)
- 색채계획에 있어서 조닝이나, 패턴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시
- 부위별로 사용하는 색을 명기
- 공동건축물의 경우 B, C, 동 호수 등의 위치, 크기, 색을 명기한 측벽계획을 작성
- 선택한 색을 어느 부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를 명기
- 배색 패턴을 작성하고 적용 사례별 도면을 작성



### 제출서류

도서 : 위치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현장사진, 색채계획도

서류 : 건축개요  
(건축인허가, 신청소와 동일한 체크리스트 종류별 자가진단 등)

## 색채심(자문)의 제출서류 작성예시

- 색채심(자문)의 제출서류 작성방법에 따른 예시를 작성한 것임

|                          |                            |
|--------------------------|----------------------------|
| Page 1 : 표지,             | Page 2 : 건축개요,             |
| Page 3 : 주변환경 색채조사(풍토색), | Page 4 : 주변환경(건축색) 색채조사,   |
| Page 5 : 색채기본방향,         | Page 6 : 색채팔레트,            |
| Page 7 : 상세계획 1(촉벽계획 등), | Page 8 : 상세계획 2(동호수 표기 등), |
| Page 9 : 입면계획 1(판상형 등),  | Page 10 : 입면계획 2(탑상형 등)    |

- 위와 같은 제출서류를 기본으로 하고, 건축유형과 배치상황에 따라 추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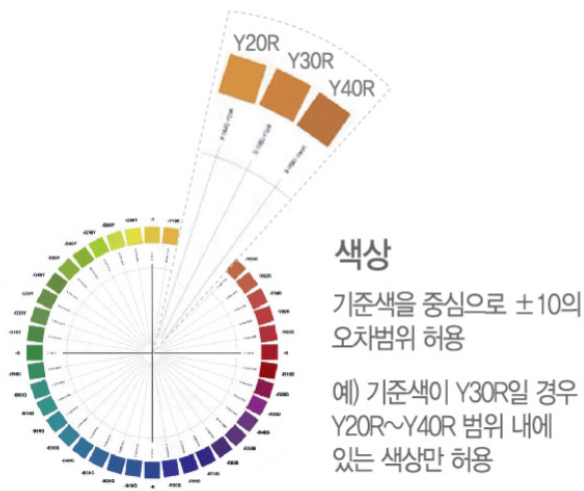


## 색채가이드라인의 오차허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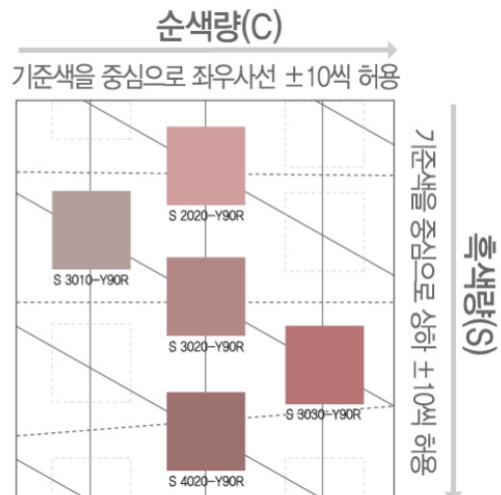
- 마감재의 유형은 인공마감재와, 자연마감재로 분류되며 색채 오차허용 범위는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인공마감재는 색의 오차 허용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자연마감재는 고유의 색상은 허용
- 염료 및 안료, 도장 등의 방식을 통해 색채가 표현되는 인공마감재는 차분한 이미지로 연출하되 용도별 지정 색채 범위를 따름
- 사시류의 경우 가능한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와 톤의 무채색 계열을 권장. 유채색 사용 시에는 용도별 지정 색채 범위를 따름
- 재료자체에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자연마감재는 건축물의 주조색으로 표현되는 경우, 순색량 30이상은 제한하며, 흑색량 60이하는 건축물 표면적의 50%이하로 사용할 수 있음
- 건축물의 고층부 사용시 흑색량 40이상, 순색량 20이하의 범위의 색만 사용 가능
- 건축물의 저층부 사용시 순색량 70이상은 제한하며, 흑색량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음
- 광택 및 반사율이 고려되어야 할 마감재는 건축물 규모에 비해 넓은 면적의 스텐레스 사용은 제한
- 유리소재는 투명, 저반사(반사율 10%내외) 유리 사용을 권장하며, 고반사 유리나 고채도 컬러유리 사용은 자제
- 기타 마감재는 상기에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재료는 건축허가 시 개별적으로 검토

## 소재색의 오차 허용범위

색의 오차 허용범위



명도, 채도 오차허용범위



## 6) 색채 기본구상

### 기본방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 구현을 위해 경관관점에서의 계획방향 제시
- 아름다운 도시 조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보다는 유도차원의 경관관리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구체적 경관관리구역 설정
- 주민의 경관의식 조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한 생활밀착형의 경관관리 방안 마련



## 기본원칙

### “자연과 동화되는 안정적인 색채”

- 주변환경과 어울려 돌출되지 않는 색채
- 비슷한 계열로 연속된 색채이미지 연출
- 원색의 돌출되는 색 사용을 지양한 색채계획



### “일관성이 느껴지는 정돈된 색채”

- 통일된 지붕색채로 인한 정돈된 이미지
- 한 단지에서 입면 색채와 패턴은 비슷하게 계획
- 연결하고 있는 건축 마감재료의 색수준은 동일하게 적용



### “기능적 구분으로 분리되는 색채”

- 고층, 중층, 저층으로 나뉘는 입면 색채
- 기단부와 상층부로 분리하여 색채 연출
- 강조와 소거부분을 명확히 하여 색채 적용



### “주변 환경과 연계되는 색채”

- 주변 환경과 어울려 돌출되지 않는 색채
- 연속적인 건물에 명도차이로 인한 톤 변화만 주어 연출
- 접한 건축물과 한가지 이상의 동일색을 사용하여 연계성을 높임



### “보행자 시선에서 변화하는 색채”

- 입면 형태나 소재에 따라 변화되는 색채 계획
- 명도와 채도에 변화를 주어 리듬감 있게 연출
- 공간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색채 적용



### “지역의 상징이 되는 독창적인 색채”

- 지역적 특징이 느껴지는 이미지
- 시설물에 상징색을 부여하여 개성있는 가로 경관 연출
- 문화적, 역사적 배경 등이 반영된 색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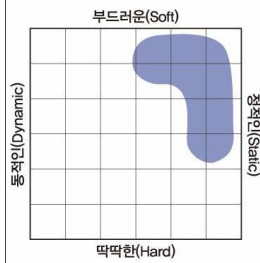


## 색채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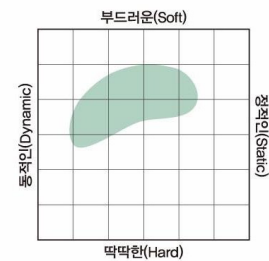
### • 권역별 색채구상

- 권역별 사용색채는 동일하나 사용방법을 구분하여 변화를 줌
- 수변관리권역은 서해안과 금강을 접하고 있어 명도를 높게 하고 light톤의 맑은 이미지로 연출
- 생태보존권역은 녹색문화 이미지를 보우하므로 중-저명도와 soft톤의 내추럴한 이미지로 연출
- 청정자연권역은 산지와 농경문화를 포함하므로 중-저명도와 soft톤의 내추럴한 이미지로 연출
- 생활중심권역은 시가화 예상지역이므로 명도를 높게 하고 bright톤의 밝은 이미지로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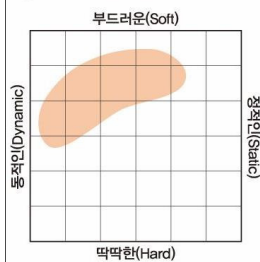
#### 수변관리권역 맑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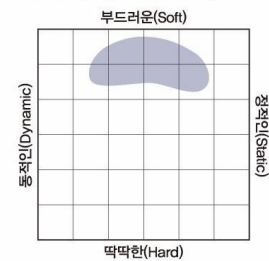
#### 청정지역권역 내추럴한 이미지



#### 생태보존권역 내추럴한 이미지



#### 생활중심권역 밝은 이미지



### • 용도별 색채구상

- 용도별로 건축물의 채도 색채위계를 설정하고 색을 적용하여 질서 있는 색채경관 연출

### • 시설별 색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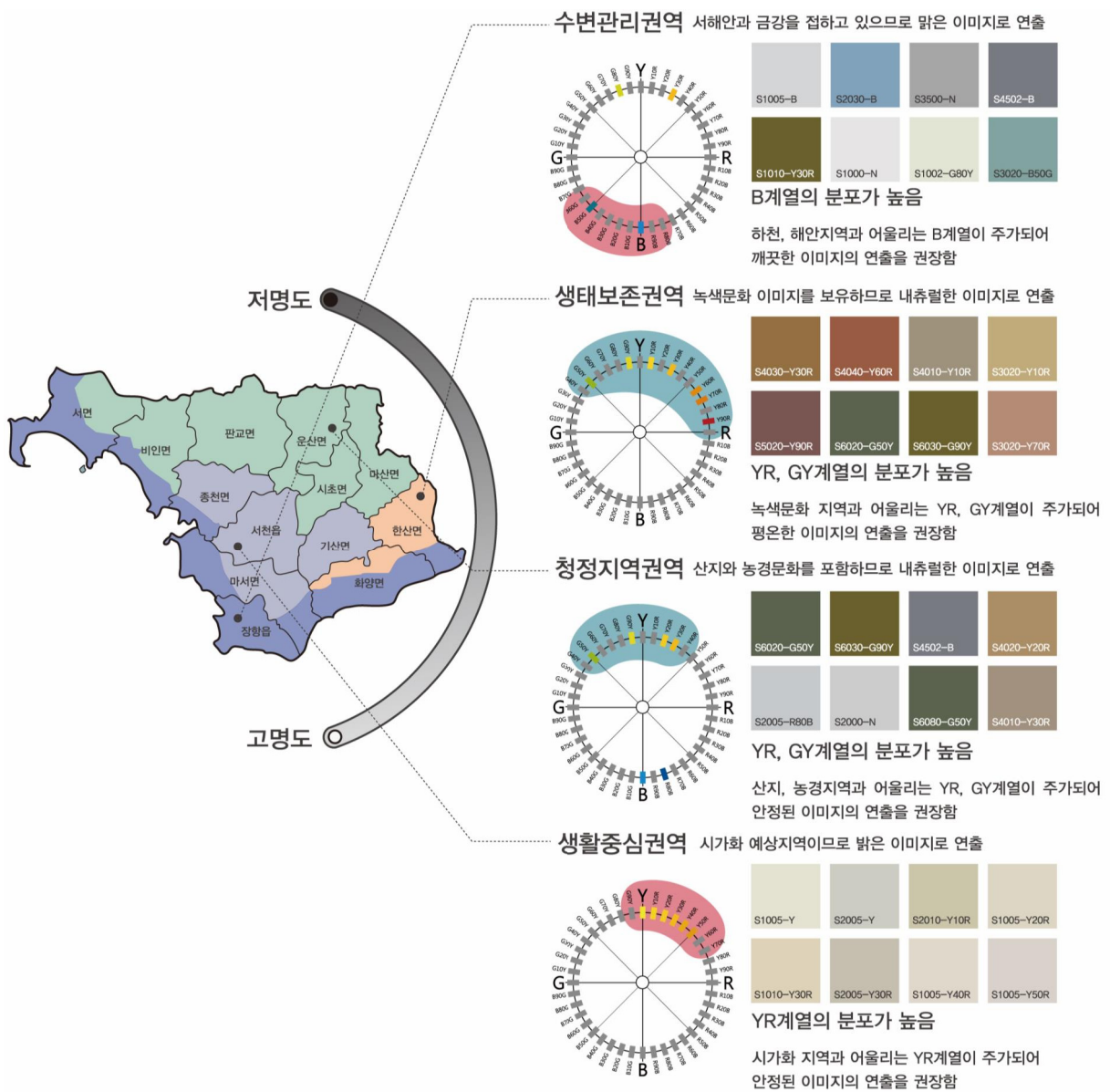
- 시설물의 역할에 따라 점, 선, 면적 형태로 구분하여 색채방향을 설정하여 적용



## 7) 권역별 색채기본계획

### 기본방향

- 시설물의 역할에 따라 점, 선, 면적 형태로 구분하여 색채방향을 설정하여 적용
- 점적인 요소는 가로시설물, 기반시설물 등이 이에 속하며 그레이쉬하면서 작은 부분에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 가능
- 선적인 요소는 보도블럭, 수변공간 등이 이에 속하며 중명도의 그레이 계열을 기본 색으로 함
- 면적인 요소는 녹지주변, 공동건축이 이에 속하며 고명도의 라이트그레이의 밝은 색을 기본 색으로 함



## 8) 용도별 색채기본계획

### 기본방향

- 용도별로 건축물의 채도 색채위계를 설정하고 색을 적용하여 질서 있는 색채경관 연출
-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순색량을 1정도 낮게 사용하여 우아한 이미지로 색채계획
- 단독주택의 순색량은 공업건축보다 낮게 사용하여 온화한 이미지로 색채계획
- 공업건축은 공공건축보다 1정도 낮은 순색량을 사용하여 모던한 이미지로 색채계획
- 공공건축은 상업건축보다 순색량을 낮게 계획하여 고상한 이미지로 색채연출
- 상업건축의 순색량은 공공건축보다 높게 연출하여 점잖은 색채이미지 구현



## ■ 단독주택(안정감과 질서정연한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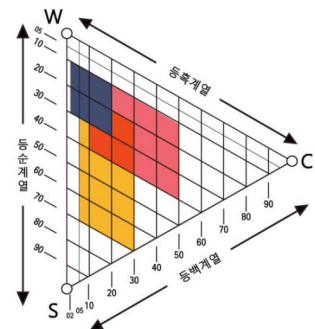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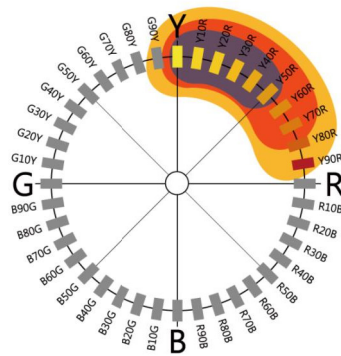
### 기본목표

- 개별주택의 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면서도 전체로서의 조화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

### 색채계획 기본방향

- YR의 색채 사용
- 중명도, 중·저채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은 유사색상계열에서 적용

|             |     |        |
|-------------|-----|--------|
| 주<br>조<br>색 | 색상  | Y~Y50R |
|             | 흑색량 | 10~30  |
|             | 순색량 | 2~20   |
| 보<br>조<br>색 | 색상  | Y~Y80R |
|             | 흑색량 | 10~40  |
|             | 순색량 | 10~50  |
| 강<br>조<br>색 | 색상  | Y~Y90R |
|             | 흑색량 | 20~70  |
|             | 순색량 | 5~30   |



#### 주조색 예시



#### 보조색 예시



#### 강조색 예시



#### 배색 예시

##### — 2색배색



##### — 3색배색



##### — 4색배색



##### — 2색배색



##### — 3색배색



##### — 4색배색



## ■ 공동주택(따뜻하고 정감있는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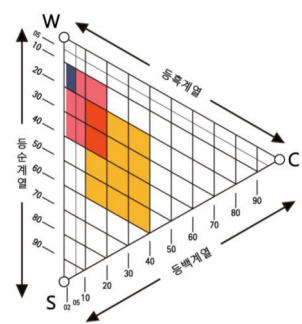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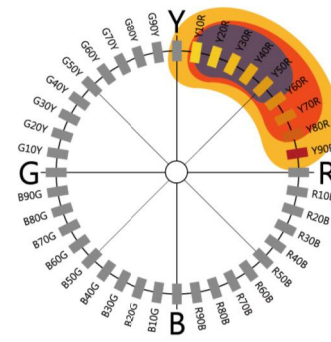
### 기본목표

- 주위 건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연속성 있게 배치하고, 조망경관 시 상징성과 함께 공동주택의 일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

### 색채계획 기본방향

- YR계열의 주조색채 사용
- 고·중명도, 중·저채도
- 공동주택은 위압감을 해소하는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 지양

|             |     |           |
|-------------|-----|-----------|
| 주<br>조<br>색 | 색상  | Y20R~Y50R |
|             | 흑색량 | 10~20     |
|             | 순색량 | 2~5       |
| 보<br>조<br>색 | 색상  | Y10R~Y80R |
|             | 흑색량 | 5~40      |
|             | 순색량 | 5~20      |
| 강<br>조<br>색 | 색상  | Y20R~Y90R |
|             | 흑색량 | 30~60     |
|             | 순색량 | 10~30     |



주조색 예시



보조색 예시



강조색 예시



배색 예시

- 2색배색



- 3색배색



- 4색배색



- 2색배색



- 3색배색



- 4색배색



## ■ 상업건축(역동성과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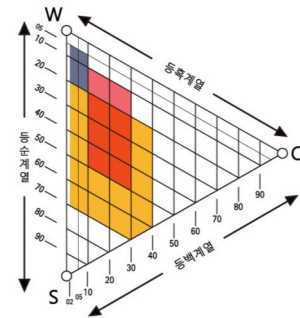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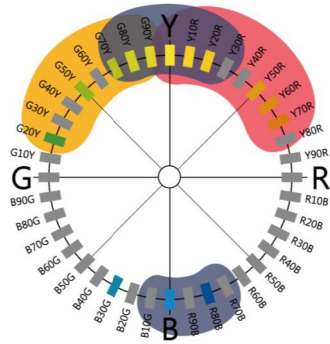
### 기본목표

- 상업 건축물의 개별성이 전체 속에서의 조화를 도모하며, 상업건축이 주는 활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출

### 색채계획 기본방향

- All Color 색채 사용
- 중명도, 중 · 저채도
- 전면공간은 건축 및 주변 포장과 연계성을 도모

|             |     |                   |
|-------------|-----|-------------------|
| 주<br>조<br>색 | 색상  | G80Y~Y20R, Y80R~B |
|             | 흑색량 | 5~20              |
|             | 순색량 | 2~10              |
| 보<br>조<br>색 | 색상  | G90Y~Y60R         |
|             | 흑색량 | 10~30             |
|             | 순색량 | 5~10              |
| 강<br>조<br>색 | 색상  | G20Y~Y20R, B~B30G |
|             | 흑색량 | 30~60             |
|             | 순색량 | 2~30              |



### 주조색 예시



### 보조색 예시



### 강조색 예시



### 배색 예시

#### - 2색배색



#### - 2색배색



#### - 3색배색



#### - 3색배색



#### - 4색배색



#### - 4색배색



## ■ 공업건축(깨끗하고 친근감 있는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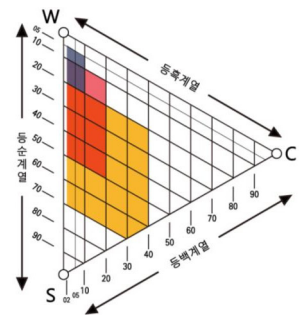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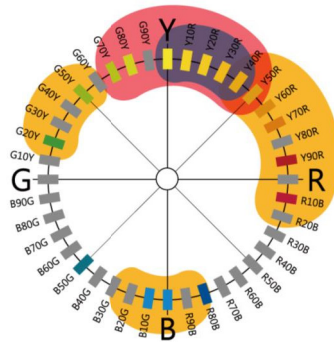
### 기본목표

- 공업건축이 가진 무겁고 위험하고 시끄러운 이미지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색채 연출

### 색채계획 기본방향

- All Color 색채 사용
- 고중명도, 중·저채도
- 높은 기둥이나 굴뚝은 원색의 강조색 사용 지양

|             |     |                      |
|-------------|-----|----------------------|
| 주<br>조<br>색 | 색상  | Y~Y30R, R80B~B       |
|             | 흑색량 | 10~20                |
|             | 순색량 | 2~10                 |
| 보<br>조<br>색 | 색상  | G80Y~Y60R, B40G~B50G |
|             | 흑색량 | 20~40                |
|             | 순색량 | 5~20                 |
| 강<br>조<br>색 | 색상  | G20Y~B10G            |
|             | 흑색량 | 30~60                |
|             | 순색량 | 10~30                |



주조색 예시



보조색 예시



강조색 예시



배색 예시

- 2색배색



- 3색배색



- 4색배색



- 2색배색



- 3색배색



- 4색배색





## ■ 공공건축(편안하고 부드러운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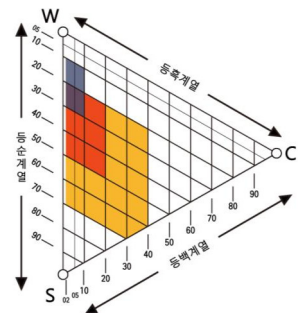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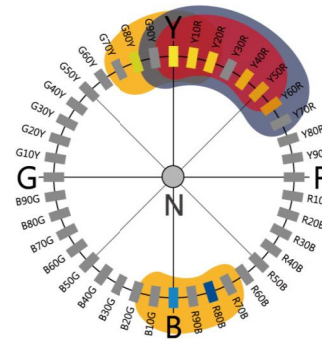
### 기본목표

- 지역민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그 이용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편안함 연출

### 색채계획 기본방향

- All Color 색채 사용
- 고중명도, 중·저채도
- 건물 상단에 어나 건물명 표기 지양

|             |     |                |
|-------------|-----|----------------|
| 주<br>조<br>색 | 색상  | Y~Y60R, R80B~B |
|             | 흑색량 | 10~30          |
|             | 순색량 | 2~5            |
| 보<br>조<br>색 | 색상  | R80B~Y50R      |
|             | 흑색량 | 20~45          |
|             | 순색량 | 2~20           |
| 강<br>조<br>색 | 색상  | R80B~Y60R      |
|             | 흑색량 | 30~50          |
|             | 순색량 | 5~30           |



주조색 예시



보조색 예시



강조색 예시



배색 예시

- 2색배색



- 3색배색



- 4색배색



- 2색배색



- 3색배색



- 4색배색





## ■ 시설별 색채 기본계획

- 시설물의 역할에 따라 점, 선, 면적 형태로 구분하여 색채방향을 설정하여 적용
- 점적인 요소는 가로시설물, 기반시설물 등이 이에 속하며 그레이쉬하면서 작은 부분에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 가능
- 선적인 요소는 보도블럭, 수변공간 등이 이에 속하며 중명도의 그레이 계열을 기본 색으로 함
- 면적인 요소는 녹지주변, 공동건축이 이에 속하며 고명도의 라이트그레이의 밝은 색을 기본 색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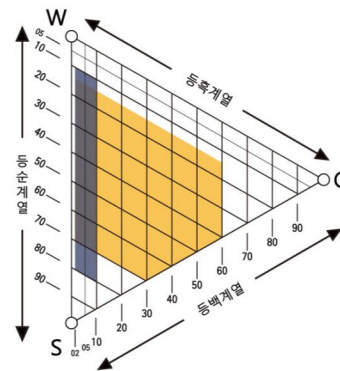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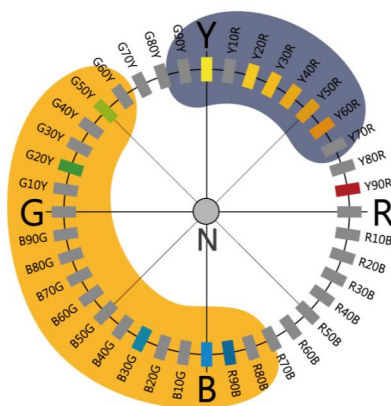
## ■ 가로시설물(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

### 기본목표

-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색채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강조색으로 분위기를 경쾌하게 연출

### 색채계획 기본방향

- All color 색채 사용
- 고 · 중명도, 중 · 저채도
- 과도한 패턴 및 고채도의 색 사용을 지양



### 색상범위

|             |     |                      |
|-------------|-----|----------------------|
| 기<br>조<br>색 | 색상  | Y~Y80R,<br>R90B~B, N |
|             | 흑색량 | 10~80                |
|             | 순색량 | 2~10                 |

|             |     |                         |
|-------------|-----|-------------------------|
| 강<br>조<br>색 | 색상  | Y10R~R10B,<br>R90B~G50Y |
|             | 흑색량 | 15~70                   |
|             | 순색량 | 2~60                    |

### 기조색 예시



### 상징색 예시



### 배색 예시

#### - 2색배색



#### - 4색배색



#### - 2색배색



#### - 4색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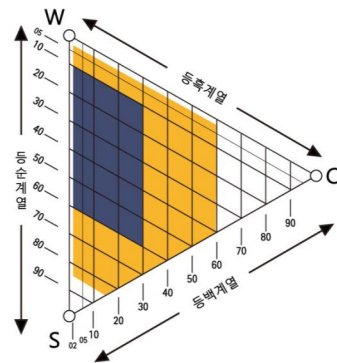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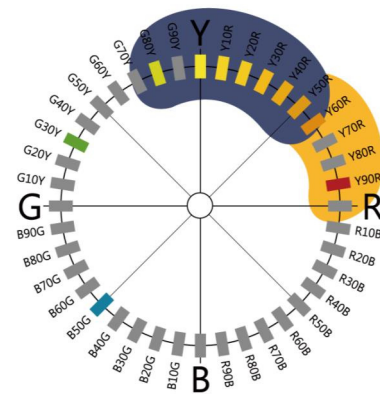
## ■ 옥외광고물(건축물 이미지에 맞는 색)

### 기본목표

- 가독성, 정보성, 연속성에 의해 가로 전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

### 색채계획 기본방향

- all Color 색채 사용
- 고·중명도, 중·저채도
- 현수막 색은 하나의 색으로 통일되지 않게 계획



### 색상범위

|             |     |                         |
|-------------|-----|-------------------------|
| 바<br>탕<br>색 | 색상  | G80Y~Y50R,<br>R80B~B, N |
|             | 흑색량 | 10~60                   |
|             | 순색량 | 2~30                    |

|             |     |           |
|-------------|-----|-----------|
| 글<br>자<br>색 | 색상  | All Color |
|             | 흑색량 | 2~85      |
|             | 순색량 | 2~60      |

### 바탕색 예시



### 글자색 예시



### 배색 예시



## 9) 색채 가이드라인의 적용

### ■ 주택 색채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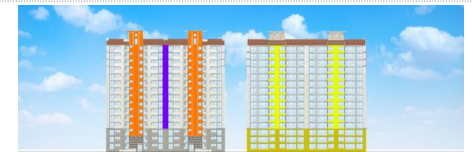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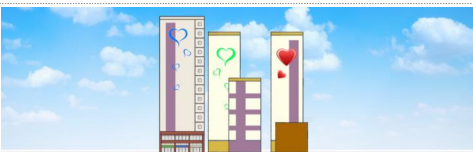
- 서천군 전지역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과 상업지역내 주거 면적이 30%이상인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 Check list

| 구분   |          | 지침내용                                 |                                       | 권장 | 필수 |
|------|----------|--------------------------------------|---------------------------------------|----|----|
| 단독주택 | 기본원칙     | • 개성과 자율성 최대한 부여, 전체와의 조화 유지         |                                       |    | ○  |
|      | 주조색      | 범위                                   | • 색상 Y~Y50R<br>/흑색량 10~30 / 순색량 2~20  | 예시 | ○  |
|      |          | 면적                                   | • 70% 이상                              |    |    |
|      | 보조색      | 범위                                   | • 색상 Y~Y80R<br>/흑색량 10~40 / 순색량 10~50 | 예시 | ○  |
|      |          | 면적                                   | • 20~30%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Y~Y90R<br>/흑색량 20~70 / 순색량 5~30  | 예시 | ○  |
|      |          | 면적                                   | • 5% 이내                               |    |    |
|      | 유사색      | • 2가지 이상의 색 사용시 유사색상범위 내에서 사용        |                                       | ○  |    |
|      | 그래픽      | • 담장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    | ○  |
|      | 소재색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 사용       |                                       | ○  |    |
|      | 지붕       | • 갈색계열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          |                                       | ○  |    |
|      | 옥상       | • 옥상설비와 바닥은 채도20 이하의 저채도색 사용         |                                       | ○  |    |
|      | 담장,옹벽    | • 주변건축물보다 채도를 낮게 사용하고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   |                                       | ○  |    |
|      | 창틀,문     | • 입면색과 유사계열로 명도만 조절하여 강조되지 않게 사용     |                                       | ○  |    |
|      | 점포형 주거   | • 점포층과 주거층이 구분되도록 색을 적용              |                                       | ○  |    |
|      | 우편함      | • 고채도 사용을 금하며 건축물과 비슷한 색으로 채도를 낮게 사용 |                                       | ○  |    |
|      | 캐노피      | • 대문 및 출입문과 동일하거나 유사색으로 계획           |                                       | ○  |    |
|      | 대문 및 출입문 | • 건축물색과 유사계열에서 강조하여 주목성을 높임          |                                       | ○  |    |
|      | 채도기준     | • 교통안전표시 또는 사인보다 낮은 채도의 색을 사용        |                                       | ○  |    |
|      | 펜스       | • 순색량 15 이하의 저채도색으로 나뭇잎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함 |                                       | ○  |    |

| 구분   |        | 지침내용 |                                                                      |    |  | 권장 | 필수 |   |
|------|--------|------|----------------------------------------------------------------------|----|--|----|----|---|
| 공동주택 | 기본원칙   |      | · 주위 건물과 조화되도록 연속성 유지                                                |    |  |    |    | ○ |
|      |        |      | · 조망경관에서의 상징성, 일체성 확보                                                |    |  |    |    | ○ |
|      | 사용색 수  |      |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  |    |    | ○ |
|      | 주조색    | 범위   | · 주조색: 색상 Y20R~Y50R, N / 흑색량 10~20 / 순색량 2~5                         | 예시 |  |    |    | ○ |
|      |        | 면적   | · 70% 이상                                                             |    |  |    |    | ○ |
|      | 보조색    | 범위   | · 색상 Y10R~Y80R / 흑색량 5~40 / 순색량 5~20                                 | 예시 |  |    |    | ○ |
|      |        | 면적   | · 30% 이내                                                             |    |  |    |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Y20R~Y90R / 흑색량 30~60 / 순색량 10~30                               | 예시 |  |    |    | ○ |
|      |        | 면적   | · 5% 이내                                                              |    |  |    |    | ○ |
|      | 소재색    |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
|      | 그래픽    |      | · 슈퍼그래픽 등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  |    |    | ○ |
|      | 판상형    |      | · 15층 이상 판상형은 상층, 중층, 저층부로 구분하여 계획                                   |    |  |    |    | ○ |
|      | 탑상형    |      | · 탑상형은 저층, 그 이상의 층으로 구분하여 계획 가능                                      |    |  |    | ○  |   |
|      | 연립주택   |      | · 연립주택은 단색으로 계획 가능                                                   |    |  |    | ○  |   |
|      | 상층부    |      | · 상층으로 갈수록 고명도 색채의 사용                                                |    |  |    | ○  |   |
|      | 저층부    |      | · 저층부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중저채도의 차분한 색채 사용                                     |    |  |    | ○  |   |
|      |        |      | · 기단부 마감 재료수는 많지 않게 하며 2개 이상시 색상차가 크지 않게 적용                          |    |  |    | ○  |   |
|      | 지붕     |      | · 지붕색은 갈색계열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                                     |    |  |    | ○  |   |
|      | 설비,물딩  |      | · 입면색과 동일하거나 유사계열의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                                     |    |  |    | ○  |   |
|      | 근린생활시설 |      | · 근린생활시설은 상품, 광고물을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                                |    |  |    | ○  |   |
|      | 창틀,난간  |      | · 입면색과 유사계열로 명도만 조절하여 강조되지않게 사용                                      |    |  |    | ○  |   |
|      | 부대시설   |      | · 옥상설비와 바닥은 채도20 이하의 저채도색 사용                                         |    |  |    | ○  |   |
|      | 담장, 옹벽 |      | · 주변건축물보다 채도를 낮게 사용하고 자연친화적 재료사용                                     |    |  |    | ○  |   |
|      | 펜스     |      | · 가로시설물 색채 설계지침을 준수, 순색량 15이하 색 사용                                   |    |  |    | ○  |   |
|      | 측벽     |      | · 형태를 고려하여 단순한 패턴과 중· 저채도의 색을 적용                                     |    |  |    | ○  |   |
|      |        |      | · 마을명, 동호수, 건설사 로고 등의 색채는 외장색채와 유사 조화                                |    |  |    | ○  |   |
|      |        |      | · 건설사 로고는 10개 동 이하에서는 1개 이내, 20개동 이하에서는 3개 이내, 20개 동 이하에서는 4개 이하로 사용 |    |  |    | ○  |   |
|      |        |      | · 9층이하의 낮은 건물은 상층부 동번호 표기 제외 가능                                      |    |  |    | ○  |   |
|      |        |      | · 마을명, 동번호의 크기 및 위치는 측벽 그래픽 표기법 준수                                   |    |  |    | ○  |   |
|      |        |      | · 측벽의 슈퍼그래픽은 금함(단,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                                |    |  |    |    | ○ |
|      | 보도포장   |      | · 보도포장은 단순한 패턴으로 저채도의 유사계열로 계획                                       |    |  |    | ○  |   |
|      | 출입구    |      | · 동출입구는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을 금지                                              |    |  |    | ○  |   |
|      |        |      | · 건축물과 채도와 명도를 비슷하게 연출                                               |    |  |    | ○  |   |



| 구분   | 권장 (○)                                                                                                        | 지양 (×)                                                                                                       |
|------|---------------------------------------------------------------------------------------------------------------|--------------------------------------------------------------------------------------------------------------|
| 단독주택 | <br>2가지 이상 사용시 유사색으로 계획      | <br>2가지이상의 상이한 색 사용        |
|      | <br>근접한 건축물과 동일한 색이나 유사색을 적용 | <br>근접한 건축물과 이질감 있는 색 사용   |
|      | <br>그래픽 사용을 자제해 주변경관과 조화     | <br>과도한 그래픽 사용             |
|      | <br>통일된 지붕색채                | <br>이질적이고 자연 경관을 해치는 지붕색채 |
|      | <br>건축물보다 채도가 낮은 담장        | <br>건축물보다 채도가 높은 담장      |
|      |                                                                                                               |                                                                                                              |
| 공동주택 | <br>단지별 통일된 이미지 연출         | <br>다양한 색으로 색채계획         |
|      | <br>연속성이 느껴지는 유사계열로 색채계획   | <br>다양한 색으로 색채계획         |
|      | <br>세로 면분할로 변화감 부여한 판상형    | <br>이질적인 면분할을 적용한 판상형    |
|      | <br>저채도의 절제된 그래픽을 적용한 입면계획 | <br>과도한 그래픽을 적용한 입면      |
|      |                                                                                                               |                                                                                                              |



## ■ 상업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 서천군 전지역내 상업건축물

### Check list

| 구분    |    | 지침내용                                                    | 권장     | 필수 |
|-------|----|---------------------------------------------------------|--------|----|
| 기본원칙  |    | • 상업건축물의 개별성이 전체와 조화를 도모하고 활기참을 연출                      |        | ○  |
| 주조색   | 범위 | • 색상 G80Y~Y20R, R80R~B<br>/ 흑색량 5~20/ 순색량 2~10          | 예시<br> | ○  |
|       | 면적 | • 60% 이상                                                |        |    |
| 보조색   | 범위 | • 색상 G90Y~Y60R<br>/ 흑색량 10~30 / 순색량 5~10                | 예시<br> | ○  |
|       | 면적 | • 30% 내외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G20Y~Y20R, B~B30G<br>/ 흑색량 30~60 / 순색량 2~30        | 예시<br> | ○  |
|       | 면적 | • 10% 이내                                                |        |    |
| 연속성   |    |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                              | ○      |    |
| 유사색   |    | • 2가지 이상의 색 사용시 유사색상범위 내에서 사용                           | ○      |    |
| 그래픽   |    | • 건축입면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 ○  |
| 소재색   |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지붕색   |    | • 지붕색은 갈색계열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 유지                         | ○      |    |
| 창틀,난간 |    | • 입면색과 유사계열로 명도만 조절하여 강조되지 않게 사용                        | ○      |    |
| 옥상    |    | • 옥상설비와 바닥은 채도20이하의 저채도 색을 사용                           | ○      |    |
| 차양막   |    | • 차양막은 중채도 이하의 색을 사용하고 동일건물은 동일한색으로 통일감을 유지             | ○      |    |
| 전면공간  |    | • 전면공간은 건축 및 주변포장과 연계성을 도모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함                 | ○      |    |
| 연결구조물 |    | • 연결구조물은 건물입면과 유사한 색을 적용                                | ○      |    |
| 재료사용수 |    | • 재료와 색채 사용수를 제한하여 복잡하지 않게 연출                           | ○      |    |
| 외벽    |    | • 노출된 건물 외벽은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유사하게 사용                         | ○      |    |
| 유리    |    | • 유리가 건물의 70%이상이면서 고채도 착색유리가 아닐 경우 사용색 범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 ○      |    |
| 옥외광고물 |    |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색채 설계지침에 준하여 적용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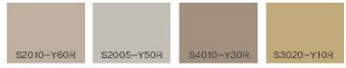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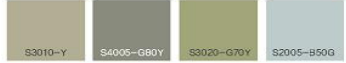
| 권장 (○)                | 지양 (×)                |
|-----------------------|-----------------------|
| <br>인접 건축물과 유사한 색채 사용 | <br>이질적 색채사용으로 통일감 결여 |
| <br>3색이내의 유사색으로 적용    | <br>3색이상의 이질적인 색 사용   |

## ■ 공업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 서천군 전지역내 공업건축물

### Check list

| 구분     |    | 지침내용                                                |        |                                                                                      |  | 권장 | 필수 |
|--------|----|-----------------------------------------------------|--------|--------------------------------------------------------------------------------------|--|----|----|
| 기본원칙   |    | · 공업건축 특유의 이미지를 저감시키는 깨끗하고 친근감 있는 색채연출              |        |                                                                                      |  |    | ○  |
| 주조색    | 범위 | · 색상 Y~Y30R, R80B~B<br>/ 흑색량 20~40 / 순색량 5~20       | 예<br>시 |    |  |    | ○  |
|        | 면적 | · 70% 이상                                            |        |    |  |    |    |
| 보조색    | 범위 | · 색상 G80Y~Y60R, B40G~B50G<br>/ 흑색량 20~40 / 순색량 5~20 | 예<br>시 |    |  | ○  |    |
|        | 면적 | · 30% 이내                                            |        |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G20Y~B10G<br>/ 흑색량 30~60 / 순색량 10~30           | 예<br>시 |   |  | ○  |    |
|        | 면적 | · 5% 이내                                             |        |  |  |    |    |
| 사용색수   |    | ·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2~3가지의 이내 색채로 계획                      |        |                                                                                      |  |    | ○  |
| 강조색수   |    | · 강조색을 적용할 경우 2가지 이내의 색으로 제한                        |        |                                                                                      |  |    | ○  |
| 시설집적   |    | · 시설이 집적된 장소 또는 산업단지는 사업소간의 통일감 있는 색채계획             |        |                                                                                      |  |    | ○  |
| 거대시설   |    | · 규모와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위압감을 해고하는 색채 사용              |        |                                                                                      |  |    | ○  |
| 연속성    |    |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 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을 유지               |        |                                                                                      |  | ○  |    |
| 유사색    |    | · 2가지 이상의 색 사용시 유사색상 범위 내에서 사용                      |        |                                                                                      |  | ○  |    |
| 고채도 강조 |    | ·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은 금지                 |        |                                                                                      |  |    | ○  |
| 그래픽    |    | · 담장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                                                                                      |  |    | ○  |
| 소재색    |    | · 최대한 제시한 색상 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
| 지붕색    |    | · 건축색과 유사계열의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며 지붕에 CI, BI의 적용을 금지        |        |                                                                                      |  | ○  |    |
| 기둥, 굴뚝 |    | · 높은기둥이나 굴뚝은 원색의 강조색 사용을 금지                         |        |                                                                                      |  | ○  |    |
| 패턴     |    | · 장방향의 건축물은 세로의 면으로 분절하여 위압감이 해소되도록 함               |        |                                                                                      |  | ○  |    |
| 옹벽     |    | · 건물과 색차가 없는 돌출되지 않는 색채를 사용                         |        |                                                                                      |  | ○  |    |
| 펜스     |    | · 펜스는 가로시설물 색채설계지침을 준수하고, 순색량 15이하 색을 사용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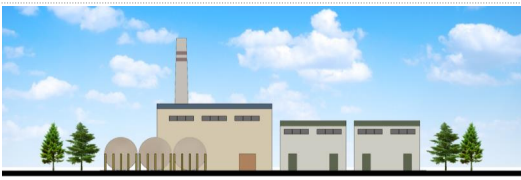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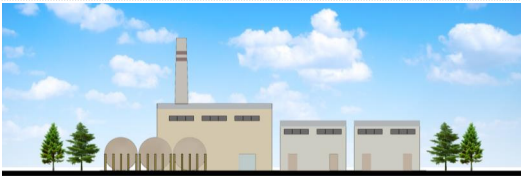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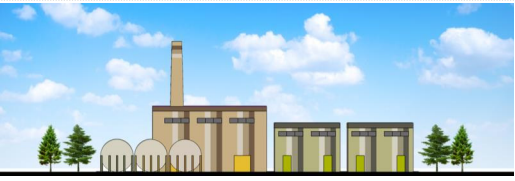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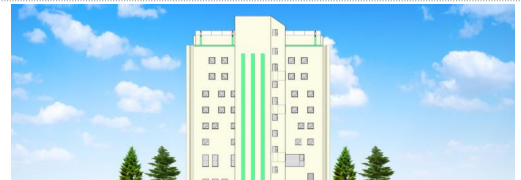
## ■ 공공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 서천군 전지역내 공공건축물

### Check list

| 구분   |    | 지침내용                                         |        |                                                                                      |  | 권장 | 필수 |  |   |
|------|----|----------------------------------------------|--------|--------------------------------------------------------------------------------------|--|----|----|--|---|
| 기본원칙 |    | · 지역민과의 교류촉진을 도모하고, 이용성 극대화를 위한 편안한 색채연출     |        |                                                                                      |  |    | ○  |  |   |
| 주조색  | 범위 | · 색상 Y~Y60R, R80B~B<br>/ 흑색량 10~30 / 순색량 2~5 | 예<br>시 |    |  |    |    |  | ○ |
|      | 면적 | · 60% 이상                                     |        |                                                                                      |  |    |    |  |   |
| 보조색  | 범위 | · 색상 R80B~Y50R<br>/ 흑색량 20~45 / 순색량 2~20     | 예<br>시 |   |  |    |    |  | ○ |
|      | 면적 | · 20~30%                                     |        |                                                                                      |  |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R80B~Y60R<br>/ 흑색량 30~50 / 순색량 5~30     | 예<br>시 |  |  |    |    |  | ○ |
|      | 면적 | · 10% 이내                                     |        |                                                                                      |  |    |    |  |   |
| 사용색수 |    | ·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                                                                                      |  | ○  |    |  |   |
| 연속성  |    |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을 유지         |        |                                                                                      |  | ○  |    |  |   |
| 유사색  |    |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범위내에서 사용                  |        |                                                                                      |  | ○  |    |  |   |
| 배색   |    | ·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 가능        |        |                                                                                      |  | ○  |    |  |   |
| 유리색  |    | · 유리는 고채도 색유리를 제외하고 사용색 범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        |                                                                                      |  | ○  |    |  |   |
| 그래픽  |    | · 담장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                                                                                      |  |    | ○  |  |   |
| 소재색  |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  |   |
| 지붕색  |    | · 건축색과 유사계열의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며 지붕에 C, B의 적용을 금지   |        |                                                                                      |  |    | ○  |  |   |
| 마감재료 |    | · 마감재료의 종류는 3가지를 넘지않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색채를 사용   |        |                                                                                      |  | ○  |    |  |   |
| 옹벽   |    | · 옹벽은 돌출되지 않는 색채, 친자연적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계획      |        |                                                                                      |  | ○  |    |  |   |
| 지붕   |    | · 지붕색은 갈색계열, 회색계열로 적용                        |        |                                                                                      |  |    | ○  |  |   |
| 펜스   |    | · 펜스는 가로시설물 색채 설계지침을 준수하고, 순색량 15이하 색을 사용    |        |                                                                                      |  |    | ○  |  |   |
| 건물명  |    | · 건물상단에 C나 건물명을 과도하게 표기하는 것을 금지              |        |                                                                                      |  |    | ○  |  |   |
| 마감재료 |    | · 마감재료와 색채선정은 건축물 용도에 맞게 계획                  |        |                                                                                      |  | ○  |    |  |   |
| 공공시설 |    | · 공공업무시설은 신뢰감을 주는 회색조의 차분한 색채계획              |        |                                                                                      |  |    | ○  |  |   |
| 문화시설 |    | · 문화시설은 난색계열의 저채도 색채로 친근감있는 색채계획             |        |                                                                                      |  |    | ○  |  |   |
| 교육시설 |    | · 교육연구시설은 중고채도의 강조색으로 경쾌한 색채계획               |        |                                                                                      |  |    | ○  |  |   |

| 구분        | 권장 (○)                                                                                                     | 지양 (×)                                                                                                     |
|-----------|------------------------------------------------------------------------------------------------------------|------------------------------------------------------------------------------------------------------------|
| 공업<br>건축물 | <br>넓은 면적에 저채도의 색채 사용     | <br>넓은 면적에 고채도의 돌출색 사용   |
|           | <br>3색이내의 유사색 사용          | <br>과도한 색채 사용            |
|           | <br>통일된 지붕색채              | <br>이질적이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지붕색채 |
|           | <br>정리된 그래픽과 차분한 색채 사용   | <br>과도한 그래픽과 색채 사용      |
|           |                                                                                                            |                                                                                                            |
| 공공<br>건축물 | <br>차분한 저채도의 공공시설       | <br>부적합한 고채도 색 적용      |
|           | <br>중저채도의 난색계열 사용       | <br>과도한 고채도 색 사용       |
|           | <br>작은 면적에 경쾌한 강조색 사용   | <br>특색없는 색 적용          |
|           | <br>외장색과 동일계열의 저명도 색 창틀 | <br>고채도의 돌출된 창틀 색      |
|           |                                                                                                            |                                                                                                            |

## ■ 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가로시설물, 기반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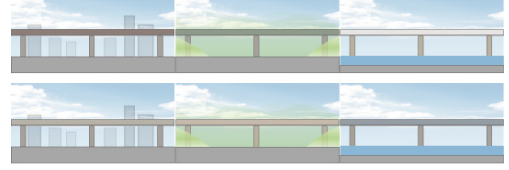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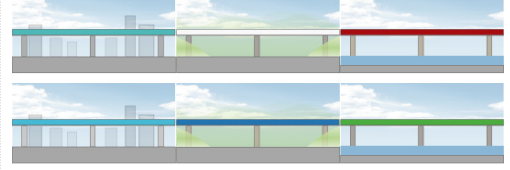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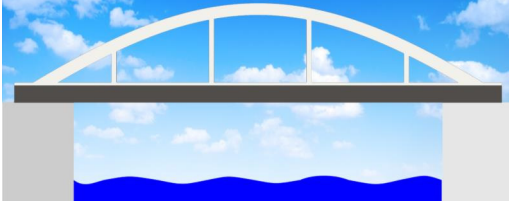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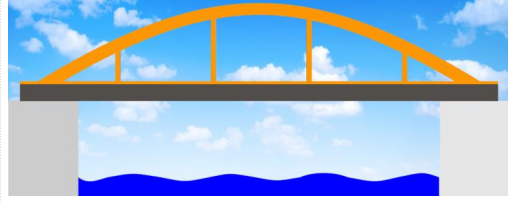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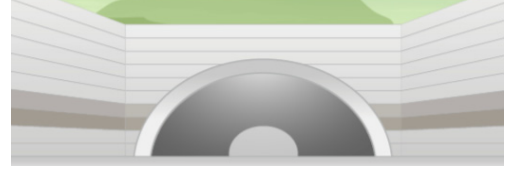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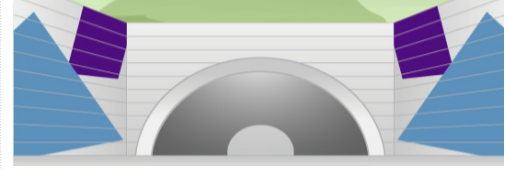
- 적용대상 : 서천군 전지역내 가로시설물

#### Check list

| 구분        |      |                                                     | 지침내용                                                   |        |  |   | 권장 | 필수 |
|-----------|------|-----------------------------------------------------|--------------------------------------------------------|--------|--|---|----|----|
| 가로<br>시설물 | 기본원칙 |                                                     | ·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안전한 색채 선택, 필요한 경우 강조색으로 경쾌한 분위기 연출        |        |  |   |    | ○  |
|           | 기조색  | 범위                                                  | · 색상 Y~Y60R, N<br>/ 흑색량 10~70<br>/ 순색량 2~10            | 예<br>시 |  |   | ○  |    |
|           |      | 면적                                                  | · 90% 이상                                               |        |  |   |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20Y~Y90R, R90B~B30G<br>/ 흑색량 30~70<br>/ 순색량 10~50 | 예<br>시 |  |   | ○  |    |
|           |      | 면적                                                  | · 5~10%                                                |        |  |   |    |    |
|           | 사용색수 |                                                     |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  |   | ○  |    |
|           | 연속성  |                                                     |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 유지                    |        |  |   | ○  |    |
|           | 유사색  |                                                     |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범위 내에서 사용                           |        |  |   | ○  |    |
|           | 소재색  |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
|           | 배색   |                                                     | · 과도한 색채사용을 억제하고, 단색이나 2~3가지 이내로 색채계획                  |        |  |   |    | ○  |
|           |      |                                                     | · 시설물의 형태감을 부각시키는 명도대비에 의한 배색 권장                       |        |  |   | ○  |    |
|           | 정보내용 |                                                     | · 문자, 픽토그램 등은 가로시설물색과 흑색량 30이상 차이                      |        |  |   | ○  |    |
|           |      |                                                     | · 문자, 픽토그램 등은 1~2가지의 색채를 사용                            |        |  |   | ○  |    |
|           |      |                                                     | · 문자, 픽토그램 등은 가로시설물과 조화로운 서체 사용                        |        |  |   | ○  |    |
|           | 선적요소 |                                                     | · 가로등, 펜스 등의 선적요소는 기조색을 사용                             |        |  |   | ○  |    |
|           | 점적요소 |                                                     | · 버스쉘터, 휴지통 등 점적요소는 기조색 사용과 기능에 따라 상징색 사용이 가능          |        |  |   | ○  |    |
|           | 면적요소 |                                                     | · 안전시설은 부분적으로 상징색을 사용하여 주목성을 높임                        |        |  |   | ○  |    |
| 기반<br>시설물 | 기본원칙 |                                                     | · 연속성과 상징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형태가 부각되며 자연과 조화되도록 함        |        |  |   |    | ○  |
|           | 순응색  | 범위                                                  | · 색상 Y~Y40R, N<br>/ 흑색량 5~20 / 순색량 0~10                | 예<br>시 |  |   | ○  |    |
|           |      | 면적                                                  | · 80% 이상                                               |        |  |   |    |    |
|           | 조화색  | 범위                                                  | · 색상 B60G~G50Y, Y20R~R, N<br>/ 흑색량 30~40 / 순색량 0~10    | 예<br>시 |  |   | ○  |    |
|           |      | 면적                                                  | · 20% 이내                                               |        |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Y20R~Y50R, B10G~G50Y<br>/ 흑색량 20~60 / 순색량 5~50 | 예<br>시                                                 |        |  | ○ |    |    |
|           | 면적   | · 5% 이내                                             |                                                        |        |  |   |    |    |

| 구분        |            | 지침내용                                            | 권장 | 필수 |
|-----------|------------|-------------------------------------------------|----|----|
| 기반<br>시설물 | 사용색수       |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  |    |
|           | 연속성        |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 유지             | ○  |    |
|           | 유사색        |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 범위 내에서 사용                   | ○  |    |
|           | 소재색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배색         | · 2가지 이상의 색채 사용시 유사색상 범위내에서 사용                  | ○  |    |
|           | 상징시설물      | · 상징교량등은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역할에 따라 색을 선정 후 사용          | ○  |    |
|           | 대규모<br>시설물 | · 장대교 및 500m 이상의 방음벽은 채도가 낮은 단색으로 적용            | ○  |    |
|           | 소규모<br>시설물 | · 소규모의 시설물중 육교의 계단과 교량 등은 구조물의 부위별 색을 통일감 있게 사용 | ○  |    |
|           | 패턴         | · 방음벽등 연속적인 구조물은 수직적 분절로 변화감 부여                 | ○  |    |
|           | 복잡한 형태     | · 교량 등 구조물의 형태가 복잡한 구조물은 단색으로 계획                | ○  |    |
|           | 단순한 형태     | · 방음벽 등 연속적인 구조물은 수직적 분절로 변화미 부여                | ○  |    |
|           | 지하차도       | · 지하차도는 밝고 경쾌한 색채를 사용하고, 과도하지 않은 그래픽 가능         | ○  |    |
|           | 조형물        | · 조형물 디자인은 디자인 개념에 맞추어 자유롭게 계획 가능               | ○  |    |



| 구분     | 권장 (○)                                                                                                               | 지양 (×)                                                                                                           |
|--------|----------------------------------------------------------------------------------------------------------------------|------------------------------------------------------------------------------------------------------------------|
| 가로 시설물 | <br>통합적인 시설물 색채계획                   | <br>정체성 없는 다양한 색 사용            |
|        | <br>근접한 대상물에 동일색 적용                 | <br>연속성 없는 색 사용                |
|        | <br>저채도의 색 사용                       | <br>이질적이고 자연 경관을 해치는 고채도의 색 사용 |
|        | <br>주목성을 높이는 부분 강조색 사용             | <br>넓은 면적의 강조색 사용             |
|        | <br>저채도의 단일색 적용                   | <br>고채도의 다양한 색 적용            |
| 기반 시설  | <br>설치 위치에 따른 순응, 조화, 강조에 의한 색 사용 | <br>설치위치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색 사용   |
|        | <br>2가지이상 적용 시 유사색상 범위에서 사용       | <br>유사하지 않은 범위의 색 사용         |
|        | <br>유사색의 절제된 색 적용                 | <br>과도한 그래픽 적용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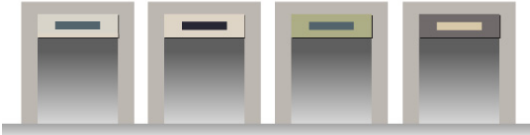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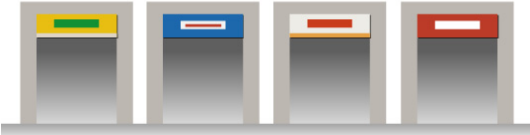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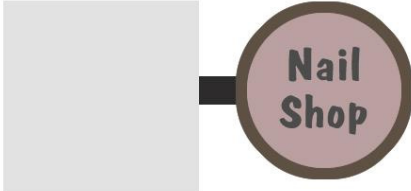


## 옥외광고물 색채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 서천군 전지역내 옥외광고물

### Check list

| 구분    | 지침내용                                           |                                              |    |                                                                                    | 권장 | 필수 |
|-------|------------------------------------------------|----------------------------------------------|----|------------------------------------------------------------------------------------|----|----|
| 기본원칙  | • 가독성, 정보성, 연속성에 의해 가로 전체의 질서를 유지 할 수 있는 색채 계획 |                                              |    |                                                                                    |    | ○  |
|       |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 이용행태를 고려한 색채 사용             |                                              |    |                                                                                    |    | ○  |
| 바탕색   | 범위                                             | • 색상 G80Y~Y50R N<br>/ 흑색량 5~60<br>/ 순색량 2~20 | 예시 |  | ○  |    |
| 글자색   | 범위                                             | • 색상 all color<br>/ 흑색량 5~85<br>/ 순색량 2~50   | 예시 |  | ○  |    |
| 사용색수  |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    |                                                                                    | ○  |    |
| 연속성   | •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 유지                      |                                              |    |                                                                                    | ○  |    |
| 유사색   |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범위 내에서 사용                   |                                              |    |                                                                                    | ○  |    |
| 소재색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
| 가로형간판 | • 가로형 간판의 판형은 동일건물에서 색을 통일하여 사용                |                                              |    |                                                                                    | ○  |    |
| 돌출형간판 | • 돌출형 간판은 강조색 사용을 지양하고, 중저채도의 색으로 통일하여 돌출색을 방지 |                                              |    |                                                                                    | ○  |    |
| 지주형간판 | • 지주형 간판은 색을 통일하여 사용                           |                                              |    |                                                                                    | ○  |    |
| 현수막   | • 현수막색은 하나의 색으로 돌출되지않게 계획                      |                                              |    |                                                                                    | ○  |    |
| 차양막   | • 동일 건물 내에서 차양막의 색채는 통일                        |                                              |    |                                                                                    | ○  |    |
| 주거지역  | • 주거지역은 저채도의 색채 사용으로 차분한 이미지 부여                |                                              |    |                                                                                    | ○  |    |
| 상업지역  | • 상업지역은 중채도 이하의 색사용으로 경쾌한 이미지 부여               |                                              |    |                                                                                    | ○  |    |
| 문화자원  | • 문화자원이나 자연자원 주변은 문화, 자연 배려한 색채 사용             |                                              |    |                                                                                    | ○  |    |
| 사용부위  | • 옥외광고물은 사용부위에 따라 배경색과 글자색으로 구분                |                                              |    |                                                                                    | ○  |    |
| 그래픽   | • 배경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    |                                                                                    | ○  |    |
| 글자색   | • 글자색은 사용색 범위내에서 배경색과 유사계열의 색 사용               |                                              |    |                                                                                    | ○  |    |
| 로고,심볼 | • 브랜드 로고나 심볼 등은 순색량을 조절하여 글자색 범위 내에서 적용        |                                              |    |                                                                                    | ○  |    |
| 사용규제  | • 넓은 면적의 고채도색 사용은 규제(30%이하 적용)                 |                                              |    |                                                                                    |    | ○  |
|       | • 빨간색이나 검정색은 간판 전체면적의 50%이상 사용금지               |                                              |    |                                                                                    |    | ○  |

| 권장 (○)                                                                                                          | 지양 (×)                                                                                                                   |
|-----------------------------------------------------------------------------------------------------------------|--------------------------------------------------------------------------------------------------------------------------|
|  <p>제시한 색 범위에서 사용</p>          |  <p>제시한 색 범위를 벗어난 고채도의 색 사용</p>        |
|  <p>건축물과 유사한 판형 색</p>          |  <p>건축물 색과 이질적인 다양한 색의 판형</p>          |
|  <p>2~3가지 내의 저채도색 사용</p>      |  <p>3가지 이상의 원색 사용</p>                 |
|  <p>중-저채도색의 돌출형 간판</p>       |  <p>다양한 고채도의 돌출색 사용</p>              |
|  <p>동일 건물에서 동일 색 적용한 차양막</p> |  <p>동일 건물에서 2가지 이상의 고채도색 적용한 차양막</p> |

## 7.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 1) 사용방법

#### 목적

- 서천군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상의 내용을 적용하여,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은 보행자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가로경관을 대상으로,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통합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하며, 관련 지침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서천군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가로경관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서천군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

#### 사용대상

- 경관심의위원회(색채), 디자이너, 제작자, 공원 및 녹지관련 설계 및 시공사 등 가로경관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

#### 사용시기

-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심의, 자문, 허가 등에 따라 적용
- 기본계획인 경우 설계 심의시 적용
- 실시설계는 착공신고 후 적용
- 심의를 받는 경우 준공 1년 전에 적용
- 자문을 받는 경우 준공 1년 전에 적용

#### 적용방법

- 본 설계지침은 설계 자문 및 기본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함
- 본 설계지침은 도심상업가로, 복합용도가로, 근린상업가로, 아파트단지 주변가로, 저층주거지가로 등 유형별로 적용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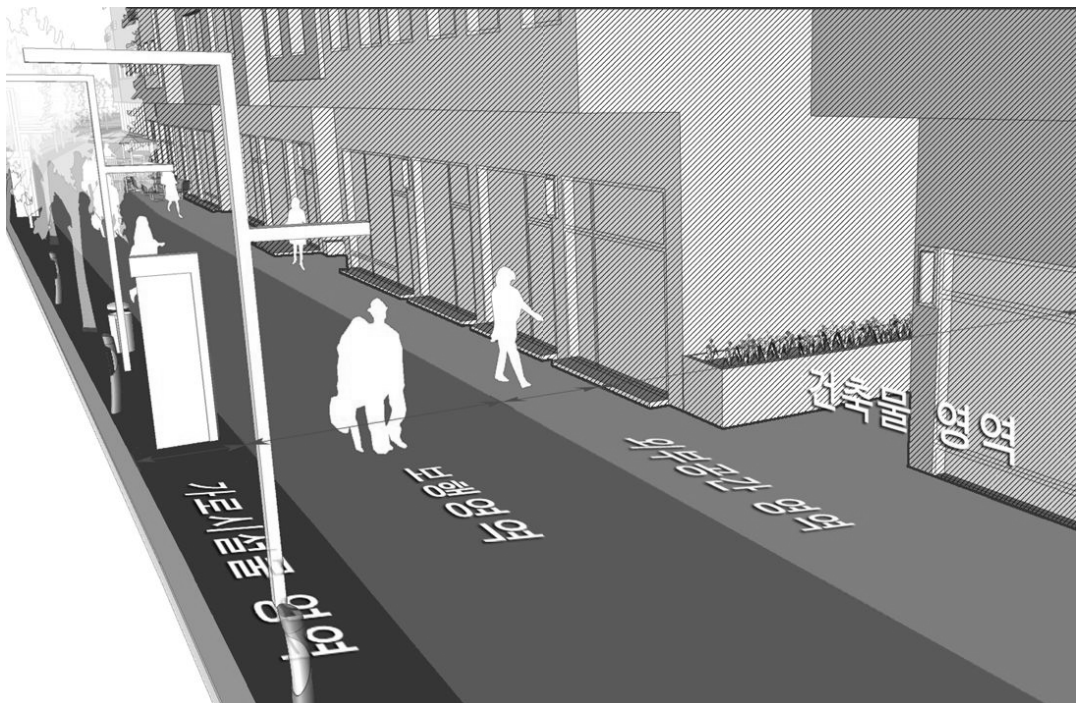
#### 용어

- 가로조경 : 차도와 보도 사이의 가로수, 식수대 등 수목 및 초화류로 구성되는 조경
- 가로조명 : 차도와 보도 사이에 위치하는 가로등, 보행등, 장식등 등의 조명 기구
- 통합 시설물 :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가로시설물을 통합하여 디자인한 시설물
- 지주형 시설물 : 가로조명, 각종 안내판, 교통 신호기 등 지주 형태의 시설물
- 보행유효공간 : 보행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를 위한 보행공간
- 건축물 외부 공지 : 대지 내의 건축물 전면 또는 측면의 공지 및 공개공지
- 공개공지 : 건축법 제 67조, 동법 시행령 제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

## 2) 가로경관의 정의

### 가로경관의 영역 구분

- 가로경관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가로시설물 영역, 보행영역, 외부공간 영역, 건축물 영역으로 구분
- “가로시설물 영역”은 가로조경, 가로조명 및 기타 가로시설물 등이 설치되는 영역으로서, 차도와 보행 영역의 완충 공간 역할을 함
- “보행 영역”은 보행에 방해가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 없이 자유로이 보행자의 이동을 보장하는 공간을 의미
- “외부공간 영역”은 보행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 또는 측면공지, 공개공지와 광장공원 등 공공공간 등을 의미
- “건축물 영역”은 보행공간의 가로벽 역할을 하는 가로에 접한 건축물 부분을 의미



### 가로유형의 구분

- 도심상업가로 : 상업시설과 유흥시설이 밀집하여, 보행밀도가 높은 도심가로
  - 도시에 위치하는 가로로,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 보행자를 유혹하는 상점, 먹거리, 놀 거리가 풍부한 가로
  - 하루 종일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많은 보행량을 지닌 가로
  -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용이한 교통 중심에 위치
- 복합용도가로 : 상업, 업무, 주거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복합되어 있는 도시의 가로
  - 도시에 위치한 가로로, 상업, 업무, 주거 등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가로
  - 상업가로에 비해 보행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도심 정주민구의 꾸준한 보행이 이루어짐
  - 도시의 대부분의 가로가 해당되며, 용도와 특징이 지속적으로 변화

- 근린상업가로 : 주거지역의 중부에 위치하여 거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한 가로
  - 주거지역의 생활 중심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근린생활시설이 위치
  - 가로를 따라 중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연속적으로 형성
- 아파트단지 주변가로 : 중고층의 아파트단지가 연속적으로 입지한 가로
  -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속된 게이트드 커뮤니티를 형성
  - 단지경계부분의 폐쇄적 구성으로 도시공간과의 연계가 부족
- 저층주거지로 :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택 등 저층주거가 밀집한 가로
  -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량과 차량 속도의 조용한 주택가의 가로
  - 일반적으로 두 개의 차선을 넘지 않으며, 통과 교통으로 이용되지 않음



### 3) 가이드라인의 구성

- 공통 가이드라인, 가로유형별 가이드라인, 통합시설물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4) 통합가이드라인

| 구분                  |                | 가이드라인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가로<br>시설<br>물<br>영역 | 기본<br>방향       | 1) 지역별 특색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고유의 디자인을 개발                                                        | ○    |    |
|                     |                | 2) 기능이 연관된 시설물을 통합하여 간결한 디자인을 추구                                                             | ○    |    |
|                     | 가로<br>조경       | ① 가로수는 가로수의 높이를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설정하고,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특성 및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       |      | ○  |
|                     |                | ②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수는 시야확보를 위해 낮은 높이의 수종을 선정                                                 |      | ○  |
|                     |                | ③ 띠녹지의 토피고는 보도보다 낮게 하여 우수 침투환경을 조성함                                                          |      | ○  |
|                     |                | ④ 가로수 보호틀의 디자인은 보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 ○  |
|                     | 가로<br>조명       | ⑤ 가로조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  |
|                     |                | ⑥ 도시의 일관된 이미지와 유지보수 편의를 위해 가로조명의 유형을 최소화                                                     |      | ○  |
|                     |                | ⑦ 가로조명은 신호등, 안내판 등 지주형 시설물과 통합설치를 고려                                                         |      | ○  |
|                     |                | ⑧ 가로조명의 범위와 조도 확보를 위해 가로수 및 지주형 시설물과 적정 간격을 유지                                               |      | ○  |
|                     |                | ⑨ 보행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조명 방식을 선택하되, 조명 유형에 따른 효율을 고려하여 간격을 설정한다.                            |      | ○  |
|                     |                | ⑩ 가로조명의 기능 및 요건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름                                                 |      | ○  |
|                     | 기타<br>시설물      | ⑪ 가로시설물은 장식보다는 기능 위주의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권장                         |      | ○  |
|                     |                | ⑫ 휴게시설은 비위생적인 장소나 공해가 심한 곳에는 설치를 지양하며, 안전을 위하여 조명시설과 인접 설치할 것을 권장                            |      | ○  |
|                     |                | ⑬ 신호등, 안내판 등 지주형 시설물은 통합설치를 고려하며, 공통모듈을 사용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                      |      | ○  |
|                     |                | ⑭ 지면에 고정되는 시설물은 하부구조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 ○  |
|                     |                | ⑮ 정류장은 보도, 도로경계석과의 거리, 횡단보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운행시간표, 노선도, 대기를 위한 휴게시설, 보행자용 안내시설 등을 조합하여 설치 |      | ○  |
|                     |                | ⑯ 가판대, 공중전화부스 등은 보행자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주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                                          |      | ○  |
|                     |                | ⑰ 분전반, 배전반, 교통신호제어기, 제설시설 등 관리시설물은 간결한 형태로 크기를 최소화하며 지주형 시설물과 동일한 마감으로 통일감을 줌                |      | ○  |
|                     |                | ⑱ 보행자안내표지판, 보행자방향안내판,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은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매뉴얼」에 따름               |      | ○  |
| 보행<br>영역            | 기본<br>방향       | 1)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여건 형성을 위해 보도의 품질과 내구성을 확보                                                      | ○    |    |
|                     |                | 2) 보도는 지역성을 가지며 절제된 디자인으로 보행환경의 배경이 되도록 함                                                    | ○    |    |
|                     | 보행<br>유효<br>공간 | ① 보행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폭과 높이를 확보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제공                                              |      | ○  |

| 구분       | 가이드라인                                                                        | 강제여부                                                                                                                                                                                                 |                  |
|----------|------------------------------------------------------------------------------|------------------------------------------------------------------------------------------------------------------------------------------------------------------------------------------------------|------------------|
|          |                                                                              | 필수                                                                                                                                                                                                   | 권장               |
| 보도 포장    | ② 내구성이 좋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포장 재질을 권장                                                |                                                                                                                                                                                                      | ○                |
|          | ③ 지역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보도패턴을 디자인하되, 단순한 형태미를 갖도록 하여 가로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함            |                                                                                                                                                                                                      | ○                |
|          | ④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한 시공품질을 확보                                                   |                                                                                                                                                                                                      | ○                |
|          | ⑤ 맨홀덮개는 보도포장과 연속성 있는 형태로 마감                                                  |                                                                                                                                                                                                      | ○                |
|          | ⑥ 보도의 경사, 연석, 턱낮추기, 접지블록, 차량진출입부, 보도포장 등 보도의 구조에 대한 사항은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매뉴얼」에 따름 |                                                                                                                                                                                                      | ○                |
| 외부 공간 영역 | 기본 방향                                                                        | 1)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통합하는 디자인을 추구<br>2) 경계 없는 개방적 디자인으로 보행의 연속성과 연결성을 확보                                                                                                                                   | ○<br>○           |
|          | 건축물 외부 공지                                                                    | ①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보도 패턴을 연장하여 통합적인 보행공간을 조성<br>② 필지 경계부의 조화로운 경관을 위해 대지 내 조경 및 공지를 통합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br>③ 담장, 환기구 등 돌출물 설치를 지양<br>④ 공개공지는 가로에 면하는 소공원 및 소광장 형태로 개방적으로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하며, 인접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 | ○<br>○<br>○<br>○ |
|          | 공공 공간                                                                        | ⑤ 광장 및 공원 등의 경계 부분은 개방적으로 구성하여 접근성을 높임                                                                                                                                                               | ○                |
|          | 기본 방향                                                                        | 1)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위해 질서를 부여<br>2) 보행자의 시각 범위에 있는 가로변 건축물의 저층부 디자인을 강화                                                                                                                                    | ○<br>○           |
|          | 배치                                                                           | ① 정연한 가로경관 확보를 위해 건축벽면선을 지정할 수 있음<br>②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진입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행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차량출입영역은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                                                                                   | ○<br>○           |
|          | 형태                                                                           | ③ 연속적이고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와 층별 높이 및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br>④ 건축물의 규모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함<br>⑤ 실외기, 환기구, 소방용수구 등 설비시설의 건축물 외부 노출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면과 일체화하거나 차폐하도록 함        | ○<br>○<br>○      |
|          | 저층부                                                                          | ⑥ 건축물 저층부에 대하여 형태, 재료, 색채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br>⑦ 보행자에게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벽면녹화 및 자투리 공간 활용을 권장                                                                                                       | ○<br>○           |
|          | 광고물                                                                          | ⑧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                                                                                                                                                                                  | ○                |



## 5) 가로유형별 가이드라인

### 도심상업가로

| 구분              |             | 가이드라인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기본방향            |             | 1) 많은 보행량을 수용하여 편안한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행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                                                                                                  | ○    |    |
|                 |             | 2) 보행자의 시각적인 흥미를 고려하여, 가로경관요소에 질서와 다양성을 확보<br>- 보행자가 시각적 즐거움과 매력을 느낄수 있도록 특색 있는 디자인 고려<br>-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 탐색이 용이하도록 기능적인 디자인 도입을 고려 | ○    |    |
| 가로<br>시설물<br>영역 | 가로조경        | ① 보행자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수종의 가로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음                                                          |      | ○  |
|                 |             | ② 주요 거점에는 보행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녹음이 좋은 교목을 식재                                                                                                             |      | ○  |
|                 | 가로조명        | ③ 활동적이고 쾌활한 야간경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보행등 겸용 열주 또는 바닥조명 등 다양한 조명 기법을 활용                                                                                          |      | ○  |
|                 | 기타시설물       | ④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을 적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늘 형성이 되도록 가로수 인근에 설치하거나 그늘막을 활용                                                                                      |      | ○  |
|                 |             | ⑤ 교차로 등 주요 거점에, 주변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보행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길찾기에 도움을 줌                                                                                         |      | ○  |
| 보행<br>영역        | 보행<br>유효공간  | ⑥ 많은 보행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도폭을 최대한 확보                                                                                                                        |      | ○  |
|                 |             | ⑦ 지하도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행공간을 확보                                                                                                     |      | ○  |
| 외부<br>공간<br>영역  | 건축물<br>외부공지 | ⑧ 건축물 전면공지에는 보행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도변 야외카페 설치를 활성화                                                                                                           |      | ○  |
|                 | 공공공간        | ⑨ 공원 및 광장은 보행자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유동성을 극대화                                                                                                 |      | ○  |
|                 |             | ⑩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                                                                                                            |      | ○  |
|                 |             | ⑪ 가로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를 고려하여 특색 있는 가로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함                                                                                                 |      | ○  |
|                 |             | ⑫ 공원 및 광장 등 공공공간의 활기찬 이용을 위해 인접 건축물 저층부에 대하여 식음료 서비스를 권장                                                                                               |      | ○  |
| 건축물<br>영역       | 저층부         | ⑬ 가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층의 권장용도를 지정할 수 있음                                                                                                                  |      | ○  |
|                 |             | ⑭ 보행동선을 유입할 수 있는 개방형 계획으로 가로와의 연계를 강화                                                                                                                  |      | ○  |
|                 |             | ⑮ 가로에 인접한 1층 전면부는 다양한 건축 계획요소를 도입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흥미를 제고                                                                                                    |      | ○  |
|                 |             | ⑯ 건축물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의 차양막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                                                                                             |      | ○  |

## 복합용도가로

| 구분              |             | 가이드라인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기본방향            |             | 1)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가로의 질서와 정연함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도입                                                  | ○    |    |
|                 |             | 2) 보도위 차량진입을 지양하여 보행공간의 공공성을 증진                                                            | ○    |    |
| 가로<br>시설물<br>영역 | 가로조경        | ①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가로의 정연함을 위해 일관된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br>② 초화류 및 지피류로 구성된 식수대를 통일감 있게 계획하여 위요감과 안정감을 줌 |      | ○  |
|                 | 가로조명        | ③ 가로등과 보행등을 통합설치하거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활용한 보행등을 설치                                                |      | ○  |
|                 | 기타<br>시설물   | ④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공간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온화 계획을 권장                                                  |      | ○  |
| 보행<br>영역        | 보행<br>유효공간  | ⑤ 보도 위 차량진입 및 주차를 지양                                                                       |      | ○  |
| 외부<br>공간<br>영역  | 건축물<br>외부공지 | ⑥ 건축물 전면공지에는 보행공간의 쾌적함과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화분, 벤치, 조형물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도록 유도                        |      | ○  |
|                 |             | ⑦ 건축물 전면의 주차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경계영역을 녹지로 차폐                                        |      | ○  |
|                 | 공공공간        | ⑧ 자유로운 접근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소공원 또는 소광장을 조성                             |      | ○  |
| 건축물<br>영역       | 저층부         | ⑨ 인접 건축물과 건축벽면선, 1층 높이를 일치시키고 외부 마감재를 조화롭게 사용할 것을 권장                                       |      | ○  |

## 근린상업가로

| 구분              |             | 가이드라인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기본방향            |             | 1) 주민의 휴식과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가로의 활력을 제고                                                        | ○    |    |
|                 |             | 2)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                                                                          | ○    |    |
| 가로<br>시설물<br>영역 | 가로조경        | ① 가로별 테마수종을 선정하여 특색 있는 가로를 연출하며, 낮은 수목으로 친근하고 쾌적한 가로를 제공                                      |      | ○  |
|                 | 가로조명        | ② 가로수 식재가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인접 건축물 외벽 또는 자투리 공지의 녹화를 권장                                            |      | ○  |
|                 | 기타<br>시설물   | ③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낮은 가로등 또는 건축물 벽부등을 설치<br>④ 가로시설물은 필수 시설만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야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일체형으로 계획 |      | ○  |
| 보행<br>영역        | 보행<br>유효공간  | 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로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권장할 수 있음                                             |      | ○  |
| 외부<br>공간<br>영역  | 건축물<br>외부공지 | ⑥ 건축물 전면공지에는 보행공간의 쾌적함과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화분, 벤치, 조형물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도록 유도                           |      | ○  |
|                 |             | ⑦ 주차진입로를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안내판, 바닥표지 및 경고등을 설치                                                     |      | ○  |
|                 | 공공공간        | ⑧ 노상주차 차선을 확보하여 서비스 차량 대기 및 주차공간을 확보<br>⑨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휴식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소규모 공원 설치를 고려      |      | ○  |
| 건축물<br>영역       | 저층부         | ⑩ 가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층의 권장용도를 지정할 수 있음                                                         |      | ○  |
|                 |             | ⑪ 가로에 인접한 1층 전면부는 다양한 건축 계획요소를 도입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흥미를 제고                                           |      | ○  |
|                 |             | ⑫ 건축물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의 차양막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                                    |      | ○  |

### 아파트단지 주변가로

| 구분              |             | 가이드라인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기본방향            |             | 1) 도시 맥락을 고려하여 가로와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 ○    |    |
|                 |             | 2) 단지내 편의시설은 단지내 주민들간의 교류의 활성화 지향하도록 계획                                   | ○    |    |
| 가로<br>시설물<br>영역 | 가로조경        | ① 단지 내 외부 · 조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의 가로수 식재를 권장     |      | ○  |
|                 | 가로조명        | ②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휴식공간에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녹음이 좋은 교목을 식재                        |      | ○  |
|                 | 기타<br>시설물   | ③ 시설물 및 건축물에 야간 통행의 안전을 위한 보행등을 설치                                        |      | ○  |
|                 | 기타<br>시설물   | ④ 교통결절점, 휴게시설 등 주요 거점마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      | ○  |
| 보행<br>영역        | 보행<br>유효공간  | ⑤ 보행공간과 자전거도로를 명확히 구분하되,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배려                                    |      | ○  |
| 외부<br>공간<br>영역  | 건축물<br>외부공지 | ⑥ 그늘막과 적절한 차폐식재를 통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을 배치                           |      | ○  |
|                 | 공공공간        | ⑦ 공원 및 광장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공공공간의 유동성을 극대화        |      | ○  |
|                 |             | ⑧ 공원 및 광장에는 충분한 수량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공간을 확보                                     |      | ○  |
| 건축물<br>영역       | 배치          | ⑨ 가로에 인접한 주동은 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로 배치할 것을 권장                                      |      | ○  |
|                 |             | ⑩ 주민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가로 또는 단지 내 주보행로변에 배치                                   |      | ○  |
|                 |             | ⑪ 단지 내 주 보행로는 단지를 통과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보행로 주변의 건축물은 보행자의 시각을 고려한 높이로 계획 |      | ○  |
|                 |             | ⑫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거주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      | ○  |
|                 | 저층부         | ⑬ 가로에 인접한 저층부에 주민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고, 전면부를 개방적으로 디자인하여 가로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 ○  |

### 저층주거지가로

| 구분              |             | 가이드라인                                                         | 강제여부 |    |
|-----------------|-------------|---------------------------------------------------------------|------|----|
|                 |             |                                                               | 필수   | 권장 |
| 기본방향            |             | 1) 안전한 보행 여건을 조성                                              | ○    |    |
|                 |             | 2) 자기 집 앞 영역에 자부심을 갖고 가꾸도록 유도                                 | ○    |    |
| 가로<br>시설물<br>영역 | 가로조경        | ① 거주자가 관리하는 화분 등으로 집 앞을 가꿀 수 있도록 화분대를 배치할 것을 권장               |      | ○  |
|                 | 가로조명        | ② 보행안전을 위해 낮은 높이의 가로등 또는 건축물 벽부등을 설치                          |      | ○  |
|                 | 기타<br>시설물   | ③ 공동으로 사용하는 분리수거함, 쓰레기수거함 등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고 유지관리 하도록함 |      | ○  |
| 보행<br>영역        | 보행<br>유효공간  | ④ 보행자가 우선임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보차혼용 블록 또는 문양콘크리트로 가로포장을 일체화           |      | ○  |
| 외부<br>공간<br>영역  | 건축물<br>외부공지 | ⑤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안의 공지는 인접대지와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 ○  |
|                 |             | ⑥ 건축물 전면공지에 앵무벽, 조경 등으로 주민 교류공간을 조성                           |      | ○  |
|                 |             | ⑦ 필로티 하부 바닥 포장은 가로와 연계되도록 함                                   |      | ○  |
|                 | 공공공간        | ⑧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편의시설을 조성                             |      | ○  |
| 건축물<br>영역       | 배치          | ⑨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 가로부분과 바닥레벨을 같게 하고 배수처리에 유의                     |      | ○  |
|                 | 저층부         | ⑩ 용적률 확보를 위한 무리한 건축물 형태 계획을 지양하여 조화로운 건축물 외관을 조성              |      | ○  |
|                 |             | ⑪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거주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      | ○  |

## 5) 통합시설물 가이드라인

| 구분   | 가이드라인                                                                                 | 강제여부 |    |
|------|---------------------------------------------------------------------------------------|------|----|
|      |                                                                                       | 필수   | 권장 |
| 기본방향 | 1) 가로시설물의 통합디자인을 통해 깨끗하고 정돈된 경관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                               | ○    |    |
|      | 2) 가로시설물이 분야별, 관리주체별, 시설별로 개별 설치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조화를 방지하고, 통합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    |    |
|      | 3) 본 가이드라인은 가로시설물이 밀집한 교차로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의 수준과 예외 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    |    |
| 통합대상 | ① 가로조명, 교통신호기 및 표지판, 안내시설 등 지주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CCTV·교통감시카메라 등 지주형 시설물에 부착이 가능한 시설물을 포함 |      | ○  |
| 형태   | ②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가급적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원칙으로 함                                     |      | ○  |
|      | ③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개방감 있는 가로이미지를 형성                                     |      | ○  |
|      | ④ 지주대는 모듈 개념을 도입해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      | ○  |
|      | ⑤ 지주대에 부가적인 시설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함                                                         |      | ○  |
|      | ⑥ 지주대에 결합되는 부속물의 체결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체결되는 부분은 요철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                               |      | ○  |
| 유지관리 | ⑦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을 표준화하여 설치·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 ○  |
|      | ⑧ 가로시설물은 가로시설물 영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공간에 배치되는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      | ○  |
|      | ⑨ 볼트를 포함한 소형부품들은 타 시설물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      | ○  |

## 8.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1) 기본방향

#### 색채계획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조성

- 도시경관 골격 또는 축을 형성하는 경관요소(랜드마크, 역사문화경관, 상업지역, 특화거리 등)의 야간경관을 연출하되, 도시이미지 및 색채계획과 연계하여 광원·밝기·색 등을 선택하도록 유도

#### 정체성 있는 야간경관 창출

- 서천의 주요 도심의 랜드마크나 주요 경관도로에 집중적으로 서천군의 정체성을 담은 야간경관을 창출
- 공공건축물, 상징건축물, 역사문화경관자원, 중심상업지구, 특화거리 등 중점적으로 야간경관 창출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

#### 인간 중심의 야간경관계획

- 과도한 빛의 연출보다는 절제된 빛과 주변과 조화를 고려한 야간경관 연출
- 도시민의 보행안전과 야간범죄로부터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관연출
- 과도한 빛을 사용한 지역은 불필요한 조명을 최소화하여 빛 공해로부터 안전한 야간경관 연출

#### 야간경관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관광지의 매력적인 야간경관 형성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서천군의 특성화된 야간경관 연출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2) 계획의 목표

#### 목표

- 서천군의 야간경관 관리단위를 설정하여 야간경관의 개선 및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서천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야간경관을 형성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 고효율의 친환경조명 설치계획을 통해 도시의 쾌적감을 확보하고 군민의 안전한 야간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명 경관 연출



## 2) 야간경관 법규 및 사례조사

### 관련법규 검토

- 경관법(국토교통부)
  - 2007년 제정, 2014년 개정된 법률로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
  - 경관사업부분에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경관협정과 경관협정지원(기술,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환경부)
  - 2012년 2월에 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sup>1)</sup>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대상 : 건축물 조명, 발광광고물, 기반시설조명 등

|        |                                                                                                                                                                                                         |
|--------|---------------------------------------------------------------------------------------------------------------------------------------------------------------------------------------------------------|
| 건축물 조명 | · 『건축법』 제2조에 따른 판매·업무·숙박시설 등 중에서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4층 이상 건축물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 광고, 장식 그밖에 상업적 목적으로 설치된 점조명·선조명·면조명 및 옥탑조명                                                                              |
| 발광광고물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로서 형광등, 네온류, 전광류 등의 전기를 이용하는 일반광고물 및 대형전광판                                                                                                          |
| 기반시설조명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교통시설(교량·교각·주차장 등), 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 등), 문화체육시설 등의 외관이나 옥외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 또는 장치<br>- 자연물에 직접 설치되거나 자연물이나 하늘을 비추는 투광조명 또는 장치<br>- 누출광이 거주지·농경지 등에 침입하여 피해를 주거나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는 조명 포함 |

출처)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국내 야간경관 조명 기준

- 국내의 야간조명을 가로등 및 교통시설의 신호등에 한해 도로나 건물 등의 부속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치기준을 교통시설의 부속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항만법, 항공법, 주차장법 등에서 관리하는 개별 시설에 관한조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옥외조명은 가로등인 교통시설로 분류되어 도로법에의해 관리하고 있음
  - 도로조명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조명시설편』에 수록되어 있고, 관리수단으로 설치지역에 따른 조명의 세기, 설치각도, 설치간격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나 『경관법』 등에서 야간경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이 현실
-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전기를 사용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도시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함
- 2011년 환경부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지침』이 만들어졌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관리대상은 크게 건축물조명, 발광광고물, 기반시설조명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지침』의 허용기준 단위는 '표면휘도(건물표면밝기)'로, 토지용도별로 녹지·농림지·주거·상업 등 4개 지역으로 나뉘 달리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건축물 표면휘도 허용기준은 0~25cd/m<sup>2</sup>, 발광광고물 중 일반광고물은 0~800cd/m<sup>2</sup>, 대형전광판은 상업지역에만 설치가 허용되고 표면휘도가 1,500cd/m<sup>2</sup>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지침

| 지 역     | 주변지역의 밝기   | 표면평균휘도(cd/m <sup>2</sup> ) | 토지용도                        |
|---------|------------|----------------------------|-----------------------------|
| E1(녹지)  | 어두운 지역     | 0                          | · 자연환경보전지역<br>· 보전·자연녹지지역 등 |
| E2(농림지) | 낮은 밝기 지역   | 5이상                        | ·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등            |
| E3(주거)  | 중간정도 밝기 지역 | 15이하                       | · 주거지역 등                    |
| E4(상업)  | 높은 밝기 지역   | 25이하                       | · 상업지역 등                    |

- 가로등과 같은 기반시설조명은 빛이 위쪽으로 새어나가는 상향광속률이 0%가 되도록 갓을 씌우거나 각도를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 2011년 이전 빛공해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규정임

#### 도로조명기준에서 운전자에 대한 조명기준

| 지 역       | 평균노면휘도(cd/m <sup>2</sup> ) |      |       |
|-----------|----------------------------|------|-------|
|           | 차선축균제도 외부조건                | 외부조건 | 종합균제도 |
| 고속도로      | 2                          | 1    | 0.4   |
| 주간선도로     | 2                          | 1    | 0.4   |
| 보조간선도로    | 2                          | 1    | 0.4   |
| 집산 및 국지도로 | 1                          | 0.5  | 0.4   |

#### 도로조명기준에서 보행자 대한 조명기준

| 야간보행자, 교통량 | 지역   | 조도(lx) |       |
|------------|------|--------|-------|
|            |      | 수평면조도  | 연직면조도 |
| 교통량이 많은 도로 | 주택지역 | 5      | 1     |
|            | 상업지역 | 20     | 4     |
| 교통량이 적은 도로 | 주택지역 | 3      | 0.5   |
|            | 상업지역 | 10     | 2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1990년 제정되고 수차례에 걸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 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정리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4조에는 광고물 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해 사·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체야간경관 계획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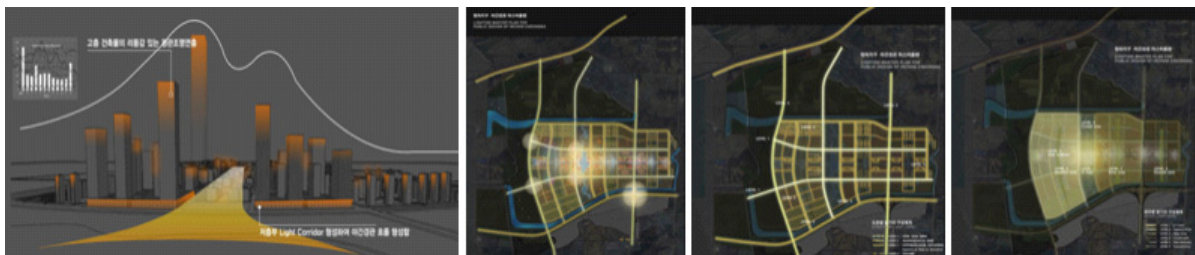


## 국내 · 외 야간경관계획 관련사례 검토

- 대전시 야간경관계획 : 도시의 주요 거점, 축, 구역 등 점적, 선적, 면적 요소의 수준에 따라 조명요소의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야간 경관설계지침 작성



- 청라지구 야간경관계획 : 권역별, 공공부분, 민간부분 야간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



- 광고신도시 야간경관계획 : 권역별 공간의 형태와 특징, 목적에 맞는 야간경관계획 수립



- 일본 요코하마 : 야경 파노라마, 스카이라인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 개발



- 독일 프랑크푸르트 :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야간경관을 특화



### 3) 야간 경관가이드라인

#### 기본 구상

|                                                                                                                 |                                                                                    |                                                                                              |
|-----------------------------------------------------------------------------------------------------------------|------------------------------------------------------------------------------------|----------------------------------------------------------------------------------------------|
|                                |  |           |
| <b>Harmony</b>                                                                                                  | <b>Identity</b>                                                                    | <b>Safety</b>                                                                                |
| 자연의 빛과 조화하는 조명                                                                                                  | 부분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 최소 조도 확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명설치 기준 설정</li> <li>- 광공해 없는 친환경적이고 절제된 빛 연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별 특성에 따라 특색있는 야간경관조명 이미지 설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조도 확보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적용대상별 조명설치 기준 설정</li> </ul> |

#### 구성체계

-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은 도로, 건축물, 기타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구성되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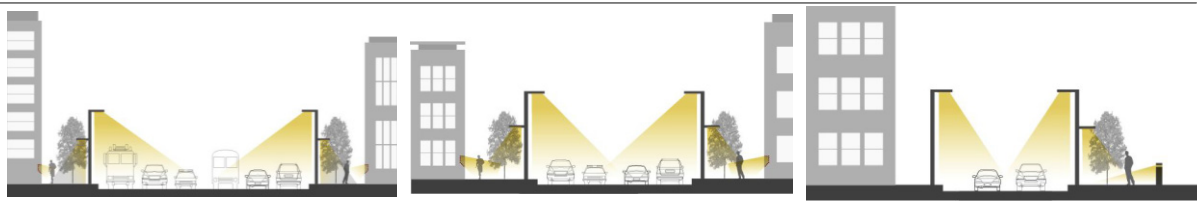
| 구분    | 분류      | 세부내용                |
|-------|---------|---------------------|
| 도로조명  | 대로      | 25m 이상(8차선 도로)      |
|       | 중로      | 12m이상 25m이하(4차선 도로) |
|       | 소로      | 12m미만(4차선 미만)       |
|       | 진입관문    |                     |
|       | 주요 교차로  |                     |
| 건축물조명 | 주거지역    | 농촌                  |
|       |         | 도심                  |
|       | 상업·업무지역 |                     |
|       | 공업지역    |                     |
|       | 문화재지역   |                     |
| 기타    | 녹지지역    |                     |
|       | 수변지역    |                     |
|       | 도시구조물   |                     |

## 도로조명 경관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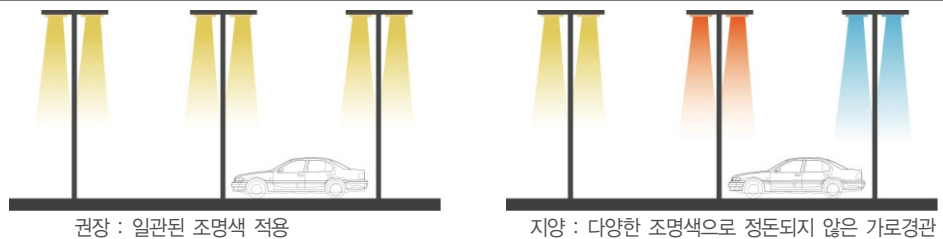
- 적용대상 : 자동차 도로, 보행자 도로, 농어촌 도로의 조명시설을 대상으로 함
- 자동차 도로 설치기준
  -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운행에 필요한 KS도로 조명기준(KSA3701)을 바탕으로 대로, 중로, 소로별로 설치 기준 제시
  - 도로분류에 따른 운전자에 대한 조명기준 제시
  - 가로등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어두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조명시설 설치기준 제시

| 구분               | 평균노면휘도 (회소허용치) $\text{cd/m}^2$ | 색온도(K)     | 연색성     |
|------------------|--------------------------------|------------|---------|
| 대로(25m 이상)       | $1.0 \text{ cd/m}^2$           | 3500~4000K | 70Ra 이상 |
| 중로(12m이상 ~25m미만) | $1.0 \text{ cd/m}^2$           | 3000K      |         |
| 소로(12m미만)        | $0.7 \text{ cd/m}^2$           | 3000K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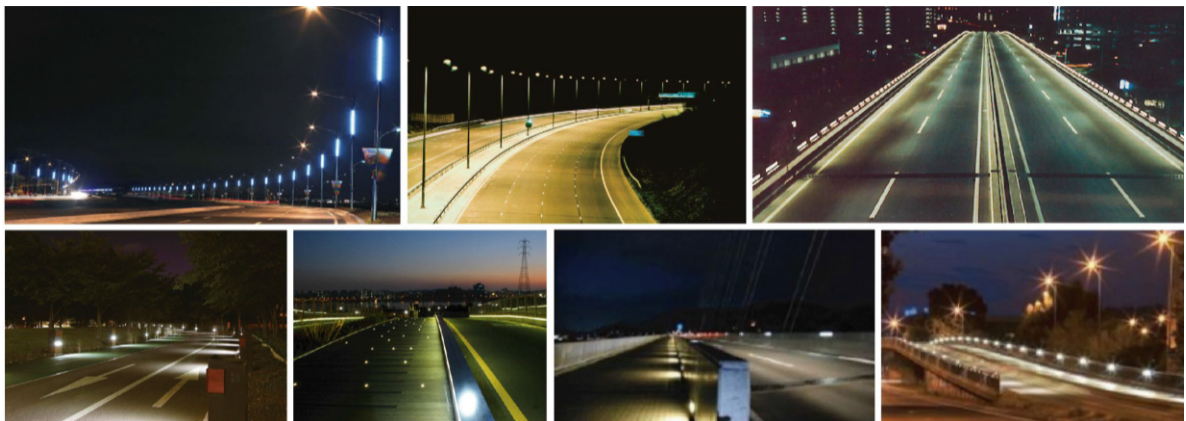
### • 설치예시



### • 연출예시



### • 사례





• 보행자 도로 설치기준

- 보행통행량에 따라 KS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제공하는 최소조도를 고려
- 도로분류에 따른 운전자에 대한 조명기준 제시
- 가로등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어두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조명시설 설치기준 제시

| 구분   | 수평면조도 | 연직면조도 | 색온도(K)     | 연색성     |
|------|-------|-------|------------|---------|
| 주택지역 | 5lx   | 1lx   | 2800~3500K | 70Ra 이상 |
| 상업지역 | 20lx  | 4lx   | 3000~4500K |         |

• 설치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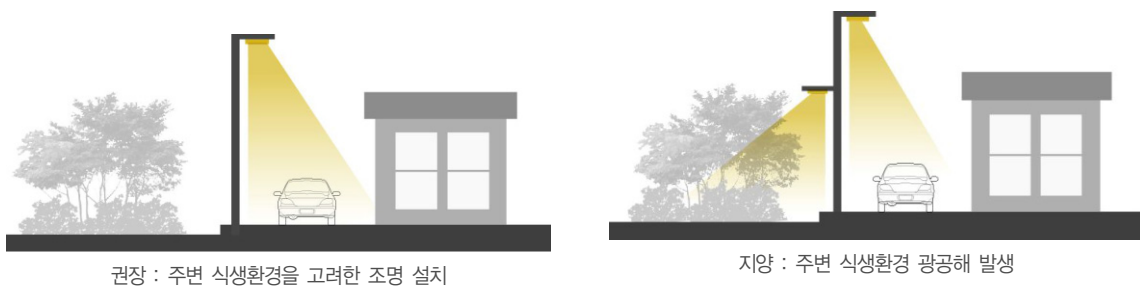


• 농어촌도로 설치기준

- 농어촌지역 주택가로에 설치하는 조명기구에는 주택 내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등에 대한 장애광이 없는 것으로 설치
- 컷오프형 배광방식을 권장하며, 인접주택과 농경지에 대한 빛 공해를 방지하도록 실시
-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인한 농작물 결식부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등의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 횡단보도에 에너지 절약형 조명 설치

| 구분    | 수평면조도 | 연직면조도 | 색온도(K)     | 연색성     |
|-------|-------|-------|------------|---------|
| 농어촌지역 | 3lx   | 0.5lx | 2800~3500K | 70Ra 이상 |

• 설치예시



- 진입경관

- 진입도로 성격과 조망대상 및 도로축상 초점대상을 고려하여 도시 관문 빛 유형 선정
- 컷오프형 배광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차로내의 도로면에만 투사되도록 설치
- 교차로는 주변보다 밝게 배광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조도 확보
- 진입을 인지할 수 있는 가시성 높은 조명 계획으로 상징성있는 야간경관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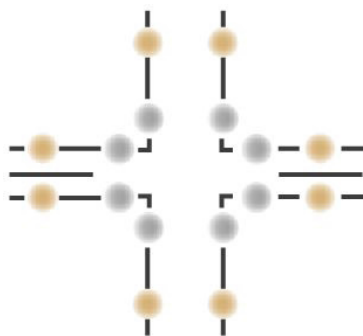
- 설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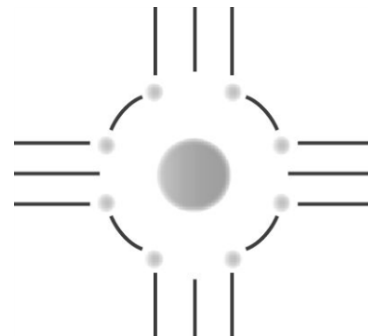
- 주요교차로

- 중심성을 강조하는 빛으로 도로 교차점에서 명료한 빛의 시각을 형성
- 주변에 비해 빛을 밝게 하고 주변의 밝기를 규제하도록 연출
- 빛의 밝기와 색, 조명의 위치 등에 변화를 주어 도로상의 연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감 표현
- 특색 있는 공간감을 연출하기 위해 주변의 인공시설물에 대한 정비 개선
- 야간 보행 시 보행자의 활동이 활발하거나 집중되는 지점을 밝게 하여

- 설치예시



권장 : 색온도 차별화를 통해 야간에 인지도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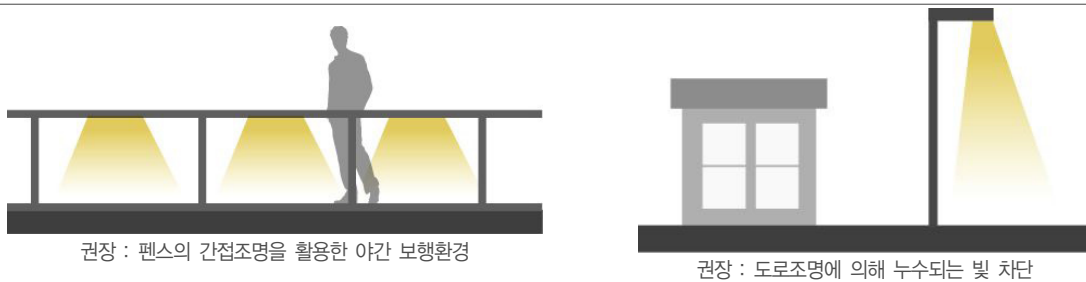
권장 : 중심성을 강조하는 빛으로 공간 연출

## 건축물조명 경관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문화재지역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주거지역 건축물
  -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주민 안정성과 방범성 확보
  - 주거환경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명은 단순하고 따뜻한 분위기 조명 연출
  - 도로조명에 의해 저층주거지의 빛이 침투하지 않도록 계획
  - 횡단보도는 사고예방을 위해 주변도로에 비해 2~3배 이상 밝기 확보
  - 주거지, 산책로 등 어두운 공간에 접한 곳은 전반확산조명을 지양하여 눈부심을 최소화

| 구분      | 휘도                   | 색온도(K)     | 연색성     |
|---------|----------------------|------------|---------|
| 주거지역건축물 | 10 cd/m <sup>2</sup> | 3000~3500K | 70Ra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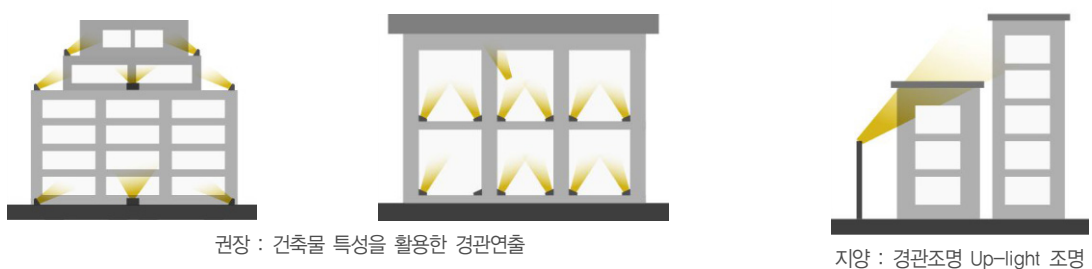
### • 설치예시



- 상업지역 건축물
  - 수직적인 빛의 볼륨감 연출에 의한 야간 스카이라인 형성
  - 건물 파사드 면과 상부라인을 강조하여 상징성 부여
  - 쇼윈도의 조명시간을 일정시간까지 연장하여 가로로 활기차게 연출하여 보행로의 일정조도를 유지함
  - 건축물 고유의 조형미를 부각하는 조명연출로 공간에 대한 식별성과 개성을 향상시킴
  - 수목 등 야간조명을 통해 아름다운 야간 보행환경 조성
  - 보행자 중심 도보성격을 고려하여 저층부를 중심으로 야간경관의 흐름을 형성
  - Pole배치를 최소화하고 건축물과 일체화된 조명 및 내부조명의 경관 조명화를 통해 공간을 확장

| 구분      | 휘도                   | 색온도(K)     | 연색성     |
|---------|----------------------|------------|---------|
| 상업지역건축물 | 25 cd/m <sup>2</sup> | 3000~5000K | 70Ra 이상 |

### • 설치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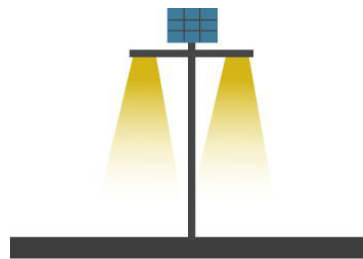


• 공업지역 건축물

- 산업시설에 대한 조명연출을 통해 산업시설의 특색 연출
- 건물의 라인조명은 지양하고 간접조명 방식을 통해 실루엣을 활용한 조명 연출
- 산업단지 내 교차로의 경우 색온도를 차별화하여 야간에 인지성을 확보
- 가로중심 조명이 미비하므로 안전을 고려한 보안개념의 조명시설 필요

| 구분      | 휘도                   | 색온도(K)     | 연색성     |
|---------|----------------------|------------|---------|
| 공업지역건축물 | 10 cd/m <sup>2</sup> | 3000~4000K | 70Ra 이상 |

• 설치예시



권장 : 태양광 가로등 사용



지양 : 라인조명 지양

• 문화재지역 건축물

- 문화재는 아름답고 왜곡되어 보이지 않도록 휘도와 연색성을 동시에 고려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온도를 선정,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러조명 사용 지양
- 빛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후드, 루버 등을 장착하고 고효율 램프사용 권장, 직접 부착방식을 지양
- 열손상이 우려되는 석재나 목재로부터 조명기구를 이격하여 설치
- 컬러조명방식이나 라인조명 지양
- 간접투광 방식을 권장하며 적정 조도 수치인 50~100lx의 기준을 두어 빛을 남발하지 않도록 함

| 구분    | 휘도                         |                            | 색온도(K)     | 연색성     |
|-------|----------------------------|----------------------------|------------|---------|
|       | 농촌 및 주거건축                  | 상업 및 업무환경                  |            |         |
| 문화재지역 | 일반건축물 15 cd/m <sup>2</sup> | 일반건축물 25 cd/m <sup>2</sup> | 3000~4000K | 70Ra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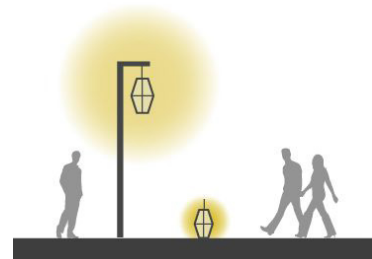
• 설치예시



권장 : 건축물의 구조를 드러내는 연출



권장 : 역사적 흔적을 재현하는 조명



권장 : 전통적인 느낌의 조명 디자인



## 녹지 지역 경관가이드라인

### • 설치기준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도를 유지하기 위해 KS조도기준(KSA3011) 옥외시설조도 적용
- 저층부의 주거 내부로 빛이 침입하지 않도록 컷 오프형 배광방식 권장
- 시설물 및 예술품을 중심으로 조명 포인트 장소가 되도록 연출
- 수목 배치계획과 주변 상황에 맞는 조명방식을 채택하여 수목에 의한 빛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 보행이 낮은 공간은 바닥 조명을 통해 시각적으로 시원하고 여유로운 보행 공간 제시

| 구분    | 조도         |            | 색온도(K)     | 연색성     |
|-------|------------|------------|------------|---------|
| 녹지 지역 | 공원전반       | 6~10~15lx  | 2000~3000K | 70Ra 이상 |
|       | 공원 및 주요 장소 | 15~20~30lx |            |         |

### • 설치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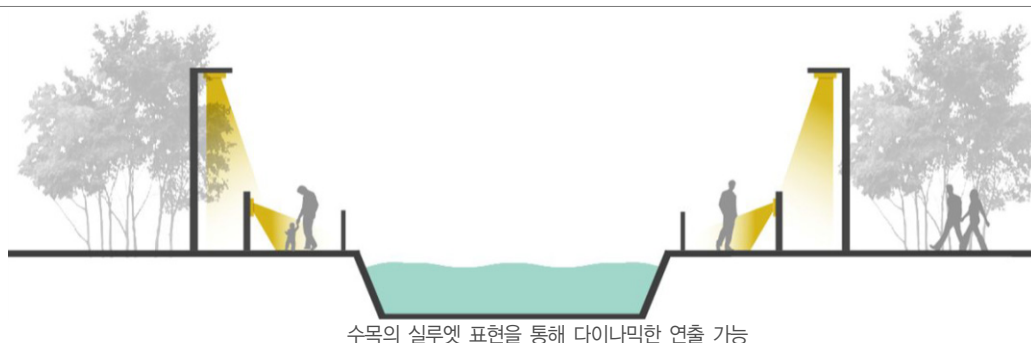
## 수변지역 경관가이드라인

### • 설치기준

- 농촌에는 생태보전을 위해 간접조명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명만 설치
- 수로를 직접 비추는 직접조명방식은 지양
- 시설물 및 예술품을 중심으로 조명 포인트 장소가 되도록 연출
- 안전을 위한 보도조명은 생태보전을 위해 간접 조명방식으로 설치

| 구분   | 수평면 조도 | 연직면 조도 | 색온도(K)     | 연색성     |
|------|--------|--------|------------|---------|
| 수변지역 | 3lx    | 0.5lx  | 2000~3000K | 70Ra 이상 |

### • 설치예시



## 도시구조물

- 설치기준
  - 식별성이 있는 입체적 시설물로 경관 결절점의 랜드마크 형성
  - 조망대상의 조형미를 부여하기 위해 교량 난간, 가로등 등에 조명 연출
  - 주요교량 및 주변시설, 이용객 실태 등을 검토 후 구조물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특화 조명 연출
  - 상징조형물은 공간의 중심성을 강조할 수 있는 조명방식을 사용하여 상징물의 조형성과 장소성을 동시에 부각시키도록 함
  - 풋라이트(Foot Light), 투광조명, LED조명 등으로 매력적인 빛의 조형 연출
  -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조명기구의 배광방식은 컷오프형을 원칙으로 함
  - 조명연출을 위한 별도의 구조물을 부착하는 조명방식은 지양
  - 육교는 난간이나 바닥에 조명기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보행공간에만 조명하도록 권장
  - 장식성 조명과 원색계열 조명색 지양

- 사례



## VI. 실행계획



개요 | 경관관련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 경관조례 제정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 | 경관사업 추진 | 단계별 사업계획 | 예산 및 재정계획 |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 | 경관관련 심의 및 자문 | 경관관리 실행조직 강화 및 운영 |



## 1. 실행계획의 개요

- 서천군 경관계획은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수립했던 각종 계획의 행정 지침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실천력 확보를 통하여 서천군의 경관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함

###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

###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에 대해 경관법의 규정에 맞도록 경관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도록 방안을 제시
- 경관지구·미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등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경관조례에 반영할 규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유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

###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에 따른 관리 사항

-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제시
-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에 따른 경관관리와 함께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및 운영, 대규모 개발지역의 경관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경관관리가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제시

###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천군 내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중요 경관자원의 보전·활용, 경관 위해요소의 정비 등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경관사업을 제시

### 단계별 사업계획

- 단계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우선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장기, 중기, 단기 등의 단계를 구분하여 제시

### 예산 및 재정계획

- 추진해야할 핵심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목록, 공사내역별 규모 제시

###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방안

- 서천군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협정을 제안하고, 대상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방안을 제시

### 경관관리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경관을 보존,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비롯, 건축심의, 공동주택심의, 자연경관심의, 산지의 이용 및 보전심의, 농어촌정비심의, 고도보존심의 등 각종 경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통해 관리해야 할 사항을 검토·제시

## 2. 경관관련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 1) 서천군 경관관련 지구 등의 지정 및 관리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운영현황

-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천군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함
-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현재, 서천군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시에는 지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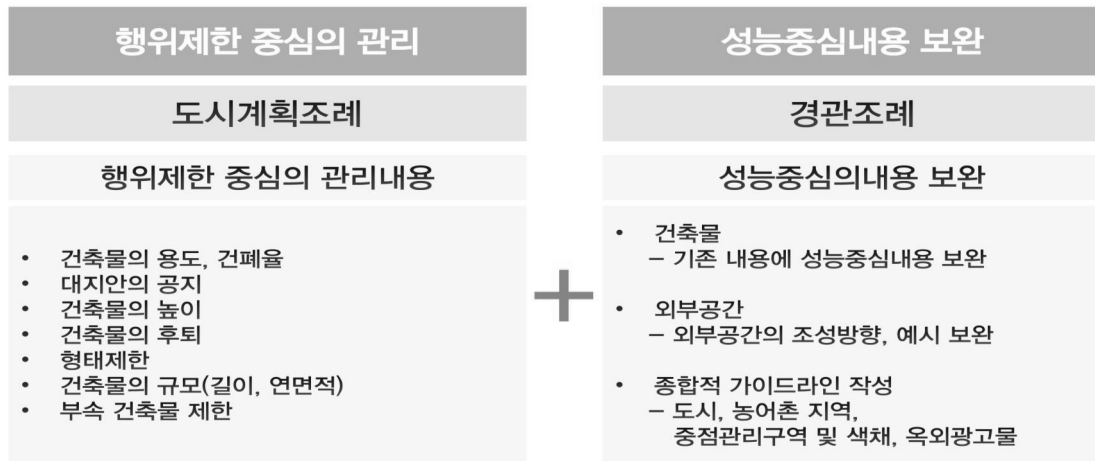
####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지정목적

| 구 분  |          | 지정목적                                | 비고       |
|------|----------|-------------------------------------|----------|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 구릉지 등 도시의 자연경관과 풍치 유지            | 시행령 제31조 |
|      | 수변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자연경관의 보호, 유지               |          |
|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의 보호        |          |
| 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 시행령 제31조 |
|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 |          |
|      | 일반미관지구   | 중심,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          |

출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2014.04.2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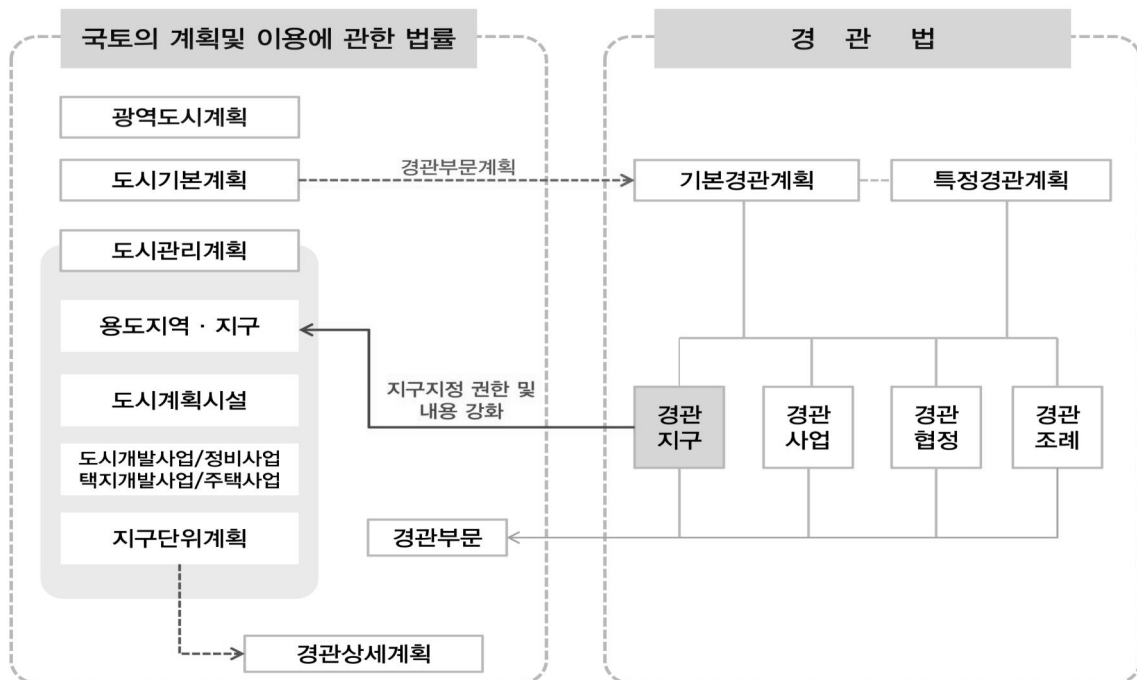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관리의 기본방향

- 현재, 서천군내에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정목적의 적합성, 규제의 적절성과 보상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 따라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지정시에는 시민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에 기반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상과 규제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시에는, 규제 중심의 관리방안에 머무르지 말고 경관유도 방식의 관리를 추가 적용하여 다양하고 변화하는 도시경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경관보전·형성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경관기본계획과 연계방안

-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정
-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을 유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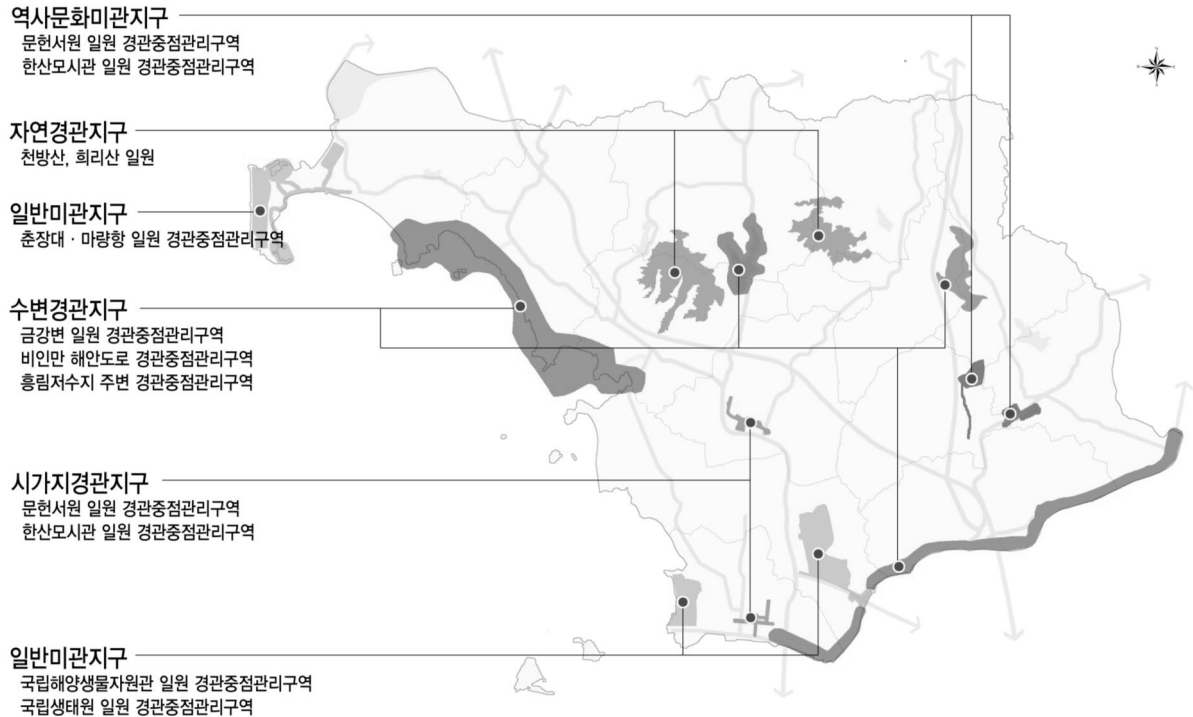


## 2) 경관관련 지구 등의 세분 검토(안)

- 본 경관계획에서 제안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로 지정을 검토함
- 자연경관과 관련하여서는 서천군 조망의 대표격인 천방산 및 희리산 일원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검토함
-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관련하여 서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항읍일원에 대한 일부구역을 경관지구로 지정을 검토함



| 구 분  |          | 지정구역                                                                 |
|------|----------|----------------------------------------------------------------------|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천방산, 희리산 일원                                                          |
|      | 수변경관지구   | 금강변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br>비인만 해안도로 중점경관관리구역<br>홍림저수지, 동부(봉선)저수지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      | 시가지경관지구  | 장항읍 시가지 가로변 중점경관관리구역<br>서천읍 시가지 가로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 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 -                                                                    |
|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헌서원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br>한산모시관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      | 일반미관지구   | 춘장대·비인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br>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br>국립생태원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 향후 미관지구의 경관관리방안

- 미관지구에서의 경관관리 방향설정 및 경관관리의 내용 제시
- 미관지구에서의 체크리스트 항목은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건축경관설계 지침을 따름
- 미관지구의 건축심의 기준 및 건축심의 운영방안 제시
- 심의신청 시 체크리스트와 조치내용의 제출
- 조치내용은 도식화 하여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주변여건 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함

## 미관지구의 경관관리 항목

| 구분          | 주요관리항목                            |
|-------------|-----------------------------------|
|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건축선, 건축배치, 건축형태, 건축재료, 건축외관       |
|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진입로, 주차장, 녹지, 수종, 포장 등에 대한 사항     |
| 광고물에 관한 사항  | 건축 설계시 광고물 설치위치 및 설치 규모를 반영하도록 제시 |
| 공작물에 관한 사항  | 경관관리 내용의 제시                       |
| 색채에 관한 사항   | 건축외장재에 따른 색채에 대한 경관관리 내용 제시       |

##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상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내 규제사항

| 구 분                    | 규제사항                                                                                                                                                                                                                                                                                                                                                                                                                                                                                                                                                                                                                                                                                                                                                                                                                                                                                                                                                                                                                                                                                            | 비고    |
|------------------------|-------------------------------------------------------------------------------------------------------------------------------------------------------------------------------------------------------------------------------------------------------------------------------------------------------------------------------------------------------------------------------------------------------------------------------------------------------------------------------------------------------------------------------------------------------------------------------------------------------------------------------------------------------------------------------------------------------------------------------------------------------------------------------------------------------------------------------------------------------------------------------------------------------------------------------------------------------------------------------------------------------------------------------------------------------------------------------------------------|-------|
| 경관지구안<br>에서의<br>건축제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li> <li>2.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이하로 함</li> <li>3.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li> <li>나.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함</li> </ol> </li> <li>4. 건축물의 최대폭과 규모·색채·대지안의 조경 등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건축물의 최대폭은 경관을 보호할 대상으로 향하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음</li> <li>나. 색채는 지구별 경관의 보호와 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li> <li>다.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ol> </li> </ol> | 제 29조 |
| 자연경관지구<br>안에서의<br>건축제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li> <li>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설소와 단란주점</li> <li>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li> <li>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li> <li>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li> <li>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li> <li>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li> <li>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li> <li>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li> <li>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li> <li>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li> <li>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li> <li>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li> </ol>                                                                                                                                                                                                                                                                                                                                      | 제 30조 |

|                         |                                                                                                                                                                                                                                                                                                                                                                                                                                                                                                                                                                                                                                                                                                                                                                                                                                                                                                                           |       |
|-------------------------|---------------------------------------------------------------------------------------------------------------------------------------------------------------------------------------------------------------------------------------------------------------------------------------------------------------------------------------------------------------------------------------------------------------------------------------------------------------------------------------------------------------------------------------------------------------------------------------------------------------------------------------------------------------------------------------------------------------------------------------------------------------------------------------------------------------------------------------------------------------------------------------------------------------------------|-------|
|                         | <p>도계장에 한한다)</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       |
| 수변경관지구<br>안에서의<br>건축제한  |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 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lt;개정 2014.1.6.&gt;</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p>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 제 31조 |
| 시가지경관<br>지구안에서의<br>건축제한 |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 제 32조 |
| 미관지구<br>안에서의<br>건축제한    | <p>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4와 같음</p> <p>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 대지안의 공지,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또는 대문의 형태와 색채, 돌출하는 건축설비 등의 설치 제한과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음</p> <p>1.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목과 같음</p> <p>가. 중심지미관지구는 5층 이상으로 함 &lt;개정 2014.1.6.&gt;</p> <p>나.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3층 이하로 한다. 다만,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인 경우에는 5층 이하로 함</p> <p>2.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의 비율로 제한하며, 그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로 함</p> <p>3.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하며, 이 공지안에는 개방감확보, 보행자의 통행 및 출입의 용이,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전신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 또는 군수가지정하는 자와 도시개발 사업자가 설치하는 차량 출입 방지시설 교통시설물 및 가로수의 식재는 그러하지 아니함</p> <p>4. 부속 건축물로서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 또는 냉난방 설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미관도로측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음</p> <p>5.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구별 미관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p> | 제 33조 |

출처)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2014.01.06 기준

### 3. 경관조례의 제정

#### 1) 경관조례 기본방향

- 경관법의 지자체 위임사항 보완
-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외 필요사항은 새로운 장으로 정리
-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 마련
- 특정 권역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세부조항 마련
- 경관관련 법제도 등 국제법을 비롯한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경관협정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 경관조례 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총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수정</li> <li>• 조례사용 용어의 정의 정리</li> <li>• 기본계획에 의거한 경관형성 추진전략 보완</li> <li>• 군수 등 경관관련 자의 책무 규정</li> <li>• 재산권과 공익과의 관계 규정</li> <li>• 관련법 및 조례와의 관계 보완</li> </ul> |
| 경관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계획의 내용 구체화</li> <li>•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내용 구체화(주민 제안 포함)</li> <li>• 중점경관지구의 지정, 경관관리방향, 설계지침,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li> </ul>                                                   |
| 경관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사업의 대상 구체화</li> <li>• 경관사업과 공공기관과의 관련성 규정</li> <li>• 경관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시</li> <li>• 경관사업의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li> </ul>                                     |
| 경관협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협정 체결자 범위 확대</li> <li>• 경관협정 내용의 구체화</li> <li>•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 절차, 지원에 관한 사항 보완</li> </ul>                                                                        |
| 경관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심의 대상 구체화</li> <li>• 경관자문대상 구체화</li> </ul>                                                                                                                      |
| 공동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li> </ul>                                                                                                                                |
| 경관추진 활동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추진 활동단체에 대한 승인 사항 추가</li> </ul>                                                                                                                                 |
| 경관형성을 위한 시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상의 시상, 지원, 계몽에 관한 사항 추가</li> </ul>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의 자연을 보존하고, 서천의 상징을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위한 서천 다음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경관"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하고 있는 대상 및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관리대상을 말한다.
2. "경관관리"란 경관요소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가치있게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경관요소"란 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관을 만들어내는 개개의 구성물을 말한다.
4. "경관계획"이란 법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군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과 군의 특정지역 또는 경관요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5.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군수가 중점적으로 경관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6. "경관설계가이드라인"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 경관자원을 보호하고, 가꾸어가기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시 고려되어야 할 경관요소별 원칙적인 경관유도기준을 말한다.
7. "경관사업"이란 법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경관협정"이란 법에 따라 일정지역 및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 간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
10.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서천군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서천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형성 추진전략)**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존의 수림·지형·조망 등의 자연을 가급적 보전하고 최대한 살린다.
2. 다양한 녹지디자인을 통해 녹지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3. 도시형·단위형·연결형 등의 녹지축을 조성하도록 한다.
4. 기존 하천정비, 수로조성, 테마형 수공간 등의 건강한 친수 공간을 만든다.
5. 보행길·자전거길·운동공간 등을 조성하여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6. 친환경적 기법을 활용한 건강한 건축물을 조성한다.
7. 가로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언제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8. 건축물이나 시설물·구조물 등을 예술작품화 한다.
9. 공개공자·가로·거점부를 활용하여 공공예술공간을 조성한다.
10. 상징거점·상징가로·상징도시를 통해 서천군의 상징을 만든다.
11. 색채·야간·계절 등 시각적인 요소를 차별화하여 표정이 있는 도시를 만든다.
12. 테마가로·테마공간·테마시설 등으로 테마가 있는 도시를 만든다.

**제5조(군수사업자주민의 책무)** ① 군수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수는 우수한 경관조성에 필요한 시책 강구와 경관관리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공공건축물, 도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 등 군에서 발주하거나 소유자가 되는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시경관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주민 및 사업자의 도시경관형성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의식고양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② 사업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는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스스로 사업 활동이 지역의 양호한 경관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업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군이 시행하는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의 매력 있는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은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각자가 양호한 경관형성의 담당자로서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주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서천군 경관조례(안)

3. 주민은 양호한 경관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관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시설물 및 공간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권의 존중 및 공익과의 관계)** 이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관계자의 재산권 및 그 밖의 이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공사업 기타 공익과의 조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제도의 활용)** 군수는 경관형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법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거한 관련제도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기관등에 대한 협력요청 등)** 군수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기관, 상위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적용범위)** 군 관할구역안의 경관과 관련된 시설물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경관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은 개별법을 따른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경관계획

**제11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서천군의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경관계획을 수립하며,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단위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구역내의 각 지역의 경관특성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경관계획에 의거한 방침으로서 서천군 경관설계지침을 정하도록 한다.

③ 주민의 제안과 군수가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지구 및 분야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관계획에 있어서 지형 및 지물 등의 지리적 조건, 토지이용의 상황, 경관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경관 계획구역을 구분하는 지구 및 지구 구분과 관련된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서천군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에게 고시하고,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주민 등에게 주지하도록 한다.

⑦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영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군수는 경관계획에 있어서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1. 경관법에서 정하는 사항
2. 경관계획구역(서천군 전 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
3. 경관형성 방침과 경관설계지침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 및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관련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사항
5. 경관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군수가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 가. 제안의 개요
  -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그 밖에 경관계획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6.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 서천군 경관조례(안)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경관관련 법령 및 조례와의 부합성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여부
5.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
6.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재산권침해등)
7. 그 밖의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군수는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 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경관계획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서천군 경관위원회에 해당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제출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제14조(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서천군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있어서 양호한 경관형성관리를 위한 방침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및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해당 구역마다 정하도록 한다.

③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서천군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④ 전항의 규정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15조(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별 경관 지침을 준수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한다.

**제1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장 경관사업

**제1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지경관, 가로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관문경관, 조망경관 사업 등
2. 건축경관, 오픈스페이스경관, 색채경관, 야간경관, 시설물디자인개선 사업 등
3. 공공이 주도하는 특화가로, 쌈지공원, 가로 정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건축물, 구조물 사업 등
4. 민간 협동으로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광장조성, 전면공지, 가로조성 사업 등
5. 민간이 주도하는 담장허물기 사업 등
6. 공공사업과 연계하는 공공시설, 공공건축, 공공공간, 도로, 하천, 공원, 하수도, 교량 등의 정비 및 개선사업 등
7. 저수지주변 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등
8.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경관사업의 선정절차)** ① 경관사업의 선정은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파급성, 사업의 중요성, 관련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의 선정기준은 경관형성의 기여도, 지역예의 기여도, 투자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 시행의지 등의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③ 경관사업의 선정절차는 사업공고, 신청접수, 제안서 심사, 경관사업의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④ 경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⑤ 경관사업의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서천군 경관조례(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0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자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2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 된다.

⑧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2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대상지역의 이용자 및 주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 해당 사업의 담당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결과 보고,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장 경관협정

**제2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경관협정을 위임받은 자

## 서천군 경관조례(안)

2. 경관계획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익법인(LH공사한국도로공사수자원공사충남개발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법인 등)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7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경관협정체결자의 전원합의 의사표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3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지원 대상 및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범위)
3.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사업비 산출내역서
5. 사업비 조달방안
6.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7. 유지관리 계획
8. 사업계획 관련 도서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3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경관협정에 대한 평가는 제24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를 준용한다.

②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주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 해당사업의 담당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결과 보고,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분석결과를 경관협정 관련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서천군 경관조례(안)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5장 경관위원회

**제34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천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사·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경관위원회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용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경관위원회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주무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 또는 심의 및 자문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⑦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비밀준수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회의)**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회의록은 회의 때마다 작성 보관 관리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존·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을 말한다.

**제39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m 초과, 건폐율 30%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3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0조(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심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
2. 그 밖에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4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장 공동위원회

**제42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3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 구분  | 대상                                                                                                                                                                                                                                                                                                         | 적용시기       |
|-----|------------------------------------------------------------------------------------------------------------------------------------------------------------------------------------------------------------------------------------------------------------------------------------------------------------|------------|
| 건축물 |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역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 층수 5층 이상인 아파트</li> <li>- 연립주택 : 층수 3층 이상인 연립주택</li> <li>- 다세대 주택 : 층수 3층 이상인 다세대 주택</li> </ul> </li> <li>· 상업지역내 주거면적이 30%이상인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li> </ul> | 신축         |
|     | 공공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공공업무시설,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 6호 종교시설, 제 10호 교육연구시설 등</li> </ul>                                                                                                                                                            | 신축<br>리모델링 |

〈별표 2〉

| 구분     | 대상                                             | 적용시기     |
|--------|------------------------------------------------|----------|
| 공공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바~아’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신축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가~나’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신축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신축, 리모델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신축, 리모델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신축, 리모델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신축, 리모델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신축, 리모델링 |
|        | ·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공공업무시설                  | 신축, 리모델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신축, 리모델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신축, 리모델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신축, 리모델링 |

〈별표 3〉

| 구분     | 대상                                                                                                                                                                                                                                            | 적용시기 |
|--------|-----------------------------------------------------------------------------------------------------------------------------------------------------------------------------------------------------------------------------------------------|------|
| 대상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다음 항에 속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 주차장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li> <li>-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駐機場)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li> </ul> | 신축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중 다음항에 속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 고물상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li> </ul>                                                                                                    | 신축   |

## 4.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

###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임(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해당 지역에 맞는 경관형성 및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과 서천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도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현황

- 현재 서천군은 총 19개 지구 약 3,202,155㎡가 결정되어 있음
- 사업유형으로는 관광휴양지형 2개소, 도시개발형 2개소, 주거환경형 2개소, 주택건설형 5개소, 산업개발형 5개소, 기타지역 3개소 가 있음

#### 서천군 지구단위구역 지정현황

| 구분  | 명칭          | 지역 및 지구      | 유형      | 면 적(㎡)    |
|-----|-------------|--------------|---------|-----------|
| 1   | 춘장대관광단지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지형  | 300,508   |
| 2   | 국립생태원       | 도시개발사업지역     | 도시개발형   | 997,527   |
| 3   | 서천읍 군사지구    |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 주거환경개선형 | 66,920    |
| 4   | 서천군 노인복지타운  | 계획관리지역       | 기타형     | 126,280   |
| 5   | 한산모시타운      | 주거개발진흥지구     | 기타형     | 89,307    |
| 6   | 천산스카이빌      | 일반주거지역       | 주택건설사업형 | 24,685    |
| 7   | 장항읍 원수지구2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택건설사업형 | 54,768    |
| 8   | 종천2농공단지에정부지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개발형   | 197,512   |
| 9   | 중앙수산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개발형   | 3,389     |
| 10  | 서천읍 사곡리 아파트 | 일반주거지역       | 주택건설사업형 | 17,952    |
| 11  | 장항산업단지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개발형   | 440,657   |
| 12  | 하수종말처리시설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개발형   | 31,176    |
| 13  | 종촌농공단지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개발형   | 251,948   |
| 14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도시개발사업지역     | 도시개발형   | 324,638   |
| 15  | 서천읍 국민임대주택  | 일반주거지역       | 주택건설사업형 | 36,073    |
| 16  | 장항읍 창선 2리   | 일반주거지역       | 주택건설사업형 | 14,977    |
| 17  | 금강하구둑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지형  | 176,045   |
| 18  | 서천읍 특화시장주변  | 준주거지역        | 기타형     | 29,304    |
| 19  | 장항읍 신창지구    |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 주거환경개선형 | 18,489    |
| 합 계 |             |              |         | 3,202,155 |

출처) 서천군 KLIS data(2013년 기준)



##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관관련 문제점

###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지구별 특징 미비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관련 지침의 요소는 대부분 유사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 요소와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어 지침적 성격이 떨어짐

### 거시적 측면에서의 경관 조화 고려 미흡

- 민간부문의 경관관련 지침 내용은 단일 건물에 치중하고 있어 스카이라인, 건물의 외관 및 연속성, 건물의 재료 및 색상 등과 같은 건물과 건물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다루지 못하고 있음

### 경관테마의 반영 미비

- 경관테마의 내용이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개념적인 방향 설정에 그치고 있어 기본구상,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 건축물,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설계지침 위주로 작성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경관자원조사,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가이드라인의 각 단계가 상호 일관성 있고 연속적인 틀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계획 체계와 검증과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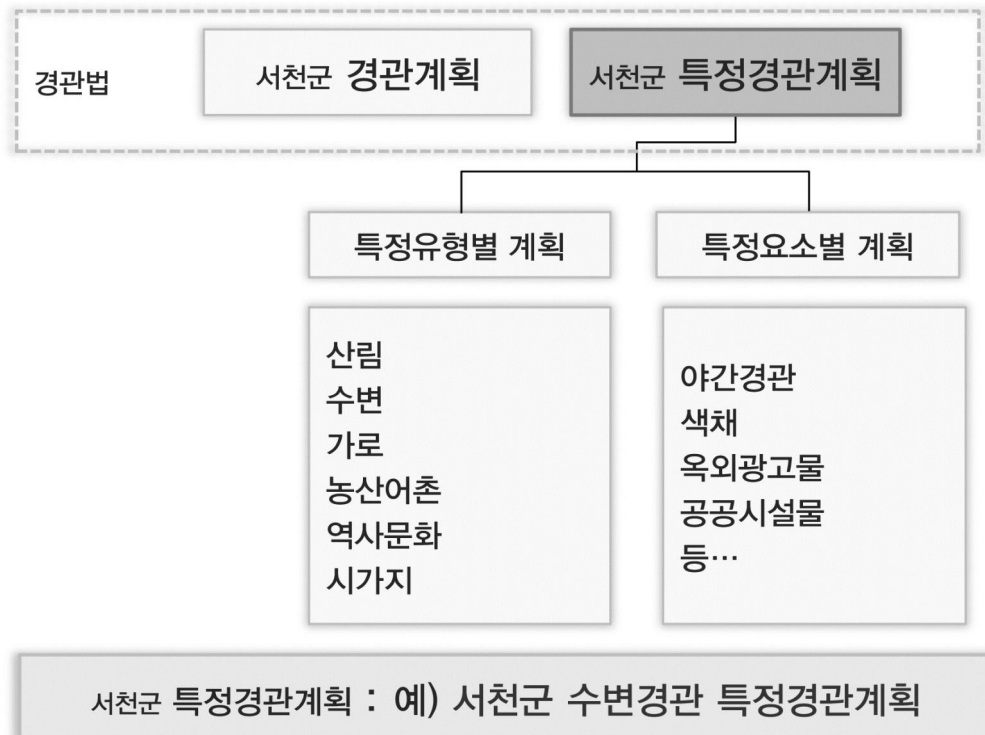
###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관 관리방안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 개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단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 신규 개발지역의 경구 개발계획 수립 시 지구지정단계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경관에 대한 영향 및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에서 심의를 받도록 함
  - 지구지정 시에는 양호한 경관자원 및 보전해야할 경관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 가용지 및 개발대상지 등을 도출하고 이를 검토한 내용을 심의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는 주변 경관 및 개발대상지 경관을 분석하여 밀도가 낮아져야하는 영역, 녹지축을 보전해야하는 영역, 통경이 확보되어야 하는 축, 거점이 확보되어야 하는 지점 등 경관골격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할 계획대상은 용도지역·지구의 적정성여부, 밀도계획의 적정성, 녹지축 및 공원녹지 위치의 적정성, 양호한 경관자원으로의 통경축 및 개방축의 반영여부, 광장의 위치 등 해당개발대상지의 경관과 관련된 사항임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 특정경관계획은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임
  -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경관상세계획의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은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관관리 방안 제시 및 경관상세계획으로 활용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 경관계획 재검토를 통해 경관계획을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기본적으로 경관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주민주도의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 추진방안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된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에 대하여는 경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및 심의를 통하여 관리하는 방안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일정규모의 개발 사업은 지정 및 승인 전에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사전경관계획의 내용은 주변 지역의 경관현황 조사, 경관기본구상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경관축 및 조망점 등에 관한 기본구상, 가로체계, 용도의 배치 및 공원, 녹지, 광장 등에 관한 기본구상,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스카이라인에 대한 입체적 구상 등임
  - 사전경관계획은 서천군 경관계획과 부합되도록 수립하도록 함

###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구역의 지정대상

| 구 분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 비고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 제 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li> </ul> </li> <li>· 시행령 : 제 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li> <li>· 시행령 : 제 44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li> </ul>                                                                                                                                                       | 각 법률 참조 |
| 서천군 도시 계획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li> <li>· 지구단위계획수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지역</li> <li>·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li> <li>·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유지가 필요한 지역</li> <li>· 문화기능과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li> <li>·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li> <li>·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필요한 지역</li> </ul> | 제14조    |

출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4. 01.17.(법률 제 11922호, 2013. 7.16, 일부개정)

출처) 서천군도시계획조례 2014.01.06, 일부개정

## 4)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및 운영방안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앞서 설정된 기본구상에서 특히 중점적인 경관 보전·관리·형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천군 차원에서 해당 경관자원이 지니는 중요성, 상징성, 장소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 설정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위치

- 장항읍 시가지 가로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서천읍 시가지 가로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장항제련소 오염토지 정화사업지 중점경관관리구역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중점경관관리구역
- 춘장대비인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금강변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흥림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 동부(봉선)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 문헌서원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한산모시관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국립생태원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 비인만 해안도로 중점경관관리구역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및 운영방안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조례에 경관심의대상으로 지정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및 체크리스트 항목 명시
- 행위주체가 알기 쉽도록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및 운영방침 제시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심의도서 작성
- 심의신청 시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맞춰 심의도서 작성
- 설계내용은 도식화하여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5) 대규모 개발지역의 경관관리 방안

### 대규모 개발지역의 특정경관계획 수립내용

- 특정경관계획의 개요 특정경관계획의 개요 : 배경 및 목적, 범위, 수립 방법과 과정 등을 제시함
-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 유형별 경관자원조사, 경관자원조사의 범위, 경관자원조사의 종합, 경관 구조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등을 제시함
- 특정경관계획의 기본구상 : 기본방향의 설정, 미래상의 설정, 추진전략의 제시, 기본구상의 방향, 기본구상의 내용 등을 제시함
-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 특정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 등을 제시함
-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 :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공공 시설물 경관설계지침, 색채 경관설계지침, 야간 경관설계지침 등을 제시함
- 계획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특정경관계획의 실행

-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함
-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별 규모,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에 관한 설계사항 등을 포함
- 경관설계지침은 모든 대상과 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과 특정 대상이나 계획에만 적용되는 지침으로 구분 하여 제시
- 세부적으로 제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경관적 요소를 살펴보면 건축물에서는 규모, 용도, 위치, 형태, 외관, 건축선,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지붕형태 등을 제어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에서는 가로등, 도로의 포장형태, 휴지통, 교통 시설, 조명시설,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의 형태와 모양, 색채 등을 제어할 수 있음

### 대규모 개발지역별 특정경관계획 시 반영 사항

-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 등의 경관기본계획에 따라 전체적인 골격을 제시
-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설계지침의 내용을 반영
- 주요 간선가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주요 간선가로 설계지침의 내용을 반영
-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에 따르고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 각 용지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함
-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에 따르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색채 경관설계지침에 따르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광고물 경관설계지침에 따르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시설물 경관설계지침에 따르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야간 경관설계지침에 따르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5. 경관사업 추진

### 1) 경관사업의 규정

- 경관사업과 관련된 법적규정은 경관법·시행령, 서천군 경관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경관사업의 대상 및 승인, 지원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경관사업의 법적규정

| 경관법                                                               | 경관법 시행령                                      | 서천군 경관조례                                                                      |
|-------------------------------------------------------------------|----------------------------------------------|-------------------------------------------------------------------------------|
|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br>- 경관사업의 대상<br>- 경관사업의 승인 및 시행조건               |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br>- 경관사업계획서의 내용             | 제17조(경관사업의 대상)<br>제18조(경관사업의 선정절차)<br>제1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br>제20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
|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br>-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역할                                | 제9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조직 등)<br>-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업무 | 제2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br>제2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
|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br>- 소요자금의 보조 및 융자<br>- 경관사업의 감독         |                                              | 제2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br>제2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
|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br>- 심의 : 경관사업의 승인<br>- 자문 :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 제40조(심의대상)<br>제37조(자문대상)                                                      |

#### 서천군 경관사업의 분류

- 세부적인 사업대상별 경관사업은 '경관사업 모델개발 및 실행방안'(국토교통부, 2009) 참조



## 2) 경관사업의 대상

- 경관사업은 경관법 제16조에서 6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음
- 경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에는 경관계획에 열거된 사업이나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서천군의 경우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까지 포함하도록 고려하여야 함
- 경관법 16조 6항에 제시된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사업대상별 경관사업, 시행자별 경관사업, 공공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서천군 경관사업의 대상

- 경관사업은 경관법 제16조와 서천군 경관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 열거된 사항과 같음

경관사업의 대상

| 구 분         | 대 상                                                                                                                                                                                                                                                                                                                                                                                                                                                                   |
|-------------|-----------------------------------------------------------------------------------------------------------------------------------------------------------------------------------------------------------------------------------------------------------------------------------------------------------------------------------------------------------------------------------------------------------------------------------------------------------------------|
| 경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li> <li>·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li> <li>·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li> <li>·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li> <li>·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li> </ul>                                                                                                                                                                                                                                                         |
| 서천군<br>경관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지경관, 가로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관문경관, 조망경관 사업</li> <li>· 건축경관, 오픈스페이스경관, 색채경관, 야간경관, 시설물디자인개선 사업</li> <li>· 공공이 주도하는 특화가로조성, 쌈지공원조성, 가로정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건축물, 구조물 사업</li> <li>· 민관 협동으로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광장조성, 전면공지, 가로조성 사업</li> <li>· 민간이 주도하는 담장허물기 사업</li> <li>· 공공사업과 연계하는 공공시설, 공공건축, 공공공간, 도로, 하천, 공원, 하수도, 교량 등의 정비 및 개선사업</li> <li>· 저수지주변 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li> <li>·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ul> |

## 경관사업의 추진절차

- 경관사업 모델개발 및 실행방안(국토교통부, 2009)의 경관사업 추진절차를 따름

### 경관사업의 추진절차

| 절 차     |           | 추진내용                                                         |
|---------|-----------|--------------------------------------------------------------|
| Step 1  | 사업기본계획수립  | 경관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br>경관사업대상지의 선정기준 및 후보지역 제시           |
| Step 2  | 사업대상지 선정  | 경관사업을 위한 사업대상지의 위치 및 규모를 설정<br>심의위원회 및 주민협의회의 심의 및 협의를 통해 선정 |
| Step 3  | 사업의 구체화   |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br>관계부서의 협의 및 사업비 고려<br>사업추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
| Step 4  | 재정심사      | 투자 및 용자 심사 (지자체 기준)                                          |
| Step 5  | 예산확보      | 기본 및 실시설계의 예산 확보<br>당해 연도 예산확보 및 추경예산 요구                     |
| Step 6  | 설계용역 발주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br>설계용역 발주 심의<br>설계용역 계약 심의                   |
| Step 7  | 경관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완료 후 디자인 심의                                             |
| Step 8  | 실시설계 추진   |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추진<br>예산배정 요청 (계약심사 결과 첨부)                       |
| Step 9  | 공사발주      | 공사감독 의뢰                                                      |
| Step 10 | 공사추진      | 공사추진 공정회의                                                    |
| Step 11 | 사후관리체계 추진 |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관리체계 구축<br>가로시설물 및 거리유지 관리                       |
| Step 12 | 사업효과 분석   | 전문가를 통한 사업효과 분석<br>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효과 분석                       |



### 3) 경관사업의 선정

- 경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의해 공공주도형, 민관협동형,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고, 추진단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                                                                                                                                       |
|---------------|---------------------------------------------------------------------------------------------------------------------------------------|
| 사업의 성격에 따른 구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 주도형</li> <li>민관 협동형</li> <li>민간 주도형</li> </ul>                                              |
| 추진 단계에 따른 구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 단기사업(2014~2015)</li> <li>2단계 : 중기사업(2016~2018)</li> <li>3단계 : 장기사업(2019~2020)</li> </ul> |

- 국내에서의 경관사업은 공공 주도형과 민관 협동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주도형은 시민의 인식성 부족으로 인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계획에서는 민간 주도형 사업은 선정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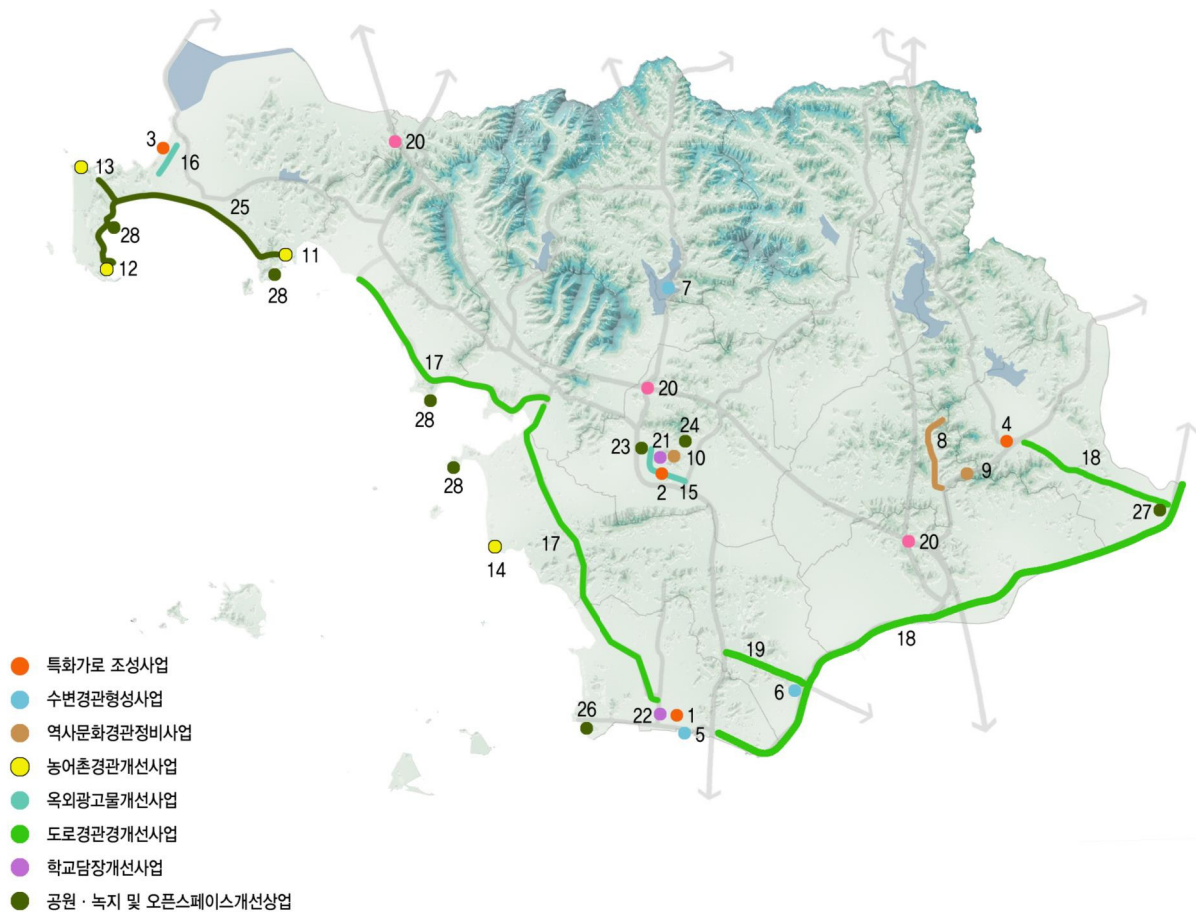
#### 경관사업 예비대상 검토 List

| 사업유형               | 사업명                         | 사업의 성격 |      | 추진단계 |    |    |
|--------------------|-----------------------------|--------|------|------|----|----|
|                    |                             | 공공주도   | 민관협동 | 단기   | 중기 | 장기 |
| 특화가로 조성사업          | 1. 장항읍 가족문화의거리 조성사업         |        | ●    | ●    |    |    |
|                    | 2. 서천읍 중심가로(군청로) 특화사업       |        | ●    |      | ●  |    |
|                    | 3. 춘장대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 ●      |      | ●    |    |    |
|                    | 4. 한산면 중심가로 경관개선사업          |        | ●    |      | ●  |    |
| 수변경관 형성사업          | 5. 장항읍 물양장 경관개선사업           | ●      |      |      |    | ●  |
|                    | 6. 김인전공원 수변공원화사업            | ●      |      | ●    |    |    |
|                    | 7. 흥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 ●      |      |      |    | ●  |
| 역사문화 경관정비사업        | 8. 문헌서원 진입가로경관 개선사업         |        | ●    | ●    |    |    |
|                    | 9. 한산모시관주변 상징화사업            | ●      |      |      | ●  |    |
|                    | 10. 서천향교 주변 경관개선사업          |        | ●    |      |    | ●  |
| 농어촌경관 개선사업         | 11. 월하성마을 외관개선사업            |        | ●    | ●    |    |    |
|                    | 12. 비인항 어촌마을 경관개선사업         |        | ●    |      | ●  |    |
|                    | 13. 아름다운 흥원항 가꾸기사업          |        | ●    |      | ●  |    |
|                    | 14. 송석항 가꾸기 사업              |        | ●    |      |    | ●  |
|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15. 서천읍 중심가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        | ●    | ●    |    |    |
|                    | 16. 춘장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 ●    |      | ●  |    |
| 도로경관 개선사업          | 17. 해안도로 경관개선사업             | ●      |      |      |    | ●  |
|                    | 18. 서천군 특화가로조성사업(가로수 개선)    | ●      |      |      |    | ●  |
|                    | 19. 서천 진입도로 경관형성사업(국도 21호선) | ●      |      |      | ●  |    |
|                    | 20. 주요 IC 관문경관 형성사업         | ●      |      |      |    | ●  |
| 학교담장 개선사업          | 21. 서천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        | ●    | ●    |    |    |
|                    | 22. 장항중앙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        | ●    | ●    |    |    |
| 공원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개선사업 | 23. 서천읍 진입부 소공원 조성사업        | ●      |      | ●    |    |    |
|                    | 24. 서천읍일원 구 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사업  | ●      |      |      |    | ●  |
|                    | 25. 춘장대비인항 일원 걷고싶은 해안길 조성사업 |        | ●    |      | ●  |    |
|                    | 26. 전망산 녹화사업                |        | ●    |      |    | ●  |
|                    | 27. 신성리 갈대 홍보관 경관개선사업       | ●      |      | ●    |    |    |
|                    | 28. 서해안변 경관 Point 조성사업      | ●      |      |      | ●  |    |

## 경관사업 예비대상의 사업내용

| 연번 | 사업명                      | 사업의 성격 | 사업내용                                                                                                                                         |
|----|--------------------------|--------|----------------------------------------------------------------------------------------------------------------------------------------------|
| 1  | 장항읍<br>가족문화의거리<br>조성사업   | 공공주주   | · 보행자 중심의 보도포장 정비<br>· 휴식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br>· 상징조형물 설치<br>· 가로변 조명열주 설치<br>· 포켓 쌈지공원 조성                                                         |
|    |                          | 민관협동   | · 주민참여를 통한 가로 디자인 연출                                                                                                                         |
| 2  | 서천읍<br>중심가로(군청로)<br>특화사업 | 공공주주   | · 보행자 중심의 보도포장 정비<br>· 가로시설물 통합설치(정류장, 전화부스 등)<br>· 가로변 조명열주 설치<br>· 전선지중화 사업                                                                |
|    |                          | 민관협동   | · 주민 아이디어 제시<br>· 옥외광고물 정비                                                                                                                   |
| 3  | 춘장대<br>디자인 거리<br>조성사업    | 공공주도   | · 보도포장 정비<br>· 포켓쉼터 조성 및 포토존 조성<br>· 해수욕장 파라솔 및 막구조 시설물 설치<br>· 야간경관조명 설치                                                                    |
| 4  | 한산면<br>중심가로<br>경관개선사업    | 공공주도   | · 보도포장 정비<br>· 휴식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br>· 한산초등학교 담장을 활용한 가로경관 개선<br>· 옥외광고물 정비<br>· 가로시설물 정비(전선 지중화, 시설물 통합설치, 안내간판 정비 등)                           |
|    |                          | 민관협동   | · 주민참여형 마을벽화 조성<br>· 빈집 정비를 통한 경관 개선 및 특산물 판매                                                                                                |
| 5  | 장항읍<br>물양장<br>경관개선사업     | 공공주도   | · 주 진입부 상징조형물 설치(게이트형식 2개소)<br>· 담장 철거, 경관저해시설 철거 및 이전설치<br>· 시설물 정비(전선지중화, 통합시설물 등)<br>· 보도포장 정비 및 야간조명 설치<br>· 친수공간 조성<br>· 수산물 판매 특화거리 조성 |
| 6  | 김인전공원<br>수변공원화<br>사업     | 공공주도   | · 친수공간 조성 및 금강변 디자인 차별화(포토존 조성)<br>· 진입부 경관개선<br>· 공원 포장재 개선 및 휴게시설물 재정비<br>· 식재 보식 및 이식                                                     |
| 7  | 홍림저수지<br>생태공원<br>조성사업    | 공공주도   | · 친수공간조성(수변관찰대 및 수변 산책로 등)<br>· 생태공원 조성(포장, 휴게시설물, 조명시설 등 도입)<br>· 저수지내 시설물 개선(낙시 시설물 경관개선 등)<br>· 인공식물섬 도입                                  |
| 8  | 문헌서원<br>진입가로<br>경관개선사업   | 공공주도   | · 진입로 포장개선<br>· 상징조형물 설치 및 초점식재                                                                                                              |
|    |                          | 민관협동   | · 마을경관개선(담장 및 지붕개선)                                                                                                                          |
| 9  | 한산모시관주변<br>상징화사업         | 공공주도   | · 상징조형물 설치 및 안내표지판 개선<br>· 야간경관 조명 설치<br>· 통합가로시설물 설치                                                                                        |
| 10 | 서천향교주변<br>경관개선사업         | 공공주도   | · 향교 앞 주차장 개선<br>· 진입동선 개선 및 시설물 개선<br>· 휴식 및 편의시설 도입                                                                                        |
|    |                          | 민관협동   | · 향교 주변 주민과의 협정을 통한 경관관리                                                                                                                     |
| 11 | 월하성마을<br>외관개선사업          | 공공주도   | · 마을 지붕 색채 개선<br>· 월하성 해변거리 조성(식재, 가로시설 정비, 포장재 개선 등)                                                                                        |
|    |                          | 민관협동   | · 주민협동 마을가꾸기 운동<br>· 마을벽화 꾸미기                                                                                                                |
| 12 | 비안항 어촌마을<br>경관개선사업       | 공공주도   | · 어촌마을 경관개선(지붕 색채 등)                                                                                                                         |

|    |                                 |      |                                         |
|----|---------------------------------|------|-----------------------------------------|
| 13 | 아름다운 후원향<br>가꾸기사업               | 민관협동 | · 해안변 친수공간 조성                           |
|    |                                 | 공공주도 | · 주민 협정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
| 14 | 송석향 가꾸기 사업                      | 민관협동 | · 어촌마을 경관개선(지붕 색채 등)                    |
|    |                                 | 공공주도 | · 다목적 파빌리온 도입(검토)                       |
| 15 | 서천읍 중심가로<br>옥외광고물 정비사업          | 민관협동 | · 진입부 경관형성(상징조형물 조성 및 식재)               |
|    |                                 | 공공주도 | · 주민 협정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
| 16 | 춘장대<br>옥외광물 정비사업                | 민관협동 | · 어촌마을 경관개선(지붕 색채 등)                    |
|    |                                 | 공공주도 | · 진입부 경관형성(상징조형물 조성 및 식재)               |
| 17 | 해안도로<br>경관개선사업                  | 민관협동 | · 디자인 개발                                |
|    |                                 | 공공주도 | · 주민 협정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
| 18 | 서천군<br>특화가로<br>조성사업             | 민관협동 | · 디자인 개발                                |
|    |                                 | 공공주도 | · 주민 협정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
| 19 | 서천군 진입도로<br>경관형성사업<br>(국도 21호선) | 민관협동 | · 경관조망점 심터 조성(3개소)                      |
|    |                                 | 공공주도 | · 경관과 부조화되는 훼손철거 또는 자연재료로 대체            |
| 20 | 주요 IC<br>관문경관<br>형성사업           | 민관협동 | · 랜드마크 요소 도입(2개소)                       |
|    |                                 | 공공주도 | · 절성토부 복원 및 식재개선                        |
| 21 | 서천초등학교<br>담장허물기 사업              | 민관협동 | · 종초면 당정리 - 장항읍 화천리 (지방도 617)           |
|    |                                 | 공공주도 | · 장항읍 원수리 - 한산면 신성리 (지방도 68호선, 국도 29호선) |
| 22 | 장항중앙초등학교<br>담장허물기 사업            | 민관협동 | · 가로수 보식 및 식재(가로수종 : 중국단풍)              |
|    |                                 | 공공주도 | · 한산면 동산리 - 한산면 신성리 (지방도 613호선)         |
| 23 | 서천읍 진입부<br>소공원 조성사업             | 민관협동 | · 가로수 보식 및 식재개선(가로수종 : 왕벚나무)            |
|    |                                 | 공공주도 | · 한산면 식재(가로수종 : 미루나무 또는 이팝나무)           |
| 24 | 서천읍일원 구 쓰레기<br>매립장 공원화 사업       | 민관협동 | · 버스정류장 디자인 개선(8개소)                     |
|    |                                 | 공공주도 | · 안내시간판 통합 정비                           |
| 25 | 춘장대-비인항 일원<br>견고시설 해안길<br>조성사업  | 민관협동 | · 가로변 옥외시설물 통합 정비                       |
|    |                                 | 공공주도 | · 가로변 경관작물 식재(다년생 초본류, 예-코스모스, 구절초 등)   |
| 26 | 전망산 녹화사업                        | 민관협동 | · 상징조형물 도입                              |
|    |                                 | 공공주도 | · 서천 IC, 동서천 IC, 춘장대 IC 톨게이트 경관 디자인     |
| 27 | 신성리 갈대 홍보관<br>경관개선사업            | 민관협동 | · 고속도로 진입 분기점 상징조형물 설치                  |
|    |                                 | 공공주도 | · 안내판 및 표지판 통합설치                        |
| 28 | 서해안변 경관 Point<br>조성사업           | 민관협동 | · 톨게이트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                      |
|    |                                 | 공공주도 | · 담장 허물기 및 공간조성                         |



경관사업 예비대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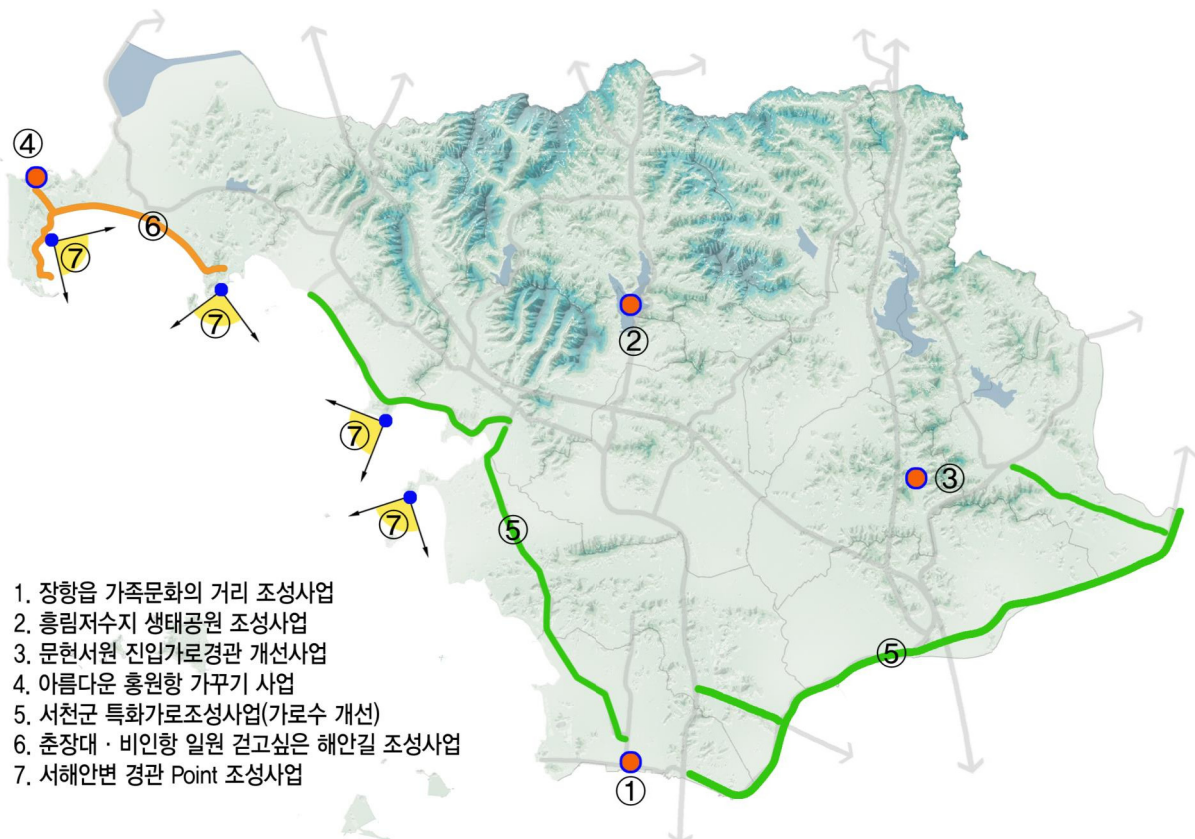
### 경관사업의 선정기준

- 경관사업은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경관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경관사업은 사업시행이 시급하고, 사업시행시 경관개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
- 경관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제시

| 구 분      | 대 상                       |         |
|----------|---------------------------|---------|
| 경관형성 기여도 | · 지역적 특성에 부합              | 지역부합성   |
|          | ·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사업과의 연계여부   | 경관일체성   |
|          | · 주변시설, 역사문화적 자원 등의 배려 여부 | 경관연속성   |
| 지역에의 기여도 | · 부가적인 사업 유도가능 여부         | 사업유도성   |
|          | · 관광 및 지역산업에 기여여부         | 지역활성화   |
|          | · 선도적인 시책인지의 여부           | 선도시책    |
| 투자의 적절성  | · 사업의 시급성                 | 사업시급성   |
|          | · 사업비 조달방법의 적정성과 타당성      | 사업비 적절성 |
| 사업추진과정   | · 주민참가의 프로세스              | 주민참여과정  |
|          | · 지속적 경관관리의 가능성           | 관리지속성   |
| 사업시행의지   | ·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및 경관개선 의지    | 지역주민의지  |
|          | · 해당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          | 지자체의지   |

## 경관사업의 선정

| 사업유형                   | 사업명                            | 사업의 성격   |          | 추진단계 |    |    |
|------------------------|--------------------------------|----------|----------|------|----|----|
|                        |                                | 공공<br>주도 | 민관<br>협동 | 단기   | 중기 | 장기 |
| 특화가로 조성사업              | 1. 장항읍 가족문화의거리 조성사업            |          | ●        | ●    |    |    |
| 수변경관 형성사업              | 2. 흥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 ●        |          |      |    | ●  |
| 역사문화경관 정비사업            | 3. 문헌서원 진입가로경관 개선사업            |          | ●        | ●    |    |    |
| 농어촌경관 개선사업             | 4. 아름다운 흥원항 가꾸기사업              |          | ●        |      | ●  |    |
| 도로경관 개선사업              | 5. 서천군 특화가로조성사업(가로수 개선)        | ●        |          |      |    | ●  |
| 공원·녹지 및 오픈스페이스<br>개선사업 | 6. 춘장대·비인항 일원 걷고싶은 해안길<br>조성사업 |          | ●        |      | ●  |    |
|                        | 7. 서해안변 경관 Point 조성사업          | ●        |          |      | ●  |    |



1. 장항읍 가족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2. 흥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3. 문헌서원 진입가로경관 개선사업
4. 아름다운 흥원항 가꾸기 사업
5. 서천군 특화가로조성사업(가로수 개선)
6. 춘장대 · 비인항 일원 걷고싶은 해안길 조성사업
7. 서해안변 경관 Point 조성사업

경관사업 위치도

## 6. 단계별 사업계획

### 1) 경관사업의 단계별 구분

#### 우선순위 선정기준

- 공간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사업 진행시 무리가 없도록 전체적인 분포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
- 시급한 경관정비가 요구되는 사업,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예산대비 효용성이 좋은 사업 및 빠른 시일내에 경관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 경제적 비용이나 장기적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함

| 구분              | 추진내용                                                                                                                                                 |
|-----------------|------------------------------------------------------------------------------------------------------------------------------------------------------|
| 1단계<br>단기적 경관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li> <li>·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실행이 가능한 사업</li> <li>· 가시성이 높은 사업 및 홍보효과가 뛰어난 사업</li> </ul> |
| 2단계<br>단기적 경관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적 보완이나 사업추진에 준비과정이 필요한 사업</li> <li>· 계획단계부터 경관협정이나 지역자문과 같은 협의가 필요한 사업</li> </ul>                         |
| 3단계<br>단기적 경관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재정이 요하는 사업 및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li> <li>· 즉각적인 사업시행보다 장기적 관리를 요하는 사업</li> </ul>                               |

#### 단계별 경관사업의 선정

| 구분                                    | 추진내용                                                                                                                                 |
|---------------------------------------|--------------------------------------------------------------------------------------------------------------------------------------|
| <b>1단계</b><br>단기적 경관사업<br>(2014-2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읍 가족문화의 거리 조성사업</li> <li>· 문헌서원 진입가로경관 개선사업</li> </ul>                                    |
| <b>2단계</b><br>중기적 경관사업<br>(2016-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흥원항 가꾸기 사업</li> <li>· 서해안변 경관 Point 조성사업</li> <li>· 춘장대비인항 일원 걷고싶은 해안길 조성사업</li> </ul> |
| <b>3단계</b><br>장기적 경관사업<br>(2021-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li> <li>· 서천군 특화가로수 조성사업</li> </ul>                                        |

### 단기사업(2014~2015)

- 시급하게 경관관리가 요구되는 사업
-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
-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사업
- 사업의 중요도가 큰 사업 및 현재의 공공사업과 연계가능한 사업

| 사업명               | 재원별 |    |    |    | 주관    | 비고 |
|-------------------|-----|----|----|----|-------|----|
|                   | 국비  | 도비 | 군비 | 민자 |       |    |
| 장항읍 가족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 ○   |    | ○  |    | 공공,민관 |    |
| 문헌서원 진입가로경관 개선사업  | ○   | ○  | ○  |    | 공공    |    |

### 중기사업(2016~2020)

- 경관계획 재정부(5년 후)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 사업의 중요도가 낮은 사업, 주민과 행정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면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등

| 사업명                     | 재원별 |    |    |    | 주관    | 비고 |
|-------------------------|-----|----|----|----|-------|----|
|                         | 국비  | 도비 | 군비 | 민자 |       |    |
| 아름다운 흥원항 가꾸기 사업         | ○   | ○  | ○  | ○  | 공공,민관 |    |
| 서해안변 경관 Point 조성사업      |     |    | ○  |    | 공공    |    |
| 춘장대비인항 일원 걷고싶은 해안길 조성사업 | ○   | ○  | ○  |    | 공공,민관 |    |

### 장기사업(2021~2025)

- 사업기간이 긴 사업
- 예산소요가 많은 사업
- 다른 사업과 연계성이 적은 사업

| 사업명             | 재원별 |    |    |    | 주관 | 비고 |
|-----------------|-----|----|----|----|----|----|
|                 | 국비  | 도비 | 군비 | 민자 |    |    |
| 홍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 ○   | ○  | ○  |    | 공공 |    |
| 서천군 특화가로수 조성사업  |     | ○  | ○  |    | 공공 |    |

## 7. 예산 및 재정계획

### 1) 예산 및 재정계획

#### 경관사업비 적정예산 산정

- 서천군 부문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442억 원임
-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3.92%에 해당하는 예산은 240억 원임
- 타 지자체의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중 경관분야 예산은 서울시는 약 5.0%, 대전시는 약 3.5%, 대구시는 4.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을 늘리는 추세임
- 서천군은 예산수준을 감안하여 서천군 경관분야 예산은 2~3% 정도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 구분           | 서울시       | 대전시    | 대구시     |
|--------------|-----------|--------|---------|
|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 20,63,011 | 98,576 | 237,686 |
| 경관분야 예산      | 9,640,441 | 3,493  | 11,450  |
| 비율           | 5.04%     | 3.54%  | 4.81%   |

- 서천군의 경관분야 1년 적정예산은 5억~7억원임
  - 2% 예산시 : 24,037,286,000(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분야 예산) × 0.02 = 480,745,720원
  - 3% 예산시 : 24,037,286,000(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분야 예산) × 0.03 = 721,118,580원

#### 사업비 산정기준

- 경관형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각각의 사업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정보'와 기존의 계획보고서상의 집행계획 등을 참고로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
- 사업비는 크게 조사 설계비와 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하되 보상비는 제외
- 조사설계비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도시계획 및 조경, 토목, 단지계획 관련사항을 산정하고, 건축부문은 민간 투자로서 본 범위에서는 제외
- 공사비는 토목과 조경, 색채, 조명 등 기반시설 공사비로 산정하며, 부대비용은 제외

#### 사업비 산정

- 본 투자사업비는 일반적인 공사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략사업비로서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기타 기반시설 공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천군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형성사업에 소요되는 총 투자 사업비는 약 6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

| 구분  | 유형   | 기간        | 소요비용 |
|-----|------|-----------|------|
| 1단계 | 단기사업 | 2014~2015 | 6.6  |
| 2단계 | 중기사업 | 2016~2020 | 25.0 |
| 3단계 | 장기사업 | 2021~2025 | 33.0 |



| 사업유형               | 사업명 |                          | 사업내역                                                                                  | 사업비   | 구분 |
|--------------------|-----|--------------------------|---------------------------------------------------------------------------------------|-------|----|
| 특화가로 조성사업          | 1   | 장항읍 가족문화의거리 조성사업         | 포장정비(5,000㎡x5만=2.5억), 상징조형물(0.5억), 열주(20x3백=0.6억), 쌈지공원(2개소x5천만=1억)                   | 4.6억  | 단기 |
| 수변경관 형성사업          | 2   | 홍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 생태공원조성(1식x20억), 인공식물섬(2억), 경관개선(1식x3억)                                                | 25억   | 장기 |
| 역사문화 경관정비사업        | 3   | 문헌서원 진입가로경관 개선사업         | 포장개선(1,000mx10만=1억), 상징조형물(1식x1억)                                                     | 2억    | 단기 |
| 농어촌경관 개선사업         | 4   | 아름다운 홍원항 가꾸기사업           | 지붕개선(50호x1천만=5억), 다목적 파빌리온(3억)                                                        | 8억    | 중기 |
| 도로경관 개선사업          | 5   | 서천군 특화가로조성사업 (가로수 개선)    | 지방도 617(1주x40만x500주=2억)<br>국도 68, 지방도 68(1주x40만x1,000주=4억)<br>지방도 613(1주x40만x500주=2억) | 8억    | 장기 |
| 공원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개선사업 | 6   | 춘장대·비인항 일원 걷고싶은 해안길 조성사업 | 해안길 조성(1mx10만x8000m=8억)<br>야간경관(20개소x5백만=1억), 휴게시설(1억)                                | 10억   | 중기 |
|                    | 7   | 서해안변 경관 Point 조성사업       | 조망시설(1식x1.5억)x4개소 = 6억<br>휴게시설물(10x2백=0.2억)x4개소=0.8억<br>조명시설(1식x5백x4개소)=0.2억          | 7억    | 중기 |
| 합 계                |     |                          |                                                                                       | 64.6억 |    |

## 8.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

- 경관협정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 경관협정의 규정

- 경관협정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경관법·시행령, 서천군 경관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경관협정의 체결조건 및 협정내용,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에 대한 사항, 협정의 준수·지원 방안 등에 관한 규정 등임

### 경관협정 법적규정

| 경관법                                                                      | 경관법 시행령                                                                 | 서천군 경관조례                                                                                  |
|--------------------------------------------------------------------------|-------------------------------------------------------------------------|-------------------------------------------------------------------------------------------|
|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br>경관협정 체결조건<br>1인협정<br>경관협정의 내용<br>경관협정서 양식             | 제1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br>제11조 (경관협정의 내용)                                  | 제25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br>제26조 (경관협정의 내용)<br>제27조 (경관협정서)                                    |
| 제2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br>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조건과 위원구성<br>경관협정운영회의 신고→시장군수            | 제12조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br>명칭 및 소재지<br>대표자 및 회원명단<br>운영 목적 및 방법<br>기능의 역할 | 제28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
|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br>심의:시군경관위원회/인가:시장군수<br>인가내용의 열람:시장군수                   | 제13조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br>제14조 (경관협정의 공고 등)<br>공고방법, 열람장소               |                                                                                           |
| 제22,23조 (경관협정의 변경, 폐지)<br>변경 또는 폐지의 합의 기준<br>→대통령령<br>심의:시군경관위원회/인가:시장군수 | 제15조 (경관협정의 변경 등)                                                       |                                                                                           |
| 제24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br>경관협정 체결자의 경관협정 준수의무<br>경관협정의 승계→대통령령             | 제16조 (경관협정의 승계자)<br>승계조건, 신고기한 등                                        | 제29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
| 제25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br>경관협정 승인에 따른 기술·재정적 지원<br>비용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 제17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 제3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br>제31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br>제32조 (지원대상 및 사업계획서)<br>제33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
| 제30조 (경관위원회의 기능)<br>심의 : 경관협정의 인가<br>자문 :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 관련 사항            | 제24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 제40조 (심의대상)<br>제37조 (자문대상)                                                                |

## 경관협정 체결자

-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등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의 체결이 가능함

## 경관협정 체결사항

-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은 건축물 의장, 색채, 옥외광고물 등 아래의 표에 열거된 사항과 같이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경관협정 체결사항

| 구 분      | 대 상                                                                                                                                                                                                                                                                             |
|----------|---------------------------------------------------------------------------------------------------------------------------------------------------------------------------------------------------------------------------------------------------------------------------------|
| 경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li> <li>·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li> <li>·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li> <li>·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li> <li>·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li> </ul>                                                             |
| 경관법 시행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li> <li>·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li> </ul>                                                                                                                                    |
| 서천군 경관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li> <li>·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li> </ul> |

## 경관협정운영회

-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
-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방법은 기존 단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신설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설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와 법인체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인체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음

## 경관협정서

- 경관협정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주민 전원이 합의한 내용이어야 한다. 경관협정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경관협정의 명칭 : 해당 협정의 명칭을 명시한다. ‘○○○마을 경관협정’, ‘○○○가로 옥외광고물 경관협정’ 등 지명이나 협정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등의 사용이 가능함
-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 협정체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1/1,000~1/5,000 지도 등에 위치를 작성하여야 함.
  - 단, 대상지역과 관련해서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소유가 아닌 공공용지의 경우, 공공용지의 훼손이나 물리적인 변경을 제외한 사항에 관해서는 협정체결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공용지도 대상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규모 :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소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해당 경관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규모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전원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한 최대 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음

- 경관협정의 목적 : 해당 협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명시함
- 경관협정의 내용 :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한다. 협정내용은 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사항에 한한다. 협정 내용은 경관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여섯가지 항목을 위주로 작성하고, 협정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함
- 경관협정 체결자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 협정체결에 동의한 체결자의 성명, 주소, 날인을 첨부하고, 체결된 협정을 운영할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등을 명시함
- 경관협정 유효기간 : 경관협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지자체 보조금 등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기관 등과 협의하여 경관협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유효기간의 표시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함.
-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 등의 업무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그 밖에 서천군 경관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등에 대하여 추가로 명시하도록 함
-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 최초 협정을 체결한 자가 매매나 증여·양도 등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경관협정도 승계되어야 하며, 경관협정서에 승계방법에 대해 명시하도록 한다. 매매계약시 계약서에 협정의 승계에 대한 단서를 부가하는 등의 방법에 대해 명시하도록 함
- 경관협정 폐지시 보조금, 지원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받는 경관협정을 중도에 폐지할 경우, 이들의 반환이나 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 기타사항 : 이상의 항목 외에 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 경관협정 인가 및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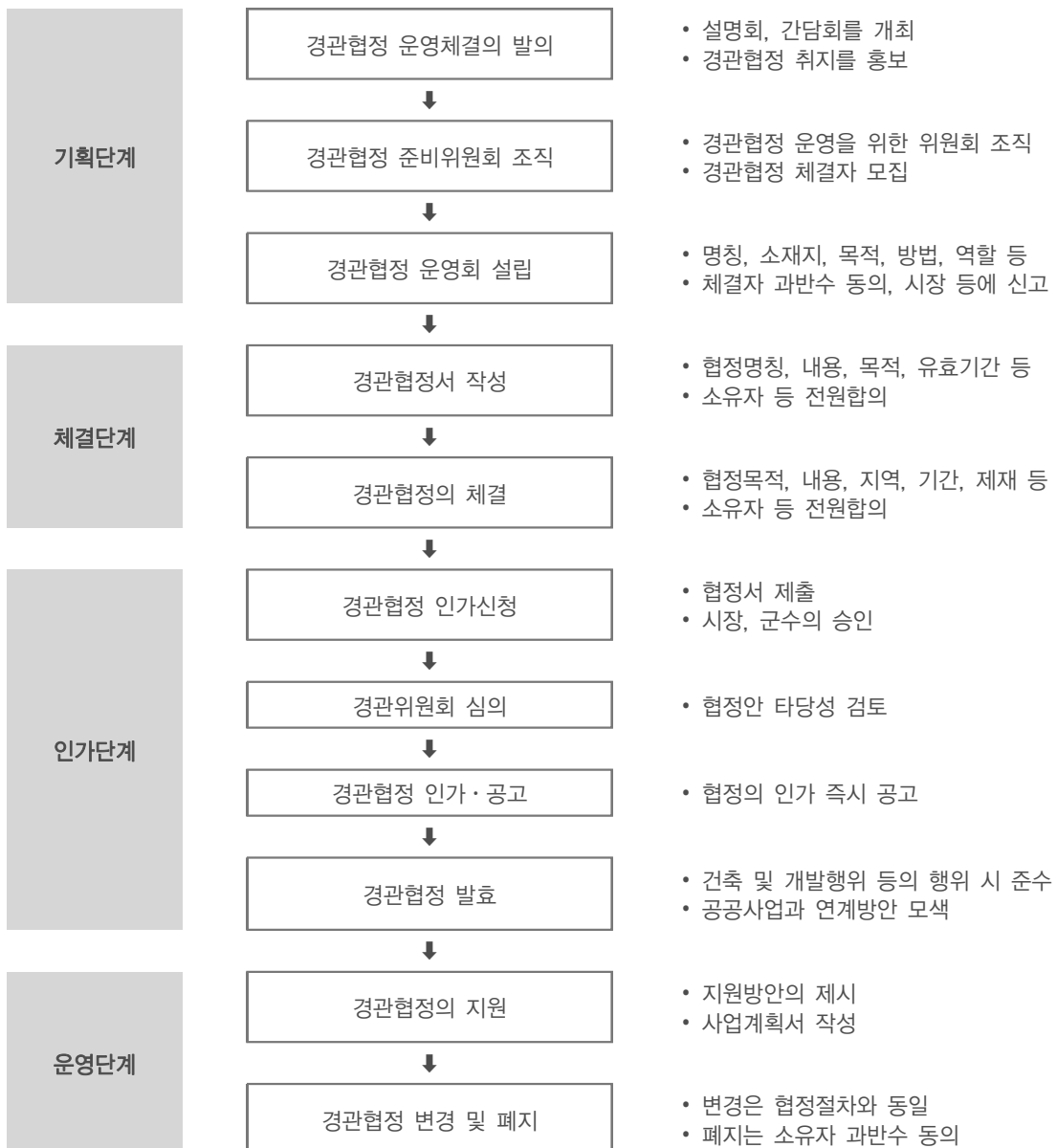
- 경관협정 체결자 또는 경관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음. 경관협정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경관협정이 서천군에 의해 인가 및 공고되면 경관협정이 발효되며, 경관협정체결자 등(지자체, 주민, 사업자 등)은 경관협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를 하도록하며 주민은 협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 하고, 지자체는 경관협정에 의한 경관형성사업 추진시 적극 협조하도록 함

##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 기 인가된 협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협정의 체결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음
- 기 인가된 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폐지결정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은 인가 및 변경과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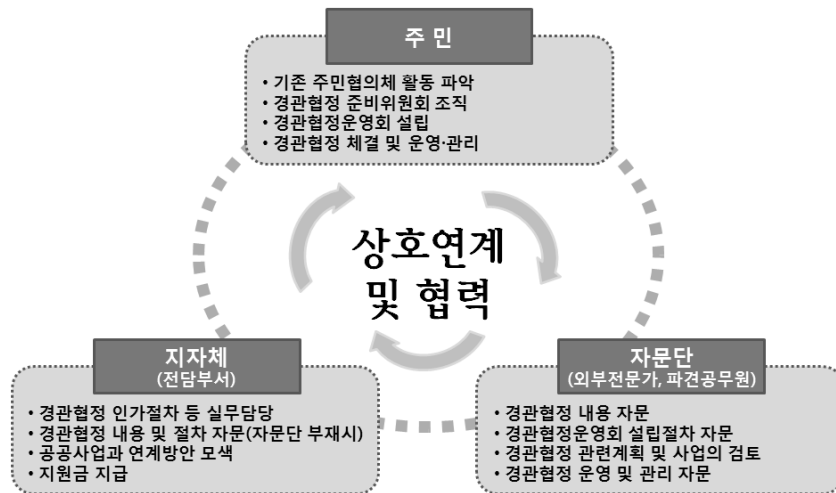
## 1) 경관협정의 추진절차

- 경관협정의 추진절차는 크게 협정기획단계, 협정체결단계, 협정인가단계, 협정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경관협정의 기획단계는 협정체결의 준비단계로서 협정체결자의 모집, 협정체결의 발의,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는 단계임
- 경관협정의 체결단계는 경관협정 체결자가 경관협정의 내용 등을 담은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의 전원합의를 통해 체결하는 단계임
- 경관협정의 인가단계는 협정서를 인가 받기 위하여 신청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를 받아 공고하고 발효되는 단계임
- 경관협정의 운영단계는 인가받은 경관협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관협정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단계임



## 2) 경관협정의 참여주체

- 경관협정의 참여주체는 지자체(서천군), 주민, 자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고, 참여주체간의 상호연계 및 협력이 필요
- 자문단 : 경관협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로서 외부전문가 및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함. 경관협정 내용에 대한 자문 외에 경관협정운영회 결성부터 인가, 운영에 이르는 절차에 관한 지원, 협정내용의 미이행 및 승계거부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지자체 전담부서 : 경관협정 인가관련 절차, 공공사업과의 연계 및 지원금 지급 등의 행정적인 내용을 전담하며 자문단의 구성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자문역할을 담당하기도 함. 따라서 전담부서는 업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관협정 외에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등 지역 경관 전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함
- 주민 : 기존 주민협의체(상인회, 시민단체 등)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발의하고, 경관협정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여 경관협정 체결자를 모집한다. 또한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여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체결 하여 인가신청함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 지자체(서천군)                                                                                                                                                                                     | 자문단                                                                                                                                                                                                                                                                                      | 주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주민협의체 활동 파악</li> <li>• 경관협정 홍보</li> <li>• 경관위원회 심의</li> <li>• 경관협정 인가</li> <li>• 공고 및 주민열람</li> <li>• 공공사업과 연계방안 모색</li> <li>• 지원금 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주민협의체 활동 파악</li> <li>• 경관협정 홍보</li> <li>•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및 신고</li> <li>• 관련계획 및 사업의 검토</li> <li>• 지역특성 파악</li> <li>• 경관협정서 작성</li> <li>• 사업계획서 작성</li> <li>• 사업추진</li> <li>• 경관협정 운영 및 관리</li> <li>• 경관협정 변경</li> <li>• 경관협정 만료 또는 폐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리더중심 자치활동</li> <li>• 기존 주민협의체 활동 파악</li> <li>• 경관협정체결 발의</li> <li>•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조직</li> <li>•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li> <li>•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및 신고</li> <li>• 관련계획 및 사업의 검토</li> <li>• 지역특성 파악</li> <li>• 경관협정서 작성</li> <li>• 사업계획서 작성</li> <li>• 사업추진</li> <li>• 경관협정 운영 및 관리</li> <li>• 경관협정 변경</li> <li>• 경관협정 만료 또는 폐지</li> </ul> |

## 9. 경관관련 심의 및 자문

### 1) 경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구성 분야

- 군의회 의원
- 군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관련분야에 공부하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2) 전문 소위원회의 구성(검토)

### 3) 경관관련 위원회의 운영

- 경관관련 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 통합운영 : 경관위원회와 경관관련 위원회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1/2이상으로 하여 공동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 개별운영 : 경관관련 위원회에 경관위원회 위원을 2명이상 포함하여 개별위원회에서 심의

### 4) 심의 및 자문대상

#### 심의대상

- 경관계획의 승인 및 결정
- 경관사업의 승인
- 경관협정의 승인
-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

#### 자문대상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조례로 정한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5) 경관 심의 및 자문

### 신청시기 : 위원회 개최 2주전

- 경관계획(지구단위계획) 등 : 기본계획 수립 전
- 용역사업 :
  1. 허가(승인·인가·신고 등) 대상의 경우는 허가 등을 받기 전
  2. 용역사업 등의 실시설계 초기단계, 공동주택 색채 심의는 골조공사 80%이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디자인설계 확정 이전

### 신청서류 : 심의신청서 1부 및 심의도서

#### 심의도서

- 심의신청서 : 3부(검토용), PDF파일(위원검토용)
- 심의개최 7일전 : 심의용 20부, PPT파일

### 경관위원회 검토사항

- 경관법, 경관조례 등 관련법규 저촉 여부
-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설계지침 준수 여부
-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에 따른 설계지침 준수 여부

## 6) 경관사전 협의제도 도입·운영

### 사전 체크리스트 시행의 필요성

- 사업자를 비롯한 건축행위와 관련된 자는 설계과정에서 사전군과 협의를 통해 계획 추진에 대한 배려필요

### 목적

- 사업여건상 반영이 곤란한 사항으로 인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사업자와 담당자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경관위원회에 빠른 상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
- 심의위원들의 경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기술) 또는 지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관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 방법

-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건축물 디자인 등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내용 사전 점검
-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경관전문가의 사전자문
- 자문내용은 경관심의시 보고함으로써 심의기간 단축



### 심의절차의 개선

- 현행 경관조례에서 제시한 실시설계 이전, 디자인 확정 이전, 사업발주 이전의 경관심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건축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경관을 고려한 많은 수정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됨
- 특히, 민간사업자의 심의는 불가피한 현실에서 사업진행에 대한 조치 필요
  - 민간사업자는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 내용의 수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 예상
- 따라서, 공익을 위한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규제당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양해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심의대상                   | 심의 시기 조정(안)          |
|------------------------|----------------------|
| 도시개발사업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
| 택지개발사업                 |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전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전  |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 • 재정비촉진계획의 심의전       |
| 관광(단)지 개발사업            | • 조성계획 승인 전          |
| 공원녹지계획 승인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
| 산업단지개발사업               | • 국토교통부 승인 전         |
|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 도시 및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전 |
| 주택건설사업                 | • 사업계획 승인 전          |

## 7) 경관설계지침

- 경관설계지침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별로 경관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제시한 지침임
- 경관설계지침은 설계자가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건축물을 구상하고, 경관심의 또는 자문대상인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시 제출하도록 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의 형성을 유도

### 경관설계지침 적용방안

#### ① 경관설계지침 확인

- 경관설계지침을 확인

#### ② 경관설계지침을 고려한 건축계획

- 설계자는 조사 및 구상단계부터 경관설계지침을 참고하여 건축물을 구상

#### ③ 체크리스트 작성

-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판단하여 경관설계지침 안에 항목별 표로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작성

#### ④ 체크리스트 제출

-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시 체크리스트를 제출

#### 1 경관설계지침 확인



경관설계지침의 종류를 파악한다.

#### 2 경관설계지침을 고려한 건축계획



설계자는 조사 및 구상단계부터 경관설계지침을 참고하여 건축물을 구상한다.

#### 3 체크리스트 작성



경관설계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판단하여 항목별 준수 여부를 표시한다.

#### 4 체크리스트 제출



경관심의 또는 자문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제출한다.

## 10. 경관관리 실행조직 강화 및 운영

- 서천군에서는 경관법을 다루는 부서와 기타 관련법을 다루는 부서가 구분되어있고, 부서간의 협의 및 공동작업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일선에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움
- 경관관리는 다분야에 걸쳐서 연관되어 있고, 특히 도시의 모든 부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상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관과 관련된 많은 주체들, 특히 행정주체 사이의 협력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는 팀(계)의 일부 담당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조직 중심의 협의체계 강화 / 단기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과 관련된 협의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일반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경관부서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계로 나눌 수 있음
- 일반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부서간 협의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나 부서간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전제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므로 업무처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 경관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계는 전자와 같이 관련 행정주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 계획이 전제되어야 하고, 관련 부서간의 협의체계가 강제적이지 않으므로 상호간의 협약 체결하거나 정기적인 업무회의 운영 등을 통해 관련부서간 협의가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이러한 협의체계는 국내의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전문가가 1-2명에 불과하고, 채용된 전문가들이 계약직이라는 한계로 인해 자체적으로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음
- 또한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이 없어 서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련 부서간 협의와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이러한 협력체계는 비교적 단시간에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련부서들의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통합가능성이라는 관점이나 물리적 대상의 통합과 계획과정의 통합이라는 목적에서 모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경관 전담부서 설치 / 중장기

- 경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획, 조성,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임
- 경관 관리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경관 자체가 복잡하므로 지자체장이 전략적으로 경관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음
- 현실적으로 경관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이 부서에서 경관과 관련된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음
- 장기적으로나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안이 바람직하겠지만, 전면적인 개선이 아니더라도 경관과 관련된 사업 발주 주체만이라도 어느 정도 일원화 시켜도 많은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경관계획만이 아니라 경관사업의 추진에 따른 전과정을 관리하여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부서내 작은 게 형태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계획에서부터 사업까지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조직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

## 관련부서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 활용 / 단기

- 경관과 관련하여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형태로, 외부 전문가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음
- 외부전문가의 활용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와 조언,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다른 관련 주체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통합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도움을 주는 형태로서 관련 부서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형태는 현재의 제도적 상황에서도 지자체와 관련부서, 전문가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단체장의 의지나 담당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공과 전문가 사이의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더불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
- 최근에는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통합가능성이나 통합의 목적에서도 비교적 효과적이어서 경관을 비롯한 도시, 조경, 옥외광고물 등의 개별 사업에 모두 적용이 가능함

### 경관관련 행정조직의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과 특성

| 구분     | 기존부서중심의 협의체계 강화                                                                                                           | 전담부서 설치                                                                                                                                                | 외부전문가 활용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조직내 협의체계 강화</li> <li>• 업무처리시간 장기간 소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발주주체의 일원화 기능</li> <li>• 장기적, 통합적 계획 수립 기능</li> <li>• 현 제도 적용 어려움</li> <li>• 사업특성에 따라 전담반(T/F) 구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의 지속적 검토와 모니터링 기능</li> <li>• 조정자 역할</li> </ul> |
| 필요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내 전문가</li> <li>• 장기적통합적 계획</li> <li>• 긴밀한 협의체계</li> <li>• 관련자와의 공감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조직 전면 개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전문가 활용제도</li> <li>• 관련자의 의지와 관심</li> </ul>      |
| 통합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적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li> </ul>                                     |
|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적 적용방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적용방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적 적용방안</li> </ul>                               |

## 1) 제도 개선

- 앞에서 제시한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방안은 통합적인 경관계획 및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검토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그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련부서간의 상호협약 및 정기적인 협의회 구성 운영

- 단기적으로 기존부서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 상호협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 이러한 협약은 그동안 검토서에 의한 내용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운영적 측면의 틀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협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에서 조정해야할 목록, 정기적인 협의회 구성 등과 같은 업무 이행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을 보완하여 좀 더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
- 이를 위해 관련 주체간의 정기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워크숍, 세미나 등과 같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하며, 이를 업무수행지침에 포함하여 활용토록 함

### 전문직 공무원 제도 개선

- 현재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향후 경관사업의 추진시에는 전문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업무영역에서 옥외광고물, 역사문화환경, 공원녹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행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경관과 관련된 실무전문가 들이 중심이 되어 관련 부서를 조직할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의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는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개방형 직위제<sup>2)</sup>를 채택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 민간전문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임용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행정조직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련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임

### 민간전문가의 활용방안 마련

-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히 용역관계나 단순한 자문관계가 아닌 행정주체와 수평적 관계의 조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 아직까지 경관관련 전문가의 유형이나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민간 전문가의 보수나 운영지침 등에 대해 제시하게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규정에 근거한 민간 전문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더불어서, 상시적인 업무협조가 아니더라도 경관위원회의 위원들을 활용방안도 동시에 모색함

## 2) 홍보 및 계몽방안

### 경관계획 홍보방안

- 경관 홈페이지 운영
- 경관제도 경관정책에 대한 홍보 및 경관사업 등 시민의견 제안운영
- 홍보배너를 제작하여 관련 홈페이지의 팝업으로 활용
- 학회, 건축 잡지사 등 단체와 광고협력을 통한 서천군 경관소개

2)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

## 경관 교육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공무원 등 행정직을 대상으로 경관계획과 업무와의 연계방안 교육
- 서천군 관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경관계획과 개발사업에 경관계획 반영사항을 교육
- 서천군에 자문, 심의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경관계획 내용에 대한 안내와 자문, 심의 시 활용방안을 홍보

## 홍보물 발행

- 경관계획 홍보물을 발행하여 경관계획에 대한 지속적 홍보
- 경관계획을 통한 결과물을 연 1회 정기적으로 발행
- 경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홍보 팸플릿 발행

## 심포지엄 개최

- 서천군 경관계획과 경관시나리오를 소개하는 경관심포지엄을 개최
- 시민 및 관계자들의 지속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 한국경관학회, 도시설계학회 등의 경관세미나 등을 유치

## 경관계획 활성화방안

### 포상제도

- 경관에 대한 배려, 계획, 실천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
- 경관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을 실시
-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및 행정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

## 경관계획 추후계획

- 아름다운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경관상세 가이드라인 수립
-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한 경관상세 가이드라인 수립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경관계획 수립
- 건축물, 수변, 녹지, 색채, 야경, 광고물, 시설물 등 경관상세계획수립

## VII. 부록



체크리스트 | 경관계획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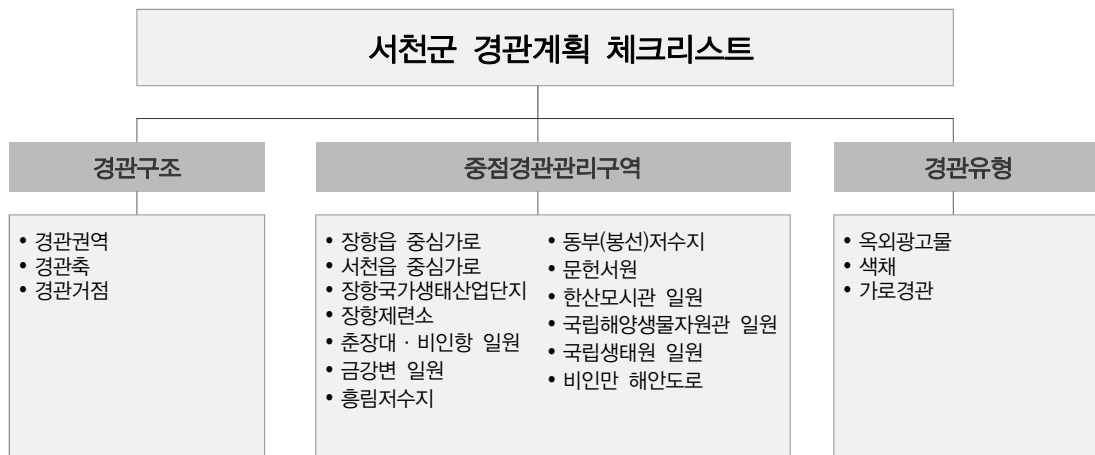
## 1.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의 목적

- 서천군 경관계획의 체크리스트는 서천군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하며 정돈된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품격 있는 경관을 효율적으로 유도·관리하기 위하여 목적을 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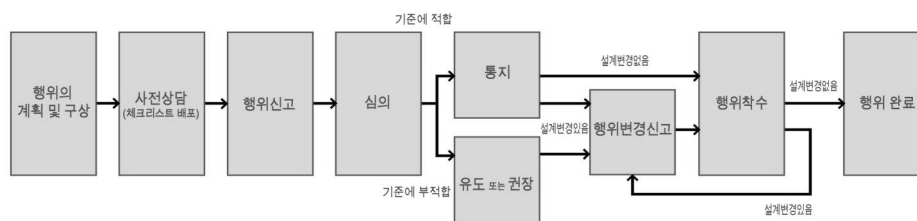
### 체크리스트의 구성

- 본 경관계획의 체크리스트는 경관구조, 경관유형,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관구조별 체크리스트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으로 구성됨
  - 경관권역은 푸른중심권역, 청정문화권역, 해안교류권역
  - 경관축은 녹지경관축, 수변경관축, 도로경관축
  - 경관거점은 자연경관거점, 역사문화경관거점, 상징경관거점, 관문경관거점
- 중점경관관리구역 체크리스트에는 경관적으로 보존, 관리, 형성이 필요한 지역 총 13곳을 설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제시함
- 경관유형별 체크리스트는 옥외광고물, 색채, 가로경관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 체크리스트의 운영

- 경관계획의 체크리스트는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설계자문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
- 체크리스트는 사전협의의 통해서 기준을 미리 제시하도록 하며, 이행여부에 따라 행위를 허가하도록 함



## 체크리스트 적용 범위 및 활용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따라 심의대상과 심의제외 대상으로 구분
- 심의대상이 되는 행위는 경관위원회 및 경관관련위원회(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물 위원회 등)의 심의도서에 경관설계지침의 반영여부를 검토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심의대상이 아닌 대상은 인허가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경관설계지침의 점검사항을 체크함
- 축사, 재배사, 창고 등에 대한 농어촌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회의 심의분야인 개발행위심의시 허가대상에 대한 체크리스트 운영하며, 개발행위 관련 담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 구분 | 관련계획 및 대상                      | 적용시기                                  | 활용내용                                | 운영                                                                                     |
|----|--------------------------------|---------------------------------------|-------------------------------------|----------------------------------------------------------------------------------------|
| 공공 | 도시기본계획                         | 경관·미관계획시                              | 경관계획 참조 반영                          | 위원회 심의                                                                                 |
|    | 도시관리계획                         | 경관·미관지구 지정 및 정비시                      | 경관계획 참조 반영                          | 위원회 심의                                                                                 |
|    | 지구단위계획                         | 경관부문계획시                               | 경관계획 및 설계지침 반영                      | 위원회 심의<br>- 필수사항 반영<br>- 권장사항 위원회 결정                                                   |
|    | 공공발주<br>(공공건축물, 시설물 등)         | 계획 및 설계시                              | 경관설계지침 반영<br>체크리스트 제출               | 심의대상 위원회 심의<br>- 필수사항 반영<br>- 권장사항 위원회 결정<br><br>심의제외대상<br>- 필수사항 반영<br>- 권장사항 적용여부 확인 |
| 민간 | 대규모 개발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 경관계획 참조 반영<br>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영         | 위원회 심의시 반영 검토<br>- 필수사항 반영<br>- 권장사항 위원회 결정                                            |
|    | 일반건축물<br>(주거, 상업, 업무, 공업건축물 등) | 건축계획수립시                               | 경관설계지침 자가점검<br>건축인허가시 체크리스트<br>제출   | 건축허가(심의)대상<br>- 필수사항 반영<br>- 권장사항 위원회 결정                                               |
|    |                                |                                       |                                     | 건축허가대상<br>- 필수사항 반영<br>- 권장사항 확인                                                       |
|    |                                |                                       |                                     | 건축신고대상<br>- 필수·권장사항 적용여부 확인                                                            |
|    | 옥외광고물 설치시                      | 경관설계지침 자가점검<br>광고물인허가시 자가점검<br>리스트 제출 |                                     | 허가(심의)대상<br>- 필수사항 반영<br>- 권장사항 위원회 결정                                                 |
|    |                                |                                       |                                     | 허가대상<br>- 필수사항 반영<br>- 권장사항 확인                                                         |
|    |                                |                                       |                                     | 신고대상<br>- 필수·권장사항 적용여부 확인                                                              |
|    | 개발행위시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시                         | 경관설계지침 자가점검<br>개발행위인허가시<br>체크리스트 제출 | 허가(심의)대상<br>- 필수사항 반영<br>- 권장사항 위원회 결정                                                 |
|    |                                |                                       |                                     | 허가대상<br>- 필수·권장사항 적용여부 확인                                                              |

## 1) 경관구조 체크리스트

### ■ 수변관리권역 체크리스트

| 키워드                                      | 계획내용(지침)                              | 평가 |
|------------------------------------------|---------------------------------------|----|
| 해안변<br>우수경관 보전<br>(보전)                   | · 해안도로변 건축물 스카이라인 보전                  |    |
|                                          | · 해안 주변 구릉지 개별입지 제한                   |    |
|                                          | · 서해안으로의 조망점 관리                       |    |
|                                          | · 금강변 농경지 개별입지 제한                     |    |
|                                          | · 금강 및 서해 유입하천 하천경관 보존                |    |
|                                          | · 농경지의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등의 개별입지 제한  |    |
|                                          | · 항·포구경관 보전                           |    |
| 이미지 창출을<br>위한<br>인공경관의<br>적극적 관리<br>(관리) | · 부사호, 춘장대 해수욕장, 흥원항, 비인항의 옥외광고물 정비   |    |
|                                          | · 춘장대 관광지 중점관리                        |    |
|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변 중점 관리                  |    |
|                                          | · 국립생태원 진입(국도21) 옥외광고물 관리 및 위해 건축물 차폐 |    |
|                                          | · 금강하구둑 관광지 중점 관리                     |    |
|                                          | · 금강 및 서해안 도로변(국지도68) 친수경관 관리         |    |
|                                          | · 장항 금강 및 서해안 도로변(국지도68) 친수경관 관리      |    |
|                                          | · 펜션 및 음식점의 경관관리 및 옥외광고물 관리           |    |
| 매력적인<br>수변경관 및<br>도심부 경관형성<br>(형성)       | · 장항읍 등 공유수면 매립지 매력적인 경관 형성           |    |
|                                          | · 해안 관광지 및 항·포구변 야간조명 설치              |    |
|                                          | · 마량리 동백나무숲 일원 주변 정비                  |    |
|                                          | · 부사호(지방도607) 진입부 상징조형물 설치            |    |
|                                          | · 해안도로변 가로수길 조성                       |    |
|                                          | · 해안변 조망 데크 및 관찰 데크 등의 친수시설 도입        |    |
|                                          | · 장항읍 시가지 가로경관 개선                     |    |
|                                          | · 국립생태원 진입(국도21) 상징가로 조성              |    |
|                                          | · 관광지 및 장항읍의 녹지네트워크(녹지 확충) 및 주차장 녹화   |    |
|                                          | · 장항읍 버스 정류장 정비                       |    |
|                                          | · 장항읍 야간경관 형성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생태보전권역 체크리스트

| 키워드                         | 지침내용                                                 | 평가 |
|-----------------------------|------------------------------------------------------|----|
| 역사문화자원 및 산자·농경지 보전 (보전)     | · 축동저수지 일원 저수지 경관 보전                                 |    |
|                             | · 문화재(문헌서원, 이상재선생 생가지, 봉서사, 건지산성, 한산향교, 한산모시관) 원형 보존 |    |
|                             | · 문헌서원 진입로 이미지 고양을 위해 농촌경관 보전                        |    |
|                             | · 한산모시관 일원 경관 보전                                     |    |
|                             | · 건지산, 어성산으로의 조망경관 보호                                |    |
| 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대표 역사경관 형성 (관리) | · 건지산 등산로의 정비 및 개설을 통한 접근성 향상                        |    |
|                             | · 기존 주변 산림의 전망대 이용활성화를 위한 안내시설 설치                    |    |
|                             | · 건지산에서 시가지를 조망하기 위한 전망대 설치                          |    |
|                             | · 심플한 가로시설물 디자인으로 가로경관 관리                            |    |
|                             | · 국도29호선 도로 주변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관리                        |    |
| 그린·생태이미지 도입 및 경관형성 (형성)     | · 한산면소재지 진입부의 상징조형물 설치                               |    |
|                             | · 읍·면소재지의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휴게 공간 조성                      |    |
|                             | · 한산모시관 야간조명을 특화하여 이미지 강화                            |    |
|                             | · 문헌서원 등 역사문화자원의 야간조명을 업라이팅 연출하여 상징성 강화              |    |
|                             | · 축동저수지 주변 생태교육을 테마로 생태공원 및 경관 연출                    |    |
|                             | · 한산면소재지의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정비                              |    |
|                             | · 주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가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보도 포장 패턴의 차별화        |    |
|                             | · 동서천 IC 진입부 상징조형물 설치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청정자연권역 체크리스트

| 키워드                                | 지침내용                                                       | 평가 |
|------------------------------------|------------------------------------------------------------|----|
| 산림경관 보전 및<br>연접부 관리<br>(보전)        | · 주요 산악 조망점(봉림산, 천방산, 희리산, 원진산, 장태봉) 조망경관 보전               |    |
|                                    | · 주요산림경관 보전(난개발 관리)                                        |    |
|                                    | · 산림지역 축사(양계사, 돈사 등)의 개별입지 관리                              |    |
|                                    | · 흥림, 봉선, 중천 저수지 등 수변경관 보전                                 |    |
|                                    | · 지방도 가로경관 보전                                              |    |
|                                    | · 비인향교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                                         |    |
|                                    | · 우수 농촌마을(심동, 행복마을 등) 농촌경관 보전                              |    |
| 개발압력이 높은<br>지역의 인공경관<br>관리<br>(관리) | · 흥림저수지 등 수변경관의 계획적 관리                                     |    |
|                                    | · 지방도변 공가(폐가) 정비                                           |    |
|                                    | · 면사무소(시초, 문산, 판교, 비인) 일원 가로경관 정비                          |    |
|                                    | · 저수지변 쓰레기 및 가설시설물 관리                                      |    |
| 그린·생태이미지<br>도입한 산림권역<br>(형성)       | · 저수지변 조망데크, 관찰데크 등 유지 관리                                  |    |
|                                    | · 저수지변 야간경관 연출                                             |    |
|                                    | · 주요산 등산로 휴게시설 정비 및 추가 설치                                  |    |
|                                    | · 주요산 정상부 조망시설 설치                                          |    |
|                                    | ·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교육을 테마로 생태공원 및 경관 연출                          |    |
|                                    | · 호수변 생태탐방로 및 경관도로 조성                                      |    |
|                                    | · 호수변 조망 데크 및 관찰 데크 등의 친수시설 도입                             |    |
| 자가진단                               |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생활중심권역 체크리스트

| 키워드                             | 지침내용                               | 평가 |
|---------------------------------|------------------------------------|----|
| 자연경관 보전<br>(보전)                 | · 문수산, 희리산, 남산으로의 조망권 확보           |    |
|                                 | · 주요 조망점에서 남산, 희리산으로의 통경축 확보       |    |
|                                 | · 희리산으로의 스카이라인이 조망 가능토록 건축물 높이 관리  |    |
|                                 | · 남산성 복원 정비                        |    |
|                                 | · 길산평야경관 보전                        |    |
|                                 | · 길산천 수변경관 보전                      |    |
| 기존 시설<br>정비하여 이미지<br>개선<br>(관리) | · 희리산 등 기존 등산로의 정비 및 개설로 접근성 향상    |    |
|                                 | · 판교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그린 네트워크 형성        |    |
|                                 | · 서천읍내 풍부한 식재 조성 및 가로경관 관리         |    |
|                                 | · 서천읍내 공휴지의 재활용 및 경관 개선            |    |
|                                 | · 터미널 및 시가지의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정비         |    |
|                                 | · 보도포장 패턴의 차별화                     |    |
|                                 | · 서천읍내 가로에 주변 녹지와 연결되는 가로수 녹지축 형성  |    |
|                                 | · 심플한 가로시설물 디자인으로 가로경관 형성          |    |
|                                 | · 국립생태원 주변정비                       |    |
| 역동적 이미지를<br>부여한 경관형성<br>(형성)    | · 마서면, 종천면, 기산면소재지 일원 가로경관 정비      |    |
|                                 | · 서천읍 진입부에 야간조명을 특화하여 진입부 상징성 강화   |    |
|                                 | · 기존 공공건축물 활용하여 야간경관 형성            |    |
|                                 |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
|                                 | · 공공기관 부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    |
|                                 | ·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교육을 테마로 생태공원 및 경관 연출  |    |
|                                 | · 호수변 생태탐방로 및 경관도로 조성              |    |
|                                 | · 호수변 조망 데크 및 관찰 데크 등의 친수시설 도입     |    |
|                                 | · 길산천 하천시설물을 조성하여 생태하천으로 조성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경관축 체크리스트

| 키워드   | 지침내용                                          | 평가 |
|-------|-----------------------------------------------|----|
| 녹지경관축 | · 산지로의 도시형 녹지축을 설정하고 연결형 녹지축 조성               |    |
|       | · 산으로의 도시형, 택지형, 블록형, 연결형 통경축을 확보             |    |
|       | · 자연산지와 시가화지역간의 단절구간 연결                       |    |
| 수변경관축 | · 자연형단면, 친수공간, 주변시설물 등의 경관관리                  |    |
|       | · 서해안-금강 및 유입 하천의 주변지역과 연계 및 식재 공간 확보 등의 경관관리 |    |
|       | · 하천의 상류지역 생태측면을 고려한 자연형 하천 도입                |    |
|       | · 자연환경 우수지역은 최대한 경관 보전                        |    |
| 도로경관축 | · 고속도로변의 인공구조물, 건축물, 진입경관 관리                  |    |
|       | · 주간선도로 등 테마를 부여한 가로경관의 연출 및 녹지축 조성           |    |
|       | · 장항읍,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 녹시울 증대                    |    |
| 상징가로축 | · 국립생태원 진입로 등 대표가로축으로 형성                      |    |
| 생태회랑축 | · 해안 Blue Network                             |    |
|       | · 금강 Blue Network                             |    |
|       | · 판교천 친수공간                                    |    |
|       | · 길산천 생태 하천축                                  |    |
|       | · 역사문화생태가로(한산면 일원)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경관거점 체크리스트

| 키워드            | 지침내용                                                            | 평가 |
|----------------|-----------------------------------------------------------------|----|
| 녹지경관거점         | · 히리산 : 진입부 경관개선, 휴게시설 정비, 조망시설 설치                              |    |
|                | · 문수산 : 휴게시설 정비 및 추가 설치                                         |    |
|                | · 봉림산 : 자연과 조화된 형태의 재료 및 시설 정비                                  |    |
|                | · 천방산 : 휴게시설 정비 및 추가설치, 조망시설 추가 설치                              |    |
| 수변경관거점         | · 월하성 : 해안산책로, 옥외광고물 정비, 어선 및 그물망 관리                            |    |
|                | · 비인항 : 진입로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건축물 정비                                |    |
|                | · 흥원항 : 경관적 생활문화 시설 확충, 옥외광고물 정비, 건축물 정비                        |    |
|                | · 장항산림욕장 :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    |
|                | · 송석항, 다사포구 : 주변건축물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    |
| 역사문화경관거점       | · 서천읍성, 서천향교, 남산성 : 진입로 경관개선, 안내판 정비, 주변 건축물 경관 정비, 문화재 복원정비    |    |
|                | · 한산모시관, 건지산성, 한상향교 일원 : 진입부 경관정비, 주변 건축물 경관개선, 주차장 녹화, 보행동선 개선 |    |
|                | · 문헌서원, 이상재선생생가지 등 : 진입부 경관정비, 문화재 주변 건축물 경관 개선, 주차장 녹화         |    |
| 상징경관거점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주변 건축물 경관정비, 건축물 난립 방지                       |    |
|                | · 주변 식재 확충 및 진입도로 녹화                                            |    |
| 관문경관거점         | · IC 및 주요간선도로 변 진입부 상징공간 및 조형물 설치                               |    |
|                | · IC주변 상징수 식재 및 주변과 어울리는 조형물 설치                                 |    |
| 조망공간을 특성화      | · 주요 녹지경관거점, 수변경관거점 등에 전망대 설치                                   |    |
|                | · 해안산책로, 입체 조망데크 조성(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    |
| 주요시가화지역내 거점 조성 | · 커뮤니티 외부공간 조성                                                  |    |
|                | · 주차장 녹화                                                        |    |
|                | · 단독주거지내 소규모 공원 및 식재 도입                                         |    |
|                | · 도로 가각부 활용한 인지성 확보 및 교통섬 조성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2) 중점경관관리구역 체크리스트

### 장항읍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세장형 필지분할 지양<br>· 장항읍 특화거리 조성                                                                                              |    | ○  |    |
|                      | 환경·생태           | ·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br>· 공업지역 경계부 완충녹지 확보를 통한 도시내 오염물질 저감                                                               | ○  | ○  |    |
|                      | 가구·획지계획         | · 격자형 가로망에 적합한 획지 구성(통일성 유지)                                                                                                |    | ○  |    |
|                      | 보행자 공간          | · 장서로 일부구간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주말)<br>· 주요구간 자전거 도로의 조성                                                                             |    | ○  |    |
|                      | 도로              | · 계획도시인 장항읍에 맞는 격자형 도로망 유지<br>· D/H 비율 1~2에 맞는 도로 폭원 유지<br>· 보행자 전용도로 차량 출입 제한(주말)<br>· 68호선 지방도, 성화로는 진입도로경관형성 및 특화 가로수 식재 | ○  | ○  |    |
|                      | 주차장             | · 주요 도로에서 주차장 진입 지양(이면도로 활용)<br>· 장항로변 공용주차장운영 및 부설주차장 설치로 불법 주정차 방지                                                        |    | ○  |    |
|                      | 오픈스페이스<br>공원·녹지 | · 격자형 패턴에 조화되는 사각형 패턴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유도<br>· 장항선 철도부지를 활용한 남북 녹지축 조성                                                            |    | ○  |    |
|                      | 경관이미지           | · 장항로, 장서로 도로경관축 형성<br>· 주요 공공건축물 경관거점으로 조성(장항중앙 초등학교, 장항화물역, 장항버스공용정류장, 장항 전통시장 등)<br>· 장항 도선장 해안 조망권 확보                   |    | ○  |    |
|                      | 도시 맥락           | · 근대도시의 장소성을 살린 계획<br>· 격자형 도시맥락에 부합하는 계획                                                                                   |    | ○  |    |
|                      | 건축물 용도          | · 신규 건축물의 경우 복합용도(Mixed-use)계획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장항로 구간 건축선 후퇴 유도<br>- 건축선 이격으로 개방감 형성 및 보행 활성화 도모<br>· 장항버스터미널 리모델링 및 복합건축물 조성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역사적 건축물 주변의 건축은 역사자원과의 연계성 고려한 디자인                                                                                        |    | ○  |    |
| 건축물<br>및<br>주변<br>공간 | 건축물 외관          | · 저층부 재질은 자연재료 사용 권장<br>· 가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는 재료 사용 권장<br>· 노후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    | ○  |    |
|                      | 대지내 공지          |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    | ○  |    |
|                      | 대지내 조경          | · 슬라브형 건물에 옥상녹화 권장(경량형)                                                                                                     |    | ○  |    |
|                      | 건축물 간격          | · 세장형 필지의 경우 합벽건축 고려                                                                                                        |    | ○  |    |
|                      | 옥외광고물           | · 건축물의 외장재와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 형태<br>· 장항읍에 맞는 옥외광고물 설치                                                                            |    | ○  |    |
|                      | 가로시설물           | · 도로와 보도의 주요 교차지점 포장의 차별화<br>· 휴식 및 편의 시설 증대<br>· 장항읍에 맞는 식재(가로수) 및 녹화 (향토수종 권장)<br>· 정보이용시설, 키오스크, 스트리트 퍼니처 조성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도시<br>시설             | 야간조명            | · 야간조명은 필요한 부분에 설치, 과도한 설치 지양                                                                                               |    | ○  |    |
|                      | 기타시설물           | · 장항읍 인근 송전탑의 경우 일부 랜드마크적 디자인 적용<br>·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여 정보제공 및 가로 활기 부여<br>· 전신주 지중화 유도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서천읍 중심가로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세장형 필지분할 지양<br>· 서천읍 특화거리 조성                                       |    | ○  |    |
|                      | 환경·생태       | ·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br>· 자연발생적 도시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의 조화유도           |    | ○  |    |
|                      | 가구·획지계획     | · 세장비 1:0.8~1.5 권장                                                   |    | ○  |    |
|                      | 보행자 공간      | · 서천로 일부구간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주말)                                           |    | ○  |    |
|                      |             | · 사곡로, 충절로 자전거도로로 조성                                                 |    | ○  |    |
|                      |             | · 자연발생적 도로패턴과 계획 도로 간의 유기적 연계                                        |    | ○  |    |
|                      | 도로          | · D/H 비율 1~2에 맞는 도로 폭원 유지                                            |    | ○  |    |
|                      |             | · 보행자 전용도로 차량 출입금지(주말)                                               |    | ○  |    |
|                      |             | · 사곡로, 충절로는 진입도로 경관형성 및 특화 가로수 식재                                    |    | ○  |    |
|                      |             | · 주거지역내 담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    | ○  |    |
|                      | 주차장         | · 주요 도로에서 주차장 진입 지양(이면도로 활용)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서천초등학교, 서천중학교 담장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    | ○  |    |
|                      |             | · 서천군 배후산림과 연계한 공원·녹지 조성                                             |    | ○  |    |
| 건축물<br>및<br>주변<br>공간 | 공원·녹지       | · 기존 녹지는 최대한 보전하며, 자연친화적 공원·녹지 조성                                    |    | ○  |    |
|                      | 경관이미지       | · 사곡로, 충절로 도로경관축 형성                                                  |    | ○  |    |
|                      |             | · 주요 공공건축물 경관거점으로 조성(봄의 마을, 서천시외버스 터미널, 서천군청, 서천 초등학교, 서천시장, 서천향교 등) |    | ○  |    |
|                      |             | · 배후산림에서의 조망권 확보(서천읍성)                                               |    | ○  |    |
|                      |             | · 거대한 규모 및 돌출건축물 지양, 역사자원의 조망 확보(서천향교)                               |    | ○  |    |
|                      | 도시 맥락       | · 역사적 장소성을 살린 계획                                                     |    | ○  |    |
|                      | 건축물 규모      | · 배후산림에 인접하여 대규모 건축물 지양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신규 건축물의 경우 복합용도(Mixed-use)계획                                       |    | ○  |    |
|                      |             | · 서천로 구간 건축선 후퇴 유도<br>- 건축선 이격으로 개방감 형성 및 보행 활성화 도모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서천버스터미널 리모델링 및 복합건축물 조성                                            |    | ○  |    |
|                      |             | · 배후산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형 건축계획                                         |    | ○  |    |
|                      | 건축물 외관      | · 역사적 건축물 주변의 건축은 역사자원과의 연계성 고려                                      |    | ○  |    |
|                      |             | · 건물의 고층부는 멀리서도 눈에 띄기 때문에 배후 산림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                     |    | ○  |    |
| 도시<br>시설             | 대지내 조경      |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    | ○  |    |
|                      | 건축물 간격      | · 배후산림에 조망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접건물과의 인동간격 확보                                |    | ○  |    |
|                      | 옥외광고물       | · 서천읍에 맞는 옥외광고물 설치 권장                                                |    | ○  |    |
|                      | 가로시설물       | · 장항읍에 맞는 식재(가로수) 및 녹화 (향토수종 권장)                                     |    | ○  |    |
|                      |             | · 정보이용시설, 키오스크, 스트리트 퍼니처 조성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야간조명        | · 야간조명은 필요한 부분에 설치, 과도한 설치 지양                                        |    | ○  |    |
| 기타시설물                | 기타시설물       | ·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여 정보제공 및 가로 활기 부여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장항제련소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용도지역 변경(환경부 매입부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름)        | ○  |    |    |
|                      | 환경·생태       | · 오염토양정화사업진행으로 생태적 건전성 유지             |    | ○  |    |
|                      |             | ·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탄소배출 저감 계획              | ○  |    |    |
|                      | 보행자 공간      | · 장항제련소로 연결되는 보행동선 조성                 |    | ○  |    |
|                      |             | · 68호선 지방도 자전거 도로 조성                  |    | ○  |    |
|                      | 도로          | · 진입도로 경관형성 및 특화 가로수 식재               |    | ○  |    |
|                      |             | · 68호선 도로변 완충녹지 확보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오픈스페이스 조성시 인근 공원·녹지와 연계 고려          |    | ○  |    |
|                      | 공원·녹지       | ·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의 확보를 통한 녹시율 확보         |    | ○  |    |
|                      |             | · 생태를 테마로한 공원·녹지 조성                   |    | ○  |    |
|                      |             | · 생태적 천이개념을 도입한 공원·녹지 조성              |    | ○  |    |
| 건축물<br>및<br>주변<br>공간 | 경관이미지       | · 장항제련소의 오염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청정이미지 구축       | ○  |    |    |
|                      | 스카이라인       | · 주변 산림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조성, 과도한 건축물 지양   |    | ○  |    |
|                      | 도시 맥락       | · 브라운 필드 재생에 맞는 장소적 맥락 고려             |    | ○  |    |
|                      | 건축물 규모      | · 대규모 건축물 지양하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 관리     |    | ○  |    |
|                      | 건축물 용도      | · 향후 계획과 부합하는 건축물 용도 입지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전망산과의 관계, 진입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         |    | ○  |    |
|                      |             | · 건축물의 경우 68호선 도로변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 관리 |    | ○  |    |
| 도시<br>시설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친환경소재를 도입한 생태적 건축                   |    | ○  |    |
|                      | 건축물 외관      | · 이중 외피형태를 취하는 생태건축 유도                |    | ○  |    |
|                      |             |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 경사형 지붕 유도           |    | ○  |    |
|                      | 옥외광고물       | · 과도한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 ○  |    |    |
|                      |             | · 68호 도로변 옥외광고물 가급적 자체                |    | ○  |    |
|                      | 가로시설물       | · 장항제련소에 맞는 식재(가로수) 및 녹화 (향토수종 권장)    |    | ○  |    |
|                      |             | · 정보이용시설, 키오스크 조성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야간조명        | · 야간조명은 필요한 부분에 설치, 과도한 설치 지양         |    | ○  |    |
|                      | 기타시설물       | · 경관저해시설 철거 및 이전(굴뚝, 전신주 등)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장항생태산업단지 지형고시도면 준수<br>· 서천군만의 특색을 살린 생태 테마형 산업단지 조성     | ○  |    |    |
|                          | 환경·생태       | ·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태산업단지 조성                                 | ○  |    |    |
|                          | 가구·획지계획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한 가구 및 획지 계획 준수                              | ○  |    |    |
|                          | 보행자 공간      | · 상업지역내 특화거리 조성                                           |    | ○  |    |
|                          |             | · 자전거도로 조성을 통한 생태단지조성                                     |    | ○  |    |
|                          | 도로          | · 중앙분리대 식재를 통해 산업단지내 녹시율 증대                               |    | ○  |    |
|                          |             | · 주요 교차로 교통광장 녹화 및 상징시설물 설치                               |    | ○  |    |
|                          | 주차장         | · 주요 도로에서 주차장 진입 지양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주거 및 상업지역내 오픈스페이스 적극조성<br>-담장허물기, 학교경계부지 등 활용           |    | ○  |    |
|                          | 공원·녹지       | · 공업건축물 차폐를 위한 완충녹지 및 차폐식재                                |    | ○  |    |
|                          |             | ·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와 연계된 가로 녹지띠 형성                             |    | ○  |    |
|                          | 경관이미지       | · 부채꼴모양의 통경축 확보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도시 맥락       | · 장소의 잠재성을 드러내는 건축계획                                      |    | ○  |    |
|                          | 건축물 규모      | · 용도지역에 맞는 적정규모의 건축계획                                     |    | ○  |    |
|                          | 건축물 용도      | ·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경우 가로변에 상업시설 배치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상업지역은 도로변에서 3m 이상 건축지정선 확보<br>-건축선 이격으로 개방감 형성 및 보행활성화  |    | ○  |    |
|                          |             | · 상업 및 주거지역은 필로티를 활용한 건축계획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상업 및 주거지역내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요철공간을 계획<br>- 보행환경의 개선 및 휴식공간 제공 |    | ○  |    |
|                          |             | · 고층 공장건물의 경우 고층중층저층의 구분된 입면 디자인 유도                       |    | ○  |    |
|                          | 건축물 외관      | · 가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는 재료 사용 권장                            |    | ○  |    |
|                          |             | · 전면가로변 공개공지 및 녹지조성을 통한 보행 활력 유도                          |    | ○  |    |
|                          | 대지내 공지      | · 도로변 녹지대를 최대한 확보하여 가로공원 형태로 조성                           |    | ○  |    |
|                          |             | · 생태산업단지내 서천군생태도시가이드라인 준수                                 |    | ○  |    |
| 도시<br>시설                 | 대지내 조경      | · 상업 및 주거지역내 평지붕 건축물인 경우 옥상녹화 권장                          |    | ○  |    |
|                          |             | · 도로변 옥외광고물 규제                                            |    | ○  |    |
|                          | 옥외광고물       | · 가로수는 향토수종 식재 권장, 주요보행로는 2열식재                            |    | ○  |    |
|                          |             | · 정보이용시설, 키오스크 조성                                         |    | ○  |    |
|                          | 가로시설물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    | ○  |    |
|                          | 색채          | · 고층건물의 경우 야간경관을 활용하여 랜드마크 조성                             |    | ○  |    |
|                          |             | · 주요 진입부 야간경관조명 계획                                        |    | ○  |    |
|                          | 야간조명        | ·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여 정보제공 및 가로 활기 부여                           |    | ○  |    |
|                          |             | · 경관저해시설(송전·통신·광고탑) 설치 제한                                 |    | ○  |    |
|                          | 기타시설물       |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춘장대 · 비인항 일원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농경지의 건축물 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br>· 춘장대 일원 지역특화거리 조성                                | ○  | ○  |    |
|                          | 환경·생태       | · 서면일대 해양생태계 및 리아시스식 해안, 주요 산림자원 보전                                                        | ○  |    |    |
|                          | 보행자 공간      | · 비인항, 흥원항 일원 보행자 도로 조성<br>· 수변 산책로, 데크 설치를 통한 수변 접근성 확보                                   | ○  | ○  |    |
|                          | 도로          | · 춘장대 일원 보행자 도로 개선(보차 교차로 부분, 광장진입부 등)<br>· 자연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해안경관도로 조성                        |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춘장대-흥원항-비인항-동백나무숲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조성<br>· 해안과 건축물 사이 완충녹지 조성                                 |    | ○  |    |
|                          | 공원·녹지       | · 해안선 보호구역으로부터 10m 폭원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br>· 수변공간 오픈스페이스 확충(수변데크, 생태탐방로)                         |    | ○  |    |
|                          | 경관이미지       | · 해안변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석, 식재 등으로 친수호안 조성<br>· 해안과 연결되는 공원녹지 조성 및 방풍림 조성으로 녹시율 향상              |    | ○  |    |
|                          | 스카이라인       | · 비인항, 흥원항 일원 그물망 정비로 청정한 경관이미지 조성<br>·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급격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방지                        |    | ○  |    |
|                          | 도시 맥락       | · 춘장대일원은 휴양기능에 부합하는 이미지 조성<br>· 흥원항, 마랑포구일원은 어촌생활과 생태문화가 조화되는 이미지 조성                       |    | ○  |    |
|                          | 도시 맥락       | · 춘장대일원은 휴양기능에 부합하는 이미지 조성<br>· 흥원항, 마랑포구일원은 어촌생활과 생태문화가 조화되는 이미지 조성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건축물 규모      | · 해안경관가이드라인상 해안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준수<br>-시야확보를 위한 저층개발 및 해안선으로부터 45. 사선제한 등                      |    | ○  |    |
|                          | 건축물 용도      | · 흥원항, 비인항 일원 숙박시설, 펜션, 찻집 등은 주변 시설과 조화 유도<br>· 중점관리구역내 농어촌지역 빈집 철거를 통해 미관 향상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통경축 확보                                         |    | ○  |    |
|                          |             |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    | ○  |    |
|                          |             | · 해안에서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판상형 형태를 제한                                                               |    | ○  |    |
|                          |             | · 해안방향으로부터 부대설비의 노출을 제한                                                                    |    | ○  |    |
|                          |             | · 천공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                                                                |    | ○  |    |
|                          |             | · 해안방향으로 건축물의 정면성을 확보                                                                      |    | ○  |    |
|                          |             | · 해안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60m미만으로 유도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창고시설 등 건축물의 입면길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                           |    | ○  |    |
|                          |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건축은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건축물 유도<br>· 경관에 위해되는 가설시설물 형태의 건축물 지양                     |    | ○  |    |
|                          | 대지내 공지      | · 춘장대 관광지역내 신축건물 전면공지는 해안방향으로 조성                                                           |    | ○  |    |
| 도시<br>시설                 | 옥외광고물       | · 춘장대 일원 해안으로부터의 통경축이 확보되는 간격 유지                                                           |    | ○  |    |
|                          |             | · 건물 신축시 해안에서 바라보는 통경축을 고려하여 건물 간격 설정                                                      |    | ○  |    |
|                          |             | · 해안에 면한 상업시설의 간판은 최소한으로 허용<br>· 광고물의 크기는 해안에서 조망시 돌출되지 않는 크기로 최소화                         |    | ○  |    |
|                          | 가로시설물       | · 상업시설 옥외광고물은 지역정체성을 살린 통일감 있는 디자인<br>-이미지 설정, 형태, 재료, 색채 주민 협정 가능<br>-옥외광고물을 특화하는 주민협정 수립 |    | ○  |    |
|                          | 색채          | · 해안 가로시설물은 염분에 강한 재료 사용                                                                   |    | ○  |    |
|                          | 기타시설물       | · 색채는 공동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등대, 방파제 등의 특징적인 어항시설은 특화하여 경관자원화<br>· 항구주변 천막구조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                        |    | ○  |    |
|                          |             | · 시각적 복잡도가 높은 불필요한 시설물 제거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금강변 일원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금강수변지역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                                                     | ○  |    |    |
|                          | 환경·생태                                       | · 금강수변과 육지가 만나는 주연부(edge) 생태적 보전                                                           | ○  |    |    |
|                          |                                             | · 수변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금강 블루네트워크 조성                                                            |    | ○  |    |
|                          |                                             | · 비점오염원의 금강 유입방지 및 수변 생태계에 맞는 비오톱(biotop)조성                                                |    | ○  |    |
|                          |                                             | ·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전                                                                             | ○  |    |    |
|                          | 보행자 공간                                      | · 수변을 따라 생태탐방로 조성                                                                          |    | ○  |    |
|                          |                                             | · 수변 산책로, 수변 데크 설치를 통한 수변 접근성 확보                                                           |    | ○  |    |
|                          |                                             | · 금강수변 자전거도로 조성                                                                            |    | ○  |    |
|                          | 도로                                          | · 수변 제방을 활용한 수변경관도로 조성                                                                     |    | ○  |    |
|                          |                                             | · 수변도로 가로수는 불규칙적 식재(이식)로 수변 조망권 확보                                                         |    | ○  |    |
|                          | 주차장                                         | · 차량 진출입로를 따로 개설하여 교통 혼잡 완화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수변과 건축물 사이 완충녹지 조성                                                                       |    | ○  |    |
|                          |                                             | · 제방에서 수변에 면하는 건축의 경우 10m이상 완충 오픈 스페이스 확보                                                  |    | ○  |    |
|                          |                                             | · 수변공간 오픈스페이스 최소화하여 계획(생태계 보전)                                                             |    | ○  |    |
|                          |                                             | · 수변 옹벽설치 지양, 수변은 친환경소재로 정비<br>-서천군 생태도시가이드라인 준용                                           |    | ○  |    |
| 공원·녹지                    | · 녹지조성시 수변식물 생태에 따라 조성<br>-서천군 생태도시가이드라인 준용 |                                                                                            | ○  |    |    |
| 경관이미지                    | · 금강수변 연속경관 조망 관리                           |                                                                                            | ○  |    |    |
|                          | · 건축물 입지시 수변통경축 보호                          |                                                                                            | ○  |    |    |
|                          | · 주요 경관거점 주변 친수공간 및 포토 존 조성                 |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스카이라인                                       | ·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급격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방지                                                              |    | ○  |    |
|                          | 건축물 규모                                      | · 시각확보를 위한 저층개발 및 금강제방 으로부터 15. 사선제한 유도                                                    |    | ○  |    |
|                          | 건축물 용도                                      | · 숙박시설, 펜션, 횃집 등 상업시설 최소화                                                                  |    | ○  |    |
|                          |                                             | · 창고, 축사, 공장 등 제방인근지역 생태자연도를 고려하여 시설입지 지양                                                  |    | ○  |    |
|                          |                                             | · 생태관광에 부합하는 용도의 갤러리, 생태학습장, 체험관 등으로 유도                                                    |    | ○  |    |
|                          |                                             | · 기존 상업시설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용도변경 추진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제방에서 수변쪽으로 건축물 입지 제한                                                                     |    | ○  |    |
|                          |                                             | · 건축물은 수변에서 조망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수변 통경축 확보                                        |    | ○  |    |
|                          |                                             | · 수변과 길산평야에서 보는 양면의 정면성 고려                                                                 |    | ○  |    |
|                          |                                             | ·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30m미만으로 유도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건축은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유도                                                        |    | ○  |    |
|                          | 대지내 공지                                      | · 신축건물 전면공지는 수변방향으로 조성하여 친수공간 조성                                                           |    | ○  |    |
| 대지내 조경                   | · 슬라브형 건물에 옥상녹화 권장(경량형)                     |                                                                                            | ○  |    |    |
| 건축물 간격                   | · 수변으로부터의 통경축이 확보되는 간격 유지                   |                                                                                            | ○  |    |    |
| 도시<br>시설                 | 옥외광고물                                       | · 금강변에 면한 상업시설의 간판은 최소한으로 허용                                                               |    | ○  |    |
|                          |                                             | · 29번 국도, 68번 지방도 가로변 옥외광고물 정비                                                             |    | ○  |    |
|                          |                                             | · 상업시설 옥외광고물은 지역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br>-이미지 설정, 형태, 재료, 색채 주민 협정 가능<br>-옥외광고물을 특화하는 주민협정 수립 |    | ○  |    |
|                          | 가로시설물                                       | · 휴식 및 편의 시설은 금강수변의 생태적 수용력을 넘지 않도록 고려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야간조명                                        | · 장군대교진입부 야간조명 설치                                                                          |    | ○  |    |
| 기타시설물                    | · 시각적 복잡도가 높은 불필요한 시설물 제거                   |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홍림저수지 일원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합필, 물건 적치행위 지양<br>· 구역내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                                                                                                                                                                           | ○  | ○  |    |
|                      | 환경·생태       | · 호수변과 육지가 만나는 주연부(edge)의 생태적 보전<br>· 산지연접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br>· 호수 생태계에 맞는 비오톱(biotop)조성 및 비점오염원의 유입방지                                                                                                                               | ○  | ○  |    |
|                      | 보행자 공간      | · 호수를 순환하는 생태탐방로를 조성<br>·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재료 사용권장(데크, 투수성포장재 등)                                                                                                                                                                                           |    | ○  |    |
|                      | 도로          | · 기존 4호선 도로는 지형을 고려한 유선형의 도로 패턴 유지<br>· 신규 4호선 공사에 의해 생기는 절·성토면 녹화<br>· 4호선 국도와 철로와의 입체교차로 부분 완충식재 도입                                                                                                                                                |    | ○  |    |
|                      | 오픈스페이스      | · 신규 4호선 도로변 녹지대를 최대한 확보하여 녹시율 증대<br>- 도로변 호수 조망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br>· 기존 4호선 도로는 가로공원 형태로 조성<br>· 호수로의 접근성을 위해 친수계단, 친수데크, 휴게시설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    |
|                      | 공원·녹지       | · 인공식물섬 도입<br>- 철도교량의 위압경관 완화 및 건전한 호수 생태계 유지<br>· 생태공원에 맞는 식재계획(수변식재 및 다층식재)                                                                                                                                                                        |    | ○  |    |
|                      | 경관이미지       | ·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청정이미지 구축                                                                                                                                                                                                                                |    | ○  |    |
|                      | 스카이라인       | · 호수변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 입지하도록 하여<br>완만한 스카이라인 형성                                                                                                                                                                                                  |    | ○  |    |
|                      | 건축물 규모      | · 시각확보 및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개발 유도(1~3층)<br>· 호수의 평균수위로부터 15. 사선제한 검토                                                                                                                                                                                     |    | ○  |    |
|                      | 건축물 용도      | · 숙박시설, 펜션 등 최소화<br>· 향토음식점, 지역특화농산물 판매장 등 입지 유도<br>· 창고, 축사, 공장 등 유지 경계로부터 500m지점 까지 지양                                                                                                                                                             |    | ○  |    |
| 건축물<br>및<br>주변<br>공간 | 건축물 위치(배치)  | · 도로변 건축물은 도로의 선형을 고려하여 배치<br>· 경사도 25%이상에서의 지형에서는 건축을 제한하고, 과도한 절·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부득이한 경우 완충식재를 통한 경관저감방안 마련<br>· 주변환경과 조화를 도모하고 수변의 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br>· 호수변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30m미만으로 제한<br>- 부득이한 경우 건물매스를 분절하여 배치 유도<br>· 호수방향으로부터 부대설비의 노출을 제한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건축물의 높이, 형태, 지붕, 색채, 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                                                                                                                                                                                                                 |    | ○  |    |
|                      | 건축물 외관      | · 도로에서 주변 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의 지붕은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디자인                                                                                                                                                                                                        |    | ○  |    |
|                      | 대지내 공지      | · 대지내 공지는 호수방향에 면하도록 유도                                                                                                                                                                                                                              |    | ○  |    |
|                      | 건축물 간격      | · 호수변에서 산림방향으로 조망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동간격 확보                                                                                                                                                                                                                |    | ○  |    |
|                      | 옥외광고물       | · 상업시설 옥외광고물 최소화<br>· 도로변 대형 판류형 광고물을 제한하고 단순 지주형 유도                                                                                                                                                                                                 |    | ○  |    |
|                      | 가로시설물       | · 호수 경관과 조화되는 재질 및 형태를 지닌 시설물 권장                                                                                                                                                                                                                     |    | ○  |    |
| 도시<br>시설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야간조명        | · 청정지역을 고려한 호수변 야간조명을 특화                                                                                                                                                                                                                             |    | ○  |    |
|                      | 기타시설물       | · 서식 동식물상 안내판 및 생태교육형 안내판 설치<br>· 호수경관에 저해되는 가설시설물(낙시시설 등) 제한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동부(봉선)저수지 일원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합필, 물건 적치행위 지양<br>· 구역내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                                                                                                                                                                           | ○  | ○  |    |
|                      | 환경·생태       | · 호수변과 육지가 만나는 주연부(edge)의 생태적 보전<br>· 산지연접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br>· 호수 생태계에 맞는 비오톱(biotop)조성 및 비점오염원의 유입방지                                                                                                                               | ○  | ○  |    |
|                      | 보행자 공간      | · 호수를 순환하는 생태탐방로 조성<br>·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재료 사용권장(데크, 투수성포장재 등)                                                                                                                                                                                            |    | ○  |    |
|                      | 도로          | · 기존 도로는 지형을 고려한 유선형의 도로 패턴 유지<br>· 호수 주변 도로변 호수 조망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                                                                                                                                                                                      |    | ○  |    |
|                      | 오픈스페이스      | · 호수로의 접근성을 위해 친수계단, 친수데크, 휴게시설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    |
|                      | 공원녹지        | · 건전한 호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인공식물섬 도입<br>· 생태공원에 맞는 식재계획(수변식재 및 다층식재)                                                                                                                                                                                         |    | ○  |    |
|                      | 경관이미지       | ·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청정이미지 구축                                                                                                                                                                                                                                |    | ○  |    |
|                      | 스카이라인       | · 호수변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 입지하도록 하여 완만한 스카이라인 형성                                                                                                                                                                                                     |    | ○  |    |
|                      | 건축물 규모      | · 시각확보 및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개발 유도(1~3층)<br>· 호수의 평균수위로부터 15. 사선제한 검토                                                                                                                                                                                     |    | ○  |    |
|                      | 건축물 용도      | · 숙박시설, 펜션 등 최소화<br>· 향토음식점, 지역특화농산물 판매장 등 입지 유도<br>· 창고, 축사, 공장 등 유지 경계로부터 500m지점 까지 지양                                                                                                                                                             |    | ○  |    |
| 건축물<br>및<br>주변<br>공간 | 건축물 위치(배치)  | · 도로변 건축물은 도로의 선형을 고려하여 배치<br>· 경사도 25%이상에서의 지형에서는 건축을 제한하고, 과도한 절·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부득이한 경우 완충식재를 통한 경관저감방안 마련<br>· 주변환경과 조화를 도모하고 수변의 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br>· 호수변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30m미만으로 제한<br>- 부득이한 경우 건물매스를 분절하여 배치 유도<br>· 호수방향으로부터 부대설비의 노출을 제한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건축물의 높이, 형태, 지붕, 색채, 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                                                                                                                                                                                                                 |    | ○  |    |
|                      | 건축물 외관      | · 도로에서 주변 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의 지붕은 가급적 경사 지붕으로 디자인                                                                                                                                                                                                       |    | ○  |    |
|                      | 대지내 공지      | · 대지내 공지는 호수방향에 면하도록 유도                                                                                                                                                                                                                              |    | ○  |    |
|                      | 건축물 간격      | · 호수변에서 산림방향으로 조망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동간격 확보                                                                                                                                                                                                                |    | ○  |    |
|                      | 옥외광고물       | · 상업시설 옥외광고물 최소화<br>· 도로변 대형 판류형 광고물을 제한하고 단순 지주형 유도                                                                                                                                                                                                 |    | ○  |    |
|                      | 가로시설물       | · 호수 경관과 조화되는 재질 및 형태를 지닌 시설물 권장                                                                                                                                                                                                                     |    | ○  |    |
| 도시<br>시설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야간조명        | · 청정지역을 고려한 호수변 야간조명을 특화                                                                                                                                                                                                                             |    | ○  |    |
|                      | 기타시설물       | · 서식 동식물상 안내판 및 생태교육형 안내판 설치<br>· 호수경관에 저해되는 가설시설물(낚시시설 등) 제한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문헌서원 일원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문헌서원 일대 역사문화특구 조성                                                    | ○  |    |    |
|                          | 환경·생태       | · 환경친화적 에너지 설치시(태양광·태양열 등) 문헌서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급적 노출 되지 않도록 고려           | ○  |    |    |
|                          |             | · 문헌서원을 위요하는 산림자원경관 보전                                                 | ○  |    |    |
|                          |             | · 문헌서원 일대 유무형의 생활경관, 문화경관, 자연경관 보전                                     |    | ○  |    |
|                          | 보행자 공간      | · 문헌서원 진입부 보행자 공간 조성                                                   |    | ○  |    |
|                          | 도로          | · 주요 교차로 상징시설물 설치 및 초점경관 형성                                            |    | ○  |    |
|                          | 오픈스페이스      | · 변화감 있는 진입부 조성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조성                                         |    | ○  |    |
|                          |             | · 정자목 등을 활용한 소규모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    |
|                          | 공원·녹지       | · 문헌서원 전면부 공원·녹지 조성(전통조경 양식 권장)                                        |    | ○  |    |
|                          |             | · 문헌서원 배후의 송림보전(주변 잡목제거 및 주기적 간벌 시행)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경관이미지       | · 역사문화경관과 어우러지는 전통조경을 테마로 조성                                           |    | ○  |    |
|                          |             | -식재는 서원과 연관성이 있는 수종 선택                                                 |    | ○  |    |
|                          | 스카이라인       | · 역사문화경관 거점으로 서원이 가지는 정신수양의 의미 살림                                      |    | ○  |    |
|                          | 도시 맥락       | · 문헌서원에서 내려다보는 조망경관 보호                                                 |    | ○  |    |
|                          | 건축물 규모      | · 문헌서원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유도                                                 |    | ○  |    |
|                          |             | · 역사적 의미를 살린 장소성 구현                                                    |    | ○  |    |
|                          | 건축물 용도      | · 역사적 의미를 살린 장소성 구현                                                    |    | ○  |    |
|                          |             | · 문헌서원보다 규모가 큰 건축물 입지 제한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한 높이 제한                                            |    | ○  |    |
|                          |             | · 문헌서원의 기능을 도와주는 용도의 건축물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박물관, 전시관, 서원체험관, 기념품 판매점, 한옥민박 등                                      |    | ○  |    |
|                          |             | · 문헌서원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                                                |    | ○  |    |
|                          | 건축물 외관      | · 문헌서원 외곽부의 대규모 건축물 입지로 인한 왜소화 방지 유도                                   | ○  |    |    |
|                          |             | · 골프연습장, 창고, 축사, 공장등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제한                                 |    | ○  |    |
| 도시<br>시설                 | 건축물 외관      | · 문헌서원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에서 방해되지 않도록 유도                                        |    | ○  |    |
|                          |             | · 전통건축양식에 어울리는 형태 디자인 유도                                               |    | ○  |    |
|                          | 대지내 공지      | · 역사적 건축물 주변의 건축은 역사자원과의 연계성 고려한 형태                                    |    | ○  |    |
|                          |             | · 인근 농어촌 주택의 경우 '농어촌표준주택'을 준수하나 문화재와 어울리는 외관으로 조성                      |    | ○  |    |
|                          | 대지내 조경      | · 대문, 담장 등은 전통구조물에 어울리는 재료·형태 권장                                       |    | ○  |    |
|                          |             | · 역사자원의 시간적 흐름을 배려한 소재 선택(페인트 도장, 드라이 비트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노후 되는 소재 지양) |    | ○  |    |
|                          | 건축물 간격      | · 대지내 공지는 문헌서원 진입방향에 면하도록 조성                                           |    | ○  |    |
|                          |             | · 조경양식은 전통조경양식 권장                                                      |    | ○  |    |
|                          | 옥외광고물       | · 문헌서원에서 내려다보는 통경축에 지장되지 않도록 건축물 간격유도                                  |    | ○  |    |
|                          |             | · 문화재건축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 형태                                                |    | ○  |    |
| 도시<br>시설                 | 가로시설물       | · 간판의 크기는 최소화 하고 주변과 조화 유도                                             |    | ○  |    |
|                          |             | · 보도의 포장재는 저채도의 색상을 가지는 석재 권장                                          |    | ○  |    |
|                          | 색채          | · 휴식 및 편의 시설은 문헌서원과 어울리도록 조성                                           |    | ○  |    |
|                          |             | · 가로시설물은 '문화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 ○  |    |
|                          | 기타시설물       | · 색채는 '문화재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계획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한산모시관 일원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한산모시관특구와 서천한산소곡주특구의 연계                                                | ○  |    |    |
|                          | 환경·생태       | · 한산모시관을 위요하는 산림자원경관 보전                                                 |    | ○  |    |
|                          | 보행자 공간      | · 인근 역사문화자원과 보행동선의 유기적 연계<br>-한산소곡주 특구와 연계되는 보행동선 조성                    |    | ○  |    |
|                          |             | · 보도포장재는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는 저채도의 석재 권장                                        |    | ○  |    |
|                          | 도로          | · 주요 진입부 상징시설물 조성                                                       |    | ○  |    |
|                          | 오픈스페이스      | · 한산모시관과 어울리는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    |
|                          |             | · 오픈스페이스내 휴게시설 도입(방지형 연못, 벽천, 정자 등)                                     |    | ○  |    |
|                          | 공원·녹지       | · 한산모시관 진입부 일부 가로수 이식으로 진입부의 인식성 향상                                     |    | ○  |    |
|                          |             | · 한산모시 홍보관 주변 일본식 조경양식(가이즈까 향나무 등) 변경<br>-전통조경 양식으로 조성                  |    | ○  |    |
|                          |             | · 역사문화경관과 어우러지는 전통조경을 테마로 조성<br>-식재는 향토수종 및 전통수종 수종 선택                  |    | ○  |    |
| 건축<br>물<br>및<br>주변<br>공간 | 경관이미지       | · 한산모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알리고 체험하는 역사문화경관 거점으로 조성                               |    | ○  |    |
|                          | 도시 맥락       | · 역사적 의미를 살린 장소성 구현                                                     |    | ○  |    |
|                          | 건축물 규모      | · 한산모시관, 홍보관보다 규모가 큰 건축물 입지 제한                                          |    | ○  |    |
|                          | 건축물 용도      | · 한산모시관의 기능을 도와주는 용도의 건축물 유도<br>-박물관, 전시관, 모시체험관, 연구소, 테마민박 등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골프연습장, 창고, 축사, 공장 등 모시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입지 제한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전통건축양식에 어울리는 형태 디자인 유도                                                |    | ○  |    |
|                          | 건축물 외관      | · 대문, 담장 등은 전통구조물에 어울리는 재료·형태 권장                                        |    | ○  |    |
|                          |             | · 역사자원의 시간적 흐름을 배려한 소재 선택<br>-페인트 도장, 드라이비트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노후되는 소재 지양 |    | ○  |    |
|                          | 대지내 공지      | · 대지내 공지는 광장에 면하도록 조성                                                   |    | ○  |    |
|                          | 대지내 조경      | · 조경양식은 전통조경양식 권장                                                       |    | ○  |    |
| 도시<br>시설                 | 건축물 간격      | · 전통건축양식에 부합하는 건축 간격유도                                                  |    | ○  |    |
|                          | 옥외광고물       | · 한산모시관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 형태                                                 |    | ○  |    |
|                          | 가로시설물       | · 보도의 포장재는 저채도의 색상을 가지는 석재 권장                                           |    | ○  |    |
|                          |             | · 가로시설물은 '문화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 ○  |    |
|                          | 색채          | · 색채는 '문화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사항 준수                                           |    | ○  |    |
|                          | 야간조명        | · 야간조명은 필요한 부분에 설치, 과도한 설치 지양                                           |    | ○  |    |
| 도시<br>시설                 | 기타시설물       | · 안내판, 관리사무소, 휴지통 등 주변 시설은 한산모시관 경관과 조화로운 형태·색채로 조성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일원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용도지역 변경(환경부 매입부지 토지이용계획에 의함)<br>· 농경지의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                                     | ○  |    |    |
|                      | 환경·생태       | · 장항송림육장의 산림 및 갯벌 보전<br>· 농어촌 지역의 향토경관자원 보전(군우물, 소하천, 마을숲 등)                                               | ○  | ○  |    |
|                      | 보행자 공간      | · 자원관-송림육장-청소년수련관을 연결하는 보행도로 조성                                                                            |    | ○  |    |
|                      | 도로          | · 수변 산책로, 데크 설치를 통한 수변 접근성 확보<br>· 자원관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                                                         |    | ○  |    |
|                      | 오픈스페이스      | · 해안과 건축물 사이 완충녹지 조성<br>· 해안선 보호구역으로부터 10m 폭원 이상의 완충공간 오픈스페이스 확보 유도<br>· 수변공간 오픈스페이스 확충(수변데크, 생태탐방로)       |    | ○  |    |
|                      | 공원·녹지       | · 해양생물자원관 외곽부와 신축건물간 완충녹지 10m 이상 확보<br>· 해안과 해양생물자원관을 연결되는 공원·녹지 조성<br>· 녹지 조성시 염분에 강한 지역수종 선택, 다층구조 식재 도입 |    | ○  |    |
|                      | 경관이미지       | · 건물신축시 해양생물관의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도<br>· 건축물 입지시 해안통경축 보호                                                      |    | ○  |    |
|                      | 스카이라인       | ·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급격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방지                                                                              |    | ○  |    |
| 건축물<br>및<br>주변<br>공간 | 건축물 규모      | · 해안경관가이드라인상 해안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준수<br>-시아확보를 위한 저층개발<br>-해안선으로부터 45. 사선제한 등                                    |    | ○  |    |
|                      |             | · 농어촌지역에서는 경사도 20%이내 지역, 3층 규모로 한정                                                                         |    | ○  |    |
|                      |             | · 장항송림산림육장내 건축물 신축 제한                                                                                      |    | ○  |    |
|                      | 건축물 용도      | · 숙박시설, 펜션, 횃집 등 상업시설 최소화하고 장항송림, 해양생물자원관과 조화유도                                                            |    | ○  |    |
|                      |             | · 생태관광에 부합하는 용도의 겹거리, 생태학습장, 체험관 등으로 유도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해안 경관가이드라인상 해안선 보호구역내 입지제한                                                                               | ○  |    |    |
|                      |             | ·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통경축 확보                                                         |    | ○  |    |
|                      |             | · 해안에서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판상형 형태를 제한                                                                               |    | ○  |    |
|                      |             | · 해안방향으로부터 부대설비의 노출을 제한                                                                                    |    | ○  |    |
|                      |             | · 담장, 벽면 등에 의한 차폐를 지양하고 녹지조성 권장                                                                            |    | ○  |    |
|                      |             | · 천공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                                                                                |    | ○  |    |
|                      |             | · 해안방향으로 건축물의 정면성을 확보                                                                                      |    | ○  |    |
|                      |             | · 해안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60m미만으로 유도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창고시설 등 건축물의 입면길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                                          |    | ○  |    |
|                      |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건축은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유도<br>· 수평성을 강조하고, 절제된 매스 형태로 계획                                          |    | ○  |    |
|                      | 건축물 외관      | ·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식재차폐도를 30%이상 확보                                                                           |    | ○  |    |
|                      | 대지내 공지      | · 신축건물 전면공지는 수변방향으로 조성하여 친수공간 조성                                                                           |    | ○  |    |
| 도시<br>시설             | 건축물 간격      | · 해안변 건물 입지시 해안에서 바라보는 통경축이 확보되는 간격유지                                                                      |    | ○  |    |
|                      | 옥외광고물       | · 상업시설 옥외광고물은 지역정체성을 살린 통일감 있는 디자인<br>-이미지 설정, 형태, 재료, 색채 주민 협정 가능<br>-옥외광고물을 특화하는 주민협정 수립                 |    | ○  |    |
|                      | 가로시설물       | · 해안 가로시설물은 염분에 강한 재료 사용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야간조명        | ·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조명시설 권장                                                                                     |    | ○  |    |
|                      | 기타시설물       | · 펜스, 난간 등 도로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국립생태원 일원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농경지의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                 | ○                             |    |    |
|                                    | 환경·생태                                                           | · 금강수변과 육지가 만나는 주연부(edge) 생태적 보전                      | ○                             |    |    |
|                                    |                                                                 | ·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전 및 수변 생태계 비오톱(biotop) 조성                | ○                             |    |    |
|                                    | 보행자 공간                                                          | · 농어촌 지역의 향토경관자원 보전(군우물, 소하천, 배후산림 등)                 |                               | ○  |    |
|                                    |                                                                 | · 장항역-국립생태원-금강하구둑-김인전공원-조류생태전시관을 연결하는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                               | ○  |    |
|                                    | 도로                                                              | · 수변 산책로, 데크 설치를 통해서 수변 접근성 확보                        |                               | ○  |    |
|                                    |                                                                 | · 21호 국도 상징가로 조성 및 도로변 완충녹지 조성                        |                               | ○  |    |
|                                    | 오픈스페이스                                                          | · 도로와 철로의 교차부분 완충녹지 조성                                |                               | ○  |    |
|                                    |                                                                 | · 금강하구둑 오픈스페이스와 생태원 간 유기적 연계성 고려                      |                               | ○  |    |
|                                    | 공원·녹지                                                           | · 수변공간 오픈스페이스 확충(수변데크, 생태탐방로)                         |                               | ○  |    |
|                                    |                                                                 | · 국립생태원 외곽부와 신축건물 간 완충녹지 10m 이상 확보                    |                               | ○  |    |
|                                    | 건축물<br>및<br>주변<br>공간                                            | 경관이미지                                                 | · 금강수변과 국립생태원이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 고려 |    | ○  |
| · 기존 농어촌마을의 마을숲, 정자목, 당산목, 대숲 등 보전 |                                                                 |                                                       |                               | ○  |    |
| 스카이라인                              |                                                                 | · 21호선 국도 진입부를 서천의 관문경관거점으로 조성                        |                               | ○  |    |
|                                    |                                                                 | · 김인전공원,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수변조망권 확보 및 포토 존 조성                 |                               | ○  |    |
| 도시 맥락                              |                                                                 | · 건물신축시 국립생태원의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도                       |                               | ○  |    |
|                                    |                                                                 | ·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급격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방지                         |                               | ○  |    |
| 건축물 규모                             |                                                                 | · 금강변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 입지하도록 하여 완만한 스카이라인 형성      |                               | ○  |    |
|                                    |                                                                 | · 생태계 연구의 메카로 서천군의 주요경관거점으로 조성                        | ○                             |    |    |
| 건축물 용도                             |                                                                 | · 금강수변은 저층규모의 건축물 유도                                  |                               | ○  |    |
|                                    |                                                                 | · 농어촌지역에서는 경사도 20%이내 지역, 3층 규모로 한정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 숙박시설, 펜션, 횃집 등 상업시설 최소화                             |                               | ○  |    |
|                                    |                                                                 | · 생태관광에 부합하는 용도의 갤러리, 생태학습장, 체험관 등으로 유도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 배치                                            |                                                       | ○                             |    |    |
|                                    | ·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통경축 확보              |                                                       | ○                             |    |    |
| 건축물 외관                             |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                                                       | ○                             |    |    |
|                                    | · 21호선 국도변 연결지역 건축물 입지 지양하여 개방감 유도                              |                                                       | ○                             |    |    |
| 대지내 공지                             | · 창고시설 등 건축물의 입면길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 불가피할 경우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 |                                                       | ○                             |    |    |
|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건축은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유도                             |                                                       | ○                             |    |    |
| 도시<br>시설                           | 건축물 간격                                                          | · 수평성을 강조하고, 절제된 매스 형태로 계획                            |                               | ○  |    |
|                                    |                                                                 | · 금강하구둑 관광지인근은 특색있는 건축설계                              |                               | ○  |    |
|                                    | 옥외광고물                                                           | ·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식재차폐도를 30%이상 확보                      |                               | ○  |    |
|                                    |                                                                 | · 신축건물 전면공지는 가로변에 면하도록 조성                             |                               | ○  |    |
|                                    | 기타시설물                                                           | · 농어촌 주택은 넓은 인동간격유지(프라이버시 유지)                         |                               | ○  |    |
|                                    |                                                                 | · 신축건물은 주변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인동간격 조절                          |                               | ○  |    |
|                                    |                                                                 | · 중점관리구역내 상업시설의 간판은 최소한으로 허용                          |                               | ○  |    |
|                                    |                                                                 | · 21호 국도변 옥외광고물 최소화                                   |                               | ○  |    |
|                                    | 가로시설물                                                           | · 21호 국도변 가로시설물 정비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통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야간조명                                                            | ·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조명시설 권장                                |                               | ○  |    |
|                                    | 기타시설물                                                           | · 펜스, 난간 등 도로서설물은 국립생태원 이미지를 고려하여 설치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비인간 해안도로 체크리스트

| 구분                   | 키워드         | 주요내용(방향)                                                                                   | 필수 | 권장 | 평가 |
|----------------------|-------------|--------------------------------------------------------------------------------------------|----|----|----|
| 도시<br>공간<br>및<br>이미지 | 토지이용패턴      | · 농경지의 건축물·시설물(창고,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 지양                                                      | ○  |    |    |
|                      | 환경·생태       | · 해안과 육지가 만나는 주연부(edge) 생태적 보전                                                             |    | ○  |    |
|                      |             | ·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전 및 수변 생태계 비오톱(biotop) 조성                                                     |    | ○  |    |
|                      |             | · 해안변 경관자원의 보전(방풍림, 리아시스식 해안)                                                              |    | ○  |    |
|                      | 보행자 공간      | · 해안도로변 주요 조망지점에 갯벌체험로 조성                                                                  |    | ○  |    |
|                      |             | · 장구리-선소리-월하성을 잇는 자전거도로 조성                                                                 |    | ○  |    |
|                      |             | · 수변 산책로, 데크 설치를 통한 수변 접근성 확보                                                              |    | ○  |    |
|                      | 도로          | · 해안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철조망 철거                                                                    |    | ○  |    |
|                      |             | · 주요 조망점 가로수는 불규칙적 식재로 수변 조망권 확보                                                           |    | ○  |    |
|                      | 주차장         | · 해안도로변 주요 조망지점에 주차장 조성                                                                    |    | ○  |    |
| 건축물<br>및<br>주변<br>공간 | 오픈스페이스      | · 해안변 오픈스페이스 확충(수변데크, 갯벌탐방로)                                                               |    | ○  |    |
|                      |             | · 해안도로변 주요 결절부 지점 소규모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    |
|                      | 공원·녹지       | · 해안도로변 방풍림 조성(향토수종 및 해송)                                                                  |    | ○  |    |
|                      | 경관이미지       | · 해안도로변 연속경관 유지 및 관리                                                                       |    | ○  |    |
|                      |             | · 해안도로변 갯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갯벌체험이미지 조성                                                            |    | ○  |    |
|                      | 스카이라인       | ·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 입지하도록 하여 완만한 스카이라인 형성                                            |    | ○  |    |
|                      | 건축물 규모      |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상 해안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준수<br>-시야확보를 위한 저층개발<br>-해안선으로부터 45. 사선제한 등                |    | ○  |    |
|                      | 건축물 용도      | · 갯벌체험에 부합하는 용도의 갯벌학습장, 체험관 등으로 유도                                                         |    | ○  |    |
|                      | 건축물 위치(배치)  |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상 해안선 보호구역내 건축물 입지제한                                                        |    | ○  |    |
|                      |             | ·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통경축 확보                                         |    | ○  |    |
|                      |             |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    | ○  |    |
|                      |             | · 해안방향으로부터 부대설비의 노출을 제한                                                                    |    | ○  |    |
|                      |             | · 천공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    | ○  |    |
|                      |             | · 해안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60m미만으로 제한                                                         |    | ○  |    |
|                      |             | · 창고시설 등 건축물의 입면길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                          |    | ○  |    |
|                      | 건축물 형태(디자인)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지형에서는 건축을 제한하고, 과도한 절·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완충식재를 통한 경관저감방안 마련                 |    | ○  |    |
|                      |             | · 경사도 25%이상에서의 건축은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유도                                                        |    | ○  |    |
|                      | 건축물 외관      | · 수평성을 강조하고, 절제된 매스 형태로 계획                                                                 |    | ○  |    |
|                      |             | ·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식재차폐도를 30%이상 확보                                                           |    | ○  |    |
|                      |             | · 신축건물 전면공지는 가로변 또는 해안에 면하도록 조성                                                            |    | ○  |    |
|                      | 건축물 간격      | · 건물 신축시 해안에서 바라보는 통경축을 고려하여 건물 간격 설정                                                      |    | ○  |    |
| 도시<br>시설             | 옥외광고물       | · 중점관리구역내 상업시설의 간판은 최소한으로 허용                                                               |    | ○  |    |
|                      |             | · 상업시설 옥외광고물은 지역정체성을 살린 통일감 있는 디자인<br>-이미지 설정, 형태, 재료, 색채 주민 협정 가능<br>-옥외광고물을 특화하는 주민협정 수립 |    | ○  |    |
|                      | 가로시설물       | · 해안도로변 가로시설물 정비                                                                           | ○  |    |    |
|                      |             | · 해안 가로시설물은 염분에 강한 재료 사용                                                                   |    | ○  |    |
|                      | 색채          | · 색채는 공동경관가이드라인상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야간조명        | ·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조명시설 권장                                                                     |    | ○  |    |
|                      | 기타시설물       | · 펜스, 난간 등 도로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3) 경관유형 체크리스트

#### ■ 옥외광고물 체크리스트

| 구분    | 지침내용 | 권장                                                                                     | 필수 | 평가 |
|-------|------|----------------------------------------------------------------------------------------|----|----|
| 공통 사항 | 수량   | · 업소당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 이내(가각부 3개 이내)                                                       |    | ○  |
|       | 표시방법 | · 판류형 간판은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 설치                                                               |    | ○  |
|       |      | · 한 건물 안에서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 또는 유사한 서체 사용                                              |    | ○  |
|       |      | · 가급적 단순, 명확한 내용 표기                                                                    |    | ○  |
|       |      | · 문자의 크기는 세로 0.7m이내로 설치                                                                |    | ○  |
|       |      | ·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병기) |    | ○  |
|       | 재료   | · 동일 건축물내 광고물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료 사용                                                         | ○  |    |
|       |      | · 건물외장재를 고려하여 건물이미지와 조화되는 재료 사용                                                        |    | ○  |
|       |      | · 유지관리가 양호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 사용                                                              | ○  |    |
|       | 조명   | · 에너지 고효율 조명 사용 권장                                                                     | ○  |    |
|       |      | · 광고물의 휘도를 낮게 하여 눈부심을 최소화                                                              |    | ○  |
|       |      | · 네온 및 점멸방식 조명 설치 지양                                                                   | ○  |    |
|       |      | · 광원의 직접 노출,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                                                       | ○  |    |
|       | 색채   | · 돌출색 및 원색의 사용을 지양, 입면색채와 조화                                                           | ○  |    |
|       |      | · 채도 4이상, 명도 6이하인 색의 바탕면 사용규제, 형광색 사용금지                                                | ○  |    |
|       | 기타   | · 옥상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사용 금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은 예외)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옥외광고물(특별관리구역) 체크리스트

| 구분    | 지침내용 | 권장                                                                       | 필수 | 평가 |
|-------|------|--------------------------------------------------------------------------|----|----|
| 공통 사항 | 디자인  | · 지역 또는 거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테마를 설정                                              |    | ○  |
|       |      | · 업소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로고, 엠블럼, 픽토그램 등을 권장                                     | ○  |    |
|       | 표시방법 | · 업소당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 이내(건축물 최상단의 건물명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과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간판 총수량에서 제외) |    | ○  |
|       |      | · 광고내용은 광고물 표시면적 중 각 면의 20% 이내                                           |    | ○  |
|       |      | · 판류형 간판은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 설치                                                 |    | ○  |
|       | 재료   | · 동일 건축물내 광고물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료 사용                                           |    | ○  |
|       |      | · 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 사용 및 고광택 금속재질의 노출 지양                                      | ○  |    |
|       | 조명   | ·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                                               | ○  |    |
|       |      | · 내부조명방식의 경우 문자나 도형의 부분조명방식 권장                                           | ○  |    |
|       |      | · 네온, 점멸방식 및 광원 노출 제한                                                    |    | ○  |
|       | 색채   | · 검정색과 빨강색은 간판 전체의 50%이상 금지                                              |    | ○  |
| 가로형   | 수량   | · 1업소당 1개 이내(가각부 2개 이내)                                                  |    | ○  |

| 구분        |         | 지침내용                                                                                                      |                                    | 권장 | 필수 | 평가 |
|-----------|---------|-----------------------------------------------------------------------------------------------------------|------------------------------------|----|----|----|
| 간판        | 크기      | 가로                                                                                                        | · 해당 건축물의 가로폭 이내(최대 10m 이내)        |    | ○  |    |
|           |         | 세로                                                                                                        | · 세로 0.7m 이내                       |    | ○  |    |
|           |         | 4층 이상                                                                                                     | · 글자크기는 0.9m이내                     |    | ○  |    |
|           | 표시방법    | · 판류형 판의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    | ○  |    |
|           |         | · 3층 이하 정면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며, 건축 측면 또는 후면의 설치 금지                                                                |                                    |    | ○  |    |
| 세로형 간판    | 표시방법    | · 4층이상에는 건물명이나 상징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간판 각각 부착 가능                                                   |                                    |    | ○  |    |
|           |         | · 세로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                                                                                          |                                    |    | ○  |    |
| 연립형 간판    | 수량      | · 정면 5층이하 별도 공간에 가로형 간판 설치                                                                                |                                    |    | ○  |    |
|           | 크기      | · 연립되는 가로형 간판 1개의 면적최대 1㎡이내                                                                               |                                    |    | ○  |    |
|           |         | · 게시 틀의 총면적은 최대 8㎡이내                                                                                      |                                    |    | ○  |    |
| 돌출형 간판    | 크기      | · 간판의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이내                                                                                   |                                    |    | ○  |    |
|           |         | 수량                                                                                                        | · 1업소 1개만 표시                       |    | ○  |    |
|           |         | 가로                                                                                                        | · 광고물의 가로크기 0.8m이내                 |    | ○  |    |
|           | 표시방법    | 세로                                                                                                        | · 건축물의 1개층 높이 이내로 설치               |    | ○  |    |
|           |         | ·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0.8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세로의 길이는 1.5m이내, 간판두께는 0.5m이내                                           |                                    |    | ○  |    |
| 지주 이용 간판  | 표시방법    | · 건물 전면폭이 10m이하인 경우 1줄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각각 1줄로 설치 가능                                            |                                    |    | ○  |    |
|           |         | · 지면으로부터 4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며, 상단은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안됨                                                           |                                    |    | ○  |    |
|           |         | 수량                                                                                                        | · 5층이상 건물에 5개업소이상의 업소에 한해 연립형으로 설치 | ○  |    |    |
|           | 크기      |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함                                              |                                    | ○  |    |    |
|           |         | ·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m이내, 가로폭은 1m 이내로 함                                                                         |                                    |    | ○  |    |
| 옥상 간판     | 표시방법    | · 부지내 입주 업소수를 배분하여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설치 권장                                                                       |                                    | ○  |    |    |
|           |         | ·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설치, 사유지경계로부터 1m이상 안쪽에 설치                                                                    |                                    | ○  |    |    |
|           |         | ·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    | ○  |    |
|           | 설치      | · 옥상간판 설치 금지                                                                                              |                                    |    | ○  |    |
|           |         | · 4층이상 건물로 업소명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 <sup>3)</sup>                                            |                                    |    | ○  |    |
| 현수막       | 표시방법    | · 건물옥상바닥의 안쪽에 표시                                                                                          |                                    |    | ○  |    |
|           |         | · 구조물의 높이는 3m이내, 가로길이는 10m 이내로 설치                                                                         |                                    |    | ○  |    |
|           |         | · 글자높이는 2m 이내                                                                                             |                                    |    | ○  |    |
| 창문 이용 광고물 | 설치      | · 현수막 설치를 금지                                                                                              |                                    |    | ○  |    |
|           |         | · 현수막 지정계시대를 이용하여 표시                                                                                      |                                    | ○  |    |    |
| 애드벌룬      | 설치      | · 창문이용 광고물 금지                                                                                             |                                    |    | ○  |    |
|           |         | · 1층 업소에 한해 창문 또는 출입문에 폭 0.2m이내의 띠형태로 상호, 브랜드, 전화번호를 표시 가능                                                |                                    | ○  |    |    |
| 전기 이용 광고물 | 네온류 전광류 | · 애드벌룬 설치 금지                                                                                              |                                    |    | ○  |    |
|           |         | · 상업지역에 한하여 설치                                                                                            |                                    |    | ○  |    |
| 전기 이용 광고물 | 네온류 전광류 | · 입체형 문자도형에 전광류(LED조명 등)를 삽입하여 광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의 광고물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 가능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3)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 ■ 색채 체크리스트 - 단독주택

| 구분       |    | 지침내용                                  | 권장     | 필수 | 평가 |
|----------|----|---------------------------------------|--------|----|----|
| 기본원칙     |    | · 개성과 자율성 최대한 부여, 전체와의 조화 유지          |        | ○  |    |
| 주조색      | 범위 | · 색상 Y~Y50R<br>/흑색량 10~30 / 순색량 2~20  | 예<br>시 | ○  |    |
|          | 면적 | · 70% 이상                              |        |    |    |
| 보조색      | 범위 | · 색상 Y~Y80R<br>/흑색량 10~40 / 순색량 10~50 | 예<br>시 | ○  |    |
|          | 면적 | · 20~30%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Y~Y90R<br>/흑색량 20~70 / 순색량 5~30  | 예<br>시 | ○  |    |
|          | 면적 | · 5% 이내                               |        |    |    |
| 유사색      |    | · 2가지 이상의 색 사용시 유사색상범위 내에서 사용         | ○      |    |    |
| 그래픽      |    | · 담장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 ○  |    |
| 소재색      |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 사용        | ○      |    |    |
| 지붕       |    | · 갈색계열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           | ○      |    |    |
| 옥상       |    | · 옥상설비와 바닥은 채도20 이하의 저채도색 사용          | ○      |    |    |
| 담장,옹벽    |    | · 주변건축물보다 채도를 낮게 사용하고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    | ○      |    |    |
| 창틀,문     |    | · 입면색과 유사계열로 명도만 조절하여 강조되지 않게 사용      | ○      |    |    |
| 점포형 주거   |    | · 점포층과 주거층이 구분되도록 색을 적용               | ○      |    |    |
| 우편함      |    | · 고채도 사용을 금하며 건축물과 비슷한 색으로 채도를 낮게 사용  | ○      |    |    |
| 캐노피      |    | · 대문 및 출입문과 동일하거나 유사색으로 계획            | ○      |    |    |
| 대문 및 출입문 |    | · 건축물색과 유사계열에서 강조하여 주목성을 높임           | ○      |    |    |
| 채도기준     |    | · 교통·안전표시 또는 사인보다 낮은 채도의 색을 사용        | ○      |    |    |
| 펜스       |    | · 순색량 15 이하의 저채도색으로 나뭇잎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함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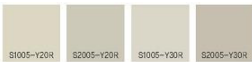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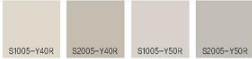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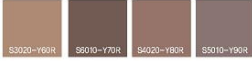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색채 체크리스트 - 공동주택

| 구분     |                                                                      | 지침내용                                            |    | 권장                                                                                 | 필수 | 평가 |
|--------|----------------------------------------------------------------------|-------------------------------------------------|----|------------------------------------------------------------------------------------|----|----|
| 기본원칙   |                                                                      | · 주위 건물과 조화되도록 연속성 유지<br>· 조망경관에서의 상징성, 일체성 확보  |    |                                                                                    |    | ○  |
| 사용색 수  |                                                                      |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                                                                                    |    | ○  |
| 주조색    | 범위                                                                   | · 주조색: 색상 Y20R~Y50R, N<br>/ 흑색량 10~20 / 순색량 2~5 | 예시 |  |    | ○  |
|        | 면적                                                                   | · 70% 이상                                        |    |  |    | ○  |
| 보조색    | 범위                                                                   | · 색상 Y10R~Y80R<br>/ 흑색량 5~40 / 순색량 5~20         | 예시 |  |    | ○  |
|        | 면적                                                                   | · 30% 이내                                        |    |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Y20R~Y90R<br>/ 흑색량 30~60 / 순색량 10~30       | 예시 |  |    | ○  |
|        | 면적                                                                   | · 5% 이내                                         |    |  |    | ○  |
| 소재색    |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 그래픽    |                                                                      | · 슈퍼그래픽 등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                                                                                    |    | ○  |
| 판상형    |                                                                      | · 15층 이상 판상형은 상층, 중층, 저층부로 구분하여 계획              |    |                                                                                    |    | ○  |
| 탑상형    |                                                                      | · 탑상형은 저층, 그 이상의 층으로 구분하여 계획 가능                 |    |                                                                                    | ○  |    |
| 연립주택   |                                                                      | · 연립주택은 단색으로 계획 가능                              |    |                                                                                    | ○  |    |
| 상층부    |                                                                      | · 상층으로 갈수록 고명도 색채의 사용                           |    |                                                                                    | ○  |    |
| 저층부    | · 저층부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중저채도의 차분한 색채 사용                                     |                                                 |    | ○                                                                                  |    |    |
|        | · 기반부 마감 재료수는 많지 않게 하며 2개 이상시 색상차가 크지 않게 적용                          |                                                 |    | ○                                                                                  |    |    |
| 지붕     |                                                                      | · 지붕색은 갈색계열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                |    |                                                                                    | ○  |    |
| 설비,몰딩  |                                                                      | · 입면색과 동일하거나 유사계열의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                |    |                                                                                    | ○  |    |
| 근린생활시설 |                                                                      | · 근린생활시설은 상품, 광고물을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           |    |                                                                                    | ○  |    |
| 창틀,난간  |                                                                      | · 입면색과 유사계열로 명도만 조절하여 강조되지않게 사용                 |    |                                                                                    | ○  |    |
| 부대시설   |                                                                      | · 옥상설비와 바닥은 채도20 이하의 저채도색 사용                    |    |                                                                                    | ○  |    |
| 담장, 옹벽 |                                                                      | · 주변건축물보다 채도를 낮게 사용하고 자연친화적 재료사용                |    |                                                                                    | ○  |    |
| 펜스     |                                                                      | · 가로시설물 색채 설계지침을 준수, 순색량 15이하 색 사용              |    |                                                                                    | ○  |    |
| 축벽     | · 형태를 고려하여 단순한 패턴과 중·저채도의 색을 적용                                      |                                                 |    | ○                                                                                  |    |    |
|        | · 마을명, 동호수, 건설사 로고 등의 색채는 외장색채와 유사 조화                                |                                                 |    | ○                                                                                  |    |    |
|        | · 건설사 로고는 10개 동 이하에서는 1개 이내, 20개동 이하에서는 3개 이내, 20개 동 이하에서는 4개 이하로 사용 |                                                 |    | ○                                                                                  |    |    |
|        | · 9층이하의 낮은 건물은 상층부 동번호 표기 제외 가능                                      |                                                 |    | ○                                                                                  |    |    |
|        | · 마을명, 동번호의 크기 및 위치는 축벽 그래픽 표기법 준수                                   |                                                 |    | ○                                                                                  |    |    |
|        |                                                                      | · 축벽의 슈퍼그래픽은 금함(단,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           |    |                                                                                    |    | ○  |
| 보도포장   |                                                                      | · 보도포장은 단순한 패턴으로 저채도의 유사계열로 계획                  |    |                                                                                    | ○  |    |
| 출입구    | · 동출입구는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을 금지                                              |                                                 |    | ○                                                                                  |    |    |
|        | · 건축물과 채도와 명도를 비슷하게 연출                                               |                                                 |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색채 체크리스트 - 상업건축물

| 구분    |    | 지침내용                                                    |  |    |  | 권장 | 필수 | 평가 |
|-------|----|---------------------------------------------------------|--|----|--|----|----|----|
| 기본원칙  |    | · 상업건축물의 개별성이 전체와 조화를 도모하고 활기참을 연출                      |  |    |  |    | ○  |    |
| 주조색   | 범위 | · 색상 G80Y~Y20R, R80R~B<br>/ 흑색량 5~20/ 순색량 2~10          |  | 예시 |  |    | ○  |    |
|       | 면적 | · 60% 이상                                                |  |    |  |    |    |    |
| 보조색   | 범위 | · 색상 G90Y~Y60R<br>/ 흑색량 10~30 / 순색량 5~10                |  | 예시 |  |    | ○  |    |
|       | 면적 | · 30% 내외                                                |  |    |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G20Y~Y20R, B~B30G<br>/ 흑색량 30~60 / 순색량 2~30        |  | 예시 |  |    | ○  |    |
|       | 면적 | · 10% 이내                                                |  |    |  |    |    |    |
| 연속성   |    |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                              |  |    |  | ○  |    |    |
| 유사색   |    | · 2가지 이상의 색 사용시 유사색상범위 내에서 사용                           |  |    |  | ○  |    |    |
| 그래픽   |    | · 건축입면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    |  |    | ○  |    |
| 소재색   |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    |
| 지붕색   |    | · 지붕색은 갈색계열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 유지                         |  |    |  | ○  |    |    |
| 창틀,난간 |    | · 입면색과 유사계열로 명도만 조절하여 강조되지 않게 사용                        |  |    |  | ○  |    |    |
| 옥상    |    | · 옥상설비와 바닥은 채도20이하의 저채도 색을 사용                           |  |    |  | ○  |    |    |
| 차양막   |    | · 차양막은 중채도 이하의 색을 사용하고 동일건물은 동일한색으로 통일감을 유지             |  |    |  | ○  |    |    |
| 전면공간  |    | · 전면공간은 건축 및 주변포장과 연계성을 도모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함                 |  |    |  | ○  |    |    |
| 연결구조물 |    | · 연결구조물은 건물입면과 유사한 색을 적용                                |  |    |  | ○  |    |    |
| 재료사용수 |    | · 재료와 색채 사용수를 제한하여 복잡하지 않게 연출                           |  |    |  | ○  |    |    |
| 외벽    |    | · 노출된 건물 외벽은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유사하게 사용                         |  |    |  | ○  |    |    |
| 유리    |    | · 유리가 건물의 70%이상이면서 고채도 착색유리가 아닐 경우 사용색 범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  |    |  | ○  |    |    |
| 옥외광고물 |    |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색채 설계지침에 준하여 적용                          |  |    |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색채 체크리스트 - 공업건축물

| 구분     |    | 지침내용                                                |  |    |  | 권장 | 필수 |
|--------|----|-----------------------------------------------------|--|----|--|----|----|
| 기본원칙   |    | · 공업건축 특유의 이미지를 저감시키는 깨끗하고 친근감 있는 색채연출              |  |    |  |    | ○  |
| 주조색    | 범위 | · 색상 Y~Y30R, R80B~B<br>/ 흑색량 20~40 / 순색량 5~20       |  | 예시 |  | ○  |    |
|        | 면적 | · 70% 이상                                            |  |    |  |    |    |
| 보조색    | 범위 | · 색상 G80Y~Y60R, B40G~B50G<br>/ 흑색량 20~40 / 순색량 5~20 |  | 예시 |  | ○  |    |
|        | 면적 | · 30% 이내                                            |  |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G20Y~B10G<br>/ 흑색량 30~60 / 순색량 10~30           |  | 예시 |  | ○  |    |
|        | 면적 | · 5% 이내                                             |  |    |  |    |    |
| 사용색수   |    | ·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2~3가지의 이내 색채로 계획                      |  |    |  |    | ○  |
| 강조색수   |    | · 강조색을 적용할 경우 2가지 이내의 색으로 제한                        |  |    |  |    | ○  |
| 시설집적   |    | · 시설이 집적된 장소 또는 산업단지는 사업소간의 통일감 있는 색채계획             |  |    |  |    | ○  |
| 거대시설   |    | · 규모와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위압감을 해고하는 색채 사용              |  |    |  |    | ○  |
| 연속성    |    |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 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을 유지               |  |    |  | ○  |    |
| 유사색    |    | · 2가지 이상의 색 사용시 유사색상 범위 내에서 사용                      |  |    |  | ○  |    |
| 고채도 강조 |    | ·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은 금지                 |  |    |  |    | ○  |
| 그래픽    |    | · 담장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    |  |    | ○  |
| 소재색    |    | · 최대한 제시한 색상 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
| 지붕색    |    | · 건축색과 유사계열의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며 지붕에 CI, BI의 적용을 금지        |  |    |  | ○  |    |
| 기둥, 굴뚝 |    | · 높은기둥이나 굴뚝은 원색의 강조색 사용을 금지                         |  |    |  | ○  |    |
| 패턴     |    | · 장방향의 건축물은 세로의 면으로 분절하여 위압감이 해소되도록 함               |  |    |  | ○  |    |
| 옹벽     |    | · 건물과 색차가 없는 돌출되지 않는 색채를 사용                         |  |    |  | ○  |    |
| 펜스     |    | · 펜스는 가로시설물 색채설계지침을 준수하고, 순색량 15이하 색을 사용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색채 체크리스트 - 공공건축물

| 구분   |    | 지침내용                                         | 권장     | 필수 | 평가 |
|------|----|----------------------------------------------|--------|----|----|
| 기본원칙 |    | · 지역민과의 교류촉진을 도모하고, 이용성 극대화를 위한 편안한 색채연출     |        | ○  |    |
| 주조색  | 범위 | · 색상 Y~Y60R, R80B~B<br>/ 흑색량 10~30 / 순색량 2~5 | 예<br>시 | ○  |    |
|      | 면적 | · 60% 이상                                     |        |    |    |
| 보조색  | 범위 | · 색상 R80B~Y50R<br>/ 흑색량 20~45 / 순색량 2~20     | 예<br>시 | ○  |    |
|      | 면적 | · 20~30%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R80B~Y60R<br>/ 흑색량 30~50 / 순색량 5~30     | 예<br>시 | ○  |    |
|      | 면적 | · 10% 이내                                     |        |    |    |
| 사용색수 |    | ·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      |    |    |
| 연속성  |    |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을 유지         | ○      |    |    |
| 유사색  |    |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범위내에서 사용                  | ○      |    |    |
| 배색   |    | ·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 가능        | ○      |    |    |
| 유리색  |    | · 유리는 고채도 색유리를 제외하고 사용색 범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 ○      |    |    |
| 그래픽  |    | · 담장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 ○  |    |
| 소재색  |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지붕색  |    | · 건축색과 유사계열의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며 지붕에 CI, BI의 적용을 금지 |        | ○  |    |
| 마감재료 |    | · 마감재료의 종류는 3가지를 넘지않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색채를 사용   | ○      |    |    |
| 옹벽   |    | · 옹벽은 돌출되지 않는 색채, 친자연적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계획      | ○      |    |    |
| 지붕   |    | · 지붕색은 갈색계열, 회색계열로 적용                        |        | ○  |    |
| 펜스   |    | · 펜스는 가로시설물 색채 설계지침을 준수하고, 순색량 15이하 색을 사용    |        | ○  |    |
| 건물명  |    | · 건물상단에 CI나 건물명을 과도하게 표기하는 것을 금지             |        | ○  |    |
| 마감재료 |    | · 마감재료와 색채선택은 건축물 용도에 맞게 계획                  | ○      |    |    |
| 공공시설 |    | · 공공업무시설은 신뢰감을 주는 회색조의 차분한 색채계획              |        | ○  |    |
| 문화시설 |    | · 문화시설은 난색계열의 저채도 색채로 친근감있는 색채계획             |        | ○  |    |
| 교육시설 |    | · 교육연구시설은 중고채도의 강조색으로 경쾌한 색채계획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색채 체크리스트 - 시설물

| 구분        |      | 지침내용                                            |                                                        | 권장     | 필수 | 평가 |
|-----------|------|-------------------------------------------------|--------------------------------------------------------|--------|----|----|
| 가로<br>시설물 | 기본원칙 | ·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안전한 색채 선택, 필요한 경우 강조색으로 경쾌한 분위기 연출 |                                                        |        | ○  |    |
|           | 기조색  | 범위                                              | · 색상 Y~Y60R, N<br>/ 흑색량 10~70<br>/ 순색량 2~10            | 예<br>시 | ○  |    |
|           |      | 면적                                              | · 90% 이상                                               |        |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20Y~Y90R, R90B~B30G<br>/ 흑색량 30~70<br>/ 순색량 10~50 | 예<br>시 | ○  |    |
|           |      | 면적                                              | · 5~10%                                                |        |    |    |
|           | 사용색수 |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        | ○  |    |
|           | 연속성  |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 유지             |                                                        |        | ○  |    |
|           | 유사색  |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범위 내에서 사용                    |                                                        |        | ○  |    |
|           | 소재색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           | 배색   | · 과도한 색채사용을 억제하고, 단색이나 2~3가지 이내로 색채계획           |                                                        |        | ○  |    |
|           |      | · 시설물의 형태감을 부각시키는 명도대비에 의한 배색 권장                |                                                        |        | ○  |    |
| 기반<br>시설물 | 정보내용 | · 문자, 픽토그램 등은 가로시설물색과 흑색량 30이상 차이               |                                                        |        | ○  |    |
|           |      | · 문자, 픽토그램 등은 1~2가지의 색채를 사용                     |                                                        |        | ○  |    |
|           | 선적요소 | · 가로등, 펜스 등의 선적요소는 기조색을 사용                      |                                                        |        | ○  |    |
|           |      | · 버스쉘터, 휴지통 등 점적요소는 기조색 사용과 기능에 따라 상징색 사용이 가능   |                                                        |        | ○  |    |
|           | 면적요소 | · 안전시설은 부분적으로 상징색을 사용하여 주목성을 높임                 |                                                        |        | ○  |    |
|           | 기본원칙 | · 연속성과 상징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형태가 부각되며 자연과 조화되도록 함 |                                                        |        | ○  |    |
|           | 순응색  | 범위                                              | · 색상 Y~Y40R, N<br>/ 흑색량 5~20 / 순색량 0~10                | 예<br>시 | ○  |    |
|           |      | 면적                                              | · 80% 이상                                               |        |    |    |
|           | 조화색  | 범위                                              | · 색상 B60G~G50Y, Y20R~R, N<br>/ 흑색량 30~40 / 순색량 0~10    | 예<br>시 | ○  |    |
|           |      | 면적                                              | · 20% 이내                                               |        |    |    |
|           | 강조색  | 범위                                              | · 색상 Y20R~Y50R, B10G~G50Y<br>/ 흑색량 20~60 / 순색량 5~50    | 예<br>시 | ○  |    |
|           |      | 면적                                              | · 5% 이내                                                |        |    |    |
| 기반<br>시설물 | 사용색수 |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        | ○  |    |

| 구분      | 지침내용                                            | 권장 | 필수 | 평가 |
|---------|-------------------------------------------------|----|----|----|
| 연속성     |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 유지             | ○  |    |    |
| 유사색     |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 범위 내에서 사용                   | ○  |    |    |
| 소재색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배색      | · 2가지 이상의 색채 사용시 유사색상 범위내에서 사용                  | ○  |    |    |
| 상징시설물   | · 상징교량등은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역할에 따라 색을 선정 후 사용          | ○  |    |    |
| 대규모 시설물 | · 장대교 및 500m 이상의 방음벽은 채도가 낮은 단색으로 적용            | ○  |    |    |
| 소규모 시설물 | · 소규모의 시설물중 육교의 계단과 교량 등은 구조물의 부위별 색을 통일감 있게 사용 | ○  |    |    |
| 패턴      | · 방음벽등 연속적인 구조물은 수직적 분절로 변화감 부여                 | ○  |    |    |
| 복잡한 형태  | · 교량 등 구조물의 형태가 복잡한 구조물은 단색으로 계획                | ○  |    |    |
| 단순한 형태  | · 방음벽 등 연속적인 구조물은 수직적 분절로 변화미 부여                | ○  |    |    |
| 지하차도    | · 지하차도는 밝고 경쾌한 색채를 사용하고, 과도하지 않은 그래픽 가능         | ○  |    |    |
| 조형물     | · 조형물 디자인은 디자인 개념에 맞추어 자유롭게 계획 가능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색채 체크리스트 - 옥외광고물

| 구분    |    | 지침내용                                                                                                                                      | 권장 | 필수 | 평가 |
|-------|----|-------------------------------------------------------------------------------------------------------------------------------------------|----|----|----|
| 기본원칙  |    | · 가독성, 정보성, 연속성에 의해 가로 전체의 질서를 유지 할 수 있는 색채 계획                                                                                            |    | ○  |    |
|       |    |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 이용행태를 고려한 색채 사용                                                                                                        |    | ○  |    |
| 바탕색   | 범위 | · 색상 G80Y~Y50R N<br>/ 흑색량 5~60<br>/ 순색량 2~20<br><br>예시  | ○  |    |    |
| 글자색   | 범위 | · 색상 all color<br>/ 흑색량 5~85<br>/ 순색량 2~50<br><br>예시    | ○  |    |    |
| 사용색수  |    |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  |    |    |
| 연속성   |    | ·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 유지                                                                                                                 | ○  |    |    |
| 유사색   |    |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범위 내에서 사용                                                                                                              | ○  |    |    |
| 소재색   |    |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  |    |    |
| 가로형간판 |    | · 가로형 간판의 판형은 동일건물에서 색을 통일하여 사용                                                                                                           | ○  |    |    |
| 돌출형간판 |    | · 돌출형 간판은 강조색 사용을 지양하고, 중저채도의 색으로 통일하여 돌출색을 방지                                                                                            | ○  |    |    |
| 지주형간판 |    | · 지주형 간판은 색을 통일하여 사용                                                                                                                      | ○  |    |    |
| 현수막   |    | · 현수막색은 하나의 색으로 돌출되지않게 계획                                                                                                                 | ○  |    |    |
| 차양막   |    | · 동일 건물 내에서 차양막의 색채는 통일                                                                                                                   | ○  |    |    |
| 주거지역  |    | · 주거지역은 저채도의 색채 사용으로 차분한 이미지 부여                                                                                                           | ○  |    |    |
| 상업지역  |    | · 상업지역은 중채도 이하의 색사용으로 경쾌한 이미지 부여                                                                                                          | ○  |    |    |
| 문화자원  |    | · 문화자원이나 자연자원 주변은 문화, 자연 배려한 색채 사용                                                                                                        | ○  |    |    |
| 사용부위  |    | · 옥외광고물은 사용부위에 따라 배경색과 글자색으로 구분                                                                                                           | ○  |    |    |
| 그래픽   |    | · 배경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  |    |    |
| 글자색   |    | · 글자색은 사용색 범위내에서 배경색과 유사계열의 색 사용                                                                                                          | ○  |    |    |
| 로고,심볼 |    | · 브랜드 로고나 심볼 등은 순색량을 조절하여 글자색 범위 내에서 적용                                                                                                   | ○  |    |    |
| 사용규제  |    | · 넓은 면적의 고채도색 사용은 규제(30%이하 적용)                                                                                                            |    | ○  |    |
|       |    | · 빨간색이나 검정색은 간판 전체면적의 50%이상 사용금지                                                                                                          |    | ○  |    |
| 자가진단  |    |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도심상업가로 체크리스트

| 구분                          |             | 가이드라인                                                                                                                                                   | 필수 | 권장 | 평가 |
|-----------------------------|-------------|---------------------------------------------------------------------------------------------------------------------------------------------------------|----|----|----|
| 기본방향                        |             | 1) 많은 보행량을 수용하여 편안한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행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                                                                                                   | ○  |    |    |
|                             |             | 2) 보행자의 시각적인 흥미를 고려하여, 가로경관요소에 질서와 다양성을 확보<br>- 보행자가 시각적 즐거움과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디자인 고려<br>-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 탐색이 용이하도록 기능적인 디자인 도입을 고려 | ○  |    |    |
| 가로<br>시<br>설<br>물<br>영<br>역 | 가로조경        | ① 보행자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수종의 가로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음                                                           |    | ○  |    |
|                             |             | ② 주요 거점에는 보행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녹음이 좋은 교목을 식재                                                                                                              |    | ○  |    |
|                             | 가로조명        | ③ 활동적이고 쾌활한 야간경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보행등 겸용 열주 또는 바닥조명 등 다양한 조명 기법을 활용                                                                                           |    | ○  |    |
|                             | 기타시설물       | ④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을 적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늘 형성이 되도록 가로수 인근에 설치하거나 그늘막을 활용                                                                                       |    | ○  |    |
|                             |             | ⑤ 교차로 등 주요 거점에, 주변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보행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길찾기에 도움을 줌                                                                                          |    | ○  |    |
| 보<br>행<br>영<br>역            | 보행<br>유효공간  | ⑥ 많은 보행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도폭을 최대한 확보                                                                                                                         |    | ○  |    |
|                             |             | ⑦ 지하도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행공간을 확보                                                                                                      |    | ○  |    |
| 외<br>부<br>공<br>간<br>영<br>역  | 건축물<br>외부공지 | ⑧ 건축물 전면공지에는 보행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도변 야외카페 설치를 활성화                                                                                                            |    | ○  |    |
|                             | 공공공간        | ⑨ 공원 및 광장은 보행자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유동성을 극대화                                                                                                  |    | ○  |    |
|                             |             | ⑩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                                                                                                             |    | ○  |    |
|                             |             | ⑪ 가로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를 고려하여 특색 있는 가로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함                                                                                                  |    | ○  |    |
|                             |             | ⑫ 공원 및 광장 등 공공공간의 활기찬 이용을 위해 인접 건축물 저층부에 대하여 식음료 서비스를 권장                                                                                                |    | ○  |    |
| 건<br>축<br>물<br>영<br>역       | 저층부         | ⑬ 가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층의 권장용도를 지정할 수 있음                                                                                                                   |    | ○  |    |
|                             |             | ⑭ 보행동선을 유입할 수 있는 개방형 계획으로 가로와의 연계를 강화                                                                                                                   |    | ○  |    |
|                             |             | ⑮ 가로에 인접한 1층 전면부는 다양한 건축 계획요소를 도입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흥미를 제고                                                                                                     |    | ○  |    |
|                             |             | ⑯ 건축물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의 차양막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복합용도로 체크리스트

| 구분              | 가이드라인                                                               | 필수 | 권장 | 평가 |
|-----------------|---------------------------------------------------------------------|----|----|----|
| 기본방향            | 1)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가로의 질서와 정연함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도입                           | ○  |    |    |
|                 | 2) 보도위 차량진입을 지양하여 보행공간의 공공성을 증진                                     | ○  |    |    |
| 가로<br>시설물<br>영역 | ①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가로의 정연함을 위해 일관된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                           |    | ○  |    |
|                 | ② 초화류 및 지피류로 구성된 식수대를 통일감 있게 계획하여 위요감과 안정감을 줌                       |    | ○  |    |
|                 | ③ 가로등과 보행등을 통합설치하거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활용한 보행등을 설치                         |    | ○  |    |
| 보행<br>영역        | ④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공간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온화 계획을 권장                           |    | ○  |    |
|                 | ⑤ 보도 위 차량진입 및 주차를 지양                                                |    | ○  |    |
| 외부<br>공간<br>영역  | ⑥ 건축물 전면공지에는 보행공간의 쾌적함과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화분, 벤치, 조형물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도록 유도 |    | ○  |    |
|                 | ⑦ 건축물 전면의 주차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경계영역을 녹지로 차폐                 |    | ○  |    |
|                 | ⑧ 자유로운 접근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소공원 또는 소광장을 조성      |    | ○  |    |
| 건축물<br>영역       | ⑨ 인접 건축물과 건축벽면선, 1층 높이를 일치시키고 외부 마감재를 조화롭게 사용할 것을 권장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근린상업가로 체크리스트

| 구분              | 가이드라인                                                               | 필수 | 권장 | 평가 |
|-----------------|---------------------------------------------------------------------|----|----|----|
| 기본방향            | 1) 주민의 휴식과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가로의 활력을 제고                              | ○  |    |    |
|                 | 2)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                                                | ○  |    |    |
| 가로<br>시설물<br>영역 | ① 가로별 테마수종을 선정하여 특색 있는 가로를 연출하며, 낮은 수목으로 친근하고 쾌적한 가로를 제공            |    | ○  |    |
|                 | ② 가로수 식재가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인접 건축물 외벽 또는 자투리 공지의 녹화를 권장                  |    | ○  |    |
|                 | ③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낮은 가로등 또는 건축물 벽부등을 설치                                 |    | ○  |    |
|                 | ④ 가로시설물은 필수 시설만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야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일체형으로 계획              |    | ○  |    |
| 보행<br>영역        | 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로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권장할 수 있음                   |    | ○  |    |
| 외부<br>공간<br>영역  | ⑥ 건축물 전면공지에는 보행공간의 쾌적함과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화분, 벤치, 조형물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도록 유도 |    | ○  |    |
|                 | ⑦ 주차진입로를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안내판, 바닥표지 및 경고등을 설치                           |    | ○  |    |
|                 | ⑧ 노상주차 차선을 확보하여 서비스 차량 대기 및 주차공간을 확보                                |    | ○  |    |
| 건축물<br>영역       | ⑨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휴식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소규모 공원 설치를 고려                    |    | ○  |    |
|                 | ⑩ 가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층의 권장용도를 지정할 수 있음                               |    | ○  |    |
|                 | ⑪ 가로에 인접한 1층 전면부는 다양한 건축 계획요소를 도입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흥미를 제고                 |    | ○  |    |
|                 | ⑫ 건축물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의 차양막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아파트단지 주변가로 체크리스트

| 구분              |             | 가이드라인                                                                     | 필수 | 권장 | 평가 |
|-----------------|-------------|---------------------------------------------------------------------------|----|----|----|
| 기본방향            |             | 1) 도시 맥락을 고려하여 가로와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 ○  |    |    |
|                 |             | 2) 단지내 편의시설은 단지내 주민들간의 교류의 활성화 지향하도록 계획                                   | ○  |    |    |
| 가로<br>시설물<br>영역 | 가로조경        | ① 단지 내 외부 · 조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의 가로수 식재를 권장     |    | ○  |    |
|                 | 가로조명        | ②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휴식공간에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녹음이 좋은 교목을 식재                        |    | ○  |    |
|                 | 기타<br>시설물   | ③ 시설물 및 건축물에 야간 통행의 안전을 위한 보행등을 설치                                        |    | ○  |    |
| 보행<br>영역        | 보행<br>유효공간  | ④ 교통결절점, 휴게시설 등 주요 거점마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    | ○  |    |
| 외부<br>공간<br>영역  | 건축물<br>외부공지 | ⑤ 보행공간과 자전거도로를 명확히 구분하되,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배려                                    |    | ○  |    |
|                 | 공공공간        | ⑥ 그늘막과 적절한 차폐식재를 통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을 배치                           |    | ○  |    |
| 건축물<br>영역       | 배치          | ⑦ 공원 및 광장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공공공간의 유동성을 극대화        |    | ○  |    |
|                 |             | ⑧ 공원 및 광장에는 충분한 수량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공간을 확보                                     |    | ○  |    |
|                 |             | ⑨ 가로에 인접한 주동은 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로 배치할 것을 권장                                      |    | ○  |    |
|                 |             | ⑩ 주민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가로 또는 단지 내 주보행로변에 배치                                   |    | ○  |    |
|                 |             | ⑪ 단지 내 주 보행로는 단지를 통과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보행로 주변의 건축물은 보행자의 시각을 고려한 높이로 계획 |    | ○  |    |
|                 | 저층부         | ⑫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거주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    | ○  |    |
|                 |             | ⑬ 가로에 인접한 저층부에 주민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고, 전면부를 개방적으로 디자인하여 가로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        |        |        |            |
|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        |        |            |

## ■ 저층주거단지가로 체크리스트

| 구분              |             | 가이드라인                                                         | 필수 | 권장 | 평가 |
|-----------------|-------------|---------------------------------------------------------------|----|----|----|
| 기본방향            |             | 1) 안전한 보행 여건을 조성                                              | ○  |    |    |
|                 |             | 2) 자기 집 앞 영역에 자부심을 갖고 가꾸도록 유도                                 | ○  |    |    |
| 가로<br>시설물<br>영역 | 가로조경        | ① 거주자가 관리하는 화분 등으로 집 앞을 가꿀 수 있도록 화분대를 배치할 것을 권장               |    | ○  |    |
|                 | 가로조명        | ② 보행안전을 위해 낮은 높이의 가로등 또는 건축물 벽부등을 설치                          |    | ○  |    |
|                 | 기타<br>시설물   | ③ 공동으로 사용하는 분리수거함, 쓰레기수거함 등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고 유지관리 하도록함 |    | ○  |    |
| 보행<br>영역        | 보행<br>유효공간  | ④ 보행자가 우선임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보차혼용 블록 또는 문양콘크리트로 가로포장을 일체화           |    | ○  |    |
| 외부<br>공간<br>영역  | 건축물<br>외부공지 | ⑤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안의 공지는 인접대지와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 ○  |    |
|                 |             | ⑥ 건축물 전면공지에 앗음벽, 조경 등으로 주민 교류공간을 조성                           |    | ○  |    |
|                 |             | ⑦ 필로티 하부 바닥 포장은 가로와 연계되도록 함                                   |    | ○  |    |
| 건축물<br>영역       | 공공공간        | ⑧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편의시설을 조성                             |    | ○  |    |
|                 | 배치          | ⑨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 가로부분과 바닥레벨을 같게 하고 배수처리에 유의                     |    | ○  |    |
|                 | 저층부         | ⑩ 용적률 확보를 위한 무리한 건축물 형태 계획을 지양하여 조화로운 건축물 외관을 조성              |    | ○  |    |
|                 |             | ⑪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거주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        |        |        |            |
|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        |        |            |

## ■ 가로 통합시설물 체크리스트

| 구분   | 가이드라인                                                                                 | 필수 | 권장 | 평가 |
|------|---------------------------------------------------------------------------------------|----|----|----|
| 기본방향 | 1) 가로시설물의 통합디자인을 통해 깨끗하고 정돈된 경관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                               | ○  |    |    |
|      | 2) 가로시설물이 분야별, 관리주체별, 시설별로 개별 설치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조화를 방지하고, 통합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  |    |    |
|      | 3) 본 가이드라인은 가로시설물이 밀집한 교차로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의 수준과 예외 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  |    |    |
| 통합대상 | ① 가로조명, 교통신호기 및 표지판, 안내시설 등 지주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CCTV·교통감시카메라 등 지주형 시설물에 부착이 가능한 시설물을 포함 |    | ○  |    |
| 형태   | ②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가급적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원칙으로 함                                     |    | ○  |    |
|      | ③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개방감 있는 가로이미지를 형성                                     |    | ○  |    |
|      | ④ 지주대는 모듈 개념을 도입해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    | ○  |    |
|      | ⑤ 지주대에 부가적인 시설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함                                                         |    | ○  |    |
|      | ⑥ 지주대에 결합되는 부속물의 체결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체결되는 부분은 요철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                               |    | ○  |    |
| 유지관리 | ⑦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을 표준화하여 설치·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 ○  |    |
|      | ⑧ 가로시설물은 가로시설물 영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공간에 배치되는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    | ○  |    |
|      | ⑨ 볼트를 포함한 소형부품들은 타 시설물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    | ○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 야간경관 체크리스트

### • 도로조명 체크리스트

| 구분               | 평균노면휘도 (회소허용치) cd/m <sup>2</sup> | 색온도(K)     | 연색성     | 평가 |
|------------------|----------------------------------|------------|---------|----|
| 대로(25m 이상)       | 1.0 cd/m <sup>2</sup>            | 3500~4000K | 70Ra 이상 |    |
| 중로(12m이상 ~25m미만) | 1.0 cd/m <sup>2</sup>            | 3000K      |         |    |
| 소로(12m미만)        | 0.7 cd/m <sup>2</sup>            | 3000K      |         |    |

| 구분          | 수평면조도 | 연직면조도 | 색온도(K)     | 연색성     | 평가 |
|-------------|-------|-------|------------|---------|----|
| 주택지역 보행자 도로 | 5lx   | 1lx   | 2800~3500K | 70Ra 이상 |    |
| 상업지역 보행자 도로 | 20lx  | 4lx   | 3000~4500K |         |    |

| 구분    | 수평면조도 | 연직면조도 | 색온도(K)     | 연색성     | 평가 |
|-------|-------|-------|------------|---------|----|
| 농어촌도로 | 3lx   | 0.5lx | 2800~3500K | 70Ra 이상 |    |

### • 건축물조명 체크리스트

| 구분      | 휘도                                  | 색온도(K)     | 연색성     | 평가 |
|---------|-------------------------------------|------------|---------|----|
| 주거지역건축물 | 10 cd/m <sup>2</sup>                | 3000~3500K | 70Ra 이상 |    |
| 상업지역건축물 | 25 cd/m <sup>2</sup>                | 3000~5000K | 70Ra 이상 |    |
| 공업지역건축물 | 10 cd/m <sup>2</sup>                | 3000~4000K | 70Ra 이상 |    |
| 문화재지역   | 농촌 및 주거지역 : 15 cd/m <sup>2</sup>    | 3000~4000K | 70Ra 이상 |    |
|         | 상업 및 업무환경 지역 : 25 cd/m <sup>2</sup> |            |         |    |

### • 녹지 및 수변지역 조명 체크리스트

| 구분    | 조도         |            | 색온도(K)     | 연색성     | 평가 |
|-------|------------|------------|------------|---------|----|
| 녹지 지역 | 공원전반       | 6~10~15lx  | 2000~3000K | 70Ra 이상 |    |
|       | 공원 및 주요 장소 | 15~20~30lx |            |         |    |

| 구분   | 수평면 조도 | 연직면 조도 | 색온도(K)     | 연색성     | 평가 |
|------|--------|--------|------------|---------|----|
| 수변지역 | 3lx    | 0.5lx  | 2000~3000K | 70Ra 이상 |    |

|      |        |        |        |        |            |
|------|--------|--------|--------|--------|------------|
| 자가진단 | 3 : 우수 | 2 : 양호 | 1 : 보통 | 0 : 미흡 | × : 해당사항없음 |
|------|--------|--------|--------|--------|------------|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 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 2. 경관계획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결과

### 1) 공청회 조치 결과

| 제시자      | 주요의견                                                                                                                                                                                                                                                                        | 조치결과                                                                                                                                                                          | 비고 |
|----------|-----------------------------------------------------------------------------------------------------------------------------------------------------------------------------------------------------------------------------------------------------------------------------|-------------------------------------------------------------------------------------------------------------------------------------------------------------------------------|----|
| 토론자<br>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개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이 행정공고 중에 있음. 이에 따르면 기본경관계획은 경관계획으로,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정지역경관계획은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중첩되어 설정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변경사항을 반영</li> <li>▶ 기본경관계획 → 경관계획</li> <li>▶ 경관중점관리구역 → 중점경관관리구역</li> <li>▶ 특정경관계획수립 내용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첩제시 제외</li> </ul>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의 미래상인“바다, 돌과 구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에서 ‘돌’에 대한 개념은 협소한 마당의 의미가 강한 어휘로 ‘돌’보다는 ‘돌’로 어휘를 변경하였으면 좋겠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의 미래상에서 ‘돌’을 ‘돌’로 변경</li> <li>▶ “바다, 돌과 구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 “바다, 돌과 구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li> </ul>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사업 27개소 중에서 서천군의 예산을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였으면 좋겠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제시</li> <li>▶ 실행계획에서 단계별 사업계획을 제시 하였음(p. 324)</li> </ul>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협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일종의 지역추진협의회와 유사한 구조를 지님. 경관협정이 체결되면 군에서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주요한 가로경관형성사업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발적으로 해주었으면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경관형성사업은 기존에 장항읍과 서천읍 일부 간판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므로 의식제고와 병행하여 가로경관형성사업 추진</li> </ul>                            | 반영 |
| 토론자<br>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기본구상 추진전략 4개 부문을 타시군과 차별성을 두어 서천군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바람(낙조지는 서해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천군만의 특색을 지니도록 추진전략을 지속 의견수렴하여 마련</li> </ul>                                                                                         | 반영 |
| 토론자<br>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천군의 경우 군산에 의존되는 느낌이 강하고 서천다움이 잘 나타나지 않음. 이러한 서천다움은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임.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27개의 경관사업으로 서천군다운 Identity(정체성)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제시되었다고는 하나 주민이 참여해서 경관을 형성해 가는 방안이 미진함.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사업에서 주민참여 방안 제시</li> <li>▶ 경관사업 사업내용에 기반영</li> </ul>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잘 되었으나,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제시되었으면 좋겠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가이드라인의 이해를 돕도록 도표로 제시</li> <li>▶ 경관가이드라인 참조</li> </ul>                                                                             | 반영 |

| 제시자   | 주요의견                                                                                                                                                                                          | 조치결과                                                                                                                                                   | 비고  |
|-------|-----------------------------------------------------------------------------------------------------------------------------------------------------------------------------------------------|--------------------------------------------------------------------------------------------------------------------------------------------------------|-----|
| 토론자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군의 새로운 경관창출에 대한 부분이 미진한 듯함. 타 지역과는 다른 점을 부각하여 주시기 바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군이 가지는 타지역과 차별성은 개발되지 않은 청정성에 있음. 이를 적극 반영하여 경관계획에 반영</li> </ul>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임군수의 군정목표와 합일되도록 반영되었으면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군의 새로운 군정목표에 부합하도록 적극 반영하겠음(군수 별도 보고 및 의견 청취 시행)</li> </ul>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달라. 주민설문조사에서 마서면의 경우 마서면 인구의 1.7%, 즉 15명의 의견을 가지고서는 형식적인 반영일 수밖에 없다. 서천군을 대표하는 이장단, 새마을 협회, 체육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설문조사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역 전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며, 이것은 특정한 지역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님.</li> </ul>                          | 미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가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후에 경관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공에서 시행할 수 제시</li> </ul>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의 경관저해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있음.(P. 143) 어촌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함. 그물, 닻 등 해안변의 경관저해요소는 필수적인 경관관리요소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 등의 수변지역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li> </ul>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사업에서 장항 신어항지역을 추가했으면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어항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시 행정에서 경관관리 가능</li> </ul>                                                      | 미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지역 지원 사업을 경관사업에 추가했으면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지역 사업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경관사업에 추가하기 보다는 개별 농어촌지역 계획수립시 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 미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군의 예산은 정해져 있음. 예산 투입에 대한 단계별 제시가 필요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계별 예산투입을 제시함</li> </ul>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점경관관리구역을 도로에서 15m, 혹은 건축지정선 2~3 셋백 설정시 주민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와 맞닿은 접도구역을 포함하여 15m로 설정하였음. 15m 범위내 1/3이상의 필지가 포함되면,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됨. 15m의 설정은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임</li> </ul> | 반영  |
| 토론자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군의 고령화인구 및 농어촌 인구비율을 감안하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이 과다하게 제시된 것 같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군 경관을 관리하고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li> </ul>                                                          | 미반영 |
| 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골에 들어서는 다양한 건축양식은 시골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이 다수 있음.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이러한 건축물은 해안가를 주변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제어방안은 없는지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가이드라인에 제시</li> <li>강제적 수단보다는 주민스스로 서천군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관리가 필요</li> </ul>                         | 반영  |

## 2) 관계기관 협의 조치 결과

| 구분           | 주요 의견                                                                                                                                                                                                                                                                                                                      | 조치결과                                                                                                                                                                                                        | 비고 |
|--------------|----------------------------------------------------------------------------------------------------------------------------------------------------------------------------------------------------------------------------------------------------------------------------------------------------------------------------|-------------------------------------------------------------------------------------------------------------------------------------------------------------------------------------------------------------|----|
| 서천군<br>환경보호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계획이 수립된 부지중 “장항제련소 오염 토지 정화사업지”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일원”은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2009.7.31)」에 따라 환경부에서 매입하고 정화한 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li> <li>환경부에서 매입된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경관구역 설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내용은 환경부와 협의대상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입구역에 대한 계획은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중점관리구역의 계획 내용과 경관 가이드라인 조정</li> <li>용도지역 변경(환경부 매입부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름)</li> </ul>                                                                  | 반영 |
| 환경부<br>토양조사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대책상의 기본방향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입구역에 대한 경관계획의 조정 반영 필요(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제련소)</li> </ul>                                                                                                                                                                                |                                                                                                                                                                                                             |    |
| 서천군<br>문화체육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향후 운영관리를 위해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홍보관, 전수관, 공예공방 등)이 위치하는 구역으로 축소 변경 요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산모시관 일원 중점관리구역 설정은 현재 건축된 시설뿐만 아니라 향후에 신축되어지는 건물 및 시설물, 도로의 경관, 주변부 옥외광고물, 주변 산림 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이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함</li> </ul>        | 반영 |
| 금강유역<br>환경청  | <p>〈자연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경관과 생태계가 우수한 대해서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전대책 수립</li> <li>공원, 사면, 녹화, 가로수 등 식재시 외래종 지양하고, 지역 향토식물 식재하여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연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경관과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대책은 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내용임. 경관계획에서는 자연과 공생하는 경관계획을 지향함</li> <li>식재시 향토수종을 권장하도록 경관계획에 기 반영</li> </ul>                                            | 반영 |
|              | <p>〈해안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강하구언은 철새도래지이므로, 친수공간 조성 등 해안가의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시설 및 랜드마크 조성 등 해안의 수평적 경관을 저해하는 수직적 건축물 지양하고 철새의 이동 및 서식에 지장이 없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경관의 친수공간과 야간경관은 경관가이드라인상에 철새의 이동 및 서식에 지장이 없도록 반영함</li> <li>-국토교통부 해안경관가이드라인 및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준수</li> </ul>                                                            | 반영 |
|              | <p>〈하천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 정비는 하천중심의 종합적 네트워크,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 공원화조경화 보다는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 저수로의 고착화를 지양하고 물길의 자유로운 사행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li> <li>하천 경관과의 이질감 및 위압감을 주는 기존의 직벽식(석축, 옹벽, 홍수방어벽 등) 및</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하천은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 다루어지며, 본 경관계획에서는 자연형하천을 유도하여 하천의 사행화를 유도하였으며, 하천의 호안은 자연형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함</li> <li>자연경관이 우수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조화되는 경관계획을 수</li> </ul> | 반영 |

| 구분 | 주요 의견                                                                                                                                                                                                                                                                                                                        | 조치결과                                                                                                                                                                                                                                                                    | 비고 |
|----|------------------------------------------------------------------------------------------------------------------------------------------------------------------------------------------------------------------------------------------------------------------------------------------------------------------------------|-------------------------------------------------------------------------------------------------------------------------------------------------------------------------------------------------------------------------------------------------------------------------|----|
|    | <p>급경사의 호안은 완경사로 정비하고, 하천의 복개구간, 보 및 낙차공 등 인공구조물은 철거하거나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공법을 도입 반영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산·축동 저수지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다목적 광장, 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등 과도한 친수공간을 지양하고 수변생태계와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함</li> <li>○ 수변경관 관리를 위해 건축물 층고 및 배치를 고려</li> </ul>                                        | <p>립하였으며, 봉선저수지 및 흥림저수지는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자연생태계와 어우러지는 경관이 되도록 계획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경관저해건축물 입지를 지양하도록 함</li> </ul>                                                                                                              |    |
|    | <p>〈도로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체 교차로의 상부에는 소규모 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보행환경 향상과 경관 개선</li> <li>○ 터널의 진입부는 절개를 최소화하고 절개면이 발생할 경우 녹화하고 갭문상부에 불필요한 구조물은 지양</li> <li>○ 면을 절개해야 하는 경우 옹벽을 지양하고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하여 자생종 초본류 및 나무 식재</li> <li>○ 불필요한 지역의 과도한 인공 방음벽 설치를 자제하고,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방음벽 양면에 충분한 폭의 녹지 형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권역·축거점 경관가이드라인상에 국토교통부 경관도로설계지침 내용을 수용함</li> <li>- 입체 교차로 상부에는 소규모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였음</li> <li>- 터널 진입부는 녹화를 권장하고, 명암순응식재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향토수종 식재를 지향하였음</li> <li>- 과도한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주변과 조화로운 방음벽 설치를 권장하였음</li> </ul> | 반영 |
|    | <p>〈공원·녹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도로 모퉁이, 오피스 건물 사이의 소규모 토지 등에 소공원 조성하되 인공구조물은 최소한으로 반영</li> <li>○ 녹지의 단절부는 생태통로를 조성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이동보호 및 생태질서 유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녹지의 조성시 공개공지 및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였음</li> <li>○ 녹지의 단절면은 소매군락 창출 및 보호를 위해 기 반영되어 있음</li> </ul>                                                                                                                                   | 반영 |
|    | <p>〈주거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릉지의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완경사를 유지하고 사면은 식재로 피복</li> <li>○ 바람길 및 보행녹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생태녹도를 조성할 때는 개거형 및 투수형 수로를 설치해 지표수 확보 및 배수로의 기능 권장</li> <li>○ 옥상녹화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지피식물, 야생초화류 등을 식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릉지에 조성하는 주거지는 테라스형으로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음</li> <li>○ 바람길 및 보행녹도 확보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가이드라인을 제시함</li> <li>○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도심지역은 옥상녹화를 권장하도록 하였음</li> </ul>                                                                                        | 반영 |
|    | <p>〈산업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에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가급적 사면녹화 및 수목식재로 위압적 경관을 차폐하고, 내외부에 완충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근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의 위압경관을 완화하도록 경관계획을 기 수립함</li> </ul>                                                                                                                                                                                       | 반영 |



### 3) 서천군 의회 의견 조치 결과

새로운 내일을 여는 행복한 서천



서 천 군



수신 생태도시과장

(경유)

제목 제231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안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서 송부

제231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안 심의 시 제안된 의견서를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서천군 기본경관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의견서 1부. 끝.

서 천 군 수

관인생략

주무관 황대하 어메니티기획 담당 이대철 정책기획실장 전결 2014. 11. 25. 최창근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실-4760 (2014. 11. 25.) 접수 생태도시과-11539 (2014. 11. 25.)

우 325-70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 www.seocheon.go.kr

전화번호 (041)950-4303 팩스번호 (041)953-4755 / polonaisein@korea.kr / 대국민 공개

## 서천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서

- ☐ 서천군 기본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장항읍 서천읍 등 이해가 민감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 ☐ 서천군 경관 특성을 부각하기 위한 정체성 확립 및 제고방안  
마련

서천군 의회 의견 조치 결과

| 구분     | 주요 의견                                                                                                                                      | 조치결과                                                                                                        | 비고 |
|--------|--------------------------------------------------------------------------------------------------------------------------------------------|-------------------------------------------------------------------------------------------------------------|----|
| 서천군 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군 기본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장항읍 서천읍 등 이해가 민감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읍과 장항읍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후 반영토록 하겠음</li> </ul>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군 경관 특성을 부각하기 위한 정체성 확립 및 제고방안 마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지속 수정 보완</li> </ul>                                    | 반영 |

주민설명회 조치 결과

| 구분   | 주요 의견                                                                                                                                                                                                                                                                        | 조치결과                                                                                                          | 비고 |
|------|------------------------------------------------------------------------------------------------------------------------------------------------------------------------------------------------------------------------------------------------------------------------------|---------------------------------------------------------------------------------------------------------------|----|
| 주민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항읍 일원 경관사업 중에서 건축물경관 사업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색 있고, 주제가 있는 마을을 만들면 주민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관광활성화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서울이나 전주의 경우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호당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모범삼아 장항읍에 건축물경관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사업과 관련하여 국비확보 노력 및 경관협정에 의한 제안시 검토하고, 경관조례에 관련 지원 근거 기 마련</li> </ul>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되는 것이 있으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게는 손에 잡히는 사업 구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행정의 협력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해 주세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사업은 부처별 공모사업에서 추진함이 타당. 현 계획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li> </ul>        | 반영 |
| 주민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 재산상에 제약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관 계획으로 투자가 위축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li> <li>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명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생태산업단지, 어메니티 서천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외부에서는 투자유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로 보여지는 이미지상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지면 투자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법 취지에 적합토록 주민 재산상의 제약 최소화함</li> </ul>                                | 반영 |
| 주민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계획은 서천군의 모든 지역을 다루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압니다. 지역주민이 잘 화합하여 경관 가꾸어 나가기 위한 계획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본 계획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li> </ul>                                                                           |                                                                                                               |    |

| 구분   | 주요 의견                                                                                                                                                                                                                                                                                                                | 조치결과                                                                                    | 비고 |
|------|----------------------------------------------------------------------------------------------------------------------------------------------------------------------------------------------------------------------------------------------------------------------------------------------------------------------|-----------------------------------------------------------------------------------------|----|
| 주민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경관계획 수립 재정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사업 예산은 서천군에서 별도 책정</li> </ul>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계획이라면 주민에게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경관협정관련 경관조례에 규정 예정</li> </ul>  | 반영 |
| 주민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는 말씀이다. 민관이 협력하여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홍보도 더불어 같이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li> <li>사업과 관련하여 선셋장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 서천군의 특산물(김, 두부 등)을 이용한 전시관 내지 홍보관이 있으면 좋을 듯하다. 또한 물량장은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이나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나서서 주변정비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li> <li>전체적으로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부서에 의견 전달 및 주민 협조 부탁</li> </ul>                | 반영 |
| 주민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군 경관사업 중 공원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에서 서천군 진입부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좋지만 서천읍 사거리인근 구 쓰레기 매립장 부지도 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비확보 추진 가능성과 경관 사업의 재원조달여부 검토 후 계획 반영</li> </ul> | 반영 |

#### 건축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

| 구분   | 주요 의견                                                                                                                                               | 조치결과                                                                                                                                                                                              | 비고 |
|------|-----------------------------------------------------------------------------------------------------------------------------------------------------|---------------------------------------------------------------------------------------------------------------------------------------------------------------------------------------------------|----|
| 위원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사업 중 장항읍 가족문화의 거리는 어떠한 내용인지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항읍 가족문화의 거리는 현재 장항읍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사업,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관을 찾는 관광객을 장항읍내로 유인하여 장항화물역 중심의 가로를 어린이 테마플라자를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고, 이를 가족문화의 거리라고 명칭함</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중점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중점관리구역이 시행되면 민간부문에서는 신축 시에만 적용되고 공공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인가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계획 수립 이후, 서천군 경관조례가 제정이 되면, 민간부문에서는 조례에 의해 신축 시에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심의를 받고,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대부분 적용을 받음</li> </ul>                                                | -  |

| 구분   | 주요 의견                                                                                                                                                                                   | 조치결과                                                                                                                                                                                                                             | 비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중점관리조망점이 설정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정해진 사항인가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망점과 관련해서는 보고서 39~45 쪽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예비조망점 선정후, 관련된 분석을 GIS를 활용하여 가시권 분석과 민감지역 분석을 실시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점관리조망점을 선정하였음</li> </ul>                                                            | 기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별도의 장으로 제시하겠음</li> </ul>                                                                                                                                                     | 반영  |
| 위원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산모시관은 현재 현상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변경되어야 하지 않습니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서 의견 수렴 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중점관리구역 축소를 건의 한바 있고, 그 범위는 제시된 범위보다 축소할 것을 요구함</li> <li>○ 그러나, 향후 경관의 관리 및 형성을 위해 현 경계를 유지함</li> </ul>                                                            | 미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이드라인상 민간부분에서 규제사항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축소되어서 농어촌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다. 그러나 현재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차후에는 필수가 될 수 있다. 다음단계에서는 어떻게 변화될지 연구해 달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법의 취지상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고, 현재의 경관계획 패러다임은 강화되는 추세임</li> <li>○ 본 계획도 계획 목표 년도 대비 가이드라인의 강화될 가능성은 있음</li> <li>○ 그러나, 현재 공공과 민간이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주문 사항은 본 과업의 범위를 벗어남</li> </ul> | 미반영 |
| 위원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시설 가이드라인상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구조물 없이 지붕 경사를 이용한 태양광태양열 설치 권장'은 태양광 및 태양열의 구조상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 사항은 중점관리구역내 위치한 농촌시설에서 적용되어 사항으로 중점관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음</li> <li>○ 에너지관련 시설의 보급확대 가능성 대비 경관적 고려부분에 대한 상충사항은 관련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권장으로 변경함</li> </ul>                                        | 반영  |